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29, 2024고합1522(병합), 2025고합51(병합), 2025고합61(병합), 2025고합78(병합), 2025고합243(병합), 2025고합586(병합) 가. 내란우두머리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피 고 인	1.가.나. 윤석열 2.나.다. 김용현 3.나.다. 노상원 4.나.다. 김용군 5.나.다. 조지호 6.나.다. 김봉식 7.나.다. 윤승영 8.나.다. 목현태
검 사 ¹⁾	검사 이찬규(기소 및 공판), 특별검사보 박억수, 김형수, 장우성, 이윤제, 검사 조재철, 유병국, 진종규, 최윤영, 김수길, 박대한, 송성광, 신영민, 양찬규, 서성광, 정기훈, 김승미, 오승환, 전종택, 송

1) 이하 특별검사, 군검사, 검사 등을 모두 '검사'라 표시한다.

정범, 구승기, 김성태, 장준호, 장지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녕(피고인 윤석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

변호사 배보운, 송진호, 이동찬, 배의철, 송해은, 정상명, 조대현,

오욱환, 황교안, 배진한, 이경원, 도태우(피고인 윤석열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진(피고인 윤석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석동현

법무법인 삼승(피고인 윤석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계리

법무법인 위(피고인 윤석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위현석, 이윤희, 류지현

법무법인 예당(피고인 윤석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홍일

법무법인 자유서울(피고인 김용현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하상, 유승수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피고인 김용현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순호, 정상경, 권우현

법무법인 아진(피고인 김용현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유진

변호사 김지미(피고인 김용현을 위하여)

변호사 이기정, 노종래(피고인 노상원을 위하여)

변호사 조성우(피고인 김용균을 위하여)

변호사 노정환, 안상훈, 최환혁, 최형기(피고인 조지호를 위하여)

법무법인 중원(피고인 조지호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삼수

법무법인 최선(피고인 조지호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성진

법무법인(유한) 중부로(피고인 김봉식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종원, 윤수민

법무법인 강한(피고인 윤승영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희섭, 남기정, 김경환, 노영재, 김준태, 조윤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피고인 목현태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재훈

법무법인(유한) 라움(피고인 목현태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승준

판 결 선 고 2026. 2. 19.

주 문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용균과 피고인 윤승영은 각 무죄.

피고인 김용균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²⁾³⁾

I. 피고인들과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윤석열은 1979. 2.경 충암고등학교를 제8회로 졸업하였고, 1991. 10.경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 2.경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다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고, 2021. 3. 4.경 검찰총장으로 퇴직하였으며, 2022. 3. 9.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2022. 5. 10. 취임하여,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고만 한다)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헌법 제74조),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직무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4.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및 탄핵심판 청구되었고, 2025. 4. 4.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은 1978. 2.경 충암고등학교를 제7회로 졸업하였고, 1982.

2)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 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3) 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직책, 직위 등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경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라고 함)를 제3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육군 중장으로 전역하였고, 2022. 5. 10.부터 2024. 9. 6.까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24. 9. 6.부터 2024. 12. 5.까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였고,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33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 제8조)할 직무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는 1990. 3.경 육사를 제46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제39보병사단장, 제8군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0. 30.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제1항)하던 중 2024. 12. 3.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피고인 윤석열의 지휘·감독을 받아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계엄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25. 6. 25.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1988. 2.경 충암고등학교를 제17회로 졸업하였고,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11공수단장, 제53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방첩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방첩사령부령 제8조 제1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1.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1991. 3.경 육사를 제47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17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육군 특수전사령부령 제3조)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25. 4. 4.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102기갑여단장, 제12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수도방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수도방위사령부령 제5조 제1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1.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25. 6. 25.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1994. 3.경 육사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50보병사단 제122보병연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9. 정보사령관에 임명되어, 군사 관련 영상·지리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의 수집 및 적의 위 정보수집에 대한 방어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국방정보 본부령 제4조 제2항 제1호)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1. 6.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前정보사령관인 피고인 노상원은 1985. 3.경 육사를 제41기로 졸업하고 2015. 11. 5.부터

2016. 10. 24.까지 정보사령관, 2018. 1. 8.부터 2018. 10. 1.까지 육군정보학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23. 장교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제적된 사람이다.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는 1990. 3.경 경찰대학을 제6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서울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8. 10.부터 경찰청장에 임명되었고,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2.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어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으며, 2025. 12. 18.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서울경찰청장인 피고인 김봉식은 1989. 3.경 경찰대학을 제5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8. 16.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되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용균은 1986. 3.경 학군사관 24기로 임관한 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수사과장, ◆군단사령부 헌병대 헌병대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3군단사령부 헌병대 헌병대장,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31.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 윤승영은 1989. 3.경 경찰대학을 제5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2022. 6.경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2024. 8. 1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 임명되어,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지원, 수사경찰 기구·인력의

진단 및 관리, 수사경찰의 배치·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제2항)하고, 수사기획조정관실의 직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36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7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목현태는 1997. 4.경 경위 공채로 임관하여 2021. 1.경 총경으로 승진한 후 2024. 2. 5. 국회경비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데(국회법 제144조), 국회경비대는 기동단과 함께 서울경찰청의 직할대로서 국회 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위하여 국회 경비대장을 두고 있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국회경비대장은 부대장, 행정과, 경비제대, 의장경호대의 보좌를 받으며, 부대장과 각 경비제대장 등을 지휘·통솔하면서 경비제대를 통해 국회 청사 경비, 출입자 통제, 국회 청사 내 안전 활동(「서울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37조)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김대우는 1994. 3.경 해군사관학교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방첩사령부 2 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5. 1.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에 임명되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형법(군기누설,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 등을 지휘·감독(군사법원법 제43조, 제44조, 「24-2차 방첩사령부 업무분장예규」)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이상현은 1994. 3.경 육사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획

참모부 전구작전기획처장, 3군단 작전참모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2. 6.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 임명되어,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여단에 예속·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제1공수특전여단 업무분장예규」 제4조 제2항 제1호)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 임무 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김현태는 2000. 3.경 육사를 제56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협력조정부협력담당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2. 13. 육군특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으로 임명되어,⁴⁾ 대테러특공대로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된 국내 외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제24조 제1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고동희는 1994. 3.경 학군사관 32기로 입관한 후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처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3. 12. 18. 정보사령부 사령본부 계획처장으로 임명되어, 정보사령부 부서별 업무 총괄 및 조정·통제, 정보사령부 전·평시 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훈련 조정 및 통제, 인원 및 장비 편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위 업무에 관하여 정보사령관을 보좌하고, 정보사령부 작전 시행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정보사령부 2024 사무분장」)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 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김봉규는 1993. 3.경 육사를 제49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정보사령부 특수처장 등

4) 이하 ‘특수임무대대’를 ‘특임대대’, ‘특수임무단’을 ‘특임단’으로 각 표시한다.

으로 근무하다가 2023. 12. 18.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에 임명되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한 대북정보 수집 등 첩보활동을 총괄, 군 합동 신문소를 운영 및 관리, 중앙신문단의 부대 병력 및 장비를 관리하고 전·평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정보사령부 전·평시 중앙신문단이 참여하는 훈련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정보사령부 2024 사무분장」)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정성욱은 1996. 3.경 육사를 제52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정보사령부 ○○○정보여단 ○○○정보부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11. 1. 정보사령부 100여단 제2사업단장으로 임명되어, 대북첩보수집 등 대북 공작 활동 총괄, 배속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2사업단 부대 및 병력관리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정보사령부 2024 사무분장」)할 권한이 있고 정보사령부 100여단 예하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각 사업단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박헌수는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실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0. 17.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임명되어,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및 기관,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등을 지휘·감독(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 제2조 제2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II. 내란

1.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후 정치상황 등

피고인 윤석열은 2022. 5.경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

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윤석열이 군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대통령 관저 바로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피고인 윤석열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2022. 5.경 정부 출범 이후 내각을 완성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고, 2023. 5.경을 기준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 중 약 35%만 입법되는 등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에 따른 야당과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야당과의 갈등 속에 평소 피고인 윤석열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말에 적극 동조하였다.

한편 2023. 10. 30.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으로 보직되었고, 2023. 11. 6. 여인형은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은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는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각 보직되었고, 문상호도 같은 날 정보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2. 군 지휘관들과의 식사 모임 등

피고인 윤석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4. 3. 말경 내지 4. 초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신원식(당시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여인형 및 피고인 김용현(당시 경호처장)과 함께 식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시국상황이 걱정된

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비상대권 내지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용현은 2024.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관에서 2023. 11. 6.자 군사령관 인사로 동시에 각 사령관으로 보직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상호 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이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는 2024. 5.경 평일 저녁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장군 진급 인사와 관련된 대화 등을 나누었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4. 5.~6.경 위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도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하는 등 비상대권 및 비상조치에 대하여 계속 언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은 2024. 6. 17.경에도 위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시국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4. 8. 초순경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인형으로부터 ‘정보사령부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당시 민주노총을 언급하면서 우려하는 이야기도 하였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은 모임을 통해 당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마치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인 것처럼 표현하

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비상대권 내 지

비상조치권에 대한 피고인 윤석열의 의지를 반복하여 드러냈다.

3. 국방부장관 교체 후 비상계엄 준비

가. 국방부장관 교체와 비상계엄 준비설 제기

피고인 윤석열은 2024. 8. 12. 비상계엄에 반대하던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의 후임으로 피고인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전격 지명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병주, 김민석 의원 등이 피고인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여 계엄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2024. 8. 26. 대통령실 대변인 정혜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2024. 9. 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며, 2024. 9. 6. 제50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김용현이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에 의한 계엄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엄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2024. 11. 4.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나. 정보사령관 관련 인사조치

피고인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4. 9. 6.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에게 문상호를 정보사령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군 지휘관들의 구체적 준비 경과

피고인 노상원은 2024. 9. 9.경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인 대령 김봉규에게 ‘특수요원 중에 사

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해달라’라고 지시하여

김봉규로부터 해당 인원을 추천받았고, 2024. 10. 말경 김봉규에게 재차 ‘특수부대 요원 5명, 우회 공작 인원 15명 정도를 선발해라, 전라도 출신은 빼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0. 14.경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노상원은 비상계엄에 참여하여 제2수사단 구성원으로 일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상호는 위와 같은 피고인 노상원의 지시를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로 받아들여 2024. 10. 중순경 공작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김봉규와 정보사령부 단장 대령 정성욱에게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2024. 10. 29.경에는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에게 ‘장관님 보고를 다녀왔는데, 장관님께서 오물풍선 등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물리적인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다,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 노상원이 지시하는 대로 사업(임무) 잘하는 인 원들을 선발해서 보고해 달라’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2024. 10. 1. 20:00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피고인 윤석열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식사를 하면서, 언론·방송계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과 함께 비상대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여인형은 2024. 10. 27.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점령,

출입통제, 현장보존, 이후 군검경 합동 수사」라는 내용, 2024. 11. 5.에는 「적 행동이 먼

저임, 전시 또는 경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등의 내용, 2024. 11. 6. 에는 「최초부터 군경합동이 필수, 경찰 상황은?」이라는 내용, 2024. 11. 9.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천, 조해주」 등 비상계엄 선포 시 체포할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 2024. 11. 15.에는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 자위권적 응징태세」라는 내용을 메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노상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신문 등을 담당할 인원 구성을 위하여 2024. 11. 초순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경력이 있는 前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인 피고인 김용군에게 ‘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김용군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인 대령 김상용 등 총 25명의 명단을 2024. 11. 6.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송하고, 2024. 11. 10.경 안산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만나 위 명단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1. 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윤석열도 중간에 합류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비상계엄 실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피고인 김용현이 곽종근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곽종근은 ‘특전사는 제1공수, 제3공수, 제9공수 여단 등 예하 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김용현이 이진우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이진우는 ‘수도방위사령부 역시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윤석열이 이진우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부대 편성 등에 관해 물었고, 이진우는 개략적인 부대 편성과 국가 중요시설이 위협할 때 수도방위

사령부가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등 군 지휘관들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등 모의를 구체화하였다.

한편 여인형은 2024. 11. 9. 오후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들은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학영⁵⁾,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천, 조해주’ 등 명단을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9.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문상호와 김봉규를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발생하면 대응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선관위로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을 하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김봉규는 이를 ‘오물풍선 도발에 원점타격 등 대응을 하면 서로 긴장관계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 김봉규에게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들을 잡아 와야 한다’라는 등의 지시사항을 말하고, 문상호가 먼저 자리를 떠난 후 김봉규에게 ‘체포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 체포 준비물,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과 같은 비상계엄 선포 시 수행해야 할 임무가 기재된 문건 2부를 건네주며 그 중 1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음 날인 2024. 11. 10. 오전경 문상호는 정보사령부에서 김봉규에게 ‘장관 대면보고를 다녀왔는데, 장관이 대북상황 관련된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하셨다’, ‘계엄은 통수권자의 결정이니 군인으로서 임무가 부여되면 임무에 따라야하지 않겠나’라며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점심경 정보사령부에서 정성욱에게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 중대한 일

5) 공소사실에는 ‘이학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인형이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증거순번 4기록 649번)에 따르면 위 ‘이학 영’이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 하였으며, 김봉규는 같은 날 저녁경 안양시에서 정성욱을 만나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임무를 설명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받은 문건 2부 중 1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17. 점심경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난 다음, 2024. 11. 17. 15:00경 안산시 40에 있는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문상호와 정성욱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해 뒤라'라고 지시하며 준비상황을 점검하였고, 문상호는 2024. 11. 19.경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으로부터 최종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받고, 비상계엄 선포 후 각자의 임무 등 준비상황을 의논하였으며, 그 무렵 정성욱과 김봉규는 피고인 노상원에게 40명의 요원 명단을 시그널 메신저 등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24.경 문상호가 출장을 위해 2024. 11. 25.경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네가 지금 제정신이나,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해외 출장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 늦어도 수요일(27일)까지 돌아오라'라고 말하며 문상호를 질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1. 24.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논의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1. 24.경부터 2024. 12. 1.경까지 사이에 2017. 3.경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現국군방첩사령부)의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박근혜 前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폭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엄을 계획하는 문건)과 과거에 발령되었던 비상계엄 하에서의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다.

한편, 2024. 11. 28.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2024. 12. 2. 본회의 보고, 2024. 12. 4. 본회의 의결이 예상되고, 2024. 11. 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예산안에 대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1. 30. 11:53경부터 14:51경 사이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만난 후, 18:00경 여인형을 만나 ‘대통령이 곧 계엄을 하실 것인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 확보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와 여론조사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고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하였음을 알려 주고, 여인형과 함께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2024. 11. 30. 23:00경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약 5시간 동안 비상계엄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여인형은 다음 날인 12. 1. 오전경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에게 전화로 ‘2024. 12. 2.부터 부대 대기’를 명하고, 같은 날 15:44경부터 16:24경까지 사이 자신의 휴대폰에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김대우 / 경찰·조분 /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 합동체포조 작전 개시 / 과수실, 정보보호단, 사이버사를 민간전문가팀과 합동운용」 등의 내용을 메모하는 등 구체적 준비사항을 정리하였으며, 2024. 12. 3. 11:25경부터 13:33경 사이 자신의 휴대폰에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인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조치할 것»,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세력 수

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등의 내용을 메모하는 등 구체적

준비사항을 정리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김용현 및 여인형과의 모임 다음 날인 2024. 12. 1.경 피고인 김용현과 구체적 부대출동 계획을 논의하여, 간부 위주로 수방사 및 특전사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군 병력 동원 계획을 구체화한 후, 피고인 김용현에게 계엄선포에 필요한 ‘계엄선포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준비를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과 부대 출동계획을 논의한 이후 2024. 12. 1. 오후경 광종근에게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꽃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진우는 2024. 12. 2. 오전경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로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등의 상황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로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실시되고 있다는 상황 전파시 지휘관 정위치,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출동이 예정된 수호신에 흑복·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쇠지렛대·망치·툼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특정경비구역 경계 병력(제제1경비대대) 출동 준비, 위병소 폐쇄 시행 등의 지시’, ‘김용현 주재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종료 이후 수호신 출동,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선 투입·본관 배치 및 후 속부대 투입, 국회협력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 시장, 경찰청장 공조 통화 실시’ 등을 정리하여 피고인 김용현에게 보고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대로 당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정부예산안 삭감 의결, 특검법 발의 등을 중북 반국가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반

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대국민담화

문,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체포·구금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포고령 및 계엄 선포문의 초안을 피고인 윤석열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검토한 피고인 윤석열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2. 저녁경 위 보완 지시대로 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문, 포고령을 수정하여 피고인 윤석열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윤석열은 수정된 위 문건들을 검토한 후 별다른 수정 없이 ‘됐다’고 말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용현은 그 무렵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이 조치할 사항,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사 봉쇄’,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등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과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 등이 조치할 사항 등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또는 선포 후 조치할 사항을 지시대상자 별 ‘문건’ 형태로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1. 09:15경부터 11:24경까지 사이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과 계엄 관련 논의를 한 후 안산으로 이동하여, 2024. 12. 1. 12:18~12:58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만난 문상호와 김봉규, 정성욱을 상대로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고, 2024. 12. 2. 저녁경부터 자정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나 계엄 관련 논의를 하였으며, 2024. 12. 3. 아침경에도 위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김용현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을 설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야당과의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김용현 등과 위와 같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군·경찰과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으로 국회 및

야당당사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으로 국회기능을 무력화한 후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결위 예산 삭감 등 야당의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 척결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등의 국헌문란 목적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등이 내세운 위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들은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균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우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을 장악한 다음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하였고, 법률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노상원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것이다.

4. 주요 군·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前 상황

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상황

1) 육군특수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육군특수전사령부령에 따라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된 부대로, 평시에는 테러 진압, 전시에는 적진 침투 및 표적 제거 등 임무를 맡고 있고, 그 임무 완수를 위해 꾸준히 육상 침투, 적 진압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예하 부대로 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7공수특전여단, 제9공수특전여단, 제*군단장단, 제13특임여단, 제707특수임무단단, 특수작전항공단, 국제평화지원단 등을 두고 있다.

2)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영내 활동 위주의 부대 운영 지시

곽종근은 2024. 12. 1. 오후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꽃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곽종근은 비상계엄 선포 시 예하 부대의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제1공수특전여단(여단장 이상현)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제3공수특전여단(여단장

김정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제9공수특전여단(단장

안무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여론조사꽃으로, 제707특수임무단(단장 김현태), 특수작전항공단(단장 김세운)을 각각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광종근은 2024. 12. 1. 17:10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사흘 뒤(12. 4.) 예정되어 있는 3대대 제주도 훈련을 연기하라’, ‘다음 주 일주일간 전 부대 야외훈련을 중단하고 부대 내에서만 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3) 출동 준비태세 지시

광종근은 2024. 12. 2. 10:00~13: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진행된 ‘한빛 부대 남수단 파병 환송식’ 행사에서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국제평화지원단장 김대성을 만나 ‘다음 주에 북한 오물 풍선 등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정보가 있다. 여단별로 출동 가능한 대대가 몇 개냐. 대대장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으나 출동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어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외 훈련을 중단하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2. 15:26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비태세를 잘 유지해라. 나는 내일 일과 이후에도 전투복을 입고 집무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며, 2024. 12. 2. 17:00경에는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를 집무실로 불러 ‘서울 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 내 북한 동조세력인 민간인을 동원하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역 동시 다발 테러에 대해 총 없이 비살상무기를 이용한 진압 작전을 준비해 보자’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2. 저녁 무렵 피고인 김용현의 비화폰(도청, 감청 방지 기능이 있는 전화기)으로 광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고 말하

여 광종근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김용현이 피고인 윤석열로부

터 전화를 건네받아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라고 말하였다.

4) 출동 대기 · 준비태세 강화

곽종근은 2024. 12. 3. 08:00경 참모장 박정환, 작전처장 남기동, 정보처장 한경태, 교육훈련처장 이낙행에게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자’고 지시하면서 ‘전방상황 등이 엄중하여 당분간 부대에서 늦게 퇴근하겠다’고 말하였고, 2024. 12. 3. 10:55~11:26경 특수 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오늘 불시에 헬기 출동 훈련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오늘 헬기 몇 대가 출동 가능하냐?’고 물어 UH-60헬기(일명 ‘블랙호크’) 12대가 출동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확인한 후 ‘오늘 헬기 출동 훈련은 21:30경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불시 훈련이니 작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 ‘헬기 12대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곽종근은 2024. 12. 3. 11:09~11:48경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직접 ‘오늘 부대원들 비상소집시켜서 불시점검 하라’, ‘작전복 착용 등 훈련 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13:17~13:20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을 통해 작전지원과장 이선웅, 작전지원과 항공작전장교 주갑용에게 헬기 12대의 원활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육군특수전사령부 본부 및 제707특수임무단 인근의 헬기 이착륙장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 영내 제3공수특전여단 연병장에 있던 축구 골대를 연병장 밖으로 치우게 하였다.

이후 곽종근은 2024. 12. 3. 13:55~14:09경 ‘2025년 교육훈련 방향 토의’를 위한 화상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로 ‘헬기를 특전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받고, 지휘관리장교 IZ에게 ‘지휘통제실 내에 사령관이 대기

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제1공수, 제3공수, 제9공수 특전여단장 등을 포

함한 예하 부대장들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주는 영내 활동 위주로 부대를 운 영하고 즉각 출동 준비태세를 갖춰라’라고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2024. 12. 3. 18:00~18:40경 평소와 달리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로 작전처장 남기동, 정보처장 한경태, 주임원사 JA, 제550방첩부대장 김영권,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를 불러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상황이 엄중하니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하자’고 강조하였고, 김현태가 작전복(일명 ‘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간 훈련 준비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저녁식사 직후에는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사무실로 들어가서 전투복을 입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곽종근은 2024. 12. 3. 18:43~18:56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현 시간부로 여단 전체 인원 비상소집을 실시하라’, ‘지역대장급(소령) 이상만 비상소집하여 영내대 기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19:26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가용한 헬기 12대 모 두 출동 준비를 철저히 하라’며 기존에 내렸던 지시를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곽종근의 지시에 따라, 제1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이상현의 지휘 하에 2024. 12. 3. 08:00~17:00경 야외 훈련 없이 영내 활동으로 부대를 운용하였고, 제3공수특전여 단은 여단장 김정근의 지휘 하에 2024. 12. 3. 18:52~19:06경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으며, 제9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안무성의 지휘 하에 2024. 12. 3. 08:00~17:00경 정기휴가 및 전투휴무 중인 2개 대대를 제외한 2개 대대의 대비태세를 갖추었고, 제707특수임무단은 단장 김현태의 지휘하에 2024. 12. 3. 12:20~18:00경 불시 출동태세 점검 및 헬기 12대 를 이용한 테러진압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2024. 12. 3. 19:30~20:53경 비상소집을 실 시하여 2024. 12. 3. 20:53경 전체 인원이 영내 소집을 완료한 후 당일 예정되어 있던 훈련 계획과 같이

제1, 3, 7, 9지역대원 96명은 작전복을 착용하고 소총, 권총 및 테이저건 등 무기를 소

지한 상태에서 즉시 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특수작전항공단은 단장 김세운의 지휘하에 헬기 12대의 이착륙 및 제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의 헬기 탑승 계획을 수립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본부는 작전지원과장 이선웅의 지휘하에 헬기 이착륙장 정비를 실시하는 등, 그 무렵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제1공수, 제3공수, 제9공수 특전여단, 제707 특수임무단, 특수작전항공단은 출동 준비태세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1:48경 대통령실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광종근에게 전화하여 ‘10~20분 뒤에 상황발표가 있다. 상황발생 시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을 출동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광종근은 2024. 12. 3. 21:41~21:42경 지휘통제실 앞 전투 집무실로 미리 내려가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면서, 2024. 12. 3. 22:20경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야간 훈련을 정상 시행할 것이니 계속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도 ‘출동 준비 잘 하고 있어라’고 지시하여 출동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게 하였다.

나. 정보사령부 등의 상황

1) 정보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정보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라 대외 군사정보 수집 등 임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로서, 그 예하에 100여단 등을 두고 있다.

2)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운용 계획 수립

피고인 노상원은 2024. 9.경부터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공관촌 위병소의 검문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용현의 비서관인 양호열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해 약 20여회에 걸쳐 피고인 김용현의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하였고, 특히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은 매일 피고인 김용현의 공

관을 방문하면서,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문상호 등 정보사령부 병력 등을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운용하기로 계획하고, 공식적인 직책은 없으나 배후에서 사실상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3) 제2수사단 수사2, 3부 구성 요원 선발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0. 14.경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고 지시 하였고, 피고인 노상원은 제2수사단 수사2, 3부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상호는 위와 같은 피고인 노상원의 지시를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로 받아들이 2024.10.중순경 공작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에게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김봉규,정성욱으로부터 요원 선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前정보사령관 노상원이 지시하는 일이 있으면 잘 도와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2024. 10. 29.경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에게 ‘장관님 보고를 다녀왔는데,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 노상원이 지시하는 대로 사업(임무) 잘하는 인원들을 선발해서 보고해 달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2024.11.5.경에는 정성욱에게 전화하여 ‘다음 주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종전에 추천했던 인원들의 휴가 계획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9.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문상호와 김봉규

를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제2수사단)이 구성

될 텐데 내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너희들이 선발해 둔 인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잡아와야 한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문상호가 먼저 자리를 떠난 후 피고인 노상원은 김봉규에게 '부정선거에 관한 설명 내용, 체포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 체포를 위한 망치, 케이블타이 등 준비할 물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하여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 수사2, 3부 요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해 그곳 직원들을 체포한 후 수도방위사령부 B1병커에 구금할 것 등과 같은 김봉규와 정성욱의 각 임무' 등이 기재된 A4용지 10여장 분량의 문건 2부를 건네주며 그 중 1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문상호는 다음 날인 2024. 11. 10. 오전경 정보사령부에서 김봉규에게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하셨다'라며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2024. 11. 10. 점심경 정보사령부에서 정성욱에게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한편 김봉규는 2024. 11. 10. 저녁경 안양시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정성욱을 만나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임무를 설명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받은 문건 2부 중 1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17. 점심경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난 다음, 2024. 11. 17. 15:00경 안산시 상록구 40에 있는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문상호와 정성욱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

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해둬라'라고 지시하며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자리를 떠났고, 문

상호는 정성욱에게 ‘일단 체포 관련 용품을 구입해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장관님 지시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으며, 정성욱은 뒤늦게 도착한 김봉규에게 피고인 노상원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문상호는 2024. 11. 19.경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으로부터 최종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 20명씩 합계 40명의 명단을 보고받고, 비상계엄 선포 후 각자의 임무, 구체적인 조 편성, 조별 임무 부여 및 체포 장비 구비 여부 등 준비상황을 논의하였으며, 그 무렵 김봉규, 정성욱은 피고인 노상원에게 20명씩 합계 40명의 요원 명단을 시그널 메신저 등으로 전달하였다.

4) 제2수사단 수사1부 구성 요원 선발

피고인 노상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 수사2, 3부 수사요원들에 의해 체포, 구금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신문 등을 담당할 수사1부의 구성을 위하여 2024. 11. 초순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경력이 있는 피고인 김용군에게 ‘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용군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인 김상용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이승윤 중령 등 장교 6명과 육군중앙수사단 소속 JG 준위 등 팀장급 9명 및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JH 상사 등 수사관 10명 총 25명의 명단을 자필로 메모한 후 이를 촬영하여 2024. 11. 6. 12:59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송하였고, 2024. 11. 10.경 안산에 있는 피고인 노상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만나 위 명단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였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 이행상황 점검

피고인 노상원은 2024.12.1. 오전경 국방부장관 공관에 방문하여 피고인 김용현을 만난 후 안산으로 이동하여, 2024. 12. 1. 12:18~12:58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만난 문

상호와 김봉규, 정성욱에게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제2수사단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요원) 대기 태세를 잘 유지해라. 김봉규와 정성욱은 기존에 지시했던 임무를 숙지하고, 사령관(문상호)은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 등을 확보해라. 믿을 만한 인원들로 10명 정도 준비해라’라고 지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자리를 떠났다.

문상호는 곧바로 피고인 노상원을 뒤따라 나가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우선 1개팀이 먼저 선관위에 진입하여 전산실을 지키고, 추가 인원을 투입하여 선관위의 출입 인원을 확인해라. 체포, 구금할 대상자들이 확인되면 한쪽으로 모아 두어라’라는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받고, 이를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전달하였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신속 점거팀 관련 준비 완료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2. 저녁경부터 자정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났고, 2024. 12. 3. 아침경에도 위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김용현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을 설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2. 오전경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에게 전화하여 ‘예비 비화폰 1개를 제공해 달라. 사용자명은 테스트(예)로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사용자명이 ‘테스트’ 그룹으로 설정된 비화폰은 대통령, 1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국방부장관과 통화 가능), 이에 김성훈은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김대경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설정된 비화폰 1대를 제공받아 2024. 12. 2. 저녁경 피고인 김용현의 비서관인 양호열을 통해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2. 저녁경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한 피고인 노상원에게 위 비화폰 1대를 제공하여 피고인

노상원이 사실상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제2수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기 이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이용해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속히 점거하고 그곳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4. 12. 3. 10:00경 문상호에게 전화로 ‘이번 주 주중에 1개 팀 (10명) 정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보안 유지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문상호는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과 작전과장 서지윤 중령을 불러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인원들은 기간 중에 장거리 출타나 휴가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인원으로 선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작전과장 서지윤은 2024. 12. 3. 12:00경 정보사령부 각 참모부에 소속된 소령급 장교들과의 전화 연락을 통해 긴급출동할 인원 8명(소령 김성호, 소령 김정재, 소령 김지웅, 소령 김찬유, 소령 김형주, 소령 이민형, 소령 유병욱, 소령 홍태환)을 지정·편성하고 출동에 필요한 차량 2대를 배차 하였고, 계획처장 고동희는 2024. 12. 3. 13:10경 작전과장 서지윤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편성된 인원 8명과 함께 소회의실로 소집하도록 한 다음, 이들 9명에게 문상호로부터 지시받은 세부사항을 전파하였다.

한편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3. 오후경 재차 문상호에게 전화로 ‘오늘 저녁 21:00 경에 정보사령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문상호는 2024. 12. 3. 16:00~17:00

경 계획처장 고동희에게 ‘오늘 야간에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임무가 진행될 것이다. 중앙선관위 청사에 들어가 출입통제를 하고 전산실의 위치를 확인해라. 중앙선관위 청사를 지키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계획처장 고동희는 작전과장 서지윤에게 지시하여 2024. 12. 3. 20:00경 회의실에 소집된 서지윤과 긴급출동할 인원들 8명에게 인터넷으로 확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가 임무장소다. 우리가 중앙선관위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였다.

곧이어 고동희와 서지윤을 비롯한 정보사령부 인원 10명은 2024. 12. 3. 20:30경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소지한 채 카니발 2대에 5명씩 나누어 타고 출발하여 2024. 12. 3. 21: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의 정문이 보이는 도로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대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3. 21:30경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해라’라고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위 5명이 출근하면 신병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문상호는 2024. 12. 3. 21:30경 계획처장 고동희에게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을 받아 적은 내용을 촬영하여 보내준 뒤, ‘22:00경 TV 언론보도를 보면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가 적법한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보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

명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중

양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어 두었다.

7) 제2수사단을 이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팀 관련 준비 상황

한편, 문상호는 2024. 12. 3. 16:30경 정성욱에게 전화하여 ‘오늘 임무가 있을 것 같다. 저번에 추천한 요원들(제2수사단 제2, 3부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요원들)로 2개의 팀을 꾸려 20:00까지 100여단 본부에 소집시켜라’, ‘3~4일 정도 임무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하라. 구체적인 임무는 내가 여단 본부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정성욱은 김봉규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문상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김봉규와 정성욱은 문상호에게 보고한 40명의 선발 명단에 기재된 요원들 중 즉시 출동이 가능한 총 36명의 요원을 100여단 본부로 긴급 소집하였다.

계속해서 문상호는 2024. 12. 3. 21:30경 100여단 대회의실에 집결한 요원 36명에게 ‘22:00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우리는 수행만 하면 된다. 구체적인 임무는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이 부여할 것이다’, ‘정보사령부 부대원 10여 명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나가 있다’라고 알려주었다.

8) 제2수사단 설치·운용을 위한 지휘부 회동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점심 무렵 국방부 전시작전통제권전환TF팀장 방정환에게 전화하여 ‘오늘 파견 명령이 있을 테니 판교에 있는 정보부대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하달되면 확인하고 2기갑여단장(구삼회)과 함께 그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명령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3. 14:49~16:03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피고인 김용군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다’라고 알려준 후, 제2수사단 조직도 등이 기재된 문서를 피고인 김용군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노상원은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구삼회, 방정환이 위 롯데리아에 도착

하여 합류하자, 구삼희, 방정환에게 ‘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시는지는 나중에 명령이 나면 알 수 있어’,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은 일 시키겠냐?’, ‘장관님이 시킨 거만 하면 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노상원은 구삼희, 방정환에게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제2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삼희 장군이 단장, 방정환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 하면 된다.’고 지시하였다.

다. 방첩사령부의 상황

1) 방첩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방첩사령부는 방첩사령부령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로서,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을 두고,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며, 사령관 소속으로 국군방첩부대, 정보보호부대 등을 두고 있다.

2)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여인형은 2024. 11.경부터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각 처·실장들에게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할 것을 수 회 지시하였고, 2024. 12. 1. 오전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에게 전화하여 2024. 12. 2.부터 국방대학교에서 3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교육 참석을 취소하고 부대에 대기할 것을 명령하고, 2024. 12. 3. 오전에는 참모장 이경민에게 ‘북한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여인형은 2024. 12. 3. 저녁 무렵 정성우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꽃의 각 위치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잘 대비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꽃의 위치를 물었으며, 곽종근

으로부터 ‘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수원에는 연수원이 있다. 또 여론조사꽃도 있다. 우리 애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연수원에 서버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여인형은 곽종근과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한 이후 위 정성우에게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정성우는 2024. 12. 3. 20:37경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 최연우를 통해 피고인 조지호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여인형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여인형은 정성우에게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여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오면 인계해 주되, 만약 여의찮으면 서버를 떼어와야 한다’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방첩사령부가 해야 할 임무를 알려주었다.

여인형은 2024. 12. 3. 21:20~21:30경 사령관실에서 방첩사령부 핵심 지휘부인 참모장이경민, 1처장 정성우가 있는 자리에서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를 부대로 복귀시킬 것을 정성우에게 지시하였고, 이경민과 정성우에게 ‘육군총장이 국방부에 들어와 있다. 국무위원들이 들어온다더라. 너희는 알고 있어야지’, ‘비상상황이 오면 군이 따를까’,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따르냐는 거지’라면서 곧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여인형은 2024. 12. 3. 21:45~21:46경 피고인 김용현과의 전화통화에서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사령관실에서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고 있던 이경민, 정성우에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장관님이야’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늦춰질 것 같다는 피고인 김용현의 연락을 전달하였다.

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

1) 수도방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방위사령부령에 따라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범위 안의 지역)을 경비하는 등의 임무를 위해 설치된 작전부대로, 예하부대로 제52보병사단과 제56보병사단을 두고 있으며, 직할부대로 제1방공여단, 제1경비단, 군사경찰단, 제122정보통신단, 제113공병단, 제22화생방대대, 군수지원대대, 제1문서고관리대 등을 두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제1경비단은 예하에 제1경비대대, 2특임대대, 35특임대대를 두고 있고, 이중 2특임대대는 약 160명으로 구성된 ‘합참 지정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30분 내 출동하여 현장 보존 및 차단, 테러범 접촉 유지 및 대응 조치, 안전 통제 및 피해 확산 방지, 대테러작전부대 임무 수행 지원, 주요 요인 경호 및 주요시설 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이고, 35특임대대는 약 250명으로 구성된 ‘국가 지정 대테러특임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1시간 내 출동하여 대치, 내부 진압, 저격, 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군사경찰단은 예하에 전투군사경찰대대, 특임군사경찰대대, 제33군사경찰경호대를 두고 있고, 이중 특임군사경찰대대의 특임중대는 약 9명으로 구성된 ‘합참 지정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이고, 기동중대는 약 36명으로 구성되어 군차량 호송 지원,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출동 시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 11.경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부임한 이진우는 2024. 2.경부터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테러범을 조기에 격멸하고, 국가 중요시설 등 군사시설 외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임지역대(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대테러특임부대, 예비대), 저격반, 경비소대, 군사경찰 기동중대

[MC(Motor Cycle) 9대], 차륜형 장갑차(6대), EHCT(위험성폭발물 개척팀), CRST(화생

방대응팀), 드론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특임TF(별칭 수호신, 이하 ‘수호신’라고 함)를 설치하였고, 수호신TF를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왔다.

2) 준비태세 강화 지시

이진우는 2024. 11. 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의 공관 2층 식당에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를 한 이후부터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응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

3) 비상계엄 선포 대비 계획 수립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진우에게 재차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국회 봉쇄 및 침투 임무와 관련하여 ‘경찰은 국회 7개 출입문에 기동대 26개(약 1,500명)를 순차 배치하여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버스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1선에서 봉쇄하고, 수도방위사령부는 2선에서 국회 본관 및 의원 회관 등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봉쇄하되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 양재응의 도움을 받고,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은 특수작전항공단 헬기 12대로 이동하여 국회의사당 운동장에 착륙한 뒤 국회 본관 및 의원 회관 내부로 침입할 계획이니, 준비태세를 갖추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이진우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의 각 특성과 임무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예부대인 제1경비단 소속 2특임대대와 35특임대대 및 군사경찰단 소속 특임군사경찰대대를 국회에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진우는 2024. 12. 2. 오전경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로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와 비

상계엄 선포 등의 상황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하여

피고인 김용현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실시되고 있다는 상황 전파시 지휘관 정위치,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출동이 예정된 수호신에 흑복·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쇠지렛대·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제제1경비대대) 출동 준비, 위병소 폐쇄 시행 등의 지시’, ‘김용현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종료 이후 수호신 출동,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선투입·본관 배치 및 후속부대 투입, 국회협력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 공조 통화 실시’ 등이었다.

4) 출동 준비태세 강화

피고인 김용현은 대통령실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2024. 12. 3. 21:46경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부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국회 침투 및 봉쇄 계획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이진우는 2024. 12. 3. 21:48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할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1:53경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에게 전화하여 ‘지금 부대로 복귀해서 전투복을 갈아입고, 운전병을 대동해서 사령관실로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조백인에게 전화하여 ‘전투복 입고 내 방으로 빨리 오라’고 지시하는 등 2선에서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문 등을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병력의 소집을 시작하였고, 2024. 12. 3. 22:26경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인 제52보병사단의 사단장 이우현 소장에게, 2024. 12. 3. 22:28경 같은 예하 부대인 제56보병사단의 사단장 박진희 소장에게 각각 전화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잘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조성현은 2024. 12. 3. 21:51경 제1경비단 작전과장 전진해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 직위자를 소집하고, 수호신도 소집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제1경비단 작전과장 전진해는 2024. 12. 3. 21:52경 2특임대 대장 윤태현에게 전화하여 ‘조성현이 대대장들을 모두 소집하라고 했고, 수호신도 비상소집했다’고 전파하였으며, 2024. 12. 3. 21:56경 35특임대대장 박진우에게 전화하여 ‘수호신을 소집해야 한다. 경비단장 지시다’라고 전파함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소속 2특임대대 및 35특임대대가 소집되어 출동 준비를 시작하였다.

또한,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역시 2024. 12. 3. 23:02경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에게 ‘부대 모든 군사경찰 기동중대[MC(Motor Cycle)]와 대테러초동조치부대는 출동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소속 특임군사경찰대대 중 특임중대와 기동중대가 소집되어 출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마.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상황

1) 안가에서의 회동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 시각과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이 해야 할 임무 등을 미리 알리고 경찰이 협조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2024. 12. 3. 18:18~18:21경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을 통해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로 불러, 2024. 12. 3. 19:20경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 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국회를 포함해서 몇 곳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다.’, ‘이따가 국회에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서유지를 잘 해 달라.’면서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2200 국회’, ‘2300 더불어민주당’, ‘비상계엄’,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각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A4용지) 1장씩을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2)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찰 기동대 출동 준비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위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 피고인 조지호의 관용차에 함께 탄 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대로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선포를 준비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봉식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먼저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에서 하차하였으며, 피고인 조지호는 인근에 있는 경찰청장 공관으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19:45~20:07경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 기동대 인력 관리 담당자인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지금 영등포(국회)에 기동대가 몇 개 있냐. 그리고 철야 근무하는 기동대는 어디냐’며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할 수 있는 기동대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최창복으로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철야 집회 대비를 위한 기동대 4개(◀, ▲, ♣, ●기동대)가 있고, 철야 근무 예정인 여의도 타격대 1개(☆기동대, 국회 1, 2문과 제1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주변 배치) 등 총 5개 기동대가 영등포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는 기동대는 광화문 타격대, 용산 타격대 등이 철야 근무를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다음, 2024. 12. 3. 20:07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보고받은 비상계

업 발령 시 동원 가능한 기동대 현황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0:25경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를 받고 복귀한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기동대가 더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시키라’고 지시하여 당시 광화문 타격대 1개(배기동대)가 국회로 이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광화문 타격대 대원들을 승차 대기시키는 등 국회 인근에 있는 기동대 5개와 광화문 타격대 1개, 총 6개의 기동대를 국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고, 2024. 12. 3. 21:00경 주진우로부터 국회 출입문의 수,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보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1:16경 주진우에게 ‘위 광화문 타격대 1개를 2024. 12. 3. 22:00까지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서 대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경비부장 주진우는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피고인 김봉식의 위 지시를 전달하면서, 특히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광화문 타격대 1개를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 국민은행 동서관 쪽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 6개(약 401명)의 준비를 마쳤다.

3) 비상계엄 선포의 지연과 대비태세 유지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가 늦어져 예정한 시각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24. 12. 3. 21:4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다’고 전한 후 피고인 김봉식에게도 전화를 걸어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으나, 경찰에서는 그대로 대비를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1:50경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위 광

화문 타격대 1개의 국회 인근 승차대기 여부, 진압복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나머지 5개 기동대도 대기중인지 여부 등 국회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출동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하였고, ‘아마 상황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라고 출동 시점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대비태세를 재차 확인하였다.

바.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유선대기 지시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0:00경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였으나 홍장원이 부재중이어서 그의 보좌관이 대신 받았고, 이후 같은 날 20:22경 홍장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홍장원에게 ‘1~2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⁶⁾

사. 육군참모총장의 국방부장관 접견대기실 대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1. 12:50경 박안수에게 전화를 하여 ‘2024. 12. 3.에 시간 반영해 놓을 테니 현안점검 좀 하자’고 말하며 현안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2024. 12. 3. 16:00경 국방부에서 박안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박안수에게 ‘21:40경 국방부장관 접견대기 실로 와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5.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및 비상계엄의 선포

가.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1) 피고인 윤석열의 국무회의 소집 등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00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

6)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0:22경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1~2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 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홍장원과 피고인 윤석열 사이의 비 화문 통화내역 캡처 사진(증거순번 2기록 581번)에 따르면 위 당시 통화는 홍장원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전화한 것인바, 위와 같 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단순 오타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본문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 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하였고, 예정된 시각 직전에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 회의 심의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10:30경부터 21:33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피고인 김용현,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국무회의에 배석할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등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각 부처 장관들인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문서로 작성·출력하여 소집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모이는 국무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

2)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前 상황

2024. 12. 3. 20:20~22:00경 위와 같이 소집 지시를 받고 출석한 국무위원의 숫자가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실 5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외교부장관 조태열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역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윤석열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외교부장관 조태열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 시켜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고,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게 '24:00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이후 외교부장관 조태열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대접견실에서 피고인 김용현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 김용현은 '대통령님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외교부장관 조태열이 '그럼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피고인 김용현은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 해 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였다.

3)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後 상황

그러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의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모이고 있었는데, 피고인 김용현을 비롯하여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일부장관 김영호, 국무총리 한덕수, 외교부장관 조태열,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 도착하였고, 2024. 12. 3. 22:16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16~22:18경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등 배석자들을 향해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

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대접견실에서 나온 후,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4) 대국민담화 발표 및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40경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총리 한덕수 등 국무위원들에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특히, 피고인 윤석열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는데,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5)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 절차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헌법 제86조 내지 제89조).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헌법 제 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11조 제2항), 국무회의는 ①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②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③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하고, ④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 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해야 하며, ⑤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조).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이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피고인 윤석열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나. 비상계엄의 선포와 당시 상황

1)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23~22:27경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피고인 김용현이 준비한 아래와 같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스물두 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

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 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②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③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며, ④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내지 제5조).

그런데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야당이 쟁점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하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검토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며, 이에 더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과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에도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는 문서

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회에 대한 통고를 문서로써 하지 아니하였고, 관계 국무위원인 피고인 김용현은 이에 부서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역시 부서하지 못하였다.

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포고령의 발령

1)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28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로 이동한 후 박안수,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등이 참여하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먼저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을 하달한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진다면 장관의 몫이다.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하고, 혹여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이다’라고 강조한 다음,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각각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였다.

2) 비상계엄 선포문의 未공고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공고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후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대봉투에서 꺼내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에게 건네주며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하였고, 잠시 후 같은 대봉투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라고 기재된

문건을 꺼내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건네주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령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용현이 전하규에게 건네준 ‘계엄 선포문’은 계엄법상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전하규가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 담당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공고되지 못하였다.

한편, 박안수는 2024. 12. 3. 23:23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동을 금지'하는 위 포고령 제1항은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고, 이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체제를 파괴 또는 변형시키려는 것이며, 아울러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지방자치, 일반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 위 포고령 제2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헌법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제4항의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역시 의미가 불분명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제5항은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는 것이고, 포고령 말미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부분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내용이었다.

3)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시도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45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를 전투통제실로 호출한 후 '준장 구삼회를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단장으로, 준장 방정환을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 수사부단장으로, 대령 김상용(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1부장, 대령 김봉규(정보사령부)를 수사2부장, 대령 정성욱(정보사령부)을 수사3부장으로, 위 김봉규를 100여단 여단장 대리로 2024. 12. 3. 22:00부로 각각 임명하고, 수사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수사2, 3부에 정보사 소속 정보 요원 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면서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용현

의 수행부관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제1수사부장으

로 내정된 김상용을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로 호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용현이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에게 건넨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 지원, 수갑 등 물품 지원과 같이 인사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오영대는 2024. 12. 4. 00:00~00:30경 피고인 김용현에게 ‘국방부 일반명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김용현은 ‘알았다.’라고만 대답하여, 결국 인사명령은 발령되지 않았으며,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은 설치되지 못하였다.

6. 구체적 폭동 행위

가.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 명령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24. 12. 3. 22:47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조종래에게 전화로, ‘합참에는 인원이 부족하니, 부장·실장과 이들을 지원할 차장·과장 각 2~3명씩을 모아 올라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특히,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할 2실(비서·기획조정), 8처(정보·작전·치안·법무·보도·동원·구호·행정)의 실장·처장 등 직책을 맡을 現육군본부 소속 인원의 구성과 함께 이들의 계엄사령부(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이동 준비도 지시하였다.

박안수의 지시로 2024. 12. 3. 22:47경부터 2024. 12. 4. 02:30경까지 육군본부 소속 부장·실장 등 34명이 계엄사령부 참모진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전시 군사작전과 지휘사항을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장망(戰場網), 즉 군합동지휘통제체계(케이직스)를 운용할 수 있는 장비 총 11대를 소지하고 총기 휴대없는 단독군장으로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의 대형 버스 2대에 탑승하여 출발을 준비하였다.

박안수는 2024. 12. 4. 03:03경 육군본부에서 대기 중인 참모진들에게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박안수는 2024. 12. 4. 00:06경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이재식에게 계엄사령부의 2실 8처를 구성할 군인과 군무 원들을 소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이재식은 곧바로 합동참모본부 소속원 전원에게 ‘계엄사 2실 8처 운용요원 총원 작전회의실 즉각 소집’ 명령을 ‘계엄사 기조실장 명’으로 발령하였다.

나.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1) 1차 국회 봉쇄

2024. 12. 3. 22:23경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시작하자,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25경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전화하여 ‘TV 틀어 놔 봐라. 지금 그 대국민담화 나온다. 그리고 지금 승차대기하고 있지’라며 경찰 기동대의 출동 대기 상황을 문의하였고, 주진우로부터 국회 1, 2문과 제1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주변에서 야간 거점 근무 중인 ☆☆기동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집회로 인해 국회의사당역 주변으로 출동해 있었던 ◀, ▲, ♣, ●기동대와 미리 국회 방면으로 이동시켜 둔 ㄱ기동대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30경 다시 주진우에게 전화하여 위 기동대 대원들이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착용했는지 여부, 승차 대기 중 인지 여부, 국회 통제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될 장소를 미리 정해 놓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래 그럼 지시해라. 무전 지시하라’고 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하여 위 기동대들을 국회 각 출입구 주변에 배치하도록 지시하

였으며, 2024. 12. 3. 22:31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준비된

기동대를 배치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조지호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봉식은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로 이동하여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경찰관 기동대들을 국회에 배치하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최창복은 2024. 12. 3. 22:35경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위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 기동대는 국회1문(정입), #@기동대대는 국회 2문(정출), \$@기동대는 국회 3문, ㄱ기동대는 4, 5문, %기동대는 6, 7문에 배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이미 국회 1, 2문에 배치되어 있던 ☆☆기동대를 비롯한 총 6개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앞에 각 배치하였으며, 이어서 최창복은 2024. 12. 3. 22:39경 위 무전망을 통해 국회경비대 대원 전원 근무를 지시하였다.

국회경비대장인 피고인 목현태는 그 무렵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주거지에 있던 중 뉴스 속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4. 12. 3. 22:38~22:41경 당직 근무 중이던 국회경비대 제2경비제대장 정성채로부터 최창복의 위 무전 내용 및 기동대 배치 상황을 보고받은 후 정성채에게 서울경찰청의 지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차량을 운전해 국회로 이동하였다.

정성채는 피고인 목현태의 지시에 따라 당직 중인 국회경비대 대원들 전원에게 근무 지시를 하면서, 2024. 12. 3. 22:43경 국회 1~7문 중 이미 폐문된 4~7문을 제외한 국회 1~3문에 1명씩 배치되어 있던 당직 대원 총 3명 외에 신속대응팀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하였고, 이후 당직인 제2경비제대 대원들을 국회경비대 상황실 앞 로비로 소집한 후 제2경비제대 1팀을 1문에, 2팀을 2문에, 3팀을 3문에, 4팀을 예비대에 각각 배치하는 등, 1, 2, 3문 별로 대원 약 5명씩을 우선 배치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봉식은 위와 같이 국회 출입문에 6개 기동대가 모두 배치되고 있는 사

실을 확인한 후 2024. 12. 3. 22:45경 이를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국회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46경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최창복은 그 지시에 따라 2024. 12. 3. 22:47~22:50경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영등포경찰서,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외부에서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전원 차단하라. 국회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은 불가하다. 전부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기동대는 국회 1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1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고, #@기동대대는 국회 2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1문, 국회 수소충전소, 경정문(차문, 회전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으며, \$@기동대는 국회 3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3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고, ㄱ기동대는 국회 4문(차문, 인도문, 회전문), 5문(차문, 인도문, 회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4문, 5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으며, %기동대는 국회 6문(차문, 인도문, 회전문), 7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6문, 7문, 헌정문(차문, 회전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고, ☆☆기동대는 @!기동대와 #@기동대 대가 위와 같이 국회 1문, 2문에 배치되자 그곳에 있던 대원들을 국회 1문 옆, 도정문(차문, 회전문), 헌정문 주변으로 이동시키고 도정문, 헌정문 앞 도로변에 차벽을 설치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등 국회 각 문의 바깥쪽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

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였다.

한편, 국회경비대 제2경비제대장 정성채도 서울경찰청 및 피고인 목현태의 지시에 따라 2024. 12. 3. 22:49경 국회경비대 대원들에게 ‘국회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원천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회경비대 대원들을 통해 국회 1문에서부터 3문 안쪽에서 출입을 차단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50경 국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것을 대비하여 기동대 경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기동단 기동대 대원들에 대한 비상소집을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을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였다.

2) 일시적·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3. 22:50경 국회경비대 경비계장 오신타에게 전화를 걸어 오신타으로부터 기동대들이 위와 같이 국회 출입문 바깥쪽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출입을 차단하는 상황에 관하여 보고받았고, 전화를 바꾸어 정성채로부터 국회경비대 대원들이 국회 출입문 안쪽에서 출입을 차단하는 상황에 관하여 보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3. 22:55경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의 정확한 지시 내용을 문의하였는데, 박주현은 ‘나가는 사람은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국회의원 포함해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출입 차단 조치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3. 22:56경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장에 대한 출입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답을 하지 않자, 2024. 12. 3. 22:58경 오신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국회경비대 대원들에 대한 전 대원 비상소집을 지시하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오부명 등은 2024. 12. 3. 22:58경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피고인 김

봉식에게 ‘국회경비대장 목현태가 국회의장의 국회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해 문의를 하였고, 국회의원들도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77조에 의해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으니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대국민담화문의 발표만으로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2024. 12. 3. 22:5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 국회 출입 허용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피고인 조지호의 동의를 받아, 최창복을 통해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으로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2024. 12. 3. 23:07경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시하고, 2024. 12. 3. 23:15경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6개 경찰 기동대는 국회의원 과 국회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출입을 허용하였고, 국회경비대 제2경비제대장 정성채는 국회 1~3문에 배치된 국회경비대원들에게 2024. 12. 3. 23:14경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과 2024. 12. 3. 23:24경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게 하였다.

3) 2차 국회 봉쇄

피고인 윤석열은 위와 같은 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조치로 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게 되자, 2024. 12. 3. 23:17경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되었는지를 물어본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박안수로부터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보고 받은 피고인 김용현은 박안수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 게 포고령(제1호)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해라’라고 지시하였으

며, 박안수는 2024. 12. 3. 23:22~23:23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건네받은 비화폰으로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조지호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공포된 것을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5경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포고령이 언론에 공표되었는데, 공표된 자체로 계엄령 선포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전달을 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임정주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피고인 조지호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는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오부명은 피고인 조지호의 위 지시사항을 그대로 피고인 김봉식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3. 23:36경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봉식은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같은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최창복은 2024. 12. 3. 23:37경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라며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3. 23:30경 국회경비대 상황실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은 서울경찰청의 무전 지시를 듣고 2024. 12. 3. 23:40경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전화하여 국회 출입을 다시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고, 오부명으로부터 ‘방금 다시 지시했고, 전원 차단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국회경비대 대원들로 하여금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게 하였으며,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는 피고인 목현태의 지시

에 따라 국회 출입문을 모두 폐문한 다음 2024. 12. 3. 23:56경 무전으로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를 완전 차단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목현태와 김영호는 국회 1, 2문 주변으로 이동하여, 제1경비제대장 김진욱, 제2경비제대장 정성채를 국회 1, 2문 주변에 배치하였고, 제3경비제대장 직무대리 정용희를 도정문에 배치하였으며, 제5경비제대장 서기창을 국회 3문에 배치하였고, 그 이후 비상소집으로 국회경비대에 순차 복귀한 경무계장 송민주, 감찰 담당 KP를 비롯한 대원들 85명을 헌정문, 도정문, 1문,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3문 등 인파가 많은 국회 앞문 쪽에 배치하였으며, 상황실에 국회경비대 대원 8명을 배치하여 국회 내부 CCTV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위 6개 경찰 기동대는 국회 각 문 바깥쪽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은 2024. 12. 3. 23:41~23:43경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현장에서 국회의원들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여보내줘야 하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며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의 재고를 요청하였고 임정주는 이를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조지호는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출입 차단을 유지하게 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3:54경 최창복의 국회 출입 금지 무전 지시를 보다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위 무전망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3:23경 피고인 조지호와 통화하면서 국회 주변 및 대통령실 등이 있는 용산 일대에 기동대를 증원하겠다고 보고한 다음, 그 무렵 최창복 등에게 국회 주변 및 용산 일대에 기동대를 증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최창복은 2024. 12. 3. 23:35경 위 무전망을 통해 “기동대는 남대문서에서 영등포서 관내인 국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계속하여 2024. 12. 3. 23:51경 ‘비상 응소 기동대들은 신속히 영등포경찰서 관내인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하달하는 등 2024. 12. 4. 00:00~01:45경 국회 출입 차단 등을 위하여 기동대 23개를 증원하여 국회 주변에 순차 배치하여 국회경비대를 지원하고,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차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2024. 12. 3. 23:37경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4. 00:00경 경찰청 간부회의인 이른바 ‘국(국장)관(경무관)회의’와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연이어 주재하기로 하였는데, 국관회의 직전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직접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임정주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차장이 직접 여의도로 나가 지휘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오부명은 2024. 12. 4. 00:37경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2024. 12. 4. 03:50경 까지 국회 주변에서 그 곳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국회경비대 등을 지휘하였다.

그 후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4. 00:00경 경찰청 본관 9층에 있는 무궁화홀에서

국관 회의와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찰청에서 기능별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헌법 등 법령과 판례 등을 확인하여 현장에 명확한 지시를 할 것’, ‘정보와 기획 파트에서는 비상계엄하에서 경찰이 해야 할 일을 검토하고, 기능별로 해야 할 일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수사를 중심으로 계엄사에서 요청할 경우 법령에 따라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 ‘대변인은 기자 상대로 유언비어 유포 모니터링 하고, 경비 파트는 여의도에 배치된 기동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 집중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한편 박안수는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형으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와 요청을 받고 2024. 12. 4. 00:5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연락하여 국회에 경찰 증원을 재차 요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경찰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가 1차로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2024. 12. 3. 22:48경부터 국회의원 등의 출입 차단을 완전히 해제하고 일부 기동대가 국회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2024. 12. 4. 01:45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경찰 기동대 총 29개(약 2,036명⁷⁾)를 국회 출입문 바깥 쪽에 배치하고, 지휘차 총 43대, 경찰버스 총 85대 등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문 바깥 쪽에 차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고,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경비대 대원 약 85명을 국회 앞문 쪽인 헌정문, 도정문, 1문,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3문 쪽에 배치하여 국회 출입문 안쪽에서 국회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위 기동대와 함께 국회의

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였다.

7)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경찰 기동대 총 29개(약 1,963명)'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경찰 기동대 29개 인원에 대한 아래 표 기재 출동인원의 총합은 2,036명인바 이는 계산누락에 따른 단순오기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본문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순번	부대	출동인원(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1	☆☆기동대	6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09:10 (여의도 타격대)	12. 3. 09:50	12. 4. 09:00	국회 1문, 도정문, 헌정문 주변
2	\$@기동대	71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18:30 (OL 대비)	12. 3. 19:00	12. 4. 10:30	국회 3문 주변
3	&%기동대	65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18:30 (OL 대비)	12. 3. 19:00	12. 4. 10:00	국회 6, 7문 주변
4	#@기동대	62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3. 18:30 (OL 대비)	12. 3. 19:20	12. 4. 09:30	국회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주변
5	@!기동대	6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18:30 (OL 대비)	12. 3. 19:30	12. 4. 09:30	국회 1문 주변
6	ㄹ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21:40 (광화문 근무 중 이동)	12. 3. 22:00	12. 4. 08:30 (광화문 철야 후 복귀)	국회 4, 5문 주변
7	&*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23:40 (남대문 근무 중 이동)	12. 4. 00:00	12. 4. 03:30 (남대문 철야 후 복귀)	국회 2문 앞 도로, 7문 주변
8	*%기동대 (*제대)	23	버스 1대	12. 3. 23:48	12. 4. 00:30	12. 4. 08:00	국회 박물관 주변
9	%!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00	12. 4. 00:35	12. 4. 04:40	국회 수소충전소
10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00	12. 4. 00:40	12. 4. 04:40	국회경비대 지원 (국회 1, 6문, 도정문)
11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10	12. 4. 00:43	12. 4. 03:50	국회 3, 4문 주변
12	*&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05	12. 4. 00:50	12. 4. 04:40	국회 2문 주변
13	#*기동대	71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30	12. 4. 00:50	12. 4. 04:10	국회 도정문 주변
14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1	12. 4. 00:52	12. 4. 03:45	국회 4문 주변
15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2	12. 4. 00:55	12. 4. 03:35	국회 3문 주변
16	&●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8	12. 4. 00:55	12. 4. 03:40	국회 3문 주변
17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8	12. 4. 00:55	12. 4. 03:45	국회 6문 주변
18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5	12. 4. 01:00	12. 4. 03:40	국회 6문 주변
19	◎@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40	12. 4. 01:00	12. 4. 09:30	국회 1문, 도정문 주변
20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40	12. 4. 01:00	12. 4. 09:30	국회 1문, 도정문 주변
21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40	12. 4. 01:00	12. 4. 10:00	국회 도정문, 헌정문 주변
22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5	12. 4. 01:05	12. 4. 04:00	국회 6문 주변
23	◇%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29	12. 4. 01:05	12. 4. 04:00	국회 수소충전소 주변
24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00	12. 4. 01:10	12. 4. 04:30	국회 2문, 경정문 주변
순번	부대	출동인원(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25	◇%기동대	72	버스 3대	12. 4. 00:15	12. 4. 01:10	12. 4. 03:40	국회 6문 주변

			지휘차 2대				
26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50	12. 4. 01:10	12. 4. 10:30	국회 도정문 주변
27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50	12. 4. 01:10	12. 4. 09:30	국회 헌정문 주변
28	△%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16	12. 4. 01:20	12. 4. 03:30	국회 3문 주변
29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1:00	12. 4. 01:45	12. 4. 04:40	국회 2문 주변
총 29개 기동대		2,036	버스 85대 지휘차 43대				

4)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에 대한 국회 진입 허용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23경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시작과 동시에 군사보좌관 김철진에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대통령님의 담화를 시청하라고 해라’고 지시하였고, 군사보좌관 김철진은 2024. 12. 3. 22:25경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진우는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를 확인한 후, 앞서 피고인 김용현에게 보고하였던 ‘경찰청장 등과의 공조 통화 실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24. 12. 3. 22:30경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라며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출동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김봉식도 이진우에게 경찰이 곧 국회에 배치될 것을 알렸으며,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위와 같이 국회를 1차 봉쇄하였다.

그 후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3:30경부터 2024. 12. 4. 01:0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이진우와 통화하면서, 이진우로부터 ‘수방사 대테러특임대가 국회에 도착하니 군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고, 그때마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군인과 민간인은 복장으로 쉽게 구별되니, 군인은 국회 출입을 허용해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최창복은 그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계엄 관련 군인 도착 여부

를 확인하고, 계엄군은 신분 확인 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하라’, ‘수방사 대테러특임대 도착 즉시 진입하도록 조치하라’, ‘수방사 대테러특임대 도착 시 경정문으로 진입하도록 조치하라’는 등 수 회 지시하였으며, 이에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는 2024. 12. 4. 00:09경 군 병력이 국회 안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비교적 인파가 적은 국회 3, 4문 쪽으로 이 동시켜 출입시키려고 하였고, 최창복은 2024. 12. 4. 00:50경 위 무전망을 통해 서울영등 포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국회 3문을 통해 계엄군 100여명이 국회로 진입하였다’는 보 고를 받는 등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허용해 주었다.

5) 경찰을 이용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3:15경부터 2024. 12. 4. 00:48경까지 피고인 조지호 에게 6회 전화하여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불법이니 다 체 포하라’라고 지시하였다.

다.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1)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출동 관련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28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 이동하여 전군주 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고 발언한 후 이진우에게 별도로 전화하여 ‘수 도방위사령부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 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진우는 2024. 12. 3. 22:39~22:45경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참모장 조 백인, 작전처장 김문상, 제1경비단장 조성현과 회의를 하면서 ‘기자 및 불순분자들의 활동 에 대비하

여 사령부 위병소를 폐쇄·통제하고, 전 장병 스마트폰을 통합 보관하며, 위병소 앞에 장

갑차 2대를 배치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22:45경 위 지휘통제실을 나가면서 그 앞에서 조성현에게는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국회로 가야 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조성현은 출동 준비 중이던 2특임대대 및 35특임대대에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를 하달하였고, 그 무렵 군사경찰단장 김창학도 조백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를 전달받아 출동 준비 중이던 특임군사경찰대대에 하달하였다.

이진우는 2024. 12. 3. 23:00경 수도방위사령부 35특임대대 막사로 이동하여 직접 출동 준비 상황을 확인한 다음 조성현에게 ‘내가 먼저 출발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다. 부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내게 전화하라고 해라. 거기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알려주겠다’고 지시한 후 국회로 출발하였고, 조성현은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를 2특임대대 및 35특임대대에 각각 하달하였다.

2) 35특임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를 포함한 대테러특임부대 16명(이하 ‘35특임대대 선발대’라고 함, 운전병 1명 포함)은 2024. 12. 3. 23:10경 소총 15정,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및 5.56mm 보통탄 1,920발, 5.56mm 영광탄 320발, 9mm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mm 공포탄 36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3. 23:45경 국회 인근에 있는 여의도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는 이진우로부터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양재응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우

라’는 지시를 받은 후 운전병 외 나머지 14명의 35특임대대 선발대와 함께 걸어서 국회 1

문으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로부터 국회 1문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진우로부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돌아서 경찰 협조를 받아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 2024. 12. 4. 00:24경 국회 7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다음으로,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35특임대대장 박진우를 포함한 제2지역대 및 3지역대 후속 병력 29명(이하 ‘35특임대대 후속부대’라고 함)은 박진우의 지휘에 따라 2024. 12. 4. 00:10경 소총 27정, 권총 16정 및 5.56mm 공포탄 929발을 소지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43경 국회 인근 여의도 한강공원 3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35특임대대장 박진우는 제1경비단장 조성현으로부터 ‘비무장으로 국회 울타리를 월담하여 위 35특임대대 선발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접촉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KU 상사 등 35특임대대 후속부대 23명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 2024. 12. 4. 01:03경 국회 7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였다.

3) 2특임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실패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2특임대대 1지역대 1중대장 KV를 포함한 대테러초동조치 부대 11명(이하 ‘2특임대대 선발대’라고 함)은 KV의 지휘에 따라 2024. 12. 3. 23:19경 소총 11정,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mm 보통탄 975발, 9mm 보통탄 330발, 5.56mm 공포탄 33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를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3. 23:46경 국회 1문 인근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국회 1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2특임대대 1지역대 1중대장 KV은 이진우로부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아라. 경찰에게 이야기하면 문을 열어 줄 것이다. 차량으로

들어가기 어려우면 차량을 한적한 곳에 주차시킨 뒤 도보로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제2특임대대 선발대가 타고 있던 중형버스 앞을 가로막거나 중형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국회로 진입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나머지 제2특임대대 선발대 부대원들과 함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2특임대대 제2지역대장 윤덕규를 포함한 후속 병력 51명(이하 ‘2특임대대 후속부대’라고 함)은 2024. 12. 4. 00:48경 소총 44정, 권총 22정 및 5.56mm 공포탄 1,32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1:04경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하였다.

4)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을 포함한 대테러초동조치 부대12명과 기동중대[MC(Motor Cycle)] 2명(이하 ‘군사경찰단 선발대’라고 함)은 2024. 12. 3. 23:30 경 소총 9정, 권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7정 및 5.56mm 보통탄 525발, 9mm 보통탄 363발, 7.62mm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04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이진우로부터 ‘내가 현장에 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동중대[MC(Motor Cycle)]는 국회 바깥으로 순찰을 돌아라. 돌다가 혹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발견되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특임중대는 비무장으로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국회협력단장 양재응 장군을 만나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 그곳을 차단해라’,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체포

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당신들은 군사경찰이니 합법적인 범위에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군사경찰단 선발대 대위 KZ에게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담을 넘고 들어가 양재응 장군을 만나라’고 지시하여, 삼단봉으로 무장한 KZ 등 군사경찰단 선발대 5명은 2024. 12. 4. 01:35경 국회 7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을 포함한 후속 병력 62명(이하 ‘군사경찰단 후속부대’라고 함)은 2024. 12. 4. 00:08경 소총 28정, 권총 38정, 저격총 3정을 소지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39경 국회 인근 KBS미디어텍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은 먼저 도착한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협력단장 양재응 장군을 만나라’는 등의 이진우의 지시를 전달받고, 삼단봉으로 무장한 군사경찰단 후속부대 중위 LC 등 5명으로 하여금 2024. 12. 4. 01:46경 국회 7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였다.

5) 제1경비단 본부의 출동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1경비단 작전과장 전진해 등 29명은 2024. 12. 3. 23:44경 소총 22정과 권총 4정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04경 국회 1문을 거쳐 국회 7문에 도착하였다.

6)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피고인 윤석열은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등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하고 있던 2024. 12. 3. 23:33경~2024. 12. 4. 00:36경 총 4회에 걸쳐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 이진우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 이진우로부터 ‘국회에 도착하였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는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윤석열은 위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 2024. 12. 4. 01:13경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용현 역시 이진우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이진우는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조성현은 2024. 12. 4. 01:04경 서강대교 북단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2특임대대 후속부대 소속 제2지역대장 윤덕규에게 전화하여 ‘현재 35특임대대가 국회로 진입했으니 제2지역대도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35특임대대장과 통화해라.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서 투입하고 차량에 총기와 탄약을 경계하기 위한 일부 병력만 남겨라.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라고

지시하였으며, 2특임대대 후속부대는 위와 같은 임무수행을 위해 서강대교 북단을 출발하

였으나, 이후 조성현으로부터 ‘투입과정에서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고 서강대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강대교에서 정차하여 다음 지시를 위해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다.

계속하여 이진우는 조성현에게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고 말하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해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밖으로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구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고 지시하였고, 제1경비단장 조성현은 그 무렵 월담하여 국회 경내에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35특임대대 선발대 소속 3지역대장 김의규에게 전화하여 ‘이따가 국회의원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4. 01:23경 이미 국회 경내에 진입해 있었던 35특임대대 후속부대도 위 35특임대대 선발대와 합류하게 하여 함께 위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라.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1)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에 대한 국회 출동 지시 하달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1:48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던 중 광종근에게 상황 발생 시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광종근은 2024. 12. 3. 22:21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지시한 후 이어서 2024. 12. 3. 22:25경 이상현에게 ‘사복을 착용한 편의대(정찰조)⁸⁾ 1개조를 국회로, 1개조를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2024. 12.

3. 22:33경 ‘1개 대대는 국회의사당, 1개 대대는 의원회관으로 보내서 건물에 있는 인원

8) 편의대는 사복 차림의 정찰부대를 말한다.

을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28경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철진을 통해 광종군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라고 지시하였고, 광종군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그 직후인 2024. 12. 3. 22:30경 특수작전 항공단장 김세운에게 ‘항공기(헬기) (사령부로) 출동해. 너도 (사령부로) 들어와’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2:31경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헬기 12대가 곧 도착할 것이니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에 태워 즉시 국회로 출동시켜라’,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33경 광종군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출동을 재촉하였고, 이에 광종군은 곧바로 이상현에게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 종전 지시대로 병력을 서둘러 출동시켜라.’, ‘2개 대대를 국회로 보내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봉쇄해라’, ‘여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에 있는 수도방위사령관과 상의하며 조치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광종군은 2024. 12. 3.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받았을 당시, 자신의 수첩에 예하 부대별 출동 계획을 기재해 두었는데, 2024. 12. 3. 22:28경 피고인 김용현이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2024. 12. 3. 22:47경 예하 부대장들과 화상회의에서, 그 수첩 기재를 보면서 이상현에게 즉시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한 후 ‘개인별로 소총과 공포탄, 저항세력 진

압용으로 사용할 테이저건을 소지하게 하고, 결박 또는 시건 용도로 사용할 케이블타이를

휴대하게 하라’, ‘그리고 실탄은 대대장, 지역대장 이상이 통합 보관하게 하다가 유사시 개인에게 지급하라’, ‘작전보안을 위해 비화폰만 소지하고 개인 휴대폰은 소지하지 말아라’, ‘전투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추가로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광종근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여문조사꽃으로 각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7공수특전여단장 김종택에게는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제1공수특전여단 지원을 준비할 것을, 국제평화지원단장 김대성에게는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제1, 9공수특전여단 지원을 준비할 것을 각 지시하였으며, 제13특임여단장 기호택에게 특임대 병력을 2024. 12. 4. 오전경까지 제9공수특전여단으로 이동하여 지원하되 1개 대대 병력은 추가 지시에 따른 지원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제11공수특전여단장 장지환에게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광종근은 2024. 12. 3. 22:50~23:07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왜 아직도 헬기가 안 뜨는 것이냐’고 다그치며 신속히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보낼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2)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특수작전항공단의 국회 출동

광종근의 지시를 받은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은 2024. 12. 3. 22:49~22:54경 수도방위사령부에 비행제한구역(서울 상공, 일명 ‘R75’)에서의 헬기 비행 승인을 요청하였고, 2024. 12. 3. 23:04~23:15경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출동시켰으며,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2024. 12. 3. 23:22~23:4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내 헬기 이착륙장에 도착한 특수작전항공단의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mm 실탄 960발, 권총용 9mm 실탄 960발 등

을 적재하고 야간 훈련 계획에 맞추어 미리 출동 준비 중이던 제1, 3, 7, 9지역대 병력

96명(단장 포함 총 96명)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다.

한편 김현태는 2024. 12. 3. 23:30~23:46경 함께 국회로 출동 중인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외곽을 봉쇄하고 출입문을 차단하라, 그 후 접근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접근을 막아라.’, ‘본회의장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본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이 있을 테니 출입문부터 우선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광종근은 2024. 12. 3. 23:30경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서울 상공 진입을 승인받지 못해 용인시 상공에 머물며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참모장 박정환을 통해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조백인에게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2024. 12. 3. 23:31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직접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백인은 2024. 12. 3. 23:31경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김문상을 통해 계엄사령부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의 헬기 진입 승인 요청을 전달하였으며, 박안수는 2024. 12. 3. 23:33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조종래로부터 위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에 대한 승인을 건의받은 후 이를 승인하여 위 헬기가 국회로 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2024. 12. 3. 23:00경 제1대대 소속 병력 4명을 편의대로 편성한 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주변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였고, 2024. 12. 3. 23:57경 제1대대 병력 136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키고 동시에 본인도 지휘차량에 소총용 5.56mm 실탄 550발, 권총용 9mm 실탄 12발을 적재한 상태로 작전참모 안효영 등 4명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으며, 2024. 12. 4. 00:22경 2대대

병력 129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켰고, 2024. 12. 4. 00:45경 유사시 제

1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3,520발, 제2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6,880발을 탄약 수송차량에 적재하고 즉시 공급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3) 제707특수임무단, 특수작전항공단의 헬기를 통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사당 봉쇄 시도

광종근의 지시를 받은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은 2024. 12. 3. 23:49경부터 2024. 12. 4. 00:11경까지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를 포함하여 예하부대 1, 3, 7, 9지역대 소속 부대원 등 합계 96명이 탑승하고 있는 헬기 12대를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시켜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김현태는 2024. 12. 3. 23:49경 탑승하고 있던 헬기에서 내려 동시에 도착한 1지역대 병력 23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후문으로 가 봉쇄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저지하는 국회의사당 경비인력 등 10여명과 맞닥뜨리게 되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국회의사당 후문 밖으로 나와 일부 대원들로 하여금 청테이프로 출입문 손잡이를 휘감아 고정시키고 문 앞을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에서의 진입을 차단한 다음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좌측면(국회의사당을 정문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준, 이하 동일함)을 돌아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제707특수임무단 1지역대 소속 최진호 등 4명은 2024. 12. 3. 23:50경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지역대 소속 4명의 단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에 집결하여 있던 중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상황을 취재 중이던 유지웅 기자가 휴대전화기로 단원들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기자

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건물 외벽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케

이블타이로 포박을 시도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 기사를 붙잡고 있다가 위 기자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한 다음 풀어주었다.

계속하여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2024. 12. 3. 23:59경 국회의사당 정문을 봉쇄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곳에 모여있던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등 수백 명으로부터 더 큰 저항을 받게 되자, 뒤이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제3, 7, 9지역대 병력 72명을 합류시켜 함께 국회의사당 정문으로의 접근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 수백 명에게 가로막혀 국회의사당 정문 봉쇄에 실패하고 약 30분간 대치 상태로 있게 되었다.

4) 제1공수특전여단의 월담을 통한 국회 진입

곽종근의 지시를 받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2024. 12. 4. 00:22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로부터 ‘경찰이 주출입구를 막고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주출입구를 통해서는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 없으니 담을 넘어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2024. 12. 4. 00:30경 제1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하자 제1대대장 김형기에게 ‘담 넘어가.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꼬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제1대대장 김형기는 제1대대 병력 48명과 함께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국회 2문과 수소충전소 사이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였으며, 계속하여 이상현은 2024. 12. 4. 00:31경 국회로 이동 중인 제2대대장 반효민에게 ‘의사당으로 가. 담 넘어서 가. 담 넘어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꼬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2024. 12. 4. 00:47경 반효민을 비롯하여 소총 등으로 무장한 제2대대 병력

122명 중 80명은 그곳에 있던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3, 4문을 통해, 6지역대 병력 42

명은 3문 인근 담을 넘어 각각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5) 제707특수임무단의 후속 병력 출동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3:50경 국회 경내 상황을 지켜보던 중 기존에 출동한 병력만으로는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곽종근에게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여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곽종근은 즉시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국회에서 주둔지로 복귀 중인 헬기 12대를 다시 육군특수전사령부로 보내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로 수송하라’고 지시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이낙행에게 ‘제707특수임무단 지휘통제실로 내려가 병력을 추가 편성하여 국회로 출동시켜라. 상황이 급박하니 실탄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출동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은 2024. 12. 3. 23:53경부터 2024. 12. 4. 00:16경까지 사이에 앞서 국회 출동 임무를 마치고 주둔지로 향하던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재차 이동시켰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이낙행은 2024. 12. 4. 00:29~00:5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헬기 이착륙장에 도착한 헬기 12대에 제707특수임무단 병력 101명을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제707특수임무단 병력 101명은 2024. 12. 4. 00:48~01:18경 탑승한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하자 이미 침투해 있던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등 96명의 병력과 합류하였다.

6) 국회의사당 침투 및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위와 같은 경찰의 국회 출입 일시 허용으로 인해 이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집결하였고, 국회 경내로 들어온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의사당 봉쇄

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3:36경 곽종근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2024. 12. 4. 00:31경 광종근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용현도 2024. 12. 4. 00:32~00:36경 광종근에게 '빨리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켜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광종근은 2024. 12. 4. 00:32~00:58경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없겠냐.',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전기라도 차단할 수 없느냐.'라고 물으며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이행하려 했고, 2024. 12. 4. 00:34~00:46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준비하고 있으니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못 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하고 있으니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셨다.', '대통령님이 국회의원들을 국회 의사당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셨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 '전기를 끊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나아가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고자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그 사용 승인을 건의하였으나, 박안수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2024. 12. 4. 00:32~00:34경 약 18명의 병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전체길이 약 40cm) 및 소총의 총구 부분으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였고, 침투 과정에서 일부 대원들이 주변에 있던 기자의 촬영용 사다리를 빼앗고 내부 진입을 막으려는 국회 직

원 등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으며, 2024. 12. 4. 00:43경 3층 복도를 통과하여 본

회의장 방향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국회 당직자 등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파 등 집기류로 복도를 막아 진입이 어렵게 되자 우회로를 찾기 위해 4층으로 이동하였다가 우회로를 찾지 못하였고, 이에 2024. 12. 4. 01:03~01:07경 건물 전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지하 1층으로 이동하여 전원 차단장치를 찾아다니던 중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을 발견하게 되자 케이블타이, 소방호스 등으로 시정하려 시도하였고, 뒤이어 그 곳 분전함 내부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 조명을 소등하는 등 전원을 차단하였다.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2024. 12. 4. 00:39~01:00경 국회 경내로 진입해 있던 제1대대장 김형기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뚫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 다 꼬집어 내라’, ‘유리창이라도 깨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하려고 하니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다 꼬집어내라. 대통령님의 지시다’, ‘전기라도 끊어라’라고 지시하고, 제2대대장 반효민에게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꼬집어내라. 투표들 못하도록’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1대대장 김형기 등 제1대대 및 제2대대 병력 38명은 2024. 12. 4. 00:55~01:05경 잠겨 있던 국회의사당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한 후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다가 통로를 막은 채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화전 호스로 물을 뿌리며 병력의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마.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1)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여인형에게 전화를

하여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명

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53경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하였다.

2)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1) 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체포 시도

여인형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국회로의 출동 명령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여인형은, 2024. 12. 3. 22:44경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에게 전화하여 'TV 보고 있지? 계엄령 선포되었으니까 니네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해. 빨리 보내줘야 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여인형은 2024. 12. 3. 23:00경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조국, 김민석, 박찬대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B1병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으로부터 2024. 12. 3. 22:58경 전화를 받자, 홍장원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

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고 말하였고, 이후 전화통화가 끊겼다가 같은 날 23:06경 다시 전화를 받아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었다⁹⁾).

위와 같은 여인형의 명령을 받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는 2024. 12. 3. 23:04경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실에서, 방첩수사단 안보수사실장 이재학,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에게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라. 체육관에 우리 부대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에 호송차와 조사본부에 구금시설을 확인하라,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이송 및 구금 명단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이다. 인원들은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방첩사 혼자 할 수 없고,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는 2024. 12. 3. 23:05경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에게 전화하여 '선배님, 지금 계엄이 선포되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조사본부 100명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명단과 오시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수도권 내에 구금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해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수사 인력과 구금시설 현황 확인을 요청하였고, 2024. 12. 3. 23:32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과 통화하면서 '현재 계엄상황과 관련하여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경찰 100명이 준비되었다고 들었다.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수사 인력과 차량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9) 공소사실에는 "여인형이 2024. 12. 3. '23:06경' 홍장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명단 불러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체포대상자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홍장원과 여인형 사이의 통화내용 캡처 사진(증거순번 2기록 581번)에 따르면 홍장원은 위 즈음 '22:58경', '23:06'경 2차례 각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통화가 이루어졌고, 홍장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따르면 각 통화에서 의 대화내용은 위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본문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 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는 수사조정과 이주혁사무관을 통해 방첩사령부 체육관에 삼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를 넣은 백팩을 준비시키고, 2024. 12. 3. 23:50경 전후로 방첩사령부 군사기밀수사과 소속 신동걸 등 5명으로 구성된 1팀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명하는 등 팀별로 체포대상자를 지명한 후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고 지시하며 2024. 12. 4. 00:25경부터 국회로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2024. 12. 4. 01:05경까지 총 10개 팀, 합계 49명의 방첩수사단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¹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은 2024. 12. 3. 23:32경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로부터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는데,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24. 12. 3. 23:36경 이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 전창훈에게 보고하였고, 전창훈은 2024. 12. 3. 23:39경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포되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가수사본부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되니,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과 차량 20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냐’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이현일과 전창훈은 2024. 12. 3. 23:49~23:50경 피고인 윤승영에게 ‘방첩사가 경찰 인력 100명과 차량 20대의 지원을 요청한다. 경찰 인력 100명은 서울경찰청에서 명단 작성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는 2024. 12. 3. 23:43경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최광

10) 이부분공소사실에는 「이현일은 2024. 12. 3. 23:32~23:52경 구민회로부터 2회에 걸쳐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 그 무렵 전창훈, 피고인 윤승영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등과 같이 구민회의 요청, 피고인 윤승영에 대한 보고 등에 대한 시점 등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각 시점 등이 특정된다. 또한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본문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원을 통하여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인 임경우에게 위와 같은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을 보고하였으며, 임경우는 2024. 12. 4. 00:22경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손제한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광역수사단 소속 각 수사대장 5명, 반부패수사대 지원팀장 이종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제 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주세요’라고 지시하여, 2024. 12. 4. 01:26경 이종욱으로부터 반부패수사대 수사관 24명 등 총 104명이 기재된 ‘광역수사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현황’을 보고받았고, 그 중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현일은 2024. 12. 3 23:52경 구민회로부터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출동하는데, 인솔하고 같이 다닐 사람 5명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2024. 12. 3. 23:57경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박창균에게 연락하여 ‘방첩사에서 체포조를 구성하는데, 형사들이 5명 필요하니 명단을 짜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이현일은 2024. 12. 3. 23:58경 피고인 윤승영에게 전화하여 ‘방첩사가 체포조와 같이 다닐 인원 5명의 지원을 요청한다. 영등포경찰서 형사들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이현일로부터 방첩사령부의 각 요청을 보고 받은 피고인 윤승영은 2024. 12. 3. 23:5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방첩사에서 합수부를 구성할 예정이니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준비해 주고, 우선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 등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승인 및 지시를 받은 후 2024. 12. 4. 00:01경 이현일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현일은 2024. 12. 4. 00:02경 박창균에게 피고인 윤승영 및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면서, '경찰인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2024. 12. 4. 00:04경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5명의 명단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2024. 12. 4. 00:13경 구민회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이현일은 2024. 12. 4. 00:14경 구민회로부터 '5명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2024. 12. 4. 00:18경 박창균에게 추가 5명의 명단을 요청하여, 2024. 12. 4. 00:36~00:37경 앞서 받은 명단 5명에 새로 5명을 추가한 10명의 명단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2024. 12. 4. 00:40경 구민회에게 전송하였다. 한편 이현일은 이와 같이 구민회로부터 추가 명단 요청을 받아 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2024. 12. 4. 00:23경 전창훈, 피고인 윤승영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방첩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 에 대해서도 영등포서를 통해 명단 확보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 윤승영 및 전창훈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윤승영은 곧바로 '오케이'라고 대답하였다.

구민회는 2024. 12. 4. 00:48~01:15경 이현일로부터 전송받은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강력팀 소속 정일현 경감, LT 경위와의 수 회 전화연락을 통해 국회 앞 수소충전소 인근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원 나온 10명을 포함하여 경찰관 5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LT 경위에게 '경찰관이 조별로 나눠서 합류해 줬으면 좋겠다.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별로 명단과 대표자 연락처를 문자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령부 소속 체포조 조장들에게 국회 앞 수소충전소로 가서 지원 나온 경찰관들을 만나 체포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정일현 경감 등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0명은 2024. 12. 4. 00:18~01:46경 방첩사령부의 체포조와 합류하기 위해 국회 인근의 수소충전소에서 대기하였고, 2명씩 5개조로 나누어 국회 인근의 현대오일뱅크로 이동하여 체포조와 합류하려고 대기하였으나,

방첩사령부 체포조가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여 체포조와 합류하지 못하였다.

(3) 국방부 조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가) 방첩사령부 지원 수사관 100명 구성

박헌수는 2024. 12. 3. 22:44경 위와 같이 여인형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빨리 지원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에게 전화하여 ‘방첩사령관한테 연락왔는데,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요청하니까 확인해 봐’라고 방첩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의 구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김상용은 2024. 12. 3. 23: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 5층 회의실에서 육군본부 산하 육군수사단장 인치열과 해군본부 산하 해군수사단장 김기진에게 각각 전화하여 ‘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조사본부 수사단 소속 수사관으로 충당하기 어려워니, 해당 부대에서 차출할 수 있는 인원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회의실에 있던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정승기에게 박헌수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수사단 산하에서 지원 가능한 인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김상용의 지시를 받은 정승기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수사상황실장 업무를 인수받고 있었던 장성관에게 2024. 12. 4. 02:00경까지 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 공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 조사본부 수사관 40명으로 방첩사령부에 보낼 수사관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장성관은 그 무렵 수사상황실로 돌아가 당시 수사상황실장 강준규, 수사상황담당관

김평재 등에게 정승기의 지시를 하달하고, 이들과 함께 육·해·공군,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에게 전화하여 해당 부대에서 방첩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나서 정승기는 2024. 12. 3. 23:40경부터 수사단 주요 직위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전 수사단원 비상소집, 즉각 사무실 대기 바람, 수사대별 소집이 완료되면 보고 하지 말고 수시로 사무실 도착 인원 보고 바람, 수사지도과 가용 수사장비 확인 바람 - 수정 등’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비상소집을 실시하였고, 그 무렵 강준규를 통하여 중대범죄반부패수사대장 소문 등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내 주요 직위자들에게 ‘장기교육자와 오늘 출장자를 제외한 수사단 전원을 비상소집하여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해라. 합수부로 나가는 인원들은 출동준비를 해라. 수정(수갑)을 준비하고, 가 급적 검정 옷류로 맞춰 입어라’고 지시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 조사단(이하 ‘민조단’이라 함) 단장 편강철도 2024. 12. 3. 23:40경 민조단 조사계획과장 김관선 등을 통해 민조단 소속 수사관들을 비상소집하였다.

여인형은 2024. 12. 3. 23:52경 재차 박헌수와 전화통화하면서 ‘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줘. 가용인원은 국회로 보내달라’고 재촉하였고, 김대우에게도 2024. 12. 3. 23:31~23:53경 ‘현재 집결된 방첩사령부 수사관들부터 먼저 국회로 보내고, 조사본부와 경찰도 준비되는 대로 국회로 오라고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구민회는 그 무렵 김대우로부터 위와 같은 여인형의 지시를 전달받고 김성곤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100명을 빨리 보내달라. 지원 수사관 명단이라도 보내주고, 준비된 수사관들은 국회로 보내달라’고 독촉하였다.

한편, 박헌수는 피고인 김용현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계엄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동안 그 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TV로 계엄군 등이 국회로 출동한 상황 등을 지켜보던 중 여인형으로부터 위와 같은 독촉을 받게 되자, 그 무렵 국방부 조사본부 상황실에

있던 정승기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100명이 소집되는 대로 과천 방첩사로 이동하고, 우선 수사관 5명 2개팀은 국회로 이동시켜라’고 지시하였고, 정승기는 당시 회의실에 있던 편강철 등과 이를 공유하였으며, 김성곤도 구민회로부터 2024. 12. 3. 23:42경부터 2024. 12. 4. 00:10 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수사관 100명을 빨리 보내주고, 준비된 수사관들은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이를 박헌수에게 전화 등으로 보고하고, 정승기 등과도 공유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승기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지도과 수사심사관 이진욱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2024. 12. 3. 22:55경 ‘국회 폐쇄 가능 짜라시도 들고 있습니다’, 2024. 12. 3. 23:20경 ‘수방사 국회 이동중_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등의 메시지를 각각 수신하였고, 김성곤은 2024. 12. 3. 23:45경 지인 MG 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반)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등의 메시지를 수신하였으며, 편강철은 2024. 12. 3. 23:06경 지인 MH 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체포하고 감금하겠군요. 150명 소집 못되게요’ 등의 메시지를 수신하였고, 김성곤, 정승기 등은 각각 2024. 12. 4. 00:13경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편강철로부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므로,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 1.pdf’ 파일을 전달받았다.

이후 강준규는 2024. 12. 4. 00:23~01:20경 각군수사단으로부터 합계 60명의 수사관명단을 전송받아 이를 정승기에게 보고하였고, 계속하여 김평재로 하여금 국방부 조사본부 40명 명단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구성하라’는 박헌수의 지시

를 이행하였다.

(나) 미결수용실 현황 확인 및 미결수용자 이감 준비

김성곤은 2024. 12. 3. 23:42경 구민회로부터 재차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을 요청받은 후 기획처 계획과장 김윤정을 통해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4. 12. 3. 23:44경 수도권 군사경찰단장 백철기에게 직접 전화하여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각각 구민회에게 알려주었다.

김성곤은 2024. 12. 3. 23:48경 구민회로부터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이감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24. 12. 3. 23:51경 백철기에게 ‘현재 수용된 미결수용자 3명을 국군교도소로 이감할 준비를 해달라’고 말하였고, 2024. 12. 3. 23:52경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에게 전화하여 ‘군사경찰단 미결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는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 줄줄이 체포되면 수도권단과 수방사 미결수용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수도권단과 수도방위사령부의 각 군사경찰단장들에게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이감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후 김윤정 등에게 ‘방첩사에서 이감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수도권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의 실무자들에게도 알려주어라. 지휘관들에게도 말을 해두었다’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4. 00:25경 박헌수로부터 합참 계엄상황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방첩사에서 미결수용실 이감 요청이 있어 해당 부대에 준비하라고 통보하였다’는 사정을 박헌수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예방안전과장 김혜인은 2024. 12. 4. 00:08경 김윤정으로부터

터 ‘2024. 12. 4. 00:00부 이감 준비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2024. 12. 4. 01:20경 김윤

정으로부터 ‘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3명의 수용자 중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수용자들을 깨워 짐을 챙기도록 하였고, 위 수용자들의 관할 군검찰단 측에 이감 지휘를 요청하는 등 이감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실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24. 12. 4. 01:00경 여인형의 지시를 받고 수도방위사령부의 구금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 등에게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실의 현황을 설명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장 이희주는 2024. 12. 3. 23:56경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 계획장교 김성준으로부터 ‘야간에 이감 지시할 수 있으니, 이감 계호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때부터 2024. 12. 4. 01:20경 김윤정으로부터 ‘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계호 차량을 점검하고, 이감에 대비해 관할 군검찰단과 국군교도소 측에 연락을 취하였으며, 향후 민간인이 미결수용실에 구금될 것을 대비하여 미결수용실 근무자들이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이감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실행하였다.

(다)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명의 국회 출동

한편 박헌수는 2024. 12. 3. 23:52경 여인형으로부터 ‘니네 수사관 10명 빨리 좀 보내줘. 가용인원은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승기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5명, 2개팀을 국회로 이동시켜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정승기는 그때까지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소집되지 않자, 편강철에게 위와 같은 박헌수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지금 국회로 출동할 수사단 소속 수사관 인

원이 모자라니 민조단 수사관 5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편강철은 2024. 12.

4. 00:02경 재차 민조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모두 전파해서 전원 소집’을 지시하면서 2024. 12. 4. 00:27경 ‘복장은 검정색 사복, 운동화, 조사본부 마크는 미부착, 마스크 휴대 바람입니다’라고 지시한 후 민조단 소속 수사관 MN, MO, MP, MQ, MR 등 5명을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으로 결정하였다.

정승기는 2024. 12. 4. 00:20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소속 수사관 MS에게 위 민조단 소속 수사관 5명과 함께 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국회로 출동할 수사단 소속 수사관 5명 소집을, MT에게는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들에게 지급할 수정(수갑)의 확보를 각각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정승기의 지시를 받은 MS은 본인을 포함하여 MU, MV, MW, MX 등 5명을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으로 구성하였으며, MT 등은 수사장비실 등에서 수정(수갑) 5개를 확보하는 등으로 출동 준비를 마쳤다.

정승기는 2024. 12. 4. 00:50경 상황실에 소집된 수사단 및 민조단 소속 수사관 10명에게 ‘국회로 지금 출동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방첩사령부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하된다. 다만 출동할 때 검정색 복장을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정(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해라’라고 지시하였고, MS에게 구민회와 연락하여 임무를 받으라고 지시하며 구민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박헌수 및 정승기의 순차 지시를 받은 MS 등 수사관 10명은 검은색 복장에 국방부 조사본부 패치를 탈착하고 수정(수갑)을 소지한 채 2024. 12. 4. 01:03경 및 01:08 경 차량 2대에 각각 5명씩 나눠 타고 국회로 출발하였고, MS은 그 무렵 전화로 구민회로부터 ‘일단은 국회 수소충전소로 출동해 주십시오. 방첩사령부 수사관 45명, 경찰 측은 50명, 군사경찰에서는 10명이 갔기 때문에 5명, 5명, 1명 이 정도씩 분배되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정승기에게 보고함으로써 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

동체포조 합류를 시도하였다.

(4) 방첩사령부의 최우선 체포대상자 선정·전파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24. 12. 4. 00:33경 여인형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하였고, 여인형은 그 명령을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전달하였으며, 김대우는 2024. 12. 4. 00:38경 당시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첩사령부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여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정책계획장교 MY이 2024. 12. 4. 00:41경 구민회 및 7개 출동조 조장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이용’이라는 메시지를, 2024. 12. 4. 00:46경 ‘현장에서 조인할 경찰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선하셔서 임무수행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구민회는 2024. 12. 4. 00:45경 및 00:59경 2회에 걸쳐 위 단체대화방에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10명의 경찰관 명단과 연락처를 전송하는 등 방첩사령부 수사관들로 하여금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명단의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을 만나 체포조를 편성한 후 임무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2024. 12. 4. 00:25~01:05경 국회로 순차 출동한 방첩사령부수사관들 49명은 2024. 12. 4. 00:48경 이후 순차로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국가수사본

부 지원인력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과 합류하지 못하였고, 계속 현장 대기하던 중 2024. 12. 4. 01:45~01:50경 복귀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다.

3)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 김대우, 박헌수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2024. 12. 3. 23:00경 방첩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을 동원한 다음 수사관들을 여러 개의 조로 편성하여 체포조로 운영하려고 하였고, 2024. 12. 3. 23:06경 국회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던 경찰이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2024. 12. 3. 23:57경부터 2024. 12. 4. 01:05경까지 사이에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방첩사령부 수사관 49명, 사복의 경찰 수사관 10명,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

박헌수는 김대우 등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지원할 국방부 조사본부, 육군, 공군, 해군 및 해병대 수사관 100명을 구성하였고, 방첩사령부 소속 수사관 및 경찰 수사관과 조를 이루어 즉시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수행하도록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명을 국회로 출동시켜 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에 가담하게 하였으며, 체포한 국회의원 등을 구금할 수도권 소재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에 수용되어 있던 미결수용자의 국군교도소 이감을 준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등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2024. 12. 4. 00:30경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국회의장 우원식,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하였으나, 국

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편성된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 체포 시도

1)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서버실 폐쇄 등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문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인근에서 이미 대기 중이던 계획처장 고동희 등 대원 10명에게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후속 지원부대가 올 때까지 그곳을 점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고동희 등 대원 10명은 문상호의 명령에 따라 2024. 12. 3. 22:3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당직실로 진입하여 당직자 MZ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유선전화의 전원선을 뽑아 유선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3층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방호원 N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1층 당직실로 이동하게 하였고, 3층 조사총괄과에서 위탁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던 NB에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건네 줄 것을 요구하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퇴청하라’고 요구하여 위 NB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고동희 등 대원 10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1층 당직실에서 통합관제실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통합관제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NC, ND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NC로 하여금 통합관제실의 왼쪽에 위치한 선거정보센터의 출입문을 열도록 하여 선거정보센터 내 서버실의 A구역 통합 명부시스템, D구역 통로, 통합스토리지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서버실을 폐쇄하였으

며, NC, ND가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이동할 때에도 따라다니며 감시하였다.

고동희는 출동한 대원 중 1명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하 주요 직급자들의 얼굴 사진, 담당업무 등이 기재된 조직도를 보고 문상호가 보내준 직원 5명 중 일부가 조직도에 없음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로 위 조직도를 사진촬영하여 문상호에게 전송하고, 위 확인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고동희 등은 지하 1층 기계실로 이동하여 업무 중이던 NE를 감시하였고, 비상 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난·전시대비 비상계획 업무를 담당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출입하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NF, NG, NH,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NI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이후 2024. 12. 4. 00:40~01:08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의 지휘 하에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 병력 138명 함께 2024. 12. 4. 01:30경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외곽 및 1층 로비를 점거하였다.

2) 제2수사단을 이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 시도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문상호는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운용하기로 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 편성될 정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로서 위와 같이 김봉규, 정성욱을 통해 긴급 소집한 36명(특임 수행요원 5명 포함)을 100여단에 있는 대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 ‘우리는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말하면서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세부 임무를 부대원들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정성욱은 문상호와 피고인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표식이 달린 목걸이 표

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해 놓고, 제2수사

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36명 중 16명 가량에게 체포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024. 12. 4. 05:00경에 출동하여 05:40경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체포 명단에 오른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B1 병커(문서고)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다.

김봉규 또한 문상호와 피고인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중 나머지 20명 가량에게 체포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부대원들로 하여금 4~5명씩 조를 편성하도록 한 다음, 노상원조에는 ‘수도방위사령부 B1 병커(문서고)로 이동,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수용, 취조할 공간 확보 임무’, 김용균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실로 이동, 계엄상황 고지, 협조 요청, 미협조시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부 방송 송출 임무’, 조지호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전체 명단 확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회의실 및 체포한 직원을 조사할 조사실 확보 임무’, 김봉식조에는 ‘전산실로 이동, 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관련 신고 및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공지 글 게시’ 임무를 각각 부여하였고, 각 조의 임무가 끝나면 정성욱이 지휘하는 요원들과 함께 호명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로 호송하는 임무도 부여하였다.

김봉규는 특히 특임수행요원 3명에게는 ‘노상원에 대한 경호 임무와 노상원의 선관위 위원 조사 시 그 옆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임무’도 부여하였고, 이와 별개로 정보사령부 소속 신준호 소령에게는 ‘수사단장 수행보좌관으로서 05:40까지 선거관리 위원회로 모셔 오는 등 노상원의 수행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임무를 부여받은 각 부대원들은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을 하며 출동 대기하

였다.

한편, 문상호는 2024. 12.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 정성우 1처장에게 전화하여 방첩사 인원이 선관위로 출발했는지 확인하라’는 피고인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는 정성우에게 연락하여 ‘국군방첩사 부대원들이 선관위로 출발하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문상호는 김봉규, 정성욱 및 휘하 부대원들과 집결하여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던 중 2024. 12. 4. 01:03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자, 2024. 12. 4. 05:30경 100여단 대회의실에서 부대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각자 부대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로써 제2수사단을 이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4. 15:54경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수고했다. 모든 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3) 경찰의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가) 경기남부경찰청을 통한 출입통제 지시 하달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2024. 12. 3. 22:41경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있다. 경찰관들을 보내 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김준영은 2024. 12. 3. 22:44경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박규남과 통화하여 ‘우리 관 내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바깥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시설 관계자

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박규남은 2024. 12. 3. 22:52~22:53경 과천시 홍촌말로 44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및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에 있는 선거연수원을 관할하는 수원서부경찰서장 김재광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김준영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김준영은 2024.12.3. 23:26경 문진영에게, 2024.12.3. 23:28경 김재광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현장에서 지휘를 하도록 지시한 뒤, 박규남에게 ‘과천경찰서와 수원서부경찰서에 기동대를 추가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경비과장 박규남은 경기남부경찰청 상황팀장 한상구, 경비계장 박종석에게 다목적 당직팀(&기동대 @제대), *기동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기동대를 선거연수원에 각각 출동시키도록 지시하였다.

나) 과천경찰서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출입통제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박규남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의 지시를 전달받은 과천경찰서장 문진영은 2024. 12. 3. 22:52경 과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박병철에게 경력 배치 및 통제를 지시하였고, 2024. 12. 3. 23:05경 지능범죄수사팀장 이옥주 등 5명으로 구성된 초동대응팀에 K1소총 5정과 실탄 300발을 지급한 뒤 2024. 12. 3. 23:46경 과천경찰서 형사와 지역경찰 및 초동대응팀 등 13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배치하였다.

또한, 김준영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은 문진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여 2024. 12. 3. 23:28경부터 2024. 12. 4. 00:32경까지 김준영, 박규남과 문자메시지와 전화연락을 주고받으며, 2024. 12. 3. 23:46경 계엄군 10명이 같이 근무 중인 사실을 이들에게 보고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제대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한 2024. 12. 3. 23:52경 이들이 타고 온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정

문 출입구를 가로막고, 경찰 8명 가량이 정문을 경계하며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고, 2024. 12. 4. 00:40경 현장에 출동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130여 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문진영을 비롯한 과천경찰서 소속 23명,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기동대 @제대19명, #기동대 73명 등 합계 약 115명은 2024. 12. 3. 23:09경부터 2024. 12. 4. 02:00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정문 출입구를 봉쇄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다) 수원서부경찰서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출입통제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박규남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의 지시를 전달받은 수원 서부경찰서장 김재광은 2024. 12. 3. 23:12~23:13경 수원서부경찰서 상황실에서 무전으로 관할 지역을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2024. 12. 3. 23:23경 초동대응을 위해 우선하여 출동한 것을 시작으로 수원서부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경찰관 총 48명이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였다.

또한 김준영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은 김재광은 2024. 12. 3. 23:28 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정문과 후문 등에 경력을 배치하고 재차 이들에게 선거연수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김준영은 2024. 12. 3. 23:56경 김재광과 통화하여 ‘신원을 불문하고 선거연수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고, 박규남도 2024. 12. 4. 00:04경 김재광에게 전화하여 김준영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며 ‘모든 사람의 선거연수원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으

며, 이에 김재광은 2024. 12. 4. 00:06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배치되어 있

던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신원을 불문하고 선거연수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NV 등 6명이 선거연수원 밖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김재광을 비롯하여 수원서부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48명, 경기남부경찰청 2기동대 63명 등 합계 총 111명은 2024. 12. 3. 23:17경부터 2024. 12. 4. 02:11경까지 선거연수원 정문, 후문 등 4개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선거연수원 연수생 등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

4)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출입통제 등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1층 점거

곽종근은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이전에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위로 보내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김정근은 그 즉시 참모장 전형일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의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3공수특전여단 예하 제11공수대대장 이경종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되,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 껍데기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김정근은 2024. 12. 3. 23:47경부터 2024. 12. 3. 23:56경까지 1*대대 소속 119명

등 총 13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발하여 2024. 12. 4.

00:40경부터 2024. 12. 4. 01:08경까지 사이에 모두 도착한 후, 138명 중 8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외곽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52명은 이미 도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서버실 등을 점거 중인 고동희 등 10명의 정보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2024. 12. 4. 01:20경까지 과천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도록 하였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점거

곽종근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재차 ‘1개 대대는 사당역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청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은 그 즉시 작전참모 차용환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9공수특전여단 예하 51대대장 황준홍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51대대장 황준홍은 51대대 본대 병력 118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후발대 병력 22명으로 하여금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 탄약을 2.5톤 트럭에 싣고 본대 병력을 뒤따라오도록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42경 출발하여 2024. 12. 4. 00:23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도착한 후, 2024. 12. 4. 00:45~01:19경까지 51대대 3지역대 소속 4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경내를 점거하였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점거 시도

곽종근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시켜라. 1개 대대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보내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김정근은 그 즉시 참모장 전형일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3공수특전여단 예하 12대대장 박기근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하였고,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 께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12대대장 박기근은 2024. 12. 4. 00:05경 본인을 포함한 총 133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2024. 12. 4. 01:17~01:15경 순차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도착한 후,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건물을 통제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력과 합류하였다.

라) 여론조사꽃 건물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곽종근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1개 지역대를 여론조사꽃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안무성은 그 즉시 작전참모 차용환 중령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9공수특전여단 예하 52대대장 유선민에게 1개 지역대와 함께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유선민은 본인을 포함한 52대대 본부 소속 7명과 52대대 6지역대 병력 50명 등

총 57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및 권총) 상태로 무장시키고, 공포탄은 별도 보관하도록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42경 출발하여 2024. 12. 4. 00:5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여론조사꽃에 도착한 후, 그때부터 2024. 12. 4. 01:09경까지 52대대 6지역대 소속 15명의 병력과 함께 여론조사꽃의 건물 앞을 점거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마)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 점거 시도 광종근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5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전화하여 ‘편의대 2개조를 운용하여 1개 조는 국회, 1개 조는 더불어민주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상현은 2024. 12. 3. 22:25경 제1공수특전여단 참모장 김병준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 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였고, 2024. 12. 3. 22:33경 광종근에게 비상계엄 상황이 맞는지 확인한 후 2024. 12. 3. 22:53경 제1공수특전여단 예하 제1대대 제8중대장 김찬호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가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3:31경 김찬호 등 편의대 병력 5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도착하자 김찬호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2024. 12. 4. 00:28 경 제1공수특전여단 예하 제3대대장 장희재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장희재는 제3대대 소속 병력 106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2024. 12. 4. 00:56경 본인을 포함한 6명의 본부 병력과 제3대대 소속 병력 106명 등 총 112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하던 중 2024. 12. 4. 01:06경 사령부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2024. 12. 4. 02:35경까지 당산역 일대 도로에서 정차 후 대기하였다.

5) 방첩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꽃 등 4곳으로 출동해서 전산자료를 확보해라’, ‘선관위로 출동하는 방첩사 부대원들을 노상원과 연결시켜 주어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여인형은 그 무렵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에게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꽃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 건물은 경찰이 확보할 것이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올 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고 명령하였다.

이후 여인형은 2024. 12. 3. 23:55경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할 상황이 임박하자, 정성우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서버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와라’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정성우는 여인형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노상원의 휴대전화번호로 2024. 12. 3. 22:50경부터 2024. 12. 4. 00:56경까지 피고인 노상원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여기(선관위) 현장지휘관이 있으니 너희들이 오면 인수인계해 줄 것이다’, ‘빨리 와 라’, ‘우리가 여기 확보했으니 여기 와서 포렌식을 떠라’라는 말을 듣고는 과학수사센터 부대원 22명, 경호경비부대 39명, 정보보호단 43명, 군사보안실 6명, 사이버보안실 5명 등 총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히 편성하여 2024. 12. 4. 00:58~01:43경 순차로 위 4곳으로 출동하게 하면서 각 팀마다 고무탄총 1정(고무탄 5개) 또는 가스총 1정(카트리지 각 1개)씩 소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으로 출동한

방첩사령부 부대원들은 지시받은 목적지로 가던 중 2024. 12. 4. 02:34경 복귀명령을 받

고 복귀하였다.

사. 경찰과 소방서를 동원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등 시도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전후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하였고, 이에 이상민은 포고령 공고 직후인 2024. 12. 3. 23:34경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7경 소방청장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24:00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허석곤은 위와 같은 이상민의 지시사항을 소방청 차장 이영팔에게 전달하였다.

이영팔은 2024. 12. 3. 23:40경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에게 전화하여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하여 요청하였고, 허석곤은 2024. 12. 3. 23:50경 황기석에게 재차 전화하여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및 해제 발표

2024. 12. 4. 00:49경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었고, 2024. 12. 4. 01:01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2024. 12. 4. 01:03경 재석 국회의원 190명(더불어민주당 172명, 국민의힘 18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2024. 12. 4. 01:16~01:47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서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국가안보실 2차장 이성환, 국방비서관 최병옥 등과 관련 논의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4. 02:13경 광종군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광종군으로부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김용현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 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였고 국무총리 한덕수의 주재로 2024. 12. 4. 04:27~04:29경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고, 국방부는 2024. 12. 4. 04:32경 국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하였던 모든 병력들이 원소속 부대에 복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자. 기타 비상계엄 관련 군 및 경찰 출동 상황

이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를 전후한 시점까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 약 70명이 대통령 관저 인근 등에 배치되었고,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조지호와 논의한 후 아래 표와 같이 대통령실, 국방부, 대통령 관저 등 용산 인근에 서울경찰청 *기동단 \$\$기동대 소속 기동대원 75명을 비롯하여 총 24개 기동대 약 1,765명의 기동대원들이 배치되게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와 연관되어 경찰과 군 병력이 동원되었다.

순번	부대	출동인원 (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1	☆☆ 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3. 19:00 (용산 철야근무)	12. 3. 19:20	12. 4. 09:00 (용산 철야 후 복귀)	용산 인근
2	\$@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5	12. 4. 00:35	12. 4. 05:42	용산 삼각지역 주변
3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10	12. 4. 00:40	12. 4. 03:50	용산 한남동 주변
4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9	12. 4. 00:45	12. 4. 04:02	용산 국방부 주변
5	@!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9	12. 4. 00:46	12. 4. 03:55	용산 한남동 주변
6	≡기동대	77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32	12. 4. 00:48	12. 4. 05:35	용산 삼각지역 주변
7	&*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06	12. 4. 00:50	12. 4. 05:30	용산 삼각지역 주변
8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30	12. 4. 00:50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9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3	12. 4. 00:53	12. 4. 03:35	용산 한남동 주변
10	%@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10	12. 4. 00:55	12. 4. 04:15	용산 한남동 주변
11	\$&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5	12. 4. 00:55	12. 4. 05:30	용산 삼각지역 주변
12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40	12. 4. 00:55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13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7	12. 4. 01:00	12. 4. 04:05	용산 한남동 주변
14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0	12. 4. 01:00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15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9	12. 4. 01:00	12. 4. 04:00	용산 한남동 주변
16	&●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40	12. 4. 01:05	12. 4. 03:30	용산 한남동 주변
17	●&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3	12. 4. 01:30	12. 4. 03:30	용산 한남동 주변
18	●@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1:10	12. 4. 01:44	12. 4. 03:30	용산 한남동 주변
19	◎@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15	12. 4. 01:50	12. 4. 04:00	용산 한남동 주변
20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20	12. 4. 01:50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21	◎#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30	12. 4. 01:50	12. 4. 09:00	용산 삼각지역 주변
22	◇!기동대	71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20	12. 4. 01:55	12. 4. 03:55	용산 국방부 주변
23	◇%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30	12. 4. 02:00	12. 4. 09:00	용산 삼각지역 주변
24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10	12. 4. 04:00	12. 4. 04:00	용산 한남동 주변
총 24개 기동대		1,765	버스 72대 지휘차 43대				

7. 결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는 박안수, 여인형, 광종근, 이진우, 문상호, 김대우, 이상현, 김현태, 고동희, 김봉

규, 정성욱, 박헌수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더불어민주당 당사·여론조사꽃을 장악하며,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80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III.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경찰 관련 직권남용

가.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박안수 등(이하 피고인과 공범들을 ‘피고인 등’이라 함)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차단 지시에 응하여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II.6.나.항 기재와 같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기동본부 3기동단장 지지환, 4기동단장 백현석, 6기동단장 조남형, 8기동단장 김완기, 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을 통하여 ☆☆기동대장 황성수를 비롯한 대원 64명, \$@기동대장 정동실을 비롯한 대원 71명, %기동대장 김용경을 비롯한 대원 65명, #@기동대대장 최호를 비롯한 대원 62명, @!기동대장 *제대 선임팀장 박정호를 비롯한 대원 64명, ㄱ기동대장 박만식을 비롯한 대원 75명, &*기동대장 조운제를 비롯한 대원 70명 및 *%기동대 *제대 대원 23명, %!기동대장 김동현을 비롯한 대원 76명, %@기동대장 변영찬을 비롯한 대원 73명, \$기동대장 노영래를 비롯한 대원 74명, *기동대장 윤경중을 비롯한 대원 72명, #*기동대장 문응규를 비롯한 대원 71명, !기동대장 최원명을 비롯한 대원 73명, ()기동대장 이수진을 비롯한 대원 73명, ●기동대장 우성준을 비롯한 대원 75명, ●&기동대장 예병천을 비롯한 대원 74명, ●@기동대장 전기용을 비롯한 대원 74명, ◎@기동대장 박종필을 비롯한 대원 70명, ◎기동대장 김종민을 비롯한 대원 74명, ◎#기동대장 전연규를 비롯한 대원 73명, ◇!기동대장 최성철을 비롯한 대원 74명, ◇%기동대장 윤종배를 비롯한 대원 75명, □%기동대장 최호균을 비롯한 대원 73명, ◇%기동대장 김승철을 비롯한 대원 72명, □\$기동대장 정재철을 비롯한 대원 74명, □*기동대장 노관영을 비롯한 대원 73명, △%기동대장 이광훈을 비롯한 대원 76명, ♠#기동대장 박찬용을 비롯한 대원 73명 합계 총 29개의 경찰기동대 대원 2,036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하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는 박안수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II.6.나.항 기재와 같이, 국회 경비대 부대장 김영호, 당직 제대장 정성채를 통하여 국회경비대 제1경비제대장 김진욱, 제3경비제대장 직무대리 정용희, 제5경비제대장 서기창 및 경무계장 송민주, 감찰 담당

KP를 비롯한 대원 85명으로 하여금 국회 안쪽에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국회의원 김민석, 박수현, 박용갑, 안규백, 이광희, 이주영, 이준석, 정동영 등의 심의·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 김대우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및 주요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영장주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II.6.마.(1)항, II.6.마.(2).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①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인 임경우를 통하여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소속 이종욱 경감으로 하여금 즉시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찰관 104명을 방첩사령부 지원 인력으로 편성하게 하고, 그 중 위 이종욱을 비롯한 81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자의 사무실에 대기하게 하였으며, ②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을 통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 박창균으로 하여금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소속 정일현 경감을 비롯한 경찰관 10명을 체포조로 편성하여 지원하게 하고, 위 경찰관 10명으로 하여금 체포조와 합류하도록 국회 인근 수소충전소에 대기하게 하고, 2명씩 5개조로 나누어 국회 인근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로 이동하게 하여 체포조와의 합류를 시도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에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그 직원 등의 출입을 통제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II.6.바.(3)항 기재와 같이, ①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박규남을 통하여 경기남부경찰청 4기동대 선임팀장 인치영을 비롯한 대원 19명, 7기동대장 최성원을 비롯한 대원 73명 합계 92명 및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박규남, 과천경찰서장 문진영을 통하여 과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이옥주를 비롯한 경찰관 22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② 위 김준영 및 박규남을 통하여 경기남부경찰청 2기동대장 조영익을 비롯한 대원 63명 및 위 김준영 및 박규남, 수원서부경찰서장 김재광을 통하여 수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조영진을 비롯한 21명 및 서호지구대 소속 이방희 경감을 비롯한 산하 지구대 소속 26명 합계 47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게 하여, 각 청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그곳 직원 등의 출입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수도방위사령부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박안수, 이진우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

업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에 응하여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II.6.다.항 기재와 같이, ①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을 통하여 35특임대대 대대장 박진우를 비롯한 위 대대 소속 부대원 45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를 비롯한 38명으로 하여금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고, ② 위 조성현을 통하여 2특임대대 제2지역대장 윤덕규를 비롯한 위 대대 소속 부대원 62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③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조백인,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을 통하여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을 비롯한 군사경찰단 소속 부대원 75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군사경찰단 대위 KZ, 중위 LC를 비롯한 10명으로 하여금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고, ④ 위 조성현을 통하여 제1경비단 작전과장 전진해 등 위 경비단 본부 소속 부대원 28명으로 하여금 국회로 출동하게 하여, 국회를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육군특수전사령부 관련 직권남용

가.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박안수, 곽종근, 이상현, 김현태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

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위헌·위법

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에 응하여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II.6. 라.항 기재와 같이, ① 제707특수임무단 3지역대장 김법현, 5지역대장 최진호, 7지역대장 박현우, 9지역대장 박종성을 비롯한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총 196명으로 하여금 헬기에 탑승해 국회 경내로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봉쇄를 시도하게 하고, 그 중 9지역대장 박종성을 비롯한 18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우측면 유리창을 깨뜨려 그 내부로 침투하게 하였으며, ② 제1공수특전여단 제1대대장 김형기, 제2대대장 반효민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273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위 김형기, 반효민을 비롯한 171명으로 하여금 경찰의 협조를 얻어 국회 3, 4문을 통과하거나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한 뒤, 그 중 위 김형기를 비롯한 38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하게 하였고, ③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을 통하여 특수작전항공단 소속 조규용을 비롯한 총 24명의 조종사들로 하여금 헬기 12대를 동원해 위 ①항과 같이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들을 국회 경내로 이송하게 하여, 해당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및 출입통제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광종근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

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영장 없이 민간기관인 여론조사꽃, 정당 당사를 점거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II.6.바.(4)항 기재와 같이, ①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을 통하여 제3공수특전여단 제11공수대대장 이경종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38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위 이경종을 비롯한 52명으로 하여금 정보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게 하였으며, ② 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 특전여단장 안무성을 통하여 제9공수특전여단 51대대장 황준홍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41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황준홍 및 48명의 병력으로 하여금 청사 경내를 점거하게 하였으며, ③ 위 김정근을 통하여 제3공수특전여단 12대대장 박기근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33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건물을 통제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력과 합류하게 하고, ④ 위 안무성을 통하여 제9공수특전여단 52대대장 유선민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57명으로 하여금 민간기관인 여론조사꽃에 출동하게 하고 그 중 유선민 및 15명의 병력으로 하여금 위 건물 앞을 점거한 채 건물 출입을 통제하게 하였으며, ⑤ 제1공수특전여단 제제3대대장 장희재를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12명으로 하여금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 점거를 위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방첩사령부 관련 직권남용

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여인형, 김대우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에게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및 주요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영장주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II.6.마.항 기재와 같이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운영할 목적으로, ①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중령 구민회로 하여금 국방부 조사본부 및 경찰과 연락하게 하여 방첩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각 차출하여 여러 개의 조로 편성하게 하였고, ② 방첩사령부 군사기밀수사과 소속 신동걸을 비롯한 위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라고 명령하여 (i) 위 신동걸을 비롯한 방첩사령부 수사관 49명으로 하여금 국회로 출동하게 하는 한편, (ii) 위 구민회로 하여금 경찰 수사관 10명,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명도 국회로 출동하도록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하게 하여 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은 여인형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여 전산실을 확보하고, 서버를 반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인에게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영장 없이 민간기관인 여론조사꽃에 침입하여 전산실을 확보하고, 서버를 반출하거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II.6.바.(5)항 기재와 같이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를 통하여 과학수사센터장 송제영, 경호경비부 대장 양승철, 정보보호단장 박태주, 군사보안실장 이종훈, 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을 비롯한 소속 군인 115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국방부 조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여인형, 김대우, 박헌수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방부 조사본부 및 육·해·공군, 해병대 수사단 소속 군인에게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영장주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II.6.마.(1)항, II.6.마.(2).1)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①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 수사단장 정승기를 통하여 상황실장 강준규 및 육군수사단 상황실장 김성곤, 해군수사단 상황실장 홍종택, 공군수사단 상황실장 박성호, 해병대수사단 상황실장 홍지창으로 하여금 방첩사령부의 국회의원 등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지원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MS를 비롯한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게 하고, ② 위 정승기를 통하여 위 이진우를 비롯한 10명으로 하여금 검은 복장에 부대 마크는 탈착하고 수정(수갑)

등을 휴대하고 방첩사령부 수사관 및 경찰 수사관과 조를 이루어 국회의원 등 체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③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 계

획과장 김윤정, 계획장교 김성준을 통하여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예방안전과장 김혜인,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장 이희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구금에 사용될 수도권 소재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및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를 준비하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관련 직

권남용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비상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여 직원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서버실을 확보하고, 민간인인 직원들을 군수용시설로 이송 및 구금하거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① 위 II.4.나.(6)항, II.6.바.(1)항 기재와 같이 고동희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보사령부 작전과장 중령 서지윤과 소령급 장교 8명(김성호, 김정재, 김지웅, 김찬유, 김형주, 이민형, 유병욱, 홍태환)으로 하여금 (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이동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까지 대기하게 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로 침입하여 서버실, 당직실, 경비실, 정문 등을 점거하게 하였으며, (i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안에 있던 MZ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 하고 행동을 감시하게 하고, 당직실의 유선전화의 전원선을 뽑아 선관위 직원들의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게 하였으며, (iii) 3층 조사총괄과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NB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하게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들어오려고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공무원 NF, 선거정책실장 NI 등의 출입을 통제하게 하였으며, ② 위 II.4.나.(7)항 및 II.6.바.(2)항 기재와 같이 특임수행요원 5명을 포함하여 김태용을 비롯한 36명의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2024. 12. 4.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 및 신문 후 수도방위사령부 & 병커로 이송하는 등 위법한 임무의 하달을 위해 100여단 대회의실로 집합하게 하고, 위 임무의 숙지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을 하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조성현, 김형기, XN, 박정환, 이상현, 김영권, 구민회, 이현일, 김봉규, 정성욱, 구삼희, 고동희, 김철진, 이재식, 권영환, 정성우, 엄정섭, KV, 윤덕규, 김문상, JA, QT, 전승혁, 김현태, 김의규, 안효영, QX, QY, QZ, 안형욱, 홍장원, HJ, 김완기, 백현석, 이시욱, 이재학, MY, 조백인, 박성하, 배정효, 이경민, 정승기, RD, 곽종근, 양승철, 유재원, 박태주, 이종훈, 전하규, 박진우, 노재현, 여인형, 문상호, 김용균, 박안수, 이진우, 김태환, 신준호, 오영대, 방정환, 김정재, RF, RG, 정영호, RI, 이경종, 김지웅, 김정근, 양승철, 이종훈, 박기근, 박태주, 황준홍, 안무성, 정진팔, RK, 송병규, 이찬흙, 김창학, 반효민, 김세운, RM, 유정훈, 주진우, 오부명, 임정주, 최창복, 배정효, 김대우, RO, 최현석, 박만식, 박창균, 전창훈, 신동걸, 김상용, 김평재, MS, 백철기, 김혜인, 정일현, LT, 정동실, 김성록, 송민주, 김영호, KP, 정한글, 박현준, 김만중, 이치수, 이재현, 김경규, 임경우, 이종욱, 권범중, 노영훈, 최진욱, 정승기, 김성곤, 편강철, 이수진, 황성수, 최호, 정성채, 오신타, 김진욱, 이지환, 이양성, 남궁인철, 김상수, SD, 황충연, SF, 박현수, SG, 조윤제, 변영찬, SH, 황태준, 강상문, 김준영, 김재광, 안찬수, 유승렬, 김동권, SM, 김준형, 방지원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건이 병합된 점과 위 각 진술을 이 법원이 직접 청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판조서’가 아니라 ‘법정진술’로 기재한다.]

1. 중앙지역군사법원 2024고46, 2025고2(병합)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김태환, 맹성진, 염진복, SR, 김봉규, 제5회 공판조서 중 곽종근, 박안수, 제7회 공판조서 중 여인형, 제8회 공판조서 중 이진우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중앙지역군사법원 2024고46, 2025고23(병합), 2025고1(병합)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조백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앙지역군사법원 2025고2, 2025고24-1(병합) 사건 제14회 공판조서 중 노상원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72 사건의 각 일부 증인신문녹취서(허석곤, 황기석, 배덕곤, 김봉식, 조지호, DN, 신원식, 김한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사건의 각 일부 증인신문녹취서(김영호, 조규홍, 안덕근, Y, X, 조태열, 박상우, 송미령, 최상목), 일부 피고인신문녹취서(한덕수)
1. 헌법재판소 2024헌나8호 사건의 제4차 변론조서 중 김용현, 제5차 변론조서 중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제6차 변론조서 중 증인 김현태, 곽종근, 제7차 변론조서 중 이상민, 제8차 변론조서 중 조태용, 김봉식, 조성현, 제10차 변론조서 중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김성록, 박현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노재현, XN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계엄선포문 촬영 사진 출력본 1부
1. ‘기획재정부장관’ 제하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 사본
1. 국방부 일반명령
1. 포고령(제1호)
1.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음어 및 평어, 12. 3. 18:00~12. 4. 11:00)

1. 전국 경찰관서 비상근무 발령 하달 공문(2024. 12. 3.자)
1. 시설설비 등 손실내역, 12·3 비상 계엄 관련 피해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 1부, 12·3 비상 계엄 피해신고 센터 운영 결과 보고 1부
1. 녹취속기록(김봉식-주진우, 2024. 12. 3. 19시 54분), 녹취속기록(주진우-최창복, 2024. 12. 3. 19시 55분), 녹취속기록(주진우-최창복, 2024. 12. 3. 20시32분), 녹취속기록(주진우-최창복, 2024. 12. 3. 21시 16분), 녹취속기록(김봉식-주진우, 2024. 12. 3. 21시 50분), 녹취속기록(김봉식-주진우, 2024. 12. 3. 22시 25분), 녹취속기록(김봉식-주진우, 2024. 12. 3. 22시 30분), 녹취속기록 (김봉식-주진우, 2024. 12. 3. 22시 32분)
1. 녹취서 김의규, KV, 녹취서 김의규, 송병규
1. 각 녹취서(김창학, 조백인), 각 녹취서(김창학, 노주영), 각 녹취서(김창학, 조성현), 각 녹취서(김창학, 이진우), 녹취서(김창학, 박성일), 각 녹취서(김창학, 이찬흠), 각 녹취서(김창학, 엄정섭), 녹취서(김창학, 김성곤), 녹취 서(김창학, 정창균)
1. 각 녹취서(통화녹음 이현일)
1.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요약본
1. 2024. 12. 5.자 제22대 국회 제418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발췌
1. 2024. 10. 6.자 및 10. 11.자 카카오톡 대화내역(김봉규, 문상호, SW), 김용현,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의 비화폰 발신내역, 디지털 포렌식으로 선별한 메모 49개, 비화폰 통화기록 사진 7부
1. 보고서, MOU초안, 업무협약 체결식 계획, 방첩사-국수본 업무협약 체결 추진 계획 1부
1.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내역 캡처본 1, 2024. 12. 3. 19:28~21:26 정성우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 내역 1부

1. 12. 2(월)~3(화)간 주요일정, 불시점검(12. 3, 화) 계획, 장비/탄약 보관 현황(출동시)
 1. (김형기 작성) 작전일지 1부
 1. 오부명↔임정주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부
 1. 국회 주변 상황 관련, 국회경비대 근무 강화 계획 검토
 1. 선관위 서버실 위치 메모, 수사 협조 자료 1부, 노상원과 정성우의 통화내역, 구민회가 작성한 체포자 명단메모 사본 1부, 구민회 통화내역(2024.11.3.~2024.12.7. 착.발신 22 건) 1부, 2024. 12. 4. 00:10경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이현일, 국방부 조사본부 김성곤과의 그룹 통화 내역 출력물 1장
 1. 이상현 여단장 시그널 메시지 캡처 1부, 휴대전화 통화 내용 시간순 정리 자료 1부, 1. 비 화폰 통화기록 사진 7부
 1. 상황보고서(12.3) 內 김용현 前 장관 발언, 작전일지 (스캔본), 現 상황 관련 경과(비상계엄령 선포) 비공개 자료 1부, 전투통제실 출입 현황
 1. 박정환 휴대폰 메모, 비화폰 통화내역 사진
 1. 안보폰(특임단장) 통화내역, 계엄 이후 부대 일지, 상황일지
 1. NEW 707 텔레그램 채팅방 캡처본 32매
 1. 특임대대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취록 참고자료 1부
 1. 박태주가 정성우 1처장실에서 작성한 메모 사본 1부, 출동현황보고(방첩사) 1부, [붙임] 출 동현황 보고 1부
 1. 삼단봉 사진 3매, 특임대대원들의 출동 당시 복장 사진 4매
-
1. 2024. 12. 3. 박헌수 → 김상용 통화 기록 1부, 2024. 12. 3. 23:10경 인치열 ↔ 김상용 통화 녹취서 1부

1.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2024. 12. 1.~4.어간 주요 통화기록
1. 2024. 12. 3. 23:52경 박헌수→ 여인형 통화기록 1부, 방첩사 수사단 카카오톡 대화내역, 노주영 포렌식 주요 내용(메시지, 통화내역) 1부, 전승혁↔ SX 대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전승혁 휴대 전화) 2장, 공군 수사단 명단, 육군 수사단 명단, 해군 수사단 명단, 『국방부 조사 본부 수사관 인원 현황』 문건 1부, 2024. 12. 3. 23:59경 작성된 편강철 휴대폰 ‘메모’ 1부, 참고인 이상민 본인 직접 작성의 메모지 사본 1부, 경찰청장 비서실장 권범중 수첩(HANDY PIKCNOTE) 사본 스캔 1부
1. 김경규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전창훈 휴대전화 저장 내역 캡처(김경규를 김철진으로 저장된 사실), 방첩사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 중령 - 이현일 문자내역 1부, 김용현과 노상원의 통화내역, 고광일의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사진 1부, 이종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캡처사진 1부, 이현일 전송 방첩사 병력철수 문자 사진 1부, 전창훈 휴대 전화 메시지 및 채팅방 출력물
1. 피의자 목현태 휴대 전화(SMG973여론조사꽃) 내 전자정보 및 국회경비대 사무실 및 상황실 김동현 내 전자정보 CD 사본 1장
1. 국회경비대 상황실 CCTV 촬영 사진
1. 롯데리아 CCTV 영상 등 USB 및 네이버 회신자료 CD
1. 김창학 휴대전화 선별 압수 전자정보 첨부 CD 1매, 김창학 군사단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 62개를 저장한 CD 1매
1. 2024. 12. 3. 23:31경 ‘합참 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2024. 12. 4.

01:51경 ‘합참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2024. 12. 3. 23:50경 ‘합참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2024. 12. 3. 23:54경 ‘합참지휘통제실 입출

입 CCTV 영상' 캡처 1부

1.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압수 통신자료 분석 CD
1. 검찰단 _2024_형제 169_여인형 SM-901여론조사꽃 모바일 선별 자료 CD 1매
1. 대통령실 5층 복도·대접전실 CCTV 영상 저장 '외장하드' 1개, 대통령경호처 보관 비화
폰 서버 선별자료 저장 'USB' 1개
1. 광종근, 여인형, 이진우 군용 비화폰 통화내역 1부
1. 이진우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부
1. 2025. 1. 23. 제출 특임대 CCTV 영상 CD 1부, 2025. 2. 12. 제출 국회의사당 지하1
층 CCTV 영상 CD 1부, 국회 CCTV 영상 CD, 국회 본관-B1-02 기도실 앞 영상 파
일, 본관-B1-02 정각회 앞 전면좌측(전면좌측) 영상 CD

[이 사건 증거기록 및 증거목록은 여러 수사기관이 여러 명의 피의자에 대하여 동시 다발
적·중첩적으로 수사를 하여, 피의자명과 수사 주체에 따라 '윤석열 사경 송치 기 록', '김
용현 기록', '김용현 사경 송치 기록', '여인형 외 3 기록', '문상호 기록', '조지호, 김봉식
기록', '노상원 기록', '김용근 기록', '윤승영, 목현태 기록', '추가증거기록', '추가증거기록
(압수수색영장 집행서류 및 압수물)', '윤석열 공수처 송부 기록' 등으로 제출되었고, 이
법원이 공판절차를 통하여 위와 같은 목록의 각 제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위 각 기록에
순번을 1부터 12까지 붙 여서 기록명을 정하였다. 구체적인 기록명은 아래와 같다. 피고
인 윤석열의 경우는 순 번 1 내지 12기록 전체가 하나의 증거기록으로, 나머지 피고인들
의 경우는 순번 1 내 지 11기록 전체가 각각 하나의 증거기록으로 제출되었고, 이하 증거
순번은

‘증거순번 ○기록 ○○번’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순번	검사 제출 증거기록명	정리된 증거기록명
1	윤석열 사경 송치 기록	1기록
2	김용현 기록	2기록
3	김용현 사경 송치 기록	3기록
4	G 외 3 기록	4기록
5	H 기록	5기록
6	C, D 기록	6기록
7	A 기록	7기록
8	B 기록	8기록
9	E, F 기록	9기록
10	추가증거기록	10기록
11	추가증거기록 (압수수색영장 집행서류 및 압수물)	11기록
12	윤석열 공수처 송부 기록	12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윤석열: 형법 제87조 제1호(내란우두머리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 각 형법 제87조 제2 호 전문(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피고인 윤석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경합범 가중(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내란중요임무중 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피고인들의 내란우두머리죄 또는 내란중요임무중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흡수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들의 위 각 범죄사실이 동일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이중기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목현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I. 수사권 등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른바 불소추특권을 갖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

가.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개시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소추특권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들은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고, 바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 1)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

헌법 제84 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그 예외로 내란 또는 외환죄를 두고 있는 바, 이를 불소추특권(不訴追特權, Prosecutorial Privilege)이라 한다.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확보해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함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 등 참조).

다만 의원내각제 형태의 1960년 제2공화국 헌법 하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이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전통적 의미의 국가원수 내지 군주에 대해 인정되던 형사상 면책 내지 불소추특권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2)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 – 수사개시 가능 여부

가) 의의 등

‘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도 정지된다(헌법재판소 1995. 1. 20.자 94헌마246 결정,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등 참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수사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즉 소추(공소제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학계에서는 ① 어떠한 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수사는 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한 강제수사는 물론 임의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② 임의수사는 가능하나 강제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수사는 소추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헌법 제84조에서 금지하는 소추에는 기소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 임의수사인 피의자 조사는 가능하겠지만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③ 형사재판을 전제로 한 체포·구속은 허용되지 않으나 그 외의 수사는 허용된다는 해석(압수·수색·검증은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체포·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④ 임의수사나 강제수사 모두 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해석(압수·수색·검증은 물론 체포나 구속도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나) 외국의 불소추특권 등

군주제 국가의 경우, 통상적으로 헌법, 관습 또는 판례법에 따라 국가원수인 군주의 면책 내지 불소추특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의 불소추특권 또는 면책특권과 관련해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미국, 영국),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로 양분되나,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도 관습상(영국) 또는 판례법상(미국)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들도 형사소추 및 형사면책 여부를 기준으로 ① 특정 범죄(내란죄 등)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의 형사면책을 인정하는 나라(프랑스, 이탈리아), ② 특정 범죄(내란죄 등)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만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일본, 대만), ③ 특정 범죄(내란죄 등)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의 형사면책 및 직무관련성 없는 행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는 나라(그리스, 싱가포르)로 나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바이마르헌법(1919년) 당시 대통령의 형사적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 형사상의 소추를 아우르는 일체의 법적 추궁(Rechtsverfolgung)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현행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하에서도 연방의회 의원들의 사전허가 등을 전제로 한 불체포특권 등을 준용(§ 60)해 이를 적용받을 뿐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불소추특권 규정은 대만 헌법의 총통에 대한 불소추특권 규정을 적극 차용한 것으로 보이나,¹¹⁾ 대만 헌법은 '소구(訴究)'라는 표현을 사용해 총통에 대한 수사가 '소구'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소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 일본 헌법의 '소추'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 문언적 의미에는 수사가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그 조문 취지에 비추어 체포, 구속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이다.

다) 각국의 불소추특권 등

(1) 미국

미국은 성문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의 면책 내지 불소추특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권력분립의 원칙 및 대통령의 헌법적 직능(functions) 보장의 필요성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다. 즉, 미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하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판결례는 확인되지 않고, 종래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지휘 하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지양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ffice of Legal Counsel)의 1973년, 2000년, 2019년 세 차례의 유권 해석이 있다).

대통령의 사법적 특권이 형사절차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해, 이른바 ‘워터 게이트 사건’에서 대통령의 면책적 특권이 법원의 녹음테이프 제출명령(subpoena duces

11) 1948년 제정된 헌법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제67조 조문과 관련해, 위 헌법 제정 당시에도 그 내용이 1947년 제정된 대만헌 법(중화민국헌법) 제52조와 동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tecum)을 거부하는 데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U.S. v. Nixon 판결[418 U.S. 683, 1974])한 이래, 대통령의 직능보장 필요성 및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증거확보 필요성 사이의 충돌을 이익형량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재직 중 직무상 행위에 대한 연방 대배심 공소제 기로부터 면제권을 향유하는지와 관련해 대통령의 최종적이고 배타적인(conclusive and preclusive) 헌법상 권한 범위 내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 면제권이 인정되고, 이외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도 이익형량에 따른 추정적 면제권(presumptive immunity)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Trump v. U.S. 판결[603 U.S. ___, 2024]).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의 직무 외적 범죄행위에 대해 재직 중의 형사소추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The separation of powers does not bar a prosecution predicated on the President's unofficial acts.”)를 하였다는 점은 종래의 관행과 차이가 존재하며, 대체로 대통령의 헌법상 직능수행의 보장과 공익 사이의 이익형량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영국

영국은 보통법(Common law) 체계 하에서 전통적 법언인 ‘국왕은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The King can do no wrong).’에 따라 국왕은 ‘정의의 원천(fountain of justice)’으로서 국가원수(군주, Crown immunity)이자 주권자(주권면책, Sovereign immunity)로 해석되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통상 영국의 법령, 민형사소추는 국왕(Crown)의 신하들(Crown Court, Crown Prosecution Service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특히 형사소추의 경우 국왕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해지는 형태(국왕 대 피고인의 형태, 이에 따라 Case의 이름도 'JTBC v. [name](Rex 또는 Regina)'로 작명됨)

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왕은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때 국가원수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국가배상 또는 군주의 명령에 부서(counter-signature)한 그 신하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가 영국 국왕 찰스 1세의 처형 재판이다.¹²⁾ 이외 영국의 총리에게는 면책특권 내지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일본

日本國憲法
第5章內閣

第七十五条

國務大臣は、その在任中、内閣總理大臣の同意がなければ、訴追されない。但し、これがため、訴追の權利は、害されない。

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위 헌법 규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자신도 불소추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소추’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내각총리대신 자신도 불소추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해서는 견해가 나뉘나 생략한다.

‘소추’의 의미와 관련해, 이를 검사에 의해 제기되는 기소라 해석함에 이견은 없으나, ① 위 규정의 취지가 검사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신체 및 직무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수사과정상의 체포·구속이 ‘소추’에 포함된다는 견해, ② 문헌 상 ‘소추’는 공소제기가 명확하고, 헌법 내에서 사용되는 소추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¹²⁾ 당시 찰스 1세는 위 법리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특별고등법원은 의회 및 잉글랜드 등 인민에 대한 반역을 이유 로 유죄 판결을 하였다.

징계 또는 탄핵 절차에도 사용되므로 이를 반드시 형사재판의 그것으로 한정해 수사과정까지 포함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즉 수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정도까지의 수사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뿐이다.

한편 국가원수인 천황에 대하여는 2차 세계대전에 따른 평화헌법 제정 전에는 천황을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규정하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었으나, 미국의 영향을 받은 현재 헌법에서는 천황의 불소추특권 및 면책특권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황실전범(皇室典範)'¹³⁾ 제21조, '국사행위의 임시대행에 관한 법률(国事行為の臨時代行に関する法律)' 제6조에 따라 천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은 때의 섭정 (摂政)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천황에게는 당연히 불소추특권이 인정된다는 해석이 존재하며, 최고재판소 또한 민사재판과 관련해 헌법 제1조를 이유로 천황에 대한 민사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중화민국

中華民國憲法制四章總統

第五十二條總統除犯內亂或外患罪外，非經罷免或解職，不受刑事上之訴究。

중화민국헌법

제4장 총통

제52 조

총통은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파면 또는 해직되지 아니하며, 형사상의 소구되지 아니한다.

13) 명칭은 전범(典範)이나 법률로서 성질을 지닌다. 관련 규정은 생략한다.

중화민국헌법 제52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파면 또는 면직되지 않는 한 형사상의 소구(訴究)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의 불소추특권과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 소구의 의미와 관련해 종래 학설은 ‘형사소송법상 검찰관·군 검찰관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신문 및 범죄피해자의 사인기소(自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헌법 제52조에 대한 사법원(司法院, 중화민국 대법원)의 헌법해석¹⁴⁾과 관련해, 1995. 10. 27. 헌직 총통의 재선 입후보 관련, 헌법 제52조의 형사면제권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당시 ‘총통 신분이 유지되어 헌법 제52조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선거파면법 등의 형벌규정을 적용·소구(訴究)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司法院大法官, 1995. 10. 27., 釋字第388號解釋).

또한 2007년 천수이벤(陳水扁) 헌직 총통은 자신에 대한 부패혐의 수사가 가능한지 헌법해석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사법원은 2007. 6. 15. ‘총통의 임기 중 수사·소추·재판 진행은 일시 금지되며, 다만 총통의 존엄과 권한 행사에 직접 관련이 없는 조치 또는 범죄현장의 직접적 검사는 허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소구의 범위에 수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중화민국 헌법과 우리 헌법의 불소추특권 조문의 형태상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 위와 같은 소구(訴究)가 아닌 일본식 표현인 소추(訴追)를 사용한 점에 차이가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14) 종래 중화민국은 구체적 사건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국가기관이 사법원에 헌법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추상적 헌법해석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5) 프랑스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Titre IX : La Haute Cour (Articles 67 a 68)

Article 67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n'est pas responsable des actes accomplis en cette qualite, sous re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53-2 et 68.

Il ne peut, durant son mandat et devant aucune juridiction ou autorite administrative francaise, etre requis de temoigner non plus que faire l'objet d'une action, d'un acte d'information, d'instruction ou de poursuite.

Tout delai de prescription ou de forclusion est suspendu.

Les instances et procedures auxquelles il est ainsi fait obstacle peuvent etre reprises ou engagees contre lui a l'expiration d'un delai d'un mois suivant la cessation des fonctions.

1958년 10월 4일 헌법

제9편 : 고등재판소 (제67조 내지 제68조)

제67조

공화국 대통령은 제53-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직책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프랑스의 모든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서 증언하도록 요구받거나, 소송, 정보 제공, 조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시효 또는 제척기간은 정지된다.

이와 같이 방해받은 소송 및 절차는 대통령의 직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시작하거나 제기될 수 있다.

2007년 개정된 프랑스 헌법에서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사건 및 탄핵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자격으로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재임 중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6) 독일

1949년 제정된 독일연방기본법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 ‘체포’, ‘신체의 자유 제한’ 및 ‘소송절차 개시’는 연방의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미 개시된 절차나 부과된 제한은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도록 정하였다고 한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허가를 거쳐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수사 자체에 대한 예외조항은 없으나 실제 수사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 구체적 검토

적어도 앞서 본 ① 내지 ④의 해석 중 불소추특권에 의해 아예 수사가 금지된다는 ①의 견해는 따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문언의 해석상 수사가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란 형사소송법상의 기소, 즉 국가소추주의에 입각한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46조)를 의미한다.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는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념적으로 형사상 소추와 분명히 구분된다. 따라서 위 헌법 제84조 문언의 반대해석상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각국의 입법례나 판례에 의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금지되지 않고, 다만 가능한 수사의 범위만 문제되고 있다.

(2)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대통령이

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1. 20.자 94헌마2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불소추특권 규정의 의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는 수사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헌법 제84조는 특정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재직 중의 소추만을 금지할 뿐 형사상 면책이나 재직 후 소추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이러한 점에서 중화민국을 제외한 외국의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데 만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직 중 어떠한 수사도 금지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재직 기간 동안은 증거 수집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대통령이 퇴직한 후에도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헌법 제84조가 의도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4) 불소추특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결국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의 보장인데, 직무수행 보장이 가능하다면 임의수사 등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도 수사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가능한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만 견해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능한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나,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하여 진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라는 이유 없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선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찰이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란죄는 위 조항 가목·나목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죄(이하 ‘이 사건 내란죄’라 하고, 경우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을 포괄하여 ‘내란죄’라고 한다)가, 위 조항 가목에서 정한 죄로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경우에만 이 사건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죄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없고, 검사는 2024. 12. 4. 개혁신당의 고발에 의하여 이 사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을 뿐,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이 사건 내

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이고, 위 수사절차에서 취득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위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

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

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 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등 참조).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사무 담당직원이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 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

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¹⁵⁾ 15)

2) 이 사건 수사 개시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권영국 등은 2024. 12. 4. 검찰에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등’을 피고발인(피고소인)으로 하고, 고소취지를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한 고발장(증거순번 4기록 1번)을 제출하였다. 검사는 위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검토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비고’란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 점검 필’란의 ‘수사범위 외’란에 ☒ 표시하였다.

나) 개혁신당은 같은 날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를 피고발인으로 하고, 고발죄명을 ‘내란죄, 직권남용’으로 한 고발장(이하 ‘이 사건 고발장’이라 한다, 증거순번 4기록 2번)을 제출하였다. 검사는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검토한 후, ‘비고’란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 점검필’란의 ‘일부 포함’란에 ☒ 표시하였다.

다) 검사는 2024. 12. 5.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증거순번 128). 검찰주사보 한성재는 2024. 12. 1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56)를 작성하면서,

2024. 12. 11.자 연합뉴스 「“경찰관련범죄”...법원, 尹 내란죄 검찰 수사 물꼬 텃다」 기

15) 대전고등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혐의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혐의에 관하여는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사건의 수리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는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이다. 또한,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는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때에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등 참조), 그 수사를 기초로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04. 3. 26. 선고 2003노429 판결). 위 사건의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에 수사단계에서 사건수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 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4824 판결).

사 출력물 1부(증거순번 457), 2024. 12. 11.자 헤럴드경제 「檢, ‘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 尹 대통령 ‘기수범’ 수순」 기사 출력물 1부(증거순번 458) 등 내란죄 성부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였고, 2024. 12. 13.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순번 727)에는 2024. 12. 13.자 TV 조선 「김용현 측, 구속 후 첫 입장 ”계엄선포는 통치 행위... ‘내란’ 아냐“」 기사 출력물 1부(증거순번 732), 2024. 12. 13.자 노컷뉴스 「사이버사, 선관위 서버 분석 사전논의... 내란 개입 의혹」 기사 출력물 1부(증거순번 753)를 첨부하였다.

라) 수사 개시 이후의 수사 경과

(1)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2024. 12. 11. 피고인 김용현(국방부장관)을, 12. 14. 여인형(방첩사령관)을, 12. 16. 곽종근(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을, 12. 17. 박안수(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를 각 구속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2)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2024. 12. 13. 피고인 조지호(경찰청장)와 피고인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고, 12. 18. 피고인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을, 12. 21. 김용균을 각 구속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3) 공수처 역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2024. 12. 8. 검찰과 경찰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검찰과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자, 12.

13. 다시 이첩을 요청하였다.

한편,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군 검찰)는 2024. 12. 11. 공조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4) 검찰과 경찰은 각각 2024. 12. 15. 피고인 윤석열을 피의자로 소환하였는데, 피고인 윤석열은 이에 불응하였다. 경찰은 12. 16.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사건 등을, 검찰은 12. 18.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사건 등을 각 공수처로 이첩하였다. 이후 공수처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직접 관련성의 유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과 내란우두머리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은 차이가 있어, 형법 조문의 비교만으로는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 (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23 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죄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는,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경찰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회

내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통제하고,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하여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진입하는 등의 모습이 인터넷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려졌고, 이에 따라 언론이나 상당수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로 군·경 수뇌부가 다수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위법하고 불법한 지시를 하여, 즉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사정이 그렇다면 나아가 피고인 윤석열과 이에 관련한 사람들은 내란우두머리, 내란중요 임무종사 등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요구가 상당했으며, 그에 따라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 등을 고발한 것이다.

이렇듯 내란 혐의는 고발에 의해 또는 고발과 관련 없이 이미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고, 검사는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검토한 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으며,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련한 범죄로서 이 사건 내란죄를 인지한 후 두 범죄에 관하여 함께 수사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검사가 수사개시할 당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 국군에 대한 통수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지휘·통솔권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무장한 군인으로 하여금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에 침입하게 하고, 경찰로

하여금 국회 출입을 통제하게 하여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등 정당한 활동 등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군인과 경찰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군인과 경찰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을 하게 한 피고인 윤석열은 이에 공모·가담한 자들과 함께 결국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윤석열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동기나 이유, 목적이 내란우두머리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결과로 군과 경찰이 행한 일이 내란우두머리죄에 있어서 ‘폭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수사의 대상이 피고인 윤석열로 동일하고, 피고인 윤석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내란우두머리죄에서의 폭동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두 범죄사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이 사건 내란죄는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에 관해 ‘직접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위험이 적은 반면,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우두머리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행위와 결과의 위험성, 유무형의 피해 정도에 있어 다른 범죄와 비교가 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헌법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대통령이 일반적인 죄를 범한 경우라면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직무로부터 배제할 수 있을 것이지만, 내란 및 외환의 죄의 경우에는 그 중대성과 긴급성

을 고려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

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내란죄는 집합범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자가 조직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통해 관여하고 있어, 상당한 수사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여야 하고 실체적 발견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크다.

(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검사의 수사개시권한을 제한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의의(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거꾸로 수사의 효율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구 검찰청법(2020. 2. 4. 법률 제16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 2. 4.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제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를 추가하였다. 이는 2018. 6. 21.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검찰청법 개정에는 따라 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 수사의 주체가 되고, 검사는 예외적으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궁극적으

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분리함으로써 두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여기에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가 결합됨으로 인한 부작용 내지 폐해를 개선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검사에게 기본적으로는 1차적 수사권을 가진 경찰 수사의 적법성, 정당성을 심사, 통제하는 기능을 부여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검사의 수사 개시를 허용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20. 2. 4.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의 예외적 수사개시가 허용되는 범죄의 하나로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을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안되었으나, 2022. 4. 30.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종전의 내용을 유지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어 다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위 수정안은 그 수정이유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때,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정 논의와 앞서 본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공통되는 이 사건 내란죄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 두 범죄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

는 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본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는 이 사건 고발장에 의하여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한 것이고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내란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인정할 범죄 인지서 등의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문언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고소·고발은 전형적인 범죄인지의 단서가 된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비록 검사가 내란죄에 관하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기재된 고발장에 내란죄의 기재가 있다면, 이는 내란죄를 인지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때여서 이미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부터 검사는 사실상 내란의 범죄혐의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내란 혐의가 기재된 이 사건 고발장이 접수되어 내란 혐의 인지의 단서를 확인하여 이후 내란 혐의에 관한

수사에 나아갔다면 이는 위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래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와 관련하여 내란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371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검사는 수리된 고소·고발장, 진정서 등에 기재된 죄명, 적용법조, 혐의사실 내용 및 그에 첨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대상 혐의를 특정하고 수사개시 가능 범죄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제3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고소장·고발장을 배당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수사개시 가능 범죄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고(제5조 제1항), 수사개시 가능 범죄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혐의 중대성, 신빙성, 고소장 등의 접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조사와 지휘를 하고, 수사개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 경찰관에게 이송한다(같은 조 제2항). 만일,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닌 혐의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해당 혐의가 수사개시 가능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범죄는 분리 결정한 후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고,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하거나 수사과·조사와 지휘를 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전체 범죄를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조 제3항). 위 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

가 고발장을 수리하더라도 곧바로 그 고발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수사개시 가능한 범죄라고 판단하여야 비로소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함께 기재된 이 사건 고발장을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두 범죄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내란 혐의에 관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사건 수리절차를 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 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대외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죄인지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절차에 관한 서류로서 피고인의 범죄혐의 입증에 위한 증거 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내란 혐의에 관해 별도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고발장에 의하여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 내란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지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나아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이 부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2 조 제3호, 제4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위 제3호 및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수처는 이 사건 내란죄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죄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라고 볼 수 없고, 공수처는 2024. 12. 4. ‘사법 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고발에 의하여 이 사건 내란죄,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을 뿐,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내란죄를 인지한 것이 아니므로, 공수처는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이고, 위 수사절차에서 취득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위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1)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입법 경위 등과 해석의 원칙

가) 관련 조문

공수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 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 조, 357 조제 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 조제 1항, 제152 조, 제154 조부터 제 156

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 조제 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 3호와 제 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라 한다)를 둔
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제27 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
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나)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수처법(안)」을 최초로 성안하면서, 공수처법 제
2조 제4호 라목에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의 수사 또는 공소 중에 인지
된 범죄’(제2조 제5호 라목)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위 문구는 서울고등법원이 관련사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래 수사 범위 내의 범죄와의 ‘합리적인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
한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과 유사하게 따른 것이었다(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7초기42 결정 등 참조).¹⁶⁾

위 문구는 이후 법무부 검사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F가 2017. 10. 15. 작성

16) 피고인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혐의사실 중 일부가 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검찰청법 제2조 제15호의 ‘관련사건’이란 형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찰청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2조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제2조 각호가 규정하는 개별 의혹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검사의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2017. 2. 3. 선고2017초기42결정). 위판결은대법원2002. 12. 24. 선고2002도 5296 판결을 참조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 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건이 검사의 수사대상이나 이에 기한 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형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사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2조가 규정하는 ‘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검사의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제2조가 규정하는 ‘정·관계로비 의혹사건’이라는 것도 로비활동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대상이 정·관계 인사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안」에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중 직접 관련성이 있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죄’로 변경되면서 ‘직접 관련성’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었다(안 제2조 제4호 라목). 위 ‘직접 관련성’이라는 문구가 사용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공수처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가 아닌 민간인에 대한 수사기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고, 고위공직자의 행정형법 위반, 과실범, 음주운전 등 공수처법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문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는 주체의 제한을 추가하여 현재와 같은 문구로 변경되었다(안 제2조 제4호 라목). 위 문구는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범한 특정 고위공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사건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과 마찬가지로 ‘직접 관련성’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제출된 이후에 발의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제안된 문구가 입안된 것으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문구를 참고하여 입안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에 관한 해석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범죄의 효율적이고 엄정한 처벌과 비대하고 정치화된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점, 공수처법 제24조는 공

수처장의 이첩요청권과 상대 수사기관의 이첩의무,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즉시

통지의무 등 공수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점,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으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과는 입법 목적에서 차이가 있는 점 역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규정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한다.

라) 결국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직접 관련성’의 의미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의 의미에 대한 법리와 다르지 않으나, 공수처법의 목적, 다른 조항들과의 정합성, 해당 규정의 취지와 의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직접 관련성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내란죄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과 정에서 인지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범한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수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공수처법 제23조). 피고인 윤석열은 위 고발 당시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수처검사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이 사건 내란죄는 검찰

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직접 관련성’과 위 검찰청법 규정의 ‘직접 관련성’에 대한 법리가 다르지 않으므로 공수처법상의 ‘직접 관련성’ 역시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사법 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024. 12. 4. 공수처에 ‘피고인, 김용현, 이상민’을 피고발인으로, 죄명을 ‘직권남용 및 내란죄’로 한 고발장(증거순번 12기록 2번)을 제출하였고, 공수처 사건관리담당관은 2024. 12. 5. 위 사건을 수리하였다. 공수처는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파악하였고, 공수처검사 차정현은 2024.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김용현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영 장을,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박안수 및 이상민을 피의자로 하여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등의 휴대폰 및 김동현,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개시하였다.

(2) 위와 같은 수사 경위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는 수사 대상인 피의자, 공범, 참고인 등이 모두 동일한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내란 범행의 폭동을 발생하기 위한 것이고, 내란 범행은 폭동을 수단으로 하여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서 두 범죄가 직접 연결되는 점, 두 범죄 사이에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함에 따라 증거 역시 상당 부분 공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두 범죄 사이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법이 관련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동일한 고위공직자가 범한 관련범죄를 열거된 범죄와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사과 수사 경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는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적 수사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범죄까지 수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대통령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의 폭동행위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의 특성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실의 수사 과정에서 그와 연관성 있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이고(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유지와 헌법 질서의 수호로서(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두 범죄 모두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과는 그 문언에 차이가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u>관련하여 인지한</u>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고위공직자범죄 <u>수사 과정에서 인지한</u>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한편 공수처법 제27조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이른바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다.

공수처법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의 의미

두 가지 견해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 문언의 의미 그대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선후를 전제로 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견해를 상정할 수 있다. 피고인 윤석열과 그 변호인의 주장도 이와 같은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언의 해석상 ‘과정’은 사전적으로 ‘일이 되어가는 경로’를 의미하고, 일의 시작과 끝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문언 그대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착수하여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새로운 범죄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수사 전 단계인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또는 수사가 끝난 기소, 불기소 단계 이후에 인지하게 된 경우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가 될 수 없다. 공수처법의 취지는 특정한 고위공직자와 가족이 특정한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우선적으로 공수처에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수사의 효율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이른바 ‘관련인지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청법의 규정은 개시할 수 있는 수사의 범위가 어떤 죄인지 여부만을 따질 뿐 특정한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넓게 해당 범죄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공수처법의 규정은 고위공직자라는 특정한 사람인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를 확인하여 비로소 공수처법이 정한 수사개시 요건에 맞을 때에만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하여 수사권한을 가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비교적 좁게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 ‘수사 과정에서’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문언의 의미와 규범적인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상정할 수 있다. 검사의 주장도 이와 같은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사 과정에서」라는 표현이 일정한 시간적 흐름 중 내사 이후 단계와 처분 이전 단계라는 엄밀한 개념의 ‘수사 과정’이라는 절차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굳이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고, 그와 같은 의도로 만들어진 표현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제한적 해석은 입법취지 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의 문언적 의미를 중시하는 견해에 따르면 결국 공수처가 어떤 고발을 수리했을 때 열거된 죄 중 공수처법상 수사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은 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부정적일 수 있다. 게다가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서’의 의미는 고소·고발 등의 경우에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후부터 이에 관한 처분이 있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도 더 부합한다. 따라서 공수처법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이른바 관련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로 보아야 한다. 즉 효율적인 수사과 수사 경제를 저해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고소·고발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피의자

역시 두 수사기관에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도 용이하

다고 보기 어렵다.」

(3) 후자의 견해, 즉 통상적인 의미와 함께 규범적인 의미까지 고려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의 의미를 해석하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효율적인 수사와 수사 경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일응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검찰청법의 규정과 통일적인 해석이 법체계상 바람직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한 고발 등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이 사건 내란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내란죄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내란죄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

(가)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은 전형적인 범죄인지의 단서가 된다(제223조, 제234조). 공수처법은 공수처검사의 공수처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공수처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조).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공수처법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수처검사는 2024. 12. 4.자 고발에 기하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그러나 공수처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기재된 고발장에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기재가 있다면, 이는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관련범죄인 내란우두머

리 혐의를 인지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나) 공수처검사는 2024. 12. 4.자 고발장에 기하여 본래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발된 관련범죄인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해 범죄인지의 단서를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위 두 혐의를 함께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위 내란 혐의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인지가 효율적인 수사과 수사 경제를 저해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동시에 인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어 인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은 공수처검사가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별도의 공직범죄사건부, 범죄인지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공수처 검사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문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절차에 관한 서류로서 피고인의 범죄혐의 입증에 위한 증거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직범죄사건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내란우두머리 혐의사실에 관한 공수처검사의 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공직범죄사건부, 범죄인지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이 부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윤석열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에게 헌법상의 불소추특권이 있는 이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가 이

어질 수 없다.’는 전제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므로, 내란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포함되는 것인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 제에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 피고인 윤석열과 그 변호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착수하게 된 실질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으로, 결국 공수처법의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여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역시 공수처와 별도로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던 사실, 검찰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하여 내란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던 사실(검찰은 2024. 12. 8. 피고인 김용현을 긴급체포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기도 하였다), 공수처, 경찰 등은 함께 2024. 12. 11.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12. 16. 경찰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4건의 고발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공수처가 이를 수리한 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이 사건 내란죄 수사를 계속하여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공수처가 공수처법의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여 수사권 없는 내란죄에 관한 수사를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의해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진다. 공수처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이에 기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조수사본부를 통한 공수처, 경찰, 군검찰 수사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법적 근거 없이 조직된 기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공수처, 경찰, 군검찰이 공조수사본부를 통하여 각 공유하여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찰은 당연히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며, 공수처 역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의해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진다. 군검찰 역시 군인 등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권을 가진다.

2) 공조수사본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공조수사본부가 가동되었다고 해서 위법한 수사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은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법원법 제231조 제2항은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에 따라 군검찰, 경찰, 공수처는 사실조회를 통하여 각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를 적법하게 송부할 수 있고 이는 임의수사로서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점,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3조 제1항은 ‘양 수사기관은 사건의 성질상 필요할 때에는 각각 상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검찰, 경찰, 공수처가 단지 그 수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상호간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법원이 계엄 선포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이므로 법원이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법원 이

사법심사를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원칙상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합헌성·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내란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상,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것인지와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내란죄 공소장은 공모, 범행방법 등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폭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고,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소집 명령,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특전사 및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해제 의결 방해 시도,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등 체포 시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등 시도,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 및 해제 발표, 기타 비상계엄 관련 군 및 경찰 출동 상황 등은 내란죄의 폭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내란죄의 공소사실에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포섭할 사실관계 기재가 없고,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 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차공모의 상대방이 누군지 불확실하고, 남용

되었다는 직권이 누구의 어떠한 직권인지 특정되어있지 않으며, 공모의 시기, 장소, 방법, 내용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상대방도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다.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므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3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의 점 공소사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공소사실은 특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내란우두머리의 점

(1)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 및 그에 수반된 일련의 개별행위의 폭동성에 대하여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취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 시작하여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개별행위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과 아울러 볼 때, 그 폭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이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하여 취해진 일련의 개별행위들은 내란 죄에서의 폭동에 해당한다.

이 사건 내란죄 공소장의 결론 부분에는 ‘피고인 윤석열이 (중략)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비상계엄의 선포와 당시 상황’, ‘전군주요 지휘관회의와

포고령의 발령’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 폭동 행위로서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 명

령’,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경찰과 소방서를 동원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등 시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및 해제 발표’, ‘기타 비상계엄 관련 군 및 경찰 출동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공소장 기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수반한 일련의 개별행위들이 폭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개괄적 기재는 집합범죄로서의 내란죄의 특성상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은 2024고합1522 사건의 2025. 5. 23. 제7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를 내란행위로 보는 것이 아님을 공판과정에서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본 건 공소는 위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수반한 후속 조치가 위헌·위법한 조치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하였다.’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검사가 비상계엄 선포가 폭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기일에서 검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전국에 선포하여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 선관위 등에 군·경을 출동시켜 침입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화재보험금 청구와 같은 민사 판결이 아닌 내란죄에 관한 대법원의 기존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넉넉히 폭동에 포섭된다는 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 그리고 그 이후 국회, 선관위 등에 군·경을 출동시켜 침입하게 하는 등

의 행위를 폭동행위로 밝혔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서의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

은 아니며, 오히려 위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윤석열로서는 이 사건 공소장에서 폭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군·경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이 폭동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것을 전제로 위 각 행위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폭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주장해왔으므로,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검사는 2026. 1. 13.자 종합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전국을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그 자체로 전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고, 이후 폭동행위인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터잡아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하나의 폭동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합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제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상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전국에 발령하였고, 포고령 발령 전후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등의 지시에 의해 국회 및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무장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이 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여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봉쇄·점거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부터 군 병력과 경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여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전 과정과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국에 TV로 생중계되거나 실시간 보도되어 전 국민이 이를 목도하였는 바, 그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전국 또는 최소한 출동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협박으로서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라고 밝

혔다.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의견서를 통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폭동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2) 내란죄의 공모 관련 기재와 관련해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사령관들의 유인 통한 비상계엄 준비,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구체적 비상계엄 준비 경과, 주요 군·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를 통해 공모의 경위를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구체적인 지시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 간의 지시와 연락 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은 “피고인은 김용현, 박안수, 조지호, 김봉식 등(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중략) 총 29개의 경찰 기동대 대원 2,036 명¹⁷⁾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하고,”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공소장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순차 공모한 공범들이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기재 방식을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남용된 직권 역시 공소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의 직권임이 분명하므로, 위

17) 이 사건 공소장에는 경찰기동대의 출동인원 합계가 ‘1,96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36명’의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036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와 같은 방식의 공소사실 기재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모 내용의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4668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본문 부분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의 이행 경과가 자세히 적시되어 있고, 공모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에서 공모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서 의무 없는 일의 상대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김용현, 박안수,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II.6.나.항 기재와 같이,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 당직 제대장 정성채를 통하여 국회경비대 제1경비제대장 김진욱, 제3경비제대장 직무대리 정용희, 제5 경비제대장 서기창 및 경무계장 송민주, 감찰 담당 KP를 비롯한 대원 85명으로 하여금 국회 안쪽에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중 ‘통하여’ 앞에 기재된 사람들이 직권 남용행위의 상대방인지 아니면 ‘하여금’ 앞에 기재된 사람들이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공소장 기재 자체로 ‘통하여’ 앞에 기재된 사람들은 지시 내지 지휘가 하달되는 직권남용행위의 경로를 의미하고, ‘하여금’ 앞에 기재된 사람들이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인 것은 분명하며, 위와 같은 공소장 기재는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상대방에 대한 지시 내지 요청이 제3자를 통한 경로로 전달된 것이라면 그 ‘제3자’(경로)도 특정할 것”이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된 것이므로(2025 고합51 사건 제38회 공판기일),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서도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피고인 윤석열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등의 출신 고등학교를 기재하는 등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검사의 주관적 평가가 있으며,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및 비상계엄 선포 부분에서는 검사의 법적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는 여사기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인용되어 있고, 노상원 수첩, 여인형과 이진우의 휴대전화 메모, 최상목이 받은 문건, 담화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국방부 일반 명령 등이 인용되어 있다. 이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증거를 직접 인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하며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

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집합범죄이므로, 그 범죄의 특성상 다수인의 동시다발적인 관여를 전제로 하고, 폭동행위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은 다소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란죄의 특성상 그러한 기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기재 자체로 법관의 예단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장의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부분의 기재는 다소 장황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배경과 경위, 피고인들의 관

계, 공모, 주관적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

인다.

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국무회의의 하자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등 검사의 주관적 판단 기재가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는 내란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비상계엄 선포의 폭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재로 보인다. 또한 법관은 그러한 검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는 기재로 볼 수 없다.

라) 공소사실의 기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실을 그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범죄사실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필연적으로 장차 증거로 제출될 서류 기타 물건에 담긴 정보를 기술하는 형식에 의하게 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관련자들의 발화 내역과 포고령 등 문건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배경, 경위, 방법,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기재만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주장한 다른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다거나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따라서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공소

장,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소장은 모두 공소장일본주의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8. 수사개시 검사의 공판 관여를 금지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수사검사 이찬규는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하고 지휘하였음에도 2024. 12. 27.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 경위

1)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에 대하여 2024. 12. 4.부터 2024. 12. 5. 사이에 검찰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다. 2024. 12. 4. 접수된 2024형제74095호, 2024형제74164호 사건의 주임검사는 검사 유병국이었으나, 2024. 12. 5. 접수된 2024형제74327호 사건의 주임검사인 검사 이찬규로 재배당되어 위 3건 모두 검사 이찬규가 주임검사가 되었다.

사건번호	고소·고발인	고소요지
2024형제74095	DY, AL	－ 고소장 기재 죄명: 내란죄 등 － 고소장 내용: 윤석열(대통령) 외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무효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내용 등
2024형제74164	SZ당	－ 고발장 기재 죄명: 내란죄, 직권남용 － 고발장 내용: 윤석열(대통령) 외 2인의 피고발인들이 불법 무효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내

2024형제74327	TI	용 등

2) 검사 서성광은 2024.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8. 01:30경 검찰에 출석하였고, 검사 유병국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증거순번 2기록 184번).

3) 검사 이찬규는 2024. 12. 27. 피고인 김용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의미

1) 관련 법령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08호)
제16 조(수사의 개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

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의 2(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의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등 참조).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통상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검사는 범죄인지서를 작성·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고(제3조 제1호, 제10조 제3항), 내사·진정 사건, 조사 사건 등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등을 거친 후 입건 결정을 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으므로(제226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사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의 범죄혐의를 검토한 경우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인지서 접수 또는 입건 결정을 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시점부터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때는 해당 범죄인지서를 작성·접수하거나 입건 결정을 한 검사를 ‘수사를 개시한 검사’로 보아야 할 것이

다.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도 사건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4항). 형식적으로는 바로 입건이 되는 셈이나,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아직 검사가 해당 사안의 범죄혐의를 검토하여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이어서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입건되었다고 하여 바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입건된 때가 아니라 검사가 범죄혐의를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수사활동을 개시한 때에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쟁점과 결이 다르기는 하나, 판례는 내사와 수사의 구분 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형식설(입건된 후부터 수사라는 견해)을 택하지 않고 실질설(입건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수사라는 견해)을 택한 바 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경우 수사 개시 시점이 다소 유동적이 되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대통령령)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35조(법무부령)는 검사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사람의 신체,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만약 입건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행위에 착수하였다면 즉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는 크지 않다. 따라서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수

리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면서 형식적으로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검사를 ‘수사를 개시한

검사'로 볼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제 수사활동을 진행한 검사를 '수사를 개시한 검사'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실무상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로 조직화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의 사무분담 체계 등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장검사 등이 주임검사로 지정되고, 주임검사로 지정된 부장검사 등은 부원 등 소속 검사(들)에게 지시하여 해당 검사(들)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 범죄혐의 검토 및 실질적인 수사의 개시·진행 등 실질적 수사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상 관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수사활동을 누가 하였는지를 따지지 않은 채 단지 주임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검사'로 볼 수는 없다.

라.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어 재배당 등을 거쳐 검사 이찬규(부장 검사)가 주임검사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검사 서성광(부원)이 2024. 12. 6.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고, 검사 유병국이 2024. 12. 8.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 수사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검사 서성광 등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라고 판단된다. 달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검사 이찬규가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검사라고 볼만한 자료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 유병국, 양찬규, 전종택 등이 공소 유지에 참여한 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검사에게 금지된 공소의 제기에 그

통상적 의미를 넘어서 공소의 유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신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개정안이 있었으나, 현행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과 같이 ‘공소의 유지’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검찰청법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사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후의 공소 유지는 수사 검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9.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둔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 근거하여 책임자의 승낙 없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침입하였고, 불법적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는 대통령 관저의 주소인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위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가 아닌 관저구

역 제1정문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일대’에서 수색영장 집행을 시작하였으므로 위

법하다.

3) 공수처는 2025. 1. 3.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수처는 2024.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순형으로부터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포영장(영장번호 생략)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대통령 관저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색영장(영장번호 생략)(이하 ‘제1차 체포영장 등’이라고 한다)을 발부받았다.

나) 공수처는 2025. 1. 3. 제1차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공관촌의 1정문을 밀어서 공관촌 경내로 진입하였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여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다) 이에 공수처는 2025. 1. 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신한미로부터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포영장(영장번호 생략)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대통령 관저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색영장(영장번호 생략)을 재차 발부받았다(이하 ‘제2차 체포영장 등’이라고 하고, 제1차 체포영장 등과 제2차 체포영장 등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체포영장등’이라고 한다).

라) 공수처는 2025. 1. 15. 제2차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관촌 1정문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윤석열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 대통령 관저 안에서 위 체포영장 등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2)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영장 집행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에 관한 규정인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에 관한 규정인지는 불분명하나, 일반적으로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체포와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을 위한 수색 및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 시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어 책임자인 대통령경호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법은 제111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이하 ‘공무소 등’이라 한다)의 승낙 없이는 이를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소 등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소송법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직무상 비밀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무소 등에 일차적으로 판단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판단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공무소 등이 그 판단권한을 행사하여 압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지 여부조차 공무소 등이 전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 소송법적 이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할 수 없는 공무소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여부 및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 등을 전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되어 자칫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에 대한 승낙 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권한이 해당 공무소 등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결국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소송법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비교형량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여부 또는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 14322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규정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2024. 12. 14.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청구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피고인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대통령경호처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 또는 그 직무대리가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을 승낙하지 않았어도 그와 같은 승낙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침입 및 불법촬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¹⁸⁾ 중 통제보호구역¹⁹⁾과 울타리 또는 출입 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은 미리 관할부대장이나 관리부대장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은 금지되고,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에 의하여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을 얻지 않고 통제보호구역인 대통령 공관촌에 진입하거나 그 집행과정에서 채증을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영장 집행으로 볼 수 없다.

(1)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서의 수색영장에 의한 피의자 수색과 그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군사기지법 제2조 제6호).

19) '통제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군사기지법 제2조 제6호 가.목)

에 필요한 처분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색영장에 의한 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가 없어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여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 시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가 없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통령 공관촌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타 필요한 처분’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적법성 담보를 위한 집행상황의 촬영 등이 포함되는 점, ②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4호 단서와의 균형상 수사기관이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촬영을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목적 달성에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된다고 보이는 점, ③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과정에서 영장의 적법성 담보를 위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수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1차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전 경호처, 국방부(시설기획과장, 제사단장, 제550경비단장)에 군사기지법상 출입허가를 미리 요청한 점, ⑤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공관촌의 전체적인 구조, 구체적인 경호계획 등과 같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군사상 비밀이 촬영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사진을 촬영하여 군사기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영장 기재와 다른 장소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등을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색’이라고 볼 수 없어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가)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나 물건, 사람의 신체를 뒤지는 강제처분을 의미하므로,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를 ‘수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되는데, 다만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수색장소인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등을 지날 수밖에 없고, 영장집행 담당공무원 등이 그 곳에서부터 수색장소인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까지 이동하였던 것 이외에 수색장소에 기재되지 아니한 곳에서 수색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수색장소(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등의 지역을 통과한 행위는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5) 영장 미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25. 1. 3. 제1차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도태우 변호사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태우 변호사는 2025. 1. 3. 제1차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이 사건에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2026. 1. 9.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을 뿐인 점, ②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 절차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인 윤석열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 점, ③ 도태우 변호사가 피고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피고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절차 또한 형사 절차와 구별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태우 변호사가 당연히 피고인 윤석열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태우 변호사가 2025. 1. 3. 제1차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태우 변호사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I.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수처 송부기록'(증거순번 12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수처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이 사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하면서 검찰에 송부한 각 기록에 포함된 증거들은, 이 사건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로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다음의 개별적인 사유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가) 검찰이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2024공제794호)의 기록에 포함된 증거: 검찰은 이 사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수집한 위 기록의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경찰이여인형, 박안수(2024공제770호), 곽종근, 이진우(2024공제771호), 문상호(2024공제773호)에 대해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의 기록에 포함된 증거: 여인형, 박안수,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는 모두 수사 당시 현역 군인이었으므로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적이 있고(군사법원법 제2조),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으므로(군사법원법 제37조),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찰이 위 사람들을 각 피의자로 하여 수사한 기록의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다) 공수처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접 수사한 사건(2024공제746호 등, 2024공제754호)의 기록에 포함된 증거: 공수처는 이 사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여 수집한 위 기록의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다.

라)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은 후 기소하기 전에 추가로 수집한 증거 (공수처 송부기록 증거순번 12기록 1507 내지 1521):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으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권한만 있을 뿐 보완수사를 할 권한은 없으므로,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은 이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검토하면서 추가로 수집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검찰이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기록(2024공제794호)에 포함된 증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2024공제794호)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경찰이 여인형, 박안수에 대하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제770호), 경찰이 곽종근, 이진우에 대하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제771호), 경찰이 문상호에 대하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제773호) 에 포함된 증거

(1) 재판권과 수사권의 관계

재판권이란 국가가 법을 적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사법권(司法權)의 핵심 요소로, 법원이나 그에 준하는 기관이 법률에 따라 특정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며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형사재판권이라 함은 어떤 범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형벌 등의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의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므로, 수사권은 형벌권을 준비하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재판권과 수사권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 국가가 수사권과 재판권을 모두 갖는 직권주의 시스템에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발달하여 왔다. 프랑스의 경우, 18세기 이전에는 판사가 형사절차 개시권, 증거수집권, 재판권을 모두 독점한 독점형 직권주의 시스템이었으나, 1801년 공화국 검사제도의 창설을 통하여 판사가 독점하던 형사소송 절차상의 권한을 행정부 소속의 검사와 법원의 판사에게 분립시켜 국가가 제3자의 지위에서 객관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형사사법권 집행에 있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독일 역시 16세기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재판하는 구조였으나, 프랑스의 영향으로 검찰제도를 창설하여 본안 전 절차에서의 예심판사의 권한을 분립시켜 행정부로 귀속시킴으로써 독점형 직권주의에 따른 제도적 단점을 개혁하였고, 1974년 예심판사의 폐지를 통하여 검사가 예심판사의 권한을 완전히 계수하게 하여 행정부가 본안 전 절차를 온전하게 담당함으로써 국가에 위임된 형사사법권의 분립 구조를 구축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대륙법계와 달리 국가가 아닌 사인(私人)이 수사와 소추를 주도하고 판사는 수사권 없이 당사자들의 계쟁을 지켜보고 판결하는 역할이었으나, 20세기에 공공소추청을 창설하여 사인의 권리였던 소추권을 승계하였다. 미국은 영국의 영향으로 사인소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18세기 이후 대륙법계의 공공소추시스템을 접목하였고, 영미법계의 기본 틀인 당사자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소추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형 공공소추기관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형사소송법이 마련되어 대륙법계에 따른 분권형 직권주의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 요소를 도입함에 따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시스템이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 군사법원 제도에 관한 입법 연혁

우리나라 군사법원 제도의 효시가 되는 ‘군법회의’는 1946년 제정된 「조선국방경비법」과 1948년에 제정된 「국방경비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국방경비법」에서 규정한 군법회의를 비롯한 군사법 제도는 미국의 「육군전시법」(The Army's Articles of War)에서 그 내용, 형식 및 절차 등을 그대로 전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내 군법회의(Courts-Martial, 군사법원)는 미국 헌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은 헌법 제3조에서 군법회의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사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의회의 정부에 대한 규칙과 육군과 해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은 사법부의 권한과는 완전히 별개다.’라고 명시하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에서도 군사법원 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조항을 두지 않음에 따라 군법회의 제도의 위헌성 논란이 있었으나,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제83조의2에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국방경비법」의 단심제 등 여러 요소를 보완하여 3심제를 도입한 「군법회의법」에서는 최초로 신분적 재판권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제2조), 이는 오늘날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로 이어진다.

그 후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헌법 제110조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고(제1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며(제2항)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3항).’라고 규정하여 헌법에 직접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군법회의법」 역시 「군사법원법」으로 전명 개정되어 ‘군법회의’ 역시 ‘군사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제도의 구조나 절차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것 이라기보다는 1987년 헌법개정의 민주적, 삼권분립적 요소를 반영하여 군사법원과 군판사의 ‘사법기관성’을 명칭 변경을 통해 제고하고, 군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정도에 국한되었다고 평가된다.

헌법재판소는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의 필요성, 평시에도 항상 대기하고 집단적 병영생활을 하는 군 임무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신속히 군사재판을 할 필요성, 군사범죄를 정확히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성, 군사법원 체제가 전시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평시에 미리 조직·운영될 필요성 등을 들어, 평시에 군사법원을 설치하여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구체적 검토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군사법원법 제37조 제1항이 군검사에게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부여할 뿐이지, 경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 수사’에 관한 권한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197조), 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는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경찰의 수사권 행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기관이 군 검사에게 송치하기 전에 한 소송행위가 유효하다고 본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법경찰관은 현역 군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수사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피고인 여인형, 박안수, 문상호, 곽종근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재판권과 수사권의 관계, 군사법원법의 입법 연혁 및 다음과 같은 법률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그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군검사와 그의 지휘를 받는 군사법경찰관만이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계수한 대륙법계 형사소송 제도에서는 당초 법원이 재판권과 함께 가지고 있던 수사권이 검찰로 분리된 것인바, 수사권은 재판권에 종속된다. 위와 같은 재판권과 수사권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하더라도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검사 및 경찰이 군사법원만이 재판권을 가지는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군사법원법 제37조는 군사법원만이 전속적, 배타적 재판권을 가지는 현역 군인에 대하여는 그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에게만 수사할 권한을 배타적으로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군사법원법 제44조는 군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관하여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제1호),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조항 역시 일반사법경찰관이 아닌 군사법경찰관에게만 배타적으로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며(제2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법권과 일반법원의 조직 및 법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10조는 헌법에 직접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군사법원법의 입법 경위 및 헌법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군사법원 제도는 헌법 제정 전부터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군사법원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제1조), 군사법원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재판과 달리 군사재판을 특별히 관할하려는 제도의 취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군사법원법 제37조 및 제43조, 제44조는 군수사기관에 특별히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일반법원의 형사재판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있다는 점에 의하더라도, 군사법원법 제37조 및 제43조, 제44조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제197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군수사기관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관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배타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는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다. 이 경우에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973. 1. 25. 형사소송법 개정 시 일반법원과 군법회의 간의 사건이송에 관한 제16조의2와 함께 신설된 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6조의2는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의 이송은 관할 문제가 아니라 재판권 분배의 문제이므로 일반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형사사건을 군사법원에 제기하거나 또는 그 역의 경우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군사법원법 제382조 제1항 참조), 공소기각 판결과 새로운 공소제기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

이다. 이처럼 함께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 규정 역시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할 권한이 없는데 수사 도중 피의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사실이 밝혀져서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게 되는 경우이거나 수사 진행 도중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 소송경제, 수사의 신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수사를 마친 후 그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 및 공소제기 권한을 가지는 군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피의자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군사법원법 제286조 역시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를 ‘검사가 군인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라 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한다면, 군사법원법 제286조 역시 ‘군검사가 민간인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헌법 제27조에도 반한다. 따라서 위 두 조항 모두 수사 개시 당시에는 재판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사후적으로 재판권이 없게 된 경우를 상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를 근거로 군 수사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에게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경찰청고시 제2006-3호)은 ‘「군사 법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정하고(제1조 제1항), ‘제1항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히 경찰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위 경찰청고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군수사기관과 경찰 스스로도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의 유무를 각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사재판의 항소심 관할이 기존의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의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축소되었다(개정이유 참조). 위 개정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군수사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이를 그 수사권을 가지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권이 재판권을 전제로 함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3대 유형 범죄 외의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그 재판권을 가지므로, 해당 범죄들에 대하여는 군수사기관

이 수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 소결론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여인형, 박안수,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가 현역 군인임을 알면서도 군검사의 협조 등이 없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여인형, 박안수,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에 대한 수사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수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법률을 위반하여 수집한 아래 표 기재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구분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경찰이 G, Z에 대하여 수사한 사건 기록 (2024 공제 770 호)	12	2464		사건 이송 보고
	12	2466	3	고발장
	12	2470	28	출국금지 등 요청서(Z)
	12	2471	30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 (Z)
	12	2472	33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 (Z)
	12	2473	36	출국금지 등 요청서(Z)
	12	2474	38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Z)
	12	2476	51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12	2477	61	출석요구서 (Z)
	12	2487	113	－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문
	12	2488	224	－ 대법원 80도 306 판결문
	12	2514	383	－ 주민등록등 초본 등
	12	2515	394	－ 범죄및수사 경력조회회보서
	12	2516	396	－ 개인 출입국 현황
	12	2517	397	－ 운전면허 조회

	12	2523	415	- 합동참모 본부 중령 TO 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2024. 12. 4. 합동참모 본부 전투통제실 출입 장면의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525	425	진술조서
	12	2526	438	진술조서
	12	2528	452	진술조서
	12	2530	471	- TP 소령 작성 '자필 진술서'
	12	2534	483	- 2024. 12. 3. 현안 보고 사본 (군사기밀 사항 일부 삭제)
	12	2541	541	합동참모본부 지하 ○층 전투 상황실 입구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547	617	합동참모본부 지하 ○층 전투 상황실 입구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548	626	통화내역
	12	2550	2	고발장
	12	2589	114	고소장
	12	2596	142	고발장
	12	2598	154	고발장
	12	2617	219	고발장
	12	2625	268	고발장
	12	2627	274	고발장
	12	2636	297	고발장
	12	2646	319	고발장
	12	2663	400	고발장
	12	2669	430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 (G) (사본)
	12	2671	434	출국금지 등 요청서 (G)(사본)
	12	2672	436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 (Z)(사본)
	12	2673	437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 (Z)(사본)
	12	2686	528	출석요구서(Z)(사본)
	12	2687	530	출석요구서(G)(사본)
	12	2688	532	출석요구서(사본)

	12	2689	534	출석요구서(사본)
	12	2690	536	압수조서(사본)
	12	2691	537	－ 압수목록 (사본)
	12	2692	538	－ 임의제출 (사본)
	12	2693	540	－ 소유권 포기서(사본)
	12	2694	542	－ 압수목록 교부서(사본)
	12	2695	544	－ 전자정보 확인서(사본)
	12	2696	545	－ 전자정보 상세목록(사본)
	12	2697	547	압수조서(사본)
	12	2698	550	－ 압수목록 (사본)
	12	2699	556	－ 압수목록 교부서(사본)
	12	2700	558	－ 임의제출(사본)
	12	2701	560	－ 소유권 포기서(사본)
	12	2702	562	－ 전자정보 확인서(사본)
	12	2703	563	－ 전자정보 상세목록(사본)
	12	2704	565	진술조서(사본)
	12	2708	588	진술조서
	12	2709	601	진술조서
	12	2710	622	진술조서
	12	2711	636	진술조서
	12	2741	773	－ 2024. 12. 5. 제8차 국방 위원회 전체 회의 회의록
	12	2742	857	－ 2024. 12. 5. 제14차 행정 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회의록
	12	2743	1012	－ 2024. 12. 10.~11. 제11차, 12차 국방 위원회 전체 회의 속기록
	12	2744	1068	조회회보서
	12	2747	1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사전)
	12	2748	21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기각
	12	2749	26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서(사전)
	12	2750	30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 기각

	12	2753	41	진술조서
	12	2754	58	- 진술조서 (ACF) 영상 녹화 CD 1장
	12	2755	59	진술조서
	12	2756	69	진술조서
	12	2757	87	진술조서
	12	2758	134	진술조서(제2회)
	12	2759	157	- TQ 통화 기록 화면 촬영사진
	12	2762	164	- 2024. 12. 1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계엄사 합 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사본
	12	2763	172	- 진술조서 (TQ) 영상 녹화 CD 2장
	12	2764	174	진술조서
	12	2765	206	- 약식자력표
	12	2766	207	진술조서
	12	2768	254	- 대법원 96도 3376 판결문
	12	2769	336	- 대법원 80도 306 판결문
	12	2789	529	- QI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12	2790	559	- TR 진술 조서(사본)
	12	2791	570	- TS 진술 조서(사본)
	12	2792	580	- TT 진술 조서(사본)
	12	2793	593	- TU 진술 조서(사본)
	12	2794	603	- TV 진술 조서(사본)
	12	2795	613	- TW석 진술 조서(사본)
	12	2799	2	진술조서
	12	2800	31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12	2801	32	진술조서
	12	2802	56	- 합참 조직도
	12	2803	57	진술조서
	12	2804	14	- 심야조사 요청서
	12	2805	105	- 국방부 영내 출입기록

	12	2806	108	- 텔레그램 캡처 출력물
	12	2807	114	-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사진 출력물
	12	2808	118	- 이메일 출력물
	12	2809	120	- 휴대전화 달력 일정
	12	2811	126	- 전투통제실 CCTV 영상 캡처본(총 8장)
	12	2812	130	진술조서
	12	2813	158	진술조서
	12	2814	199	- 국방부 영내 출입기록
	12	2815	203	- 일일예정표
	12	2816	227	- FD 메신저 캡처 출력물
	12	2817	275	- 통화내역
	12	2818	277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12	2819	278	진술조서
	12	2820	317	-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출력물
	12	2822	336	진술조서
	12	2829	391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12	2830	392	진술조서
	12	2831	428	진술조서
	12	2832	475	- 대통령실 조직도
	12	2833	476	- FD 메신저 캡처 출력물
	12	2834	479	- 통화목록 캡처 출력물
	12	2835	483	- 휴대전화 촬영 사진 출력물
	12	2837	500	진술조서(2회)
	12	2838	527	- 합참 전투 통제실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839	530	- 휴대전화 촬영 사진 출력물
	12	2842	537	수사보고서(CV와 전화 통화 - 김용현 폰번호 추가 특정 및 검찰 출석경위 확인)
	12	2846	551	- 12. 1. ~ 4. ACH 개인 휴대전화 발신 통화 내역(음성통화 및 문자)

	12	2847	552	- 12. 1.(일) 행적 관련 자료 (국방부 영내 출입 기록, 차량 출입 이력, 국군중앙교회 주보 등)
	12	2848	558	- 12. 3.(화) 퇴근 이후 행정 관련 자료 (지하철 이용 내역, 육군회관 출입 내역,아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2	2849	562	- 법무관리관 일정표(2024. 11. 25.~12. 6.)
	12	2850	564	- 국방부장관 지시사항에따라 배포한 공문 및 검토 자료(국 방 안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법령 개정 소요 제출 요청 등)
	12	2851	571	- 국회 업무 관련한 장관에게 보고한 보고문서(2024. 11. 8. 법사위 전체회의 자료, 2024. 11. 28. 국방위 전체 회의 의 결 법률안)
	12	2852	615	수사보고서 (국방부 차관 CV 면담)
	12	2854	618	- CV 통화 내역
	12	2856	626	- 진술서
	12	2858	633	- 참고인 OJ 제출 2024. 11. 1. ~ 2024. 12. 8.간 '주간 예정 표'
	12	2859	1	진술조서
	12	2860	30	- 언론보도 선관위 서버 촬영군인사진
	12	2861	32	- 통화내역 (발신) 사본
	12	2863	40	진술조서
	12	2864	69	- 카카오톡 단톡방 캡처본
	12	2865	70	- 통화내역 캡처본
	12	2866	73	- TX타임 라인 캡처본
	12	2867	75	- 12. 3. 23:36 ~ 12. 4. 02:35 회의내용 등 기재 자필 메모 사본
	12	2868	77	- 5F 사령관 사무실 그림
	12	2870	85	진술조서
	12	2873	119	진술조서
	12	2875	161	진술조서
	12	2877	193	- TX타임 라인 캡처본
	12	2878	194	- 전화통화 캡처본

	12	2880	209	진술조서
	12	2884	246	진술조서
	12	2892	305	- 방첩사 인사 복지과-9086 (2024. 12. 24.) 수사협조의뢰 (경찰청 안보 수사2과-4615)에 대한 처리 결과 회신 스캔본
	12	2893	306	- 수사협조자료
	12	2895	314	- CCTV 화면 자료 취합한 SD카드 1개
	12	2896	315	- 전자정보 상세목록
	12	2898	320	- 241231 합참 회신 공문 스캔본
	12	2899	321	- 상황보고서 (12. 3.) 내 김용현 前 장관 발 언
경찰이 L, M에 대하 여 수사한 사 건 기 록 (2024 공제 771 호)	12	2901	3	사건이송서
경찰이 H 에 대하여 수사한 사 건 기 록 (2024공제 773호)	12	2906	1-1	사건이송서
	12	2908	3	고발장
	12	2946	116	고소장
	12	2953	143	고발장
	12	2968	203	고발장
	12	2971	215	고발장
	12	2979	238	고발장
	12	2991	295	- [붙임 2]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문
	12	2993	408	- [붙임 4-1] 대법원 2016 도1397
	12	2994	414	- [붙임 4-2] 대법원 2016 도14871
	12	2995	420	- [붙임 4-3] 대법원 2011 도2631
	12	3006	462	- 판결문(대법원 2024도10978 전원합의체)
	12	3008	531	- 참고인 제출 자료(비화폰 통화 내역 캡처 사진)
	12	3011	615	진술조서

12	3012	633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 내역 캡처 사진 등)
12	3014	641	진술조서
12	3017	669	진술조서
12	3018	692	- 참고인 제출 자료(상황일지, 여단 연간 부대 운영 계획 등)
12	3020	74	진술서
12	3024	732	진술조서
12	3028	752	진술조서
12	3029	772	- 참고인 제출 자료(휴대전화 녹음파일 99개가 저장된 CD 1 장)
12	3030	773	-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 목록
12	3032	797	진술조서
12	3033	815	진술서
12	3034	821	- 참고인 제출 자료(상황일지)
12	3035	824	- 참고인 제출 자료(수방사 군사경찰단 MC 출동현황)
12	3036	825	- 참고인 제출 자료(수방사 군사경찰당 출동명단)
12	3038	831	진술조서
12	3039	850	- 참고인 제출 자료[AE경비단 작전경과(총괄)]
12	3040	853	- 참고인 제출 자료[AE경비단 작전경과(12. 3.~4.)]
12	3041	856	- 참고인 제출 자료[GT특임대대 작전경과 (12. 3.~4.)]
12	3042	858	- 참고인 제출 자료[35특수 임무대대 작전 경과 (12. 3.~4.)]
12	3043	861	- 참고인 제출 자료[작전경과 (AE경비대대)]
12	3045	867	진술조서
12	3047	890	진술조서
12	3048	911	진술조서
12	3049	929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 내역 캡처 사진)
12	3051	946	진술조서 (제1회)
12	3053	964	진술조서 (제2회)
12	3054	982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내역 캡처 사진)
12	3057	1004	- 수도방위 사령부 편제표

	12	3060	1025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 내역 캡처 사진)
	12	3069	1097	진술조서 사본
	12	3070	1114	진술서 사본
	12	3071	1125	진술서 사본
	12	3072	1135	진술서 사본
	12	3073	1146	진술서 사본
	12	3074	1156	진술서 사본
	12	3075	1166	진술서 사본
	12	3076	1177	진술서 사본
	12	3077	1189	진술서 사본
	12	3084	1242	- 진술조서 사본
	12	3090	1293	- H 휴대전화 타임라인 조회 화면 촬영 사진
	12	3093	134	- 진술조서
	12	3095	1332	- 진술조서
	12	3097	1348	- 진술조서
	12	3099	1364	- 진술조서
	12	3103	1390	- TY (차량번호 생략) 차적조회 상세 내용
	12	3104	1391	- 관악구 관제 센터에서압수한 CCTV 영상 캡처화면
	12	3109	1403	- 국립농업 박물관 관람객 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2	3118	1456	- 수사협조의뢰 응신(국군 제****부대)
	12	3119	1457	- 국가수사본부 요청자료(수신 : 사경청 안보 수사 2과)
	12	3121	1461	- 수사협조자료 제출(회신)
	12	3123	1469	- 경찰청 수사 요구자료 작성 결과(보고)
	12	3124	1470	- 육군특전사 예하 부대 상세 주소 부대별 책임자 전화번호
	12	3125	1471	- 출동부대의 인원, 출동일시, 장소, 수단 등 기재된 일지
	12	3126	1510	- 무기탄약 입출고 대장
	12	3127	1533	- 출동인원명단
	12	3129	1565	- 국회(허영의원)요구자료

12	3130	1568	- 국회(부승찬 의원)요구자료
12	3131	1572	- 사경청 수사 협조 요구자료
12	3132	1577	- 공수처 수사 요구자료(제9 공수특전여단)
12	3134	1585	- 경찰청 수사 요구자료 작성 결과(보고)
12	3135	1586	- 비상계엄관련 출동한 육군 특전사 소속 예하 부대 상세 주소 및 부대별 책임자, 전화 번호
12	3138	1596	- 육군 특수전 사령부 조직도
12	3201	1801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
12	3202	1803	- TZ 회신자료
12	3203	1805	- UA 회신자료
12	324	1807	- UB 회신자료
12	3206	1810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
12	3207	1812	- TZ 회신자료
12	3208	1814	- UB 회신자료
12	3210	1818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
12	3211	1820	- TZ 회신자료
12	3212	1822	- UA 회신자료
12	3213	1823	- UB 회신자료
12	3217	1851	- 2024-00087 출석요구서(AO)
12	3218	1853	- 2024-00086 출석요구서(AN)
12	3221	1860	- 2024-00083 출석요구서
12	3223	1865	- 2024-00085 출석요구서
12	3224	1867	- 2024-00084 출석요구서
12	3225	1869	- 2024-00101 출석요구서
12	3226	1871	- 2024-00106 출석요구서
12	3227	1873	- 2024-00107 출석요구서
12	3229	1877	- 2024-000034 출석요구서
12	3231	1881	- 2024-00035 출석요구서
12	3239	1899	- (H) 개인별 출입국 현황

	12	3243	1912	- 통신이용자 정보제공요청서
	12	3244	1914	- TZ 회신자료
	12	3245	1916	- UB 회신자료
	12	3250	1921	압수조서(임의제출-IM 안산 상록수점 CCTV)
	12	3251	1922	임의제출
	12	3252	1924	압수목록
	12	3253	1925	압수목록 교부서
	12	3254	1926	소유권 포기서
	12	3255	1927	전자정보 확인서
	12	3256	1928	전자정보 상세목록
	12	3257	1932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12	3258	1933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12	3259	1936	긴급출국금지 보고서
	12	3260	1940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
	12	3263	1953	범죄경력조회회보서(Z)
	12	3264	1955	범죄경력조회회보서(G)
	12	3265	1957	범죄경력조회회보서(L)
	12	3266	1959	범죄경력조회회보서(M)
	12	3267	1961	범죄경력조회회보서(H)
	12	3268	1963	범죄인지서 (피의자 추가 - 고소/고발)
	12	3270	1974	- 국군 제**** 부대 회신자료
	12	3271	1977	진술녹음고지 동의확인서
	12	3280	2078	진술조서
	12	3281	2095	진술서
	12	3282	2106	진술서
	12	3283	2116	진술서
	12	3284	2127	진술서
	12	3285	2137	진술서
	12	3286	2147	진술서

	12	3287	2158	진술서
	12	3288	2170	진술서
	12	3295	2225	- 진술조서
	12	3296	2235	진술녹음고지 동의확인서
	12	3301	2254	- 주민등록등·초본 회신자료
	12	3319	2330	긴급체포서
	12	3320	2336	군부대 긴급 체포 통지
	12	3321	2337	긴급체포 통지서(H)
	12	3322	2341	권리고지 확인서
	12	3323	2342	긴급체포승인 요청서
	12	3332	2414	- 복제본 반출 (획득) 확인서
	12	3333	2415	- 복제본 목록
	12	3334	2416	- 정보저장매체 인수증
	12	3335	2417	- 전자정보 삭제,폐기,반환 확인서
	12	3336	2420	긴급체포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서
	12	3337	2422	석방통보서(긴급체포불승인)
	12	3338	2426	석방 보고서(긴급체포)
	12	3339	2430	피의자석방서(긴급체포)
	12	3340	2431	군부대 긴급 체포 석방 통지서
	12	3356	2633	사건이송보고서
	12	3357	2641	사건결과통지서(피의자 송치 등)

다) 공수처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접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제746호 등, 2024공제754호)에 포함된 증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사건 (2024공제746호 등, 2024공제754호)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은 후 기소하기 전에 추가로 수집한 증거

(공수처 송부기록 증거순번 12기록 1507 내지 1521번)

(1) 공수처법의 입법목적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나, 다른 한편 공수처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그동안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패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제도하에서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2)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24조 제1항), 공수처장이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같은 조 제3항), 공수처 또는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권 배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공수처검사가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26조 제1항), 그에 대하여 공소권을 가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재수사요청권 등과 같은 통제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고,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제26조 제2항).

(3)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은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은 후 검사가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증거순번 12기록 1507 내지 1521번)은 그 수집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4)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검사는 2025. 1. 23. 공수처로부터 공수처 송부기록을 송부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여 수사하기 위한 검토 과정에서 구속기간 연장과 관련한 증거[수사보고서(증거순번 12기록 1507, 1515번),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증거순번 12기록 1508, 1520번), 변호인의견서(증거순번 12기록 1509, 1510, 1521번), 결정문(증거순번 12기록 1516번)]와, 공수처 송부사건에

대한 검찰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사례를 검토한 증거[수사보고서(증거순번 12기록 1511, 1518번), 판결문(증거순번12기록1512 내지 1514번), 뉴스기사(증거순번12기록 1519 번)]를 추가로 수집하였던 점, ② 이후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검사는 2025. 1. 26.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점, ③ 위와 같은 증거는 전부 수사보고서나 변호인 의견서, 뉴스, 판결문으로서 위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공수처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은 후 추가로 위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김용현 사건 기록’(증거순번 2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검찰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하여 수사한 ‘김용현 사건 기록’은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로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위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검찰이 2024. 12. 21. 군검찰에 수사협조의뢰를 송부하기 전 제공받은 증거들(증거순번 2기록 519, 520, 574, 595, 1071, 1072, 1289, 1290번)은 이를 송부 받은 근거가 없고, 2024. 12. 21. 이후 군검찰로부터 송부 받은 증거(증거순번 2기록 1630 내지 1654 번)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없이 송부 받은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다) ‘김용현 사건 기록’에는 경찰이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 대하여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기록 중 일부가 첨부되어 있는데(증거순번 2기록 2109, 2111 내지 2113 번), 위 증거를 김용현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어 ‘김용현 사건 기록’에 포함된 증거들이 전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은 2024. 12. 4. 이 사건 고발장에 의하여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위 고발장에 의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내란죄를 인지하였으므로,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도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검찰이 수사협조의뢰 등 없이 군검찰로부터 송부 받은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199 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231 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 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 ②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199조 제1항 본문)라고 규정하여, 법관의 영장이 요구되는 강제처분 등이 아닌 임의수사에 관해서는 그 방식에 대해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검찰과 군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²⁰⁾, 군사법원법 제231조 제2항에 따라 상호간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사실조회), 이는 임의수사의 한 방식에 해당한다. 그와 같이 사실조회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을 때에 반드시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보내야 한다거나 ‘수사협조의뢰 회신’을 함께 받아야만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적법하게 수집한 것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미 특정 수사기관에서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인 해당 자료가 마찬가지로 수사권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공유된 이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24. 12. 21.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여 ‘2024. 12. 6. 이후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서 생성한 조서, 수사자료, 수집한 증거 일체의 송부’를 요청하였고,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으로부터 여인형 등 5명의 군검찰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김용현 수사기록 제 9195~9196 쪽). 군검찰이 해당 수사과정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닌 이상,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가 위와 같이 사실조회 방식으로 국방

20) 헌법재판소는 경찰서장이 수사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기록 제공을 요청한 행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범 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사단체 등이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근거한 경찰서장의 기록 제공 요청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결정,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결정 등 참조).

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제공받아 필요한 자료들을 증거로 수집한 것은 적법하고, 위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2024. 12. 21.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 위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일부 증거를 송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증거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송치한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 대한 수사기록 중 일부를 발췌하여 김용현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한 것 역시 임의수사의 한 방법에 해당하고, 그 최초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여인형외3 사건 기록’(증거순번 4기록), ‘문상호 사건 기록’(증거순번 5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여인형외3 사건 기록’, ‘문상호 사건 기록’에 있는 증거들은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검찰이 군검찰로부터 송부받아 수집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여인형외3 사건 기록’, ‘문상호 사건 기록’은 검사가 수사한 기록임에도 작성주체가 검사, 사경, 공수처검사로 표시된 증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군검찰이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를 어떠한 경위로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검찰,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들을 군검

찰이 송부 받아 편철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피고인, 김용현 등에 대한 내란 등 사건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 수사협조 의뢰를 하여 ‘여인형외3 사건 기록’, ‘문상호 사건 기록’을 송부받았고, 이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경찰 송치기록에 별책 형식으로 첨부한 사실, 위 기록의 증거들은 검찰이 경찰,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증거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공수처는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 적법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여인형 외 3 사건 기록’, ‘문상호 사건 기록’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국방부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장, 군검사, 군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특별수사단은 필요한 경우 국방부검찰단, 각 군 검찰단 및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과 공조수사 및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다(같은 규정 제7조 제2항). 위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위 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검찰로부터 적법하게 증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윤승영, 목현태 사건 기록’(증거순번 9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검찰은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위법한 수사 과정 중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목현태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수사에 해당하고,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목현태에 관하여 수집한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윤승영, 목현태 사건 기록’에도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증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증거를 어떠한 경위로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고,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권 존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2024형제74095호, 2024형제74850호, 2024형제78888호)의 수사 과정에서, 2025. 1. 9. 피고인 윤승영에 대하여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5. 2. 24. 피고인 목현태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 인정한 사실, 검찰은 2025. 2. 28.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목현태에 대한 각 사건을 병합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실, 윤승영, 목현태는 모두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목현태는 모두 당시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목현태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증거 수집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검찰은 같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사건의 수사 과정(2024형제78888호)에서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목현태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발견하여 이들의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찰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위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 적법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수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목현태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윤승영, 목현태 사건 기록’에 편철된 대부분의 증거들은, 검사가 피의자 이현일 등에 대한 내란부화수행 등 피의사건, 피의자 조지호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의사건, 피고인 윤승영 등에 대한 내란부화수행 등 피의사건, 피의자 박성재 등에 대한 내란 등 피의사건, 피의자 한덕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 피의자 윤석열 등의 내란 등 피의사건, 피의자 김완기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및 위 조사 작성 과정에서 그 진술자들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각종 자료이거나, 압수한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통해 수집한 자료이거나, 위 피의사건들과 관련하여 검사가 직접 수집한 증거이고, 그 외에는 군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증거들로 보이며, 그 증거 수집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윤석열 및 변호인 역시 어떤 증거가 수집 경위를 알 수 없는 증거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은 모두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사경송치기록’(증거순번 1기록), ‘조지호, 김봉식 사건 기록’(증거순번 6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경찰은 2024. 12. 16. 공수처에 피고인 윤석열 및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등에 대한 내란 혐의 등에 관한 사건을 이첩한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인 ‘사경송치기록’, ‘조지호, 김봉식 사건 기록’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인정 사실

가) 경찰은 2024. 12. 6.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전담 수사팀을 조직하였다. 검찰도 같은 날 특별수사본부를 조직하였다.

나) 공수처는 2024. 12. 8.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공수처는 2024년 공제745, 746, 752호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이 수사 중인 2024. 12. 3.~4.경 발생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내란 관련 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일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2024. 12. 13.까지 해당 사건(관련사건 포함)을 전부 이첩하라.’라고 요청하였다(증거순번 12기록 326번). 위 이첩요청서 별지에는 이첩요청 사건의 대상으로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이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12기록 327번).

다) 경찰은 2024. 12. 9. 공수처의 위 이첩 요청을 접수하고, 2024. 12. 16. 위 접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접수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이진우, 곽종근, 피

고인 조지호, 여인형,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 추경호, 조태용, 한덕수, 문상호, 김준영에 대한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체포교사 등의 고발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였으나(증 거순번 12기록 2008번), 2024. 12. 9. 이후에 접수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고발사건 (2024. 12. 13. 접수된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대의 각 고발사건) 은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았다(증거순번 10기록 131번).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2024공제769호)에는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위 범죄에 관하여 총 5개의 고발장이 첨부 되어 있는데, 위 고발장 중에는 추경호, 한덕수, 문상호, 김준영에 대한 고발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12기록 증거순번	고발인	접수일	피고발인
2021	양경수 외 58	2024. 12. 4.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피고인 김봉식
2027	조국혁신당	2024. 12. 4.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피고인 목현태
2028	진보당 외 3	2024. 12. 5.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2020	더불어민주당	2024. 12. 5.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이진우, 곽종근, 피고인 조지호, 여인형
2039	박선원	2024. 12. 9.	조태용

라) 한편, 추경호는 더불어민주당이 2024. 12. 6. 제출한 고발장의 피고발인이고(증거순 번 12기록 2617번), 한덕수는 더불어민주당이 2024. 12. 9. 제출한 고발장의 피고발인이 며(증거순번 12기록 2636번), 문상호는 더불어민주당이 2024. 12. 13. 제출한 고발장의 피고발인이고(증거순번 12기록 2979번), 김준영은 투기자본감시센터 외 1이 2024. 12. 5. 제출한 고발장의 피고발인이다(증거순번 1기 록 2번).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

정들을 종합하면, 경찰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일을 기준으로 수사 중이던 사건들을 이첩하고 그 이첩 요청 접수 이후에 접수된 고발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이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첩’이란 특정 기관이 조사한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다른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로서 해당 사건 자체를 종국적으로 다른 수사 기관에 이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 기관에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위 요청 당시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경찰은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한 2024. 12. 9. 당시 더불어민주당(증거순번 12기록 2020번), 양경수 외58(증거순번 12기록 2021번), 조국혁신당당(증거순번 12기록 2027번), 진보당당 외3(증거순번 12기록 2028번)의 고발 사건(2025형제5381)을 수사 중이었고, 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였다.

그러나 2024. 12. 13.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증거순번 1기록 2번), 2024. 12. 4.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 접수된 후 2024. 12. 16. 경찰청에 이송 접수된 정상윤의 고발(증거순번 1기록 29번), 2024. 12. 10. 이병헌의 고발(증거순번 1기록 136번), 2024. 12. 4. 부산서부경찰서에 고발 접수된 후 2024. 12. 16. 경찰청에 이송 접수된 공경훈의 고발(증거순번 1기록 140번)에 의한 사건(2025형제5769) 및 2024. 12. 10.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 접수된 후

2024. 12. 13. 경찰청에 이송 접수된 UJ의 고발(증거순번 1기록 292번)에 의한 사건 (2025형제5770)의 경우, 공수처의 이첩 요청일인 2024. 12. 9. 당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첩할 수 없었으므로, 위 사건은 이첩 대상 사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은 위와 같이 이첩 요청 이후에 접수된 고발장에 기하여 적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사건의 이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 중인 2024. 12. 3.~4.경 발생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내란 관련 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일체에 관하여 해당 사건(관련사건 포함)을 전부 이첩하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이첩 요청일 이후 접수된 고발 사건들도 이첩 대상 사건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5형제5769, 5770 사건의 고발인들은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의 고발인들과 다르고, 사건번호도 달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의하더라도 공수처는 ‘당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청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5형제5769, 5770 사건의 경우 공수처의 이첩요청 이후에 접수된 사건들이어서 이첩 요청 당시에는 이첩 요청을 받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그 이첩 요청 이후에 접수될 사건 일체까지 장래를 향하여 이첩을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수처가 경찰에 이첩을 요청한 사건의 범위에 이첩 요청일 이후 접수된 고발 사건들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은 “‘조지호, 김봉식 사건 기록’(증거순번 6기록)의 증거인 각 고발장(증거순번 6기록 1번 내지 4번)은 경찰이 2024. 12. 16.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 (2024

공제769호)의 증거인 각 고발장(증거순번 12기록 2020번, 2021번, 2027번, 2028번)과 동일하므로, 경찰은 공수처에 위 고발 사건을 이첩하여 해당 사건 자체를 종국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전한 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 대한 동일한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한 것이므로, 이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11.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을 긴급체포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여 2024. 12. 13.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첩요청 사건의 대상자에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만을 기재하고,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이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12기록 327번). 따라서 공수처가 경찰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 대한 사건의 이첩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경찰에 위 사건의 이첩의 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김용현 사경송치기록’(증거순번 3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찰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피고인 김용현을 구속하고, 이후 경찰로부터 피고인 김용현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송부 받아 증거로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① 김용현은 2024. 12. 8. 긴급체포된 후 2024. 12. 10.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고, 2024. 12. 26. 구속 기소된 사실, ② 경찰은 검찰이 김용현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 전까지 김용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 ③ 위 수사 당시 김용현의 공관에서 임의제출받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지연되어 김용현이 기소된 이후에 위 포렌식 절차를 마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한 사실, ④ 경찰은 2025.

1. 10. 위 추가증거에 관하여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경찰은 포렌식 절차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까지 지연됨에 따라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검찰에 위 증거들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증거수집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노상원 사건 기록’(증거순번 7기록), ‘김용군 사건 기록’(증거순번 8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노상원 사건 기록’, ‘김용군 사건 기록’에는 군검찰이 수집한 문상호 사건 기록, 주요 사령관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방첩사 체포조 진술서 등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증거들은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검찰이 불상의 경위로 군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증거로서, 이러한 증거들 및 이에 터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은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 적법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31조 제2항에 따라 임의수사의 일환으로서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으로부터 여인형 등 5명의 군검찰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적법하게 제공받았으므로, 위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균 및 그 변호인들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²¹⁾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의제출물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위 사람들에 대하여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물들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들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증거물의 임의제출에 관하여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임의제출자들이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받을 당시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으나, 임의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 및 회유 등 제출의 임의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잠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1)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변호사 김지미는 2026. 1. 2. 공판준비기일에 기존에 주장하였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주장은 변호인 의견서(42)에 포함된 별리 의견으로 같음하고 이에 빠져 있는 사항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노상원의 변호인 변호사 UK도 같은 의견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김용균 및 그 변호인은 당일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조서에는 피고인 김용균에 대하여도 같이 정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은 2026. 1. 7. 위 변호인의 의견서(42)에 서 증거능력을 다룬 개별 증거들의 목록을 밝히고, 위 변호인의 의견서(42)의 주장을 보충하는 내용의 변호인의 의견서(45)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변호인의 의견서(42)와 변호인의 의견서(45)에 기재한 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대검찰청예규 위반 주장²²⁾

가) 대검찰청예규 제27조 위반 관련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로 수집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해시값이 기재된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2024. 10. 1. 대검찰청예규 제1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대검찰청예규’라 한다) 제27조를 위반하였다.

(2) 관련 규정

대검찰청예규 제2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검찰청 예규

제27 조(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 20 조제 1항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 (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생성하고 별지 제 2호 서식의 "현장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
 2. 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 및 사용자
 3. 해시값, 해시함수명
 4.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
 5. 기타 원본성·무결성·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 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허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28조또는 제29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할 전자정보로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압수목록에 해당 전자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 사실을 추가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다.

22)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가, 대검찰청예규에서 몇 조에서 정한 어떠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수집된 모든 증거들에 위 위법성이 공통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16. 1. 7.자 변호인 의견서(45)].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영장에 기하여 반출하거나 임의제출 받은 후 포렌식 절차를 거쳐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대검찰청 예규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들이 포함된 각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대검찰청예규 제27조에서 정한 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대검찰청예규 제34조, 35조 위반 관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수사기관은 다수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탐색·복제·출력을 마친 후 이미지 파일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피압수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대검찰청예규 제34조, 35조를 위반하여 수집된 것이다.

(2) 관련 규정

대검찰청예규 제34조, 3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4 조(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 ① 제33 조에 의해 봉인을 해제한 이후에는 현장에서 기 생성한 이미지 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동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은 원칙적으로 제 1항에 따라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되었거나 새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진행하되, 제1항 단서와 같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직접 탐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탐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파일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한다.
- ④ 주임검사는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 1항의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 15 호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접근 통제 지휘" 서식을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송부한다.
- ⑤ 제4항의 경우, 주임검사등은 피압수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이미지 파일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한다.

제35조(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 ① 제34조에 따른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 8호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또는 제 27조제 1항에 따른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이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중간에 참관을 포기하고 퇴실하는 등으로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전자정보에 관한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후 피압수자등에게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대검찰청예규 제34조, 35조에서 정한 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또한 설령 수사기관이 일부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예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검찰청예규는 수사기관인 검찰청 내부적으로 전자정보 등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 업무의 처리기준과 방법 등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수집한 증거가 바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가 대검찰청예규를 위반하여 수집되어 증거능력 이 없고, 이와 같은 대검찰청예규 위반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위법한 압수·수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은 ① 이 사건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되었고, ② 수사기관은 혐의 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지 않고, 정보저장매체를 무분별하게 복제하였으며, ③ 수사기관은 무관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무관정보를 압수하였으므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거나 임의제출받아 위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는데,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압수 절차는 적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압수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혐의 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전자정보를 무분별하게 복제하였다거나 무관정보를 압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역시 위와 같은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정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단지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이거나 군사기밀과 관련된 자료로서 이를 증거로 수집하기 위하여는 군사기밀 보호법이 요구하는 특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위 자료의 보관 및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군

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²³⁾

기록	순번	증거명칭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이유
1	283-1	AY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	군사기밀에 해당함
2	274	KT 진술조서	진술자가 진술한 수도방위사령부의 업무, 편제, 대통령경호처 지원부, 각 대대의 인원 및 각 대대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미 설립목적, 수도방위 사령부의 위치와 예하 부대의 위치, 임무 수행을 위한 출동 시 소지해야 하는 장비들의 구체적인 내용, 폭발물처리반의 업무, 화생방대응팀의 업무는 군사기밀에 해당함
2	291	- 국방부장관실 약도	군사기밀에 해당함
2	297	- 지휘통제실 약도	군사기밀에 해당함
2	520	- “계엄 예상 못함” 문서 사본 1부	군사기밀 포함
2	562	- QL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캡처사 진 1부	QL의 동선(주유소 방문 등) 관련 자료, QJ의 통화 기록, 고무탄총 및 가스총 제원 자료는 군사 기밀에 해당함 그냥 매출전표 캡처 사진이어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567	Q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군사기밀에 해당함
2	64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군사기밀에 해당함
2	832	- QK가 AP 1차장실에서 작성한 메모 사본 1부	군사기밀에 해당함
2	833	- QK의 업무수첩 중 이 사건 관련 기재 메모 사본 1부	군사기밀에 해당함
2	834	- 2024.12.16. QK가 작성한 진술서 1부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15	- 출동 부대원 명단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35	- 안보폰(특임단장) 통화내역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86	- BH 비화폰 전체 통화내역 (2024.12.3.~12.5.) 사진 1매	군사기밀에 해당함
기록	순번	증거명칭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이유

23) 피고인김용현의변호인은RO에대한검찰진술조서(증거순번1기록191번), 박성하에대한검찰진술조서(제2회)(증거순번1기록 199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가정보활동 관련 사항의 누설 또는 절취’ 중 ‘국가원수 및 그 밖의 요인의 비공개행사의 누설 또는 유출’로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2	987	- L과의 통화내역 사진 2매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88	- DL특전여단 작전참모와의 통화 내역 사진 3매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89	- EC특전여단장과의 통화내역 (2024.12.4.) 사진 1매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90	- 특전사 참모장과의 통화내역 (2024.12.4.) 사진 1매	군사기밀에 해당함
2	1443	- 약식자력표(진술인 자력)	정보부대의 현직 지휘관 인물정보는 III급비밀에 해당함
2	1446	N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정보부대의 세부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III 급 비밀에 해당함
2	1501	- 카카오톡 대화내역	군사 작전 관련 내용
4	430	QJ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군사기밀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4	431	- 고무탄총 / 가스총 제원	군사기밀에 해당함
4	731	RK 진술서	진술자가 임의제출한 보안폰에는 군사기밀이 저장되어 있음
4	756	KV 진술서 사본	진술자가 진술한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전투부 대, 정보부대 및 군 방첩 업무 수행 부대의 현직 지휘관의 인물 첩보'는 III급 비밀에 해당함
4	824	RK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진술자가 임의제출한 보안폰에는 군사기밀이 저장되어 있음
4	1128-1	IR 휴대폰 메모	군사기밀에 해당함
4	1128-2	특전사령부 전투통제실 당시 배치	군사기밀에 해당함
4	1128-3	특전사령관 수첩 그림	군사기밀에 해당함
6	702	비화폰 통화내역 ²⁴⁾	군사기밀에 해당함
6	704	- BA 작성 진술서 1부	군사기밀에 해당함

24) 증거순번6기록702번은 '김철진에대한검찰진술조서(제2회)'인데, 그중31쪽에첨부된 '안보폰통화내역' 표를 다투는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기록	순번	증거명칭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이유
6	706	R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진술자가 진술한 수방사 예하 부대의 구체적인 편성, 개별 부대의 특수한 임무, 특수부대 운용 현황, 지휘관 실명 등 군사정보는 군사기밀에 해당함
7	331	- I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1	작전 관련 대화
7	662	2024. 9. 12.자 카카오톡 대화내 역(I, A)	작전 관련 대화
7	663	2024. 10. 5.자 카카오톡 대화내 역(I, H)	작전 관련 대화
7	664	2024. 10. 6.자 및 10. 11.자 카카오톡 대화내역(I, H, SW)	작전 관련 대화
7	665	2024. 12. 5.자 및 12. 9.자 카카오톡 대화내역(I, J)	작전 관련 대화
7	671	- 텔레그램 대화내역(A, I)	작전 관련 대화
8	587	- I 작성 선발인원 명단	정보부대의 세부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III 급비밀에 해당함
9	474	- 비공개 첨부자료	군사기밀에 해당함
10	803	KR 휴대폰 통화 녹취파일 CD 중 증인 진술 부분(통화녹음 AE경비 단 HF대장 KT 중령님 (07)_241203_222119 파일 등 12개 파일)	군인들이 작전 수행 과정에서 지휘·보고·상황 공유 목적으로 한 통화로서, 군사작전 수행과 직접 관련된 통신 내용이므로 군사기밀 또는 최소 한 군사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10	804	JZ 휴대폰 통화 녹취파일 CD 중 증인 진술 부분	군인들이 작전 수행 과정에서 지휘·보고·상황 공유 목적으로 한 통화로서, 군사작전 수행과 직접 관련된 통신 내용이므로 군사기밀 또는 최소 한 군사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위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I 급비밀, II 급비밀, III 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이 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기밀 보호법은 수사기관의 군사기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반드시 영장에 의하여만 이를 압수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 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사를 포함한

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6조).

(2) 비화폰과 비화폰 통화목록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 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이고,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²⁵⁾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수사기관이 군사기밀을 압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그 압수 과정에 특별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표 기재 증거들 중 비화폰 통화목록에 대한 영장에 의한 압수 또는 임의제출 방식에 의한 압수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은 각 비화폰 점유자로부터 각 점유자가 소유·소지 또는 관리하는 비화폰 원본 또는 비화폰 통화목록을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압수 이후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의 사후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거나 각 점유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비화폰 및 비화폰 통화 목록은 군사기밀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3) 위 표 기재 증거들 중 비화폰 통화목록 외 나머지 증거들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 할 자료가 없으므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그중 일부 증거들은

25) 다만, 군사기밀의 구체적인 등급은 불분명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위 증거들 중 일부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I 급비밀²⁶⁾ 26)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특별수사본부 구성원 전원(검사, 군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은 II급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압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검사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은 불법 긴급체포에 수반한 불법 압수이다. 검사는 전자정보만을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휴대전화 기기 자체를 전부 압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전자정보들까지 일괄적으로 압수하였으며, 텔레그램 등 대화 내역을 압수할 당시 대화 내역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캡처 파일을 만들어 대화 내역을 압수하여 증거를 조작했으므로 이러한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 검사는 전자정보 선별 절차 이

26)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①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I 급비밀: 군사기밀중누설될경우국가안전보장에치명적인위험을끼칠것으로명백히인정되는가치를지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세부 기준
1. I 급비밀	가. 비밀 군사동맹 추진계획 또는 비밀 군사동맹조약 나. 전쟁 계획 또는 정책 다. 전략무기 개발계획 또는 운용계획 라. 극히 보안이 필요한 특수공작계획 마. 주변국에 대한 우리 측의 판단과 의도가 포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전략

후에도 이미지 파일 전부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검사는 이미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재차 법원에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한다는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다시 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 번 선별적으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선별적으로 이미징을 하여 이미 영장 집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하고 비행기모드를 해제하자 새로운 자료들이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되었고, 검사는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전부 이미징하여 재차 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①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 혐의의 상당성),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체포의 필요성),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체포의 긴급성),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8. 검찰에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뒤 검사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7.경 가입해 있던 텔레그램 계정에서 탈퇴한 사정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비록 피고인 김용현이 당시 국방부장관에서는 퇴임하였으나 피고인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이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공범 또는 군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그들을 회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는 검사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방부장관에서 퇴임한 피고인 김용현이 한남동 공관촌에 있는 국방부장관 관사에 머무는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검사의 입장에서 불명확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는 수사기관이 함부로 진입할 수 없는 한남동 공관촌에 피고인 김용현이 숨어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한남동 공관촌에 거주하던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피고인 윤석열의 실력 행사로 저지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김용현이 도망할 염려가 있었다는 검사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 김용현이 검찰에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검사는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의 비호를 받는 피고인 김용현이 한남동 공관촌에 숨어서 검사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본 검사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검사의 긴급체포는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김용현은 변호인의 입회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이 당시 교부받은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에는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가 압수의 대상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김용현은 위 안내문에 서명 날인 하였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범행과 전혀 무관한 전자정보들까지 압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는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 내역을 압수할 당시 대화 내역을 스크린샷 방식으로 캡처하여 저장한 뒤 이를 압수하였는데, 그 이유는 포렌식 도구로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 내역이 추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검사는 휴대전화 내의 텔레그램 및 시그널앱 대화 내역을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입회하에 스크린샷 방식으로 캡처한 뒤 그 캡처 파일을 압수한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의 압수는 기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방법일 뿐 검사가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에 없었던 정보를 새로이 만들어서 압수한 것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검사가 선별 절차 이후에도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의 이미지 파일을 보관한 것은 피고인 김용현이 다투는 전자정보의 원본성 및 동일성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미지 파일의 보관은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34조 제4항이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은 검사가 이미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재차 법원에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한다는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 집행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란에는 “피의자 김용현의 휴대전화, 컴퓨터, 기타 정보기기로 로그인되어 있거나 로그인 가능한 텔레그램 및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의 원격지 서버 또는 2024. 12. 8. 임의제출한 휴대 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2024. 11. 1.부터 현재까지의 전자정보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발부된 영장 및 그 집행이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영장의 압수할 물건 란에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경우 피의자 김용현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로 위 각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전자정보를 다운로드한 후 이미징을 실시하거나 이를 출력·복사 또는 화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압수”라고도 기재되어 있고,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탐색 및 선별을 통해 최종적으로 증거를 압수해야 압수·수색이 종료되는 것이다. 검사는 2025. 1. 3.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선별적으로 이미징한 이후 텔레그램과 시그널 서버에 저장되어있는 전자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의 비행기모드를 해제하고 유심칩을

꽃아 텔레그램 및 시그널 메시지를 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뒤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전체를 이미징하였으며 선별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영장 집행 절차를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다시 그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 전화 내 전자정보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통화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들은 대부분 사본인데, 그 녹음파일 원본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원본과 대비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동일성, 무결성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녹음을 실행한 당사자 및 통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통화 녹음파일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다.

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들은 해시값을 확인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선별·추출 경위가 불명하며, 통화녹음파일들의 메타데이터는 복사, 전송, 저장 등의 과정에서 쉽게 변경될 수 있는 등 그 무결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데, 포렌식 이미징이나 해시값 등 무결성을 검증할 자료가 없다.

다) 결국 검사는 제출한 영상증거들에 대한 동일성, 무결성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검사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²⁷⁾

27) 한편,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은 2026. 1. 2. 제출한 변호인의 전서(42)에서 통화녹음파일과 함께 통화내역의 증거능력도 다 투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통화내역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인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통화내역은 통화녹음파일 사본과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통화내역에 관한 부분은 '기 타 증거의 증거능력' 항에서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시(Hash) 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 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참조).

다) 한편 이러한 동일성, 무결성²⁸⁾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참조).

3) 반효민 중령 휴대전화 내 녹음파일 16개 및 녹취록 16개(증거순번 10기록 23번)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반효민은 2024. 12. 3. 및 12. 4. 본인의 휴대전화로 수신한 통화를 녹음하였고,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의 파일명을 ‘날짜, 시간, 통화 상대방’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2) 반효민은 2024. 12. 26.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반효민은 본인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임의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수사관은 컴퓨터에 반효민의 휴대전화를 케이블로 연결하여 위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는 통화녹음파일 원본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통화녹음파일 사본(증거순번 10기록 23번)을 제출받았다.

(3)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번 1 내지 10, 15, 16 기재 각 녹음파일은 반효민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과 파일명, 녹음일시, 재생 시간, 마지막 수정시각, 파일크기가 전부 일치하였고,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녹음파일은 상세정보 중 파일명만 일치하지 않았다.

28) ‘동일성’이란 원본과 복제본 혹은 출력물 간, 또는 같은 저장매체의 압수·수색 당시와 증거로 제출될 때의 비교에 주목하는 개념이고, ‘무결성’이란 디지털증거의 압수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는 개념으로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증거로 현출되기까지 일련의 절차에서 그 증거가 변개, 훼손 등 인위적 개작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는 동일성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무결성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은 ‘원본성’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으나 판례가 요구하는 녹음파일, 영상증거 등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원본일 것’ 또는 ‘사본일 경우,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일 것’이라는 두 가지일 뿐이다.

순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23 파일명	휴대전화 내 파일명	녹음일시	재생 시간	마지막 수정시각	파일 크기
1	241203_2302(그룹 통화)	241203_2302(그룹 통화)	2024. 12. 3. 오후 11:02	4분 24초	2024. 12. 26. 오후 3:37	4.35MB
2	241203_2338(작 전참모)	241203_2338(작전 참모)	2024. 12. 3. 오후 11:38	34초	2024. 12. 14. 오전 11:33	596KB
3	241204_0016(작 전참모)	241204_0016(작전 참모)	2024. 12. 4. 오전 12:16	51초	2024. 12. 14. 오전 11:37	871KB
4	241204_0020(여 단장님)	241204_0020(여단 장님)	2024. 12. 4. 오전 12:20	22초	2024. 12. 14. 오전 11:42	401KB
5	241204_0031(작 전참모)	241204_0031(작전 참모)	2024. 12. 4. 오전 12:31	32초	2024. 12. 14. 오전 11:47	561KB
6	241204_0040(작 전참모)	241204_0040(작전 참모)	2024. 12. 4. 오전 12:40	23초	2024. 12. 14. 오전 11:49	415KB
7	241204_0049(작 전참모)	241204_0049(작전 참모)	2024. 12. 4. 오전 12:49	46초	2024. 12. 14. 오전 11:53	783KB
8	241204_0108(작 전참모)	241204_0108(작전 참모)	2024. 12. 4. 오전 01:08	1분 2초	2024. 12. 14. 오전 11:58	1.06MB
9	241204_0113(작 전참모)	241204_0113(작전 참모)	2024. 12. 4. 오전 01:11	39초	2024. 12. 14. 오후 12:02	681KB
10	241204_0115(작 전참모)	241204_0115(작전 참모)	2024. 12. 4. 오전 01:15	40초	2024. 12. 14. 오후 12:05	693KB
11	통화녹음EC특전 여단장 AL 준장님(50기, 94)_241204_01 4654	241204_0146(여단 장)	2024. 12. 4. 오전 01:46	44초	2024. 12. 14. 오전 11:30	763KB
12	통화녹음EC특전 여단장 AL 준장님(50기, 94)_241204_02 3930	241204_0239(여단 장)	2024. 12. 4. 오전 02:39	1분 21초	2024. 12. 14. 오전 11:26	1.36MB
13	통화녹음EC특전 여단장 AL 준장님(50기, 94)_241204_03 1113	241204_0311(여단 장)	2024. 12. 4. 오전 03:11	24초	2024. 12. 26. 오후 6:25	430KB
14	통화녹음EC특전 여단장 AL 준장님(50기, 94)_241204_03 3954	241204_0339(작전 참모)	2024. 12. 4. 오전 03:39	18초	2024. 12. 26. 오후 6:25	334KB
15	통화녹음EC특전 여단장 AL 준장님(50기, 94)_241204_03 4228	통화녹음EC특전여단 장 AL 준장님(50기, 94)_241204_03422 8	2024. 12. 4. 오전 03:42	3초	2024. 12. 26. 오후 6:26	83.99KB

순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23 파일명	휴대전화 내 파일명	녹음일시	재생 시간	마지막 수정시각	파일 크기
16	통화녹음EC특전 여단장 AL 준장님(50기, 94)_241204_12 4301	통화녹음EC특전여단 장 AL 준장님(50기, 94)_241204_12430 1	2024. 12. 4. 오후 12:43	52초	2024. 12. 14. 오후 12:06	881KB

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반효민의 통화녹음 파일 16개는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통화녹음파일 및 그 녹취서(증거순번 10기록 25번)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표 순번 1 내지 10, 15, 16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은 파일명을 포함한 상세정보가 전부 동일하다. 다만 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의 경우 파일명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반효민은 이 법정에서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누구 폰으로 전화가 왔었는지를 가지고 파일 제목만 수정하였다.’, ‘검찰 조사 이후 파일명을 변경한 것도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녹음 파일들을 제출하면서 파일을 편집하거나 녹음 내용을 변경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반효민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을 직접 복제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사본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수사기관이 각 통화녹음파일을 압수한 당시부터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될 때까지 위 통화녹음파일을 편집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3) 이에 관하여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은 “통화녹음파일의 ‘마지막 수정시각’은 녹음시작 시각인 녹음일시에 재생시간을 더한 시각이어야 하는데, 위 통화녹음파일들

의 ‘마지막 수정시각’은 그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동일성,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마지막 수정시각은 전자정보의 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로 보 이고, 이러한 변경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한다 는 동일성, 무결성의 판단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특히 반효민은 2024. 12. 26. 검찰 에 녹음파일 사본을 제출한 이후로 위 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의 파일 명을 변경하였는데, 위 표 순번 11, 12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은 검찰에 제출한 후 파일명 을 변경하였음에도 ‘마지막 수정시각’이 제출일 이전인 2024. 12. 14.인 점에 비추어 보 면, ‘마지막 수정시각’이 반드시 실제 수정시각과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각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반효민과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 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다.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 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 고 있고, 다만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의 원본과의 동 일성과 무결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RM 임의제출 통화녹음 파일 52개(증거순번 10기록 796번)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RM은 2025. 1. 21. 검사에게 RM 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52개를 휴대전화에서 이메일로 직접 첨부하여 전송 하는 방식으로 임의제출하였다(증거순번 10기 록 794번, 795번).

(2) RM은 2025. 1.경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52개를 복사하여 자택에서 사

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는데, 검사의 요청에 따라 2025. 9. 5. 위와 같이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던 통화녹음파일 사본 52개를 이메일을 통해 다시 제출하였다(증거순번 10기록 796번).

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RM 통화녹음파일 52개는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사인인 RM이 복사한 통화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시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RM의 각 통화녹음 파일 원본은 당초 RM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녹음파일이므로, 원칙적으로 각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하여야 한다.

(2) 그러나 RM은 이 법정에서 ‘각 통화녹음파일 원본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 통화녹음파일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은 ‘통화녹음파일 원본이 삭제된 경우에는 애초에 동일성, 무결성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본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원본의 해시값과 사본의 해시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용이한 방법이 될 것이기는 하나,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인위적 개작이

없이 원본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은 원본을 생성한 사람의 진술이나 복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진술, 심리의 경과 등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RM은 2025. 1.경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을 직접 자택 컴퓨터로 복사하여 보관하였으므로, 위 자택 컴퓨터에 보관하던 통화녹음파일 사본은 어떠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RM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사본을 그대로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통화 녹음 파일을 2회 제출하면서 변경이나 변개 등을 가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 ‘가지고 있는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통화녹음파일 사본의 복제, 저장, 보관 및 제출 과정에서 위 사본에 대한 편집이나 인위적인 개작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RM이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본 역시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볼 수 있다.

(4) 각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RM과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다.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5) 김의규, 윤태현의 각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10기록 803번, 804번)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김의규는 2024. 12. 12. 수사기관에 이메일을 통해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85개를

제출하였다(증거순번 2기록 1185번). 수사기관은 이를 CD에 저장하였고(증거순번 2기록 1184번), 각 통화녹음파일을 바탕으로 각 녹취록(증거순번 2기록 1100번 내지 1183번)이 작성되었다.

(2) 윤태현은 2024. 12. 20.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윤덕규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김동현 사용을 못하니, 카카오톡을 통해 너에게 내 휴대 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다운로드받아서 검찰에 메일로 보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윤덕규는 카카오톡을 통해 윤태현으로부터 위 녹음파일 22개를 전송받은 후 같은 날 검찰주사보 장수경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를 제출하였다(증거순번 2기록 1939번). 수사기관은 이를 CD에 저장하였고(증거순번 2기록 1940번), 각 통화녹음파일을 기초로 각 녹취록(증거순번 2기록 1917번 내지 1938번)이 작성되었다.

(3) 검사는 위와 같이 김의규로부터 제출받은 통화녹음파일 84개를 저장한 CD와 윤덕규로부터 제출받은 윤태현의 통화녹음파일 22개를 저장한 CD를 증거로 신청하였는데, 2025. 9. 17. 이튿날 예정된 증인 박진우, RK에 대한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각 CD 내에 통화녹음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증거순번 10기록 802번).

(4) 검찰은 김의규, 윤태현의 각 통화녹음파일을 별도로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던 12·3 비상 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위 통화녹음파일을 복사하여 각 CD에 저장한 후 위 CD를 2025. 9. 18. 추가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순번 10기록 803번, 804번).

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추가 증거로 제출한 김의규, 윤태현의 각 통화녹음파일이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인인 김의규, 윤덕규가 각 복사한 통화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시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의규가 2024. 12. 12.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사본의 원본은 김의규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 윤덕규가 2024. 12. 20. 제출한 윤태현의 통화녹음파일 사본은 윤태현의 휴대 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본 파일의 존재 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원본이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 해 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설령 김의규, 윤덕규가 각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추가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사본이 위와 같이 김의규, 윤덕규가 각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사본과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추가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보관하던 통화녹음파일 사본을 다시 복제한 재사본인데, 위 특별수사본부가 어떠한 경위로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여 보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특별수사본부가 보관하던 통화녹음파일 사본이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본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비록 박진우, RK, 송병규 등 위 통화녹음파일의 상대방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부 파일을 청취한 후 본인의 음성으로 본인이 말한 대로 녹음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편집이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을 그대로 복제한 사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추가녹음파일 사

본의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위와 같이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통화녹음파일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각 통화녹음파일 사본을 기초로 작성된 각 녹취록(증거순번 2기록 1100 내지 1183번, 1917 내지 1938번)은 그 기재가 통화녹음파일의 진술과 동일하게 녹취된 것인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4525 판결 등 참조).

6) 김창학의 통화녹음파일 62개(증거순번 2기록 656번, 1941번)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김창학은 2024. 12.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위 조사 당일 김창학은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제출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다가 포렌식 절차가 당일 내 마쳐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위 휴대전화를 반환 받았다(증거순번 2기록 229번).

(2) 김창학은 2024. 12. 9. 검찰에 출석하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증거순번 2기록 448번 내지 450번), 2024. 12. 17. 서울고등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진행된 위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복제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위 절차가 종료된 후 위 휴대전화를 반환받고 선별·압수된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목록을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았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선별, 복제 절차를 통해 김창학의 통화녹음파일 62개를 선별하여 압수하였다.

나) 위와 같이 ① 김창학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원본을 임의제출한 점, ② 김창학이 휴대 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복제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김창학의 통화녹음파일 62개가 선별·복제된 점, ③ 김창학은 이 법정에서 ‘통화녹음파일 62개에 대한 선별·복제 절차

에 참여하였고, 위 절차를 마친 후 전자정보 상세목록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위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 의하여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각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김창학과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김창학 통화녹음 파일 62개는 김창학의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내용대로 녹취된 각 녹취록(증거순번 2기록 657번 내지 697번)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은 “김창학이 2024. 12. 9. 검사 UL과 통화하면서 ‘오늘 저기, 이거 압수할 거나 임의제출 하면 포렌식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검찰이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위법하게 압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김창학은 이 법정에서 “위 대화 내용은 당시 UL 검사에게 ‘검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기로) 약속을 해냈기 때문에 경찰에다가 「(제출) 안 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라고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제출) 안 했으면 좋겠다.」)로,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의제출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검찰이 김창학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전화를 강제로 압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24. 12. 16.자 엄정섭 진술조서 붙임문서 중 특임대대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취록 참고자료 수정본 1부(증거순번 2기록 977번, 증거순번 4기록 순번 823번)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엄정섭은 2024. 12. 16.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을 직접 청취하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였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전체 통화녹음파일 분량을 작성하지 못하였다. 엄정섭은 당일 군검찰에 위와 같이 일부 작성한 12쪽 분량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2) 엄정섭은 군검찰 조사를 마친 후 따로 위 통화녹음을 마저 청취하여 15쪽 분량의 녹취록을 완성하였고, 2024. 12.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위 녹취록[증거순번 2기록 977번(증거순번 4기록 순번 823번)]을 제출하였다. 엄정섭은 2024. 12. 18. 군검찰에도 위와 같이 완성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취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녹취록이 통화녹음파일의 진술과 동일하게 녹취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녹취록의 기초가 되는 통화녹음파일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위 녹취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녹취록은 본인이 직접 청취하여 작성한 것이다.’라는 엄정섭의 진술만으로는 위 녹취록이 그 기초가 되는 통화녹음파일의 진술과 동일하게 녹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8) 나머지 통화녹음파일에 관한 판단

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통화녹음파일들

(1) 아래 표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의 경우,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각 통화녹

음파일이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아래 표 기재 각 녹취록의 경우, 그 녹취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녹취록이 통화녹음파일의 진술과 동일하게 녹취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1587	- AL - KS 통화 녹음과 일 CD 1부	기록에 의하면, ① AL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원본을 임의 제출한 사실, ② AL은 위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선별, 복제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AL의 통화녹음파일이 선별·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① 위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 의하여 휴대 전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각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다라도 AL과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는 점, ③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통화녹음파일은 AL의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1663	- AL 휴대 전화 멀티 미디어 통화 기록 (에이닷 통화 녹음) CD 1개 ²⁹⁾	
2	2110	- 무전기록 저장 CD	① 위 무전기록은 202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2024. 12. 19. 서울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은 자료 인 점, ② 위와 같은 임의제출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무전기록은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24	- 서울경찰청 경비지휘망	① 위 녹취 파일들은 경찰청 안보수사단이 서울경찰청 정

29) 피고인김용현의변호인은증거순번4기록1661번, 1662번에대하여도이부분에서함께다투는취지인것으로보이나[변호 인 의견서(45)], 위 증거들은 메시지 내역이고 통화녹음파일이 아니므로 판단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녹취 파일 CD 1장	보화장비과장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회신 받은 자료인 점, ② 위와 같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각 녹취파일 CD는 봉인되어 있고, 그 봉인 테이프 위에 각 회신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제출 과정에서 봉인이 해 제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녹취파일은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25	－ 기동본부망 녹취 파일 CD 1장	
6	26	－ 영등포서망 녹취 파일 CD 1장	
6	352	－ 녹취속기록(D-BE, 2024. 12. 3. 19시 40분)	각 녹취록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6기록 366 번)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각 통화녹음파일의 녹취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녹취록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6	353	－ 녹취속기록(D-BE, 2024. 12. 3. 19시 54분)	
6	354	－ 녹취속기록(BE-CK, 2024. 12. 3. 19시 55분)	
6	355	－ 녹취속기록(BE-CK, 2024. 12. 3. 20시 09분)	
6	356	－ 녹취속기록(CK-BE, 2024. 12. 3. 20시 24분)	
6	357	－ 녹취속기록(BE-CK, 2024. 12. 3. 20시 32분)	
6	358	－ 녹취속기록(BE-CK, 2024. 12. 3. 21시 16분)	
6	359	－ 녹취속기록(D-BE, 2024. 12. 3. 21시 50분)	
6	360	－ 녹취속기록(D-BE, 2024. 12. 3. 22시 25분)	
6	361	－ 녹취속기록(D-BE, 2024. 12. 3. 22시 30분)	
6	362	－ 녹취속기록(D-BE, 2024. 12. 3. 22시 32분)	
6	363	－ 녹취속기록(BE-DB, 2024. 12. 3. 22시 40분)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6	364	- 녹취속기록(UM-BE, 2024. 12. 4. 00시 28분)	
6	366	- 녹취파일 저장 CD	기록에 의하면, ① BE는 2024. 12. 11.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원본을 임의제출한 사실, ② BE는 위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선별·복제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위 절차에서 BE의 통화녹음파일이 선별·복제된 사실(증거순번 10기록 1082번 내지 1087번)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위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 의하여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BE와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통화녹음 파일은 BE의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	130	- LR의 통화녹음 파일 (2개) 저장 CD 1매	기록에 의하면, ① 김사는 압수영장에 기하여 LR 소유 휴대 전화를 압수한 사실, ② 위 압수영장에 기하여 위 휴대 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선별·복제 절차를 진행한 사실(증거순번 10기록 280번, 281번)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수사기관은 위 절차에서 LR의 통화녹음 파일을 압수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 의하여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LR과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통화녹음파일은 LR의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	672	- 녹취록 음성파일 CD 사본 1장	기록에 의하면, ① F는 2024. 12. 6.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원본을 임의제출한 사실, ② F는 2024. 12. 16. 위 휴대전화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화 내 전자정보의 선별·복제 절차에 참여한 사실, ③ F의 통화녹음파일이 선별·복제된 사실(증거순번 10기록 673번)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위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 의하여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F와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통화녹음파일은 F의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	742 ³⁰⁾	- 녹취서 작성 보고 1부 및 음성파일 녹취서 97부 (대상자별)	각 녹취록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10기록 672번)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각 통화녹음파일의 녹취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녹취록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0	743	- 녹취서 작성 보고 1부 및 음성파일 녹취서 97부 (시간순서별)	
10	800 ³¹⁾	- 녹취서 작성 보고 1부 및 음성파일 녹취서 78부 (대상자별)	각 녹취록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6기록 366번)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각 통화녹음파일의 녹취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녹취록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0	801	- 녹취서 작성 보고 1부 및 음성파일 녹취서 78부 (시간순서별)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통화녹음파일들

(1) 아래 표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의 경우, 아래 표 ‘판단’ 란 기재와 같이 각 통화녹

30)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은 증거순번 10기록 740번, 741번에 대하여도 이 부분에서 함께 다루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번호 인 의견서(45)], 위 증거들은 통화 녹음 상세목록이고 통화녹음파일이 아니므로 판단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31)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은 증거순번 10기록 798번, 799번에 대하여도 이 부분에서 함께 다루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번호 인 의견서(45)], 위 증거들은 통화 녹음 상세목록이고 통화녹음파일이 아니므로 판단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음파일이 원본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사본일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취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녹취록이 통화녹음파일의 진술과 동일하게 녹취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통화녹음파일을 기초로 작성된 각 녹취록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579	- 전화녹음 파일 녹음 CD 1매	MS은 2024. 12. 13.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LY와 통화한 통화녹음파일 4개를 임의제출하였다(증거순번 2기록 578번). MS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통화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본인이 녹음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이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순번 10기록 292번), 위 진술만으로는 각 통화녹음파일이 원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1358	- MK 소령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15개를 저장 한 CD 1매	기록에 의하면, MK은 2024. 12. 13. 검찰에 이메일을 통해 통화녹음파일 15개를 임의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MK은 이 법정에서 각 통화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본인의 음성이 맞고, 본인이 말한 대로 녹음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순번 10기록 601번), 위 진술만으로는 각 통화녹음파일이 원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1361	- 녹취서(MK, UN)	각 녹취록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2기록 1358번)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녹취록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1362	- 녹취서(MK, ST)	
2	1363	- 녹취서(MK, UN)	
2	1364	- 녹취서(MK, MI)	
2	1365	- 녹취서(MK, LA)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1366	- 녹취서(MK, UN, 남자1)	
2	1367	- 녹취서(MK, MI)	
2	1368	- 녹취서(MK, UN)	
2	1369	- 녹취서(MK, UN)	
2	1370	- 녹취서(MK, UN, 남자1)	
2	1371	- 녹취서(MK, UN)	
2	1372	- 녹취서(MK, UN)	
2	1373	- 녹취서(MK, DR)	
2	1374	- 녹취서(MK, ST)	
2	1375	- 녹취서(MK, DR)	
2	1662	- CL 증령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33개를 저장한 CD 1매 ³²⁾³³⁾	CL는 2024. 12.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통화녹음과 일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CL는 이 법정에서 '본인의 음성이 맞고, 본인이 말한대로 녹음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통화녹음파일은 자동 녹음된 것이고, 수사기관에 통화녹음파일을 제출하면서 과 일을 편집하거나 녹음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진술 하였으나,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진술만으로는 각 통화녹음파일이 원 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33	- AM 특전항공단장의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19개를 저장한 CD 1매	AM은 검찰, 군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통화 녹음파일을 임의제출하였다. AM은 이 법정에서 각 통화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본인의 음성이 맞고, 본인이 말한 대로 녹음되어 있다.'라고 진술 하였으나,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진술만으로는 각 통화녹음파일이 원 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438	- RJ 임의제출 통화녹음 파일 CD	RJ은 2024. 12. 23. 군검찰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통화녹음파일을 군수사관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임의제출하였고, 검사는 이를 CD에 저장하여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위 통화녹음파일의 원본은 RJ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고, 원본과 위 사본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 통화녹음파일에 관하여 원본과 직접 비교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RJ이 이 법정에서 각 통화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본인의 음성이 맞고, 본인이 말한대로 녹음되어 있다.’, ‘위 통화녹음파일은 자동녹음된 것이고, 수사기관에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면서 파일을 편집하거나 녹음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만 으로는 각 통화녹음파일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	518	- 녹음파일 6개 저장 CD 1매	LW은 2025. 2. 3.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 내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6개를 임의제 출하였다 (증거순번 10기록 517번).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파일이 원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한 사본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CCTV 영상 등 영상 증거 및 그 캡처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각 CCTV 영상 등 영상 증거(이하 ‘영상 증거’라 한다)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전자정보인데, 위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해시값 생

32) 김형기는 2024. 12. 16. 공수처에 통화녹음파일 35개(증거순번 12기록708번)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33개는 위 증거순번2기록 1662번 증거와 동일하다. 위 통화녹음파일을 임의제출 할 당시 공수처는 각 통화녹음파일에서 해시값을 추출하여 김형기가 이를 확인하고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무인하였고, 공수처는 김형기에게 해시값이 기재된 압수목록 교부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수처에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은 압수 당시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12기록 703번 내지 707번). 김형기는 이 법정에서 ‘위 통화녹음파일들은 본인의 음성이 본인이 말한 대로 녹음되어 있고, 본인이 제 출한 파일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위 공수처가 압수한 통화녹음파일은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3) 또한 김형기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직접 통화음성파일을 들으면서 2024. 12. 3. 22:28경부터 12. 4. 01:19경까지 이상현 등과 통화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후 이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휴대전화 통화내용 시간순 정리자료’로 제출하였다 (증거순번 2기록1380번). 이부분증거는진술서에준하는것으로 김형기가직접이법정에서 그진정성립과임의성등을 진술 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출된 영상이 원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이를 출력·복제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예규 제34조, 35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각 영상 증거는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각 영상 증거의 원본 동일성, 무결성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각 영상 증거를 촬영하거나 캡처한 사진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앞서 본 (대화에 관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는 영상 증거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각 영상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각 영상 증거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

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나)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되는 증거들

아래 표 기재 각 영상 증거(CCTV 영상 제외)의 경우, ① 아래 표 ‘압수·캡처 경위’란 기재와 같은 압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각 영상 증거는 원본이거나 사본인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② 각 해시값이 보존되어 있고 증거로도 제출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편집·조작할 가능성은 낮은 점, ③ 각 제출자가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유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사후적으로 각 영상 증거를 조작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④ 그 영상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각 영상 증거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영상 증거는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아래 표 기재 각 캡처 사진의 경우, 그 기초가 된 각 영상 증거가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고, ‘압수·캡처 경위’란 기재와 같이 각 캡처 사진은 관련 부분을 그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편집하거나 개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각 캡처사진의 경우에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2	374	- 선관위 CCTV 영상 저장매 체 3개(별권첨부)	기록에 의하면,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 12. 9.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협조를 의뢰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과천청사의 CCTV 영상 사본을 USB에 저장된 형태로 임의제출받은 사실(증거순번 2기록 366번 내지 373번), ② 위와 같이 CCTV 영상을 외장하드에 복제 하면서 해시값을 추출하였고, 피압수자들은 그 해시값을 확인한 후 위 해시값이 기재된 현장조사 확인서 또는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증거순번 10기록 1321 내지 1335)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2	948	- 국회 CCTV 영상파일을 저장한 CD 1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 12. 17. 국회로부터 CCTV 영상을 USB에 저장된 형태로 임의제출받았다(증거순번 944 내지 947).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국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 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할 수 있다.
4	164	합참 전투통제실 앞 CCTV 캡처사진	OK에 대한 조사 시 제시한 자료로서, CCTV 영상(증거 순번 9기록 481번) 중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에 OK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4	224	- 합참 CCTV 캡처사 진	Z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제시한 자료로서, CCTV 영상 (증거순번 9기록 481번) 중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4	692	CCTV영상 캡처사진	위 증거순번 4기록 224번과 동일한 사진으로서, 검사는 당초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중복하여 증거로 신청하였다가(증거순번 4기록 689번) 철회하였는데, 제 시자료로 사용하였던 캡처사진은 그 제출을 철회하지 않았다. 위 증거순번 4기록 224번과 같은 이유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6	97	- 국회경비대 상황 실 CCTV 촬영 사진	KG에 대한 조사 시(증거순번 6기록 94번) 제시한 참 고자료로서, CCTV 영상(증거순번 6기록 909번) 중 관련 부분을 그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6	455	- CCTV 영상자료 화면자료 사진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16. 국회사무처에 수 사협조를 의뢰하여 국회 내 CCTV 영상(증거순번 6기록 456)을 임의제출받아 해시값을 추출하고 피압수자 에게 그 해시값을 기재한 전자정보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며, 피압수자가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증거순번 6기록 453번, 454번). 증거능력 인정된다.
6	456	- 국회의사당 1·2·3·6번문 CCTV 영상 자료 복제본	위 CCTV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55번)은 위 영상 사본 중 관련 부분을 그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6	465	- 첨부 사진 및 동영 상 저장 CD	기록에 의하면, CK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복제 절차를 진행하여 CK이 카카오톡으로 수신 한 위 사진 및 동영상의 선별,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압수 절차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진 및 동영상은 위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의 동일성이 인정 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6	902	12. 3. 국회 주 변 3개소 CCTV 영 상 파일(1개)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6. 영등포구청 통합 관제센터로부터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았고, 해시값 을 추출하여 기재한 전자정보 확인 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하였으며, 위와 같이 압수한 디지털 증거 물을 봉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6기록 895번 내지 901번). 증거능력 인정된다.
6	909	- 12. 3.~12. 4. 국회 경비대 CCTV 영상 파 일 7개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6. 국회경비대로부터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았고, 해시값을 추출하여 기재한 전자정보 확인 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을 교부하였으며, 위와 같이 압수한 디지털 증거 물을 봉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6기록 905번 내지 908번). 증거능력 인정된다.
7	148	- CCTV 영상 파일 등 CD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7. 남태령 주유소 관 리인으로부터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고, 위 압수 당시 해시값을 추출하였 으며 위 주유소 관리 인이 해시값을 확인한 후 위 해시값이 기재된 전자 정 보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위 주유소 관리인에게 전 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7기록 146번, 147번). 증거능 력 인정된다.
7	284	- A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촬영 사진	경찰이 2024. 12. 14.경 A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 한 사진으로서, 위 CCTV 영상이 증거 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 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해당 동영상 원 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 이고, 사진을 촬영한 경위, 조작 가능성, 사진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7	360	- IM IN점 CCTV 영 상분석	위 사진은 IM IN점 CCTV 영상(증거순번 960) 중 관련 부분을 그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 된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7	550	- A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촬영 사진 사본	위 사진(A 증거목록 순번 284)의 사본으로서 같은 이 유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7	598	- CCTV 영상 캡처 화면(UO 공영주차장 등)	A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 시 제시한 자료로서 2024. 11. 30자 CCTV 영상(증거순번 7기록 949번) 을 캡처한 사진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용산구청에 CCTV 영상자료 조회를 신청하여 위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해당 동영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사진을 촬영한 경위, 조작 가능성, 사진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7	626	- 2024. 12. 1. IM IN점 CCTV 영상 캡처 화면	A에 대한 2025. 1. 7. 조사 과정에 제시한 자료로서, IM IN점 CCTV 영상(증거순번 960) 중 관련 부분을 그 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7	628	- 2024. 12. 3. IM IN점 CCTV 영상 캡처 화면	
7	734	- UO공영주차장 CCTV 영상 USB	검찰은 2025. 1. 15.경 용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UO공영주차장의 2024. 11. 19.자 CCTV 영상, 2024. 11. 22.자 CCTV 영상, 2024. 12. 1.자 CCTV 영상, 2024. 12. 3.자 CCTV 영상을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7	949	- 용산구청 CCTV 영상 CD	경찰은 용산구청관계센터에서 2024. 11. 30. UO 공영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주차장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용산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7	960	IM CCTV 영상 등 USB 및 DQ 회신자료 CD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① 2024. 12. 14. IM IN점에서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증거순번 12 기록 3250번 내지 3256번), ② 2024. 12. 15. IM IN점에서 2024. 12. 3.자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증거순번 7기록 294번, 295번), ③ 2024. 12. 17. IM IN점에서 2024. 12. 1.자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증거순번 7기록 342번, 343번), ④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각 CCTV 영상을 압수할 당시 CCTV 영상에서 해시값을 추출하였고, 이를 기재한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각 피압수자로부터 서명을 받고 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8	592	-CCTV 캡처사진(기록 제2504 쪽)	B에 대한 피의자신문(제3회) 시 제시한 자료IM IN점 CCTV 영상(증거순번 7기록 960번) 중 관련 부분을 그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9	426	- 경찰청 CCTV 캡처 사진 (37장) 출 력물 19장	경찰청에서 압수한 CCTV 영상(증거순번 9기록 427번) 중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원본과 대조하여 볼 때 동일성 인정되고,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의 장면을 캡처하여 임의제출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9	427	경찰청 전직원 출입기록 엑셀 파일 1개, 통화내역(LK, LL, E 착발신) 엑셀 파일 3개, 경찰청 CCTV 발취 동영상 12개 각 저장 CD 1개	경찰은 2024. 12. 17.경 경찰청 엘리베이터 내부와 1층 로비를 촬영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아 압수 하였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9	461	2024. 12. 3. 23:31경 ‘합참 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UP에 대한 2025. 2. 11. 조사 시 제시한 자료로서, CCTV 영상(증거순번 9기록 481번) 중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9	462	2024. 12. 4. 01:51경 ‘합참 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9	463	2024. 12. 3. 23:50경 ‘합참 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9	464	2024. 12. 3. 23:54경 ‘합참 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9	467	2024. 12. 4. 00:46경 ‘합참 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9	481	2024. 12. 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합참 전투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CD 2장	
			기록에 의하면, ① 합동참모본부 중령 TO은 2024. 12. 12. 경찰에 ‘2024. 12. 3. 20:00~2024. 12. 4. 04:30 간의 합참 지하 3층 전투통제실 입구 CCTV 영상이 담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긴 “전투통제실 CCTV 비공개 업무자료”라고 적시된 삼성 외장하드 1개를 임의제출한 사실, ②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포렌식 수사관 경위 UR이 TO과 참여인 서기관 UQ에게 위 외장하드 내 전자정보에 대한 해시 값 생성 절차를 설명한 사실, ③ UR은 포렌식을 위해 이용 중인 노트북 바탕화면에 외장하드 파일을 저장한 뒤 해당 파일에 대한 사본 이미지 생성 및 해시값을 산출하고 바탕화면에 저장된 파일은 직접 참여하여 삭제 절차를 진행한 사실, ④ UR은 US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정보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하고 선별은 마친 사실, ⑤ UR은 선별한 전자정보를 USB에 저장하고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1부는 TO에게 교부하고 1부는 전자정보 확인서 뒷면에 첨부하였으며, TO이 임의제출한 외장하드 원본은 봉인한 후 서명을 받은 사실, ⑥ 경 찰은 임의제출 받은 자료에 대해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한 후 TO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목록 12기록 순번 2204 내지 2210). 증거능력 인정된다.
9	537	－ 2025. 2. 12. 제출 국회의 사당 지하1층 CCTV 영상 CD 1부	국회사무처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CCTV 영상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국회사무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 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9	538	－ 2025. 1. 23. 제출 특임대 CCTV 영상 CD 1부	
9	694	－ USB 1개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2025. 2. 13. 국회사무처에서 CCTV의 샌디스크 USB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전자 정보를 추출한 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사실, 위 압수 과정에 제출자가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 순번 9기록 523번). 증거능력 인정된다.
9	701	－ 경찰청 CCTV 동영상 캡처	경찰청에서 압수한 CCTV 영상(증거순번 9기록 427번)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사진 14장(8쪽)	에서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원본과 대조하여 볼 때 동일성 인정되고,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의 장면을 캡처하여 임의제출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9	705	- AL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 2025. 1. 23. 제출 공수부대 CCTV 저장 CD 1장	국회사무처가 2025. 1. 23. 검찰에 임의제출한 국회 CCTV 영상이다(증거제목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국회사무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9	725	- 국회회신 CCTV CD 1장	국회사무처가 2025. 1. 17. 검찰에 제출한 CCTV 영상이다(증거순번 9기록 723번, 724번).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국회사무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49	- 경찰청 엘리베이터(북관 9 호기) CCTV 발췌 사진 3장	경찰청에서 압수한 CCTV 영상(증거순번 9기록 427번)에서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원본(동영상)과 대조하여 볼 때 동일성 인정되고, 경찰 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의 장면을 캡처하여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 이 나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53	- '24. 12. 3. 23:08경 및 '24. 12. 4. 01:32경 DD 속보 화면 캡처 사진 2장	SN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시한 자료로서, 'DD' 뉴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진의 기초가 되는 뉴스 영상의 특성상 그 원본을 제출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제출 경위, 영상을 캡처한 이유나 동기, 달리 이를 편집하거나 조작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96	- 임의제출 CCTV 영상 CD 6 장	국회사무처가 2025. 4. 9. 검찰에 USB에 저장하여 임 의제출한 CCTV 영상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국회사무처에 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 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 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98	- 2025. 4. 9. 국회 사무처 제 출 「계엄 군 민간인 상대 물 리력 행사」 CCTV 영상 CD 1 장	국회사무처는 2025. 4. 9. 검찰에 국회 CCTV 영상을 저장한 CD를 임의제출하였는데(증거순번 10기록 96 번), 위 CD 내 CCTV 영상은 원본 CCTV 영상을 특정 부분으로 나누어 별개의 파일로 저장한 (긴 영상의 특 정 부분을 나누어 편집한 것이기는 하나 영상 자체를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편집하지 않았고, 어느 부분인지 그 시간대 등이 명확 하게 나타난다) 것으로 보인다. 원본(원 동영상)과 대조하여 볼 때 동일성 인정되고, 국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의 장면을 위와 같 이 편집하여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 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 라도 영상 자체에 대한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부 분이 없고 (어디를 어떻게 편집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 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123	－ 경찰청 엘리 베 이터(북관 9호기) CCTV 발췌 사진 3장 (2024. 12. 3. 23:51경 2장, 23:54경 1장)	증거순번 10기록 순번 49번과 동일한 사진으로서, 같 은 이유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0	509	－ ‘합참 전투 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화면(2024. 12. 3. 23:31)	KB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 제시한 사진으로, CCTV 영상(증거순번 9 기록 481번) 중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10	510	－ 2024. 12. 3. 23:34경, 23:36경, 23:40경, 23:48경 DD 보도 영상 캡처	KB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 제시한 사진으로, ‘DD’ 뉴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진의 기초가 되는 뉴스 영상의 특성상 그 원본을 제출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제출 경위, 영상을 캡처한 이유나 동기, 달리 이를 편 집하거나 조작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705-1	CCTV 캡처사진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ZX 이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본(동영상)과 대조하여 보았을 때 동일하고, 제출 경 위, 영상을 캡처한 이유나 동기, 달리 이를 편집하거나 조작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조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작이나 편집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김 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706-1	CCTV 캡처사진	국회사무처가 2025. 2. 14. 제출한 2024. 12. 4. 01:00 경 국회 본관 지하 1층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QH이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본(동영상)과 대조하여 보았을 때 동일하고, 제출 경 위, 영상을 캡처한 이유나 동기, 달리 이를 편집하거나 조작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조 작이나 편집의 흔 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김 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 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다)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

아래 표 기재 각 영상 증거의 경우, 아래 표 ‘판단’ 란 기재와 같이 각 영상 증거가 원본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사본일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위 영상 증거를 촬영하거나 캡처한 사진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아래 표 기재 각 사진 중 해당 영상 증거의 내용과 동일하게 촬영 또는 캡처된 것인지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627	- DF특수임무단장 AO 기자 회견 영상 첨부 CD 1매	위 영상의 촬영 및 제출 경위, 사본일 경우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151	- 00여단 CCTV 출력물 10매	검사는 2026. 1. 18. 정보사령관실로부터 CCTV 영상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화면을 촬영한 사진 출력물을 임의제출받았다(증거순번 5기록 149번, 150번). 그러나 위 증거는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출력물이 CCTV 영상 원본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인지 여부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844	- 선관위 관악청사(외곽 CCTV 캡처) 2매	증거순번 6기록 32번 사진을 복사한 사진으로 보이고, 같은 이유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847	- 국립농업박물관 관람객 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기록에 의하면, ① 경찰은 2024. 12. 6. 농업박물관으로부터 CCTV 영상 복제하여 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 ② 위와 같은 압수 과정에서 농업박물관 보안 담당자가 참여한 사실, ③ 압수 과정에서 CCTV 영상의 해시값을 추출하였고, 위 보안 담당자는 해시값을 확인한 후 해시값이 기재된 전자정보 확인서에 및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③ 위와 같은 압수 후 USB 봉인 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6기록 423번 내지 429번, 증거순번 12기록 2697번 내지 2703번).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캡처 사진 출력본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CCTV 영상 사본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32	- 관악구 관제센터에서 압수한 CCTV 영상 캡처 화면	경찰은 2024. 12. 7. 서울 관악구 관제센터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외곽 CCTV 영상을 압수하고(증거순번 12기록 2690번 내지 2696번), 그중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캡처 사진 출력본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CCTV 영상 사본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33	- DS UT 영상 다운로드 캡처 사진	UT에서 다운로드 받은 DS 영상(증거순번 6기록 36번) ³⁴⁾ 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이는데, 위 영상이 원본 영상과 동일한지 여부 및 캡처 사진이 영상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40	- 뉴스 영상 캡처 사진	RF가 2024. 12. 8.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제시한 자료로서, 'UU'의 뉴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진의 기초가 되는 뉴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캡처 사진이 영상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42	- 뉴스 영상 캡처 사진	
6	200	- CCTV 캡처 사진	서울경찰청은 2024. 12. 12. UV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증거순번 6기록 198번) CCTV 영상을 시청하고 관련 부분을 촬영 또는 캡처하였다. 위 사진은 CCTV 영상(증거순번 6기록 463번) 중 관련 부분을 촬영하거나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CCTV 영상이 원본인지, 또는 사본이라면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한 것인지 여부를 증명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368	-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앞 CCTV 출력물	LO에 대한 조사(증거순번 6기록 367번) 시 제시한 자료로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CCTV 영상 중 관련 부분을 캡처하여 출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캡처 사진 출력본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 되는 CCTV 영상 사본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430	- CCTV 캡처 사진 출력본	증거순번 5기록 847번 사진과 같은 이유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441	- CCTV 캡처 사진 출력본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선거연수원으로부터 CCTV 영상 5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고, 해시값을 추출하여 기재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6기록 434번 내지 440번 ³⁵⁾).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캡처 사진 출력본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되는 CCTV 영상 사본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인지 여부 를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463	- 삼청동 UV 주차장 CCTV 저장 CD	기록에 의하면, 서울경찰청은 2024. 12. 12. UV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CCTV 영상을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 순번 6기록 198번).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원본인지, 또는 사본이라면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한 것인지 여부를 증명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834	- JD의 UW 블랙박스 캡처 화면	J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위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위 블랙 박스 영상이 원본인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인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캡처 사진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961	서울 용산구 소재 UX빌딩 CCTV 영상 CD	경찰은 UX빌딩 방제실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그 압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위 CD 내 CCTV 영상 사본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962	용산구청 CCTV 영상 CD	경찰이 용산구청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2024. 12. 1.자 CCTV 영상, 2024. 12. 2.자 CCTV 영상)으로 보이는데, 그 압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위 CCTV 영상이 원본인지, 또는 사본이라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963	용산구청 및 UO공영주차장 CCTV 영상 CD	경찰이 용산구청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으로 보이는데, 그 압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위 CCTV 영상이 원본인지, 또는 사본이라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985	- UY 및 UZ CCTV 영상 CD	경찰이 UY, UZ에서 각 압수한 CCTV 영상으로 보이는 데, 그 압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위 CCTV 영상이 원본인지, 또는 사본이라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 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9	558	- 경찰청 CCTV(화질개선 동 영상) 캡처 사진 8장	경찰청 CCTV 영상(E 증거목록 순번 427)의 화질을 개 선한 영상을 다시 캡처한 사진이다. 위 캡처 사진의 기초가 되는 화질이 개선된 CCTV 영 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아 위 경찰청 CCTV 영 상(증거순번 9기록 427번)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 동일성이 인정된 다고 하더라도 위 CCTV 영상(증거순번 9기록 427번) 역시 원본 CCTV 영상과의 동 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 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 초로 한 캡처 사진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전자정보를 캡처하거나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대화내역(이하 ‘메신저 대화내역’이라 한다)은 서버 및 단말기에 분산 저장되는 전자정보로서 원본 데이터를 특정하고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는 원본 확보 또는 단말기 전체에 대한 이미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 대화내역들에 대한 원본 확보나 이미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본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메신저 대화내역은 휴대전화의 스크린샷 기능을 사용하여 화면을 캡처하거나, 위 대화내역 화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 형태로 제출되었고, 이를 이 메 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되었다. 이처럼 대화내역 화면을 캡처하거나 위 화면

34) 피고인김용현의변호인은2026. 1. 2.자변호인의견서(45)에서DSUT영상다운로드캡처사진(조지호증거목록순번33)에대 하여는증거능력을 다투면서도, 위 캡처 파일의 기초가 된 유튜브 영상 CD(같은 목록 순번 36)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5) 증거목록 12기록 2140 내지 2146번의 사본으로 보인다.

을 촬영한 사진, 이를 출력한 문서는 모두 원본 전자정보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것으로서 2차 생성물에 해당하므로, 작성자, 생성 시점, 변경 이력 등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검사가 휴대전화기의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각 증거들의 경우, 아래 표 ‘판단’ 란 기재와 같이 각 캡처 또는 촬영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가 저장 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각 사진을 캡 처하거나 촬영한 사람은 이를 그대로 캡처하거나 촬영한 것이어서 제출된 사진의 영상 이 각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되었던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 또한 증명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225	- 계엄 선포문 촬영 사진 출 력본 1부	AZ는 2024. 12. 8. 검찰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사진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임의제출하였다. AZ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의하여, 위 사진의 원본으로 보이는 사진(증거순번 9기록 516번)이 압수되었고, 위 원본 사진과 비교하였을 때에 어떠한 개작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AZ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수사기관에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사진과 포렌식 절차에 의해 압수된 사진은 동일한 사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진은 실제 AZ의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1582	- 위 통화 중 전송된 현장 사진 및 지도 캡처파일 총 4부	AL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2024. 12. 18. 위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복제 절차를 진행하여 위 캡처사진을 압수하였다(증거순번 2기록 1661번 내지 1663번). 위 사진은 위 포렌식 절차에서 복제, 선별되어 압수된 대화내역 및 사진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압수 절차와 방법, 위 사진은 ‘AEW이 보고를 하면서 문자메시지에 첨부한 사진으로 당시 일부 확인하였다.’라는 취지의 AL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은 위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225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비화폰 통화내역 캡처사진	Z가 2024. 12. 31. 검찰에 임의제출한 안보폰 촬영 사진(증거순번 10기록 17번)의 사본인 것으로 보인다. Z는 2024. 12. 31. 검찰에 통화일시가 나오는 통화목록 화면을 보여주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직접 사진촬영하였고, Z는 위 촬영 사진을 확인하고 압수목록 교부서 및 임의제출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므로(증거순번 10기록 15, 16, 18), 위 캡처 사진은 임의제출 당시 위 Z의 휴대전화 내 통화내역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역시 위 촬영 사진(증거 순번 10기록 17번)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본 사진이 존재하고, 이를 그대로 전사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 캡처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4	1128-1	IR 휴대폰 메모	IR이 2024. 12. 13. 군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군검찰 수사관이 촬영한 사진이다. IR은 이 법정에서 ‘위 메모는 원본은 삭제하였고, 그후 이를 PDF로 변환한 파일이 본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진의 메모 원본은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위 메모 원본이 저장된 휴대폰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 ① IR은 ‘본인의 무릎에 올려 둔 휴대폰 사진을 수사관이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위적 개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사진을 살펴보아도 메모 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진, 후가 단절되는 등 편집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IR은 위 메모가 본인이 작성한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과 대화내용 사이에 어떠한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도 위 대화내용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특별히 지적하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화내용은 실제 IR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메모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1560	- RM 제출 카카오톡 ³⁶⁾ 캡처 사진	RM은 2024. 12. 4.경 본인 휴대폰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캡처하였다가, 2025. 1. 21. 군검찰에 이메일을 통해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을 임의제출하였다. RM은 이 법정에서 ‘위 텔레그램 대화방은 삭제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대화내용이 저장된 휴대폰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① RM은 2024. 12. 4.경 위 대화내용을 직접 캡처하여 그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2025. 1. 21. 이메일을 통해 이를 전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위적 개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사진을 살펴보아도 대화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시간적으로 단절되는 등 편집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RM은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이 법정에서 위 대화내용이 ‘본인이 말한대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과 대화내용 사이에 어떠한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도 위 대화내역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특별히 지적하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화내용은 실제 RM의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던 텔레그램 대화내용과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437)	1658 ³⁸⁾	- NEW 707 텔레그램 채팅 방 캡처본 32매	AO는 텔레그램 채팅방 일원이었던 HJ 원사로부터 캡처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후 2025. 2. 20. 군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를 제출 하였다. AO는 이 법정에서 ‘위 대화내역을 캡처한 HJ 원사도 채팅방을 나간 것으로 보이고 텔레그램 채팅방은 삭제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텔레그램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① 텔레그램 채팅방 일원이었던 HJ 원사로부터 캡처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후 AO가 2025. 2. 20. 군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위적 개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캡처 사진을 살펴보아도 대화 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시간적으로 단절되는 등 편집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AO 역시 이 법정에서 위 대화내용이 ‘본인이 말한대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과 대화내용 사이에 어떠한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도 위 대화내역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특별히 지적하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화내역은 실제 HJ 원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대화내역과 정확히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44	- LK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제출자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캡처 사진	를 받을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각 대화내역을 캡처한 후 그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L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K의 휴대전화는 검찰에 압수되었으나 LK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 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법정진술, 제출 경 위 및 이유,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원본 (통화내역, 문자메시지)의 존재 및 캡처 사진이 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6	277	- 통화내역 캡처 사진	LK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통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L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K의 휴대전화는 검찰에 압수되었으나 LK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 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법정진술, 제출 경 위 및 이유,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원본 (통화내역 화면)의 존재 및 캡처 사진이 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6	372	- LL 휴대전화 저장 내역 캡 처 (LM를 BA으로 저장된 사 실)	LL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통화내역, 저장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조사 당시 위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이다. 그런데 L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K의 휴대전화는 검찰에 압수되었으나 LK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 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법정진술, 제출 경 위 및 이유,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원본 (통화내역 화면)의 존재 및 캡처 사진이 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7	330	-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피고인 A은 2024. 12. 15. 상록경찰서 영상녹화1실에서 긴급체포되었다. 경찰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긴급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의 동의 하에 피고인 A 소유 휴대폰 원본을 반출하였고(증거순번 7기록 297번), 2024. 12. 18.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증거순번 7기록 336번). 피고인 A은 정보 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휴대전화 의 봉인해제 및 탐색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선별 과 정에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증거순번 7기록 297번). 위 카카오톡 캡처 사진은 위 포렌식 절차에서 복제, 선별되어 압수된 대화내역의 캡처 사진으로 보 인다. 위와 같은 압수 절차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캡처 사진은 위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던 대화내역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7	331	- I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 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1	I는 2024. 12. 12. 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 중 본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휴대전화 전자 정보를 추출하여 복제본이 반출되었다. I는 2024. 12. 24. 진행된 전자정보 복제본에 대한 선별 과정에 참여 하였고, 선별된 사본 파일 확인 후 임의제출에 동의하 였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관은 선별된 사본 파일에 대 한 해시값을 계산하고 I에게 해시값을 확인시켰고, I로 부터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기재된 파일에 대하여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는데(증거순번 7기록 969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은 위 포렌식 절차에서 복제, 선별되어 압수된 대화내역 및 사진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압수 절차와 방법, I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 어 보면, 위 대화내역 및 사진은 위 휴대전화 내 저장 되어 있던 대화내역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7	332	- I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 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2	
7	662	2024. 9. 12.자 카카오톡 대 화내역(I, A)	
7	663	2024. 10. 5.자 카카오톡 대 화내역(I, H)	
7	664	2024. 10. 6.자 및10. 11.자 카카오톡 대화내역(I, H, SW)	
7	665	2024. 12. 5.자 및12. 9.자 카 카오톡대화내역(I,J)	
7	666	VA 검색결과 캡처화면	
7	671	- 텔레그램 대화내역(A, I)	

36) 증거명칭은 'RM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이지만, 증거순번 10기록 795번 RM 메일 송부 내역(2025. 9. 5.) 및 RM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는 '텔레그램 캡처 사진'인 것으로 보인다.

37)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이 2026. 1. 7.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45)에는 “여인형 외 3 추가증거목록”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38) 피고인김용현의변호인이2026. 1. 7. 제출한변호인의견서(45)에는증거순번1659 역시 “NEWDF 텔레그램채팅방캡처 본 32매 사본”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각 증거들의 경우,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각 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각 사진을 캡처하거나 촬영한 사람은 이를 그대로 캡처하거나 촬영한 것이어서 제출된 사진의 영상이 각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되었던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 또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326	- AL 여단장 FD 메시지 캡처 1부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552	- QM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사진 2부	QM은 2024. 12. 16.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각 사진을 제출하였다. 각 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553	- QM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사진 1부	
2	561	- SY의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사진 1부	QL은 2024. 12. 14.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SY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사진(증거순번 2기록 561번)과 본인의 휴대전화 내 신용카드 편의점 결제내역을 캡처한 사진(증거순번 2기록 562번)을 제출하였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562	- QL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캡처사진 1부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986	- BH 비화폰 전체 통화내역 (2024.12.3.~12.5.) 사진 1매	BH은 2024. 12.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본 인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동의하였고, 수사기관은 위 비화폰 내 통화내역을 촬영하였다. 각 통화내역이 저장된 비화폰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BH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비화폰 내 사진을 촬영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만으로는 각 통화내역과 비화폰 내 통화내역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987	- L과의 통화내역 사진 2매	
2	988	- DL특전여단 작전참모와의 통화내역 사진 3매	
2	989	- EC특전여단장과의 통화내역 (2024.12.4.) 사진 1매	
2	990	- 특전사 참모장과의 통화내역 (2024.12.4.) 사진 1매	
2	1079	- 메시지 캡처 사진	JZ은 2024. 12. 20. 서울고등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개인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내역의 캡처사진을 제출하였다.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1436	- AP 1처장과 VB 보좌관의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 VB로부터 제출받은 문자메시지 캡처화면이다.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1448	- NK 소령 J과의 통화내역 캡처 1부	NK가 2024. 12.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개인 휴대폰에서 각 사진을 캡처하여 제출하였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1449	- NK 소령 휴대전화 저장 A의 휴대전화 번호 캡처 1부	
2	1939	- 이메일(QE 보냄, VC)	QE가 2024. 12. 20. 검찰주사보 VC에게 보낸 이메일을 출력한 문서이다. 위와 같이 출력된 이메일 화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1501	- 카카오톡 ³⁹⁾ 대화내역	QE는 2024. 12. 24.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 휴대전화에 있는 FD 대 화내역을 캡처하여 수사관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 의제출하였다. QE는 이 법정에서 'FD이 리셋되거나 자동 삭제되는 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428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메세지 내역 캡처본 2	LI이 2024. 12. 18.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이 제시한 대화내역 캡처 사진이다. 누구의 휴대전화에서 캡처하여 압수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1559 ⁴⁰⁾	- RM 발송 메일 본문	RM이 2025. 1. 21. 수사관에게 텔레그램 캡처 사진 (증거순번 4기록 1560번)을 첨부하여 보낸 이메일을 출력한 문서이다. 위와 같이 출력된 이메일 화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1648	- 기관메일 수신 현황	XQ이 2025. 2. 20. 수사관에게 'AO의 입장문' 촬영 사진을 첨부하여 보낸 이메일을 출력한 문서이다. 위와 같이 출력된 이메일 화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46	- RQ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사진 제출자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각 대화내역을 캡처한 후 그 사진을 제출하였다. 각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48	- NO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6	92	- D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 내역 촬영 사진	D이 2024. 12. 11.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휴대전화 내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찍은 화면을 보여주고 수사관이 이를 촬영한 사진이다. 위 통화내역,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6	109	- QB 통화내역 캡처본	QB이 2024. 12. 11.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통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다.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179	- 24. 12. 4. 공공안전부 주 요 상황 단체대화방 캡처 사 진	NS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각 대화내역을 캡처한 후 그 사진을 수사관에게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192	- LT 통화내역 캡처 출력물	LT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통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조사 당시 위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이다.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231	- 통화내역 캡처 사진 등	LS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통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조사 당시 위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이다.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320	- LM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	각 제출자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통화내역, 대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조사 당시 위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이
6	321	- LM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처 사진	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323	- LN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6	327	- LN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6	337	- LO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6	348	- ★기동단 단체 카카오톡 대 화방 캡처 사진	OR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내 대화내역을 보여주어서 수사기관이 그 화면을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위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371	- LM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각 제출자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통화내역, 저장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조사 당시 위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이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387	- VI 카카오톡 캡처 사진	
6	486	- 서울광수단 대장`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	LQ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캡처사진이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487	- LQ-LO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	
6	488	- 24년 광역수사단 서무방`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	
6	489	- LQ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	
6	715	- 본청 서무계장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제6회) 시 제시된 사진이다. 누구의 휴대전화에서 캡처하여 압수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778	- CB↔F 통화내역 1부	오부영은 2025. 1.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 휴대전화의 각 전자정보를 캡처하여 검찰수사관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의 제출하였다. CB는 2024. 12. 11. 이미 경찰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2024. 12. 16. 위 휴대전화 복제본에 대한 전자정보 선별, 압수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위 절차에서 각 전자정보도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492). 그러나 위와 같이 포렌식 절차를 통해 압수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아 원본과의 동일성을 비교할 수 없고, 위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 내지 압수한 전자정보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6	779	- CB↔DB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부	
6	780	- CB↔BE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6	867	- 2024.12.3. 비화폰 통화내역 캡처 이미지 1부	V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캡처사진이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872	- 24기 VE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V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캡처사진이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873	- 26기 VG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6	874	- ◆기동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7	672	- 2024. 10. 11.자 SW 중사가 A에게 보낸 이메일	SW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을 수사기관에 포워딩하여 이를 출력한 문서이다. 위와 같이 출력된 이메일 화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7	677	- A과 MW의 통화기록 캡처 화면	MW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캡처사진으로 보인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8	625	-초과근무관리화면 캡처	JG이 수사기관에 캡처한 후 출력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캡처된 홈페이지 화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10	795	- RM 메일 송부 내역(2025. 9. 5.) 사본 3부 ⁴¹⁾	RM이 2025. 1. 21. 군검찰에 통화 녹음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한 이메일 출력물이다. 위와 같이 출력된 이메일 화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마. 전자문서 출력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출력물의 경우, 원본이 삭제되어서 원본과의 동 일성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 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39) 증거명칭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이지만 윤덕규는 이 법정에서 ‘카카오톡 메신저가 아니라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한 대화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0) 증거순번 10기록 795번 1쪽과 동일한 증거로 보인다.

41) 증거명은 ‘2025. 9. 5. 이메일의 사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2025. 1. 21.자 이메일이다.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각 증거들의 경우,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각 전자문서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520 ⁴²⁾	‘계엄 예상 못함’ 문서	기록에 의하면, ① JU은 2024. 12. 4. 19:00경 RC에게 자필 문서를 건네주면서 이를 ‘컴퓨터로 한글 문서 작성을 해 달라.’라고 지시한 사실(2025. 10. 2.자 JU 녹취서 16쪽), ② RC는 이를 즉시 타이핑한 후 출력하여 JU에게 제공한 사실(증거순번 4기록 377번, 25. 11. 28.자 RC 녹취서 16쪽), ③ JU은 위 출력 문서를 G, JU, AP가 참석한 상황 평가에서 AP에게 제공한 사실 (2025. 7. 10.자 AP 녹취서 5쪽), ④ 검찰은 2024. 12. 9. 방첩사령부 AP 1차장실에서 위 문서를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RC는 이 법정에서 ‘원본 전자문서는 삭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25. 11. 28.자 RC 녹취서 16쪽), 원본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압수 경위, 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는 JU의 법정 진술, 위 문서가 본인이 작성한 문서와 동일하다는 RC의 법정 진술, 위 문서가 본인이 전달받은 문서가 맞다는 AP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서는 RC가 PC로 작성한 전자문서를 원본 내용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2	957 ⁴³⁾	- 국방부 인사명령 초안	기록에 의하면, ① 인사기획관실 장군인사팀의 김지용은 2024. 12. 4. 01:00~02:00경 ‘국방부 인사명령 초안’을 작성한 사실, ② 2024. 12. 4. 당시 위 출력본을 IG 까지 결재한 사실, ③ 당시 결재를 마쳤던 문서는 2024. 12. 4. 계엄 해제 후 다른 문서들과 함께 쇄절한 사실, ④ IG는 2024. 12. 19. 쇄절할 당시와 동일한 문서를 다시 작성하여(수신자란에 서명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임의제출한 사실(증거순번 2기록 1007번)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압수 경위, 위 문서의 작서를 지시하여 결재하고 이를 임의제출한 I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IG가 2024. 12. 4. 임의제출한 문서와 2024. 12. 19. 임의제출한 문서의 동일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서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작성하였던 전자문서를 원본 내용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5	580	- JR PC 전자정보 이미지 USB(출력물) 1매 ⁴⁴⁾	기록에 의하면, 국방부 검찰단은 2024. 12. 31. JR의 데스크톱에 저장된 문서파일 등 전자정보를 선별한 후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압수하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해시값을 계산한 다음 피압수자 JR로부터 서명, 확인을 받아 위 전자정보를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포렌식 절차는 정형화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동일성이 훼손될 여지는 발견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압수 후에 인위적 개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포렌식 절차를 압수된 전자정보는 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압수 경위에 각 출력물은 위와 같이 압수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것인 점, JR 역시 이 법정에서 ‘본
5	581	파일 출력물 39매	
7	592	- ○.○○ ○○○○ 관련사실 조사 필요성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인이 작성한 전자문서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출력물은 JR의 PC 내 저장된 전자문서를 원본 내용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7	618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요약본	기록에 의하면, ① H는 2024. 10. 6. I에게 'A이 책자 요약을 지시하였다.'라고 전달하면서 '4. 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책자의 요약을 지시한 사실, ② I는 컴퓨터로 위 책자를 요약한 문서를 작성한 후 2024. 10. 11. H에게 인편으로 전달하였고, 같은 날 SW로 하여금 이메일을 통해 이를 A에게 전송하도록 한 사실, ③ SW는 A에게 위 요약본 파일을 첨부하여 보낸 이메일을 2025. 1. 7. 수사기관에 포워딩하여 전송하여 임의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위 이메일의 첨부 문서를 출력하여 증거로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7	673	- 2024. 10. 11.자 SW 중사가 A에게 보낸 이메일의 첨부서류 '415선거.박찬대p'	위와 같이 ① SW는 2024. 10. 11. 당시 전자문서 원본을 그대로 복제한 사본을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사기관이 SW로부터 포워딩 방식으로 전달받은 문서는 A에게 전송한 파일과 동일한 점, ③ 수사기관이 출력한 문서는 위 포워딩 파일을 그대로 출력한 문서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7기록 673 번)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출력물은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1551-1	임무관련 타임라인 사본 ⁴⁵⁾	기록에 의하면, ① RM은 2024. 12. 4.~5.경 위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2024. 12. 18. 10:28 이를 출력한 사실, ② RM은 2025. 1. 20. 서울고등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에게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출력한 문서를 임의제출한 사실, ③ RM이 위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후 PC를 인계하여 원본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RM이 작성한 전자문서 원본이 삭제되었으므로, 원본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서 생성, 출력 및 제출 경위에 위 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출력한 후 제출하였다.'라는 취지의 RM의 법정 진술, 위 문서에는 '출력자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RM 2024-12-18 10:28'라는 워터마크가 표시되어 있어 위 문서는 전자정보에서 곧바로 출력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임무관련 타임라인 사본'은 JR의 PC 내 저장된 전자문서를 원본 내용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각 증거들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 표 '판단' 란 기재와 같이 각 전자문서 출력 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915	- 출동 부대원 명단	기록에 의하면, OC이 2024. 12. 17.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후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출동하였던 1@대대 소속 부대원 명단을 txt 파일, 워드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사실,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OC은 이 법원에서 “해당 명단은 팀별로 지역대별로 인원을 종합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최종적인 종합은 작전과정 ES이 담당했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진

42) 증거순번 2기록 575번, 595번과 동일한 증거이다.
43) 증거순번 2기록 920번, 923번, 961번, 1074번, 1085번,
44) 증거목록에는 4098쪽부터 4106쪽까지가 증거순번 5기록 580번의 증거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102쪽부터는 4106쪽까지는 증거순번 5기록 581번 파일 출력물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거순번 7기록 592번 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은 위 4102쪽 내지 4106쪽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의 원본 동일성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45) RM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기록 1551번)에 첨부되어 있는 문서로,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은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15회 기일에서 번의하여 동의하였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술하여 본인이 위 문서의 작성자라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출동 부대원 명단’ 출력물이 원본과 동일한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전자문서 원본 내용을 그대로 출력 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4	157	- FMB CARD	기록에 의하면, 특항단 60@대대에서 작성한 문서이고, AM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임의제 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원본 전자문서의 작성 및 출력 경위나 위 출력물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전자문서 원본 내용을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바. 기타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이 동일성 여부를 다투는 나머지 증거들은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모두 그 입증취지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1	18	CD 1장(UA 대통령 휴대 전화 통화내역)	기록에 의하면, ①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통신사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압수한 사실, ② 수사기관은 각 통신사로부터 이메일로 데이터 파일을 교부받아 해시값을 추출하고 통신사 담당자로부터 그 해시값을 확인받은 후 압수한 사실, ③ 위 통화내역에 관하여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압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전자정보를 복제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정보가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각 통화내역은 전자정보 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28	CD 1장(TZ 대통령 휴대 전화 통화내역)	
1	37	CD 1매(TZ HD 휴대 전화 통화내역)	
1	42	CD 1매(UA HD 휴대 전화 통화내역)	
1	47	CD 1매(UB HD 휴대 전화 통화내역)	

1	64	CD 1매(TZ 대통령 휴대전화 통화내역)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1	1508	- 통신사 회신자료 및 통합 통화내역이 저장된 CD 1장	
1	283-1	AY 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	기록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포렌식 절차를 통해 취득하였고, 포렌식 절차는 정형화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동일성이 훼손될 여지는 발견되지 않은 점, 그 압수 후에 인위적 개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포렌식 절차를 압수된 각 통화내역은 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832	- QK가 AP 1차장실에서 작성한 메모 사본 1부	기록에 의하면, QK는 2024. 12. 16.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 및 업무수첩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 메모 및 업무수첩을 복사기로 복사하여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압수 및 복사 경위에 '위 메모 및 업무수첩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QK의 법정 진술,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도 각 메모 사본의 어떤 부분이 편집되었다는 것인지 특별히 지적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메모 사본은 원본 문서를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833	- QK의 업무수첩 중 이 사건 관련 기재 메모 사본 1부	
2	954	- 정원 외 직위 보직 추가 승인 검토	IG는 2024. 12. 18. 서울고등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김용현까지 수기결재를 받은 각 문서를 임의제출하였다(2025. 6. 12.자 녹취서 5쪽).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은 각 문서가 전자문서의 파일 사본으로서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출력물은 IG가 2024. 12. 3. 하루 일과를 설명하면서 17:00경 김용현으로부터 대면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서(증거순번 2기록 953번) 그 서면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증거물인 서면'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955	- 군무원 2급 직위 채용 추천위원회(면접) 결과 보고서 1부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956	- 국방부 일반명령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2024. 12. 2. 국방부 일반명령 문서를 스스로 작성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IG는 수사기관에서 ‘2024. 12. 3. 전투통제실에서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위 문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복사하여 실무자들에게 인사명령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원본은 피고인 김용현에게 반환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순번 7-867), ③ IG는 2024. 12. 18. 서울고등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사본을 임의제출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증거들(증거순번 9기록 433번 내지 443번)에 의하면, 국방부 일반명령은 김용현이 그 작성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김용현의 진술만으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진술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 증거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을 가지므로, 그 작성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4	756	진술서	기록에 의하면, KV은 2024. 12. 13. GT특임대대 대대장실에 검사가 찾아와 조사를 받을 당시, 위 문서를 직접 작성한 후 출력하여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제313조 제1항 진술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1128-2	특전사령부 전투통제 실 당시 배치	IR이 2024. 12. 13. 군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필로 그린 그림으로서, 군검찰에 있는 원본의 사본이다. 원본을 군검찰에서 가지고 있어 이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고(원본은 증거로 제출되지도 못했다), IR의 법정진술(당시 수사관이 직접 찍은 것이다)에 의하면 원본을 정확하게 복사한 사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1128-3	특전사령관 수첩 그림	
10	721	- OC의 수첩 중 2024. 12. 3.자 메모 부분	OC이 2024. 12. 23.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가져간 수첩 메모를 수사관이 촬영한 사진이다. OC은 이 법정에서 ‘수첩은 업무상 사용해야 하는 것

		촬영 사진 1부	이므로 제출할 수 없으나, 사진 촬영은 동의하였다.’라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한다. OC은 이 법정에서 ‘위 메모 사진은 본인이 한 메모 와 똑같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사 진 이 촬영 후 편집되거나 인위적 개작이 있 다고 보 이 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위 촬영 사진은 원본을 정확 하게 복사한 사본임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다.

3. 참고인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람들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검사가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임의성이 담보되지 않은 진술조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들에 대하여 작성된 진술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과 상황, 조사 시간과 방법, 참고인들의 진술의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김용현이 다투는 참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진 상황이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일 뿐이고, 어떠한 진술이 임의성이 의심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45)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김봉규, 방정환 등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사람들’의 진술조서는 피고인 김용현이 내용을 부인하여 부동의함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증거배제 결정

위와 같은 이유에서 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증거 중 경찰이 여인형, 박안수에 대하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제770호)의 증거(증거순번 12기록 2464번, 2466번, 2470번 내지 2474 번, 2476번, 2477번, 2487번, 2488번, 2514번 내지 2517번, 2523번, 2525번, 2526번, 2528번, 2530번, 2534번, 2541번, 2547번, 2548번, 2550번, 2589번, 2596번, 2598번, 2617번, 2625번, 2627번, 2636번, 2646번, 2663번, 2669번, 2671번 내지 2673 번, 2686 번 내지 2704번, 2708번 내지 2711번, 2741번 내지 2744번, 2747번 내지 2750번, 2753번 내지 2759번, 2762번 내지 2766번, 2768번, 2769번, 2789번 내지 2795번, 2799번 내지 2809번, 2811번 내지 2820번, 2822번, 2829번 내지 2835번, 2837번 내지 2839번, 2842번, 2846번 내지 2852번, 2854번, 2856번, 2858번 내지 2861번, 2863번 내지 2868번, 2870번, 2873번, 2875번, 2877번, 2878번, 2880번, 2884 번, 2892번, 2893 번, 2895번, 2896번, 2898번, 2899번), 경찰이 곽종근, 이진우에 대하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 제771호)의 증거(증거순번 12기록 2901번), 경찰이 문상호에 대하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 공제773호)의 증거(증거순번12기록 2906번, 2908번, 2946 번, 2953번, 2968번, 2971번, 2979번, 2991번, 2993번 내지 2995번, 3006번, 3008번, 3011번, 3012번, 3014번, 3017 번, 3018번, 3020번, 3024번, 3028번 내지 3030번, 3032번 내지 3036번, 3038번 내지 3043번, 3045번, 3047번 내지 3049번, 3051번, 3053번, 3054번, 3057번, 3060번, 3069 번 내지 3077번, 3084번, 3090번, 3093번, 3095번, 3097번, 3099번, 3103번, 3104번,

3109번, 3118번, 3119번, 3121번, 3123번 내지 3127번, 3129번 내지 3132번, 3134번, 3135번, 3138번, 3201번 내지 3204번, 3206번 내지 3208번, 3210번 내지 3213번, 3217번, 3218번, 3221번, 3223번 내지 3227번, 3229번, 3231번, 3239번, 3243번 내지 3245번, 3250번 내지 3260번, 3263번 내지 3268번, 3270번, 3271번, 3280번 내지 3288번, 3295번, 3296번, 3301번, 3319번 내지 3323번, 3332번 내지 3340번, 3356번, 3357번),

②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 중 김의규, 윤태현의 각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10기록 803 번, 804번), 각 녹취록(증거순번 2기록 1100 내지 1183번, 1917 내지 1938번), 특임대 대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취록 참고자료 수정본 1부(증거순번 2기록 977번, 증거순번 4기록 순번 823번), 전화녹음 파일 녹음 CD 1매(증거순번 2기록 579번), 김혜인 소령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15개를 저장한 CD 1매(증거순번 2기록 1358번), 각 녹취서(증거순번 2 기록 1361 내지 1375번), 김형기 중령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33개를 저장한 CD 1매(증거순번 2기록 1662번), 김세운 특전항공단장의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19개를 저장한 CD 1매(증거순번 2기록 2033번), 김태환 임의제출 통화녹음파일 CD(증거순번 5기록 438번), 녹음파일 6개 저장 CD 1매(증거순번 10기록 518번),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기자회견 영상 첨부 CD 1매(증거순번 2기록 627번), 00여단 CCTV 출력물 10매(증거 순번 5기록 151번), 선관위 관악청사(외곽 CCTV 캡처) 2매(증거순번 5기록 844번), 국립농업 박물관 관람객 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증거순번 5기록 847번), 관악구 관제센터에서 압수한 CCTV 영상 캡처 화면(증거순번 6기록 32번), 연합뉴스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33번), 각 뉴스영상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0, 42 번), CCTV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200번),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앞 CCTV 출력물(증거순번 6기록 368번), CCTV 캡처 사진 출력본(증거순번 6기록 430번), CCTV 캡

처 사진 출력본(증거순번 6기록 441번),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주차장 CCTV 저장 CD (증거순번 6 기록 463번), 양호열의 제네시스 블랙박스 캡처 화면(증거순번 7기록 834 번), 서울 용산구 소재 불보빌딩 CCTV 영상 CD(증거순번 7기록 961번), 용산구청 CCTV 영상 CD(증거순번 7 기록 962번), 용산구청 및 한남유수지공영주차장 CCTV 영상 CD(증거순번 7기록 963번), 잿머리성황당 및 법흥사 CCTV 영상 CD(증거순번 7기록 985번), 경찰청 CCTV(화질개선 동영상) 캡처 사진 8장(증거순번 9기록 558번), 이상현 여단장 시그널 메시지 캡처 1부(증거순번 2기록 326 번), 유재원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 사진 2부(증거순번 2기록 552번), 유재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캡처사진 1부(증거순번 2기록 553번), 고광일의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사진 1부(증거순번 2기록 561번), 이종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캡처사진 1부(증거순번 2기록 562번), 안무성 비화폰전체 통화내역 (2024.12.3.~12.5.)사진 1매(증거순번 2기록 986번), 광종근과의 통화내역 사진 2매(증거순번 2기록 987번), 제9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와의통화내역 사진 3매 (증거순번 2기록 988번), 제1공수특전여단장과의 통화내역 (2024.12.4.) 사진 1매(증거순번 2기록 989번), 특전사 참모장과의 통화내역(2024.12.4.) 사진 1매(증거순번 2기록 990 번), 메시지 캡처 사진(증거순번 2기록 1079번), 정성우 1처장과 최연우 보좌관의 문자메시지 캡처화면(증거순번 2기록 1436번), 신준호 소령 정성욱과의 통화내역 캡처 1부(증거순번 2기록 1448 번), 신준호 소령 휴대전화 저장 노상원의 휴대전화 번호 캡처 1부(증거순번 2기록 1449 번), 이메일(윤덕규 보냄, 장수경)(증거순번 2기록 1939번),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2기록 1501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메세지 내역 캡처본 2(증거순번 4기록 428번), RM 발 송 메일 본문(증거순번 4기록 1559번), 기관메일 수신 현황(증거순번 4기록 1648 번), 정한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6번), 문진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8번), 김봉식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내역 촬영 사

진(증거순번 6기록 92번), 조영진 통화내역 캡처본(증거순번 6기록 109번), 24. 12. 4. 공공안전부 주요 상황 단체대화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179번), LT 통화내역 캡처 출력물(증거순번 6기록 192번), 통화내역 캡처 사진 등(증거순번 6기록 231번), 김경규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320번), 김경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321번), 최광원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증거순번 6기록 323번), 최광원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증거순번 6기록 327번), 임경우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증거순번 6기록 337번), ★기동단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348번), 김경규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증거순번 6기록 371번), VI 카카오톡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387번), ‘서울광수단 대장’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86번), 이종욱-임경우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87번), ‘24년 광역수사단 서무방’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88번), 이종욱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89번), 본청 서무계장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715번), 오부명↔목헌태 통화내역 1부(증거순번 6기록 778번), 오부명↔임정주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부(증거순번 6기록 779번), 오부명↔주진우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증거순번 6기록 780번), 2024. 12. 3. 비화폰 통화 내역 캡처 이미지 1부(증거순번 6기록 867번), 24기 종피수인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증거순번 6기록 872번), 26기 경력알림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증거순번 6기록 873번), ◆기동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증거순번 6기록 874번), 2024. 10. 11.자 SW 중사가 노상원에게 보낸 이메일(증거순번 7기록 672번), 노상원과 MW의 통화기록 캡처화면(증거순번 7기록 677번), 초과근무관리화면 캡처(증거순번 8기록 625번), RM 메일 송부 내역(2025. 9. 5.) 사본 3부(증거순번 10기록 795번), 출동부대원 명단(증거순번 2기록 915번), FMB CARD(증거순번 4기록 157번)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을 통하여 위 증거들에 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일부 증거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피고인들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들로 나뉘나, 동의하는 피고인들 역시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증거 배제를 구하는 주장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증거 배제결정을 한다). 위와 같이 배제된 증거들은 별지 증거배제결정 증거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5.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위법수집증거들이 제시되어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의 증언 또는 증언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등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향을 마련하여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2차적 증거의 경우,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이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이 제시되어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진술조서, 이 법원의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수사기관이 위 증거배제결정 대상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이 대부분의 증거들을

사본의 형태로 임의제출 받으면서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제대로 남겨두지 않아 이로 인해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나) 수사기관은 주로 조사 도중 그 조사대상자로부터 그가 진술 과정에서 직접 수사 기관에게 제시하거나 진술에 참고한 자료를 캡처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이를 수사기관이 촬영하는 방식으로 임의제출 받거나 수사 직후에 이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받았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태로 증거들을 수집한 것은 사건의 규모, 국민적 관심에 따른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수사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 녹음파일이나 전자문서 파일 등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이 인정되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위 파일의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들은 그 녹음 파일이나 전자문서 파일 등의 작성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 것이고, 그 제출자들 중 대부분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녹취한 녹음파일 또는 본인이 작성한 전자문서 파일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통화녹음의 상대방들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의 음성이 맞고, 본인이 말한 대로 녹음이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거들이 편집·조작되어 피고인들의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참고인들로부터 그들이 소지한 휴대전화 내 파일을 직접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임의제출 받아

수집한 증거들이 편집·조작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직접 휴대전화로 조사대상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들의 경우에는 그 원본 동일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원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수사기관에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위 증거들이 이 사건 수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등 수사절차상 다른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마) 수사기관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여 진술서,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술자들은 해당 증거를 소지하고 있던 당사자로서 수사기관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해당 증거를 제시하였고, 위 증거를 제시한 후에도 증거의 기재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관련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해당 증거를 제출한 사람이 아닌 진술자들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증거를 제시받기 전에 이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한 상황이었고 그 증거에 의하여 기존의 진술을 보충하였을 뿐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였거나 그 증거가 없었더라면 진술하지 않았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바) 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이 제시되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위 증거들을 제시받고 진술한 증인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경위로 증거를 제출하였거나 증거를 제시받기 전부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진술하여 왔던 사람들이고, 신문과정에 해당 증거를 제시받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사정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새롭게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증인

들의 진술이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Ⅲ. 사실관계 등 실체에 관한 판단

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관계와 지위

가.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 등

피고인 윤석열은 2022. 5. 10.부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른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정 전반에 걸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중, 2024. 12. 3.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한 이후 2024. 12. 14.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후, 2025. 4. 4.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헌법재판소 2025. 4. 4.자 2024헌나8 결정)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피고인 김용현은 1982.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38기로 졸업해 소위로 임관한 이래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육군 중장으로 전역하였고, 2022. 5. 10.부터 2024. 9. 6.까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24. 9. 6.부터 2024. 12. 5.까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였다.

박안수는 2023. 10. 30.경부터 2025. 10. 30.경까지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며, 2024. 12. 12.경 직무정지되기 전까지 국군조직법 등에 따라 육군을 지휘·감독하였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나. 군 관계자

1)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고도 표기한다) 관련

곽종근은 2023. 11. 6.경부터 2025. 1. 20.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육군특수전사령부령 등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하였다.

이상현은 1994.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 전구작전기획처장, 3군단 작전참모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2. 6.부터 2025. 3. 18.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서,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제1공수특전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여단에 예속·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하였다.

김현태는 2000.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56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협력조정부협력담당 등으로 근무하다, 2023. 12. 13.부터 2025. 3. 18.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하 편의상 ‘특임단’, ‘특임대대’ 등을 ‘특임단’, ‘특임대대’ 등으로 표시한다) 단장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2) 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고도 표기한다) 관련

여인형은 2023. 11. 6.경부터 2025. 1. 20.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국군방첩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방첩사령부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방첩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하였다.

김대우는 1994. 3.경 해군사관학교를 제48기로 졸업하고 해군 소위로 임관한 후, 방첩사령부 2처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4. 5. 1.부터 2025. 3. 18.경 보직해임되기 전까지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으로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형법(군기누설,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였다.

3)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라고도 표기한다) 관련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 안의 지역)을 경비하여 위하여 육군에 설치된 군단급 부대이다(수도방위사령부령 제1조 등). 수도방위사령부의 예하부대 중 군사경찰단 (710명)은 규모가 매우 큰 군사경찰부대이다.

이진우는 2023. 11. 6.경부터 2025. 1. 20.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수도방위사령부령 등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수도방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수도방위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하였다.

4) 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라고도 표기한다) 관련

문상호는 2023. 11. 9.경부터 2025. 1. 20.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하며, 국방정보본부령 등에 따라 군사 관련 영상·지리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의 수집 및 적의 위 정보수집에 대한 방어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1985.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41기로 졸업하고 2015. 11. 5.부터 2016. 10. 24.까지 정보사령관, 2018. 1. 8.부터 2018. 10. 1.까지 육군정보학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3. 23. 장교 결격사유로 제적되었다.

고동희는 1994. 3.경 학군사관 제32기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처 등에서 근무하다, 2023. 12. 18.부터 2025. 3. 18.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정보사령부 본부 계획처장으로서, 정보사령부 부서별 업무 총괄 및 조정·통제, 정보사령부 전·평시 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훈련 조정 및 통제, 인원 및 장비 편제 업무를 총괄하여 위 업무에 관해 정보사령관을 보좌하고, 정보사령부 작전 시행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었다.

김봉규는 1993.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49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정보사령부 특수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2. 18.부터 2025. 3. 18.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한 대북정보 수집 등 첩보활동을 총괄, 군 합동 신문소를 운영 및 관리, 중앙신문단의 부대 병력 및 장비를 관리하고 전·평시 교육훈련을 총괄하여 정보사령부 전·평시 중앙신문단이 참여하는 훈련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었다.

정성욱은 1996.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52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후 정보사령부 ○○○정보여단 ○○○정보부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11. 1.부터 2025. 3. 18.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정보사령부 100여단 제2사업단장으로서, 대북첩보 수집 등 대북 공작 활동 총괄, 배속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2사업단 부대 및 병력 관리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고 정보사령부 100여단 예하 공작업무

를 담당하는 각 사업단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5) 국방부 조사본부(이하 ‘국방조사본부’라고도 표기한다) 관련

박헌수는 1992.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후 육군 본부 군사경찰실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0. 17.부터 2025. 4. 18.경까지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서,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기관,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김용균은 1986. 3.경 학군사관 제24기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수사과장, 육군 3군단 헌병대 헌병대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1군단 헌병대 헌병대장,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다, 2018. 12. 31. 전역하였다.

다. 경찰 관계자

1) 경찰청 본청 관련

피고인 조지호는 2024. 8. 10.부터 경찰청장으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청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던 중, 2024. 12. 12.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후, 2025. 12. 18.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헌법재판소 2025. 12. 18.자 2024헌나7 결정) 곧바로 경찰청장직에서 파면되었다.

피고인 윤승영은 2024. 8. 16.부터 2025. 3. 17. 직위해제가 결정되기 전까지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이라고도 표기한다) 수사기획조정관(국장)으로서, 경찰청법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라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지원, 수사경찰 기구·인력의 진단 및 관리, 수사경찰의 배치·교육훈련 및 성

과평가 등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하고, 수사기획조정관실의 직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였다. 당시 직제상 피고인 윤승영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수사기획 담당관(과장)은 전창훈, 수사기획계장(계장)은 이현일이었다. 수사기획계에는 서무 김준형, 기획반장 방지원, 이정도, 예산담당 김은지가 같이 근무하였다. 윤승영의 직제상 상위직급자는 국가수사본 부장 우종수, 경찰청 차장 이호영, 경찰청장 조지호이다. 수사와 관련하여 승인된 안건은 통상 국장은 경찰청장에게, 과장은 국수본부장에게 보고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한편, 임정주는 경찰청 본청 경비국장(치안감)으로서 경찰청 내 기동단, 기동대, 각종 경비단, 경비대, 경찰특공대, 일선 경찰서에서 임시로 동원되는 경비부대의 운용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신종묵은 경비과장(총경)의 직책에 있었다.

2)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이라고만 한다) 관련

피고인 김봉식은 2024. 8. 16.부터 2024. 12. 27. 직위해제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경찰청법에 따라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인 서울특별시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였다.

시도경찰청 산하 기동대 경력 운용 및 지휘·감독권은 각 시도경찰청장이 가지고 있고, 경찰청장은 각 시도경찰청 산하 기동대 운용과 관련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경력 운용 및 지휘·감독에 관한 업무는 직제상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산하에 경비부장 주진우, 경비과장 박주현,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이 담당하고 있었다. 경비부장 주진우는 1 내지 8 기동단 소속 60개 기동대(1개의 기동대 인원은 70~80명 내외다)를 운영하며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목현태는 2024. 2.경부터 2024. 12. 11.경 서울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이 결정되

기 전까지 국회경비대장이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데, 국회경비대는 기동단과 함께 서울 경찰청의 직할대로서 국회 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위하여 국회경비대장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경비대장인 피고인 목현태는 부대장, 행정과, 경비제대, 의장 경호대의 보좌를 받으며, 부대장과 각 경비제대장 등을 지휘·통솔하면서 경비제대를 통해 국회 청사 경비, 출입자 통제, 국회 청사 내 안전 활동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

2.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이전의 상황

가. 정치상황

1) 피고인 윤석열은 2022. 5. 10.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의석 총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민주당 도합 180석, 미래통합당 및 미래한국당도합 103석, 정의당 6 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이 각 당선되었고, 위 제21대 국회 폐원 당시인 2024. 5. 29. 기준으로 국회의원 총 296석 중 더불어민주당 155석, 국민의힘 113석, 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조국혁신당 1석, 자유통일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9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편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국회의원 의석 총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민주당연합 도합 175석, 국민의힘 및 국민의미래 도합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1 석, 새로운미래 1석 각 당선되어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였다.

2) 국회는 다음과 같이 공직자 탄핵소추를 하였다.

가) 2023. 2. 6.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소추 국회는 2023. 2. 6.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119840)을 박홍근, 이은주, 용혜인 의원 외 173인 명의로 발의하였고, 이틀 후인 2023. 2. 8. 제

403회 제4차 국회본회의 당시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위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3. 7. 25. 위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7. 25.자 2023헌나1 결정).

나) 2023. 9. 19.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

국회는 2023. 9. 19. 검사 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124564)을 발의하였고, 이를 후인 2023. 9. 21. 제410회 제8차 국회본회의 당시 총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위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자 2023헌나2 결정).

다) 2023. 11. 9.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이희동, 검사 임홍석 탄핵 소추 시도

국회는 2023. 11. 9.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의안번호 2125308), 검사 손준성(의안번호 2125309), 검사 이정섭(의안번호 2125310), 검사 이희동(의안번호 2125311), 검사 임홍석(의안 번호 2125312)에 대한 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는데, 위 탄핵소추안들은 이후 국회에서 각 철회되었다.

라) 2023. 11. 28.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검사 손준성, 이정섭 탄핵소추

국회는 2023. 11. 28.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의안번호 2125634), 검사 손준성(의안번호 2125635), 검사 이정섭(의안번호 2125636)에 대한 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위 탄핵 소추안 중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철회, 손준성,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3. 12. 1. 제410회 제13차 국회본회의에서 각 가결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위 탄핵소추에 따른 이정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헌법재판소 2024. 8. 29.자 2023헌 나4 결정), 2025. 7. 17. 위 탄핵소추에 따른 손준성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법재

판소 2025. 7. 17.자 2023헌나3 결정).

마) 2023. 11. 29.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 시도

국회는 2023. 11. 29.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125650)을 재차 발의하였는데, 피고인 윤석열은 2023. 12. 1.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하였고, 이에 따라 위 탄핵소추안은 폐기되었다.

바) 2024. 6. 27.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 시도

국회는 2024. 6. 27.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1080)을 발의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윤석열이 2024. 7. 2.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하였고, 이에 따라 위 탄핵소추안은 폐기되었다.

사) 2024. 7. 2. 검사 강백신, 박상용, 김용철, 엄희준 탄핵소추 시도

국회는 2024. 7. 2. 검사 강백신(의안번호 2201277), 검사 박상용(의안번호 2201278), 검사 김용철(의안번호 2201279), 검사 엄희준(의안번호 2201280)에 대한 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는데, 위 각 탄핵소추안은 이후 모두 폐기되었다.

아) 2024. 7. 2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 시도

국회는 위 2024. 6. 27.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같은 해 7. 2. 사의를 표해 면직된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의 직무대행인 이상인에 대하여 2024. 7. 25. 재차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2240)을 발의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윤석열이 2024. 7. 26.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인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하였고, 이에 따라 위 탄핵소추안은 폐기되었다.

자) 2024. 8. 1.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

국회는 새로 임명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에 대해 2024. 8. 1. 탄핵소추안(의안번호

호 2202480)을 발의하였고, 위 탄핵소추안은 2024. 8. 1.부터 2024. 8. 3.까지 이어진 제416회 제2차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었는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5. 1. 23. 위 탄핵소추에 따른 이진숙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25. 1. 23.자 2024헌나1 결정).

차) 2024. 12. 2. 감사원장 최재해, 검사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탄핵소추

국회는 2024. 12. 2. 감사원장 최재해(의안번호 2206107), 검사 이창수(의안번호 2206108), 검사 조상원(의안번호 2206109), 검사최재훈(의안번호 2206110)에 대한 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위 탄핵소추안은 2024. 12. 5. 제418회 제16차 국회본회의에서 각 가결되었는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5. 3. 13. 위 탄핵소추에 따른 최재해,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25. 3. 13.자 2024헌나2, 2024헌나3, 2024헌나4, 2024헌나5 각 결정).

3) 2024. 11. 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감액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 11. 29.경 2025년도 정부 세출예산안을 증액 없이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이와 같은 감액은 역대 최초로 이루어진 감액으로,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전액,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등 관련 비용이 포함된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전액이 각 삭감되었고, 정부 일반예비비 중 1조 4,000억 원가량이 감액되었으며, 이외에도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사업', '개인기초연구(R&D)(글로벌 매칭형) 사업' 관련예산이 각 삭감되었고,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R&D) 사업', '바이오·의료기

술개발(R&D) 사업',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각 감액되어 의결되었다.

나. 대통령실

1) 2024. 12. 1.경 이전의 상황

가) 2024. 3. 말경 내지 4. 초경 삼청동 안가 모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3. 말경 내지 4. 초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피고인 김용현(당시 대통령경호처장),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신원식(당시 국방부장관),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과 식사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윤석열은 '야당 관련 문제', '정치 상황'과 관련해 시국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위 저녁식사에 대해 신원식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국가 운영 상황에 대해 비상 대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비상조치 비슷한 얘기는 2024. 3. 말인지 4. 초인지 저녁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시국에 관한 얘기를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상황이었다. 시국에 관해 대통령이 그때까지 진행된 야당 관련 문제, 정치 상황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그 자리는 원래 저하고 국정원장, 방첩사령관에 대하여 방첩 조직을 강화하고, 국정원도 차분하게 일을 잘 하고 있고, 국방부도 채상병 사건 이후 흐트러진 것을 잘 대응해줘서 고맙다면서 격려하는 자리였다. 그때 대통령이 갑자기 굉장히 답답함,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의료진들이 잘 따르지 않고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해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하셨다. 이때는 총선 전인 2024. 3. 말경이고 의료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하기 이전 시점으로 기억한다. 그러던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

려워졌다.’고 말하셨다. 그러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비상 조치’라는 단어는 기억이 나고, ‘계엄’이라는 단어는 기억에 없다. 당시 대통령이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께서 일반적인 시국 걱정 정도 얘기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시국 걱정을 하시고 가끔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님께서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수습비서관 같이 식사하는 자리, 또 외부에서 국회의원들, 여당의원들 같이 식사하는 자리, 어느 자리에 서든 시국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글썄요. 신원식 장관이 들었다는 ‘군이 나서야 한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신원식이) 개인적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저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24. 4. 중순경 경호처장 공관 모임

피고인 김용현(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2024.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경호처장 공관에서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를 초청해 저녁식사를 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저녁식사 모임에 대해 '대통령 경호유관부대 겸 경호지원부대인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의 각 사령관을 대통령경호처장이 주기적으로 불러 격려식사를 진행하

는 것이 관행이었고, 이에 따라 진행된 모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 (피고인 김용현)이 당시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그 자리 자체가 대통령님에 대한 경호유관부서에 격려하는 자리였고 또 업무 협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상황은 아니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용현이 반국가세력, 중복세력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노동계, 언론계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국이 어렵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당시 시국 상황 얘기는 없었고, 관계관 회의였기 때문에 경호처장 관저 이동지, 대통령실 이동에 따른 경계, 방호 관련 소요 등에 대한 조치 진행상황 등을 식사하며 대화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이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냈기 때문에 부대 관련 질문을 해 수도방위사령부 편성 관련 내용을 많이 답변드린 기억이 있다.’, ‘시국 상황 이야기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24. 5. 내지 6.경 삼청동 안가 모임

한편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5. 내지 6.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⁴⁶⁾ 피고인 윤석열에게 당시 방첩사령부에서 진행 중인 대공사건 수사 경과, 국가정보원과 방첩사령부 담당 사건의 관할 이관 등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나

46) 피고인 윤석열은 충암고등학교 8회, 피고인 김용현은 7회, 피고인 여인형은 17회 졸업생들로 고교 동문이다.

라 걱정, 시국 걱정 그런 게 쉽지 않다.'고 말하였다.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위 저녁식사와 관련해 “제가 그 당시에 대공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간첩 수사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님께서 '나라 걱정, 시국 걱정 그런 게 쉽지 않다.' 이런 공감도 하셨다. 그러면서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어는 좀 헛갈리나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이런 말씀을 하시며 긴급명령권, 재정명령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설명하였고, 그 와중에 계엄도 말씀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당시 제가 ‘군통수권자인데 군의 계엄에 대한 인식 등을 전혀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고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도 군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군검사가 “증인은 (위 저녁식사 모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비상대권에 대해 수위 높은 발언을 하자, 무릎을 꿇고 ‘계엄 생각을 하지 마셔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대통령께서 '계엄'이라는 말을 직접 제 앞에서 쓰신 기억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인형 사령관이 (피고인 윤석열과는) 좀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은 기억은 나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반대되는 이야기한 것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기억나지만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여인형, 광종근, 이진우의 2024. 5.경 강남구 소재 식당 모임

이후 여인형, 광종근, 이진우는 2024. 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군 인사 및 피고인 김용현이 이야기한 시국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 식사와 관련해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일상적인 대화, 인사 관련 대화, 시국 관련 대화, 주로 그런 류의 대화가 있었다. 그때인지 좀 지나서인지 모르겠는데 여인형이 ‘피고인 윤석열이 계엄령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무릎을 꿇고 반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을, 전화인지 만나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분명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식사 당시 장군 진급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육군 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여인형으로부터) 무릎 꿇고 말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당시 곽종근에게 ‘첫째, 평시계엄은 안 된다. 둘째, 국무회의라는 통제 장치가 있는데 계엄이 되겠느냐, 셋째, 잘못하면 애들이 다 다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는 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명료하지 않다.’, ‘(위 저녁식사 모임 당시) 곽종근, 이진우에게 앞서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계엄을 반대했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2024. 6. 17.경 삼청동 안가 모임

이후 피고인 윤석열 주관 하에 2024. 6. 17.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저녁식사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모임에는 피고인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및 합동참모본부차장 강호필이 참석하였다. 당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반국가단체, 종북세력에 의한 시국의 어려움을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위 강호필,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를 지칭하며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모임에 대해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윤석열,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강호필과 저녁 식사를 한 것은 기억난다. 당시 이진우가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고, 칭찬이 이진우에게만 집중되다 보니 '대통령님, 수방사령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장군들이 다 대통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훌륭한 장군들입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위 모임과 관련해 “피고인 윤석열이 ‘반국가들, 중북세력 관련된 사항들 때문에 시국이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계속 하였다. 당시 정면 우측에 피고인 김용현이 앉아 있었고, 피고인 김용현은 술을 안 마셨는데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대통령님이 ‘다시 대한민국’에 관해 설명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후 제게 ‘우리 여기 장군은 상당히 참 똑똑하고 개념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 김용현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2024. 8. 초순경 대통령 관저 모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을 만났다. 피고인 윤석열은 여인형으로부터 이른바 '정보사령부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보고받았다.

피고인 김용현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모임에 대해 “8월 언제인가 정보사령부 간첩 사건 관련 보고가 있었고, 해당 문제를 가지고 많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다. (피고인 윤석열이 ‘사법체계 하에서 어쩔 방법이 없으니 비상대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 중국인이 개입됐다 보니까 중국인은 간첩죄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고, 전반적인 국가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한 우려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2024. 8. 초순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을 만난 사실이 있고, 정보사령부 간첩 혐의 사건 수사 경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간첩수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민노총, 경기동부연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및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유임

피고인 김용현은 2024. 9. 2.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계엄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전임 국방부장관 신원식은 국방부장관 재임 당시 인사 담당자에게 ‘부하 장군과 다툼 정보사령관 문상호에 대해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었는데, 피고인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2024. 9. 6.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에게 ‘정보 사령관 문상호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지시에 관해 “제가 ‘문상호를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문상호의 보직해임 및 징

계 이야기가 나온 원인이 부하 장군과의 맞고소 사건 때문이었는데, 당시 국방부 조사 본부장으로부터 ‘문상호에게 하급자 폭행,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오영대에게 ‘야, 그거는 신중해야 된다. 결과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 신중해라’는 취지에서 지시한 것이다. 계엄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을 유입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의 의견을 듣거나 그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2024. 10. 1. 국군의 날 행사 후 대통령 관저 모임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후 2024. 10. 1. 20: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주관하였는데, 당시 모임에는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가 참석하였다. 피고인 김용현과 이진우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 윤석열, 곽종근, 여인형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위 모임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이 당시 시국에 관한 이야기, 한동훈 등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 방송계 및 민노총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직접 저한테 ‘계엄’이라는 용어를 하신 적은 없다. 10월 이후부터는 제가 피고인 김용현의 공판에 가서 사전에 30분 정도 티타임을 하고, 식사를 하고 끝나고 내려와서 30분 정도 또 티타임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다. 그 시간은 식사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합쳐진 시간인데, 그 기억 속에서 그때 확보해야 할 장소 여러 가지부터 ‘비상 대권’, ‘특별한 방법’ 이런 내용들이 그때부터 제 기억 속에 자리하기 시작했다. 아마 그 시점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이 있다.”, “(피고인 윤석열이)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총으로 쏘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다.”, “식사 장

소에서 했는지, 티타임 때 했는지 장소는 기억이 분명치 않으나 확보 장소(국회, 선거 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시기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통령선거와 2024. 4. 이루어진 국회의원선거 관련해 피고인 윤석열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격차가 커야 되는데 적었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모임은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고생해서 장병들 대표해 몇 명 불러 격려하시는 자리였고, 무거운 자리는 아니었으며, 비상대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니었고, 저도 들은 바가 없다. 모임 이후 티타임을 하는 자리를 가진 것은 맞으나, 이는 곽종근과 여인형이 술에 많이 취해 술을 깨고 가자는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하다. 곽종근이 말하고 있는 ‘확보장소’,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는 그걸 한 기억도 없고 이야기할 상황 자체도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정치인, 방송계, 노동계의 부정적 활동으로 인한 국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군검사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도중에 한마디씩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식은 있어도 쪽 정리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는 약간, 하여튼 술을 많이 드시면 약간 불평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하시긴 하시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어투이죠.”,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1. 9. 더 술을 많이 드셔서 ‘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

다.’라고 하며 한동훈의 이름을 호명하였던 기억이 있다.”, “식사자리 이후 피고인 김용현과 티타임을 가진 것은 맞고, 다만 당시 ‘확보한다.’ 이런 내용은 기억이 없으며, ‘반국가세력’, ‘종북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2024. 10. 1.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고 따라 대통령 관저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인, 방송계,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상대권’ 이야기를 한 사실도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지요?”라는 군검사의 물음에 ‘일반적인 시국 관련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라 걱정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하였다.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10. 1. 저녁 식사 때 같이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 않고,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저한테 하신 취지는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제가 업무상 관계에 있는 어떤 수사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셨을 것이다. 제가 어차피 수사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계속해서 재판이 어떻게 되느니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기억한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취지는 10. 1.이든 언제든지 간에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지 않고 그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듣기는 들었으나 제가 수사관계자이니까 그런 수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뉴스에 나온 그런 얘기들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하셨을 거라고 저는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위 국군의 날 행사 후 대통령 관저 모임 이후의 상황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위 식사 이후인 2024. 10. 초중순경 북한의 소위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 곽종근과 통화하며 ‘북한이 오물풍선 상황이 생기면 강력하게 원점을 타격하겠다. 합참 지휘통제실로 내려가서 본인이 직접 지휘하겠다.’고 말하였다.

위 국군의 날 저녁식사 이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2024. 10. 7.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군사경찰 특임대대’라는 제목의 메모를 작성해 피고인 김용현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메모에는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특임대대를 소개 및 설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특임/기동중대들은 軍 사법경찰로서 테러(계엄 시 방첩사를 지원 합동수사 예정) 발생 시 경찰과 원활한 협업 및 군사지역에서 法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뿐만 아니라’, ‘부대 개편 승인과 대테러특임대 수당을 반영해 준다면 제1경비단의 2개 특임대대들과 함께 유사시 대통령실을 수호하고 계엄임무를 수행하는 실제 부대들로서 큰 자긍심과 사기가 제고되리라 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메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메모를 ‘이진우 2024. 10. 7.자 작성 메모’라 한다).

[군사경찰단 특임대대]

군사경찰단 특임대대는 3개중대(특임중대, 군사경찰중대, 기동중대)로 구성되어 테러대비작전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특임중대와 군사경찰중대는 현재 합참(대테러과) 및 육본(부대계획과)과 협업하여 각 대테러특임대 및 대테러초동조치부대로의 개편을 관리(참모총장님 보고완료)중입니다.

* 특임/기동중대들은 軍 사법경찰로서 테러(계엄시 방첩사를 지원 합동수사 예정) 발생시 경찰과 원활한 협업 및 군사지역에서 法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뿐만 아니라, 전군 유일의 모터사이클 부대로 특전사와 편조하여 수도서울 도심지에서 신속한 출동 및 임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가. 국가행사 및 경호경비작전간 전담 대테러특임대 임무를 부여하거나

나. 제1공수공수특전여단이 담당하고 있는 강남지역에 대한 대테러특임대(테러 진압부대) 임무를 대체 가능(제1공수공수특전여단은 전시전환 국면상 적지중심작전 준비를 이유로 강남지역 테러 진압부대 공백상태 발생)

현재, 사령부(작전처)는 합참 건의를 앞두고 있으며, 합참 검토에 따라 육본(부대계획과)에서 대테러

특임대 및 대테러초동조치부대로의 개편 승인과 훈령에 대테러특임대 수당을 반영해 주신다면, 앞서 제1 경비단의 2개 특임대대들과 함께 유사시 대통령실을 수호하고 계엄임무를 수행하는 실제 부대들로서 큰 자긍심과 사기가 제고되리라 봅니다.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2024. 10. 17.경 실시된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비상계엄 얘기가 있는데 당신들 조심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야, 이런 얘기가 말이 되냐. 지금 내가 이런 얘기 우리가 군인들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듣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여인형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야, 계엄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으려면’, ‘평시에는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회에서’, ‘그거는 법과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무슨 장관이 그걸 마음대로 하냐? 생각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어르신들 술 먹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지 않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술 상대하면서 많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자신의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2024. 10. 27. 18:47경, 19:33경 차례로 메모를 작성하였고, 11. 4. 19:12경, 19:48경 차례로 메모를 작성하였으며, 다음 날인 11. 5. 16:45경, 22:53경 다시 차례로 메모를 작성하고, 11. 6. 08:10경 다시 메모를 작성하였다. 위 메모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메모 내용과 그 후에 작성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여인형 작성 메모’라 한다).

메모 시각	메모 내용
10. 27. 18:47경	■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 휴대폰, 사무실, 자택주소 확인 -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
10. 27. 19:33경	- 점령, 출입통제, 현장보존 - 이후 군검경 합동수사

메모 시각	메모 내용
11. 4. 19:12경	ADL WP ADM ADN
11. 4. 19:48경	- 중견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11. 5. 16:45경	- 리더십 불충분 • 호오연 조기교체, 진용을 갖춰야 함
11. 5. 22:53경	- 트사브의 공통된 의견임 • 4인은 각오하고 있음 •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림 - o를 신뢰할 수 없음(트사브) • 아무것도 모름, 감정만 앞선 것임 • 강호의 사례 참고, 고통스러운 과정 • 보안위협, 이너로 들어오면 안 됨 • 두 분이 별도로 대화, 유사시 기계적으로 조치 - 적은 매우 수세적임 •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 장병은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했음. 지금까지 체제수호 관점 없었음 • 고위 리더십 공감 불충분 • 중령급 이하 대다수 교체되었음 • 체제수호 사명 자각 이제 시작되었음 •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우군화 해야 함 ※ 결론 • 체제수호 사명 인식 관점에서 군장악 불충분 • 리더십 진용을 조기에 갖추고(호오연) •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 인내하면서 당장의 위험을 완화하고 • 결정적인 호기를 기다려야 함 * 회합은 트사브으로 한정
11. 6. 08:10경	최초부터 군경합동이 필수, 경찰상황은?
11. 9. 15:01경	-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 FM DI IH - W II IJ
11. 15. 15:53경	■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 자위권적 응징태세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메모는 기본적으로 장관님이 쪽 했던 얘기들을

제가 받아 적은 거다. 대통령님이 뭐라고 하신 얘기를 제가 메모에 쓸 이유도 없고 그 메모 내용 중에는 제가 방첩사령관으로서 잠깐, 잠깐 메모하는 그 정도이고 저는 심지어 업무수첩도 없다. 일부러 보안목적으로 업무수첩도 없고 핸드폰에 잠깐잠깐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그런 습관이였다. 메모에는 계엄뿐만 아니라 초급간부 복지니 뭐니 해서 정말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검찰이 이것만 딱 뽑아서 보여주니까 마치 계엄에 관한 얘기만 있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방첩사령관 업무를 하면서 썼던 전반적인 내용이다. 저기 메모(김현지 강위원 정진상 이석기)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다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김현지는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강위원은 강위원 무슨, 무슨 전문위원 그런 의미로 제가 강위원이라고 써서 그때 당시 누구인지도 몰랐고 정진상은 뉴스에 많이 나오던 사람이고 이석기도 뉴스에 많이 나오던 사람이고 정진상이나 이석기 이런 분들은 나중에 제가 나중에 기억을 환기해보면 이미 그때 당시 구속된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날 저게 대통령이 얘기한 그런 사람들을 적고 그런 게 아니다. 장관님이 그냥 이런 사람들 어쨌고 이런 사람들 어쨌고 사람들 이름을 쪽 부르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 적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2024. 11. 6. 국방부장관실에서 피고인 김용현과 미국 대선 개표 방송을 시청하며 장군인사 관련 인사검증 및 현안 보고를 실시하였다.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김용현에게 ‘계엄은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은 계엄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왜?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준비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2024. 11. 9. 국방부장관 공관 모임 등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1. 9. 오전 무렵 피고인 김용현과 2분 45초가량 통화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점심시간 무렵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을 만나 보고를 받았으며, 14:37경부터 14:44경까지 두 번에 걸쳐 피고인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합계 약 7분가량 통화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인형은 15:01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천 조해주’라는 메모를 작성 하였고, 위 메모 작성 후인 15:19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과 8분 45초가량, 이후 15:28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2분 53초가량 차례로 통화한 상황이었다. 이진우는 18:08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국회의사당’을 검색하였다.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메모에 대하여 ‘2024. 11. 9. 오후경 김용현 장관에게 인사 관련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저녁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대통령 윤석열, 장관 김용현, 증인, 피고인 곽종근, 피고인 이진우와의 저녁 식사가 있었다.’, ‘2024. 11. 9. 오후경 피고인 김용현이 나에게 위 이름을 불러주었고, 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적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1. 9.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위 식사 시작 전 약 20~30분가량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와 티타임을 가지며 이들에게 ‘이따가 아마 중간에 (피고인 윤석열이) 합류하실 건데 합류하시면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순으로 한 마디씩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이들의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와중 에 합류하여 ‘APEC에 다녀올 것이다’, ‘여러 가지 큰 국제행사, 또 외국과 수출하는 거 이런 거 하려면 그런 것들이 국가 나라가 안정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 안 되는 게 난 참 우려스럽다’, ‘부정선거 이런 문제가 있다’, ‘선거도 이런 것도 믿을 수 없게 국민들이 다 믿지 못하게 제대로 이렇게 투명

하게 되지도 않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용현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에게 전화 연결해 피고인 윤석열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윤석열과 강호필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졌다. 위 식사가 끝난 후 피고인 김용현,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는 국방부장관 공관으로 이동해 재차 티타임을 가졌다.

곽종근은 위 모임과 관련해 이 법정에서 “식사하기 전에 20~30분 정도 티타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고, 당시 피고인 김용현이 ‘이따 아마 중간에 (피고인 윤석열이) 합류하실 건데 합류하시면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순으로 한마디씩을 해라.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는 말을 했다. 식사 때 마치 임무복창하는 느낌이었다. 식사 당시 피고인 윤석열이 합류하여 시국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이 분명히 기억 속에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곽종근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수방사가 국회로 간다.’, ‘선관위 여기에 방첩사가 온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그때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당시 대통령이 ‘국제 행사, 외국과 수출하는 거 이런 거 하려면 국가 나라가 안정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 안 되는 게 우려스럽다’, ‘APEC’, ‘선거도 이런 것도 믿을 수 없게 국민들이 다 믿지 못하게 제대로 이렇게 투명하게 되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난다. (당시 여인형이 국회,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꽃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선관위 얘기는 들었다. 피고인 윤석열이 부정 선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진짜 그런 데가 잘 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인형 장군이 이야기했다. 그런 데 장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언급하고 그랬던 것 같진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부정선거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합류한 후에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을 들은 기억이 없고, (제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순으로 한마디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니었다.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부대별 임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비상계엄’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고, 기억도 없다. 다만 ‘대비태세’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 그런 대비태세 관련 이야기도 각 부대별로 임무수행을 위해서 각 사령관들이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윤석열이 든든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덕담 수준의 이야기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각 부대별로 거기에 따라서 대비태세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은 있었다. 곽종근, 이진우 등에게 한 마디씩 해보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난다. 다만 당시 시국상황 자체가 거대 야당의 줄탄핵이, 정부고위공직자에 대한 줄탄핵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정부여당에서 발의한 민생 관련한 법안이라든지 경제활성화에 대한 법안들이 거대 야당에 발목에 잡혀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용현은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모임과 관련해 ‘비상사태에 대한 어떤 얘기는 있었던 것 같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이 군 부대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이 물었고, 이에 곽종근, 이진우가 답변한 얘기가 있다. 어떤 걸 물어봤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카) 위 2024. 11. 9.자 국방부장관 공관 모임 이후의 상황들

이진우는 위 저녁식사를 마친 날 밤인 2024. 11. 10. 01:15경 휴대전화로 ‘한동훈 당게시판’을, 01:19경 ‘국민의힘 당게시판 조작’을 검색하였고, 같은 날 18:40경에도 ‘한동훈 당게시판 조작’을 검색하였다.

여인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1. 15. 15:53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 자위권적 응징태세’라는 메모를 작성하였다.

위 저녁식사 모임으로부터 이틀이 경과한 2024. 11. 11.경 피고인 김용현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곽종근은 피고인 김용현에게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이 전혀 없고 불가능하다.’, ‘요즘 병사들도 따르지도 않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용현은 ‘강하수당 문제 이런 부분들 올려주고, 애들 챙기고, 격려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타) 2024. 11. 24. 대통령 관저 티타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1. 24.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김용현과 티타임을 가졌는데, 당시 피고인 윤석열은 전반적인 시국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며 ‘22번에 걸친 불법적인 탄핵, 탄핵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적 탄핵을 통해 국정이 마비되었다.’, ‘다수의 판검사들을 탄핵하거나 탄핵 겁박을 해 사법부의 기능을 훼손하였다.’, ‘아이돌봄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초급 간부 봉급 수당 인상 예산 등 포함 4조 원 가량의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다.’, ‘20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야당이 하고 있는 패악질, 폭거가 우려스럽다.’, ‘이게 나라냐.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러한 국회의 패악질에 대해서 견제할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다.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견제를 하고 경종을 울려야 되는

데 그런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옛날에는 국회해산권이 있었지만 그것도 없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비상계엄밖에 없는데, 이거 참 걱정이다.’, ‘뭔가 비상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당시 대통령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비상계엄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전에 작성된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1979. 10. 26. 사건 당시의 계엄 상황’, ‘1979. 12. 12. 사건 당시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파) 2024. 11. 30. 국방부장관 공관 및 대통령 관저 보고

이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11. 30.(토요일) 18: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났고, 21:00경 함께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피고인 윤석열을 만났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인형이 공관에 보고를 하러 온 날 피고인 노상원이 딸의 장례와 관련해 감사인사를 전하러 먼저 공관에 와서 여인형이 보고하는 동안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힘들어하는 것 같기에 ‘못한 말이 있는데 내일 와라’라고 이야기 해 다음 날인 12. 1. 피고인 노상원이 다시 방문하였다.”, “(‘당일 여인형에게 비상계엄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인사 보고를 받는 자리였는데,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윤석열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저는 대통

령님의 결정이나 결심에 존중하는 입장이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과 사명,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영토를 보전하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고뇌에 찬 결단이고 헌법상에 보장된, 그리고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적극 저는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금요일 보고가 취소가 되었는데, 장관께서 토요일에 오라고 하셔서 부득이 토요일에 장관 공관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다. 그날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분명히 장관님께서 ‘비상조치’, ‘계엄’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고,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저는 피고인 김용현에게 ‘계엄은 불가능합니다.’라는 제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 저는 ‘대한민국 국군이 전시도 그러할 텐데 평시는 말할 것도 없이 계엄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훈련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라고 일관되게 소신대로 말씀드렸다.”, “장관님이 이상한 이야기해서 제가 군인의 한 사람으로 사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군인들이 계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안다. 게다가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훈련해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혼자 걱정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메모를 써본 것뿐이다.”,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국무위원, 감사원장 탄핵', '초급 간부 예산 삭감' 등 시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며, 매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헌법재판소에 증

인으로 출석하여 “정확한 워딩의 기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장관님(피고인 김용현) 말씀이 ‘계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헌법상 권한 내에서 당신에게 부여된 비상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나 여론조사 의혹이 규명된다면 국민들도 계엄선포를 한 것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해를 했다. 그러나 정확한 워딩까지는 솔직히 기억 안 난다.”, ‘그날 내가 장관님께 계엄에 대한 내 평소의 부정적인 견해, 소신을 말씀 드리면서 다소 언성이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고, 군사법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 11. 30. 내가 3성 장군이고 그분은 장관이지만, 내가 거의 대들 듯이 해서 그날 싸웠다. 왜 그랬냐면 그날 계엄 비슷한 얘기가 장관한테서 나왔다. ‘도대체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렇게 장관님과 세계 붙고 나서 그러고 나서 대통령 관저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24. 12. 1.경부터 2024. 12. 3.경까지의 상황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1. 피고인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 필요한 준비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취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엄 결의, 준비에 관한 피고인 김용현의 진술 내용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1. 저를 불러 ‘장관님, 나도 인간인데 왜 편하게 대충 넘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야당하고 타협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면 공격도 안 받고 적당하게 편하게 그냥 대통령하면서 즐길 거 즐기고 끝나고 나서도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까? 그렇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그대로, 이대로 둔다면 정말 참담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록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현재의 재판대에 세우냐, 이걸 선을 넘었다.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 사법체계가 안 무너지는 것이 이상하다.’, ‘초유의 예산 삭감이 발생하고,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고 감사원장 과 검사 3명까지 탄핵하는 것은 사법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마비시키는 패악질이다.’, ‘이걸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계속해서 제게 ‘비상계엄에 필요한 병력 동원은 얼마 정도면 되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저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최소한 2~3만 정도, 최대한 5~6만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윤석열이 ‘그거 너무 많지 않냐, 최소한으로 좀 할 수 없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저는 ‘수도권에 있는 병력들 5,000~6,000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 고 답변하였고, 위 답변을 들은 피고인 윤석열은 재차 ‘그것도 너무 많고,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 간부 위주로 편성된 인원들로 해서, 국민 안전을 우선 고려해 실탄 휴대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저는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하고 선관위 정도만 보내고, 최소한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병력을 최소화해서 계엄 선포하고 난 이후에 투입을 해라. 계엄 선포 전에는 투입시키지 마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은 이후 제게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국민담화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엄 선포문, 왜냐하면 국무회의 의결할 때 필요하니까 계엄 선포문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에는 포고령은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윤석열이 ‘준비가 가능하냐?’고 묻자 저는 ‘초안 형태로 준비가 돼 있는데 한 번 보시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한 후, 2024. 11. 24.부터 준비해 오던 위 각 문서의 초안을 보고하였다. 해당 문건들을 검토한 피고인 윤석열은 계엄 포고령과 관련 해 기재되어 있는 '통행금지'에 대하여 ‘이 통금은 빼는 게 좋겠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 계엄을 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면 그건 안 맞다. 이거는 통행금지는 빼자.’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외 대국민담화문 초안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주말,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하였으나 피고인 윤석열은 ‘감사원장 탄핵하면 그냥 하는 걸로 합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중앙지검과 검사들은 몰라도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더불어민주당도 부담이 돼서 실제 발의를 안 할 수도 있으니 12. 2.로 예정된 감사원장 탄핵 발의 를 하지 않는다면 계엄 선포는 없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후 저는 2024. 12. 2.

저녁 무렵 피고인 윤석열에게 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 수정한 문서를 보고하였는데, 당시 해당 포고령 제1호 제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등을 금한다.’라는 내용이, 제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마지막 문장으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저는 보고 당시 피고인 윤석열에게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과 협조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건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윤석열은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변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를 피고인 윤석열이 직접 2024. 12. 3. 22:00경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위 담화 두세 시간 전부터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에 보안손님으로 소집하는 것으로 제게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저는 국무총리 한덕수,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교부장관 조태열,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에게 제공할 계엄 관련 문서를 각 작성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는 2024. 12. 2. 감사원장 최재해, 검사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에 대한 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다. 국방부 및 군, 경찰 등 관련자

1) 2024. 6. 28. 방첩사령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 체결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4.경 내지 5.경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는데, 위 지시를 받은 김대우는 당시 방첩사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이었던 최성철에게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해 보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후 해당 업무를 맡은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은 같은 해 5. 2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대외협력계 내지 안보역량혁신 TF에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관 사이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요청하며 업무협약서 초안 문건을 전송하였는데, 그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4. 5. 24.(금)

軍 방첩사,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MOU 체결 요청

☐ 요청 배경

- 방첩사령부(사령관 여인형)는 국군 내 군사보안·방첩·첩보수집 및 수사 임무를 담당하며, 경찰청과도 안보범죄 정보교류 등 협력 중
- ※ '19년 이후 방첩사→경찰청 이첩 첩보 113건 / 국수본부장-방첩사령관 회담(1.10.) 등
- 방첩사는 국내·외 안보위협 공동대응 하고 체계를 확립하고, 안보범죄 수사 관련 지속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MOU 체결을 희망
- ※ 방첩사(기획관리실)는 5.24.(금) 안보수사국 대외협력계로 MOU 초안 송부

☐ 요청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체결주체	
협력분야	① 정보교류(안보사범·사이버안보·군사기밀유출·방산·테러 등 정·첩보 교류) ② 수사공조(필요시 합동기초내사 / 군 관련성 식별시 합동수사 등) ③ 정보교류 협의체(본부장-사령관 연1회 / 국장급 반기1회 / 실무급 분기1회) ④ 교육협력(상호 교육과정 개방, 합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⑤ 훈련·연습 지원(합동수사본부 설치, 각종 훈련시 수사관 지원 등)
체결일정	문안협의 및 검토절차 등 거쳐 가능하면 6월 중 체결 희망
체결장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향후 계획

- 체결 필요성·문안 내용(수정·삭제·추가)에 대해 안보수사국 각 기능별 검토, 시·도청에 의견조회를 통해 추가 요구사항 등 취합(5.24.~5.31.)
- 의견 취합 후 체결 타당성 검토 → 타당성 인정 시 방첩사와 문안 협의 진행 → 완료 시 기획조 정관(법무)에 법리 검토 요청(5.31.~6.13.)
- 최종 문안 합의 후 체결시 일시·장소 등 협의 후 MOU 서명(6월말)

또한 이후 기획관리실 교육정책계획장교 윤지원은 같은 해 5. 28.경 '방첩사령부-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 체결 추진 계획'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가수사본부와 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초안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와 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국내·외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양 당사자 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킨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 (협력분야) 양 당사자는 법령이 정하는 책임과 범위 안에서 안보범죄 수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양 당사자 간 첩보 및 정보에 대한 교류

- 가. 북한, 외국(군)의 안보범죄(사이버 포함) 및 정보활동 관련 정보 공유
- 나. 군사기밀, 방산기술 등 유출 차단 및 대응 관련 정보 공유
- 다. 테러위협인물, 테러수단/자금 관련 국내·외 정보 공유
- 라. 협의체 운영 시 공유 정보에 대한 진행경과 상호 추적·관리

2. 첩보·정보교류에 따른 내·수사 공조 협력

- 가. 민·군 안보범죄 첩보 - 정보교류 후 필요시 기초조사 등 협력
- 나. 내·수사 착수 시 민·군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공조수사 등 협력

3. 「안보범죄 정보교류 협의체」 정례화 시행

구 분	기관장급	고위급	실무급
시행주기	연 1회	반기 1회	분기 1회 (필요시 수시)

4. 양 당사자 간 교육과정 상호 개방 및 교관 지원

- 가. 교관/교육생 상호교류 등 「방첩사-국수본 합동교육 프로그램」 시행
- 나. 국군방첩학교 특별 교육과정에 국수본 소속 안보수사관 포함
- 다. 경찰수사연수원, 인보수사연구·교육센터 등 경찰 교육과정에 방첩사 수사관 포함

5. 각종 훈련·연습 관련 인원 및 장비·물자 지원

- 가.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한 수사관 및 장비, 차량 등 지원
- 나. 기타 연습/훈련간 연락관 파견 및 행정업무 지원

방첩사령부-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 체결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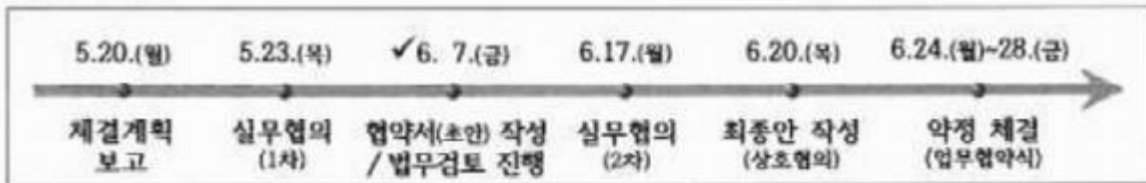
<기획관리실-작전교육과, '24. 5.28.>

☐ 관련 규정: 사령부 규정(502-06) 「기관 간 약정체결」

제9조 1항. (국내 기관과 약정 체결절차)

- ① 약정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및 중복여부를 검토 → 체결 계획 보고
법무 검토
- ② 상대기관과 협의하 약정서 초안 작성 → 최종안 상호협의 후 약정체결

- ☐ 추진 배경
 - '23. 4.26. 국가수사본부장, "양 기관간 협업 강화 추진" 제의
 - * 안보사범 관련 첩보교류, 수사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상호교육 지원 등
 - '24. 1.10. 사령관, 국가수사본부 방문간 안보수사 발전방안 구두협약
 - * 軍 관련사건 합동내사, 수사관 전문성 함양/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육 개설 등
 - ※ 업무협력 필요성을 상호 공감 → 협약 체결을 통해 명문화 필요
- ☐ 주요 협의사항
 - ① 「안보범죄 정보 교류 협의체(가칭)」 정례화
 - * 기관장급(연 1회), 국장급(반기 1회), 실무급(분기 1회 / 필요시 수시)
 - ② 안보사범 검거를 위한 첩보 공유 및 내·수사 공조
 - * 방위산업 관련 군사기밀 유출 차단을 위한 첩보 공유, 내·수사 공조 협의체 구성 등
 - ③ 수사관역량 강화를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교관지원
 - ④ 각종 훈련및연습 간 인원 및 장비·물자 지원
- ☐ 향후 추진



2) 2024. 9.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의 상황

가) 정보사령부

(1) 내부의 인원 추천

피고인 노상원은 정보사령관 등의 직위에 있다가 퇴역하였던(형사 처분으로 인한 장교 결격사유로 제적당하였다) 관계로 정보사령부 소속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100여단 제2사업단장 정성욱과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9. 초순경 정보사령관 문상호에게 ‘북한군 고위 장성들을 포함해서 대량탈북 징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준비할 필요성이 있 다’며 ‘(정보사령부 소속) 일 잘하는 인원들 좀 추려봐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고 요청하였고, 2024. 9.경 정보사령부 김봉규에게 ‘사격이나 특수무술

등이 뛰어난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요원 5명의 추천'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김봉규는 위 요청이 퇴역 또는 전역 인원들의 취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이라 판단하여 특수요원 5명(이후 위 추천인원은 7명까지 늘어났다)을 추천하였고, 이를 별도로 문상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9. 말경 김봉규에게 전화하여 '공작요원 15명 정도를 추천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였는데, 위 요청과 관련해서는 문상호가 직접 김봉규에게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원 추천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본인(문상호)에게도 공작요원 명단을 함께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문상호는 정보사령부 특수처 대외사업과장 이○○에게도 '중·소령·대위급, 부사관, 군무원 중에 공작을 좀 하는 똑똑한 애들 15명을 뽑고, 출신학교, 학위, 출신지역 표기해서 보고하라'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맞느냐'며 문상호를 독촉하였다.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문상호 사령관이 2024. 10.경 제게 '(국방부)장관님께 전화를 받았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하는 사항에 대해 잘 도와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인원 추천이 장관님의 지시라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0. 초경 재차 김봉규에게 전화하여 '공작요원 20명 정도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정보사령관 문상호에게 김봉규, 정성욱을 지목하며 '그 두 사람을 시켜 요원을 뽑아라, 10여 명 정도씩 시켜라'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문상호는 김봉규, 정성욱에게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상부의 지시가 있다'는 취지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인원을 좀 추려봐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김봉규에게 최종적으로 '15명 내지 20명 정도 요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24. 10. 중순 내지 말경,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부양해 보내고 있고, 이에 따른 대비 또는 대량탈북자 발

생의 가능성 징후들이 있는 것 같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요원 추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김봉규는 2024. 10. 15.경 총원 12명으로 구성된 선발인원 명단, 2024. 10. 21.경 총원 20명으로 구성된 선발인원 명단을 각 작성해 이를 피고인 노상원에게 메신저 앱을 이용해 전달하였고, 이를 문상호에게 별도로 보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0. 10.경 정보사령부 100여단 제2사업단장 정성욱(대북정보 및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에게도 공작요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정성욱은 ‘이건 최소 여단장이나 사령관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즈음 정보사령관 문상호가 정성욱을 집무실로 호출해 ‘대량탈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인원들 15명 정도를 선발해봐라.’며 공작원 선발을 지시하였다. 문상호는 김봉규로부터 명단을 보고받기 전 정성욱으로부터 공작원 명단을 보고받은 후 위 명단과 특수처 대외 사업과장 HJ에게 지시하여 정보사령부 특수처장 안지운과 대외사업과장 HJ으로부터 보고 받은 명단 총 2개를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에게 ‘군무원을 빼라’, ‘부사관을 포함시켜라’,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요구하였고, 문상호는 HJ으로부터 보고받은 명단을 김봉규에게도 전달하였다.

문상호는 2024. 10. 하순경 김봉규와 정성욱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하여 각자 지시한 요원 선발 인원이 중복되므로 조율하라는 취지에서 ‘두 사람이 추천하는 인원들이 일부 중복되니 둘이 이야기해서 서로 추천한 인원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김봉규와 정성욱은 같은 달 26.~27. 무렵 의왕시 학의동 소재 백운호수 인근에서 만나 상호 명단을 조율하였다.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당시 김봉규가 제가 추천한 인원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 문상호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저는 김봉규가 추천한 인원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정성욱은 김봉규와 함께 같은 해 11. 19.경 문상호에게 최종적으로 조정된 선발 인원 각 20명씩의 명단을 보고하였고, 문상호로부터 ‘해당 추천 인원 명단을 노상원에게 보내라.’는 지시를 받아 그 무렵 노상원에게도 위 명단을 전달하였다.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은 같은 날 11:30경 내지 13:00경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11. 19. 다른 공작수행 관련해서 문상호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고, 거기서 문상호 사령관이 김봉규 대령을 들어오게 해서 그때 명단을 최종적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부정선거에 관한 책자 내용 요약 관련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0.초경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정성욱, 제2기갑여단장 구삼회에게 '대수장(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예비역 장성들 모임)' 강의에서 사용할 것이라며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제목의 책자 내용 정리 및 요약을 부탁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0. 5.경 정보사령관 문상호에게도 위 책자의 요약을 부탁하며 ‘책자를 하나 보낼 테니까 그 내용을 두 대령(김봉규, 정성욱)한테 부탁을 해서 요약을 좀 해줘라. 그리고 요약된 내용을 사령관이 직접 두 대령한테 받아보고, 받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한테 보내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문상호는 2024. 10. 6.경 김봉규, 정성욱에게 전화하여 ‘노상원으로부터 부정선거 책자 요약 지시 받았냐?’고 확인한 후, 정성욱에게 별도로 ‘노상원 사령관 책자 정리하는 거 도와줘라’, ‘책자 정리하는 거하고 노상원 사령관이 대수장 가서 강의하고 하는데 이런 걸 정리하면서 도와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김봉규, 정성욱은 피고인 노상원에게 위 책자의 내용을 정리해 제공하였는데, 김봉규는 2024. 10. 11. 07:44경 문상호에게 ‘책 정리가 끝나서 오늘 오전 중에 인편으로 보내겠습니다. 검토해주시면 수정 후에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

를 보낸 후, 위 책 정리본을 봉투에 담아 비대면으로 문상호에게도 보고하였다.

노상원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봉규, 정성욱이 작성한 책자 요약본을 김용현에게 보여주었더니, 김용현이 ‘술에 술탄 듯 두루뭇술하다.’라고 하면서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0. 14. 20:39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3분 51초가량 통화하였는데, 위 통화 직전 문상호는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너 나 못 믿어? 내가 너한테 나쁜 것 시키겠냐? 너 조금만 기다려, 장관님이 너한테 전화할 거야. 장관 전화 받아봐’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문상호에게 ‘임무 수행 잘 하고 있냐?’라고 말하였고 문상호가 ‘임무수행 잘하고 있습니다. (소위 '군무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의) 후속조치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김용현은 ‘노상원 하는 일 잘 도와줘라’고 말하였다. 위 통화 이후 문상호는 재차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노상원은 ‘장관님 전화 받았지?, 내 말 잘 따라줘’라고 말하였다.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제가 잘 대응을 안 하고 대꾸를 잘 안 하니까 피고인 노상원이 흥분해서 제게 ‘장관님 전화가 올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 직후 실제 장관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 김용현이 전화하여 ‘피고인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냥 ‘노상원이 하는 일’이라고만 언급해서 대량탈북 상황에 대비해서 인원 들을 선발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통화와 관련해 “10. 14. 제가 문상호 장군하고 통화한 것은 피고인 노상원을 통해서 제가 전달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걸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상호 장군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 준 것입니다.

‘이거는 필요한 것이니까 피고인 노상원 얘기를 잘 듣고 필요한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노상원이 전임 사령관이었으므로 ‘필요한 부분은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도움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대량 탈북과 관련된 준비지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지침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0. 28. 피고인 김용현에게 국방기획관리관, 정보본부장이 배석한 상황에서 '정보사령부 예하 ○○○여단의 조직 개편 추진계획'을 대면으로 보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엄중한 상황에 대비 잘 해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 날인 2024. 10. 29. 김봉규, 정성욱을 정보사령관실로 호출하여 두 사람에게 위 피고인 김용현의 말을 전달하였다.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위 보고 당시 피고인 김용현이 ‘노상원의 이야기를 잘 따라줘라’라는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한편 이후 2024. 11. 5.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다음 주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종전에 추천한 인원들 휴가 계획을 알아 보라’라는 요청을 받아, 그때 정성욱에게 ‘명단에서 출타 인원들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봐라’는 지시를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2024. 11. 9.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 및 문건 전달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1. 9.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에 위치한 카페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만났는데, 김봉규를 카페로 불러 함께 만났다(정성욱 역시 연락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 김봉규에게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선관위 가야 된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국방장관, 방첩사령관, 수방

사령관과도 다 이야기가 되었다.’, ‘단장 역할은 실질적으로 내가 한다.’고 언급하였다. 문상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노상원은 김봉규에게 문건 2부를 건네주면서 ‘1부는 정성욱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노상원의 요구로 문상호가 먼저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 노상원은 김봉규에게 (계엄) 상황 발생 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기재된 A4용지 10장 가량 분량의 문건(이하 ‘이 사건 임무 문건’이라 한다) 2부를 교부하였다. 위 문건의 전반부에는 부정선거 관련 정황 내용이, 후반부에는 김봉규와 정성욱이 각 수행해야 할 임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명 명단(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9명, 여론 조사심의위원회 직원 14명,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직원 7명 도합 30명)’, ‘해당 인원을 수도방위사령부 B1병커로 옮기고 해당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수사단 구성으로 ‘수사단 단장 구삼희, 부단장 방정환, 1부장 HK(또는 김상용), 2부장 김봉규, 3부장 정성욱’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노상원은 김봉규에게 위 문건 중 1개를 정성욱에게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며 ‘나를 단장이라고 불러라’,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보면 알 거다, 보고 정 대령에게 전달하고, 문사령관에게는 따로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 알아서 할 테니까’, ‘내용 정리되는 대로 문건은 바로 세절하라’고 지시하였다.

김봉규는 다음 날 22:00경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령부 김봉규의 관사 인근에서 정성욱을 만나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문건 중 1부를 전해주며 ‘당신과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적혀있다고 하니 그걸 잘 정리해놓고 세절하면 된다. 그리고 문사령관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동일하게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두 사람은 ‘설마 계엄이 선포될까?’와 같이 대화하면서 계엄이 실제로 선포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대화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봉규, 정성욱은 위 문건을 확인한 후 각 세절

하였다.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당시 노상원이 저와 김봉규에게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너희 병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제가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알게 된다,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라고만 말했다. 노상원이 ‘계엄’이라는 말을 언급한 사실은 없다. 저는 그날 노상원과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금방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노상원이 제가 자리를 뜨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당황했었다. 그날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둘이 무슨 이야기를 더 했나’ 싶어서 그날 밤인지 다음 날 밤인지 김봉규를 제 방으로 불러 물어보았다. 그러나 김봉규는 자세한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위 카페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선발 인원 준비가 다 되었느냐’,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서 원점을 타격할 수 있어 임무수행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 같은 상황에 관한 언급도 하였다. 계엄에 관한 언급을 할 당시 문상호 사령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노상원이 제게 계엄이 선포될 경우 수행해야 할 임무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를 주었다. 앞부분에는 부정선거 등에 관해 정리된 내용과 그와 관련된 언론기관 등에 관한 설명이 쪽 있었고, 중반부부터 저와 정성욱이 해야 할 일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06:30경 중앙선관위로 출동해서 인사부서를 통해 직원현황을 확인하고 회의실 2, 3개를 확보한 후 문건에 기재된 30명 정도의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확보되면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B1병커)로 데리고 가 수용하는 내용이었다. 신병확보 부분은 정성욱 대령조의 임무였다. 그밖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및 선거조작 관련 양심제보를 할 수 있는 안내공고를 하며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전화회선 3개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수사단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수사단장 구삼희, 부단장 방정환, 수사1부장 예비역 대령 HK(문건 자체에 ‘HK’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수사2부장 저, 수사3부장 정성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 노상원이 ‘나를 단장이라고 불러라’, ‘선관위원장 노태약은 내가 직접 담당하겠다.’는 등의 말도 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이 문건 2부를 주면서 ‘1부는 정성욱에게 주라’고 하여, 다음 날 정성욱을 만나 전달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이 카페에서 했던 말을 전달하였다. 이후 제가 받았던 문건 1부는 세절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이 국방장관이나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도 다 이야기되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계엄 관련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제 진급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저는 계엄 관련 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루어진 국방부 인사명령에 있던 수사1 내지 3부장 및 각 부원들의 이름은 저와 정성욱 담당 인원 관련 추천하지 않은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24. 11.경 아마도 임무 문건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제가 노상원여단장(정보사령부 100여단장) 직무대리로 인사명령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인사명령도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위 만남에 피고인 노상원이 참석한다는 사실은 몰랐다. 다음 날 김봉규를 만나 피고인 노상원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임 다음 날인 11. 10. 밤에 안양에 있는 정보사령부 김봉규의 관사 인근에서 김봉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김봉규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으면서 ‘계엄이 있을 수 있다.’, ‘노상원으로부터 문건을 받았고, (문건 안에) 계엄에 대한 내용과 네 역할, 내 역할이 다 기재되어 있다. 노상원이 다 보고 꼭 세절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나중에 서류를 보니까 앞부분 7장 정도는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고, 뒷부분에 저와 관련된 내용이 붉은 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빨간색 글씨로 인쇄된 부분만 메모하고 바로 문건을 세절했다. 빨간 부분에 기재된

제 임무는 '계엄이 선포되면 저희 인원들이 아침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30명이 출근하면 이들을 김봉규가 확보한 회의실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고, 선관위 전산직원 5명, 정보보호직책 2명 등 30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었다. 구매할 물품 목록, 펜치, 망치, 니퍼, 케이블타이 등도 일부 적혀 있었다.”, “위 카페 모임 다음 날인 2024. 11. 10. 12:00 경 문상호가 저를 사령부 집무실로 불러 '(국방부)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중앙선관위에 가야 될 수도 있다. 군인이니까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였 . 노상원이 이야기하고 난 뒤에 문상호 사령관이 따로 불러서 장관 지시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문상호 사령관이 장관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무렵 기존 대량 탈북 공작 관련 인원 선발이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루어진 국방부 인사명령에 있던 수사1 내지 3부장 및 각 부원들의 이름은 김봉규와 제가 추천한 인원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노상원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무 문건에 피고인 노상원이 수사단 단장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피고인 김용현이 제게 ‘민간인이 수사에 개입해서 하면 나중에 증거가 전부 다 나가리 된다.’, ‘너는 어차피 이것(수사)을 못 하니까 조언을 해라, 그리고 본인(피고인 김용현)이 필요할 때 조언을 받겠다. 부정선거 강의도 들었고 책도 요약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조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2024. 11. 6.경 및 같은 달 10.경 피고인 김용군의 군사경찰 요원 추천

피고인 노상원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군사경찰 요원들도 선별해 봐라'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에 피고인 김용군에게 군사경찰 소속 인원들의 명단 작성을 요청하였었다. 이에

피고인 김용균은 자신이 퇴역할 때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중간 업데이트 해 온 군사경찰 연락망을 참고해 부탁받은 명단(이하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2024. 11. 6. 12:59경 메신저(시그널)를 통해 이를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송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피고인 김용균은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2024. 11. 10. 피고인 노상원과 안산시에서 만났는데, 위 만남 당시 해당 명단을 재차 피고인 노상원에게 건네주었다.

- 팀장 (9명)
- ☆ 국.조사본부 (5명)
준위 WT, 준위 WU, 준위 해군 WV, 준위 WW, 준위 MU.
- ☆ 육. 중앙수사단 : 준위 JG, 준위 WX
- ☆ 육. 수사단 : 준위 WY, 준위 KU
- 수사관 (10명)
- ▽ 조사본부 : 상사 JH, 해 상사 MN
- ▽ 육군 중수단 : 상사 WZ, 상사 XA, 중사 XB, 중사 XC
- ▽ 육군 수사단 : 상사 XD, 중사 XE, 중사 XF, 중사 XG
- 장교 (6명)
- ▽ 국.조사본부 대령 김상용 (현 차장)
중령 이승윤(계획과장)
- ▽ 15사단 중령 김동현
- ▽ 수방사 소령 노주영, 3사단(여) 소령 유수지, 5군단(여) 소령 박선영 (행정)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지시사항 관련해 “대량 탈북 인원들 대비한 인원들 선별할 때 정보사 요원들만 하다 보면 정보 사 요원들이 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제한될 것이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군사경찰 요원들이 같이 보조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한 번 군사경찰 요원들도 선별해 보라.’라고 제가 지침을 줘서 저렇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균은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노상원 장군과

는 2003년 중령 때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 간혹 한 번씩 안부 전화 정도를 주고받는 사이였다. 노상원이 군사경찰 추천을 해 달라고 하여 제가 2018. 12.경 전역할 때 가지고 있던 공개된 연락망(계급,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계속 소식을 듣고 업데이트하여 왔다)을 바탕으로 명단을 작성해서 11. 6. 노상원에게 보내주었다. 그리고 4일 뒤 11. 10. 안산에서 직접 노상원을 만났다. 만난 것은 개인적인 이유였고, 당시 명단을 건네준 것인지 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2024. 11. 17.경 안산 롯데리아 모임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17.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하여 피고인 김용현을 만났고, 이후 같은 날 15:27경 내지 16:06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부 100여단 제2 사업단장 정성욱을 만났다. 피고인 노상원은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니 준비를 잘 해라'라고 말하고, 정성욱에게는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 이런 물품을 잘 준비해둬라'라는 취지로, 문상호에게는 '식사나 차량 지원을 잘 준비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또한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김봉규는 피고인 노상원, 문상호가 자리를 떠난 후 도착하여 정성욱으로부터 피고인 노상원이 모임에서 한 이야기를 간단히 전해 들었다.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당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다.’, ‘내가 조사하면 다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과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 도구를 언급한 것은 기억난다. 노상원은 위협을 언급하면서 도구 이야기를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황당하다고 생각해서 집중해 듣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당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제게 ‘준비가 되었냐? 준비했냐?’고 물 어봤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똑바로 해라’는 말을 하며 화를 내었다. 노상원은 제

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 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을 잘 준비해둬라’는 지시도 하였다. 노상원은 문상호에게 ‘점 심 도시락이나 차량 준비 등을 지원하라.’는 말을 하였고, 문상호는 제게 ‘먼저 위 물품을 구매하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한 10~20분 정도 짧은 시간 그런 말을 하고 헤어졌다. 김봉규는 우리가 헤어진 이후 늦게 도착했다. 제가 김봉규에게 ‘노상원이 준비 잘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2024. 11. 19.경 정보사 요원 최종명단 보고 등의 상황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1. 19.경 오전에 김봉규, 정성욱으로부터 최종 선발 요원 각 20명 총 40명의 명단을 최종적으로 보고받았다. 이후 정성욱은 문상호의 지시에 따라 위 최종 명단을 피고인 노상원에게도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명단 보고를 마친 후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은 같은 날 11:30경 내지 13:00 경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정보사령부 내부에서 산책을 하였는데, 당시 문상호는 이미 피 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선관위 명단을 두 사람한테 줬으니까 확인 한 번 해봐 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어서, 김봉규, 정성욱에게 ‘임무 문건(선관위 직원 명단)을 받 았는지 여부’, ‘준비 진행 상황이 어떤지’ 등을 물어보았다.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노상원이 직전에 제게 전화를 해서 ‘선관위 명단을 두 사람한테 줬으니까 확인 한 번 해봐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두 대령과 영내 산책할 때 ‘명단을 받았 느냐?’고 물어보았다. 두 사람이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받았다.’고 이야기 하였다.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임무를 받았냐?’라고 물어보았다. 지난 번 룩데리아 에서 제가 떠난 뒤 노상원과 김봉규가 따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했는데 그 이야기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 질문에 두 명은 개략적인 이야 기만 했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정성욱은 ‘출근하는 것을 확인해서 정해진 장소, 회의실로 모아 놓는 임무다.’라고 말했고, 김봉규는 답변을 제대로 못한 채 개략적인 이야기만 했다. 당시 제가 두 사람에게 뭘 지시한 바 없다. 지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때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상황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저는 두 사람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리 없겠지 만 만약에 상부의 지시가 있고 그러면 따라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산책을 하면서 문상호가 자신과 정성욱에게 지시사항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질문들을 하였다. ‘구체적인 조 편성은 하였는지’, ‘조별 임무는 어떻게 나누었는지’, ‘장비는 다 구입하였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저와 정성욱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문상호 사령관이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산책을 하면서 문상호가 저와 김봉규의 임무를 확인했다. 제 임무가 무엇인지를 물어 ‘저는 30명 출근하면 회의실로 데려오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김봉규도 자신의 임무를 설명했다. 그리고 문상호가 제게 물건을 구매했냐고 물어보면서 ‘물건을 구매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다음 날인 11. 20.경 물건을 하나씩 구매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2024. 11. 20.경 이후부터의 물품 구입

정성욱은 2024. 11. 20.경 알루미늄 배트 1개, 재단기, 망치, 핑거가위, 송곳, 드라이버, 니퍼 등 공구,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단기, 신발주머니 등을 구입하고, 2024. 11. 22. 일회용 안대 10개, 2024. 11. 26. 케이블타이(200mm), 송곳2MBC/SET, 드라이버세트(최원명 2/6mm), 스틸목망치, 니퍼150 각 2개, 핑거가위, 티타늄코팅가위를 각 1개를 구입하였고, 2024. 12. 2. 로프 1개, 2024. 12. 3. 관광명찰 6개를 각 추가 구입하였다. 이에 대해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알루미늄 배트는 위협용이라 생각하였다. 재단기는 문 여는 용도, 종이 자르는 용도, 망치는 문 열거나 부수는 용도, 케이블타이는 손을 묶는 용도, 핑거가위와 니퍼는 케이블타이 끊는 용도 등으로 생각했다. 신발주머니는 두건 대체용으로 생각해서 구매했다. 구체적인 용도에 대한 설명은 문건에 없었다. 노상원의 지시로 12. 2. 로프를, 12. 3. 명찰을 추가로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정성욱이 해당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알았고, 그 실물을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2024. 11. 25.경 즈음 문상호의 출장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1. 25.부터 2024. 11. 29.까지 4박 5일간의 해외출장 계획이 있었는데, 출국 하루 전인 2024. 11. 24.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 ‘네가 지금 제정신이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해외출장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문상호가 ‘이미 계획된 공무 출장 계획이다. 중대한 일이기도 하다.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피고인 노상원은 ‘그럼 일정을 당겨서 일찍 귀국해라.’, ‘늦어도 수요일 저녁때까지 돌아와’라고 말하였다. 문상호의 귀국 일정은 2024. 11. 27.로 변경되었는데, 그 후 현지 폭설 및 항공기 연착 등의 사유로 예정일인 2024. 11. 29. 귀국하였다.

나) 그 밖의 상황 등

(1) 북한은 2024. 11. 28. 밤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까지 소위 '오물풍선' 약 40여개를 휴전선 남쪽으로 부양하였고, 그중 약 30여개가 수도권에 낙하하였다. 이와 관련해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2024. 11. 29.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박정환에게 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상황이 엄중하다’, ‘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집무실에서 잘 것이다.’라고 말

하였다. 또 곽종근은 그즈음 육군특수전사령부에 파견된 550방첩부대장 김영권에게 ‘쓰레기 풍선이 추가적으로 더 오면 아마 합참에서 모종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서 군사적으로 좀 긴장상태에 있다. 그래서 대비태세를 특전사도 잘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곽종근은 그 무렵 참모장 박정환의 진급 실패를 위로하며 ‘현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이 대비태세를 갖추자는 차원에서 후반기 장성급 인사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만든 것이다.’라고 위로하였다.

(2)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30. 저녁 무렵 동기생이자 군 복무 당시 친하게 지냈던 1군단 예하 제2기갑여단장 구삼희에게 전화해 진급 실패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진급이 안 됐지만, 장관님과 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조만간 국방부 TF 임무 같은 것을 와서 하게 될 거야’, ‘국방부로 오게 되면 사복을 입고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옷가지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와서 장관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삼희, 너 방정환이도 잘 알지?’, ‘이번에 방정환도 같이 임무를 할 거야’, ‘방정환이도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으니 한 번 통화를 해 보라’는 말도 하였다.

3) 2024. 11. 말경부터 2024. 12. 3. 전까지의 상황

가) 국방부

(1)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1. 29. 20:00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에게 전화하여 ‘2024. 12. 2.자로 예정되어 있던 준장 정용길의 정보사령부 100여단장 부임 일자를 2024. 12. 24.로 연기하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1. 저녁 즈음,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철진에게 ‘3일 날 16:00나 16:30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가 보고할 게 있으니까 시간을 반영해라’며 일정 조정을 지시하였다.

(2)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1. 14:21경부터 8분 25초가량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전

화한 후, 14:29경 재차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14분 18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용현은 이진우에게 ‘서울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수방사 너희는 어떻게 어떤 태세를 갖추고 출동하나?’라고 물었다. 피고인 김용현은 위 통화를 마친 직후인 14:47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1분 40초, 이후 다시 전화하여 15:00경부터 5분 56초가량 통화하였다. 이진우 또한 피고인 김용현과의 통화를 마친 후인 15:15경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여인형과 통화하였고, 이후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과도 통화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16:53경부터 약 13분 30초, 이후 17:06경 재차 1분 18초가량 통화하였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용현이 12. 1. 16:53경과 17:06경 통화에서 ‘정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상황에 대비하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주)여론조사꽃(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곽종근의 위 증언이 사실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제가 비상계엄 이야기는 안 한 것 같다.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 태세를 잘 갖추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른 부대보다는 특전사가 행동에 옮겨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구체적인 워딩은 기억을 잘 못 하겠다. 6개 장소를 언급한 것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개연성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후 피고인 김용현은 이진우와 12. 1. 19:57경 3분 25초, 20:01경 2분 23초가량 재차 통화하며 ‘야, 그럼 서울에서 국회에서 이런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너희는 어떻게 하

냐?’, ‘야, 머리 아픈데 그거 좀 초동부대 대테러초동부대 설치하는 거 그거 한 번 사령관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매뉴얼 좀 작성해서 보내줘’라고 지시하였다.

(4) 한편 여인형은 피고인 김용현과의 위 통화 이후 2024. 12. 1. 15:44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김대우’라는 제목의 메모를, 같은 날 16:24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으로 ‘과수실’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메모를 각 작성하였다. 이진우 역시 피고인 김용현과의 위 통화 이후 2024. 12. 2. 11:30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 ‘의명 행동화 절차’라는 제목의 메모를 작성해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송해 보고하였다. 위 메모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성자	메모 시각	메모 내용
G	12. 1. 15:44경	■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AQ - 경찰/조본,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 수방사, 조본, NJ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 합동팀 편성 ·방첩5, 군사경찰5, 경찰5, 경호5 기준 20명 1개팀 ·장비, 차량 등 정밀편성 - 합동체포조 작전개시 - 출국금지
	12. 1. 16:24경	- 과수실, 정보보호단, 사이버사를 민간전문가팀과 합동운용 - 선관위, CQ 증거 확보 ■ 기타 - 작전부대 상황, 대전복
M	12. 2. 11:30경	의명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최초 V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 1. 전 장병 TV시청 및 지휘관 정위치 지시 2.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및 영내 사이버방 인터넷망 폐쇄 지시 3. 출동 ○○○TF병력 대상.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4.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 (AE경비대대) 의명 출동 준비 5. 사령부 포함 사여단급 부대 위병소 폐쇄 시행

		6. 외부 언론들의 접촉시도 차단 장관님 ○○회의 직후 1. IO 출동 지시 2. 대테러대기부대 선 투입, 본관 배치 3. 후속대 1개대대(+) 투입, ○○협력단 지원하 구역 세밀 배치 4.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과 공조통화 실시 5. 작전 중간보고(장관님) 이상입니다.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메모에 관하여 ‘이 메모는 기본적으로 장관님 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를 제가 받아 적은 게 거의 태반이다. 초급간부 복지향상이든 군사대비태세든 뭐든 간에 방첩사령관으로서 제가 하는 직무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슬쩍슬쩍 적혀있는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일관된 보고서나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명단 관련해서도 명단은 장관이 쪽 얘기하신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 적었다. 12월 1일 저 메모도 마찬가지다. 11. 30. 장관님께 제가 엄청나게 항의했지만,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도 되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내용은 쪽 해서 작계에 있는 내용, 법령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 쪽 써놓은 거고 저기에 제가 실제 지시 안 한 내용도 태반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2. 오전경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과 전화하여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1대 제공을 요청하였고, 김성훈은 위 비화폰 사용자명을 피고인 김용현의 요청대로 '테스트(예)'로 설정해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애초에는 제

가 비화폰이 하나 더 필요할 수 있거나,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면 주요 직책자에게 비화폰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하나 받아두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피고인 노상원에게 휴대폰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 노상원에게 ‘야, 이거 네가 계엄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 가지고 써라, 운용해라.’라고 하면서 이를 전달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2. 21:02경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피고인 윤석열을 만났다(피고인 김용현은 이때 피고인 윤석열에게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서를 보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22:13경, 22:33경 각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22:09경, 22:39경, 22:44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22:12경, 22:35경, 22:37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22:15경 육군참모총장 박안수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각 통화하였다.

곽종근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과의 위 통화 이후인 2024. 12. 2. 22:37경 이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이진우는 22:49경 여인형에게, 여인형은 다시 23:06경 곽종근에게, 23:12경 이진우에게, 이후 이진우가 재차 23:21경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각 통화하였다. 이진우는 23:14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통령 국회해산권 있나요?’를, 다음 날인 2024. 12. 3. 07:01경 재차 ‘국회해산이 가능한가요?’를 검색해 보았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2024. 12. 2. 저녁에 피고인 김용현의 비화폰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제게 ‘준비되면 며칠 뒤에 보자’라고 말하였고, 재차 피고인 김용현이 제게 ‘깜짝 놀랐지, 아니야, 내일 보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였는지는 일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김용현 장관이 저녁에 전화를 하더니 ‘쓰레기 풍선’, ‘적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후 곽종근이 제게 전화를 해서 ‘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이 우리 긴장시키고 대비태세 유지하려는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곽종근이 그때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 제가 곽종근에게 ‘선배님, 그러면 제가 한 번 방첩사령관한테 알아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가 방첩사령관 여인형한테 전화를 해서 ‘대북상황이 무슨 특별한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인형이 ‘그런 거 없다. 걱정하지마라, 장관 모르냐, 내가 그래서 힘들지 않냐.’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곽종근에게 전화해서 안심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서로 건강에 관해 묻고 이야기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휴대전화로 ‘국회해산’에 관해 검색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비상계엄은 상상도 못 했다. 도발에 의한 비상사태인가라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그럼 뭐 다른 게 있나?’ 해서 제가 그걸 한번 검색해 본 것이다. 장관님이 국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국회해산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아, 여인형 장군 말이 맞구나, 전혀 이런 게 없구나.’라고 생각했다. 9월부터 11월까지 TV나 뉴스에서 계속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셋이 김용현 장관이랑 뒤로 뭔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11월에도 비상계엄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 혼자 고민해 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4. 18:00경 내지 22:05경 어간, 2024. 11. 6. 20:12경 내지 23:59경 어간, 각 한남유수지공영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 하였으며, 이후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 매일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

문해 피고인 김용현을 만났다. 한편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2. 19:12경 한남유수지공 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2024. 12. 3. 00:12경 차량을 출차 하였는데, 12. 2. 저녁 무렵 지인(XK)과 통화하면서, 지인이 ‘덕분에 자신의 사위가 승진했다.’는 취지로 감사 인사를 하자, ‘저 같은 경우는 V하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선으로’라고 말하였고, ‘장관님을 돕는 것이 V를 돕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정보사령부

(1)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1. 오전 무렵 국방부장관 공관에 방문하여 피고인 김용현을 만났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노상원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 12. 1. 당시 김용현으로부터 ‘1개 팀을 먼저 보내서 전산실에 서버실을 확보해라’, ‘이후 선발한 정보사 요원 40명 추가 인원을 투입하라’, ‘추가인원을 투입하면 정성욱 팀에게 30여 명을 회의실로 데려다 놓으라고 해라’,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명단은 나중에 줄 테니 그것을 근거로 출근하는 인원을 확인하라’, ‘3~4일치 짐을 준비하라’,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할 건데 방첩사는 수사 인력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정보사가 보조, 지원, 종이 붙이고, 차 선택하고, 출입 협조하고, 어디 날라주고, 밥 배달해 주고, 방첩사 오기 전 준비 이런 보조, 그런 업무 (준비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김용현은 ‘내가 부르면 다 노출되고, 보안 우려가 있으니 네가 그 사람들(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을 만나서 나의 뜻을 전해라’는 지시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관님이 당시 저한테 ‘3~4일치 짐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최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12월 2일인지 3일인지 1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할

건데 방첩사가 수사 인력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정보사가 보조, 지원, 종이 붙이고, 차 선탐하고, 출입 협조하고, 또 뭐 어디 날라주고, 밥 배달해 주고, 그 다음에 방첩사 오기 전에 뭐 준비 이런 보조, 그런 업무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1. 12:18경 내지 12:58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부 중앙수사단장 김봉규, 정보사령부 100여단 제2사업단장 정성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에게 비상계엄 상황 발생 시 김봉규와 정성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및 임무 수행을 확인하고, 이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관님의 핵심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문상호에게만 롯데리아 밖에서 따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12. 1. 노상원이 ‘상부에 보고하고 왔다’, ‘한남동 갔다 왔다’,는 말을 하는 것을 한두 번 들었다. 노상원이 저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을 확보해라. 믿을만한 인원으로 우선 10명 정도 준비해라’, ‘1개 팀 준비해서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 ‘차량 필요하면 차량, 아니면 식사 너희(정보사)가 지원해야 된다.’, ‘그 다음 전화번호 3개 정도, ARS 관련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좀 확인하고’, ‘전산실 일단 가서 확인하고 지키고 있으라.’는 등 임무를 확인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기존에 문건을 통해 지시받은 임무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피고인 노상원은 ‘자신을 단장이라고 부르라’고 하였고, ‘부정선거나 선거조작에 대한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이 ‘노태약 선거관리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기억이 있고, 문상호에게

는 ‘아침, 점심 등 식사 지원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선발대 10명 정도와 지원팀을 준비하라.’는 지시도 하였다. 위 선발대가 계엄이 선포된 후 선관위에 실제 투입된 고동희 대령과 10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당시 노상원이 계엄날짜에 대한 언급 같은 것은 없었고, 명확하게 ‘계엄’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오전에 국방부장관을 만나고 왔다는 언급 같은 것을 하지는 않았다. 제게는 ‘인원이 30명쯤 될 거야, 그 인원들 출근하면 김봉규 대령이 확보한 회의실로 인원들 데리고 오면 돼’라고 말하였다. 문상호에게는 도시락, 차량 등 지원 업무를 이야기했고, 김봉규에게는 ‘인사부서 등에서 선관위 직원 명단을 파악해 저(정성욱)에게 주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고 관련 자수하라는 배너를 올려라, 회의실을 확보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수방사 수용시설 확인 임무 역시 김봉규 대령에게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노상원이 저는 ‘3부장’, 김봉규는 ‘2부장’으로 부르라고 호칭을 정하였고, 편의상 자신을 ‘단장’으로 부르라고 했다.”, “피고인 노상원이 먼저 간 후, 제 차에서 문상호 사령관이 김봉규와 제게 다시 한번 더 임무 확인을 했다. 당시 문상호 사령관이 ‘장관님 명령이고 지시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임무가 떨어지면 이왕이면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2. 2. 피고인 김용현에게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배석 하에 '사령부 특수역량 현황'에 대한 대면보고를 진행하였고, 이후 같은 날 16:22경 피고인 노상원과 전화통화 하였는데, 당시 문상호는 피고인 노상원에게 ‘과장님, 오늘 오전에 장관님 대면보고를 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검사는 당시 문상호가 피고인 노상원에게 ‘장군님, 오늘 오전에 장관님 계엄보고를 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보인다).

다) 방첩사령부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12. 1. 방첩사령부 1처장으로 진급해 국방대학 교육 입교를 준비하던 정성우에게 유선으로 ‘지금 군사대비태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북한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장군들이 지금 2처장도 해외 출장이라서 없고 너까지 교육을 가게 되니까 좀 그렇고, 본인도 월요일에 휴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1주차 때는 취소를 하고 정상적으로 부대에 와서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피고인 김용현,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과 통화한 이후 15:44경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 앱에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김대우’라는 제목의 메모를(증거순번 4기록 632번), 같은 날 16:24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삼성 허니보드)에 ‘과수실’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메모를 각 작성하였다(증거순번 4기록 630번 중 11항목).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모 시각	메모 내용
12. 1. 15:44경	■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AQ - 경찰/조본,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 수방사, 조본, NJ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 합동팀 편성 ·방첩5, 군사경찰5, 경찰5, 경호5 기준 20명 1개팀 ·장비, 차량 등 정밀편성 - 합동체포조 작전개시 - 출국금지
12. 1. 16:24경	- 과수실, 정보보호단, 사이버사를 민간전문가팀과 합동운용 - 선관위, CQ 증거 확보 ■ 기타 - 작전부대 상황, 대전복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제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 2개의 메모를 작성한 이유 나 동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겠다. 당시 대국민담화문이나 포고

령의 내용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이 말은 하고 싶다. 장관님이 11. 30.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혼자 걱정되어 ‘어떻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메모를 써 본 것뿐이다. 작전계획에 있는 내용, 해야 될 일에만 관한 내용을 쓴 것이다. 장관한테 들은 이야기도 일부 있으나 제 형사재판과 관련 있어 이 정도만 말하겠다. ‘과수실’이라는 단어는 방첩사 과학수사센터를 말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육군특수전사령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용현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2024. 12. 1. 16:53경 약 13분 30초, 이후 17:06경 재차 1분 18초가량 통화하였다. 곽종근은 17:09 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17:11경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17:15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월요일(12. 2.)에 국제평화지원단에서 해외파병부대 출정식이 있을 때 그쪽으로 오라’며 다음 날 개최되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 한빛부대 환송식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고, 특히 이상현에게는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사흘 뒤(12. 4.) 예정되어 있는 3대대 제주도 훈련을 연기하라’, ‘다음 주 일주일 간 전 부대 야외훈련을 중단하고 부대 내에서만 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17:22경 부터 3분 55초, 그 직후인 17:22경부터 5분 59초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과 통화하였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확보 장소를 받은 것은 12. 1.이다. 12. 1. 16:53경과 17:06경 통화에서 피고인 김용현이 제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꽃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장관께서 제게 확보 장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 ‘어떤,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었을 때 확보해라’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비상계엄’이라는 직접적인 용어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없다.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겠다.’, ‘비상계엄 때문에 임무를 부여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이후 각 여단장들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장관으로부터 부 받은 임무와 관련한 전화는 아니다. 그런 말 자체를 여단장들과 통화하면서 한 사실도 없다. 여단장들을 부른 것은 저도 긴장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국제평화지원단 행사에 불러서 대비태세 이런 것들을 얼굴 보면서 강조하기 위해 오라고 했다.”, ‘제1공수, 제3공수, 제9공수여단은 서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부대 위치상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제1공수특전여단은 국회, 더불어민주당사로, 이천시에 있는 제3공수특전여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인천에 있는 제9공수특전여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와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는 것으로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광종근은 2024. 12. 2. 07:16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전화하여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어서 헬기가 뜰 수 없으니 국제평화지원단에는 나 혼자 가겠다, 제3공수여단장은 굳이 같이 안 가도 되겠다, 내가 국제평화지원단 갔다 와서 다시 전화해서 전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13:00경 육군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장실에서 한빛부대 환송식 행사 참여자들인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국제평화지원단장 김대성, 육군특수전사령부 주임원사 JA, 제550방첩부대장 김영권에게 북한 오물풍선 등 도발을 이유로 여단별 영외 훈련 중단 및 출동 준비태세 강조를 지시하며 ‘북한 위협이,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좀 위기가 있다. 이번 주에는 출동 대기태세를 갈 것이라’,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등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정보가 있다. 여단별로 출동 가능한 대대가 몇 개냐. 대대장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으나 출동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어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외훈련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광종근의 지시에 따라 2024. 12. 2. 오후 무렵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제1공수 특전여단에 속한 각 대대장들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에 도발이 예상될 수 있으니 대기태세를 잘 유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전화 잘 받아라.’, ‘음주는 자제해라.’고 이야기하였다. 광종근은 같은 날 육군특수전사령관 집무실에서 국가지정 대테러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단장 김현태에게 ‘북한이 국내 북한 동조세력 민간인들을 동원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진압작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이를 위해 비살상무기를 이용한 진압작전 훈련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광종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2. 2. 저녁 무렵 피고인 김용현의 전화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과 통화한 후, 같은 날 22:37경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너는 (전화) 받은 것 있냐? 이게 뭐냐,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냐?’라 물었고, 이진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인형과 통화해 보고 알려줄게요.’라 답변한 후 같은 날 22:49 경 여인형과 통화하였고, 위 통화 이후 여인형은 같은 날 23:06경 광종근에게 전화하여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라 말하였다.

광종근은 이 법정에서 “특전사령관이 된 이후 이진우, 여인형과는 가끔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다.

12. 1.경 확보장소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고, 12. 2. 저녁 무렵 피고인 김용현의 전화기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과 차례로 통화하였는데 ‘며칠 뒤에 보자’, ‘아니, 내일이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비상계엄’이라는 생각이 맴돌았고, 불안해서 여인형, 이진우에게 전화를 해 물어보았다. 당시 제가 여인형, 이진우에게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도 전화 받은 것 있냐?, 뭘 소리냐?,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냐?’라고 물어봤다. 이진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인형에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말했고, 여인형은 ‘그렇게 안 될 거

다.’라는 취지로 피드백 을 줬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수도방위사령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2024. 12. 2. 10:48경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메시지로 ‘현재 적 테러도발 대비 비상출동을 위한 수호신 TF는 규모와 부대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라고 물었고, 조성현은 이에 ‘예 각 대대 A급 TF와 35특임대대 B급 TF는 정상대기 중입니다. 출동태세 유지하겠습니다. 충성!’이라 답하였다. 한편 이진우는 같은 날 11:30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삼성 허니보드)에 ‘의명 행동화 절차’라는 제목의 메모를 작성해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송해 보고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4기록 971번).

의명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최초 V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

4. 전 장병 TV시청 및 지휘관 정위치 지시

5.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및 영내 사이버방 인터넷망 폐쇄 지시

6. 출동 ○○○TF병력 대상.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4.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 (제1경비대대) 의명 출동 준비

5. 사령부 포함 사여단급 부대 위병소 폐쇄 시행

6. 외부 언론들의 접촉시도 차단

장관님 ○○회의 직후

6. 수호신 출동 지시

7. 대테러대기부대 선 투입, 본관 배치

8. 후속대 1개대대(+) 투입, ○○협력단 지원하 구역 세밀 배치

9.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과 공조통화 실시

10. 작전 중간보고(장관님)

이상입니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진우는 같은 날 22:37경 광종근의 전화를 받아 광종근으로부터 ‘너는 받은 것 있냐? 이게 뭐냐,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냐’라는 말

을 들었는데, 이에 이진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인형하고 통화해 보고 알려줄게요.’라고 답변한 후 22:49경 여인형과, 23:21경 곽종근과 재차 통화하였다. 이진우는 이즈음인 23:14경 자신의 휴대전화(스마트폰)로 ‘대통령 국회해산권 있나요?’를, 다음 날인 2024. 12. 3. 07:01경 재차 ‘국회해산이 가능한가요.’를 검색하여 보았다.

위 상황에 관한 이진우의 법정진술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조성현은 이 법정에서 “수방사 제1경비단 예하에는 제1경비대대, 2특임대, 35특임대대가 있다. 제1경비대대는 경호지원이 주 업무이고, 2특임대, 35특임대대는 대테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이다. 2특임대는 합참 지정 대테러초동조치부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1개 중대 약 11명이 30분 내로 출동이 가능하도록 태세가 갖추어져 있고, 35특임대대는 국가지정 대테러특임대로서 특임중대 플러스 규모인 약 15명이 1시간 내로 출동이 가능하도록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평상시부터 장비, 물자, 탄약이 패키지화되어 있다. 2특임대, 35특임대대는 주로 간부로 구성된 소수 정예부대이다. 한편 수방사에는 일명 수호신TF가 있다. 수도 서울에 대한 대테러위협이 증대되어 2024. 2.경 만들어진 것이다. 테러가 발생하였을 때 테러 발생 원점에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본체 역할을 하는 대테러 부대(2특임대, 35특임대대)와 본체인 대테러부대를 지원하는 모듈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2024. 12. 3. 상황 중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의 상황

가) 국방부 및 군

(1) 국방부

(가)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3. 06:59경 내지 09:35경 피고인 김용현의 공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같은 날 10:00경 정보사령관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1개 팀을 대기를 시켜라’, ‘그때 복장을 권총과 탄을 휴대하고, 보안
을 철저히 유지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12. 3. 아침에
피고인 노상원에게 첫 번째로 ‘비상계엄 상황 발생 시 정보사령부의 임무’, 두 번째로 ‘비
상 상황에 대비한 임무수행과 관련해 관계자들 정신교육 실시 및 임무 확인 지시’, 세 번
째로 ‘피고인 노상원은 민간인이니 판교 소재 00부대로 이동해 대기하라. 해당 장소에서
필 요하면 내가 조언을 구할 것이고 정보사령관과 소통하라’는 취지로 지침을 하달하였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09:15경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출발해 10:00경 정부
서울경찰청사에서 국무총리 한덕수가 주관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11:00경 국방부로 복
귀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11:30경 장관 집무실 앞 홀에서 진행된 「8·15
통일 독트린 챌린지」에 참여해 전시실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11:40경 국방컨벤션에서
진행된 국방혁신기획단장 방정환을 포함한 국방혁신기획단 소속 7인에 대한 격려 오찬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오찬 자리에서 농담조로 국회의 국방예산 편성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위 오찬이 끝난 후 방정환에게 메신저(시그널)를 통해 ‘제2기갑
여단장(구삼회)과 함께 ○○동 정보부대로 가라, 파견명령이 날 것인데 명령 확인하고 수
행하면 된다.’, ‘오늘 파견명령이 있을 테니 ○여단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하
달되면 확인하고 2기갑여단장과 함께 임무를 수행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위 식사 이후인 13:43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4분 37초, 그 직
후인 13:48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5분 57초, 그 직후인 13:55경, 14:06
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각 통화하였는데, 위 통화 당시 곽종근에게
‘헬기를 특전

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태세를 갖추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당시 특전사 요원들과 2025년 교육훈련 방향에 관한 화상회의 중이었는데 장관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헬기를 특전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저는 이상현에게 ‘내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전개하지 말고 금왕기지에 그대로 두고 내 지시 있을 때만 띄우라’고 지시하였다. 미리 헬기를 특전사령부에 준비해 두지 않은 이유는 첫째 당시 눈이 많이 와서 12대를 전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둘째 당시 심정이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특전사령부에 헬기를 오게 하면 특전사 인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비상계엄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해서 그냥 금왕기지에 계속 두라고 별도 지시를 해 놓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타) 합동참모본부차장 정진팔은 2024. 12. 3. 15:00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로부터 ‘전입 신고 했냐?’, ‘장관님께서 전화를 달라고 하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어제 왜 신고 안 왔냐?’, ‘저녁에 인사하러 와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15:57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를 걸어 ‘장관님 인사를 가야 하는데, 장관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17:32경 피고인 노상원과 1분 27초가량 통화하였고 이후 17:40경 재차 정진팔에게 전화하여 ‘너 21:40에 와라’, ‘올 때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이재식을 데리고 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16:00경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에게 연락해 ‘내가 지침을 줄 게 있으니 21:30까지 내 방으로 와라’고 말하였고, 16:30경 국방부장관 집무실에서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로부터 소형 공격 드론 관련 실험, 예비 국방잠재력 등 기밀사항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은 후 박안수에게 ‘오늘 21:40경에 국방부장관 대기실로 와 있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박안수는 보고를 마친 후 돌아가면서 군사보좌관 김철진에게 ‘4건 보고 준비했는데, 다 보고 못 드렸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17:00경 집무실에서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와 독대하였는데, 오영대는 복귀하며 김철진에게 ‘21:30쯤 집무실로 오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라고 물었다.

박안수는 이 법정에서 “김용현 장관이 12. 1. 일요일 12:50경 제게 전화를 주셔서 현안 점검을 하자고 말씀하셨고, 12. 2. 22:15경 전화로 ‘이·취임식 참석 후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참모 1명과 함께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12. 3. 오전에 육군본부에서 신병교육대 현장지도를 하고 점심을 먹은 후 바로 육군사관학교로 이동하여 육군사관학교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후 헬기로 국방부로 이동하였다. 육군본부 정책실장인 김흥준 소장과 함께 장관 집무실로 가서 현안보고를 하였다. 들어가 보니 장관이 매우 바빴다. 여기저기 전화하시고, 전화기도 한 3대 있으시고, 안쪽 방에 가서 통화하시는 등 평상시보다 진지하게 전화를 많이 하고 계셨다. 일부 통화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수명 자세를 보여 장관이 약간 상급자나 군 선배와 전화를 하는 느낌이 들었다. 현안보고를 일일이 다 드리지는 못했고 제목 위주로 말씀드렸다. 현안 보고를 마친 후 장관께서 ‘오늘 21:40경 국방부장관 대기실로 와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그냥 오라고 하셨고 이유 등을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ㄹ)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18:00경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철진, 정책관리담당관 박홍배, 의전담당관 이명재로부터 각 결산보고를 받은 후 그 다음 날부터의 일정 관련 오스틴 장관 방문 준비사항을 검토하였고, 같은 날 18:40경, ‘19:00경에 대통령실에서 회의가 있다.’며 수행부관 소령 MW와 함께 대통령실로 출발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18:54경 피고인 노상원과 1분 34초가량 통화하였고, 이후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같은 날 19:15경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이동하여, 19:20경 위 안전가옥에서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 윤석열은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조지호, 김봉식에게 A4용지 크기의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였는데, 해당 문건에는 '22:00 국회', 'MBC, 여론조사꽃' 등 비상계엄 이후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19:40경 대통령실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12. 3. 18:18경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김봉식과 함께 삼청동 안가로 가서 19:20경 대통령, 국방부장관을 만났다. 안가에서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 보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앉아있었다. 주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 시국에 대한 불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주로 말씀하셨고, 중반부부터는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른바 종북세력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해 많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인데, 경찰이 중요하다, 치안유지를 잘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저나 김봉식은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A4용지를 건네 받았는데 ‘2200 국회’, ‘2300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으로 10곳이 넘는 기관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안가에서 나온 뒤 김봉식 청장을 사무실(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내려주고 경찰청장 공관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공관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누워있는데, 아내가 위 문건을 보고 ‘이게 뭐냐?’, ‘(문건 내용을 살짝 본 후) 꽃, MBC가 뭐냐?’고 물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기관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고, 아내가 ‘이런 건 가지고 다니지 말고 찢어버려라’고 해서 바로 찢어버렸다. 제 30년 이상 공직경험으로 보기에 비상계엄은 내각과 참모진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찢었다. 당시 제가 받은 문건과 김봉식이 받은 문건이 같은지 다른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12. 1. 저녁 무렵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대통령께서 청장님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하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삼청동 안가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질을 받지 못했다.”, “12. 3. 19:20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났다.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과 제게 ‘이따가 국회에서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서유지를 잘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전부이다.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거나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라거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거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 당시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하고 저희는 듣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에게 특별한 말씀을 드린 것은 없다.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될 것인가 하고 의구심이나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 동석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A4용지 크기의 문건을 건네받았는데, 시간과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중에 생각해 보고 비상계엄 이후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같은 것이라 이해했다.

문건 제일 앞부분에 ‘22:00 국회’라고 기재된 부분만 기억난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들 으면서 ‘MBC’, ‘여론조사꽃’ 등의 장소가 기재되어 있던 사실도 기억났다. 위 문건은 12. 3. 저녁에 서울경찰청 집무실에 복귀한 이후 바로 세절기로 파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모임과 관련해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윤석열이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좌파 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 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며,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각 부처 장관들 협조사항 작성 당시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작성한 A4로 된 문서를 당시 조지 호, 김봉식에게 한 장씩 나누어준 사실이 있다. 위 문서의 내용은 제가 임의로 계획 판단 해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지 않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 문서에 관해 “정확히 기억나진 않으나 위 문서에 ‘2200 국회’, ‘2300 더불어민주당’라 기재되어 있었고, 해당 단어 앞 숫자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외에 장소로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 꽃’ 등이 들어가 있었다.”, “당시 저희 4명의 협의 내지 논의에 따라 전체적으로 임무가 딱 부여돼 있어 서 경찰은 국회 외곽 중심으로, 군은 본청 시설 위주로,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으나 가능 여부에 대한 토의, 논의는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배) 한편 2024. 12. 3. 21:30경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철진,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 합동참모본부차장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이재식이 각 국방부장관 집무실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21:40경 내지 21:50경,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육군본부 정책실장 김흥준,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장 장주범,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가 각 순서대로 도착하였다. 위 인원들은 당시 무슨 일로 소집된 것인지 국방부장관 집무실 대기실에 모여 이야기를 하던 중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장주범이 ‘기자들이 연락이 오는데, 대통령실에서 뭔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지 망을 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전하규는 같은 날 21:58경 국방부 기자실장으로부터 ‘9분 뒤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긴급 발표를 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위 인원들은 단체로 대기실에 위치한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피고인 김용현이 복귀하기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김철진은 이 법정에서 “지금 생각해도 특이한 것이 장관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파를하신 것이 아니고, 육군총장도 그렇고 나머지 6명 모두 각각 개별적으로 전달을 했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됐고 육군총장 박안수, 육군정책실장 김흥준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제게 거꾸로 ‘장관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지 아느냐?’고 문의를 하였다. 저 또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까지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1:45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늦어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1:48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10~20분 뒤에 상황 발표가 있다.', '10~20분 정도 늦어진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후 21:49경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게, 21:50경 피고인 노상원에게 각 순차적으로 전화하였다.

(2) 정보사령부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출동팀의 출동 및 대기(‘정보사 선발대 10명’ 관련)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2. 3. 10:00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받아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1개 팀을 대기시켜라’, ‘그때 복장을 권총과 탄을 휴대하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후 문상호는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 작전과장 서지윤 중령을 정보사령관실로 호출하였는데, 당시 ‘상부에서 지시를 받았고, 1개 팀 정도 운영해야 하는데, 참모부에 소령급이 몇 명이나?’고 질문하자 작전과장 서지윤이 ‘한 20,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소령급 인원 8명에 작전과장과 계획처장 포함해서 10명이면 되겠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라. 오늘(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상부의 지시로 상급부대 검열을 나갈 것 같다. 장거리 출타나 휴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인원으로 선발하고, 오늘 주간 중에 이동차량을 준비해두어라’,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상급부대 훈련 또는 검열이라고 해두자’며 고동희, 서지윤에게 위 2명과 정보사령부 일반참모부 소속 소령급 인원 8명 도합 10명으로 하여금 출동 준비를 지시하였다.

문상호는 당시 상황 발생에 대해 ‘대략 20:00에서 22:00 어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후 ‘보안유지하고 아무한테도 보고하지 마라’며 보안유지를 지시하였으며, 이후 이동수단으로 ‘미니버스 1대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가 작전과장 서지윤이 카니발 2대가 나올 것 같다고 답변하자 ‘그렇게 하라’며 카니발 2대 준비를 지시하였고, 해당 선발인원들의 출동 복장과 관련해 ‘선발 인원 전투모에 전투조끼를 착용하고 권총과 공포탄을 휴대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작전과장 서지윤이 ‘K5 권총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고 말하자 ‘그러면 실탄을 준비하되’, ‘(기본 휴대량은) 너무 많고 10발만 가지고 가자’, ‘한 탄창에

10발을 넣는 게 힘들다고 하니 그러면 한 탄창에 5발씩 해서 두 탄창 10발 가져가자’, ‘탄창은 개인당 2개씩 10발해서 탄통에 시건장치(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해서 가져간다.’며 계획처장 고동희, 작전과장 서지윤 포함 도합 10명의 총 실탄 100발 준비를 지시하였다. 이후 문상호는 2024. 12. 3. 10:30경, 정보사령관 주재 주간 참모 및 직할부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해당 회의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문상호의 지시에 따라 작전과장 서지윤은 정보사령부 일반참모부 소속 소령급 인원인 김성호, 김정재, 김지웅, 김찬유, 김형주, 유병욱, 이민형, 홍태환 각 소령 8명을 선발하였다(이하 위 소령 8명과 고동희, 서지윤을 포함하여 ‘정보사 선발대 10명’이라 한다).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는 같은 날 13:10경, 정보사령부 작전과장 서지윤이 선발한 일반참모부 소속 소령급 인원 8명 중 사격훈련으로 불참한 소령 홍태환을 제외한 7명(김성호, 김정재, 김지웅, 김찬유, 김형주, 유병욱, 이민형)을 소집한 후, 통신대기 및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지시를 전달하였는데, ‘통신대기 잘하고, 야간에 먼 곳으로 가지 말 것’, ‘화, 수, 목 3일 동안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으니 멀리 가지 마라. 통신대기 잘해라. 특히 20:00에서 22:00까지는 정말 집중해서 대기를 해야 한다’, ‘복장은 잘 갖추되, 상급부대 훈련 또는 검열이기 때문에 복장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또 복장의 통일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장 통일 차원에서 야전조끼는 권총 휴대하는 것 빼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것 달지 마라’, ‘전투모, 전투복 미리 준비 잘 해 놔라’, ‘전투모에 야전상의까지 잘 해 놔라’고 지시하였다.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2. 3. 16:30경 계획처장 고동희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정보사령관실에서 고동희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할 준비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야간에 과천종합청사 인근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임무가 진행될 것이니 출동 준비를 하라’, ‘과천정

부 종합청사 옆에 중앙선거관리위가 있는데, 거기 그쪽으로 출동하게 될 것이고, 가게 되면 출입통제하고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당시 고동희가 선거관리위원회 출입 근거에 대해 질의하자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고동희는 위 지시에 따라 작전과장 서지윤에게 ‘선발된 참모부 소속 소령급 팀원들에게 연락해 20:00까지 정보사령부 회의실에 집합할 것’을 지시하였고, 한편 문상호는 같은 날 18:18 경에서 18:30경 사이 재차 계획처장 고동희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해야 된다.’, ‘즉시 대응해야 한다.’며 출동준비를 강조하였다.

이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는 2024. 12. 3. 20:00경 정보사령부 소회의실에서 작전과장 서지윤 및 정보사령부 일반참모부 소속 소령급 소집인원 8명에게 정보사령관 문상호로부터 지시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진입 및 서버실 확보 지시를 전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사진을 제시하며 ‘오늘 중앙선거관리 건물에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해야 한다.’, ‘서버실이 보통 몇 층에 있냐?’, ‘위 임무에 대해 보안 유지할 것, 각 부서장한테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고동희는 서지윤 및 소집인원 8명과 같은 날 20:30경, 준비된 카니발 차량 2대에 각 5명씩 나눠 탑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로 출발하였다. 당시 이들은 K5 권총 10정 및 탄창 1개당 실탄 5발씩 총 20개, 실탄 100발을 지참한 상태로, 위 권총은 각자 전투조끼에 넣어 개인별 휴대하되 탄창 및 실탄은 탄통에 넣어 자물쇠로 잠근 채 고동희의 차량에 보관하였고, 잠금장치 열쇠는 서지윤이 보관하였다.

고동희는 이 법정에서 ‘장교들은 개인화기가 권총이고, 훈련을 나갈 때는 당연히 권총을 휴대한다. 처음에 문상호가 공포탄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권총은 공포탄이 없기 때문에, 문상호의 지시대로, 실탄을 준비하되 개인당 10발을 탄창 2개에 나누어 5발씩 삽탄하고, 그 탄

창을 탄통에 통합보관하고 시건장치를 했다. 소지한 권총에는 빈 탄창을 넣었다. 결국 실탄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탄통을 저와 작전과장이 통합 관리하였다.’, ‘처음에 공포탄을 준비하라고 했다가 실탄을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급부대 검열을 받는 것과 같은 훈련으로 생각했다. 야전부대 경험으로 보면 실탄을 가지고 훈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검열의 경우 검열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실탄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단독군장인데 권총에 방탄헬멧이 아닌 전투모를 착용하는 경우는 상급부대 통제관, 검열관 또는 대항군 그런 임무를 수행할 때 통상적으로 하는 경우라서 당시 훈련이나 검열에 대한 통제관 또는 검열관 같은 임무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획처장 고동희 등 10명(정보사 선발대 10명)은 같은 날 21: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 도착해 건물을 탐색하며 대기하였다. 문상호는 같은 날 21:09경 고동희에게 전화하여 약 1분 39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문상호가 ‘지금 위치가 어디냐’고 질문하자 고동희는 같은 날 21:29경 문상호에게 현재 위치가 표시된 네이버지도 캡처 이미지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였다. 문상호는 같은 날 21:24경 고동희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고동희가 ‘선관위 시설 내부의 당직근무자 또는 야근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형정찰을 해보니 불빛들이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 야근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묻자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후, 피고인 노상원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노상원은 ‘야근 인원들 퇴근시키고’, ‘외부 인원 통제, 출입 인원 통제하고 휴대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선관위 직원들 출근, 출입 여부를 확인해라.’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문상호는 재차 고동희에게 전화하여 ‘그 인원들, 야근자는 퇴거시키고, 거기 당직근

무자들은 해당 위치에서 근무하게 하되 휴대폰 사용하지 못하도록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민간인과 접촉 시 강압적 물리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고동희가 작전 수행 근거를 질의하자 ‘아마 30분 정도 뒤면, 22:00경 무렵이 되면 TV에 뭔가 뉴스든 속보든 뭔가 나올 거다. 그걸 잘 지켜봐라. 그걸 지켜보면 임무를 할 수 있는 임무시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고동희는 출동 인원들에게 임무를 전달하고 임무수행에 대해 토의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지는 마라, 빼앗지는 말고 대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라.’고 문상호의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후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2. 3. 21:40경 내지 21:50경 고동희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직원 5명 명단 사진을 촬영해 비화폰을 통해 전송하며 ‘그 인원들이 정문으로 오게 되면 그 인원들은 확인하고 들여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고동희는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소령급 요원 및 통신병과 소령 2인을 포함한 9명과 함께 전산실 위치 확인 및 야간근로자 수색 인원 등 임무에 대한 작전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즈음 문상호는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좀 늦어진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지연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21:51경 고동희에게 재차 연락해 ‘임무개시가 좀 지연될 것 같다. 좀 더 기다려야겠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지연될 것 같다’고 말하여 고동희 등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였다.

(나) 정보사 요원 판교 소재 100여단 집합(‘정보사 요원 36명’ 관련)

①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3. 오후 무렵 피고인 김용균, 제2기갑여단장 구삼희, 국방부 국방혁신 기획단장 방정환을 각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으로 불렀는데, 당시 구삼희에게 유선으로 ‘지금 뭐 하고 있냐?’, ‘장관님이 너한테 지시한 게 있는데 그걸 전화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

다. 그러니 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마침 네가 휴가라고 하니 안산으로 올 수 있느냐’, ‘안산 상록수역 그쪽에 와가지고 전화를 하면 어디로 올지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구삼회는 2024. 12. 3.부터 이틀간 휴가를 낸 상태였다).

이후 피고인 김용균이 2024. 12. 3. 14:49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 먼저 도착해 피고인 노상원을 만났는데, 피고인 노상원은 피고인 김용균에게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한편 자신의 가방에서 2장 이상의 서류를 꺼내 피고인 김용균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김용균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였다. 위 서류에는 당시 피고인 김용균이 2024. 11. 6.경 피고인 노상원에게 제공한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의 인원들이 제2수사단 수사1부의 요원들로 기재되어 있었고, 수사단 단장으로 구삼회가 적시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 노상원은 자신이 가져온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김용균은 안경을 벗고 고개를 끄덕였다. 구삼회는 같은 날 14:58경 합류하였는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균의 대화를 들었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 김용균은 자신의 가방에서 2024. 11. 10.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포함한 서류들을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다. 15:08경 방정환이 합류하였는데, 피고인 노상원은 구삼회가 합류할 당시 구삼회에게 피고인 김용균을 ‘예비역 선배님’으로 소개하였다.

구삼회는 이 법정에서 “노상원은 2007.경 1군사령관 김근태의 부관으로 근무할 때 얼굴을 알게 된 사이였다. 문상호는 동기생이고 2023.경 지작사에서 제가 작전처장을, 문상호가 정보처장을 하면서 친분을 맺었다. 방정환 준장은 2017. 12.경 수방사 제1경비단 부단장을 할 때 경호실 중령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김용균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12. 3. 안산 롯데리아에서 처음 만났다.”, “노상원이 2024. 3.경 제게 전화하여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제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고 진급 시

기인 2024. 9~11.경 마치 제가 진급할 수 있는 것처럼 자주 연락했다. 그러다가 2024. 11. 25. 발표된 하반기 인사에서 소장 진급을 못하게 되었다. 노상원이 진급 발표 이틀 전에 연락을 주어 ‘안타깝게 진급이 안 되었다. 하지만 장관님께서 너를 아끼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다음 보직이나 그런 걸 잘 챙겨줄 것 같다. 장관님께서 국방부로 너를 데려와서 임무를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11. 30.경 노상원이 다시 제게 전화를 해서 ‘장관님이 국방부 TF 등 형식으로 너를 불러 임무를 줄 것이다.’, ‘방정환이 잘 알지? 방정환도 같이 임무를 하게 될 거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저는 그 당시 장관님께서 제게 임무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다. 12. 3. 노상원이 안산으로 오라고 해서 안산 롯데리아로 갔다. 거기서 노상원과 김용균이 대화를 하고 있었고, 간단하게 김용균을 소개받고 인사를 나눴다. 노상원이 제게 김용균을 소개시켜 주면서 ‘앞으로 너하고 일을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다.’는 말도 했다. 그리고 노상원이 김용균하고 주로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혼자 멍하니 앉아 있기 그래서 롯데리아 점원한테 필기구를 빌려 제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소형 수첩에 습관적으로 메모를 하였다. 당시 두 사람이 보고 있던 서류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주로 본 문서는 4~6장 되는 서류인데 사람 이름이 5~7명씩 적혀 있는 서류였다. 당시 두 사람이 ‘선관위’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관위 관련 인원일 것이라 추측했다. 서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임시선거사무소’, ‘서버’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두 사람이 주로 했던 대화가 ‘몇 시에 어디에 가서 누구누구를 확보해라’ 이런 식이었다. 마치 임무를 최종 확인하는 자리 같았다. 노상원이 더 윗사람이 지시하는 형태로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었어요?’ 라는 말투나 표현을 사용했다. 노상원이 ‘확보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김용균은 ‘예 알겠습니다.’라는 식의 반응이었다. 김용균은 계속 진지한 태도를 유지했고 노상원의 이야기를 메모도 하고

그 다음에는 ‘준비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표현을 써가며 이야기를 했었다. 김용균은 저와 방정환보다 10분 전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용균과 노상원의 대화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노상원이 김용균에게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한다. 3일 이내로 찾아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당시 노상원이 김용균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QR코드라는 단어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노상원은 김용균 대령과 문서를 보면서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했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누군가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노상원은 부정선거 증거와 관련해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노상원과의 12. 3. 만남은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다. 당일 연락을 받고 안산 상록수역 인근으로 간 것이다. 노상원이 전화로 제게 ‘마침 휴가라고 하니 잘 되었다. 장관님이 너한테 지시한 게 있는데 그걸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 안산으로 올 수 있느냐’는 말을 하였다. 당시 룩데리아에 갔는데 대화 자체가 거의 3/4 이상은 노상원과 김용균의 대화였다. 제가 ‘왜 사람 불러다 놓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야’라는 기분을 가질 정도였다. 그러다가 노상원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더니 통화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저와 방정환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 역시 ‘장관님이 나중에 명령을 낼 거고, 그 명령을 내면 알게 될 거다.’라는 것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준 것이 별로 없었다. 저하고 방정환이 대기할 장소에 대해서도 ‘문상호 장군이 알고 있다. 문상호와 통화해보면 알 것이다. 거기서 대기하면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방정환은 이 법정에서 “12. 3. 룩데리아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노상원, 김용균, 구삼희가 와 있었다. 김용균을 그날 처음 보았다. 예비역 대령이라 소개를 받고 간략하게 인사를 했다. 당시 이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노상원이 ‘장관님께서 임무를 주실 텐데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에서 단장하고 부단장 임무를 저하고 구삼희 장군이

해야 한다.’, ‘수사단이 구성되면 상황실을 꾸리고 상황일지를 정리해서 장관님께 보고 드리는 역할을 저와 구삼회 장군이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난다. 전체적인 내용 중에 주된 것은 선거 관련 이야기였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흘려들었다.”, “그 당시 기억하고 제가 사후적으로 들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혼합되어 있다. 당시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저는 노상원이 하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오랜만에 노상원을 만나 안부도 묻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저와 관련이 없는 선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다. 주로 ‘선거가 많은 점이 잘못되어 있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는데 상관이 없어 흘려들었다.”, ‘노상원과 김용균의 전반적인 대화 맥락은 둘이 좀 대등한 관계였고, 서로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당시 노상원이 제게 수사단 편성 관련 서류를 보여줬다. 서류 밑에 ‘부단장 방정환’이라고 적혀있었고, 저런 임무가 부여되겠구나 생각했다. ‘단장 구삼회’라는 것도 보았고, 명단에 아는 이름은 없었다. 제가 합류한지 25분쯤 지난 후에 노상원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었는데 누군가와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맥락상으로는 노상원이 김용균에게 어떤 역할을 좀 당부하는 것이 있었는데 유추해보면 수사단 1개 팀을 맡으라는 취지였던 것 아닌가 한다. 다만 이는 상황의 맥락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린 거고, 두 분이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는 저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억나는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이 법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12. 3. 롯데리아에 김용균이 먼저 왔다.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에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장관님 말씀이다.’는 취지로 말하자 얼굴이 확 바뀌면서 ‘땃글 사건으로 10개월 감옥 생활을 해서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공식적인 채용절차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일 잘하고 똑똑한 애들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했는데 이 명단이 왜 여기 있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균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노상원으로 부터 ‘오늘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2024. 12. 3.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노상원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노상원이 보여준 서류 자체는 개인적인 것이었고, 그날 노상원을 만나러 간 이유도 개인적인 일로 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겠다. 서류 뒷면에 제가 작성하여 11. 6.경 건네준 군사 경찰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 제가 추천한 명단이 비상계엄 관련 제2수사단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14:58경 구삼회 준장이, 15:08경 방정환 준장이 합류하였는데, 두 사람을 그날 처음 보았다. 구삼회와 방정환이 온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합류하기 전까지는 부정 선거 관련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당시 제가 꺼낸 서류 역시 개인적인 자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언하지 않겠다.”, ‘저는 녹내장으로 인한 시야장애가 있다. 시야에서 보이는 부분이 45~50% 밖에 되지 않고, 굴곡지게 보인다. 왼쪽 눈은 윤곽만 보이고 선명하지 않고, 오른쪽 눈은 안경을 벗고 가까이 집중해서 읽어야 서류 내용을 읽을 수 있다.’, “롯데리아에서 제가 추천한 명단을 보고 노상원에게 ‘덧글 사건으로 10개월 감옥 생활을 해서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공식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일 잘하고 똑똑한 애들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했는데, 이 명단이 왜 여기 있냐?’며 항의를 했다.”, ‘저녁에 조사본부 김상용 차장을⁴⁷⁾ 만나 저녁식사를 한 이후 계속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용균은 ‘저는 국방개혁TF로 생각하고 명단을 제공했는데 다르게 쓰일 것

47)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1부장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수사1부는 군사경찰로, 수사2, 3 부는 정보사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해 당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에게 항의했다.’, ‘군사경찰 역할과 관련하여 필요시 도와달라는 노상원의 제안에 대해 합법적이라면 공개채용 하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다.’, ‘피고인 노상원이 12. 3. 롯데리아에서 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여 제대로 듣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자리를 떠난 것이 전부이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②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2. 3. 13:00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노상원은 ‘야간에, 이번 주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발한 인원들을 소집을 시켜서 며칠 대기할 수 있게 해라’, ‘김봉규, 정성욱 대령이 선발한 40명 꼭 소집시켜라’고 말하였다.

문상호는 같은 날 14:00경 정보사령부 내에서 실시한 업체 초청 AI첨단기술 발전방향 토의 및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이후 제2기갑여단장 구삼희, 국방혁신기획단장 방정환에게 유선으로 ‘정보사령부 예하 100여단으로 이동하라.’는 취지로 ‘내가 누구한테 시켰다. 전화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인원이 안내하는 데로 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후 구삼희, 방정환은 발신 번호 표시제한이 된 전화로 주소(100여단)을 안내받아 100여단으로 출발하였다.

문상호는 같은 날 16:00경 정성욱에게 판교 소재 100여단이 집합장소임을 알리면서 ‘오늘 임무가 있을 것 같다. 저번에 추천한 요원들로 2개의 팀을 꾸려 20:00까지 100여단 본부에 소집시켜라’, ‘계획대로 선발해 둔 요원들 소집해서 100여단에 집결시켜라. 며칠 정도 대기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해라’, ‘3~4일 정도 임무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하라. 구체적인 임무는 내가 여단 본부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노상원 역시 같은 날 16:00경 김봉규에게 판교 소재 100여단으로 이동하라고 하면서 ‘구 장군 가면 가 있을 거야’,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노상원은 같은 날 16:00경 내지 17:00경 사이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정보

사 선발 대로 하여금) 오늘 21:00경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도록 해라’, ‘두 사람을 너네 부대로 보낼 테니까 전화 받으면 부대 위치 좀 알려줘라’고 당부하였고, 또 같은 날 17:00경 김봉규에게 자신의 주소(안산시 상록구 ◇◇)를 알려주며 ‘차를 한 대 보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문상호는 제2기갑여단장 구삼희, 국방혁신기획단장 방정환에게 유선으로 정보사령부 예하 100여단으로 이동하라는 취지에서 ‘내가 누구한테 시켰다. 전화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인원이 안내하는 데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후, 정성욱에게 ‘구삼희를 안내하고,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받은 임무 문건을 보여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김봉규에게 전화하여 ‘XO동에 들어가서 인원들 소집하고 준비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 직후 정성욱은 정보사령관 문상호로부터 위 지시를 받은 후 김봉규에게 전화하여 ‘사령관님이 18:30까지 판교 여단으로 집결하라고 한다.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문상호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김봉규와 함께 유선으로 (종래 선발하였던 소집인원 40명 중 휴가 중이거나 출장 중인 요원 8명을 제외한 32명 및 명단에 없던 100여단 소속 요원 4명을 추가한) 정보사령부 요원 36명(이하 ‘정보사 요원 36명’이라 한다)에게 ‘중요한 임무가 있으니까 20시까지 100여단으로 와라. 사령관님 지시다.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라’고 하면서 집합할 것을 각 지시하였다. 김봉규는 이후 같은 날 17:30경 4~5일가량 입을 의류 및 속옷, 세면도구 등을 준비·지참해 같은 날 18:30경 판교 소재 100여단에 도착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2명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서 보면 너도 알 만한 사람이다.’는 말을 들었다.

③ 한편 구삼희, 방정환은 같은 날 저녁 무렵 100여단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정성욱, 김봉규를 차례로 만나 서로 소개를 한 후, 여단본부 건물 3층에 있는 정성욱 대령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구삼희는 2024. 12. 3. 20:00경 피고인 노상원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잘 도착했냐,

밥은 먹었냐?’, ‘잘 되게 해라, 장관님 명령이 곧 날 거니까 그 명령이 나면 그대로 하면 된다. 삼회 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거 하는 거 없다. 아무튼 잘 되게 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2. 3. 21:00경 내지 21:30경 즈음 판교 소재 100여단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21:30경 즈음 여단 대회의실에 집결해 요원 집합 보고를 받으면서 당시 김봉규, 정성욱, 정보사 요원 36명이 집합한 사실을 확인한 후, 김봉규, 정성욱, 정보사 요원 36명에게 ‘언론에 곧 특별한 발표가 날 거다. 보도가 나올 거다.’, ‘계엄이 있을 거다.’, ‘TV를 통해서 봐라’, ‘정성욱 대령과 김봉규 대령으로부터 임무를 받아라.’고 이야기하였다. 그즈음 문상호는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로 ‘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해라’, ‘전산실 인원들이 출입한 것을 확인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상호는 임무 확인을 위해 김봉규, 정성욱에게 비화폰으로 전송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 사진 2장을 보여주었다(문상호가 전송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 사진에 있는 명단은 종래 임무 문건에 기재되어 있던 직원 30명 명단과 차이가 있었다). 한편 김봉규는 ‘2024. 12. 4. 06:30경까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노상원의 사전지시에 따라 요원들의 출발 시각을 2024. 12. 4. 05:40경으로 판단해 준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상호는 2024. 12. 3. 21:40경 내지 21:50경 정보사 선발대 10명을 이끄는 계획처장 고동희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직원 5명 명단의 사진을 촬영해 비화폰을 통해 전송하며 ‘그 인원들이 정문으로 오게 되면 그 인원들은 확인하고 들여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고동희는 함께 출동한 소령급 요원 및 통신병과 소령 2인을 포함한 9명과 함께 전산실 위치 확인 및 야간근로자 수색 인원 등 임무에 대한 작전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같은 날 21:51경 정보사령관 문상호로부터 ‘임무 개시가

좀 지연될 것 같다. 좀 더 기다려야겠다.’는 지시를 받은 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3. 22:23경부터 대국민담화를 시작하다가 22:27경 무렵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담화를 마치는 장면이 관련 뉴스로 방송되자, 문상호는 같은 날 22:27경 다시 인원들을 대회의실에 소집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관련 임무를 수행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김봉규, 정성욱은 각자 자신의 인원들을 데리고 관련 임무를 설명 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항목에서 살펴본다.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12. 3. 노상원으로부터 ‘2명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서 보면 너도 알 만한 사람이다.’, ‘구하고 방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상호가 21:00경 도착했던 것 같은데, 1층 대회의실에 인원들을 소집한 후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난다. 당시 어떤 인원이 ‘혹시 우리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해서 문상호가 ‘그때는 대기를 해라, 다시 상황파악을 하고 지침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12. 3. 17:00경 문상호로부터 ‘손님 2명이 갈 테니까 오면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전달받았다. 문상호가 구삼회, 방정환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기존 임무 문건에 2명의 이름이 있었는지, 피고인 노상원이 기존에 그런 이름을 언급했는지는 알지 못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2명이 제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인사를 나누었고, 소집 인원 명단을 보여주었으며, 임무 내용도 알려주었다. 제가 잠깐 옷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인 20:50~21:00경 문상호 사령관이 제 사무실에 와 있었다. 문상호는 우리에게 다음 날 아침 5시 30분경에 선관위로 가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그렇게 이해했다. 이후

문상호가 전부 소집을 하더니 ‘중대방송이 있을 테니 방송을 보고나서 다시 소집하겠다.’는 취지로 대기 지시하여 일단 대기하였다가, 계엄 선포 방송이 있고 나서 문상호가 다시 전부 소집을 하여 ‘대통령의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합법이다, 합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 가서 임무 수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문상호가 그와 같이 말한 후 저하고 김봉규에게 ‘각 팀별로 데리고 와서 설명해줘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저는 제 인원들을 3층 회의실에 소집해서 임무를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태환은 이 법정에서 “정성욱 대령은 2015년경부터 정보사령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정성욱이 2024. 10. 27. 제게 전화하여 전공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을 했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정성욱이 11. 6.경 또 전화하여 ‘다음 주 한 주 동안 휴가, 장거리 출장 잡지 말고 시간 비워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저희 부대에서 수행하는 특정한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 실제 부여받은 임무는 없었다. 정성욱이 12. 1. 다시 전화하여 ‘지난번에 말했던 일 같이 하자,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오면 하고 안 오면 못 한다. 보안유지해라’고 말하였다. 정성욱이 12. 3. 오후에 제게 전화하여 ‘20:00까지 정보사령부 100여단으로 일주일 정도 분량의 속옷, 양말을 챙겨서 오고, 보고도 하지 말고 보안유지 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당일 20:00경 100여단에 갔다. 1층 대회의실로 안내를 받았고, 이후 다른 인원들과 함께 3층 회의실에서 대기했는데 21:30경 대회의실로 이동했다. 당시 정성욱이 ‘21:30경 사령관이 직접 와서 지령을 하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회의실에 김봉규, 정성욱 대령과 약 30명이 집합했고, 김봉규 조와 정성욱 조로 조를 나누었는데, 문상호 사령관이 21:45경 대회의실에 왔다. 문상호 사령관은 ‘사령관 본인도 상당히 혼란스럽다. 조 만간 대통령이 계엄이든 다른 용어든 해서 상황을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위에서

내린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혼란스럽지만 우리에게 명령이 하달되었고 우리는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하였다. 사령관이 두 대령에게 ‘세부 임무 하달했는지’를 묻자 두 대령이 ‘조 편성만 해서 알려줬다. 이후에 조별로 가서 세부 임무를 하달하겠다.’라고 답했다. 저는 정성욱 대령 조였는데 저희 조는 22:20경 3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정성욱으로부터 세부 임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정성욱이 팀을 나누어 명단을 알려준 후 ‘내일 새벽에 과천 소재 선관위로 이동해서 전산실 인원, 여심위 직원 등 특정 인원들을 출근 시 체포해야 한다. 심문 자체는 방첩사가 할 것이다.’라고 임무를 설명하였다. 체포 대상자 약 25명 정도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누군가 받아 적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정성욱이 표찰을 나누어 주었는데, 표찰에 ‘합동수사본부’라고 쓰여 있었다. 정성욱 대령이 야구배트,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등을 들고 오더니 팀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손을 뒤로 묶어 포박하고, 안대를 씌운 후 복면을 재차 씌우고, 휴대폰을 별도로 확보하고, 반창고를 이용해서 체포대상자들의 왼쪽 가슴에 이름표를 붙인 후 15:00경 버스가 올 때까지 회의실에 감금해 두라’, ‘절대 사람을 때리지는 말아라’, ‘대신 복면 씌워 놓고, 옆을 쿵쿵 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라’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일부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법적 정당성 등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정성욱이 ‘계엄이 선포됐다, 정당성이 있다.’는 식으로 독려했다. 나중에 사령관도 저희가 다시 집합했을 때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그 무렵 김봉규가 5명이 더 추가되었다고 하면서 5명의 이름을 더 불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12. 3. 08:30경, 방첩사령부 참모장 이경민, 방첩사령부 수사 단장 김대우와 함께 모부대 군사기밀 유출 및 간첩혐의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약 1

시간가량 토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당일 사령관 수행 일정을 모두 참모장 이경민에게 위임하여 대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후 07:56경부터 2분 44초, 08:59경부터 2분 10초가량 피고인 김용현과 전화통화를 한 후, 11:05경부터 11:09경까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11:25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 ‘최초 지시’라는 제목의 메모를 생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4기록 630번 중 12항목).

■ 최초 지시

-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조치할 것.
-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

- 참모장은 의명 합수본부로 전환준비
- 영외거주자 소집, 광수대 전 수사관 사령부로 소집
- 부대방호태세 최고로 격상, 주둔지 방호 및 요인경호

-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 과학수사실, 정보보호단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 지휘를 받을 것
- 1처장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 받을 것
- 참모장은 경찰,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 받을 것
- 예하부대는 포고령과 작계에 의거 조치

이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12. 3. 11:30경 내지 13:00경, 점심식사 후 참모장 이경민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지금 군사위기사황이 고조되고 있으니 오늘 처·실장들 보직 교대, 부대장들 보직 교대 신고 등 많은 사람들이 음주 회식이 많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도록 부대 관리 차원에서 강조를 해라’며 음주 등 자제 지시를 하달하였는데, 위 지시에 따라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박성하는 같은 날 13:02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2025 처실단장님'에 ‘오늘 군사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음주회식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야간에도 정위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불가피한 모임이 계획되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음주를 피해주시면서 통신축선상 대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도 당부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여인형의 지시를 방첩사령부 소속 주요직위자들에게 각 전파하였다. 여인형은 이후 같은 날 13:43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4분 37초간 통화하였고, 16:43경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아 2분 4초가량 통화하였다.

여인형은 2024. 12. 3. 17:00경 일과시간이 종료되었으나 북한 오물 풍선 도발 우려 등을 이유로 퇴근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9:00경 내지 20:00경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위 저녁식사 당시 정성우에게 ‘너 선관위 관련된 것 알고 있냐?’, ‘그냥 찾아봐. 급한 거 아니야’라는 말을 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여론조사꽃의 위치를 질문하고 찾아보라고 하였고, 정성우는 20:23경 여인형에게 위 4곳의 위치 등을 보고하였다.

여인형은 같은 날 20:23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과 약 4분 22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여인형이 ‘국무위원들이 모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형님, 선관위 어디 어디지?’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곽종근은 ‘선관위가 과천이 있고, 관악에 여심위가 있다, 수원에는 연수원이 있다, 또 여론조사꽃도 있는데 특전사가 거기에 들어갈 거다.’라 답하였고, 재차 여인형이 ‘형님, 연수원이 뭐지?’라 물어보자 곽종근은 ‘거기에 서버가 있대’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여인형이 ‘여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라고 질문하였다. 한편 곽종근이 ‘지금 분위기는 어때?’라고 묻자 여인형은 ‘분위기로 잘 모르죠. 어르신들이 잘 판단하시겠죠.’라고 답변하였다.

위 통화 이후 여인형은 같은 날 20:34경 1처장 정성우에게 ‘너네 조지호 경찰청장 전화 번호 있느냐’며 피고인 조지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정성우가 없다고 하자 ‘그래? 그럼 경찰청장 전화번호를 어떻게 확인을 하지?’, ‘행안부 최연우 보좌관한테 연락처를 알아봐라’라며 피고인 조지호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정성

우가 같은 날 20:37경 행정안전부장관 보좌관 최연우로부터 피고인 조지호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여인형에게 보고하였다. 여인형은 피고인 조지호의 전화번호를 보고받으면서 1차장 정성우에게 갑자기 ‘4개 장소(과천, 관악,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수원 선거연수원)에 방첩사령부 인원들이 투입될 수 있고, 전산실 출입통제 및 전산실 서버 확보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런저런 말을 하였고, 정성우가 ‘사령관님, 이거 왜, 혹시 선관위 하니까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라고 재차 질의하자 ‘그건 아니었고, 그런 건 아니야’라며 ‘참모장 있나? 참모장 한 번 오라고 그래야겠다.’며 같은 날 20:53경 참모장 이경민을 호출하였다.

여인형은 2024. 12. 3. 21:20경, 참모장 이경민, 1차장 정성우에게 ‘야, 너네들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장군께서 시국선언 했던 거 알고 있어, 오늘? 예비역들 많이 참석한 내용을 알아?’, ‘야, 이거 누구누구 참석한 거야?’라고 이야기하며 참모장 이경민에게 ‘내가 너를 왜 불렀던 것 같아?’라고 물었는데, 이에 이경민이 ‘장관님 탄핵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퇴진 이런 것입니까?’라고 답변하자 ‘야, 지금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육군총장이 (국방부 청사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지’라며, ‘자, 너희들에게 의견을 한 번 물어보자. 만약에 지금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군이 따르겠느냐?’라고 질의하였는데, 이에 이경민이 무슨 비상상황이나 되묻자 ‘아니, 뭐 계엄 같은 거. 하여튼 그런 비상상황’이라 답변하였고, 이에 이경민, 정성우가 ‘따르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피력하자 ‘그래. 나도 너희들 의견에 동의해. 그럴겠지?’, ‘뭔 일이 있겠어. 어른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라 답변하였고, 이에 참모장 이경민은 ‘한덕수 총리께서 잘하실 것입니다’라 답변하였다. 이후 여인형이 21:38경 ‘수사단장 있나?’라고 이야기하자 정성우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전화하여 ‘사령관님이 찾으십니다. 지금 어디십니까’라 이야기하자, 당시 김대우는 ‘지금 자려고 집(안양)에 와 있어’라고 답변한 후 ‘일단 그러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내 차로 운전을 못 하니까 관용차를 불러서 들어가니까 좀 늦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려라'라 답변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21:45경 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여인형은 위 통화 중 '네, 네, 네, 네'라며 답변하였고 이후 이경민, 정성우에게 '장관님이야. 좀 늦어진대'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여인형은 22:14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약 45초가량 통화하였다. 김대우는 22:25경 전후 방첩사령부 본부건물 5층에 위치한 여인형의 집무실에 도착하였다.

정성우는 이 법정에서 “방첩사령부의 역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합동수사본부로서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다. 여인형 사령관은 2024. 2. 말경 무렵 3월의 FS 연습을 앞두고부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면 어떤 식으로 임무가 주어지고 실행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걸 구체화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방첩사령관이 되기 전 육군본부 정작부장을 했기 때문에 전시 전환 절차에 따른 각종 계획을 좀 많이 알고 있었고, 전문가 차원에서 우리 부대원들에게 임무도 많이 부여하고 지시를 하지 않았나, 저(당시 방첩사령관 비서실장)는 그렇게 이해한다. 2024. 4. 15. 총선 무렵 부정선거 의혹 주장들에 대해 확인을 부탁하셔서 지휘협력과장 배정효 중령과 함께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면서 제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라.’는 직언을 드리기도 하였다. 당시 사령관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수궁하는 태도였다. 여인형은 2024. 12. 3. 공식 일정으로 대령 진급자 직책 계급장 및 보직 신고 등 진급 신고가 3개 있었는데 모두 참모장에게 위임하여 대행하도록 했다. 진급 신고 등은 가족들이 다 같이 오는 행사여서 보통 사령관이 정말 따뜻하게 준비를 하는데, 그날은 다소 의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령관께서 공식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조만간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언동을 하지 않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점심식사 후 산책할 때 ‘지금 군사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으니 음주 회식 등 자제하고 부대 차원에서 강조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셔서 참모장이 주요 직원자들에게 이를 전파했던 기억이 있다.”, “12. 3. 사령관과 함께 저녁식사로 순대국을 먹었는데, 갑자기 선관위 등 4곳의 위치를 제게 물어봤다. 그냥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4개소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 당시 여인형이 ‘계엄’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저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중앙선관위 연수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꽃 등을 인터넷 검색해서 같은 날 20:23경 직전에 4곳의 위치를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같은 곳이라 생각했다. 제가 보고를 하면서 왜 확인하시는지, 연수원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는데, 20:23경 갑자기 광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여인형 사령관이 광종근과 통화통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때 여인형이 광종근에게 ‘이거 연수원이 뭘니까?’, ‘어디어디지?’, ‘수원 선거연수원이 뭘지?’ 등을 묻고 광종근 이 여인형에게 ‘거기에 서버가 있대.’라고 말하거나 둘이 ‘우리가 여기 갈 거야, 갈 수 있어’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사후적,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둘 사이에 뭔가 공유된 것이 있었구나.’라고 판단된다. 여인형은 광종근과 통화 이후 ‘행안부 최연우 보좌관을 통해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의 전화번호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20:37경 최연우 보좌관으로부터 피고인 조지호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전달받아 10분 정도 후 여인형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사령관 비서실장은 보직된 지 1주일밖에 되지 않아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제게 지시한 것으로 생각했다. 전화번호를 보고할 때 갑자기 여인형이 단계적으로 이런저런 말을 언급하면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등 4곳에 가서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어 와야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한 이야

기를 한 것이 대략 21시경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시의 분위기는 당장 무엇이 발생해서 임무를 하달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령부 차원에서 뭔가 임무가 하달이 되나’는 정도로 이해를 했다. 제가 여인형에게 ‘이거 혹시 전에 이야기했던 부정선거 관련입니까? 왜 극우 유투버들이 주장하는 그런....’이라고 하니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냥 그래.’라고 말하면서 얼버무리고 이경민 참모장을 호출했다. 21:10경 참모장이 사령관 집무실로 들어왔다. 여인형은 저와 참모장에게 ‘너희들, 김병주 의원 등 장군께서 시국선언 했던 것 알고 있어? 누구누구 참석한 거야?’라고 물어보아, 저와 참모장이 각자 검색을 하였고, 이후 여인형이 누구로부터 문자를 받았는지 ‘누구누구야.’라고 가르쳐 주면서 ‘참나, 누구누구도 갔네.’ 이런 식으로 말하였다. 그 무렵 여인형이 김대우 수사단장을 찾아, 제가 김대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결국 21:30경 연락이 되어 ‘사령부로 나오라’고 말했다. 여인형은 김대우를 찾은 이후에도 계속 국내 정치 현안 등에 대해 한탄하는 이야기를 하다 가 21:26경 여인형은 참모장에게 ‘내가 너를 왜 불렀던 것 같아?’라고 물어보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탄핵 관련 이야기가 있었던 처라, 참모장이 ‘장관님 탄핵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퇴진 이런 것입니까?’라고 말하자, 여인형이 ‘야, 지금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육군총장이 국방부 청사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자, 너희들에게 의견을 한 번 물어보자. 만약에 지금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군이 따르겠느냐?’라고 하였고, 제가 ‘무슨 비상상황입니까?’라고 묻자 여인형은 ‘아니, 뭐 계엄 같은 거, 하여튼 그런 비상상황’이라고 말하며 다시 저와 참모장의 의견을 물었다. 참모장은 ‘군인이라면 적법한 명령에 따르는 것이 맞다. 그러나 명분과 절차상에 있어 적법한지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저는 ‘지금 무슨 상황에서 비상상황, 이런 상황에서 군이 따른다고 하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여인형은 ‘그래, 나도 너희들 생각이랑 비슷해, 뭔 일 있겠어, 에휴’라고 하였다. 당시 사령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든 뭐든 하려고 해도 국무위원들이 잘 판단해서 막아줄 것이다.’는 분위기로 말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이경민 참모장도 ‘한덕수 총리가 잘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도 기억난다. 그때, 아마도 21:40~50경, 전화가 왔다. 여인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가서 전화를 받고 ‘네, 네, 네, 네’하고 와서 ‘장관님이야, 좀 늦어진대’라고 말하였다. 당시 저와 참모장은 국무회의가 늦어진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대통령 피고인 윤석열이 22:23경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을 여인형 사령관 집무실에서 여인형, 참모장과 함께 보았고, 담화가 끝나가는 시점에 수사단장이 들어왔다. 담화가 끝나자 여인형 사령관은 전투화를 신으면서 ‘아이씨, 빨리 내려가자’고 짜증을 내면서 말하였고, 다 같이 우르르 지하 2층 위 기관리센터 회의실로 내려갔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간 것이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인형이 이경민 참모장에게 영외 거주자 소집, 부대 방호태세 격상 등을 지시하였다. 처음에는 지하 2층 회의실 문이 안 열려서 실무자들이 키를 가지고 와 문을 열 때까지 약 10~20분간 복도에서 대기했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이경민은 이 법정에서 “12. 3. 08:30경 그날 예정된 신고 3건, 실장보직교체 신고, 직책 계급장 수여식, 군무원임용 신고를 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참모장인 제가 했다. 제가 ‘직책계급장 수여식은 가족들도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령관님이 직접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인형은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처·실장들은 통신축선상 대기하라, 음주를 자제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제가 따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는 지시도 하였

다. 당일 오후에 국방부 방첩부대장 장상주와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장상주도 ‘장관님 분위기가 이상하다,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통화 중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저도 ‘사령관님도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말하여 둘이 ‘감사원장이랑 검사 탄핵 때문 아니냐?’, ‘혹시 장관님하고 사령관님 탄핵되시는 것 아니냐?’는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TV에 계속해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뉴스가 나왔었다. 또 국정감사 때 김용현 장관하고 여인형 사령관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도 참모장실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21:00~21:30경 연락이 와서 사령관실로 올라갔다. 당시 정성우 1처장도 있었다. 여인형이 ‘내가 왜 부른 것 같으냐’고 말하면서 ‘지금 육군총장이 올라오고 있고, 국무위원들이 소집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계엄이냐, 북한이 도발이라도 했느냐’고 되물었고, 정성우 처장과 함께 ‘이 상황에 무슨 계엄이냐, 국무위원들도 반대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여인형 역시 ‘그래, 설마 계엄이 되겠느냐’는 식으로 말했다. 당시 여인형 사령관 발언으로 봐서는 ‘설마 선포되겠느냐’는 그런 반응이었다. 여인형이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다가 끊고 나서 저희에게 ‘장관님이야, 조금 늦어진대’라는 말을 하였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가 늦어진다는 말로 이해했다.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문이 시작될 무렵인 22:23경 김대우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 대국민담화가 22:27경 비상계엄 선포로 끝나자 여인형 사령관이 ‘지금 장관님 주관으로 화상원격회의(Video Teleconferencing, VTC)가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고 함께 지하 2층 브리핑 룸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령관이 제게 영외거주자 소집, 부대 방호태세 격상, 요인(사령관)경호 3가지를 지시하였다. 그런데 지하 2층 브리핑 룸이 연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20~30분 그냥 브리핑 룸에서 헤맸고, 결국 이창엽 비서실장이 ‘5층 회의실에서 연결이 된다.’고 하여 다시 5층으로 올라

갔는데, 이미 VTC가 끝난 상황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계엄사령관의 명에 의해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는데, 방첩사령부는 합동수사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방첩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이, 방첩수사단장은 합동수사단장이 되는 것으로 훈련하여 왔다. 규정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장성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첩사령관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훈련을 해 왔다. 일단 방첩수사단장이 합동수사단장으로 되면서 예하에 국정원, 경찰, 군사경찰, 방첩사 인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계엄법 위반자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육군특수전사령부

(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지속적인 대비태세 강조 지시에 따라 예하부대 및 참모부대 실무자들이 육군특수전사령부 행정실장 최현근에게 대비태세 강조 이유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자, 2024. 12. 3. 08:00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박정환, 작전처장 남기동, 정보처장 한경태, 교훈처장 이낙행을 육군특수전사령관 집무실로 호출해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자’, ‘전방상황 등이 엄중하여 당분간 부대에서 늦게 퇴근 하겠다.’며 대비태세를 강조하였는데, 당시 한경태가 ‘사령관님, 지금 북한은 특별한 징후가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라고 반문하자 ‘상황이 지금 아주 심각하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2024. 12. 3. 08:00경, 특임단 소속 지역대장 및 과장들이 참석한 와중에 서울 지역 대비태세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기동타격대 전술훈련 향상 방안 및 민간인 대상 비살상무기 사용 필요성, 출동 대기태세 강조를 지시하였고, 실제 대테러상황 발생 시 헬기탑승 및 장비 탑재 표를 확인하고, 해양경찰과 경찰특공대의 무기사용지침을 확인해 비살상무기로 테러범을 제압하는 작

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2. 2.월 ~ 12. 3.화 주요내용 정리		
☐ '24. 12. 3.(화)		
☒ 오전		
-08:00 단장 주관 서울지역 대비태세 관련, 부대발전 토의 내용 등 논의		
내용	장소	인원
<노컷뉴스>기동타격대 전술훈련 향상방안, 민간인 대상 비살상 무기 사용 필요성 출동대기태세 강조, 실제 대테러상황 발생시 헬기탑승 및 장비 탑재 표 관련 토의, 작전준비시간 없을시 대기 중대 선 전개 토의 무기사용지침 확인 (해경, 경특), 비살상 무기로 테러범 제압 등 \$\$ 훈련장 신 기동타격대 운영 토의 해당 주 금요일 團 부대발전방향 주제에 대한 토의	단장 집무실	각 지역대장, 과장

(나) 광종근은 2024. 12. 3. 10:55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연락해 ‘오늘 불시에 헬기 출동 훈련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라, 오늘 헬기 출동 훈련은 21:30경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불시 훈련이니 작전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 헬기 12대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10:59경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헬기와 관련해 ‘몇 대 가용하냐’, ‘헬기가 항작사 것이냐, 너희 것이냐’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11:09경 내지 11:48경 사이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오늘 부대원들 비상소집 시켜서 불시점검 하라’, ‘작전복 착용 등 훈련 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2024. 12. 3. 11:40경 707특수임무단에 ‘헬기(이병헌-60) 12대 지원 예정’ 및 ‘불시점검 관련 훈련 계획’이 통보되었는데, 해당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및 계획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순번 2기록 932번).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707특수임무단 작전과장 조원민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한 야간훈련 계획수립을 지시하였으며, 이후 같은 날 12:20경 본인의 집무실에서 ‘19:50경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할 것’을 지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전 간부 대상 음성동보⁴⁸⁾ 및 소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 비상 소집 시 대테러복장(일명 ‘흑복’) 및 방탄복, 방탄헬멧과 총기(개인화기와 보조화기, 권총)를 지참할 것, 개인당 탄 10발 기준, 5.56mm 보통탄 및 공포탄, 9mm 보통탄 각 960 발 및 연습용 수류탄, 고무볼탄과 발사용 산탄총 6정, 모사탄(UTM), 비전기뇌관, 도폭 선을 각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12. 2.(월)~12. 3.(화) 주요내용 정리		
-11:40경 점심식사 중 헬기 12대가 707특수임무단에 훈련 지원 된다고 전파(사령부→단)		
내용	장소	인원
· 주요직위자 단 식당에서 식사중 이병헌-60 12 대가 지원 된다는 소식 전파. · 특항단장 전화 받으심 (11:48, 1 분 38 초 / 안보폰) 헬 기 12 대로 훈련을 해 보자는 취지 내용 · 이후 각 지역대장들도 대규모 훈련이 있다고 생각함.	식당	각 지역대장, 과장

불시점검(12. 3. 화) 계획
2. 일반계획 가. 일 시 : '24. 12. 3.(화), 18:00부 나. 대 상 : 707특수임무단 쏜 간부 다. 항공자산 : 특항단 이병헌-60 12대 (1대당 8명 탑승 총 96명) [붙임#1] 라. 차 량 : 대형버스 2대, 중형버스 2대

곽종근은 2024. 12. 3. 13:30경 육군특수전사령부 화상원격회의(VTC)를 개최하였는데, 당 시 회의에 참석한 예하부대 부대장들 및 참모들에게 ‘대비태세를 잘 유지해라. 전화를 잘 받아라.’라고 당부하면서, 이와 관련해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주는 영내 활동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즉각 출동 준비태세를 갖춰라’고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위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두 차례(같은 날 13:55경, 14:06경) 자신의 군용 비화폰(전화번호 생략)으로 걸려온 피고인 김용현의 전화를 수신하기 위해 자리를 이석하였고, 당시 통

48) 서버에 저장된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SMS를 이용해 긴급 상황 전파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에서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헬기를 특전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태세를 갖춰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전화를 받고 온 후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헬기와 관련해 ‘내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전개하지 말고 금왕기지에 그대로 두고 내 지시 있을 때만 띄워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육군특수전사령관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실장 IZ에게 ‘OCC(OCC, 육군특수전사령부 ○층 전투통제실, ○층 합동작전실을 합쳐 부르는 표현, 통상 전투통제실을 지휘통제실이라고도 부른다) 내에 사령관이 대기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곽종근은 2024. 12. 3. 18:00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영내 충성회관에서 작전처장 남기동, 정보처장 한경태, 주임원사 JA, 제550방첩부대장 김영권,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와 저녁식사를 하였다. 곽종근은 저녁식사 당시 전투복 차림으로 재차 ‘상황이 엄중하니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자’며 대비태세를 강조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따로 ‘사무실로 들어가서 전투복을 입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같은 날 18:43 경 내지 18:56경 김정근에게 ‘현 시간부로 여단 전체 인원을 비상소집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가 이후 재차 ‘지역대장급 이상만 비상소집하여 영내 대기시켜라’, ‘지역대장 이상 들만 상황을 유지해서 대비해서 현장 위치하라’, ‘그 밖의 다른 인원들은 1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라’며 정정해 지시하였다. 위 곽종근의 지시에 따라 제3공수특전여단 소속 장병들에게 같은 날 18:52경 ‘현시간부 비상소집 전병력 소집 22시까지 출동 준비 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전파되었고, 이후 18:53경 ‘현 상황 작전보안 철저히 할 것’, 19:06경 ‘<3여단 지휘통제실> 여단본부 소집, 대대장, 지역대장 직할부대장 영내소집, 기타 병력들 1시간 이내 출동가능 상태로 숙소대기’라는 문자가 전파되었다. 한편 행정실장 최효근은 제550방첩부대장 김영권에게 ‘사령관님께서 퇴근하지 않고 이틀 정도는 OCC 내 사

령관실에서 대기하신다고 합니다.’라고 전달하였는데, 이에 한경태는 ‘북한에 지금 현재 정보 상황으로는 특이 동향이 없는데, 사령관계서 왜 대기를 하러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은 그런 정도로 북한의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다.

곽종근은 2024. 12. 3. 19:26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연락해 ‘가용한 헬기 12대 모두 출동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같은 날 20:23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4분 22초 통화하였다. 당시 곽종근은 여인형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이 모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는데,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인형에게 ‘선관위가 과천이 있고, 관악에 여심위가 있다, 수원에는 연수원이 있다, 또 여론조사꽃도 있는데 특전사가 거기에 들어갈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은 같은 날 19:50경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의 지시에 따라 전 간부를 대상으로 문자 및 전화 유선 통보를 통한 비상소집을 발령하였는데, 이에 따라 같은 날 20:30경까지 707특수임무단 지휘부 구성원인 김현태, 부단장, 주임원사, 작전과장, 지원과장, 정보과장, 통신과장, 고공정찰대장, 5지역대장 등이 단 지휘 통제실로 집합하였으며, 비상소집 훈련 관련 토의사항을 논의하였다. 이후 707특수임무단은 2024. 12. 3. 20:53경 비상소집 및 출동 준비를 완료하였고, 광주시 소재 특수전 학교 훈련계획에 따라 1인당 소총 실탄, 공포탄, 권총 실탄 각 10발 분량 및 수갑용 케이블 타이, 저격소총을 지참해 헬기 탑승을 준비하였다.

(다) 곽종근은 2024. 12. 3. 21:42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전투통제실 OCC 3번 입구를 통해 전투통제실 구역으로 진입해 전투통제실 입구 좌측에 위치한 육군특수전사령관 집무실로 들어갔고, 21:48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로 ‘10~20분 뒤에 상황 발표가 있다.’, ‘10~20분 정도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2:11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22:17경

다시 피고인 김용현과 각 전화통화를 하였다.

곽종근은 22:23경 내지 22:27경까지 이루어진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및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TV로 시청하였는데, 대국민담화 시작 직전부터 대국민담화가 끝날 때까지 부하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곽종근은 22:20경부터 22:27경까지 전투통제실에서 차례로 특수 작전항공단장 김세운(22:20:17),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22:20:49),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22:22:06),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22:23:19),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22:24:47)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한 후 22:26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22:27경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에게 재차 전화하였다. 당시 곽종근은 김현태에게는 ‘야간훈련을 정상 시행할 것이니 계속 대기하고 있어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김세운에게는 ‘출동 준비 잘하고 있어라.’고 지시했으며,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는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 것을 지시했다. 곽종근은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과에게는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고,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는(22:24:47경으로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가 22:23경 시작되었으나 아직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언급이 이루어지기 전이다) ‘전 인원 비상소집시켜라. 1개 대대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보내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 1개 대대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보내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707특수임무단의 상황 및 휴대장비 등은 다음과 같다.

'12. 2.월 ~ 12. 3.화 주요내용 정리

-19:30~20:53 비상소집훈련 실시 음성동보, 문제메시지 발송

내용	장소	인원
· 단장 집무실에서 1950에 불시 비상소집훈련 지시 · 당직계통으로 음성동보, 소집문자를 전 간부 전송 · 소집 및 출동준비 시간체크 실시 · 20:53부로 모든 대원들이 소집 및 출동준비가 완료 · 21:10 단 지통실에서 주요직위자(지역대장, 행보관, 각 과정, 주임원사 등) 모임 · 음성통보, 문자 메시지가 시스템 늦게 전송됨 등 사후검토 실시 * 각 지역대 불시점검 관련 소감 발표(지역대장·행보관) · 훈련상황으로 인지 중 헬기가 오지 않아서 지속 대기함. · 항공자산이 취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함(21:00~22:00경) · 전 병력 취소준비 및 **훈련장 안전요원 철수 지시(단장) · 이후 헬기 취소는 특항단장이 사령관님께 보고해야 하는 것이며, 헬기가 동원되는 훈련은 내가 결정하는게 아니라고 말씀(단장) · 단장↔특항단장 통화, 훈련 취소 아니며, 좀 더 대기해야한다고 확인 · 단장님이 사령관님께 전화받고 훈련 정상시행한다하여, 다시 준비함(22:20경) · 이후 지통실 근무자가 대통령 담화 중임을 보고하고, 전 간부 시청함 · 계엄령 선포 후 22:31분경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받고 실제상황으로 전환됨 · 훈련계획에 편성된 인원·장비 그대로 출동지시함(단장) / 헬기 12대, 96명	단장 집무실 / 지휘통제실	부단장, 작전과장, 지원과장

□ 장비/탄약 보관방법		
구분	개인휴대	통합보관
소총	194정 *단장1, 저격2 제외	0정
저격총	2정	0정
권총	197정	0정
테이저건	77정	0정
5.56mm 보통탄	없음	960발 *1탄통 80발씩 × 12탄통 ☞ 헬기 1대당 1탄통
9mm 보통탄	없음	960발 *1탄통 80발씩 × 12탄통 ☞ 헬기 1대당 1탄통
5.56mm 공포탄	일부휴대 / 72명 각 10발씩 휴대 (탄알집 결합 미실시)	1개 지역대 기준 : 연습용수류탄 10R, 고무볼탄 6발, 5.56mm 모사탄 100발, 5.56mm공포탄 240발, 비전기뇌관 3발,

비살상탄약	모사탄 4명만 휴대 (각 15발, 방탄조끼 파우치)	도폭선 10FT 통합보관함 * 4개 지역대 각각 나무박스에 통합보관함

(5) 수도방위사령부

(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2024. 12. 3. 08:30경 수도방위사령관 집무실에서 ‘現 상황관련 무인기·테러대비 지속지원평가회의’를 개최하였고, 11:00경 이진우의 국군수도병원 진료 일정으로 인해 일정을 다소 앞당겨 ‘現 상황관련 방공작전태세 현장토의’를 진행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남태령 소재 수도방위사령부 부대에서 출발해 같은 날 12:30경까지 한강대교에 위치한 방공진지를 방문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13:10 경 집무실에 복귀하였다. 이진우는 13:50경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13:48 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5분 57초가량 통화하였고, 16:45경 재차 남태령 소재 수도방위사령부 부대에 복귀해 이발하고, 17:00경 이발이 마무리된 후 수도방위사령부 본관에서 퇴청하였다.

한편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에서는 2024. 12. 3. 오전 무렵 홍익대학교 소속 경제학과 교수를 초빙해 강연을 개최하였으며, 오후 무렵 제1경비단 월간회의 및 부대 체육관 개관행사를 개최하였다. 별도로 ‘계엄’, ‘출동’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이진우는 2024. 12. 3. 18:00경 수도방위사령부 영내 관악회관에서 연례연말 부부동반장 성급 지휘관 식사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이진우는 위 식사 행사 개최 이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저녁에 주요 직위자 격려 식사가 있는데 실시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이에 여인형이 ‘설마 별일이 있겠느냐, 그냥 해라’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위 식사 행사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 지휘관들인 52사단장, 56사단장, 1방공여단장,

방첩부대장이 참석하였고, 19:30경 식사를 종료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수도방위사령관 공관으로 이동해 참모장 조백인을 포함해 20:30경까지 공관에서 차담을 진행하였다. 이진우는 20:35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1분 26초가량 통화하였고, 20:44경 다시 여인형에게 전화해 약 3분 14초가량 통화하였는데, 이진우는 모든 차담이 종료된 후 공관에서 출발하려는 조백인에게 ‘오늘 밤에 잘 대기하세요.’라고 말하였다. 한편 저녁식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수도방위사령부 56사단장 박진희가 21:55경 이진우에게 부대복귀 문자를 보내자 이에 ‘수고하셨습니다. 관사에서 잘 대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하였다.

(나)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공관에 있다가 2024. 12. 3. 21:46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약 1분 12초가량 통화한 후, 21:48경 자신의 비화폰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수호신TF를 소집하고, 너는 사령부로 들어와라’고 수호신 소집을 지시하였다. 또 이진우는 21:53경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에게 전화하여 ‘전투복을 입고 사령관실로 오라. 지금 임무가 있을 것 같다. 나랑 당신이랑 제1경비단장이랑 참모장 이렇게 올 것이다. 조용히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진우는 21:55경 수도방위사령관 전속부관 XN에게 전화하여 ‘운전관과 전투복 입고, 차를 준비해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지시에 따라 XN는 운전관 QT에게 전화하여 전투복 착용, 단독군장, 총기 소지 및 차량 준비 지시를 하달하였고, 22:00경 이진우에게 공관 앞 카니발 하이리무진(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준비 완료를 보고하였고, 이진우는 22:02경 전투복 차림으로 위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에 탑승해 사령관실로 이동하였는데, 위 이동 과정에서 XN에게 ‘지금은 훈련인데, 이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단독군장으로 출동준비를 해라. 총도 챙기고 탄도 챙겨라.’며 무장 및 단독군장 상태로 출동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진우는 사령관 집무실로 이동하면서 22:05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소집돼서 간부들이 당황할 수 있으니, 합참 소집훈련으로 알려주면 되겠다, 출동 준비가 되면 내려가겠다.’, ‘공포탄을 챙겨라’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조성현이 ‘모듈부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묻자 ‘우리 부대 자체 모듈들 위주로 출동 준비해라’며 일반모듈부대는 출동준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다.

(대) 수호신TF 소집 지시를 받은 제1경비단장 조성현은 21:51경 제1경비단 작전과장 소령 전진해에게 전화하여 ‘실제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직위자들을 소집해라, 수호신을 소집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경비단 작전과장 전진해는 21:56경 35 특임대대장 박진우에게 전화하여 ‘제1경비단장 조성현의 지시다. 수호신을 소집해야 한다.’는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제1경비단 예하 2특임대대, 35특임대대의 각 대대장 등에게 위 조성현의 지시사항을 전파하여 수호신TF를 소집하였다.

한편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35특임대대 당직근무자 소령 송병규는 2024. 12. 3. 22:01경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에게 전화하여 ‘현 시간부 6TF⁴⁹⁾ 전 인원 있지? 출근하래, 대장님 방금 전화 왔 고, 상황은 뭔지 모르겠어, 대테러특임대 애들 먼저 빨리 오라고 하고 후속 증원은 그, 맞춰가지고 사고 안 나게 해서 그렇게 오라고 좀 해줘라’라는 취지로 수호신TF 소집 지시를 전달하였는데, 이에 김의규가 ‘총기까지 꺼내고 무장해야 됩니까?’라고 묻자 ‘그 사항은 아직 없었는데, 일단 들어와서 보자, 어 상황 지금 확인해볼 테니까’라고 답변하였고, 이후 송병규는 22:05경 재차 김의규에게 전화하여 ‘김의규야, 모듈 부대도 연락 가능하냐? 다?’라고 묻자 김의규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단입니까 아니면 그 사령부입니까?’라고 확인하였고, 이에 송병규는 ‘몰라, 지금 내가 단에 전화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전혀 얘기를

49) 제1경비단에는 2특임대대와 35특임대대에 각 3개의 지역대 총 6개 지역대가 존재하고, 각 대대별 1 내지 3지역대로 구성되는데, 해당 지역대를 2특임대대 1지역대부터 35특임대대 3지역대까지를 순차적으로 순번을 매겨 1TF 내지 6TF로 호칭하고, 6TF는 35특임대대 3지역대를 의미한다.

안 해주네. 모르는 건지, 뭔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김의규가 재차 '일단은 모듈 부대도 다 저희 부대로 소집합니까?'라는 취지로 확인하자 '일단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하였다. 이후 제1경비단장 조성현은 같은 날 22:05경 내지 22:15경 사이 제1경비단 35특임대대장 박진우에게 유선으로 '공포탄을 챙겨야 된다.'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박진우는 35특임대대 송병규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며 '6TF 인원들 공포탄 30발씩 지참할 수 있도록 탄약관에게 전화해서 공포탄 꺼낼 수 있도록 해라.'고 지시하였다.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2특임대대 2지역대 4중대장 이원재는 22:01경 같은 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에게 유선으로 전 간부 비상소집이 지시되었음을 전달하였고, 이에 윤덕규는 22:05경 메신저(시그널) 2지역대 단체대화방에 '전 간부 비상소집' 문자를 공유하였다. 2특임대대장 윤태현은 22:09경 윤덕규에게 '상황은 모르고, 일단 출동준비부터 빨리하라, 완료되는 대로 보고하라'며 출동 준비 지시를 하달하였고, 이원재 또한 22:12경 윤덕규에게 메신저를 통해 '공포탄 휴대 지시'를 전달하였다.

마찬가지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2특임대대 1지역대 2중대장 조현우는 22:01경 2특임대대 1지역대에 메신저(시그널)를 통해 2특임대대장 윤태현의 대테러초동조치부대 출동 준비 지시를 전파하였는데, 2특임대대장 윤태현은 22:14경 2특임대대 1지역대 1중대장 KV에게 전화하여 '공포탄 30발씩 전부 다 휴대해서 지금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대원들을 차에 태워라'며 공포탄 휴대 및 출동준비를 지시하였고, 이에 KV이 대기 위치에 대해 문자 '대대초동팀실'이라 답변하며 '출동 차량에 탑승하라', '공포탄 30발씩 전부 다 휴대해'라고 말하였다가 이후 '공포탄인 거 보니까 합참 전비검열의 일환인 것 같으니 탄은 안 받아가도 되니까, 일단 차에 태워서 시동 걸고 대기하라'고 종전 지시를 수정하여 말하였다.

한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로부터 모듈부대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달받은 제1경비단장 조성현은 위 지시사항을 제1경비단원들에게 전파하였는데, 이에 따라 35특임대대 당직 근무자 송병규는 22:15경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소령 김의규에게 전화하여 ‘김의규야, 모듈 빼고. 어, 기타 모듈 빼고’라고 말하였고, 김의규가 ‘그러면 저희 후속 대테러특임대와 후속증원지역대로 해서 무장하고 대기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응, 응. 맞아. 무장하고 대기하고’, ‘우리 오면 공포탄을 개인당 30발씩 줄 거야. 그리고 장갑차 6대를 운용시키래. 대령님(조성현) 이 지금 강조하신 게 속도야, 속도’라며 공포탄 및 장갑차 운용 준비를 지시하였고, ‘훈련 상황이나?’는 김의규의 질문에 ‘실제 상황이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김의규가 ‘그런데 공포탄을 왜 가져가느냐?’라고 묻자, ‘나도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2024. 12. 3. 22:06경 집무실에 도착하였고, 참모장 조백인 또한 집무실에 들어왔는데, 이진우의 지시에 따라 전속부관 XN가 집무실에 위치한 TV를 연결해 YTN 채널을 켜 놓았다.⁵⁰⁾ 이진우와 조백인이 YTN 채널을 시청하는 동안 XN는 본인의 개인화기인 9mm 권총, 이진우의 개인화기인 38구경 리볼버 권총 각 1정, 사령관 경호용 고무탄총 1정, 고무탄 5발을 무기고에서 수령해 복귀하였다. 이진우는 22:11경 곽종근에게 전화해 약 2분 30초, 위 통화 직후인 22:14경 여인형에게 전화해 약 45초 가량 통화하였다.

(마) 한편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35특임대대장 박진우는 22:21경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로부터 ‘출동 준비 완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나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 지원 중대 포함해 출동 준비 완료하고, 공포탄 개인별로 다 30발씩 휴대해야 된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수도방위사령부 제제1경비대 2특임대대 1지역대 1중대장 KV은 22:22경

50) TV 연결과 관련해 XN는 이 법정에서 ‘평소에 사령관님이 TV를 보시지 않아 TV가 꺼져 있고, 잘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도 TV를 많이 켜보지 않아서 셋톱박스 전원, TV 전원을 켜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특임대대장 윤태현에게 전화하여 ‘대테러초동조치팀 출동 준비가 완료되었다. 차량에 탑승하겠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윤태현은 출동 준비 완료 사실을 제1경비단에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6)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은 2024. 12. 3. 18:35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9길 9에 위치한 '청원' 중식당에서 피고인 김용균과 같이 만나 저녁을 먹었다. 당시 피고인 김용균은 김상용에게 ‘국방부와 창원대학교 간 MOU를 체결해 군사학과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등을 하며(당시 피고인 김용균은 창원대학교 대외협력실장이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서바이벌 훈련장 설치 추진', '드론 교육장 설치 추진 관련된 안'이라 기재된 MOU 관련 서류를 보여주었다. 피고인 김용균은 위 저녁식사를 진행한 후 김상용과 커피를 마셨으며, 이후 같은 날 밤에는 자택에 들어가 머물렀고, 한편 같은 날 준위 JG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나) 경찰청

(1) 경찰청 본청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3. 당일 약 18:30경 저녁약속이 있다며 경찰청 본청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에서 퇴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조지호의 비화폰을 경찰청장 비서실장 권범중이 보관 중이었으나 퇴청 직전인 18:00경 피고인 조지호의 비화폰으로 ‘경호’라는 명칭의 인물로부터 전화가 수신되자 권범중은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안폰으로 전화가 왔다.’며 위 휴대전화를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 조지호는 위 휴대전화를 지참한 채 퇴근하였으며 권범중 또한 같은 날 19:30경 퇴근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조지호는 피고인 김봉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가 같은 날 19:20경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경찰이 질서유지, 치안유지를 잘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A4용지 크기로 (계엄군이 출동할 시각과 장소가 기재된 것을 보이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 대화를 마친 후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19:40경 대통령실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자신의 관용차로 피고인 김봉식을 서울경찰청에 내려준 후 경찰청장 공관으로 복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봉식은 차 안에서 피고인 조지호에게 '비상계엄이 나 유사한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무슨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력 대비 정도는 체크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조지호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20:07경 피고인 김봉식과 56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봉식으로부터 '5개 기동대가 근무 중'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21:00경 경찰청 마약과 장 안찬수로부터 '대통령 주재 마약 관련 회의 보고자료 정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 22:00경 이전에 경찰청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21:49경 약 22초가량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조지호는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계엄 선포가 늦어질 것 같다', '비상계엄이 늦어질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2) 서울경찰청

국회 인근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3, 4기동단이 2024. 12. 3. 낮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집회 일정으로 출동해 있다가,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의 지시로 18:22경 본부로 복귀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노숙집회 일정으로 ☆☆기동대 경력 약 70명이 국회 1, 2문 방면에 배치되어 있었고(당직 근무 중인 국회경비대 경력 약 20명도 국회 내에 있었다), 이 외 4개(27, 45, 71, 87) 기동대도 국회 부근에 배치되어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조지호와 함께 2024. 12. 3. 19:20경 안전가옥에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 및 질서유지 당부에 관한 말을 듣고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고, 이후 19:50경 서울경찰청 사무실로 다시 복귀하였으며, 그 무렵 위 계엄 관련 문건을 파쇄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유선으로 사무실에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19:54경 재차 주진우에게 전화해 언제쯤 도착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으로 상황지휘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최창복을 서울경찰청장 사무실로 올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주진우는 19:55경 최창복에게 전화해 ‘서울경찰청장이 출근하라고 하였고, 너를 찾는다.’라며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이후 20:09경 재차 최창복에게 전화하였는데, 당시 최창복은 ‘피고인 김봉식이 지금 영등포에 부대(기동대)가 몇 개 있냐고 물어보아 5기가 있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20:07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56초가량 통화하며 ‘(국회 인근에) 5개 기동대가 근무 중’이 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는 2024. 12. 3. 20:23경 내지 20:25경 사이 서울경찰청에 도착해 피고인 김봉식의 집무실에 들어갔다. 주진우는 피고인 김봉식에게 ‘무슨 일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피고인 김봉식은 ‘본청장님(피고인 조지호)께서 나오라고 해서 나와 있다.’,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나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후 종로 등 야간 가용 경력 현황, 국회 출입문 수, 출입문의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주진우는 ‘광화문 타격대 거점 근무 중인 ㉠기동대가 현재 가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주진우는 20:32경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전화해 ‘야간 당직 부대를 광화문 타격대를 대기시키고, 광화문 타격대에 있던 1개 기동대(㉠기동대)를 전부 승차대기 시켜라. 그러

면 총 6개 기동대가 되는 거지? 가능한 게, 그거 빨리 해 놔라'는 취지로 말하여 ㉮기동대 출동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최창복은 ㉮기동대장 박만식에게 서울경찰청 무전망 및 종로경찰서 행사망을 통해 승차대기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박만식으로부터 승차대기하는 이유에 관하여 질문받자 '일단 대기하라'고 말하였다. 한편 주진우와 최창복은 20:55경 국회 출입문 개소 및 개폐현황에 대한 사진 파일을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공유하였는데, 이를 확인한 주진우는 피고인 김봉식에게 국회 출입문과 관련해 '야간에 10개 정도 있지만, 실제로 여는 것은 한 3개 정도 됩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1:15경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기동대를 국회에 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용히 보내라'며 보안을 강조하였고, 주진우는 위 지시에 따라 21:16경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전화하여 '34기 빼놓은 것, 일단 여의도 쪽으로 일단 출발시켜라, 지금 천천히. 무전으로 하지 말고, 의사당로에서 국민은행 동서관쪽 가서 무전하지 말고 전화로 보고하라 그래'라며 ㉮기동대를 국회에 배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위 지시를 받은 최창복은 21:16경 3기동단 산하 ㉮기동대장 박만식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사당역 옆에 위치한 국민은행 현대캐피탈 건물 방면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박만식이 위 지시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 관련 지시로 생각해 경력들의 보호대 착용 여부를 문의하니 최창복은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며 '도착해서 전화하라', '도착하면 무전이 아니라 전화로 하라'고 말하였고, 박만식은 ㉮기동대 소속 각 제대 대장들에게 '무전으로 보고하지 말고 버스에 조용히 탑승해 영등포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동대 경력들은 21:40경 출동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1:49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하였고, 이후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아마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

에 나오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주진우는 21:50경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전화하여 '국회에 추가 투입될 ㉮기동대가 제대로 국회 인근에서 승차대기를 하고 있는지',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나머지 기동대들이 정상대기 중인지' 등을 확인하였고, 21:53경 ㉮기동대장 박만식으로부터 '제㉮기동대가 국회 인근 국민은행 건물 현대캐피탈 뒤편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자 '버스에 타고 있으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당시 대기하고 있던 ㉮기동대의 총 출동인원은 경력 64명, 출동차량은 버스 3대, 지휘차량 2대였다.

(3)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울경찰청 소속 서울영등포경찰서(이하 '영등포경찰서'라고만 한다)에서는 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형사과장 박창균, 수사2과장 이재현 등이 2024. 12. 3. 22:00경 차담을 나누며 함께 있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 일정으로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황태준이 국회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3.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무렵과 그 이후의 상황

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무렵부터 23:23경 포고령 공고 이전까지의 상황

1) 대통령실 및 국무회의

가) 대통령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0:00경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였는데, 당시 홍장원의⁵¹⁾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홍장원의 보좌관이 이를 수신한 후 홍장원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달라고 하십니다.'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홍장원이 20:22경 보좌관을 만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윤석열(비화폰 모델명 생략)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51) 홍장원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좌관에게 맡긴 후 2024. 12. 3. 19:00경부터 서울 강남구 ADP동 소재 상호명 'ADQ' 식당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하는 상황이었다.

윤석열과 통화하였다. 당시 피고인 윤석열은 홍장원에게 ‘별일 없죠?’라고 말하였고, 이에 홍장원이 ‘국정원 1차장 홍장원입니다. 특별한 상황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자, 피고인 윤석열은 ‘그래요. 내가 꼭 할 얘기가 있으니까,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핸드폰을 꼭 들고 한두 시간 후에 전화할 테니까 대기하세요.’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홍장원은 국가정보원 청사 내 본인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1. ‘2024. 12. 3. 22:00경에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다.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위해 2024. 12. 3. 10:30경부터 21:33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피고인 김용현,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비상계엄 선포 관련 업무 협조를 위해 국무회의에 배석할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등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21:00경까지 대통령실로 오라’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당시 계엄 선포문을 준비한 피고인 김용현은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를 통해 위 선포문을 복사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대접견실에서 앉을 자리에 비치하였다. 위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20:20경부터 5층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대접견실로 차례차례 도착하여 대기하였고(도착 순서대로 피고인 김용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일부장관 김영호, 국무총리 한덕수, 외교부장관 조태열,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곳에서 국방부장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놀란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외교부장관 조태열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역시 22:06경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어떠한 이유로도 계엄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계엄이 있게 되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 경제가 무너집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뜻을 굽히지 않았고, 외교부장관 조태열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고, 그 무렵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게 ‘24:00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외교부장관 조태열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피고인 김용현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군대도 지금 대기 중인 것이냐?’라는 취지로 물었는데 이에 피고인 김용현은 ‘그렇다. 대통령님이 오랜 고뇌 끝에,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니까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주시는 게 좋겠다.’,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 해 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위 대접건실에 도착해 국무위원 9명 과 국무총리가 모이게 되자, 피고인 윤석열은 ‘성원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국무위원 들이 위치한 대접건실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16경 국무위원 들을 상대로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후 22:18경 바로 자리를 이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용현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별도로 부서하지는 않았다.

다) 대통령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한 대국민담화문을 읽는 방법으로 긴급 대국민담화를 실시하였고, 이는 각 언론사 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TV 등 매체에 중계방송 되었는데, 위 대국민담화가 끝날 무렵인 22:27경 피고인 윤석열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여 위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이하 ‘이 사건 비상계엄’이라 한다)하면서 대국민담화를 마쳤다. 대국민담화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 대국민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스물두 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 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검사,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마친 후 2024. 12. 3. 22:40경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에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란 제목의 문서를 건네주었는데, 해당 문서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6기록 302번).

기획재정부장관

-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 할 것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건과 관련해 ‘최상목 기재부장관하고 얘기한 것은 평상시 피고인 윤석열과 이야기, 교감이 됐던 내용 포함해서 했던 것인데, 예비비가 저거야 뭐 기본적인 것이고, 국회 관련한 보조금, 지원금은 국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시민단체, 반국가단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단체, 종북단체,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어 이를 차단하라는 의미이며, 국가비상 입법기구는 긴급재정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기획재정부에 설치해 운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였다. 예비비 확보 지시의 경우 계엄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상치 못한 예산이 있을 수 있어 그와 같은 측면에서 예비비 확보를 하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경고성 계엄이라면 계엄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국가비상 입법기구와 같은 조직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거는 나중 문제이지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53경 국가정보원장 공관 내 상황실(대기실이라고도 한다)에 있던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였다.

홍장원은 이 법정에서 위 통화에 관해 “당시 피고인 윤석열이 제게 ‘(비상계엄 방송을)

봤지?’, ‘다 싹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줄 것이다.’, ‘무조건 방첩사를 지원해라’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국방부

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1) 국방부장관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23경 군사보좌관 김철진에게 전화하여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대통령님 담화문을 시청하라고 해라’, ‘복귀 중인데 전투통제실로 (바로) 내려갈 거다.’라고 말하였고, 김철진으로부터 ‘장관님 여기 6명을 장관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접견실에 대기 중인데 이 인원들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질문받자 ‘그 인원들 다 지통실로 내려오라고 해라’고 말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김철진은 당시 접견실에서 대기 중이었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육군본부 정책실장 김흥준,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 합동참모본부차장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이재식에게 ‘장관님이 장관님실로 안 오시고 바로 전투통제실로 내려가신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에 위 박안수 등 6인과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장주범은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로 이동하여, 22:27:15경 국방부 지하 3층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도착하였다(피고인 윤석열이 대국민담화 과정 중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담화가 끝나갈 무렵이다).

군사보좌관 김철진은 국방부 청사 1층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나 함께 전투통제실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2:25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22:26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22:28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각 전화하여 ‘대통령님 담화문을 시청하라’는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이진우, 여인형, 곽종근은 김철진에게 모두 ‘지금 보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김철진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합

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로 이동하였는데(김용현이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안찬명을 보고 손짓하여 같이 가자고 해서 3명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당시 피고인 김용현은 손에 노란색 봉투를 지참한 상태였다.

(2) 피고인 김용현은 22:28:57경 위 전투통제실에 위치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할 테니 화상원격회의를 연결하라’, ‘YTN 채널 TV 뉴스를 (전투통제실) 현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32경 위 전투통제실에서 화상원격회의(VTC) 방식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진행하면서 이진우, 곽종근 등 참석한 지휘관들에게(다만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방첩사령부의 망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관련 임무명령을 하달하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에, 합동참모본부차장 정진팔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지정하였다. 당시 피고인 김용현이 화상 원격회의에서 지시한 임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32) 장관, 비상계엄 관련 임무명령 하달

-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 하달함
-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 단,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 책임진다면 장관의 몫
-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
- 혹여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
-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에게 既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제한사항 확인 및 준비 되는대로 이행

위 지시를 받은 곽종근은 ‘네, 알겠습니다.’라 답변하고, 이진우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위치하고, 이곳에는 참모장이 대기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각 화상원격회의에서 나왔다.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22:32경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20초가량 통화하였고 이후, 22:33:04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14초가량 통화하였으며, 마찬가지로 22:33:33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9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이진우에게

‘야, 지금 국회로 빨리 출동해라. 그리고 도착 즉시 보고해라’라고 지시하였다(통화 경위, 시각, 순서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김용현은 곽종근에게도 이진우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용현 주재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종료된 직후인 2024. 12. 3. 22:40경 합동 참모본부는 ‘전군 경계태세 2급 격상’을 발령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에게 “언론에 ‘국방부장관,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 내용을 알려줘라”고 지시하고, 이후 전투통제실에 위치한 배석자들에게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 합참차장은 계엄사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도와줘라. 지하 4층 작전회의실을 계엄상황실로 구성해라. 이상’이라고 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박안수에게 ‘대통령실’이라 기재된 노란색 서류봉투에서 A4용지 1장으로 구성된 ‘계엄사 포고령(제1호)’ 문건을 꺼내어 건네주면서 ‘포고령을 하달하라, 법적 검토가 완료된 것이다.’,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박안수, 정진팔, 이재식, 김흥준, 장주범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22:42경 지하 4층에 위치한 작전회의실로 이동하였으며, 이외 오영대, 김철진, 전하규는 전투통제실에 잔류하였다.

김철진은 이 법정에서 “장관님께서 전투통제실에 내려오셔서 화상원격회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준비했는데, 방첩사령부만 화상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22:33경 방첩사령관에게 화상 연결을 독촉하였고, 이후 방첩사 비서실장으로부터 ‘방첩사는 평소 상시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지금 빨리 연결하고 있다. 기다려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방첩사는 화상이 연결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 채 회의가 진행·종결되었다. 당시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위와 같은데 다만 마지막 부분 ‘기 지시된 사항 관련해서 제한 사항 확인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는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는데 저 회의

에 참석했던 인원들을 통해서 차후에 확인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12. 3. 21:45경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10~20분 뒤에 상황발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진행되는 도중, 그러니까 22:23 이후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707특수임무단 2개 지역대를 헬기에 태워 국회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즉시 예하 공수특전여단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편의대를 보내라’, ‘출동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는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선포’라는 말이 나온 22:27경까지다. 제가 22:22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편의대 전개를 지시하였고, 22:26경 다시 ‘편의대 2개조를 운영하여 1개조는 국회, 1개조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아마 그때 ‘1개 대대를 국회의사당으로, 1개 대대를 국회의원회관으로 각 출동시켜 건물을 봉쇄하라, 여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라.’는 지시도 같이 했을 것이다. 한편 이상현에게 ‘현장에 있는 수방사령관과 상의하여 조치하라’는 지시도 하였는데 그 말을 그때 한 것인지, 나중에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제3공수특전여단장, 제9공수특전여단장에게도 지시하였다. 22:24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보내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 1개 대대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보내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에게도 22:23경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조를 준비시키고, 가용부대를 출동 준비하라.’는 취지로, 22:27경 ‘1개 대대는 사당역에 있는 중앙선관위 본청으로 출동시키고, 1개 지역대는 여론조사꽃으로 출동시켜라,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차례로 지시하였다. 광종근은 22:30~22:31경 707특수임무 단장 김현태와 특항단장 김세운에게도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 22:30경 김세운에게 ‘헬기 출동해, 너도 사령부로 들어와’는 취지로, 22:31경 김현태에게 ‘헬기 12대가 곧 도착할 것이니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에 태워 즉시 국회로 출동시켜라,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해라.’고 지시하였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중계방송을 22:27경까지 전투통제실 앞쪽에 있는 지휘관실에서 보았고, 22:28경 화상원격회의 참석을 위해 곧바로 전투통제실로 이동했다. 합참 기록에는 장관께서 화상원격회의(VTC) 때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기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 제한사항 확인 및 준비되는 대로 이행 지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 기억으로는 장관께서 화상원격회의를 켜 놓고 저 말을 하면서 ‘수방사하고 너는 비화폰으로 지시할게’라고 말씀하신 후 직접 수방사령관과 통화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유사하게 같은 말씀을 하셨다. ‘기 지시된 사항 이행하고 너는 이제 화상원격회의 나가서 임무수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화상원격회의에서 나와 임무를 수행했다. 저는 ‘기 지시된 사항’을 이틀 전인 12. 1.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일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6개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임무를 받았던 것과 연관 지어 생각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하는 도중(‘비상계엄 선포’라고 말하기 전) 장관께서 제게 ‘707 특임대 2개 지역대를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로 보내라.’는 말씀을 꼭 집어서 하신 것도 연관 지어 생각했다. 위 지시 후 22:47경부터 예하부대를 대상으로 화상원격회의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22:23경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였다. 담화 도중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여 22:24경 조성현 제1경비단장에게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였다.

22:26경 이우현 52사단장, 22:28경 박진희 56사단장에게도 대통령 담화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전화했다. 만약 비상계엄이고 국회로 가는 걸 미리 알았다면 아예 국회 쪽을 담당하는 부대에 연락했을 것이지, 이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국민담화가 끝난 후 22:30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약 50초간 통화를 하였다.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도 그때가 아니라 장관님 화상원격회의 끝나고 국회로 출동 중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하기는 한다. 통합방위하면 경찰이 테러라든가 이런 걸 평상시 치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봉식에게 전화를 했다. 제가 김봉식에게 ‘지금 서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김봉식으로부터 ‘국회 쪽으로 경력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통제가 안 된다. 혹시 군도 옵니까?’라는 말을 듣고 제가 군도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 예’라고만 말하였는데, 그때 막 부관이 ‘사령관님, 지금 VTC 하고 있는데 사령관님 안 나오신다고 빨리 등장하십시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고 지통실로 뛰어갔다.”,(“당시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기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주요지휘관회의 당시 저는 장관님 말씀 중에 ‘항명죄’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그런데 장관께서 ‘수방사령관, 이상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제가 ‘예’ 그랬더니 ‘그러면 나가서 출동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뭔지도 모르는데 장관님께서 화상원격회의에서 나가라고 하시니까 ‘예?’라고 하였는데 ‘괜찮으니까 가서 출동 준비시키세요.’라고 말씀하셔서 ‘아, 이제 지금 비상상황이구나’하고 화상원격회의에서 나왔다. 그런데 화상원격회의에서 나가자마자, 비화폰 내역 상 22:33경 이루어진 9초간 통화로 기억하는데, 장관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셔서 ‘지금 국회로 빨리 출동해라. 그리고 도착 즉시 보고해라.’는 말씀만 하고 제가 ‘예’라고 하자 바로 끊어버리셨다.”, ‘제게 기존에 하달된 임무가 있는지가 문제되는

데, 저도 장관님께 묻고 싶다. 도대체 기존에 무엇을 하달하셨는지를 묻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안수는 이 법정에서 “김용현 주재 화상원격회의 당시 이진우, 곽종근은 화상에 곧바로 연결되었으나 여인형은 곧바로 연결되지 않았다. 나중에는 여인형도 뒤늦게 들어온 것으로 기억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그렇게 오래 진행되지 않았다. 약 2~3분 정도 진행된 것 같다. 장관께서 군에서 명령 하달하는 방식으로 몇 가지 꼭지를 말씀하셨다. 이유를 말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쪽 계속 이렇게 명령 하면 수명하고, 명령하면 수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군사 활동은 장관이 지휘한다.’, ‘불응 시에는 항명죄로 처벌한다.’, ‘계엄사령관은 저(박안수)로 임명한다.’, ‘차장(정진팔)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합참 계엄과가 계엄사령부를 지원하라’, ‘내일 아침에 지구·지역 계엄사와 화상원격회의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해서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는 지시를 들은 기억은 전혀 없다. 당시 경황이 없기는 했지만 하여튼 저는 기억이 없다. 회의가 끝난 후 김용현 장관이 노란봉투에서 계엄 선포문을 꺼내 전하규 대변인에게 주었고, 몇 분 후 제게 포고령 문건을 주며 ‘공지하라, 하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법적 검토가 완료된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손짓으로 ‘4층에 가서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라.’고 말씀하셔서 22:42경 포고령 문건을 들고 전투통제실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김용현은 22:45경 인사기획관 오영대에게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2024. 11. 말경 전달받은 인원 명단을 기초로 작성한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을 건네주며 ‘이대로 인사 명령을 내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문건은 ‘12. 3. 22시를 기준으로 준장 구삼회를 합동수사 본부 예하 제2수사단장으로, 준장 방정환을 제2수사부단장으로, 대령 김상용을 수사1부장, 대령

김봉규를 수사2부장, 대령 정성욱을 수사3부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일반명령	
■ 지휘부	
▲ 준장 구삼회를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 2 수사단장으로 명함	
▲ 준장 방정환을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 2수사부단장을 명함	
▲ 대령 김상용(군사경찰)을 수사1부장, 대령 김봉규(정보사)를 수사2부장, 대령 정성욱(정보사)을 수사3부장으로 명함	
▲ 정보사 대령 김봉규를 A여단 여단장 대리로 임명함	
	12.3일 22시
■ 수사요원	
▲ 수사 1부	
중령 이승윤, 중령 김동현, 소령 노주영, 소령 유수지, 준위 WT, 준위 JG, 준위 WX, 준위 WU, 준위 WV(해병), 준위 KU, 준위 WW, 준위 MU, 준위 WY, 상사 MN(해병), 상사 JH, 상사 WZ, 상사 XA, 중사 XB, 중사 XC, 상사 XD, 중사 XE, 중사 XF, 중사 XG	
이상 23명 수사1부 수사관으로 명함	12.3일 22시
▲ 수사 1부 전원은 12.4일 오전 08시 수방사 헌병단에 집결할 것.	
▲ 수사 2부	
중령 김주범, 중령 김태환, 중령 맹성진, 중령 이은혜, 소령 배종인, 소령 황지환, 소령 김인대, 소령 염진복, 소령 권혁기, 소령 이준배, 소령 이용호, 소령 신준호, 대위 AAK, 대위 AAL, 대위 AAM, 원사 AAN, 상사 AAO, 상사 AAP, 상사 AAQ, 중사 AAR	
이상 20명 수사2부 수사관으로 명함	12.3일 22시
▲ 수사 3부	
중령 김태욱, 중령 김태환, 중령 김영효, 소령 방신호, 소령 이준배, 소령 이동렬, 소령 박동수, 소령 최종근, 소령 정영호, 소령 이중경, 소령 이용현, 소령 차수제,	

대위 ABB, 상사 ABF, 원사 ABC, 상사 ABD,
상사 ABE, 상사 ABF, 상사 ABG, 상사 ABH
이상 20명 수사3부 수사관으로 명함 12.3일 22시

- ▲ 수사2, 3부 전원은 24. 12.3일 22시 부, 단 속초인원은 12.4일 06시부로 정보사령부로 집결.
- ▲ 준장 구삼희, 준장 방정환은 24. 12.3일 24시부로 정보사로 위치할 것
- ▲ 지원사항
 - 조사본부는 위장번호 승용차 8대, 스타렉스 3, 미니버스 3대(25인승, 운전병 포함)를 12.4일 오전 10 시 한 수방사 헌병단에 대기시킬 것 -10개소 압수수색에 필요한 물품, 수갑50개를 수사 1부장인 조사본부 김상규 대령에게 24.12.3일 23시한 인계할 것
 - 수갑 50개를 제 2수사단 2수사부장인 정보사령부 대령 김봉규(전화번호 생략)에게 24.12.4일 중앙선 관위로 와서 인계하고, 추가로 수갑 100개를 육군수사단 협조하여 24.12.4일 19시한 수방사에 김봉규 대령에게 인계할 것
 - 육군수사단은 승합차 8대, 승용차 5대를 수방사 헌병단에 12.4일 오전 10시한 대기시킬 것, 과학수사 관련 지원 할 것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는 2024. 12. 3. 22:45경 인사기획관실 소속 장군인사팀 ADS 등에게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건네받은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을 전달하며 인사명령 공문 작성을 지시하면서 '계엄 관련된 인사명령 작성한 것 자체가 보안이다. 보안 유지를 잘해라.', '당사자한테 연락이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당사자한테 일체 연락하지 마라.', '(소속 및 군번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해라'라고 말하였는데, 위 문건 내용 중 인사명령에 포함될 수 없는 지원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장군인사팀 소속 ADS이 '지원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 불가' 의견을 밝히자 '이것(지원사항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예 최초부터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한 후, 2024. 12. 4. 00:00경 내지 00:30경 재차 위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을 지참해 국방부 지하 3층 합동참모본부 전투 통제실로 가서 피고인 김용현에게 위 문건을 반환하면서 '지원사항 부분은 우리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사명령만 내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작성하지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용현은 '아, 알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의 내용을 반영한 국방부 인사명령이 작성되었으나, 이후 정식 발령되지는 않았다(증거순번 2기록 957번).

국방부 인사명령(비실명 과정에서 생략)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2024. 11. 말경 전달받은 명단을 기초로 위 문건을 스스로 작성하였다. (제2수사단 수사관으로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임명한 이유에 관해) 제가 제2수사단을 이렇게 구상했던 것은 나중에 합수부가 구성되면 여러 가지 수사하는 데 인력 소요가 많이 소요될 텐데 아무래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수사단을 준비하게 됐다. 그래서 정보사에다가 제가 임무를 부여할 때도 딱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선관위 서버실을 선점해서 서버가 유출되거나 훼손되거나 하지 않도록 선점을 했다가 그걸 방첩사 오면 인계해라.’ 하는 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합수부가 구성되면 합수부 통제 하에 수사 지원 임무를 수행해라.’ 이거였다. 그래서 정보사의 임무는 매우 단순하고 인력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큰 임무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대통령님의 지시다. 그런데 ‘선관위 어디어디에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건데”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여인형에게 알려준 '명단'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인, 전직 대법원장, 법조인 등 인원이 포함된 명단을 여인형에게 알려준 적이 있고, 포고령 위반 우

려가 있는 대상들을 알려주며 ‘해당 인원들의 동정을 잘 살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또한 피고인 김용현은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에게 계엄 선포문을 전달하며 ‘이걸 언론에 좀 알려라.’, ‘내가 대통령실에도 주고 왔다.’라며 기자들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전하규가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실에서 내려야지 우리가 내릴 것이 아닙니다.’라며 반대하자, ‘그럼 빨리 대통령실에 알려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전하규는 2024. 12. 3. 22:40, 22:46, 22:58, 22:59경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도운에게, 23:01경부터 23:03경까지 대통령실 대변인 정혜전에게 각 연락하였으나 위 두 명이 연락을 받지 않아 이를 전달하는 것을 포기하고, 22:45경 국방부 공보과장 이경호에게 위 계엄 선포문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는데, 결국 계엄 선포문은 공고되지 못하였다. 위 계엄 선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 선포문

정부는 우리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 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 계엄의 종류 : 비상계엄

2. 계엄지역 : 전 국

3. 시행일시 : 2024년 12.3일 2200시부

4. 계엄사령관 : 육군참모총장 대장 박안수

대 통 령

(5) 피고인 김용현은 22:54:14경부터 약 12초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여인형에게 ‘정치인, 전직 대법원장 김명수, 법조인 등이 포함된 명단’을 알려

주며 ‘매뉴얼에 따라서 합수부 구성을 조기에 합수부로 구성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이후 피고인 김용현은 00:33경 여인형과 다시 26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여인형과 통화하면서 비화폰을 바꿔가며 곽종근과도 전화로 ‘왜 늦어지지?’, ‘응 그래, 최병욱’, ‘헬기...’ 등 대화를 하며 직접 군사작전을 지휘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23:11경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해 약 1분 21초가량 통화하였고, 23:28경 재차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약 38초가량 통화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통화에서 여인형에게 어떤 임무를 부과했는지에 대해) 특별한 어떤 것보다는 ‘매뉴얼에 따라서 합수부 구성을 조기에 합수부로 구성하도록 해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 같고,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체포 명단을 불러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체포를 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고, 체포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범죄사실도 특정되지 않고, 그리고 합수부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합수부가 구성이 돼야만 이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인데, 체포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건 잘못된 얘기다. 그래서 제가 ‘합수부가 어느 정도 있으면 구성되냐?’ 그랬더니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예 마음 편하게 기다렸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누구누구를 특정한 게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인원들하고 일부 관심을 가져야 될 인원들하고 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특정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인원 불러주고 ‘한번 잘 살펴봐라’ 그리고 ‘동정을 살펴 봐라’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범죄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거나 하면 그때 체포가 될

수 있도록 기구가 구성됐으니까 (체포)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런 체포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포고령 위반이 있는 그런 어떤 인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정을 살펴보라고 한 것은 그분들이 뭐 잘못을 해서 위반을 해 가지고 체포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위반을 할 계제가 있으면 미리 예방하고 차단을 하라’ 그런 의미다. 범죄사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동정을 살펴보라는 뜻은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위반을 할 일이 있으면 사전 경고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어떤 위반은 못 하도록 해 줌으로써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런 활동이 될 수가 있다. 그게 ‘동정을 한번 살펴보라’ 이런 뜻이다.”, “대통령님은 상관이 없다. 제가 판단해서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지침을 주실 것 같으면 명확하게 제가 더 엄중하게 얘기했을 텐데, 여 장군한테 제가 얘기할 때 그렇게 엄중하게 얘기하지 않고 가볍게 ‘이런 인원들 한번 살펴봐라’, ‘동정을 잘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한 정도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걸 아니다.”, “(한동훈이 명단에 있었는데) 그 얘기는 제가 기억이 없다. 그거는 아마 나중에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랑 뭐 이렇게 3명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뭐였냐면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원이 아닌데 거기에 본회의장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게 의원 신분도 아닌데 저렇게 하면 저거 혹시 포고령 위반 사안이 아니냐?’라고 ‘한번 잘 살펴봐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함께, 이재명 대표나 국회의장도 함께 그런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다.⁵²⁾ 그때 아마 얘기된 게 그렇게 얘기가 와전이 될 수도

52) 통화 내역 상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형의 00:33경 이루어진 26초간의 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여인형은 00:34경 김대우와 통화하였고, 김대우는 00:38경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 인원들에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3명을 구금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위 여인형과의 통화 직후 부관 김으뜸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 박헌수와 차장 김상용을 합참 지휘통제실로 호출하였고, 이들이 지휘통제실로 왔으나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헌수를 부른 건 제가 만든 국방부 일반명령 초안 문건을 전해 주려고 오라고 했다. 그런데 왜 둘 다 불렀냐 하면, 그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군사경찰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인사명령 부분은 인사관리관이, 인사기획관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을 부른 것이다. 그래서 둘을 같이 이렇게 잘라서 주려고 그렇게 불렀던 것인데, 결국은 제가 시간을 못 맞춰 가지고 못 만나서 전달을 못한 것이다.’, ‘김상용 대령은 제2수사단 1부장인가 무슨 부장으로 임명할 예정인 인원이라서 오라고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국방부 -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공고

(1)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포고령을 공고하고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라’)에 따라 2024. 12. 3. 22:45경 지하 4층 작전회의실로 이동한 박안수는 함께 위치한 김흥준을 계엄사령부 참모장, 이재식을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각 임명하였다. 박안수, 정진팔, 김흥준, 이재식, 장주범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작전회의실을 계엄상황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인원들을 소집하였다.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대령 권영환은 2024. 12. 3. 23:17경 작전회의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박안수는 권영환에게 ‘인원구성이 왜 자꾸 늦느냐. 빨리 좀 소집될 수 없느냐?’라며 계엄상황실 구성을 위한 인원 소집 및 구성을 재촉하기도 하였다.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가 2024. 12. 3. 23:23경 국방부 언론 전파 시스템을 통해 언론에 전파되어 인터넷 기사나 뉴스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공고되었다. 이 사건 포고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4기록 97번).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를 금한다.
-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서명)

박안수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포고령 공고 경위와 관련해 “장관님의 지시로 작전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면서 정진팔, 김홍준, 이재식과 함께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문건을 돌려가며 읽었는데, 당시 모두가 위 포고령을 읽어보고 다소 무거운 분위기였다. 장관님께서 법무적인 검토를 하셨다고는 했지만 서로 토의를 하면서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22:54경 지휘통제실에서 전화가 와서 ‘포고령을 하달할 시간이 되었다.’, ‘포고령을 하달하라’고

지시를 전달하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제가 22:56경 위 문건을 가지고 다시 전투통제실로 올라갔다.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 장관님이 아직도 계엄 선포문 문제로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장관님께서 말씀 중에 ‘22:30부로 포고령 하달’이라는 언급을 하시기에 제가 앞으로 나가서 장관님께 ‘(문건에는 22:00로 적혀 있으니) 시간이 좀 틀려서 수정하겠습니다.’고 건의를 드렸고, 장관님께서 제게 ‘23시로 수정해라’고 하셔서 옆에 있던 합참차장이 문건에 숫자 ‘22’를 ‘23’으로 수기로 고친 후 다시 타이핑해서 출력해 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가 ‘포고령을 언론에 설명하고 공지하라’고 지시하였다. 실제 제가 공지 지시를 내려서 시스템을 통해 언론에 전파된 것은 새로 타이핑을 치고 또 내부망으로 작성해서 외부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전하규는 이 법정에서 “김용현 장관이 노란색 서류봉투에서 포고령 문건을 꺼내어 박안수에게 주는 것을 봤다.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 이후 김용현이 언론에 포고령이 나갔는지 물어보셔서 제가 지시하여 작전회의실에 ‘포고령이 지금 언론에 나가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정확한 시기는 기억 안 나지만 제가 있던 지휘통제실에서 포고령이 국방부 언론 전파 시스템을 통해 언론에 나갔다. 당시 계엄상황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국방부 시스템을 통해 전파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포고령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검토 여부와 관련해 '법무검토를 받았다고보다는 저는 대통령님께서 누구보다도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항상 모든 보고를 할 때는 법전을 항상 두고 하시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보신 걸 저는 법무검토를 했다고 판단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3:17경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포고령 1호 하달되었나요?'라는 취지로 질문하였고, 이에 박안수가 '예, 하달되었습니다.'고 답변하자(박안수는 이미 포고령 공고 지시를 내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고 지시하였다. 박안수는 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이 사건 포고령이 언론에 보도될 즈음 박안수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해라'고 지시하였다. 박안수는 23:22경 피고인 김용현의 경호처 비화폰을 이용해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설명한 후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23:34경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이 사건 포고령을 제시하면서 '지금 포고령이 언론에 공포되었다. 공식 문서는 안 왔지만 포고령이 언론에 공포된 자체로 포고령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포고령대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으니 서울경찰청에 전화해서 국회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해라'고 지시하였다.

박안수는 이 법정에서 "대통령님께서 '포고령 1호 하달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래서 '예, 하달되었습니다.' 하니까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후 피고인 김용현도 제게 '대통령님 전화 오셨고, 포고령 하달되었나?' 물어보셨고, '(대통령이) 경찰청에 하달된 사실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시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경찰 증원하라'는 쪽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피고인 조지호에게 '포고령 1호가 하달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피고인 김용현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 증원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렇게 기억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통화 당시 박안수로부터 '국회 활동이 금지되었으므로 경력을 통해 국회를 통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포고령이 발령되었는데, 국회활동이 금지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국회 출입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박안수가 제게 ‘국회 활동이 금지가 되었으니까 국회를 통제해 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포고령 이야기를 처음 들어서 ‘제가 보고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박안수는 2024. 12. 3. 22:47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조종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12초가량 통화하면서 조종래에게 ‘육군본부에 있는 참모들이 내일 아침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와서 합참하고 합동근무를 하거나 배우거나 해야 되겠다’, ‘합참에 인원이 부족한데, 부·실장과 그들을 지원할 2~3명의 차·과장을 모아서 올라오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박안수로부터 육군본부 소속 참모들을 합동참모본부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조종래는 2024. 12. 4. 02:30경까지 육군본부 인원들 중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할 참모진 34명을 구성하였다.

3) 경찰

가) 경찰청 본청

(1)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는 이 사건 비상계엄이 2024. 12. 3. 22:27경 중계방송을 통해 선포되는 것을 TV로 시청하였고, 2024. 12. 3. 22:31경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기동대를 국회 쪽에 배치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알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22:34경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2024. 12. 4. 00:00경 전체 국관회의를 개최하니 참석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는 경

찰청 서무계장들을 통해 전파되었다. 피고인 조지호는 22:30~40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계엄이 발령됐으니까 본인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것이다’, ‘안보수사요원(또는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우리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등 10여 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과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이 법정에서 "여인형 사령관하고 처음 통화인데 본인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러시냐고 하고, ‘계엄이 발령됐으니까 본인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것이다.’, ‘경찰이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선관위 세 군데를 이야기하면서 ‘선관위에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메모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사람 이름을 쪽 붙렸다. 붙렸고 다 적으니까 ‘여기 우리가 체포할 건데 위치추적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위치추적은 수사가 있어야 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 하고 대충 두루뭉술하게 전화가 끊어졌다.", "선관위 세 군데에 대해서는 어느 청사라고는 이야기 안 했고, '관악, 수원, 과천'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 "아마 바로 이어서 여인형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던 것 같은데 ‘위치추적 요청 명단에 한동훈 추가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난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정청래, 그리고 제가 약간 특이했던 것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김동현인가 그랬는데 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이야기한줄 알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말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판사’라고 해서 김동현이라는 판사, 그 다음에 대법관님이시던 권 그분하고 그 정도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조지호 청장께서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선관위에 군부대 병력이 들어간

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하시는데, 저는 그것 자체에 동의를 안 하거든요, 지금.”, “(피고인 조지호가 여인형에게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를 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고, 인원 요청을 하자 조지호 청장이 ‘알겠습니다.’라고만 하였다. 경찰청장과 대화하는 것이 처음인데 실무적인 것을 국가수사본부장과 이야기하라는 것은 대화 맥락상 맞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방첩사 전시 작전계획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합수부 구성이다. 합수부 구성이면 제가 사령관으로서 저도 군인이니까 매번 훈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령관으로서 해야 할 가장 큰 합수부 구성과 관련된 매뉴얼 조치는 사령관들끼리 얘기해서 합수부가 잘 구성되도록 사전에 전화 한 통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대상인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드려서 전화번호도 사실 몰랐고 그날 저녁에 전화번호를 처음 알았다. ‘합수부를 구성해야 하니까 사람을 보내 줄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본부장에게도 당연히 그런 맥락에서 ‘합수부를 구성해야 하니까 사람을 보내 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런 통화를 한 것이고 조지호 청장에게 10여 명 정도 사람 이름을 얘기해가면서 ‘이 사람들 핸드폰 위치추적 같은 것으로 해서 위치확인이 좀 되면 위치확인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시간이 더 당겨지는데 장관님이 저한테 지시하신 사항이다. 장관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장관님께 물어봤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찌란 소립니까’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러면 경찰과 협조를 해보든지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분명히 잡으라는 취지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조지호는 22:41경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에게 전화하여 ‘야 계엄 발표됐으니까 빨리 사무실로 가라, 그리고 너희 관내에 선관위 두 개가 있는 모양인데’, ‘두 개가 있단다, 방첩사에서도 거기 가는 것 같으니까 너희도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김준영이 ‘형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되묻자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해, 우발대비 하는 대로’라고 하며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하고 나오는 사람은 내보내서 선관위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3) 피고인 조지호는 22:45경 피고인 김봉식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봉식으로부터 ‘국회 내·외곽에 6개 경찰기동대와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들이 배치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비상상황이 되었으니까 배치했던 국회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피고인 김봉식과 국회에 대해 이른바 ‘진공조치’를 취하고 유지하자고 결정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위 통화 직후인 같은 날 22:46경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4) 피고인 조지호는 22:59경부터 23:06경까지 약 7분가량 피고인 김봉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고인 김봉식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봉식은 ‘현장에서 국회 상시 출입자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많다, 이걸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로 건의하였고, 피고인 조지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제한적 출입 허용을 허가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위 통화 직후인 23:07경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23:18경 피고인 김봉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3분 31초가량 통화하였고, 23:23경 피고인 조지호가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를 걸어 1분 33초가

량 통화하였다.

(5) 또한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3. 23:15경, 23:20경, 23:28경, 23:30경, 23:34경 및 2024. 12. 4. 00:48경 각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고인 윤석열과 총 6차례 통화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인 23:15경 통화 즈음에는(국회의원이나 출입증 소지자의 경우 국회 출입이 허용되고 있었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국회를 통제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된 23:23경 이후의 통화 즈음에는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국회로 월담하여)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잡아라, 체포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조지호는 이 법정에서 위 통화 내용과 관련해 “통화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지만, 처음에는 국회 통제 관련되어서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후반 통화는 국회가 담이 워낙 낮고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월담이 가능해서 월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다. 포고령 공고 이후 통화에서는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잡아라, 체포해라'와 같이 체포와 관련된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는 12. 3. 22:30경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되었고, 23:17경 경찰청에 복귀하였는데, 복귀하던 도중인 22:43경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위 통화 당시 주진우가 ‘일단은 국회에 그 전장연 관련한 경력 가지고 국회 문은 지금 배치를 시키고 있거

든요. 출입통제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일단 배치만 해 놓고 있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임정주는 ‘그러. 그 주변에 그냥 일단 세워만 놓고’라 지시하였고, 주진우로부터 ‘본청의 지시를 따를까요?’라고 질문받자 ‘본청의 지시를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임정주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과 23:01경 1분 42초, 23:04경 1분 33초, 23:09경 38초가량 통화하였고, 23:13경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 경비안전계장 김만중으로부터 ‘현재 시위대가 국회 앞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경찰청에서 전장연 유속에 대비하여 배치한 5개의 기동대를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배치한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현황보고를 받았다. 임정주는 23:25경 경비기획계장 경장 최태민과 함께 피고인 조지호의 집무실로 이동해 23:26~27경 즈음 경찰청장 집무실에 도착하였다.

임정주가 피고인 조지호의 집무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조지호는 임정주에게 ‘군에서 계엄 관련 문서가 온 게 있느냐, 확인해봐라’, ‘전국에 기동대 출동대기 지시를 시켜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임정주는 경찰청장 집무실 밖 비서실로 나와 23:29경 경찰청 작전계장 및 대테러 위기관리과장에게 계엄 관련 문서 접수 사실 확인을 지시하고, 23:42경 경비안전계장 김만중에게 기동대 출동대기 지시를 하달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김만중은 23:56경 ‘1. 관련 근거 2024. 12. 3.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2. 즉시 전국 기동대 부대 출동대기’ 내용의 공문을 전국 각 경찰청에 하달하였다.

임정주는 이 법정에서 “22:30경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듣고 23:17경 경찰청에 복귀해 23:26~27경 조지호 경찰청장 집무실에 들어갔다. 당시 ‘서울경찰청에서 소속 6개 기동대를 국회 1 내지 7문에 각 배치하고 22:47경 국회 출입을 차단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비상계엄 상황이 끝나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 제가 22:43경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와 통화하면서 ‘전장연 관련 경력 가지고 국회 문에 배치하고 있다. 출입통제

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해라, 그 주변에 일단 세워만 놓고’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당시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어서 일반인들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들었고 주진우에게 ‘국회사무처에 확인하여 협의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세워만 놔라, 경력이 있다면’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주진우에게 ‘본청의 지시를 기다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25경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유선으로 ‘TV를 보라. 대국민담화 나온다.’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방송 상황을 전달하였고, 22:27경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당시 21:53경부터 국회 인근 국민은행 건물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출동 대기 중인 ㄱ기동대에 관하여) 승차대기하고 있지? 신체보호복 입고, 배치할 데 미리 생각해 봤나? 그거 그러면 지시해라, 무전 지시하고’라며 출동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주진우는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 일정으로 국회 부근에 배치되어 있던 ◀, ▲, ♣, ●기동대 및 추가 투입되는 ㄱ기동대 합계 5개 기동대를 국회 정문 기준으로 국회 1문(정입구)부터 시계방향으로 당시 개방되어 있던 국회 1 내지 3문까지는 각 1개 기동대를, 나머지 2개 기동대는 각 국회 외곽 및 이외 문에 배치하라’는 취지에서 ‘1~3문에는 1개 기동대씩 놓고 나머지 2개는 둘레에 나머지 닫혀있는 문들에 요령껏 알아서 깔아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최창복은 22:34~35경 위 지시 사항을 서울경찰청 무전망으로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황태준에게 하달하면서 ‘순서대로 국회1문(정입구)에는 @!기동대, 국회 2문(정출구)에는 #@기동대대, 국회 3문에는 \$@기동대, 국회 4, 5문에는 ㄱ기동대, 국회 6, 7문에는 %기동대를 각 배치하고 위 각 기동대는 해당 담당 장소에 차벽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서울경찰청 경비부

장 주진우는 22:39경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경비대에 전원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최창복과 주진우의 각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22:34:54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 장 CK	생략	영등포 경비과장, 서울경찰청 경비안 전계장입니다.
22:35:01	영등포 경비과장 SI	생략	영등포 경비과장입니다.
22:35:06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 장 CK	생략	알겠습니다. 지휘하고 있는 경력 중 @! 기동대는 국회 정문 입구, #@기동 대대는 국회 정문 출구, \$@기동대는 국회 제3문, 현 시간 배치하세요, 아올 러 나머지
22:35:51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 장 CK	생략	알겠습니다. 나머지 &%기동대, ㅁ기 동대 경력으로 4, 5, 6, 7문에 각각 1 개 제대 또는 2개 제대씩 배치하세요.
22:36:06	영등포 경비과장 SI	생략	영등포 경비과장 알겠습니다. 지휘대 로 조치하겠습니다.
22:39:01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BE	생략	국회경비대 부대장, 서울경찰청 경비 부장입니다.
22:39:11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BE	생략	현재부터 국회경비대 부대장, 국회경 비대 전원 근무하세요.
22:39:22	국회경비대 2제대장 KG ⁵³⁾	생략	국회경비대 부대장 알겠습니다.

이에 따라 12. 3. 22:30경부터 22:50경까지 차례로 기동대 경력이 배치되었다(붉은 색 원 참조). \$@기동대장 정동실은 국회 3문으로 이동 및 차벽을 형성하였고, ㅁ기동대장 박만식은 국회 4, 5문으로 이동 및 차벽을 형성하였으며, %기동대장 김용경은 국회 6, 7문으로 이동 및 차벽을 형성하였다. 본래 1, 2문에 배치되어 있던 여의도 타격대 ☆☆기

53) 당시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가 부재 중이어서 당직 중이던 2제대장 정성재가 대신 답변하였다.

동대 상당수 경력은 여야 당사로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은 참고를 위해 첨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30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로부터 전화를 받아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2:31경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기동대를 국회 쪽에 배치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알겠다.'는 말을 들었고, 22:32:26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0초간 통화하였다(피고인 김용현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김봉식은 서울경찰청 8층에 위치한 상황지휘센터로 서울경찰청 간부들을 소집하였고, 서울경찰청차장 오부명, 경비부장 주진우, 수사부장 임경우, 정보부장 유운종, 정보과장 지병철, 생활안전차장 최현석, 생활안전부장 이재영, 수사차장 손제한, 교통부장 강일원 및 경비과 직원들이 상황지휘센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22:43:24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약 51초가량 통화한 후, 22:45경 피고인 조지호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조지호에게 ‘국회 내·외곽에 6개 경찰기동대,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들이 배치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비상상황이 되었으니까 배치했던 국회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조지호와 이야기하며 국회에 대한 '진공조치'를 취하고 유지하자고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봉식은 22:46경 서울경찰청 상황지휘센터에서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며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 차단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최창복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을 통해 22:47경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국회경비대 부대장에게, 22:49~50경 국회에 배치된 @!기동대(64명, 1문 배치), #@기동대대(62명, 2문 배치), \$@기동대(71명, 3문 배치), ㄱ기동대(75명, 4, 5문배치), %기동대(65명, 6, 7문 배치)의 각 지휘관에게 ‘국회 외부에서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전원 차단하라. 국회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로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의 출입은 불가하다. 전부 차단하라.’는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하달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48부터 같은 날 23:06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 인원의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되었다. 위 무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22:47:33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CK	생략	아울러 영등포 경비과장. 202경비 부대장 정정 국회경비대 부대장. 현 시간부터 안쪽에서 국회 안쪽에 서 외부로 나오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전원 차단하세요.
22:47:51	영등포 경비과장	생략	영등포 경비과장 알겠습니다. 외부 에서 국회 내부로 들어가는 모든 인원들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48:01	국회경비대 2제대장 KG ⁵⁴⁾	생략	국회경비대 부대장 알겠습니다. 국 회 외곽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인원 전원 차단 알겠습니다.

22:49:48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CK	생략	●, ●, ●, ●, #@기동대대장, 다 시 한 번 지시합니다. 현 시간 이 후 누구를 막론하고 내부에 서 외부 로의 출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내부 로 입은 불가합니다. 전부 차단하 세요.
22:50:38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CK	생략	●, ●, ●, ●, #@기동대대장, 아 울러 현 시 간 각 문에 경력 배치뿐 만 아니라 문 앞에는 차벽 설치하 세요.

서울경찰청 제3기동단 ㉮기동대장 박만식은 22:50경 국회 4, 5문 방면 경력 배치 및 차벽 설치를 완료하였는데(국회 4문에 버스 차량 2대, 국회 5문에 버스 차량 1대 및 콤비 차량 1대를 이용해 차벽을 설치하였고 국회 4문 방면에 1제대원 및 3제대원 중 절반 도합 약 30여 명을 배치하였고, 국회 5문 방면에 2제대원 및 3제대원 나머지 절반 도합 약 30여 명을 배치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22:47경 최창복으로부터 서울경찰청 무전망 및 영등포경찰서 작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가 하달되어 출입을 차단하자, 출입을 저지당한 국회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왜 안 들여보내주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고, 박만식은 ‘현재 지시가 이렇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 달라’,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이 무렵 이미 국회 각 문에 배치된 다른 4개의 기동대 역시 국회 직원, 기자, 일반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 즈음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는 서울경찰청 경비법무계장 김동우에게 ‘국회의원 출입 차단과 관련 검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김동우가 헌법, 계엄법 등 관련 법령 조문을 출력해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지휘센터에 위치한 피고인 김봉식,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경비부장 주진우, 수사부장 임경우 등에게 배부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김봉식 등은 국회의원 출입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해 토의한 결과 ‘국회의원

54) 당시 국회경비대 부대장이 부재하여 경비 2제대장 KG가 대신 응답하였다.

의 출입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으므로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당시 국회경비대장 피고인 목현태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님이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라며 조치 여부를 문의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김봉식에게,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이 ‘헌법상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막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경비부장 주진우가 ‘국회의원은 출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담화문만 가지고 국회의원을 통제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들여보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결단을 하십시오.’라고 국회의원들의 출입 허가를 각 건의하였다. 위 건의를 받은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59경부터 약 7분간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와 전화통화를 한 후 23:06경 ‘국회의원들은 출입을 허용하게 하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타 출입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출입을 허용해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은 같은 날 23:07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에 출동한 기동대 등에 국회의원 출입 허용 지시를, 같은 날 23:15경에는 국회 직원 등 국회출입증 소지자의 출입 허용 지시를 각 전파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23:07:02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CK	생략	알겠습니다. 출입통제 중인 ●, ●, ●, ●, #@기동대대장 경력에게 다시 한 번 전파하세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단, 국회의원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23:15:06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CK	생략	영등포 경비과장. 국회 안쪽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보좌관과 국회 관련 공무원들 직원들은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 출입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차단. 지속적으로 차단하세요.

피고인 김봉식은 위와 같이 국회의원 등 출입 허용 조치를 지시한 직후인 23:06:55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하였으나 이진우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23:07:25경 이진우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13초가량 통화하였다. 오부명은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와 23:01경 약 1분 42초, 23:04경 약 1분 33초, 23:09경 약 38초가량 통화하며 피고인 김봉식의 국회의원 등 출입 허용 지시 취지를 경찰청에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3:18경부터 4분가량 피고인 조지호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23:21경 직접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을 통해 국회에 출동한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출입증 보유자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시간	발신자	평문 해석(통신녹취는 생략)
23:21:02 ~ 23:21:26	서울경찰청장	잠시 서울경찰청장 일방적 지시합니다. 잠깐 전에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한대로 하고, 국회경비대도 동원해서 일체 폭력행위 없도록, 폭력행위 있으면 적극 제지하고,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할 것. 아울러 검문검색은 잘 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출입증 있는 사람은 통과를 시키도록 해요. 절대 물리적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경찰청장 무전 완료.

서울경찰청 제3기동단 8기동대장 박만식은 23:07경 및 23:15경 최창복으로부터 각 ‘국회의원들은 출입을 허용하게 하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타 출입증이 있는 분들에 대

해서는 다 출입을 허용해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출입증을 소지한 국회사무처 직원 등 이 회전문을 통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무렵 국회 각 문에 배치된 다른 4개의 기동대 역시 출입증 소지자에게 국회 출입을 허용하였다.

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황태준은 22:00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 후 야간에 유숙을 하려는 100여명의 국회 진입 시도를 막기 위해 4개 기동대(◀, ▲, ♣, ●기동대)에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지휘를 하고 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인 22:35경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으로부터 ‘기존 4개 기동대에 추가 투입되는 1개 기동대까지 5개 기동대를 국회 각 문에 나누어 배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각 기동대 대장에게 이를 하달하여, 이에 따라 22:30경부터 22:50경까지 위 5개의 기동대가 각 문으로 이동하여 최창복의 지시대로 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황태준의 지시하에 본래 1, 2문에 배치되어 있던 ☆☆기동대는 상당수 여야 당사로 이동하여 그곳에 배치되었다.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공석인 형사2과장도 겸직하고 있었다) 박창균은 전장연 집회에 출동하였다가 돌아와 22:00경 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수사2과장 이재현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던 중 22:23경부터 TV로 대국민담화 및 이 사건 계엄 선포 사실을 보게 되었다.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황태준, 국회경비대 부대장(실제로는 당직자 정성채), 국회에 배치된 5개 기동대의 각 지휘관들은 2024. 12. 3. 22:47경 및 22:4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봉식으로부터 국회 전면 출입 차단 지시를 받은)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으로부터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을 통해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받았고, 이에 황태준은 영등포 경찰서 행사망을 통해 위 최창복의 지시사항을 다시 전달하였다.

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은 국회 부근에서 기동대를 지휘하고 있던 경비과장 황태준에게

전화하여 국회 현장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황태준으로부터 ‘시민들이 국회 주변으로 몰려 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전 직원 비상소집을 지시하면서 형사1과장 박창균에게 ‘영등포 경찰서 소속 형사들도 빨리 소집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회 각 문마다 과장급 이상 인원을 책임관으로 각 지정해 배치할 것’과 ‘영등포경찰서 비상설 1단위 부대(약 40명) 동원’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박창균은 23:01경 메신저(카카오톡) 형사1, 2과 전체 대화(공지)방에 ‘형사 1, 2과 전 직원 현시점 비상소집 신속히 출근해 주세요.’라고 공지를 올려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에 대한 비상소집을 실시하였고, 이후 형사과 소속 형사 10여 명과 함께 국회 1문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박창균은 이동하던 도중인 23:22경 위 메신저 대화방에 재차 ‘팀하고 상관없이 5명 정도씩 모이면 국회 정문 쪽으로 나와 주세요.’라는 공지를 올렸고, 이후 23:30경 국회 1문 인근에 도착하여 @!기동대와 함께 경비 지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국회 안쪽으로 들어갔다.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황태준은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으로부터 23:07경 국회의원 출입 허용 지시를, 23:15경 국회출입증 소지자의 출입 허용 지시를 받고 이를 전파하였다. 황태준은 23:31경 최창복으로부터 ‘정문 입구(1문), 출구(2문) 사이에 군 계엄 관련자들이 도착했는지 파악하고, 도착하면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23:31~33경 즉시 다른 경력들에게 무전망을 통해 ‘1, 2문 쪽에 군 계엄 관련자들 도착했는지 확인해 달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출입증 소지한 국회 관련자, 기자에 한하지만 군 계엄 관련자가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국회 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황태준은 23:51경 2문에 있던 #@기동대대장으로부터 ‘국회 정문 쪽에 계엄군이 탑승한 차량 도착하였으나 국회 출입시도자들이 버스를 에워쌌다’는 보고를 받았고, 23:52경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으로부터 ‘1문 차도를 폐

쇄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으며, 23:55경 #@기동대대장에게 ‘정문 출구에 도착한 군 계엄 관련자들을 국회 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후 해당 군인이 6명인 것을 확인한 후 23:57경 ‘1개 제대는 정문 입구로 지원하고, 1개 제대는 정문 출구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군 계엄 관련자 6명을 국회 안으로 안내조치 해 달라. 그 외의 사람은 차단해 달라.’, ‘군 관련자가 우리 측에 요청하는 게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후 황태준은 23:57:59경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으로부터 ‘수방사 대테러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영등포경찰서에 남아 있던 수사2과장 이재현은 23:44경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영등포 상황방)에 ‘계엄포고령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해지며, 이에 따라 계엄법 제14조 적용됩니다.’라는 글을, 23:47경 위 대화방에 ‘군에서 계엄법 위반사범 관련 서울경찰청에 수사인력 100명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서는 유치장 준비해 달라는 서울경찰청 지시입니다.’라는 글을 각 게시하였다.

황태준은 이 법정에서 “12. 3.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영등포경찰서에 배속되어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인 제 지휘를 받는 기동대는 여의도 타격대 ☆☆기동대, 전장연 유숙 대비 4개 기동대, 광화문 타격대 ㉠기동대, 나중에 서울시청 쪽에서 온 *기동대 총 7개 기동대이다.”, “12. 3. 오전부터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에서 전장연 집회가 열려 최대 약 1,000명까지 모였고 19:30경 집회가 유숙으로 전환되어 약 100명 정도가 남아 국회의사당역 대합실로 이동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경비부가 4개 기동대(27, 45, 71, 87)를 새로 배정하여 철야 업무를 대비하였고, 저는 22:00경이 조금 넘어 4개 기동대 종피팀

장들을⁵⁵⁾ 불러 작전회의를 진행했다. 국회의사당 대합실에서 국회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가 4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기동대별로 4개의 출입구를 1개씩 배정해주고 ‘혹시 국회 쪽으로 가게 되면 차단해 달라’고 지시했다. 당시 광화문 타격대인 ㄱ기동대가 21:40경 여의도로 출동해서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사실은 전혀 몰랐다. 통상적으로는 전화가 오지 않는데, 그날은 본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이 22:03경 갑자기 전화를 해서 ‘오늘 4개 부대가 있는데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작전회의 한 내용을 설명했더니 제게 ‘오늘은 그렇게 배치하지 말고, 1개 부대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집중하면서 있어 달라, 일찍 해산할 수도 있지 않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가 4개 기동대에게 ‘1개 기동대가 막도록 하되 시간이 길어지면 교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최창복이 22:35경 4개 기동대를 국회 1~7문에 각 배치할 것을 지시하여 22:40경부터 22:50경까지 해당 경력이 각 문에 배치되었는데) 최창복이 22:47경 저와 국회경비대 부대장에게, 22:49경 5개 기동대장에게 각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하였다. 당시 저는 최창복의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시위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단하라’는 의미로 이해했고, 국회 안쪽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으로부터 여야 당사 쪽에 우리 형사하고 지구대 순찰차를 배치하라는 무전을 받았다. 원래부터 국회 1, 2문 앞에는 여의도 타격대인 ☆☆기동대가 근무를 서는데, 당시 다른 기동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경력들을 일부 빼서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쪽에 보내 집중해서 관리하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어느 규모의 경력을 여야 당사에 보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22:47경 국회 출입 차단 지시 후 제가 있던 1문 앞에 약 100~200명 정도가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다. 서서

55) 기동대에서 사용하는 ‘종피’라는 용어는 기동대 대장을 바로 옆에서 수행하며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대원을 의미하는데, 통 상 기동대장 1명은 그러한 종피를 몇 명 두고 있어 그러한 종피들 중 팀장을 ‘종피팀장’이라 한다.

히 인파가 몰리고 있어서 경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23:03경 전후로 국회로 월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무전이 계속 나왔다. 제 기억에는 1, 2문이 아니라 3문 쪽에서 월담을 한다는 무전이 나왔던 것 같다.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담을 방지하기 위해 1년 365일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인데, 눈으로 보면서 월담을 목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국회 경비대 쪽에 연락을 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12. 4. 00:00경부터는 3, 4, 6, 8기동단이 국회 주변에 도착하여 국회 출입문과 담장 주변에도 배치되었다. 월담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그렇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중요시설로 되어 있는 국회 외부, 외국을 우리 영등포 경찰서에서 전담하고 있다. 국회 방호 지원 계획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의 임무는 국회 주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통제를 하며 군·경 합동검문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국회 출입 차단 등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의 지시가 있어 출입 차단하고 차벽을 설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창균은 이 법정에서 ‘형사 1, 2과 전체 인원은 저를 포함 96명 정도 된다. 당시 국회에 여의도 타격대 1기, 전장연 유숙 집회를 위한 기동대 4기, 국회 앞으로 이동한 광화문 타격대 1기 등 6개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었는지는 잘 몰랐다. 그런데 국회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기동대 몇 개, 야간에 배치된 기동대 경력으로는 국회 수비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강상문 서장이) 형사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을 다 동원시켰던 것이다. 강상문 서장이나 황태준 경비과장이 6개 기동대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6개 기동대 가지고는 국회를 막을 수가 없다. 국회에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계속 더 몰려들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시 포고령을 보지는 못했다.’, “23:30경 국회 정문 쪽에 도착을 했는데 경력이 좀 있었지만 시민들이 많이 몰려있었고 국회 쪽 인원, 기자들과 충돌이나 시비가 있었다. 경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시민들이나 기자들이 경력 사이로 해서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현장으로 나간 형사 10명과 함께 경력 지원을 해주다가 다른 경력 지원이 충원이 되어 잠깐 우리들이 기동대 경력 뒤쪽으로 서 있었다. 그런데 국회경비대 쪽에서 갑자기 닫으려고 하였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동대 경력과 국회 정문 철문 사이에 끼게 될 수 있어서 ‘철문 뒤쪽으로 빠져라’고 지시하고 철문 뒤쪽으로 빠지자 철문이 닫혔다. 그렇게 국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23:41경 영등포경찰서 이치수 강력계장이 다른 형사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쪽에 도착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계속 국회 안쪽에 있었고 이치수와 대다수의 형사들은 국회 바깥쪽에 있게 되었다.”, “23:31경 최창복으로부터 군 계엄 관련자들 도착 여부 확인하고 출입하도록 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전파하였는데, 당시 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계엄과 관련된 군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하고 서울경찰청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 이재현이 23:44경 단체 대화방에 ‘계엄포고령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해지며, 이에 따라 계엄법 제14조 적용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런데 이재현 과장이 있는 수사2과 업무는 현장에 출동을 안 하고 조사 업무를 하는 곳이다. 수사2과는 당시 경찰서에서 조사대비차 대기하고 있으면서, 현장에 나와 있는 저희들에게 정보를 계속 올려준 것이다.”, “당시 23:44경에는 강상문 서장 역시 현장에 나와 있었다. 강상문은 23:52경 제게 ‘국회 정문 앞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다.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현장에서 영등포경찰서 형사들 약 90명을 직접 지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국회경비대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경찰들이 국회에 파견을 온 것이 아니라 이른바 행정응원 개념으로 국회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체계는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국회경비대장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국회경비대는 국회 경내에 있는 건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고(국회사무처 소속 방호원들이 국회 청사 경호 및 방호를 한다), 국회 외곽 담장과 국회 출입문을 관리한다(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다). 국회출입문 개방 시간 등은 모두 국회사무처가 국회경비대에 요청한 것이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 12. 3. 기준 국회경비대의 총원은 123명으로 국회경비대장 피고인 목현태, 부대장 김영호 및 예하에 행정과, 의장경호대, 경비 1, 2, 3, 5제대(각 제대 당 23명)가 있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장 피고인 목현태, 부대장 김영호는 퇴근해 부재중이었고, 국회경비업무는 경비 2제대가 수행하고 있었는데, 국회 1, 2, 3문에 각 1명씩 나가 있었고, 신속대응 1, 2, 3팀으로 각 1명씩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본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타격대 인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신속대응 3팀의 경우 타격대 인원 3명이 순환으로 1명씩 근무를 맡는 것이어서 실근무자는 총 8명이었고, 다른 근무자들은 생활실에서 취침 및 대기하고 있었다). 국회경비대 행정과 경비계는 경비계장 오신타, 진압담당 AED, 경호담당 AEE, 통신담당 AEF, 물품담당 AEG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각 문의 위치, 국회경비대 건물의 위치, 수소충전소의 위치(국회 경비대 건물 오른쪽) 등은 다음과 같다(참고를 위해 이 법원이 개략적으로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다).

김영호는 이 법정에서 ‘개문 혹은 폐문할 출입문과 개방 시각은 국회사무처에서 정해주지만, 실제 그곳에서 몇 명이 근무할지는 국회경비대가 상황에 따라서 인원수를 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회경비대 2제대장 정성채는 2024. 12. 3. 22:35경 국회경비대 2층 다목적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상황실 직원 경사 AEH으로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2:38경 국회경비대장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렸다. 정성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2:39경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로부터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경비대 전원 근무 지시’를 하달받자 (피고인 목현태,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가 부재중이므로 대신)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이 영등포경찰서에 여의도 출동 기동대의 국회 각 문 배치를 지시하였다.’, ‘주진우로부터 무전으로 국회경비대 전원 근무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정성채는 피고인 목현태로부터 ‘서울경찰청의 지시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아, 22:43경 국회 1, 2, 3문에 기본 근무자 이외에 신속대응 1, 2, 3팀 각 1명씩을 추가 배치하였고, 이후 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국회경비대 경비 2제대 소속 대원들을 기상시킨 후 1팀장은 1문, 2팀장은 2문, 3팀장은 3문에 배치, 4팀장의 경우 예비대로 임무를 부여해 각 문 당 5명의 인원을 배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본 국회의장 우원식은 2024. 12. 3. 22:38경 내지 22:40경 국회경비대 의장경호대장 김성록과 함께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의사당을 향해 출발하였고, 김성록은 그즈음 국회경비대 상황실 일반전화로 경호기획관 황충연에게 연락하여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회 제3문으로 들어갈 예정이니 방호 요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에 따라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이 22:47경 서울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영등포경찰서, 국회경비대에, 22:49경 5개 기동대에 각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하달하였고, 위 지시를 확인한 정성채는 22:49경 국회경비대 상황실에서 국회경비대 무전망을 통해 당시 근무 중이던 국회경비대 전원에게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 사람 원천 차단’, ‘문을 닫고 전원 나와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회경비대 대원들이 국회 1, 2, 3문을 닫아 출입을 폐쇄하였다.

정성채는 위와 같이 제대 지휘를 하면서 국회경비대 경비계장 오신타에게 ‘대장님하고 통화해서 할 거 있으면 하라’며 피고인 목현태로부터 지침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오신타는 2024. 12. 3. 22:46경 전화로 피고인 목현태로부터 ‘비상소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서울경찰청에 분위기를 알아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구체적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신타는 서울경찰청 쪽에 ‘전원 근무라는 지시가 퇴근한 인원을 포함한 근무인지’를 확인하였고 ‘퇴근한 직원까지 전원 다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오신타 네 대장님 경비계장입니다.

목현태 응, 그 전체 비상소집은 안 해도 될 분위기인가?

오신타 예, 그 아직은 비상소집을 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서.

목현태 응.

오신타 네 그건 일단 잠기 하고 있고, 지금 있는 국2 지금 당직대는 전원 집합해서 교양하고, 전원 다 문으로 배치해서 근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현태 응응. 그 부대장 전화하고.

오신타 네 다 연락 했습니다.

목현태 음, 비상소집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느낌에.

오신타 네. 이걸 한 번 서울경찰청에서 지침을 줄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에 이야기는 해봤습니다.

목현태 어, 외부에 그래, (청취불가) 할 정도면, 비상소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내가 출발하

면서 계속 생각해볼 테니까 한 번 서울경찰청하고 계속 알아봐요 분위기를.

오신타 예 알겠습니다.

목현태 응응.

피고인 목현태는 22:50경 오신탉에게 서울경찰청이 배치한 5개 기동대가 국회 외곽 출입문을 잘 지키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라고 확인하였는데, 오신탉으로부터 ‘서울경찰청에서 모든 사람들을 차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 국회를 보호하라는 목적이 아니고?’라고 당황하며 되물었고, 이에 오신탉은 ‘예,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CCTV 보면 지금 벌써부터 밖에서 국회로 들어오는 걸 막고 있습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목현태는 오신탉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정성채에게 서울경찰청의 최초 지시 내용 및 국회 출입 차단 지시의 주체, 지시 시각을 재확인하였는데, 이에 정성채는 피고인 목현태에게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를 차단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음’, ‘영등포경찰서에서 기동대 차량으로 국회 각 출입문을 차단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고 있음’, ‘국회의장 우원식(604)이 국회 3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에게는 출입문을 개방해 줄 계획임’ 등을 보고하였는바, 구체적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현태 어.

오신탉 네 경비계장입니다.

목현태 그래, 그 5개 기동대로 각 문을 지금 다 지금 지키고 있잖아 그지?

오신탉 네. 문별로 지금 네, (청취불가) 지금 배치해놨습니다.

목현태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

오신탉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저기 거100에서 국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차단하라고 170 하

고 저희에게 종시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목현태 와 씨.

오신탉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AEI 계장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알아봐달라고 우리는 지금 이거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목현태 응.

오신탉 국집으로 들어오는 거를 전원 차단을 해야 되는데.

목현태 응응.

오신탉 국집에서는 지금, 사무처에서는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빨리 알아봐 달라고 전달을 해놨습니다.

목현태 어디에 종시를 받았다고?

오신탉 지금 거100에서, 지금 방30이 종시했습니다.

목현대 그래?

오신탉 예.

목현대 그러면 국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

오신탉 예. 일단 그렇게 종시했습니다.

목현대 애초에 국회를 보호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오신탉 예, 예. 그래서 지금, 밖에서부터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CCTV 보면 지금 지금 거의 지금 영등포170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막고 있습니다. 국집으로 들어오는 걸.

목현대 국집으로 들어오는 걸 다 막고 있다고?

오신탉 네.

목현대 와.

오신탉 지금 막으라는 종시가 있었기 때문에 막고 있습니다.

목현대 그러면 지금 지침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이가. 누군가 위에.

오신탉 지금 사무처 다시 통화해보겠습니다.

목현대 사무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저기, 거100에 정확하게 지침을 준 사람이 방30이라?

오신탉 네, 방30이 무전을 쳤는데, 지금 CCTV 보면은 지금 기동대가 지금 문에다가 차벽 설치하고 지금 인벽 설치하고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목현대 그러면 최초에 2제대장 옆에 있나?

오신탉 네, 2제대장 옆에 있습니다.

목현대 바꿔봐

오신탉 네, 통화 중인데.

정성채 네 대장님.

목현대 어. 여보세요.

정성채 네 말씀하십시오.

목현대 어, 최초에 몇 시경에 누가, 최초에 어떤 지시를 했어? 국회를 막으라고 했어?

정성채 예, 거100에서 종시가 내려왔습니다.

목현대 어.

정성채 거100에서 무전 종시가 내려와서요. 각 문 들어오는 것부터 사람까지 다 차단하라고 종시가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목현대 차단하라, 처음부터 그렇게 내려왔어?

정성채 네네, 다 문 폐문조치 하라고 내려왔고요.

목현대 어

정성채 170에서도 무전이 날아왔는데, 170에서는 지금 기대마로 해서 각 문을 다 차벽을 치고 있습니다.

목현대 어, 그래? 애초부터 그러면 차단하라 이렇게 내려왔다?

정성채 아 일단 경력만 보냈고요. 조금 뒤에 차단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목현대 그게 대략 몇 시야?

정성채 한 5분 전입니다.

목현대 지금 5분 전에?

정성채 예예 그렇습니다.

목현대 처음에는 경력을 이렇게 배치한다. 국회를

정성채 경력을 배치하고요, 저희 경력 전부다 사오하라고 했고요.
 목현태 사오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오는 사람을 차단하라는 말은 안 했고.
 정성채 그때는 안 했고요. 한 그 2, 3분 뒤에 부3이, 부3이 전부다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목현태 국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차단하라?
 정성채 예, 사람과 차도 다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목현태 그게 정확하게 5분 전이야 대략?
 정성채 시간은 5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에서도 그 종시를 받고 차벽을 치고 있고요.
 목현태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알겠네.
 정성채 그래서 604가 지금 3문으로 들어온다고 해서요.
 목현태 어.
 정성채 604는 열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현태 오케이. 응응.

한편 국회의장 우원식과 국회경비대 의장경호대장 김성록은 22:54경 국회 3문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3문은 \$@기동대가 차벽으로 통제하고 있어 차량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별도의 출입 가능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성록은 즉시 국회경비대 경호기획관 황충연에게 전화하여 ‘문이 막혀 있다.’고 이야기하여, 황충연으로부터 ‘지금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무렵 국회의장 공보수석 박태서가 김성록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물었고, 김성록이 ‘지금 3문에 도착했는데 차가 막혀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박태서는 ‘의장님 내리시면 안 된다, 노출되면 안 된다, 안전하게 모시고 들어와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김성록은 국회경비대 측과의 연락을 중단하고 22:58경 국회 3문과 4문 사이 국회 식물원이 위치한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로 이동해 그곳의 격자무늬 철문을 월담해 먼저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곧이어 국회의장 우원식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국회 경내로 진입하도록 하였다. 이후 우원식은 국회의장실로 이동하였다.

당시 김성록이 촬영한 우원식의 월담 모습 사진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9기록 282번).



한편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회 3문에 도착하여 대기 중이라는 보고를 접한 피고인 목현태는 22:55경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박주현으로부터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 국회의장 우원식 또한 차단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목현태는 22:58경 국회경비대 경비계장 오신타에게 전화하여 ‘의장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일단은 차단을 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침을 받고 입장시키라는 말씀이거든’,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일단 지침을 준다고 하니까, 의장님도 잠시 대기를 시켜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라고 하면서 국회경비대 전원의 소집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오신타는 23:01경 국회경비대 대원들을 상대로 비상동보를 발령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 의장 우원식은 22:58경 국회 3문과 4문 사이에 위치한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한 상황 이었다.

오신타 네, 경비계장입니다.
목현태 어어, 의장님이 지금 도착했나 어떻게 됐나.
오신타 의장님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목현태 의장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일단은 검단을 하라는 이야기고.
오신타크 네네 맞습니다.
목현태 그 다음에 지침을 받고 입장시키라는 말씀이거든.
오신타크 네네. 지금 밖에서 다 막고 있습니다.
목현태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일단 지침을 준다고 하니까, 의장님도 잠시 대기를 시켜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오신타크 네네.
목현태 그 다음에 국회경비대 전원 소집시켜 그냥.
오신타크 네 알겠습니다. 전원 소집시키겠습니다.
목현태 응응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 국회경비대 행정과 경무계장 송민주, 경무계 소속 AEK은 퇴근 후 국회의사당 인근 상호명 'AEL'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2024. 12. 3. 23:01경 내지 23:05경 국회경비대원들을 상대로 발령된 비상동보를 확인하고 23:20경 식사 결제를 마친 후 국회의사당으로 복귀하였다.

한편 그 무렵은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를 받은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이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각 5개 기동대장, 국회경비대 부대장(정성채)에게, 23:07경 국회의원 출입 허용 지시를, 23:15경 국회 직원 등 국회출입증 소지자의 출입 허용 지시를 각 전파하고, 피고인 김봉식이 다시 한 번 직접 23:21경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 직원 등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인원들의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한 상황이었다. 위 지시에 따라 경비 2제대장 정성채는 근무 중인 국회경비대 2제대원들에게 23:14경 국회의원 출입 허용 지시를, 23:24경 국회출입증 소지자 출입 허용 지시를 각 하달하였다.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당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이 허용된 상황이라는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는 23:15경 피고인 목현태(아직 외부에서 국회경비대로 복귀하기 전이었다)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들도 막는 거예요?’라고 따졌고 이에 피고인 목현태는 ‘현재 안에 있는 사람은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밖에서 들어오는 사

람은 차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라며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차단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김민기는 ‘아니,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국회 들어오는 의원님들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막을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며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통제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임정주는 이 법정에서 “당시 ‘서울경찰청에서 소속 6개 기동대를 국회 1 내지 7문에 각 배치하고 22:47경 국회 출입을 차단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서울경찰청에서 23:07경, 23:15경, 23:21경 3회에 걸쳐 국회의원과 국회출입증 소지자 등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도록 한 사실 역시 보고받거나 그 경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12. 4. 국회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다. 제가 23:01경부터 23:09경 사이에 3차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과 통화하기는 했는데,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목현태는 23:23경 1문에 나가 있는 경비계장 오신탉과 통화하면서 국회경비대 상황실로 출근하였고, 오신탉 또한 국회 1문에서 상황실로 복귀하였다. 당시 피고인 목현태와 오신탉의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목현태,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 2제대장 정성채, 경비계장 오신탉 등은 23:31경 국회경비대 상황실 내부에서 당시 각 문 상황에 대한 회의를 3분간 진행하였는데, 정성채는 위 회의 종료 후 국회 1문으로 이동하였다.

오신탉 네 경비계장입니다.

목현태 어, 국회경비대장, 아니 그 저기 뭐야, 의원님들 중에 일부가 들어오신 분이 계시나?

오신탉 지금 여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확인이 힘들고.

목현태 아니, 들어온 사람이. 들여보내고 있냐고.

오신탉 지금 일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현태 야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오신탉 안 된다고 했는데, 벌써 직원들 막기 전에 1문에 지금 보좌관들하고 국회 직원들이 거의 1문

을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서 대치중에 있습니다.
 목현태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오신타크 지금 그래서 그냥 대치하고 있습니다.
 목현태 아니 그래 1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오신타크 1문은 기본적으로 경력이 일부는 깔려 있는데, 대치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와서 뒤에서 대기하고. 네. 앞에서는 신분확인하면서 들여보내고 있긴 한데.
 목현태 들여보내고 있다고?
 오신타크 신분 확인된 사람만 들여보내곤 있습니다.
 목현태 아니, 들여보내지.
 오신타크 명1 종시사항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은 들여보내라고 명1 직접 무전종시하였습니다.
 목현태 그래?
 오신타크 네네.
 목현태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일단 의장님은 들어오셨어?
 오신타크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지금 1문에 나와 있어서.
 목현태 (청취불가) 해봐, 일단 (청취불가) 해봐
 오신타크 네 알겠습니다.

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은 2024. 12. 3. 22:35경 내지 22:40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국장 피고인 윤승영, 수사기획과장 전창훈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로 밤 12시에 국관회의가 개최된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윤승영, 전창훈은 위 전화를 받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로 이동하던 도중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계 사건조정담당 경감 정한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2. 3. 23:06경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단 업무를 할 수 있는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 23:10경 및 23:22경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계장 박현준에게 전화하여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계엄이 선포가 되었으니 인력 등 업무 협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와 연락을 하고 싶으니, 그 연

략처를 알려달라고 한다.’, ‘인력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업무가 누구 담당인지 알려달라고 한다.’, ‘누구 연락처를 주어야 합니까?’라고 물었는데, 이에 박현준은 ‘국수본 전체 업무 총괄은 수사기획계의 업무이니 수사기획계장(이현일)을 알려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전화 한 사람의 계급이 뭐냐?’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정한글이 재차 ‘과장이니까 중령급이다’라 이야기하자 박현준은 ‘경정급 정도 알려주면 되겠지 않겠냐?’고 답변하였다.

박현준은 23:22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에게 전화하여 ‘방첩사령부에서 국가수사본부 인력총괄부서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연락처를 줘도 되는지 확인한 후, 23:25경 정한글에게 메신저(카카오톡)로 이현일의 직함과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하였고, 정한글은 위 내용을 구민회에게 전달하였다.

이현일은 국가수사본부 사무실로 복귀하던 도중인 2024. 12. 3. 23:32경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로부터 전화를 받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방첩사에)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었는데, 해당 인원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명단을 알려 달라. 호송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복귀 후 23:36경 전창훈에게 ‘방첩사령부에서 연락이 왔다.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하니 경찰에서 수사 인력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보고하였다. 전창훈과 이현일은 23:49경 내지 23:50경 피고인 윤승영에게 방첩사령부의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하였다.

전창훈은 23:27경, 피고인 윤승영은 23:29경, 이현일은 23:36경 차례로 수사기획과 사무실이 있는 경찰청 북관7층에 도착하여 사무실에 복귀하였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는 2024. 12. 3. 당시 국가수사본부 업무 출장으로 제주도에 있었는데,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한 후 22:56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 전창훈에게 전화하여 ‘북한이 침공이라도 한 거냐?’라는 등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에 대해 물었고, 전창훈은 본인도 자세히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우종수는 23:06경 다시 전창훈에게 전화하여 ‘지금 비행기가 없어서 올라갈 방법이 없다. 내일 첫 비행기로 올라갈 테니, 다른 간부들에게 상황 잘 전파해서 잘 대응하고 보고 하라’고 당부하였다. 우종수는 12. 4. 00:38경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첩사 수사 인력 요청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바) 경기남부경찰청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은 2024. 12. 3. 22:41경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너희 관내에 선관위 두 개가 있는 모양인데, 방첩사에서도 거기를 가는 것 같으니까 너희도 가봐라’, ‘평상시 하던 대로 우발 대비해라’, ‘들어가는 사람은 통제하고 나오는 사람은 내보내서 선관위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다.

경찰청 경비과장 신종묵은 수사기관에서 “2024. 12. 4. 00:00경 국관회의 개최 이전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경기남부에도 2군데 경력 배치를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2024. 12. 3. 23:49경부터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박규남에게 전화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조지호 또한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종묵의 위 진술이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김준영은 2024. 12. 3. 22:44경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박규남과 통화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바깥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시설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박규남은 2024. 12. 3. 22:52~22:53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및 선거연

수원을 관할하는 수원서부경찰서장 김재광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김준영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김준영은 23:26경 문진영에게, 23:28경 김재광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현장에서 지휘를 하도록 지시한 뒤, 박규남에게 ‘과천경찰서와 수원서부경찰서에 기동대를 추가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경비과장 박규남은 경기남부경찰청 상황팀장 한상구, 경비계장 박종석에게 다목적 당직팀(4기동대 2제대), 7기동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2기동대를 선거연수원에 각각 출동시키도록 지시하였다.

4) 군

가) 정보사령부

(1) 정보사령부 선발대 10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진입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대국민담화가 진행 중이던 2024. 12. 3. 22:25경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에게 전화하여 ‘선관위 지금 상황이 어떤가?’라고 물었고, 이에 고동희가 ‘지금 들어갈까요?’라고 말하자 ‘담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면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그 무렵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속보 나온 것 봤냐? 확인했냐? 확인했으면 어차피 상부 명령이니까 투입해라’고 말하였다. 문상호는 22:30경 재차 고동희에게 전화해 ‘지금 들어가면 된다.’, ‘부대원들과 함께 선관위 청사 안으로 바로 진입해라’며 고동희 및 인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진입을 지시하였고, 위 문상호의 지시에 따라 고동희 등 10인은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하였는데, 진입 당시 권총은 개인이 휴대하되 실탄은 차량에 보관한 상태였고, 진입 후 인원 중 2명 (김태용형, 이민형)이 정문 경비실을 확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일부 인원은 전산실로 이동해 전산실을 확보하였다.

위 진입 과정에서 정보사 인원(김지웅)은 정문 및 1층 당직실을 통제하고(당직실 유선 전화선을 뽑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였는데, 당시 당직실에는 당직근무자 ACC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야간근무자가 존재하는지를 수색하였는데, 지하 1층 기계실에서 AEN를 발견해 1층 당직실로 이동시킨 후 AEN가 소지한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여 특정 지점에 보관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AEN가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묻자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이곳으로 출동을 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AEN가 ‘그러면 저희 쪽에서도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자 ‘그것은 좀 제한이 됩니다.’라며 보고를 저지하였다. 이후 다른 인원이 신관 2층 전산실 통합관제실과 서버실에서 서버를 관리하던 민간 업체 직원 AEO와 RF를 발견하였는데, 이들에게도 ‘휴대전화 전원 오프해서 이쪽으로 주세요.’, ‘이쪽으로 여기다가 두세요.’라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해 이를 제출받았다.

RF는 이 법정에서 ‘(근무 중 들어온 계엄군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해) 많이 당황스러웠고, 따로 강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충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협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서버실을 확보한 고동희는 문상호로부터 ‘서버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서버실 내부를 촬영해서 보내 달라’는 지시에 따라 다른 인원(김성호)과 함께 통합 선거인명부 서버, 스토리지 서버 등을 촬영해 이를 문상호에게 전송하였고, 이후 서버실 통합관제실에 인원을 배치해 서버실 출입을 통제하였다. 한편 고동희는 함께 진입한 팀원 유병욱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직원 자리에서 발견한 조직도 사진을 보고받은 후 문상호에게 전화해 ‘조직도를 보니까 아까 준 명단(청사 안으로 들여보내기로 한 전산실 직원 5명 명단)과 상이합니다. 인원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확인하였

고, 이에 문상호는 ‘그냥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임무 수행해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노상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보사령관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방첩사에서 1개 팀이 갈 것이니까 방첩사에 인계하고 철수해라. 정성우에게 연락해봐라’고 말하면서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문상호는 2024. 12. 3. 22:48 경 내지 22:49경 사이 정성우와 통화하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직원 연락처를 보낼게’, ‘현장지휘관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라며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었다.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의 지시에 따라 과천경찰서장 문진영이 보낸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이 23:06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해 고동희에게 ‘1개 중대 정도 경력이 후속으로 올 것이다’라고 안내하였고, 이른바 ‘1지대’⁵⁶⁾ 경계 및 방호임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과천경찰서 소속 약 90여명 가량 1개 중대 수준의 경력이 23:09경 도착하였다.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 소속 편의대가 2024. 12. 4. 00:16경 사복 차림으로 도착해 고동희에게 ‘3공수에서 왔다. 앞으로 더 올 건데 2~3지대 방호를 하러 왔다.’고 말하였고, 이에 고동희는 위 사실을 문상호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는데, 문상호로부터 ‘방첩사에서도 올 테니 방첩사에서 오면 서버실 인계하고 복귀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하는 방첩사 정성우 준장의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0:40경부터 01:08경 사이 11특전대대장 이경종을 포함한 138명가량의 대대급 병력이 도착하여, 그중 52명이 청사 내부에서 현장 통제 임무를 수행하였다.

56) 이른바 3지대 방호개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1지대는 주요시설물의 외곽 울타리 등 적의 접근을 감지할 수 있는 저명한 지 형지물 등을, 2지대는 주요시설물의 내부 울타리 등 말 그대로 울타리를, 3지대는 울타리 내부의 주요 건물 등 핵심시설을 의미한다.

한편 고동희는 2024. 12. 3. 23:06경부터 23:40경 사이 선거관리위원회 비상계획관 AEP, 선거정책실장 AEQ, 시설과장 AER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차례로 도착해 청사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모두 차단하였다. 비상계획관 AEP의 경우 문상호에게 보고하였으나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아 계속 통제하였고, 선거정책실장 AEQ의 경우 정보사 인원으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아 출입을 통제한 후 이를 문상호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시설과장 AER이 도착해 재차 비상계획관 AEP와 함께 재진입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AEP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국가기간통신망을 확인해서 우리 선관위로 지시된 임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문상호에게 보고하였으나 문상호로부터 재차 통제를 지시받자 문상호에게 ‘이거 계속 통제시키면 안 된다’, ‘여기서 출입을 시켜서 그거 확인하게 해줘도 큰 문제 안 될 것 같다.’는 취지로 건의했고, 시설과장과 비상계획관을 들어오게 했다. 이들은 같은 날 23:40경 즈음 청사에 들어와 관련 업무를 확인하였다. 당시 소령 유병욱이 위 2인과 함께 비상상황실에서 긴급전문 수신 여부를 확인한 후 별도로 수신된 전문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데, 이후 시설과장 AER은 귀가하였고 비상계획관 AEP는 당직실로 이동해 대기하였다.

고동희는 이 법정에서 “선관위 서버실을 확보한 이후 경찰과 군인이 와서 함께 임무수행을 하였는데, 그때 정보사 단독임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경찰과 군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문상호에게 보고하니 ‘방첩사에서도 올 것이니 서버실 인계하고 철수해라.’는 지시를 받았다. 저희 작전과장(서지윤)이 경찰과 특전사에게 임무를 확인했는데, 경찰 같은 경우 1지대 경계 1지대 방호 임무를, 특전사의 경우 2~3지대 방호 임무를 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경찰이 중앙선관위 전체 담 밖의 경계를 맡고, 특전사는 담 안과 청사 인근에 대한 경계를 맡는다는 취지였다. 당시 선관위 비

상계획관과 시설과장 등을 들여보내 관련 업무 확인을 시킨 시기는 아마 특전사 선발대 인원들이 온 이후 본대가 도착하기 전이었던 것 같다. 방첩사 부대원들이 중앙선관위 현장에 오는 것은 보지 못했다. 문상호로부터 정성우의 연락처를 받기는 했으나 따로 연락해 보지 않았다. 2024. 12. 4. 01:30경 철수를 했다. 당직실에 있는 TV를 통해서 01:03경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았다. 이후 문상호에게 철수 여부를 문자로 문상호가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01:30경 철수 지시를 해서 철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정보사령부 요원 36명의 판교 소재 100여단 집합과 대기 및 물품 확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판교 소재 100여단에 있었는데, 위 비상 계엄이 선포되자 22:27경 대회의실에 김봉규, 정성욱 및 요원 36명을 집합하게 한 후, 위 인원들에게 ‘우리는 장관님 지시에 따라 상부명령을 받았다.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해라’며 ‘구체적인 임무는 김봉규, 정성욱 대령이 분배해라’고 말하였고, ‘2024. 12. 4. 06:30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김봉규, 정성욱은 각자 자신의 인원들을 데리고 관련 임무를 설명하였다. 한편, 구삼희 또는 방정환이 누군가와 통화한 후 문상호에게 ‘합동수사본부라고 합니다. 제2수사단입니다.’라고 명칭을 보고하였고, 문상호의 지시에 따라 정성욱은 미리 준비한 관광명찰에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이라고 출력한 종이를 넣었고, 이후 위 인원들에게 목걸이 명찰이 배부되었다.

김봉규는 자신의 조로 편성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각 조별 단위로 임무를 하달하였는데, HK 중령 포함 3명으로 이루어진 조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회의실 확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 확보 임무를, AES 중령 포함 3명으로 이루어진 조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부서로 가서 홈페이지에 양심제보 안내 공고를

올릴 것과 일반전화 3개 회선을 개설해 양심제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임무를, AET 중령 포함 3명으로 이루어진 조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실을 통해 내부 방 송으로 계엄 상황을 전파하고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임무를, 이 외 신준 호 소령을 포함한 특임수행요원 3명에게는 피고인 노상원을 다음 날 오전 이른 시간 모 시고 올 것 및 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하여 현지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피고 인 노상원 옆에서 이를 보조해주고 심문 상대가 위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임무를 각 하달하였다. 김봉규는 신준호에게 수사단장이라며 피고인 노상원의 연락처와 피고인 노상원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이에 신준호는 위 전화번호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면 서 이름을 ‘수사단장’이라고 저장하였다.

정성욱은 자신의 조로 편성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임무를 하달하였는데, 선거관리위 원회 직원 30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해당 인원은 부정선거 관련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024. 12. 4. 05:00경에 출동하여 05:40경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명단에 오른 직원들 이 신분 증 찍으면 이름을 확인하고, 그 명단의 인원들을 회의실로 데려다 놔라’고 지시하였고, 이 에 요원 중 1인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는 질문을 받자, 준비해 두었던 케이블타이, 신발주머니, 안대 등 장비를 보여주며 ‘두 사 람이 양쪽에서 팔을 끼고 회의실에 데려다 놔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두 명씩 화이트보드 에 조를 편성해 메모를 작성하고 대기하였는데, 대기하던 중 요원들이 ‘두건 및 케이블타 이 등은 잘 끊어지거나 찢어져 사용하면 안 될 것 같다.’, ‘인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두건 및 케이블타이 등은 사용하지 말고 안대를 사용하라 고 다시 지시하였다.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문상호가 저와 정성욱 대령에게 ‘구체적인 준비된 임무를 지시 하라.’고 해서 제게 소속된 인원들을 모아 지시를 하였다. 지시 과정에서 문상호가 제 비 화폰으로 선관위 조직도 사진을 보내왔는데, 임무 문건에서 정해둔 확보 대상자와는 2~3 명 빼고는 모두 달라 추후 선관위로 출동해서 인사부서에 가서 조직도를 가져와 명단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저는 제 인원들을 4개조로 나누어, 수방사 B1병커로 이동해서 선관 위 직원들을 수용하고 취조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방송실로 가서 협조 요청 및 협 조하지 않을 시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부방송 송출, 선관위 전체 직원 명단 및 회 의실을 확보, 선관위 전산실로 가서 홈페이지에 부정선고 관련 양심고백 촉구하는 공지 게시 등의 임무를 각 부여하였다. 저희의 주된 역할은 정성욱 조에서 확보한 인원들을 수 방사 B1병커로 이송하는 역할이라 이해했다. 행정을 담당할 인원 2명도 선정했다. 수사단 단장(구삼회)과 부단장(방정환)을 보좌해서 일일상황을 요약해서 보고할 수 있게 준비하라 는 임무를 부여했고, 그 중 1명에게는 ‘12. 4. 아침에 노상원 전 사령관을 중앙선관위로 픽업해서 데리고 오라’는 임무도 부여했다. 피고인 노상원이 편의상 자신을 ‘단장’으로 부 르라고 했지만, 노태약 관련 역할을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했었다. 한편, 구삼회와 방정 환이 당시 와 있기는 했지만 별도로 임무 지시를 하거나 받은 적은 없다. 그냥 문상호로 부터 ‘본인들이 단장, 부단장 직을 수행할 것이다.’는 정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다. 저와 정 대령이 각자 임무 부여를 하고 차량 준비 등을 마친 시기가 12. 3. 24:00경 자정 직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부터는 대기를 하였다. 저는 정성욱 대령 방에 같이 있었고, 계속 TV만 시청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문상호가 전부 소집을 하더니 ‘중대방송이 있을 테니 방송을 보 고나서 다시 소집하겠다.’는 취지로 대기 지시하여 일단 대기하였다가, 계엄 선포 방송이 있고

나서 문상호가 다시 전부 소집을 하여 ‘대통령의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합법이다, 합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 가서 임무 수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문상호가 그와 같이 말한 후 저하고 김봉규에게 ‘각 팀별로 데리고 와서 설명해줘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저는 제 인원들을 3층 회의실에 소집해서 임무를 말했다. 인원 명단 불러주고 ‘아침에 해당 인원이 출근하면 신분증으로 이름 확인하고 회의실로 데려다 놓으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케이블타이로 묶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일부 인원이 ‘케이블타이는 잘 끊어져서 사용하기 어렵다’, ‘나중에 인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케이블타이는 쓰지 않기로 지시했고, 그와 별도로 ‘야구방망이로 때리면 안 된다. 소리 내는 용도로만 사용해라, 신발 주머니를 복면으로 쓰게 하면 안 된다. 안대로 해라.’는 설명 정도만 했다. 당시 제가 ‘체포’라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무렵 문상호 사령관이 선관위 조직도 사진이 촬영된 비화폰을 제게 보여주었는데, 2, 3명 정도 외에는 임무 문건에 기재된 이름과 모두 달랐다. 문상호가 제게 기존 30명 외에 5명 정도의 이름을 추가로 불러주면서 ‘이 사람들도 추가하라.’고 말하였다. 당시 김봉규도 자신에게 소속된 인원들을 모아 1층 소회의실에서 별도로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확보한 고동희 등 인원들로부터 ‘경찰과 특전사가 왔다.’는 보고를 받자, 이에 따라 100여단에 있는 정보사 요원 36명 등에게 ‘다른 부대 다른 기관 다 임무 받아서 지금 투입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나) 방첩사령부

(1)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12. 3. 22:27경 사령관 집무실에서 1처장 정성우, 참모장

이경민,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와 함께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및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시정한 후 ‘아이씨, 빨리 내려가자’며 집무실에 위치한 인원들과 함께 방첩사령부 지하2층 위기관리센터 내부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참모장 이경민에게 ‘영외 거주자 소집을 해라. 부대 방호 태세 격상하라, 요인 신변 경호 강화하라’, ‘일단 전 부대원 비상소집을 해라’, 정성우와 김대우에게 ‘임무가 떨어지면 잘 수행해라’는 취지로 각 지시하였다. 한편 방첩사령부 지하2층에 위치한 위기관리센터 내부 회의실은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인원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이에 따라 문이 개방될 때까지 같은 날 22:30경부터 몇 분간 회의실 문 밖에서 대기하였다. 참모장 이경민은 22:32경 방첩사령부 868경호경비부대장 양승철에게 전화하여 신변보호팀 소집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양승철은 868경호대장 최승리에게 인원소집을 지시하며 마찬가지로 군수담당관에게 고무탄총과 가스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는 22:36경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희에게 전화하여 ‘전 부대원을 사령부로 소집하라’며 서울, 과천, 대전, 부산에 소재한 각 방첩수사단 예하 수사관 약 150명 내지 160명의 방첩사령부 소집을 지시하면서, ‘흑복⁵⁷⁾을 입은 상태로 수갑, 포승줄 등 장비가 패키지화된 가방인 수사장비세트를 소지한 채 집합할 것’을 지시하였고, 구민희는 위 소집 지시를 방첩수사단 인원들에게 전파하였다. 김대우의 소집 지시를 전파받은 방첩수사단 군사기밀수사과장 ZH은 22:53경 메신저(카카오톡)를 이용해 군사기밀수사과 1팀장 김보현, 2팀장 신동걸에게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군사기밀수사과 과원 전원의 출근을 지시하며 ‘부서원 전원 출근하도록 전파하고, 각 팀별로 모두 제대로 전달받았는지 확인하라’라고 지시하였고, 23:04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복장 전원 임무복(흑복)’이라고 전송해 흑복 착용을 지시하였으며, 위 메시지를 받은 김보현,

57)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2024. 3. 1.경 지시하여 방첩수사단 수사관들에게 지급된 복장으로 경호업무, 군무원의 당직업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업무 시 착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복장이다.

신동걸은 각 소속 팀원들에게 전화하여 흑복을 착용한 상태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

(2) 한편 피고인 김용현이 주재한 주요지휘관회의가 같은 날 22:32경 개최되었는데, 여인형은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철진으로부터 화상원격회의 참석을 독촉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문이 개방된 이후에도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와 달리 방첩사령부는 평시 합동참모본부 회의실과 망이 상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연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피고인 김용현이 주재한 화상원격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에 파견된 방첩부대원이 방첩사령부 주요직위자 단체 비화폰 대화방에 거의 실시간으로 ‘첫 번째, 비상계엄은 대통령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선포한 것이다.’, ‘두 번째, 현 시간부로 장관이 지시한다.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진다.’, ‘세 번째, 어떠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전달해 피고인 김용현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지시사항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해당 지시사항은 여인형, 이경민, 정성우, 김대우에게 공유되었다.

(3) 여인형은 22:44경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수사관 100명을 방첩사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박헌수로부터 ‘확인해 볼게’라는 답변을 들었다. 여인형은 22:46경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홍장원이 ‘어떻게 된 거냐, 비상계엄’이라고 묻자 ‘저희들도 모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여인형은 22:45~50경 방첩사령부 지하 2층에 위치한 위기관리센터 내부 회의실에 들어갔다.

이즈음 여인형은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해 ‘안보수사요원(또는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우리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 달라’며 체포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인형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위치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정성우는 22:48~49경 정보사령관 문상호로부터 전화를 받아 ‘과천 중앙선관위 현장 직원 연락처를 보낸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문상호로부터 ‘현장지휘관 고동희’로 표시된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수신하였다. 정성우는 여인형에게 ‘사령관님, 문상호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전화 왔습니다. 과천 선관위 현장 지휘관 전화번호를 보낸답니다.’라고 보고하자 여인형은 ‘걔 또 뭐냐? 뒤에 번호, 전화번호가 뭐야?’라 되물은 후 ‘노상원 장군한테 전화해 봐’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정성우는 22:50경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화해 ‘(여인형) 사령관님께서 연락을 하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노상원이 ‘그래, 너희 출발했냐?’고 말하였고, 정성우가 ‘우리 영외 거주자 소집된 상황입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노상원은 ‘출발하면 전화해라’, ‘너희들 뭐 현장지휘관 전화번호 갖고 있냐?’라고 말하여 정성우는 ‘정보사령관(문상호)이 보내준 게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5) 여인형은 1처장 정성우에게 ‘전산팀을 꾸려라, 정보보호부대 포렌식센터(센터장 송제영), 과학 수사센터를 포함해서 전산팀을 꾸려라. 868경호경비부대는 네(1처장 정성우)가 통제해서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며 ‘선관위 4곳(과천, 관악,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수원 선거연수원)에 가서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확보해라. 그리고 있으면 민간 수사기관(경찰)에 넘겨주되, 상황이 변해서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카피해라. 서버 카피가 안 되면 떼어 와라’, ‘경찰이 거기 주변을 통제할 거야’, ‘현재 상황은 대통령님과 장관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며 선관위 4곳의 서버실 확보 및 서버 복사 등의 임무를 지시하였다.

(6) 여인형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내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 경찰수사관 100명

을 요청했으니 빨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해라'고 말한 후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이 왔다, 명단을 받아 적어라'고 하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조국, 양경수, 양정철, 이학영,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정청래'의 이름을 호명하였고, 이후 '이 인원들을 어디가 좋을까, 수방사 B1병커가 좋겠다. 일단 그쪽으로 잡아서 이송시켜라. 이송시키는 임무다.'라고 지시하였는데, 당시 김대우가 '이 14명에 대한 혐의가 뭐냐'고 묻자 여인형은 '혐의는 나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여인형은 또 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에게 '지금 수방사 B1병커로 가서 한 50명 정도 구금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라'고 지시하였다.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관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10여명 등 사람들에게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장관님께 물어봤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찌란 소립니까'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러면 경찰과 협조를 해보든지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분명히 '잡으라.'는 취지였다.", "10여 명단 중에 대부분 국회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 명단 자세히 보시면 절반은 국회에 없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국회로 병력을 출동하라고 지시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명단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다 여의도 근처에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장관이 그렇게 지시하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국회로 가라'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한편 여인형은 참모장 이경민에게 '포고령 공고 됐냐?'고 확인하였는데, 이에 이경민이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포고령 공고되면 바로 보고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여인형은 23:10~20경 5층 회의실에서 방첩사 주요지휘관들을 모아 약 10분간 회의를 하였고('작계대로 하라'는 것 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이

사건 포고령을 확인하고 주요지휘관들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1처장 정성우에게 ‘집무실로 돌아가 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8) 정성우는 23:32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출발했느냐?’고 묻는 전화를 받고 ‘지금 우리 인원들 다 들어오고 있다’, ‘왜 그러시느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노상원은 ‘아니다. 알았다’라며 통화를 마쳤다.

정성우는 여인형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보안실장 등 팀장급 4명을 자신의 집무실로 모으면서 다른 인원들도 불렀는데, 정성우 본인과 위 인원들, 868경호경비부대장 양승철 등을 포함해 9명이 2024. 12. 3. 23:50경 정성우의 집무실에 모였다. 정성우 등은 약 40분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가 적법한지, 기술적으로 방첩사 요원들이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어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등에 대해 토의하였고, 법무실에도 문의하였다. 이들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정성우는 여인형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해 말했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였다. 정성우는 ‘일단 출발을 시키라’는 여인형의 지시를 받고 2024. 12. 4. 00:30경 출동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00:59경부터 01:43경까지 순차적으로 네 개의 팀 합계 115명의 방첩사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 네 곳으로 나누어 출동하였다. 정성우는 팀별로 1개씩 가스총 3개와 고무탄총 1개를 나누어 소지하도록 하면서 그 외 포렌식 장비 등 별도의 장비는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였다. 정성우는 팀원들을 출동시킨 이후에도 팀장들과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도착하더라도 일단 들어가지 말고 대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정성우는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언제 출발하냐?’는 재촉 전화를 받았다.

정성우는 이 법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 지하 2층 위기관리상황실로 내려갔는데 문이 안 열리고 해서 바로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인형 사령관은 계속 전

화 통화를 하느라고 복도에서 서성였다. 문이 열리고 들어간 시간이 대략 22:45 내지 22:50경인 것 같다. 22:49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보사령관 문상호로부터 전화가 와서 ‘과천 중앙선관위 현장 직원 연락처를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 즉시 여인형 사령관한테 이를 전달하니, 여인형이 ‘걔 또 뭐냐? 전화번호가 뭐야?’, ‘노상원 장군한테 전화해 봐’라고 말했다. 그래서 22:50경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다. 당시 저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알고 있었는데, 노상원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 전에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 노상원에게 ‘여인형 사령관이 연락 해보라고 해 전화 드렸다.’고 말하자 노상원이 출발 여부를 물어보아 제가 ‘영외거주자 소집된 상황’이라고 대답하자 ‘출발하면 연락해’라고 말하면서 짧게 통화가 끝났다.”, “지하에서 사령관으로부터 ‘정보보호부대 포렌식 센터를 포함해서 전산팀을 꾸리고, 868경호 경비부대는 네가 통제해서 데리고 나가라. 선관위 4곳에 가서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확보해라.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주되 여의치 않으면 서버라도 카피하고, 안 되 면 떼어 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때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전화가 빗발치고 저도 화상회의 연결 등 여러 가지 상황이어서 차분한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지시를 받았다.”, “통상 어떠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상급부대의 작전 명령(현 상황에 대한 평가, 임무 수행 이유, 적 상황, 상급부대의 지침과 의도, 명시된 과업 등)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이거 뭐야? 이거 해도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우물쭈물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숙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아직까지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왜 그때 합참이든 계엄사든 국방부에서 상황평가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또한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는 여인형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수사단장실로 이동하며 수사

조정과장 구민희에게 전화하여 ‘전체 수사관들을 소집하고,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것 같으니 경찰청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며, 이후 2024. 12. 3. 23:04경 방첩수사단 건물 3층 수사단장실에서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희, 안보수사실장 이재학에게 여인형으로부터 지시받은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한 체포조 편성 및 체포대상자를 하달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올 것이다’, ‘경찰 100명과 조사본부 100명 인원들이 다 얘기가 되어있으니 해당 인원들과 통화해서 어떻게 올지를 한 번 확인해봐라’, ‘(여인형) 사령관님께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이미 전화가 돼 있다’, ‘경찰에는 호송 차량을 협조하고, 그리고 조사본부에는 구금 시설 여부를 확인해라’, ‘방첩사 5명, 조사본부 5명, 경찰 5명, 우리 사령부에 있는 868경호대 10명해서 25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라’고 지시하였다. 김대우는 체포대상자 14명 명단인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조국, 양경수, 양정철, 이학영,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정청래’의 이름을 호명하며 ‘체육관에 수사관들 준비시켜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구민희와 이재학은 각 위 호명된 이름을 받아 적었다(구민희와 이재학이 기재한 메모는 이후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대우는 방첩수사단 건물 1층 로비에 집결한 방첩수사관들에게 ‘경찰 등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체포명단 14명을 체포하고, 방첩사는 신병을 인계받아 이송 및 구금한다.’, ‘경찰이나 조사본부, 다른 기관에서 체포를 하게 되면 해당 인원들을 인수받아서 구금시설로 이송해라’며 지시사항을 하달하였고, 5명 구성 9개조 및 4명 구성 1개조 도합 10개조를 편성한 후 각조를 1조 내지 10조라 지칭,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등이라 말하며 각조별 체포대상자들을 지정하였다.

(10) 한편 김대우로부터 지시를 받은 구민희는 2024. 12. 3. 23:05경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과 통화하여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해당 인원들에 대

한 명단과 연락처를 좀 알려 달라’, ‘구금시설 현황을 확인해야 되는데, 수도권 내에 있는 구금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 달라’고 문의하였고, 김성곤으로부터 ‘확인해 볼게, 전화 줄게’라는 답변을, 23:28경 김성곤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못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한편 구민회는 23:06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계 사건조정담당 경감 정한글과 통화하며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단 업무를 할 수 있는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문의하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경정 이현일의 연락처를 전달받았고, 23:32경 이현일과 통화하면서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었는데, 해당 인원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명단을 알려 달라. 호송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구민회는 이현일에게 ‘우리 사령부로 들어와라’, ‘근무지는 과천의 방첩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현일로부터 ‘우리는 계엄 상황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23:52경 이현일과 다시 통화하면서 수사관 지원을 재촉하고 ‘국회 쪽으로 출동을 하는데 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우니 안내를 해 줄 국가수사본부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을 지원해 달라’, ‘명단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이현일은 ‘야간에는 국가수사본부에는 근무자가 없다. 꼭 국가수사본부가 가야 되는 것이냐’는 취지로 재차 되물었는데, 이에 구민회가 ‘그냥 경찰이면 됩니다.’라고 하자 ‘그러면 국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도 되느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구민회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구민회,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은 2024. 12. 4. 00:10경 삼자간 그룹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구민회는 김성곤, 이현일에게 국회 파견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수사관 100명 및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의 지원 명단 회신을 독촉하였다. 구민회는 00:13경 이현일로부터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5명의 이름과 팀장(정일현)의 연락처가 기재된 ‘국수본 지

원인력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00:14경 다시 이현일에게 ‘추가 인원 5명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한 후 00:35경 ‘추가 부탁드립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00:40경 이현일로부터 기존에 보내준 5명에 새로 5명이 추가된 10명의 명단을 받았다. 당시 구민회가 이현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2기록 1469번).

12. 4. 00:13~14경 LK이 보낸 문자메시지	12. 4. 00:40경 LK이 보낸 문자메시지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입니다. 강력7팀장 LS 경감 전화번호 생략 경사 YP 경위 LT 경사 YR 경사 YS LS 경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입니다. 강력7팀장 LS 경감 휴대전화번호 생략 YT, YU, YP 강력4팀장 경위 LT 휴대전화번호 생략 YR, YS 강력3팀 YV, YW, YX

김대우는 이 법정에서 “방첩사는 매년마다 1년에 두 번, FS 훈련과 UFS(울지 프리덤 쉴드) 훈련 때 전시 또는 계엄 상황을 전제로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하여 계엄사범을 체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을 한다. 계엄시행계획(2급 비밀)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당연히 합동수사단이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한다. 다만 종래 합동수사본부 운영 예규에 의하면 ‘국’까지만 구성이 되고 구체적 인원은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여인형이 ‘인원수까지 실질적으로 한번 맞춰서 팀을 구성해보자’는 제안을 하여 2024. 3.경 방첩사 FS 훈련 시에는 ‘국’ 아래에 경찰, 조사본부, 방첩사 인원들을 각 2~3명씩 넣어 10~20명 단위의 하나의 팀으로 구성하여 합동수사팀 100여 개 정도를 만들어 계엄사범이나 이런 경우에 출동하는 것으로 가상 출동 훈련을 하고, 수도권 내 구금시설을 확인하는 등의 훈련도 하였다.”, “22:27경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

을 때 너무 놀라고 당황했다. 여인형 사령관은 참모장에게는 전 부대원 비상소집, 경계근무 강화, 경호 인력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하였고, 저와 정성우 처장에게는 ‘임무가 떨어지면 충실히 수행하라’는 간단한 지시를 하였다. 저는 여인형의 지시를 ‘2024. 3.경 훈련한 매뉴얼 대로 방첩사, 경찰청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으로 합동수사단을 구성할 준비를 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바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건물인 수사단 수사단장으로 이동하면서 준비 차원에서 구민회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 수사관들을 소집하라.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것 같으니 경찰청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다시 22:45경 정성우로부터 연락을 받고 22:50경 본부 지하 2층에 있는 상황실로 갔고, 그곳에서 여인형이 제게 ‘조사본부 100명, 경찰수사관 100명을 요청했으니 빨리 파견 받아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라.’, ‘다른 기관에서 오는 수사관들이 많으니 집결장소를 (수사단 건물 옆에 있는) 영내 체육관으로 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리고 제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이 왔다. 명단을 받아 적어라.’고 해서 제가 수첩에 받아 적었고, 여인형이 다시 ‘이 인원들을 어디가 좋을까’라고 하면서 ‘수방사 B1 병커가 좋겠다. 일단 그쪽으로 잡아서 이동시켜라. 이송시키는 임무다.’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였다. 14명 중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재명, 한동훈, 조국, 우원식, 김어준, 박찬대이다. 그리고 여인형이 혼잣말로 ‘내가 위치는 경찰 쪽으로 한번, 경찰 쪽으로 요청해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여인형 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불러줬지만 방첩사에서는 민간인이나 군인에 대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사령관에게 ‘14명에 대한 혐의가 무엇이나?’고 물어보았고, 여인형은 ‘혐의는 나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저는 ‘14명은 계엄사범인가 보다. 혐의는 나중에 위에서 다시 알려줄 것인가 보다. 나중에 경찰이나 조사본부 인력이 와서 합동수사단이 구

성되면, 그때 위치를 확인하는 것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다. 여인형이 분명 ‘잡아서 이송시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저는 ‘합동수사단이 구성되면 출동시켜서 계엄사범 14명을 체포하여 수방사 B1병커로 이송해라.’는 지시로 인식했다. 당시에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언론을 통해 정식으로 선포하고 이후 지시가 떨어진 것이어서 모든 절차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했다. 14명의 명단 역시 이게 비밀스럽게 우리에게만 하달된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매뉴얼에 의하면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합동수사단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에는 ‘야간이고 경황이 없어서 아마 합동수사단은 그 다음 날 오전이 지나서야 구성이 될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방첩사에는 자체 구금시설이 없어 통상 체포, 구속할 경우 수방사 구금시설(미결수용소)을 이용한다. 그래서 여인형의 지시를 받고 저는 ‘미결수용소가 있는데 왜 B1병커로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제게 불러준 명단만 14명이고, 수방사 미결수용소는 많아야 3, 4개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많은 인원을 미결수용소에 수용할 수 없으니 그 대체장소를 B1병커로 하지 않았나.’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22:50경 여인형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시를 받고 바로 방첩수사단 건물로 이동했다. 제가 이재학, 구민회에게 ‘합동수사단을 체육관에서 구성해야 한다. 지금 사령관님이 조사본부 100명, 경찰수사관 100명을 요청했다고 하니 우리 쪽 체육관으로 오도록 한번 연락을 해봐라, 그쪽에서 알고 있을 테니 아마 수사관들을 지원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이재학, 구민회에게 명단을 알려주었다. 그때 누가 ‘명단을 조사본부 쪽에도 알려주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아직 합동수사단이 완전히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은 말해주지 말라’고 하였다. 비상계엄이 끝난 후 구민회에게 ‘명단을 국수본에 알려주었느냐?’고 물었는데, ‘알려준 적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명단을

알려준 후 합동수사단 관련해 이재학, 구민회와 토의를 하였는데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868경호대 10명 총 22명 정도로 팀(체포조)을 꾸리면 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당시에는 합동수사단조차 구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4명을 어떻게 체포하여 이송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생각을 안 했다. 그런 계획은 천천히 수립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애초에는 합동수사단이 구성되면 파견된 경찰 측에 대상자 명단을 공유해서 체포하라는 임무를 맡길 생각이었다. 이후 구민회로부터 ‘조사본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한 명도 못 보내준다고 한다.’, ‘경찰 역시 방첩사로 보내줄 수 없다(경찰수사관 10이 준비되어 있는데 방첩사로 올 수는 없고 현장에서 합류 하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사령관께서 23:30경 전화로 ‘우리 수사관이라도 빨리 국회 쪽으로 출동시키자.’고 지시하였다. 그 무렵은 여인형 사령관이 10~20분마다 계속 전화를 할 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민회는 이 법정에서 “12. 3. 비상계엄 당시 수사조정과장(중령)이었다. 제 직근 상급자는 안보수사실장 이재학 대령,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준장, 방첩사령관 여인형 중장이었다. 그날 저녁 외부에서 식사를 하다가 김대우 단장이 복귀한다는 연락을 받고 사령부로 복귀하여 제 사무실에서 TV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중계방송을 보았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2:36경 김대우로부터 ‘방첩수사단 부대원 전원을 사령부로 소집하라, 흑복을 입고 나오도록 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전파하였다. 김대우 단장은 23:04경 3층 수사단장실에서 이재학과 제게 ‘경찰 100명과 조사본부 100명 인원들이 다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해당 인원들과 통화해서 어떻게 올지를 확인해 봐라, 경찰에는 호송차량 협조를 구하고,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 여부를 확인해 봐라’고 말하였고, 이후 ‘방첩사 5명, 조사본부 5명, 경찰 5명, 우리 사령부에 있는 868경호대 10명해서 이렇게 25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라.’는 지시를 하였다. 868경호대는 저희 수사대에 편성하는 것으로 김대우가 말했었는데, 어느 순간 김대우가 ‘868경호대를 1차 쪽으로 전환해라, 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14명,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조국, 양경수, 양정철, 이학영,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정청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명단 14명을 체포하면 된다.’고 지시하여 이름을 메모하여 두었다. 당시 적어둔 메모는 남아있지 않지만 12. 4. 19:00경 김대우 단장께서 ‘어제 불러줬던 명단 가지고 있느냐? 기억을 더듬어 봐라’고 물어보셔서 약 30분 정도 저희 수사조정과 과원들이 둘러앉아 그때 들었던 명단을 한 명, 한 명 복기해서 포스트잇으로 메모해 두었다. 12. 3. 명단을 불러 줄 당시 김대우는 체포를 해야 하는 이유나 체포 혐의, 영장이 발부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김대우, 이재학, 저 이렇게 간략히 이야기를 나누고 법무실에 문의하기로 하였다. 당시 저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실무자와 통화를 해서 인원들이 어떻게 언제 오는지, 어떻게 만날지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고, 김대우 단장은 직접적인 지시와 지휘 등을, 이재학은 단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다.”, “저는 23:05~06경 조사본부와 경찰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를 알려 달라’, ‘연락 받았느냐’ 등을 확인하였는데 ‘상부에서 따로 연락받았다.’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 대령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100명을 요청하였고, 수도권 내에 있는 구금시설 현황을 물어봤고, ‘확인 후 전화를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성곤 대령에게도 ‘지원 수사관들이 방첩사 및 경찰 수사관들과 조를 이루어 체포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 ‘이재명, 한동훈’ 등 구체적인 체포 대상은 말하지 않았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정한글 경감에게 전화하여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단 업무를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알려 달라’고 물어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의 연락처를 받았다. 23:32경 이현일과

통화가 되어 제가 이현일에게 ‘경찰수사관 100명, 호송차량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지원요청을 하였고, 이현일로부터 어디로 가면 되는지 질문을 받고 ‘경력을 과천에 있는 방첩사령부로 오라.’고 말했는데 이현일이 ‘우리는 계엄 상황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한다.’는 말을 들었다. 23:52경 다시 이현일과 통화를 하면서 저희가 요청한 인원들에 대한 독촉을 하였다.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경찰 인원을 빨리 보내 달라’고 말했더니 이현일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물어봐서 당시 짜증이 난 상태로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경찰 인원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 시기가 23:52경에 한 것인지 다른 시기에 한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방첩사 수사관부터 일단 준비가 되는 대로 국회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 측 이현일뿐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 김성곤 대령에게도 그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00:10경 이현일, 김성곤 대령과 그룹통화를 하면서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0명의 지원 명단을 다시 요청하였고 쌍방 모두 ‘준비되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제가 당시 ‘5명을 먼저 보내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12. 4. 00:13경 이현일로부터 정일현 등 경찰관 5명의 이름과 정일현의 연락처가 기재된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이현일에게 전화하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분들하고 통화하면 되느냐’, ‘추가인원을 계속 보내 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것이다. 00:20경 출동 직전인 신동걸 소령에게 이현일로부터 받은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현장에 있는 경찰과 직접 연락해서 만나라는 취지로 명단을 전달해 준 것이다. 00:25경 경찰청 경비국 경비안전계장 김만중 경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구민회 중령이나, 지금 국회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방첩사 군인들이냐'고 물었고, '우리 방첩사 군인들은 사복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저희 군인들 아니다.'고 대답하자 전화를 끊었다. 00:35경 이현일에게 '추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100명을 요청했는데 5명의 명단만 와서 추가로 명단을 달라는 취지였다. 00:40경 이현일로부터 먼저 전달받은 경찰관 5명을 포함해 10명의 이름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00:43경 이현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추가 인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재명, 한동훈의 이름을 이현일에게 말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대화 대상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통화를 했던 시점이 주변이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서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1층 로비 옆에 있는 아무도 없는 수사지휘실로 들어가면서 '이재명, 한동훈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사관들이 출동하기 전인 00시 이전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12. 4. 00:00 이전에 통화한 사람은 정한글 경감, 이현일 경정, 김성곤 대령 밖에 없는데 정한글은 3층에 있는 수사단장실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정한글을 제외하고, 김성곤 대령은 제 5년 선배라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이인데 짜증이 나는 상태에서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쏘아붙이듯이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제외했다. 그렇게 제외를 하고 나니 남은 것은 이현일 말고는 없었다. 그래서 이현일 경정이라고 판단을 해서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한동훈의 이름을 말한 상대방이 이현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변호인에게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말씀하시면서 김성곤 대령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그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가 또 검사님 말씀 들어보면 또 여러 가지는

리적인 상황, 전화했었던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지금도 이현일 경정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딱 잘라서 ‘이현일 경정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와 통화했었지만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두 분의 이름을 써서 대화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현일 경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체포대상자 이재명, 한동훈을 언급한 상대방에 대해 당시 정황이나 기억에 의하면 이현일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전혀 없다고 아예 0%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검찰에 진술했던 내용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현일 경정이 정확하게 맞다.’고 얘기를 드리지 못할 것 같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현일 경정을 특정했던 이유는 당시의 상황이나 통화내역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현일 경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것이지 ‘이현일 경정이 100% 맞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니었다. 김성곤 대령과 이현일 둘 중의 하나인데 이현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 것이다.”, “저는 100명을 요청하면서 100명을 5명씩 나눠서 그 인원들을 다른 기관 인원들과 함께 체포조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현일에게 말했다. 그런데 이현일이 오해하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현일은 100명은 따로 합동수사본부 요원으로 생각하였고, 그와 별도로 방첩사에서 안내조 5명을 보내달라고 하고, 추가로 5명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해해서 일단 5명, 10명만 보내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현일은 이 법정에서 “계엄선포를 보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인 12. 3. 23:32경 방첩사 구민회 중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국가수사

본부에서 100여 명, 그리고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수사관 100명을 요청하면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제게 말하였다. 구민회는 본래 10대를 말했다가 통화 말미에 20대를 요청한다고 말하였다. 제가 ‘파견 나가면 근무는 어디서 하나?’고 묻자 구민회는 ‘과천 방첩사다.’라고 말을 했고, ‘차량은 버스가 필요한 거냐?’라고 묻자 ‘2~3명 탈수 있는 차량이면 된다.’고 말하였다. 저는 ‘2~3명 탈 수 있는 차면 45인승 호송 버스가 아니라 일반차, 카니발 같은 일반 수사용 차량을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였고, 인력 요청에 대해서도 ‘곧 방첩사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요청을 할 것인데 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취지 정도로 생각했다. 23:35경 통화를 마칠 무렵 복귀하여 23:36경 복관 7층 수사기획과 사무실에 들어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에게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요청에 대해 보고하였다. 전창훈과 사이에 명단을 준비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였고, 전창훈이 23:40경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에게 전화해서 ‘명단을 준비해 놓으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명단을 준비해 놓아야 정식 요청이 들어오면 파견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통화내용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다. 수사기획조정관(국장) 피고인 윤승영에게도 보고를 하였는데, 국장님이 12시 국관회의가⁵⁸⁾ 있기 10분 전쯤 국관회의를 가기 위해 저희 사무실 앞 복도를 지나가실 때 잠깐 보고드릴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국장님이 잠깐 수사기획담당관실 안으로 들어 오시자마자 제가 문 앞에 서서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요청에 대해 보고를 드렸다. 옆에 전창훈 과장도 서 계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윤승영 국장님이 당시 수첩에 ‘방첩사’,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파견지 과천’ 이런 것들을 적으셨다.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호송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차량’

58) 통상 경찰청 관계자들은 국장급 또는 경무관 이상 관리관, 심의관 등이 참석 대상인 회의를 국장의 ‘국’, 심의관, 관리관의 ‘관’이라는 단어를 조합하여 ‘국관회의’라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 과장님께 보고 드린 이후 국장님께 보고 드린 시간이 조금 걸린 것은 제가 방첩사 요청사항의 근거에 관해 법령을 찾아보고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었기 때문이다. 그전에 제가 국장님께 따로 보고 드린 기억은 없다. 국장님이 올라가시는 걸 보고 회의 가시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랴부랴 국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이다.”, “12. 3. 23:52경 구민회와 두 번째 통화를 하였다. 당시 구민회가 ‘체포명단 받으셨죠?’라고 말하였는데 제가 ‘예?’라고 하자 잠깐 말이 없었는데, ‘아차’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구민회가 다시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출동을 하는데, 국가수사본부에서 인솔하고 같이 다닐 사람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야간에는 국가수사본부에는 근무자가 없다. 꼭 국가수사본부가 가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냥 경찰이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국회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도 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여 통화가 종료되었다. 당시 구민회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 해당 통화 내용도 과장님과 국장님께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렸는데, 국장님께 전화로 보고를 드리기 전인 23:57경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박창균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방첩사에서 국회로 지금 체포조를 보내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들이 5명 필요하니 5명 명단 좀 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3:58경 국관회의 참석을 위해 본청 9층에 올라가 있는 윤승영 국장님께 전화를 걸어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다닐 인력 5명을 국수본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국수본은 야간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 형사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는 취지로 보고 드렸다. 이에 대해 윤승영은 아마 ‘우리는 지원만 하는 거냐?’, ‘청장님(피고인 조지호)께 보고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 같다. 명확하지는 않다. 12. 4. 00:01경 윤승영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청장님께 보고 드

렸다.’, ‘영등포 형사 사복으로, 명단 보내줘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난다. 저는 구민회의 요청대로 해 주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00:02경 다시 박창균에게 전화를 걸어 ‘국장님, 청장님께 보고 드렸다. 사복을 입게 하고, 5명 이름, 계급, 전화번호를 내게 문자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00:10경 저, 구민회, 국방부 조사본부 김성곤 대령이 그룹통화를 한 사실은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당시 간단하게 서로 소개를 한 기억은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같이 뭘 한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구민회가 명단을 빨리 달라고 한 기억은 있다. 5명을 빨리 달라고 하면서 연락처는 1명만 주면 된다고 해서, 제가 박창균으로부터 받은 연락처 파일을 정리해서 00:13경 구민회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다. 00:14경 구민회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방첩사 출동조가 더 늘었다, 그래서 인솔할 인력, 안내할 인력 5명을 추가해 달라, 그리고 체포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한데 경비책임자를 연결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00:18경 박창균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본청 경비국 김만중 경정에게 연락하여 구민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통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저는 00:23경 윤승영, 전창훈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방첩사에서 영등포서 형사 1개팀 추가 요청하여 명단 확보 중입니다. 아울러, 방첩사 체포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며, 경비책임자 연락처를 요청하여, 본청 경비국으로 연결해 줬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위 대화방에서 윤승영으로부터 ‘오케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구민회가 00:35경 제게 ‘추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저는 00:36경 박창균에게 다시 전화하여 명단을 빨리 보내달라고 독촉하였고, 곧 추가명단을 받아 00:40경 구민회에게 기존 보내준 명단 5명과 더해서 10명 명단을 보내주었다. 직후 구민회와 통화를 하긴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전창훈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획담당관실 소속 계장, 계원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제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공통 출입문을 통해서 출입하게 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피고인 윤승영의 수사기획조정관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수사기획담당관실을 지나야 갈 수 있는 구조다. 저희 담당관실 문이 닫혀 있으면 국장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후 마침 제주도에 행사차 가있던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통화를 하였다. 계엄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내일 첫 비행기로 올라갈테니 다른 간부들에게 상황 잘 전파해서 잘 대응하고 보고하라.’고 당부하셨다. 23:27경 수사기획조정관실 사무실이 있는 경찰청 북관 7층에 도착했다. 23:35경 전후로 이현일로부터 ‘방첩사로부터 비상계엄 하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야 되니 수사 인력 100명, 차량 20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법령을 찾아보니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수본은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부서는 광수단 400명, 안보수사 200명 해서 600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 빼도 되는지, 몇 명 빼도 되는지, 경기남부청, 인천이나 경기북부청 등에서도 빼야 하는지 등을 확인했어야 하고, 또 선불리 청장님께 잘못 보고 하면 꾸지람을 듣기 때문에 23:40경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 총경에게 전화해서 ‘방첩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고 하면서 인력 등 지원을 요청한다.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명 지원 가능하냐?’고 확인하였다. 답이 없기에 ‘그러면 일단 명단만 준비 좀 해 달라.’고 말하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던 것 같다. 당시 ‘바로 수사관과 차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리고 국관회의 직전인 23:49~50경에 국장님이 우리 과 사무실에 들렀었기에 그때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방첩사에서 수사 인력

100명, 차량 20대 지원 요청한 사실’을 보고 드리고 ‘일단 서울경찰청에 알아보니 서울경찰청에서 인력과 차량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가게 되면 총경 1, 경정 3~4명 이렇게 100명을 꾸리면 된다. 그리고 이 사안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청장님이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당시 제 옆에 이현일 계장도 함께 있었다. 당시 피고인 윤승영이 ‘정말 경찰청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냐?’고 물어보아 제가 그 자리에서 부하에게 법령집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다. 그리고 보고에 도움을 드릴까 해서 국관회의 장소인 9층 무궁화회의실에 국장님을 쫓아 들어갔다. 그때 시간이 23:57~58경이었는데 국장님이 보이지 않아 ‘청장님께 보고 중이구나’ 생각하고 국관회의 개최 직전 회의실에서 나왔다. 저는 국관회의 참석 대상자가 아니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깐 1층에 내려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9층 회의실 앞으로 올라왔는데, 12. 4. 00:15경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최광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김경규 수사과장님께서 과장님(전창훈)께서 서울경찰청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인력 100명, 차량 20대를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꾸려야 합니까?’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관련된 법령상 근거는 우리가 찾고 있다. 그래도 수사관 100명은 인원이 많으니 미리 명단 작성을 준비해둬라, 내가 오케이 하면 바로 보낼 수 있게’라는 취지로 말했다. 00:20경 국관회의가 끝나자 국관님들이 우르르 나왔고, 피고인 윤승영이 밖으로 나와 9층 복도에서 제게 ‘청장님께서 합동수사본부 100명 구성과 관련해서는 명단 작성 준비하라고 지시하셨고, (이현일로부터 보고받은) 방첩사 5명 지원 요청 관련해서는 사복 차림으로 보내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방첩사 5명 지원 요청 관련해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국장님이 그때 이야기를 해 주어 알았다. 다른 국관님들, 국장님과 함께 본관 5층 수사국 회의실로 가서 자연스럽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때 국장님이 제게 국수본부장님께 방첩사 요청 관련 전화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하면서 00:38경 직접 우종수 본부장님께 전화를 드려 방첩사 수사 인력 요청 및 후속 조치(5명 보낸 것)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 전화 너머로 본부장님께서 큰 소리로 ‘천천히 차근차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무언가 힐난하는, 무언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사국 회의실에 있을 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현일이 00:23경 공유한 ‘방첩사에서 영등포서 형사 1개팀 추가 요청’ 메시지 및 국장님이 ‘오케이’라고 승인한 내용을 확인했다. 00:45~47경 다시 수사기획담당관실로 복귀했고, 그때 이현일로부터 ‘영등포서 명단 10명을 이현일이 확인해서 방첩사에 줬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현일로부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체포조 편성해서 체포할 것이고, 체포대상자는 이재명, 한동훈이다.’라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만약 이현일이 방첩사 구민 회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저나 국장님께 보고해야 할 사항이다. 한편 사무실로 복귀해서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합동수사본부가 방첩사에서 구성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제가 먼저 찾아봤던 법령에는 ‘국군의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게 되면 경찰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었는데, 방첩사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궁금했기 때문이다. 본부장님께서 신중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12. 3. 22:30~40 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고 소개를 하더니 ‘계엄이 발령되어 본인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것이다, 경찰이 (수사요원이 아닌)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고 하였고, 선관위 세 군데, 관악, 수원,

과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관위에 갈 것이다.’는 말도 하였다. 메모를 해 달라고 하면서 사람 이름을 쪽 부르고 제가 다 적으니까 ‘여기 우리가 체포할 건데 위치추적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위치추적은 수사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좀 해 달라’고 말하면서 대충 전화가 끊어졌다. 곧이어 바로 전화가 왔는데 ‘위치추적 요청 명단에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제 기억은 그런데 두 번의 전화내용에 대해 여인형이 기억하는 것(첫 번째 통화에서 수사관 100명 요청, 두 번째 통화에서 체포대상자 위치 확인 요청)과 차이가 있다면 그게 맞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동훈 추가’라는 말을 들은 것은 분명하다.”, “국관회의 직전인 2024. 12. 3. 23:59경 제 집무실에서 윤승영 국장으로부터 방첩사의 요청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윤승영이 먼저 ‘방첩사에서 수사요원 100명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라고 말하자 윤승영에게 ‘저한테는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준비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 윤승영이 또 ‘방첩사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보고하기에 제가 ‘그것도 준비만 하시라’고 말했다. 윤승영이 이어서 ‘그러면 영등포 형사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다. 그 보고는 국관회의 직전이라 당시 대화가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당시 여인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메모한 정치인 등 15~16명 명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윤승영에게 보여주지는 않았다. 나중에 윤승영이 내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명단을 보내준 것에 대해 정말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I) 한편 위 즈음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12. 3. 22:58경, 23:06경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과 각 48초, 2분 47초 통화하였는데, 22:58경 통화 당시 홍장원이 ‘V에게 전화를 받았어. 대통령께서 방첩사 너희들을 지원해 주래’라고 이야기하자 여인형은 ‘국회
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홍장원이 ‘비화폰으로 통화하자’라고 하며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후 홍장원은 비화폰을 이용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였고, 23:06경 재차 일반 휴대전화를 통해 통화하였는데, 그 당시 여인형에게 ‘명단을 사람을 통해서 보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에 여인형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바로 그냥 불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AEV, 조해주, 김민웅, 전 선관위원장, 전 대법관, 민노총 위원장’이라며 호명하고, ‘체포를 도와달라, 검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국가정보원장 조태용은 같은 날 23:30경 국가정보원 정무직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긴급회의 이후 홍장원은 조태용에게 ‘대통령께서 전화하였다.’, ‘원장님 미국 가서 미국 출장을 이미 출발하신 걸로 알고 저한테 전화한 것 같습니다.’, ‘방첩사를 지원합니다.’,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며 피고인 윤석열, 여인형과의 통화 내용을 각 보고하였다.

홍장원은 위와 같은 여인형과의 통화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방금 전에 지시하였기 때문에, 그 지시에 복명하기 위해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하였다. 그런데 당시 여인형에게 전화하니 여인형이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V 통화했다. 대통령께서 너희를 지원해 주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야 세 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했다.”, “22:58경 통화인지 23:06경 통화인지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CCTV를 공개하면서 기억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나 22:58경 통화에는 앞서 말한 식의 대화가 있었고, 여인형이 마치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었는지 그 이후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여인형이 임무에 관하여 말한) 처음 이야기는 ‘경찰

과 협조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였고, 그 다음은 ‘현재 방첩사에서 체포조가 아마 체포 명단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특히 위치 추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체포한 후에는 방첩사 구금시설에 수용하여 심문할 것이다. 1차, 2차 축차적으로 체포 작전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나에게 순차적으로 설명했다.”, “아마 22:58경 통화가 끊어진 시점은 (여인형이) ‘제가 체포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끊어진것 같다. 왜냐하면 명단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예민하다고 생각해서 ‘잠깐. 보안폰으로 하자’ 이렇게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조금 민감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비화폰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번 끊었었고, 결국에는 비화폰 통화가 연결되지 않자, 다시 23:06경 일반전화로 통화해서 앞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다.”, “다시 23:06경 일반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내용들이 체포 관련 명단 내용이다. 대화를 재개한 후에 비화폰이 아니라서 ‘사람을 보내라(명단을 사람을 통해서 보내라)’고 말했는데, 여인형이 ‘그럴만한 시간이 없다. 바로 그냥 불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내가 ‘불러라’라고 말한 뒤에 (여인형이 말하는 명단을) 받아 적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육군특수전사령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2024. 12. 3. 22:20경부터 22:24경 까지 차례로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하였고, 제 제1공수, 제3공수, 제9공수 특전여단장들에게 편의대 운용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22:23 내지 22:27경까지 이루어진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및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TV로 시청하였다.

곽종근은 2024. 12. 3. 22:22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

것을 지시한 후 22:25경 이상현에게 ‘편의대 2개조를 운영하라’, ‘편의대를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동시켜라’,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 사복을 착용한 편의대 1개조를 국회로, 1개조를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22:25경 제1공수특전여단 메신저(시그널) 단체대화방(천하제일 소통방)에 편의대 출동과 참모장 및 긴급조치반 소집을 지시하였으며, 22:26경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안효영에게 전화하여 ‘제1공수특전여단 1대대 편의대 2개팀을 편성해 1개팀은 국회로, 1개팀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발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상현은 제1공수특전여단 참모장과 소속 대대장들과의 합동통화에서 ‘지금 편의대 2개팀을 운영해야 하는데 가능한 팀이 어디가 있을까?’라 물었고, 이에 1대대장 김형기가 ‘지금 1대대가 신속대응부대 예비입니다. 저희 대대에서 준비시키겠습니다.’라고 하자 ‘2개팀으로 해서 1개팀은 지금 국회로 가라고 그래. 아니 1대대장 나한테 바로 전화해. 그리고 참모장, 정보 작전 라인들 바로 소집시켜’라고 지시하였다. 김형기는 22:29경 이상현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현으로부터 ‘제1공수특전여단 제1대대 소속 편의대 2개조를 각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으로 사복 입혀 출동시킬 것’을 지시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기 단결. 1대대장입니다.
 이상현 신속대응부대 2개팀 있지?
 김형기 지금 1개조 있습니다.
 여단장 1개조 국회로 보내, 1개조를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보내. 사복 입혀서 보내, 사복 입혀서 보내는 거야.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 여단장 그리고 선임자 몇 팀인지 나한테 전화주고 선임자 나한테 전화번호 줘.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이상현 국회.
 김형기 국회로 신속대응 조 준비시키겠습니다. 바로.
 이상현 그래서 편의대로 거기 앞에 가있으라고 해.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시키겠습니다. 단결.

김형기는 22:31경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안효영에게 “여단장(이상현)으로부터 ‘신속대응 편의대 1개조를 국회로, 나머지 1개조를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발시키라’고 지시받았

다.”는 취지로 말하였 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기 예, 단결, 선배님.
안효영 어. 그래, 1대대장.
김형기 예.
안효영 혹시 그... 김형기 예.
안효영 경비지역대 편의대가 있니?
김형기 아, 저희 신속대응조 방금 여단장님 전화오셨습니다.
안효영 어. 김형기 그래서 신속대응조를 4명인데 1개 조를,
안효영 어, 뭐라고?
김형기 신속대응조 1개 조를,
안효영 어. 김형기 지금 바로 국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안효영 어디? 김형기 국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안효영 국회?
김형기 예. 국회로 보내고,
안효영 응.
김형기 1개 조를 더 준비해서 그 1개 조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곽종근은 2024. 12. 3. 22:23경 및 22:27경 두 차례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과 통화 하며 ‘1개 대대는 사당역에 있는 중앙선관위 분청(관악청사)으로 출동시키고, 1개 지역대 는 여론조사꽃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 고 지시하였다(첫 번째 통화에서는 ‘편의대 출동 준비’를, 두 번째 통화에서는 ‘편의대 출 동’을 차례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9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차용환은 22:26경 제9공수특전여단 51특전대대장 황준 흥에게 전화하여 ‘대대가 부대로 비상소집이 되어야 된다. 부대로 출근해야 된다.’, ‘편의 대 2개조를 운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시를 하달하였고, 황준흥은 위 통화 직후 51특 전대대 작전과장에게 전화하여 ‘대대 비상소집을 돌려라.’고 지시한 후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에게 전화하여 ‘(51특전)대대가 비상소집으로 부대 출근하겠다. 그리고 편의대 2개조를 작전참모

로부터 지시받았기 때문에 운용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 당시 안무성으로부터 ‘편의대 2개조를 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영외에 있던 황준홍은 22:50경 부대에 복귀하였다.

곽종근은 2024. 12. 3. 22:24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전화하여 ‘현시간부로 3여단 비상소집을 지시한다, 그리고 너희 여단은 2개 대대를 출동시켜서 1개 대대는 중앙선관위로 가고, 또 1개 대대는 수원에 있는 연수원 중앙선관위 연수원으로 간다.’고 지시하였다.

(2) 한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진행될 무렵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직접 ‘707특수임무단 2개 지역대를 헬기에 태워 국회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곽종근은 2024. 12. 3. 22:30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전화해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22:31경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전화해 ‘헬기 12대가 곧 도착할 것이니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에 태워 즉시 국회로 출동시켜라,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라’고 출동을 지시하였다. 당시 곽종근은 ‘본관하고 의원회관 가면 너희들이 가서 건물을 확보해라’, ‘국회의사당 본관과 의원회관을 확보하라’, ‘확보할 때 안에 있는 근무자들하고 있는 인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확보해라’고 지시하였다.

김세운은 이 법정에서 “당시 훈련을 준비하면서 47훈련장, 그러니까 특수전학교로 가는 준비를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실제로 헬기 출동을 하는 과정에서 헬기 목적지가 처음 계획되었던 특수전학교가 아니라 국회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항단 소속 헬기들은 대략 23:10경에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출발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참모장으로부터 재촉을 받았다. 위 헬기들은 23:30경에 육군특수전사령부

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착하자마자 미리 출동을 준비하고 있던 707특수임무단원들을 태우고 국회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광종근은 22:32경 피고인 김용현이 주재하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22:32경 시작되어 몇 분간 진행되었다)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김용현은 광종근에게 ‘既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 제한사항 확인 및 준비되는 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광종근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화상원격회의에서 나갔고, 22:33:04경 피고인 김용현과 14초가량 통화하였다. 육군특수전사령부는 22:40경 부대 비상소집을 발령하였고,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22:41경 제1공수특전여단 제1대대 12중대장 편의대 조장 대위 AEW에게 유선으로 국회 출동을 지시하였다.

(4) 광종근은 같은 날 22:33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비화폰으로 재차 전화하여 약 9분 8초가량 통화하며 ‘2개 대대를 국회로 출동시키되 1개 대대는 국회의사당, 1개 대대는 의원회관으로 보내라, 건물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봉쇄해라.’, ‘여단장 (이상현)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에 있는 수도방위사령관과 상의하며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이상현이 ‘국회에 무슨 일 있습니까?’라고 되묻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현장에 도착하면 수방사령관과 통화해봐라’고 답변하였으며, 출동과 관련해 ‘투입하는 장병들은 권총 휴대하지 말고 소총만 휴대하라’, ‘탄약은 실탄은 개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지역대장 또는 대대장에게 지급해라’, ‘비살상 물자인 테이저건과 케이블타이를 휴대하라’, ‘개인 휴대폰을 휴대하지 마라’ 등을 같이 지시하였다. 광종근은 위 통화를 하면서 중간에(22:33:04경) 피고인 김용현과 14초가량 통화하였다.

(5) 한편 육군특전사령부 참모장 박정환이 2024. 12. 3. 22:38경 전투통제실에 들어오자,

곽종근은 박정환에게 ‘특항단(특수작전항공단)에 헬기가 빨리 출발했는지 확인해라’고 지시하였고, 박정환을 통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으로부터 ‘일단 조종사들이 소집이 되고 있고, 헬기를 예열시키려면 동계 같은 경우는 20~30분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한창 조종사들 소집과 예열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받았다. 이를 전달받은 곽종근은 재차 박정환에게 ‘그러면 707특수임무단이 출동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봐라’고 지시하였고, 박정환을 통해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로부터 ‘(헬기 탑승을 위해) 버스에 탑승해 있습니다.’라고 보고받았다. 이후 곽종근은 22:38경부터 23:08경까지 ‘빨리 헬기가 올 수 있도록 해라’, ‘지금 헬기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서 지시 및 질문을 반복하였다.

(6) 곽종근은 2024. 12. 3. 22:47경 화상원격회의(VTC) 방식으로 육군특수전사령부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육군특수전사령부 각 여단 등 예하부대 지휘관과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청색 커버 수첩을 펼쳐 그 내용을 보면서 지시사항을 하달하였다.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2개 대대는 국회, 1개 대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동하라’,⁵⁹⁾ ‘제3공수특전여단 1개 대대는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사무소, 1개 대대는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고 1개 대대는 다음 날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 ‘제9공수특전여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면서 ‘개인화기 휴대하고 권총은 휴대하지 말고 개인한테 공포탄만 주고 실탄은 절대 개인에게 주지 마라. 대신에 지역 대장이나 대대장들이 통합보관해라.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람 다치게 하지 마라’, ‘현장에 가서 경찰과 접촉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작전일지」 기재와 같다(증거순번 4기록 219번).

작전일지

59)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1여단의 2개 대대를 국회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4.12.3 (화)	22:40	■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
	22:47	■ 사령부 주요지휘관회의 ■ 현 상황 ○ '24년 12.3.(화) 22:30부 전국 비상계엄 선포 ○ 특항단 헬기 12대, DF특수임무단 2개 지역대 탑승 후 국회 출발 준비 중 ■ 임 무 현 시간부 전 부대 출동준비 및 태세를 갖추고 반국가세력, 내란을 조장하는 인원들에 대해 상급부대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예하부대 과업 ○ *여단 1) 1개 대대 국회, 1개 대대 K사 확보 2) 여단장은 본대와 이동하여 현장 지휘 ○ #여단 1) 1개 대대 과천 선관위사무소, 1개 대대 연수원 확보 2) 1개 대대 방첩사 지원 준비 3) 해당 건물의 서버와 선거조작 장비 등 기타 세력에 의해 파괴 및 확보 되지 않도록 우선 확보 후 방첩사에 인계 4) 여단장은 본대와 같이 이동하여 현장 지휘 ○ &여단 : 1여단 지원 준비(1개 대대, 1개 특임대) ○ @여단 ⁶⁰⁾

위 회의가 끝난 후 광종근은 전투통제실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국방부 비화폰 및 대통령경호처에서 관리하는 비화폰인 '대테러폰'을 통해 유선으로 각 예하부대들을 지휘하고 피고인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등과 통화하였다.

특히 광종근은 같은 날 22:50경부터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가 헬기에 탑승하기 직전인 같은 날 23:20경까지 총 4차례 통화하였는데,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은 22:42경 김현태에게 전화해 '헬기 곧 간다. 곧 빨리 보낼게'라고 말하였고, 이에 김현태로부터 '헬기 왜 안 오냐?'는 말을 듣고, 재차 '준비 중이야. 우리 인원들 다 퇴근했다가 들어오느라고 지연되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후 22:44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박정환 또한 김현태에게 전화하여

60) 제9공수특전여단에게 부여한 임무 내용은 작성되어 있지 않으나, 광종근은 이 법정에서 '제9여단으로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원들 잘 출동 준비하고 있냐. 나오고 있냐. 지금 뭐하고 있냐?’, ‘(특임단원들) 휴대 전화를 다 반납시켜라. 작전보안 차원에서 휴대전화 하면 안 된다.’라고 지시하였고, 이후에도 곽종근은 22:50경부터 김현태가 헬기에 탑승하기 직전인 같은 날 23:20경까지 김현태에게 4차례 직접 전화하여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는 등 707특수임무단의 출동 여부를 계속하여 확인하였다.

(7)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은 ‘우리 여단의 임무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서버라든가 핵심시설, 서버나 핵심시설 장비가 반출되거나 그리고 어떤 불순세력에 의해서 탈취당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를 지원하는 것이다.’라며 제3공수특전여단 소속 11특전대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할 것을, 12특전대대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할 것을 각 지시하였고, 13, 15특전대대에는 차후 상황과 임무를 대비해 대기할 것을 각 지시하면서, 곽종근의 지시에 따라 15특전대대에 ‘내일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정근은 각 대대에 ‘편의대 인원 3명 2개조로 구성해 우선적으로 목적지에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 위치를 확인해 두어라’, ‘출입구를 확인 후 서버실 반출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12특전대대 소속 편의대가 23:00경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11특전대대 소속 편의대가 23:15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였고,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은 23:47경, 11특전대대 본대(대대장 이경중, 편의대 6명 포함 총 138명)는⁶¹⁾ 23:56경, 12특전대대 본대(대대장 박기근, 편의대 6명 포함 총 127명)는 2024. 12. 4. 00:05경 각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였다.

(8) 한편 곽종근이 주재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주요지휘관회의 이후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61) 이경중은 이 법정에서 ‘1제대 52명, 2제대 58명에 지휘부 등 병력 인원 포함해 119명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4. 12. 3. 22:50경 제1공수특전여단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원격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여 예하 4개 대대(O, O, O, O대대)에 ‘목적지는 국회’, ‘4개 대대가 차량에 탑승하여 출동 준비하되, 1, 5대대가 먼저 출동 대기할 것’, ‘소총을 휴대하고 권총은 휴대하지 않으며, 마스크와 방한복을 각 착용하고, 비살상무기인 케이블타이, 테이저건, 공포탄은 개별 휴대하며, 실탄의 경우 지역대장과 대대장이 보관하고 개인에게 미지급할 것’, ‘출동 준비 후 보고할 것’ 등 광종근의 지시를 하달하였다. 그런데 위 지시 이후 이상현은 5대대장이 회식으로 인해 복귀가 지연되는 등 출동태세가 늦어지는 사정을 알게 되어(@대대장 반효민은 사무실에 위치), 기존 1, 5대대 출동 준비 명령을 1, @대대 출동 준비로 지시를 수정해 하달하였고, 23:01경 작전지침을 다시 한 번 하달하며 @대대장 반효민, 3대대장 장희재 등과 그룹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순번 4기록 1426 번). 이상현은 23:16경 작전보안 준수 지시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병력 출동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병력들 우선 출동 후 탄약은 추후에 수송할 것’ 및 ‘1, @대대 먼저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남 자1 그 단독군장 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상현 단독군장, 안면마스크, 방한복, 오늘 철야 작전한다. 개인화기, 개인화기 휴대. 권총은 휴대하지 않고 비살상무기, 전자총, 테이저건, 포박, 포승, 케이블타이, 케이블타이 등 이런 비살상물자, 통신장비 휴대한다. 탄약은 공포탄, 필요시 섬광 폭음탄도 나눠줄 수 있는데 이 섬광 폭음탄도 팀장 또는 지역대장이 휴대해. 개인한테 나눠주지 않는다. 실탄 휴대하지않고, 개인이 휴대하지 않고 대대장과 지역대장이 탄통으로 보관한다. 개인폰 휴대하지 않는다. 대대장만 보안폰이 없기 때문에 대대장은 휴대폰을 휴대한다. 야간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여비 배터리 충분히 가져가라.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투식량들 지참해
반효민 탄, 실탄은 대대장과 지역대장이 탄통으로 해서 휴대한다고 했는데 이 탄은 그 지역대장과 대대장에 해당되는 개인의 탄에 대한 수량만 가져가는 것인지.
이상현 전체 탄.
반효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 작전 보안, 작전 보안 특별히 강조한다. 개인 SNS에, 개인 SNS에 지금서부터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이와 관련된 사항을 휴대폰으로 전파하지 않도록 해라. 여기 있는 실무자들 마찬가지로

야. 알았지?
반효민 예, 알겠습니다.
대화자 예. 3분 내에 이륙하겠습니다.
이상현 그 개인적으로 이런 작전 사항을 전파한 사람은 지시 위반으로 처벌하겠다. 지휘관들, 지휘관
들은 빨리 지휘 조치하고 출동 준비되면 나한테 보고해라. 이상.

이상현은 22:53경 제1공수특전여단 1대대 8중대장 편의대 조장 대위 김찬호에게 유선
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23:00경 1대대 8중
대 소속 김찬호 포함 편의대 5명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로, 1대대 12중대 소속 AEW
포함 편의대 5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였다. 당시 이동은 군용차량이 아닌 개
인 소지 민간 차량을 통해 이동하였고, ‘출발과 도착 등 상황에 대해서는 제1공수특전여
단 작전과장과 1대대장에게 보고하라’는 지침을 하달 받았다. 위 2개 편의대는 23:27경
각 목적지에 도착해 작전과장에게 도착 보고를 하였다.

(9)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2024. 12. 3. 22:23경부터 22:27경까
지 707특수임무단 소속 1, 3, 7, 9지역대장과 함께 대국민담화 및 이 사건 계엄 선포 영
상을 시청하였다(당시 9지역대는 훈련대기 중 훈련 일정이 취소되어 집합해 있던 상태였
다). 김현태는 22:31경 광종근으로부터 전화로 ‘헬기 12대가 곧 도착할 것이니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에 태워 즉시 국회로 출동시켜라,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
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라’, ‘국회의사당 본관과 의원회관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자리에서 각 지역대장들에게 ‘국회로 가야 된다. 실제 상황이다’, ‘9지역대는 티맵에 나와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우측면을 봉쇄하고 차단해라, 지금 훈련하기로 되어 있던 인원들
그대로 가라’며 1, 7, 9지역대는 국회의사당, 3지역대는 국회의원회관을 봉쇄할 것을 지시
하였고, 22:43경 707특수임무단 지휘부 메신저 단체대화방(New 707 텔레그램 채팅방)에
티맵 여의도 지도 캡처본에 구역별로 숫자를 표기한 도면을 전송하며 ‘1차

적으로 1지역대가 7, 9 올 때까지 전 지역 커버’, ‘1호기 정면’, ‘2호기 7지역대 구역’, ‘3호기 9’, ‘헬기 곧 이륙’, ‘3지역대 버스탑승’, ‘버스 이동간 세부명령하달’, ‘1지역대 나와라’고 전송하여, 3지역대는 국회의원회관, 1지역대는 국회의사당 정면, 7지역대는 국회의사당 좌측면, 9지역대는 국회의사당 우측면을 맡으라고 지시하였다. 해당 문자메시지와 첨부한 도면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4기록 1658번).

New 707 텔레그램 채팅방 캡처

AO 1차적으로 1지역대가 7, 9 올 때까지 전 지역 커버

AO 1호기 정면

2호기 7지역대구역

3호기 9...

AO 헬기 곧 이륙

AO 3지역대 버스탑승

AO 버스 이동간 세부명령하달

AO 1지역대 나와라

(10)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 602항공대대에서는 2024. 12. 3. 23:03경 602항공대대장 중령 김수철의 지시에 따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금왕기지로부터 헬기 12대가 순차 이륙해 23:08경 이천시 마장면 소재 육군특수전사령부 영내 707특수임무단 본부에 헬기 3대, 육군특수전사령부 헬리패드에 헬기 3대가 각 순차 착륙하였다. 이에 따라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및 707특수임무단 1지역대 소속 병력이 707특수임무단 본부에 착륙한 헬기 3대에, 3지역대 소속 병력이 육군특수전사령부 헬리패드에 착륙한 헬기 3대에 각 탑승 완료하였다. 이후 23:25경 707특수임무단 본부에 헬기 3대, 육군특수전사령부 헬리패드에 헬기 3대가 각 추가 도착하였고, 7지역대 병력이 707특수임무단 본부에 착륙한 헬기 3대에, 9지역대 병력이 육군특수전사령부 헬리패드에 착륙한 헬기 3대에

- 512 -

각 탑승 완료하였다. 헬기 1대당 8명씩 12대에 약 96명의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하였다. 이들이 탑승한 헬기는 23:22~43경 차례로 이륙하여 용인 지역을 거치는 비행 경로로 서울 방향으로 출동하였는데,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추후 기록한 이륙 시각은 다음과 같으나 실제 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2기록 933번).

23:22	1, 2, 3번 헬기 DF 헬리패드 이륙(출발) → 국회	1지역대
23:26	4, 5, 6번 헬기 사령부 헬리패드 이륙(출발) → 국회	3지역대
23:37	7, 8, 9번 헬기 DF 헬리패드 이륙(출발) → 국회	7지역대
23:43	10, 11, 12번 헬기 사령부 헬리패드 이륙(출발) → 국회	9지역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위 헬기들이 순차 이륙(출발)할 즈음인 23:26경 김현태에게 전화하여 ‘어디쯤 가고 있냐. 빨리 가서 건물 봉쇄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김현태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23:30경 ‘외곽봉쇄. 출입문 차단 완료되면 보고’, 23:31경 ‘이후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혹시 접근세력 차단’이라고 문자를 보내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23:33경 재차 곽종근과 통화하여 현재 위치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처(Joint Air Operation Center, Joint Air Operation Center)가 ‘사전 미계획 및 비행 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위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헬기 12대의 긴급비행을 계속 불승인하였고, 이에 위 헬기 12대가 용인 상공에서 서울 상공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배회하게 되었고,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2024. 12. 3. 23:30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는 등 시간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위 헬기들은 23:49경부터 12. 4. 00:11경 무렵이 되어서야 차례로 국 의사당에 착륙하였다.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추후 기록한 착륙 시각은 다음과 같으나 실제 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2기록 933번).

23:49	1, 2, 3번 헬기 국회 운동장 착륙	1지역대
23:53	4, 5, 6번 헬기 국회 운동장 착륙	3지역대
00:06	7, 8, 9번 헬기 국회 운동장 착륙	7지역대
00:11	10, 11, 12번 헬기 국회 운동장 착륙	9지역대
헬기 3대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한 모습 (1, 2, 3번 헬기) 		

한편 피고인 윤석열은 23:36경 광종근에게 대통령경호처 비화폰(대테러폰)으로 전화하여 ‘헬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 ‘국회로 가는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라며 헬기 이동상황을 확인하였고, 광종근이 ‘국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재차 ‘지금 사령관 위치가 어디냐, 현장 아니냐?’라고 물었고, 광종근은 ‘아닙니다. 전투통제실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윤석열은 ‘아, 그러면 영상, 화상으로 지휘하는 것이군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II) 이즈음인 2024. 12. 4. 00:07경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 12특전대대 소속 편의대 2개조 6명이 위 연수원에 도착하였다. 01:07경 12특전대대 소속 127명가량이 수원 선거연수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위 인원들 중 실제 작전병력은 110명가량이었으며 작전병력 110명 개인당 공포탄 각 10발 총 1,100발을 불출해 개별 지참하였고, 실탄 3박스 5,040발은 12특전대대장 박기근의 지휘차량에 보관한 상태였다.

그리고 같은 날 00:16경 제3공수특전여단 11특전대대 소속 편의대 2개조 6명이 중앙선

거 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하였다. 이미 그곳은 정보사령부 소속 고동희 등 10여명이 청사건물을 확보한 상태였고, 과천경찰서 소속 경력들이 청사 외곽을 경계하는 중이었다. 위 편의대 병력들은 과천청사 건물을 확보한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에게 ‘3공수에서 왔다. 앞으로 더 올 건데 2~3지대 방호를 하러 왔다’고 말하였다. 이후 00:40경 제3공수 특전여단장 김정근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01:08경까지 11특전대대장 이경종을 포함한 138명 가량 인원이 순차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했고, 1제대 52명이 중앙선거위원회 과천청사 로비에 집결해 위치를 파악하며 현장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위 인원들은 K1 기관단총, K2 소총, K7 기관단총, K5 권총 등 및 공포탄 각 10발 총 1,100발을 개인 휴대하였고, 실탄 5.56mm 3박스 5,040발, 9mm 1 박스 2,880발은 11특전대대장 이경종의 지휘차량에 보관한 상태였다.

라) 수도방위사령부

(1)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참모장 조백인은 수도방위사령관실에서 함께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2024. 12. 3. 22:24경 (대국민담화가 시작된 직후이다)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해 ‘전 간부를 소집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22:26경 제52사단장 이우현, 22:28경 제56사단장 박진희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대국민담화 방송을 시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조성현은 제1경비단 예하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제1경비단 작전참모 전진해는 제1경비단 35특임대대장 박진우에게 ‘중전 수호신TF 소집 지시가 전 간부 소집으로 변경되었다’라고 조성현의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이에 박진우는 22:27경 35특임대대 당직사령 송병규에게 35특임대대 전 간부 비상소집을 발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27경 (대국민담화 중)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

였는데, 위 선포 즈음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2특임대대 1지역대장 김우진은 1지역대 1중대장 KV에게 ‘대테러초동조치팀은 차량에 탑승하여 출동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달 하였고, 마찬가지로 같은 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는 22:35경 1중대장 KV과 출동대기와 관련해 통화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2기록 1103번).

김의규 어. 실제상황인 거 알지?
KV 예. 내용인지 하고 있습니다.
김의규 어. 그, 중형버스.
KV 예.
김의규 어.... 중형버스를. 아, 중형버스가 아니라 너희도 와서 장갑차 해야 되는데, 여기 올 수 있니?
KV *** 저희...
김의규 너희는 거기서 출동대기냐?
KV 예. 저희, 제가 지금 1중대장인데,
김의규 어, 어.
KV 3중대가 대테러*** (초동조치부대)입니다.
김의규 어.
KV 근데 3중대장이 없어서 제가 지금 3중대 대리를 하고 있고,
김의규 어.
KV 저희 1중대 같은 경우는 백호, 백호 작전⁶²⁾을 하고 있어서,
김의규 어, 어.
KV 소집 대상이 아니라고 대장님께서.
김의규 아, 그래?
KV 저희, 예. 1중대는 소집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김의규 으응. 그럼 우리 너희 빼고 대기할게.
KV 아, 네. 알겠습니다.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참모장 조백인은 수도방위사령관실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영상을 시청한 후 사령관실에 온 작전처장 김문상과 함께 지휘통제실로 이동하였고, 이동 중 이진우는 2024. 12. 3. 22:30:33경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50초가량 통화하였고, 22:31경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안찬명과 통화하였다. 이진우와 김문상은 22:31경, 조백인은 22:35경, 제1경비 단장 조성현은 22:39경 각 지휘통제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이진우는 피고인 김용현이 개최한

62) 백호 작전은 대통령 관저 인근을 경찰 202경비단과 함께 경호·경비 수행하는 작전. 야간 도보 순찰 등 특이점 파악 경계 작전 등을 의미한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VTC 방식으로 22:32경부터 몇 분간 진행되었다)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既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 제한사항 확인 및 준비되는 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지시를 하달받자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위치하고, 이곳에는 참모장이 대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후 화상회의에서 나왔다. 이진우는 22:33:33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9초가량 통화하였는데,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지금 국회로 빨리 출동해라. 그리고 도착 즉시 보고해라’는 지시를 받고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 12. 3. 22:30:38경 약 50초가량 이진우와 통화하였다. 당시 통화는 ‘계엄이 선포되어 수방사 군인들도 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한다. 이진우가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는 것만 알려주었고, 다른 특별한 대화를 한 기억은 없다.”, “비상계엄 직후 이진우와 12. 3. 22:30경부터 12. 4. 01:00경까지 8회 통화하였다. 첫 번째는 22:30경 통화이고, 두 번째는 23:07경 통화이다. 첫 번째 전화에서는 본인들도 출동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 12. 3. 23:30경부터 12. 4. 01:00경까지 6번의 통화는 모두 계엄군의 국회 출입 협조를 위한 통화로 기억한다. 수방사령관이 협조 요청을 해서 제가 최창복을 통해서 거기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맞다. 이진우 사령관과는 전체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자기들도 지금 혼잡해서 잘 진입을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통화를 주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또 저는 ‘현재 우리도 혼잡해서 상황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일일이 우리가 다 그걸 어떻게 해 줄 수 없으니까 적절하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던 중인 2024. 12. 3.

22:40경 제1경비단 2특임대대장 윤태현은 2특임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제1경비단 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에게 ‘흑복을 입어라’, ‘공포탄 30발을 휴대해라’, ‘단독군장⁶³⁾을 착용해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2특임대대 2지역대는 소총 44정, 권총 22정, 5.56mm 공포탄 1,320발, 테이저건 및 삼단봉을 지참해 출동준비 상태로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김용현 주재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나온 이진우는 2024. 12. 3. 22:37경 지휘통제실에 소집된 참모장 조백인, 작전처장 김문상,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장관께서 나는 현장으로 가라고 하니, 지휘통제실은 참모장이 사령관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지휘하기 바란다.’며 참모장 조백인에게 사령관 대리 임무를 부여한 후 ‘부대 방호 차원에서 장갑차 두 대를 정문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주둔지 경계를 강화하라’, ‘위병소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며 수도방위사령부 주둔지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였고 ‘군사경찰단 전 인원 배치 및 준비’, ‘전 부대 간부, 장병 포함 스마스폰 통합보관’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진우는 22:38경 서울특별시 정무특보 박찬구, 22:41경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2:43경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김명오에게 각 전화하여 통화하였다. 이후 이진우는 22:45:32경, 조성현은 22:45:35경, 조백인은 22:45:42경 각 지휘통제실에서 차례로 퇴장하였다. 당시 이진우는 지휘통제실 앞에서 조백인, 조성현과 이야기를 하며 조성현에게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국회로 가야 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 보고해라. 내려가겠다.’고 지시하였는데, 위 대화 중 22:51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42초가량 통화하였고, 이후 조성현은 35특임대대로 이동해 수호신 소집상황을 확인하였다. 이진우는 집무실에 들어가 방탄조끼, 방탄헬멧, 권총 등을 착용한 단독군장 상태로 나와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탑승해 35특임대대 막사로 출발하였다.

한편 2024. 12. 3. 22:55경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2특임대대 2지역대의 간부

63) 수방사 제1경비단 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는 이 법정에서 ‘위 단독군장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총, 방탄복, 방탄헬멧, 테이저건, 삼단봉을 착용한 기본 무장’이라고 진술하였다.

소집이 완료되었고, 23:00경 제1경비단 35특임대대 지역대 소속 대테러특임대 15명(운전 병 포함)의 소집 및 출동 준비가 완료되었다.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22:58경 국회협력단장 양재응(2024. 11.경 준장으로 진급하여 같은 달 11. 29.경부터 국회협력단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에게 전화하여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배치를 요청하였고(이진우는 23:14경부터 2024. 12. 4. 00:34경까지 7차례 가랑 양재응에게 전화해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의사당 본관 배치를 지원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다), 35특임대대 막사를 방문해 제1경비단장 조성현으로부터 수호신 소집 상황 보고를 받은 후 조성현에게 ‘먼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 임무를 줄 테니, 2특임 대대와 35특임대대에서 최초 출동하는 팀장으로 하여금 내게 직접 전화를 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후, 23:00경 국회로 출동하여 23:30경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양재응은 수사기관에서 “22:36경 제 전임자인 정재열 소장으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22:45경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어디냐?’는 전화가 와서 ‘삼각지 숙소입니다. 국회로 가겠습니다.’라고 답했고, 김용현 장관이 제게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해라, 특전사하고’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급하게 말씀하시고 바로 끊어서 뭘 물어볼 수도 없었다. 22:49경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22:58경 이진우로부터 전화가 와서 ‘너 비화폰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기에 ‘없다.’고 했다. 22:59경 광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으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23:02경 국방부장관의 군사보좌관 김철진에게 전화를 했는데 역시 전화가 안 되었다. 23:14경 이진우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는데 말을 하다가 다른데서 연락이 오는지 ‘내가 이따가 전화 할게’ 또는 ‘우리 병력이 갈 것인데 안내 좀 해주라’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 무렵은 제가 막 국회에 도착해서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있던 때여서 이진우로부터 다

시 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 국회에 내리니 문이 닫혀 있었고, 경찰이 외곽을 막고 있었으며, 국회 정문 옆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작은 문이 오픈되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 저도 국회 경내로 들어갔다. 23:20경 이진우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우리 병력이 갈 건데, 병력 안내를 좀 해주라’고 말하였고, 제가 ‘저는 여기를 잘 모릅니다. 제가 여기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라고 대답했다. 23:37경 이진우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그날 이진우는 저와 통화를 하면서 무전도 같이 하고 굉장히 바빠 보였는데,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대개 ‘어, 어, 어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아니면 ‘우리 병력이 가는데 안내 좀 해 줘’라는 말이었다. 병력이 얼마나 가는지, 그 병력이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어디를 안내해주라는 말도 없었다. 23:45경 김철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상황을 묻기에 제가 국회로 들어오면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안에서 보좌진들이 소파 같은 것을 옮기며 출입문을 봉쇄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저는 제 사무실에 가서 YTN을 보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23:49경에도 이진우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까와 같은 말이었다. 당시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협력관들과 협의를 하었는데 해병대 협력관이 ‘우리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기하는 것밖에 없다. 일본에 있는 국방위원장에게도 전화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 23:50경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전화를 했다. 비상계엄과 국회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고 바로 다음 날 비행기로 급히 귀국하신다고 했다. 00:14경 이진우로부터 전화가 와서 ‘우리 병력 보이느냐, 안내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기에 ‘밖이 보이지도 않고 나갈 수도 없다.’고 말하였다. 이때가 마지막 통화이다. 이진우가 계속 전화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언론 기사를 보니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많이 급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분명히 저는 이진우에게 병력 안

내를 해 주겠다고 제 입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만약 안내를 해 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이진우에게 전화를 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최초 장관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딱 1번 이진우에게 전화를 한 것이 전부다. 특전사령관 역시 22:59경 전화를 받지 않아 아무런 통화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5특임대대 2지역대장 송병규는 23:00경 3지역대장 김의규와 통화하며 ‘안면마스크에 흰색 태극기만 하라’는 지시를 전파하였는데, 그 구체적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2기록 1120번).

김의규 예.
송병규 김의규야. 공포탄 불출 다 됐냐?
김의규 지금 불출 중입니다.
송병규 어. 지금 탄약 차량 탑승은 다 했고?
김의규 예, 차량 탑승 완료했습니다.
송병규 야, 지금 안면마스크에 흰색 태극기만.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송병규 응. 안면마스크에 흰색 태극기만 하고,
김의규 예.
송병규 어. 지금 단장님 여기 오셨거든.
김의규 예, 예.
송병규 상황 좀 급해가지고 빨리 불출하자.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송병규 그 예상 완료 시간.
김의규 어, 지금 인원들이 의정부나 이런 데서 오고 있어서,
송병규 아니, 다 왔대매, 특임대.
김의규 특임중대, 그,
송병규 어.
김의규 15명 출동 완전히 완료됐고,
송병규 그 인원들도 공포탄 불출됐냐고.
김의규 예. 지금 불출은 됐고 삼탄 중입니다, 예.
송병규 아, 오케이. 준비 완료된 걸로 보고할게.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이진우는 23:06경 피고인 김봉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였으나, 23:07경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2분 13초 통화하였다.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35특임대대장 박진우는 23:00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출동준비 완료 보고를 하였는데, 조성현으로부터 ‘국회로 가라, 국회 쪽으로 이동하는데 사람들이 많을테니, 국회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지 말고 대기하라’는 출동지시를 받았고, 위 지시에 따라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에게 ‘(KBS) 그 부근에 여의도공원 주차장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며 출동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3지역대장 김의규를 포함한 총원 16명으로 이루어진 선발대는 23:10경 국회를 향해 출동하였다. 김의규를 포함한 10명이 탑승한 중형 버스 차량 1대, 3명이 탑승한 스타렉스 차량 1대, 3명이 탑승한 코란도 차량 1대 도합 총 3대가 동원되었고, 이들은 출동 당시 소총 15정,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5.56mm 보통탄 1,920발, 5.56mm 예광탄 320발, 9mm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mm 공포탄 360발을 지참하였으며, 실탄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패키지화된 상태로 차량 내에 보관되었다. 위와 같이 35특임대대 3지역대 선발대가 23:10경 국회로 출발하자 제1경비단장 조성현은 제1경비단 35특임대대 지휘통제실로 이동하였다.

참모장 조백인은 23:15경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계엄 임무 수행군으로 특전사와 수방사 예하 부대가 지정되었다.'는 상황 보고를 하며, '지금 평시 상황인데 비상계엄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면 총기·탄약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사령관님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라며 '소총과 탄은 차에 두고 가야 된다'는 취지로 건의하였고, 당시 이진우는 조백인에게 '우리 수방사의 임무는 국회협력단의 도움을 받아서 현관에서 출입자를 통제, 출입자나 국회의원을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총을 다 차에다 내려놓고 비무장으로 이동해라'며 이를 승인하였다. 조백인은 23:17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총기와 탄약은 차량에 놓고,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입고, 3단 진압봉을 챙겨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였

고, 조성현은 23:19경 제1경비단 35특임대대장 박진우에게 ‘첫 번째는 시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민간인과 접촉이나 충돌을 주의해라, 두 번째는 민간인과 충돌 우려가 있으면 보고를 해라, 세 번째는 가지고 간 총기는 다 차량에 두고 방탄헬멧과 방탄복만 착용해라’는 추가 지시를 전파하였다.

제1경비단 2특임대대 1지역대장 김우진은 그 즈음 1지역대 1중대장 KV에게 ‘일단 국회 방향으로 출동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1중대장 KV 포함 총원 11명으로 구성된 2특임대대 선발대가 23:19경 국회를 향해 출동하였다. 출동 당시 소총 11정,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5.56mm 보통탄 975발, 9mm 보통탄 330발, 5.56mm 공포탄 330발을 각 소지하였고, 이중 공포탄은 개별 배분되어 탄창 2개에 10발, 20발씩 도합 30발이 삽탄되어 총기에 결합되었고 다만 약실은 공실인 상태로 소지하였다.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를 포함한 대테러특임부대 16명은 23:10경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3:45경 국회 인근 여의도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운전병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15명이 국회 1문으로 이동하였다가 시민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였으며, 00:24경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국회 7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2특임대대 1지역대 1중대장 KV를 포함한 대테러초동조치부대 11명은 23:19경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을 출발해서 23:46경 국회 1문 부근에 도착하였고, 위 11명이 탄 중형버스가 시민들에 의해 막혀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2) 수도방위사령부 합동방공작전센터

육군특수전사령부 602항공대대는 2024. 12. 3. 22:49경 수도방위사령부 합동방공작전센터(Joint Air Operation Center, 방공작전통제, 이하 ‘Joint Air Operation Center’라 한다)에 특수작전항공단 헬기 12대에 관해 수도권비행제한구역(목적지 여의도)에 대한 진입 승인 신청을 하였다. 뒤늦게 복귀한 수도

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처장 중령 유정훈은 22:53경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김문상(마침 참모장 조백인과 함께 있었다)에게 위 특수작전항공단 헬기 12대의 비행 승인 요청을 대면 보고하였는데, 김문상은 비행 목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김문상은 22:54경 재차 동일한 취지의 긴급 비행 신청을 받고 이를 불승인하였다. 유정훈은 23:19경 특전사가 있는 이천 일대에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602항공대대 소속 헬기의 항적을 식별하였고 김문상의 지시로 23:25경 헬기 조종사들에게 비행을 중지하라는 의미에서 ‘홀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헬기들은 서울 방향 진입을 멈추고 용인 인근 상공에서 머물렀다.

위와 같이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헬기 12대가 용인 상공에서 서울 상공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배회하자,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23:30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김문상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조종래로부터 전화를 받아 ‘참모총장에게 문의·보고를 했고, 참모총장께서 승인을 했다. 들여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조백인에게 보고한 후 헬기 진입을 승인하였다. 이후 위 헬기들은 23:43경 관악산 쪽으로 진입해서 여의도 국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3)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의 21:53경 호출(‘전투복을 입고 사령관실로 조용히 오라’)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실로 이동하며 동작대교를 지날 때 쫘(2024. 12. 3. 22:26경) 참모장 조백인으로부터 ‘YTN 뉴스를 빨리 보라’는 전화를 받았고, 위 전화를 종료한 후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장 노주영에게 전화하여 뉴스 내용을 전해 듣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거순번 2기록 1947번).

노주영 예, 충성. 단장님.

김창학 어. 야, 지금 YTN에 무슨 뉴스 나오냐?

노주영 어? 와이... 금방 확인해보겠습니다, 단장님.

김창학 어. 지금 내가 사령관 전화 받고들어가고 있거든? 뭐있는 거 같은데?

노주영 아, 그러십니까?

김창학 어.

노주영 어, 제가 금방 확인... 네이버로 금방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창학 어, 어, 어.

노주영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김창학 어, 지금 뭐 저기 응, 내가오다가 용산 근처에서 경찰들도 많이 봤는데뭔가대통령실에 뭐 있는 거 같은데?

노주영 '윤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 하면서 지금 생방송으로,

김창학 응.

노주영 뭐 이렇게 뉴스특보 하면서 '반국가세력 반드시 척결할 것.'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 내용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창학 아, 지금 특별담화를 지금 하셔?

노주영 이게 생방송인지는 제가 좀 확인 안 되는데,

김창학 응.

노주영 뭐아래쪽에 막댓글 보니까무슨,

김창학 응.

노주영 계엄, 비상계엄.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기는 합니다.

김창학 그래?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은 22:28경 군사경찰단 소속 준위 YD와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한 통화를 하였고,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장 소령 노주영과 통화하던 중 노주영으로부터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가 참모장 조백인, 제1경비단장 조성현,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을 집무실로 불렀다는 말을 전해 듣고 22:45경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2024. 12. 3. 22:50경 수도방위사령부에 도착해 지휘통제실로 이동하며 22:54경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에게 전화하여 출동가능한 경찰 오토바이(Motor Cycle, 이하 'MC'라 한다) 대수 파악을 지시하였고, 이에 엄정섭은 23:00경 김창학에게

‘바로 출동 가능한 MC는 2대, 간부 소집 시 총 22대까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고, 위 보고를 받은 김창학은 간부 소집 및 특임군사경찰대대 대테러초동조치팀 출동 준비 지시를 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엄정섭은 메신저(텔레그램) 특임군사경찰대대 단체대화방을 통해 기동중대 전 MC 출동 준비 소집 및 대테러초동조치팀 최초 준비 및 최종 특임중대 전 인원 출동 준비 지시를 하달하였다.

위 지시 하달 이후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23:05경 내지 23:10경 사이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지휘통제실 내에 위치한 정보작전과장 사무실에서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회의를 소집해 진행하였는데, 당시 김창학, 전투군사경찰대대장 김대환,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 정보작전과장 노주영이 참석하였고, 위 회의에서 김창학은 ‘현장 도착하면 총기와 탄약 등은 버스에 둔다. 복장은 삼단봉만 휴대한 비무장이다. 버스에서 총기와 탄약을 관리할 인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며 (평소 삼단봉을 휴대하지 않는 MC 탑승 인원들에게도 전 병력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시에 따라) 특임군사경찰대대 기동중대 소속 인원들에게도 특임군사경찰대대 특임중대 창고에서 보관 중인 삼단봉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특임군사경찰대대원들의 경우 대테러작전복인 이른바 ‘흑복’을 착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23:19경 당직사령 상사 YF를 통해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을 호출한 후, 엄정섭에게 ‘나와 특임중대장 KZ 포함 10명으로 구성된 대테러초동조치팀 및 MC 병력 2대가 먼저 출발하겠다. 환복을 준비하고 나머지 특임중대와 기동중대도 소집되는 대로 너와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출동요원들의 명찰을 제거할 것’, ‘위 지시사항을 군사경찰단 지휘통제실에서 전파할 것’을 함께 지시하였다. 당시 엄정섭이 ‘용산으로 갑니까?’라며 목적지를 물어보자 김창학은 ‘용

산이 아니고 국회로 출동한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명찰을 제거하라는 김창학의 지시에 따라 엄정섭은 23:28경 출동 준비 중이던 기동중대 소속 MC 요원 YG(김창학과 같이 출동하는 MC 병력 2명 중 1명)과 통화하며 ‘지금 복면 다 썼으면 군사경찰마크는 다 있어도 되는데 개인 명찰은 떼요.’, ‘이름만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고, 현 시간부터 해서 가는 위치 장소는 국회입니다.’, ‘국회로 가서 안전에 유의해서 천천히 가세요.’, ‘급할 건 없고 알겠죠.’라며 명찰 제거 및 국회 출동을 지시하였다.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운전병, 특임중대장 KZ 등 대테러초동조치팀 10명, MC 2대 2명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단 선발대 14명은 2024. 12. 3. 23:30경 버스 1대와 MC 2대를 이용하여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소총 9정, 저격총 1정, 권총 9정, 테이저건 7정, 삼단봉 8개, 고무탄총 2정, 실탄 5.56mm 525발, 9mm 363발, 저격총용 실탄 7.62mm 40발, 테이저건 카트리지 12개, 고무탄 10발을 지참하였다. 이들은 2024. 12. 4. 00:02~00:04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다.

김창학은 수사기관에서 “12. 3. 22:40경 이후 부대에 도착해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사령관실로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지휘통제실로 갔더니 이진우 사령관님, 조백인 참모장, 조성현 제1경비단장이 대화를 마치고, 사령관님만 전속부관 XN 대위와 함께 어디론가 출발하셨다. 그래서 제가 참모장이나 제1경비단장에게 어디로 출동을 해야 하냐고 물으니 ‘국회’라고 알려주어서, 그때 국회로 출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전부터 수방사는 대테러상황 발생 시 제1경비단이 주축이 되고, 저희 군사경찰단과 화생방 대대가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출동을 하는 것이 매뉴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저도 사무실로 가서 출동준비를 하였다. 사령관님이나 참모장 등으로부터 출동 부대와 인원, 장비 등

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정해야 했고, 대대장들도 소집 명령이 뒤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복귀가 늦어, 저는 초동조치팀이 출발한 직후인 23:30경이 되어서야 출동하게 되었다. 대테러상황 발생 시 제1경비단과 저희 특임대, 질서유지용 MC 팀은 거의 세트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동조치팀 10명과 MC 두 대(2명)를 국회로 출동하도록 했다. 당시 부대로 복귀 중 확인한 대국민담화에 반국가세력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어서 당연히 대테러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 초동조치팀 출동과 거의 동시에 제가 승용차로 국회로 출동하였고, 후발대로 특임대대장 엄정섭 등 61명의 인원을 출동하도록 했다. 매뉴얼대로 개인 화기로 소총, 권총 및 저격용 소총을 가져갔고, 야간 투시경, 무전기 등 통신장비, 실탄박스, 기본적인 식량과 물 등도 소지하였다. 매뉴얼에 있는 개인화기 등은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어서 제가 별도의 지시는 하지 않았고, 다만 질서유지를 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 삼단봉을 챙겨가라는 지시는 따로 하였다. 당시 사령관님이나 참모장으로부터 ‘실탄을 놓고 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나중에 상황이 끝나고 보니 ‘사령관님이 출동 시 총기는 휴대하되 실탄은 휴대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출동 당시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출동 인원들은 실탄도 가지고 국회로 출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엄정섭은 이 법정에서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본부중대, 전투군사경찰대대, 특임대대, 33 군사경찰경호대로 구성되어 있고, 특임대대는 군사경찰중대, 특임중대, 기동중대로 구성되어 있다. 특임대대는 합참 지정 대테러초동조치부대로 테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9명으로 구성된 대테러초동조치팀이 30분 이내로 출동하여 상황 발생 지역의 외곽 경계, 방호 및 차단, 질서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저는 특임대대장이었고, 제 상관으

로는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대령, 수방사령관 이진우가, 제 부하로 특임중대장 KZ 대위가 있었다. 비상계엄 후 이진우 사령관이 김창학 등을 집무실로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 도 22:45경 부대에 복귀하였다. 저는 22:54경 김창학으로부터 ‘지금 출동할 수 있는 MC 가 몇 대인지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확인한 후 23:00경 김창학에게 ‘현재 바로 출동할 수 있는 MC는 두 대고 간부들 소집이 되면 22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러자 김창학은 ‘부대의 모든 MC와 특임대대의 대테러초동조치팀은 출동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있는 저희 특임대대방에 소집명령을 하달했 다. 이후 군사경찰단 지휘통제실 내 정보작전과장 사무실에서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노주 영 소령, 전투대 대장 김대환 중령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김창학으로부터 복장, 출 동 장소 등에 대해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 상황관리담당관 김평재는 2024. 12. 3. 22:30경 메신저(텔레그램) 수사상황실 단체대화방에 ‘지금 담화문 발표중인데 비상계엄 선포되었습니다.’ 라고 올렸고, 이에 수사상황실장 강준규가 ‘에?’, ‘사유는?’이라고 올리자 김평재는 ‘헌정질서 위해 비상계엄 선포라고 합니다.’라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에 이 사건 계엄선포 사실을 공유하였다. 이에 강준규는 22:32경 ‘헐...국방부에서 하달된 거 있습니까? 케이직 스(케이직스, 군 내부 전산망) 체크 바랍니다.’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김평재는 ‘지금 대통령 담화문 발표중입니다. 실시간으로’라고 올린 후 케이직스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하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별도의 지시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수사상 황실장 강준규는 22:38경 및 22:42경 김평재에게 ‘김성곤 기획처장님의 지시다, 위기조치 반 소집을 전파해라, 범죄정보과장도 포함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김평재는 당직사령 김 수지에게 ‘기획처장님이

위기조치반 소집을 지시하셔서, 소집 전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위기조치반 소집 지시 사실을 전달하였고, 이후 강준규는 22:50경, 후임 수사상황실장 예정자인 장성관은 23:00경 각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인 22:43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계엄이 선포 되었으니 수사관 100명을 방첩사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확인해 볼게’라고 답변하였다. 박헌수는 22:51경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에게 전화하여 ‘장관님이 당신과 나를 찾으신다고 한다, 나도 부대로 들어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하였고, 22:53경 재차 전화하여 ‘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하였다. 검토해보라’,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을 요청하니까 구성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은 조사본부 수사단장 정승기에게 연락해 국방부 조사본부 내에서 차출 가능한 수사관 인원 확인을 지시하였고, 23:10경 육군수사단장 인치열, 23:12경 해군수사단장 김기진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해 ‘방첩사령부에서 수사관 지원 요청이 왔다’며 ‘육군수사단과 해군수사단은 각 몇 명을 염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별도로 방첩사령부 수사관 파견과 관련한 법적 근거에 대해 계엄법 시행령 제3조를⁶⁴⁾ 확인해 박헌수에게 ‘계엄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참고하십시오.’, ‘명문화된 규정은 없고 지원 관련하여 언급된 조항이 이것밖에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박헌수가 국방부 조사본부 5층 지휘통제실로 들어오자, 김상용은 박헌수에게 ‘국방부 조사본부

64) 계엄법 시행령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감독등)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경찰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② 계엄사령관은 계엄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외의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내 가용 수사관 인원을 파악 중이다. 제가 육군수사단, 해군수사단 말고도 공군수사단 및 해병대수사단까지는 직접 연락하여 염출 가용 인원 파악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합참으로 출발하자고 하셔서 육군하고 해군수사단까지만 연락해 두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즈음인 23:24경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겸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 이재식이 박헌수에게 전화하여 '야, 어디냐? 합참 지하로 빨리 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박헌수가 '응. 가고 있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후 박헌수, 김상용은 23:31경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지하 3층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입구 게이트를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 대기하였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은 2024. 12. 3. 23:05경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와 통화하면서 구민회로부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해당 인원들에 대한 명단과 연락처를 좀 알려 달라', '구금시설 현황을 확인해야 되는데, 수도권 내에 있는 구금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 달라'는 문의를 받아 '확인해 볼게, 전화 줄게'라고 답변하였고, 이를 수사단장 정승기에게 보고하였다.

정승기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지도과 수사심사관 이진욱으로부터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해 22:55경 '국회 폐쇄 가능 짜라시도 돌고 있습니다.'는 메시지를, 23:07경 '국회 출입문 폐쇄됐다는 말이 있습니다.'는 메시지를, 같은 날 23:20경 '수방사 국회 이동 중,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이라는 메시지를 각 수신하였다.

나. 2024. 12. 3. 23:23경 포고령 공고 이후 2024. 12. 4. 01:03경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 이전까지의 상황

1) 대통령실

이 사건 포고령 공고 이후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 김홍식은 2024. 12. 3. 23:25경 수

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대통령 관저의 경비 병력 보강을 요청하였는데, 조성현은 위 요청에 관해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의 승인을 받아 12. 4. 00:40경 제1경비단 제1경비 대대 소속 70명을 대통령 관저 경비 병력으로 추가 투입하였고, 위 병력은 01:08경 용 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12. 3. 23:33:25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의 국방부 비화폰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이진우는 23:30경 국회 인근에 도착한 후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인 '무궁화폰'으로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23:33:43경 걸려온 전화를 받아 상황보고('다 막혀 있어 부하들에게 총은 두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를 하는 중이어서 위 국방부 비화폰을 자신의 전속부관인 XN에게 건넸고, XN로부터 위 전화가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걸려온 전화임을 알려주자 피고인 김용현과의 전화를 종료하고 피고인 윤석열과 통화하였다. 당시 피고인 윤석열은 이진우에게 '거기 현장 상황이 어때요?'라고 물었고, 이진우로부터 '지금 여기 사람이 너무 많고, 경찰 경력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 막고 있어서, 저희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협조 받아서 담 넘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도 내려놓고'라며 '국회 경내로 들어가는 문이 다 막혀 있어 부하들에게 총을 두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보고받았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4. 00:03경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에게, 00:30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전화하였다. 당시 피고인 윤석열은 곽종근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곽종근과의 통화를 마친 피고인 윤석열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당시 이진우는 여의도 진지로 이동 중이었다)에게 세 차례 국방부 비화폰으로 전화하여 00:32:18경부터 29초간, 00:34:13

경부터 16초간, 00:36:10경부터 25초간 각 통화하였다. 위 통화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라고 물었고, 이에 이진우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는 병력이 갔는데 그 앞에서 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는 취지로 보고받았다. 또 피고인 윤석열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에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야,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을 하였다.

이진우는 피고인 윤석열과의 위 통화 직후 00:37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전화하여 이상현과 통화하였고, 00:42경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야, 안에 지금 들어갔다, 인원들 끌어내라’,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도 ‘국회의사당 본관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진우의 전속부관으로 차량 안에 같이 탑승하여 이진우의 전화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었던 XN는 이 법정에서 “당시 스마트폰으로 YTN을 보고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계속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화면이었다. 피고인 윤석열과 이진우의 두 번째 통화로 기억하는데, 대통령이 전화로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라고 상황을 물어서 사령관계서 ‘국회 본관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에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진우는 ‘알았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당시 제가 병력이 들어가서 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을 가마 태워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이미지로 연상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저는 ‘포고령이 발령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나보다.’ 정도로 생각했다. 이후 이진우가 예하 지휘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국방부 및 군

가) 국방부 작전회의실(계엄상황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포고령이 23:23경 공고되었다. 박안수는 23:30경 내지 23:40경 작전회의실에 위치한 계엄과장 권영환으로부터 이 사건 포고령과 관련해 ‘정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 김용현에게 ‘장관님, 이것 대통령님께 권한을 위임받으셔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임받으셨습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위임받았다’, ‘법적 검토가 완료된 문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김봉식과 23:11경 약 1분 21초가량 통화하였고, 23:28경 약 38초 가량 통화하였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겸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 이재식은 2024. 12. 3. 23:24경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에게 전화하여 ‘계엄사령부 2실 8처 중 치안처가 있는데, 치안처 처장을 조사본부 인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성이 너무 늦어진다.’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로 빨리 올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계엄사령부 2실 8처 운용 요원들의 소집이 늦어지자 합동참모본부 전 인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명령을 발령하여, 2024. 12. 4. 00:06경 ‘계엄사 2실 8처 운용요원 총원 작전회의실 즉각 소집 - 계엄사 기조실장 명’이라는 문자가 발송되었다.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 12. 4. 00:00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3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여인형은 ‘지휘소가 개소되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박안수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곽종근과 2024. 12. 4. 00:14:17경 2분 48초, 00:21:18경 26초, 00:39:05초경 1분 29초, 00:42:42경 25초 각 통화하였다(00:14경, 00:39경 통화는 곽종근이 박안수에게, 00:21경, 00:42경 통화는 박안수가 곽종근에게 걸었다). 최초 통화 당시 곽종근은 박안수에게 '지휘소 개소되었다, 상황실이 개소되었다', '병력들이 이동한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 이에 박안수가 '무슨 이야기냐'는 취지로 되묻자 곽종근은 '국회, 국회'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00:39경 통화 당시 곽종근으로부터 '예하부대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해야 된다고 건의가 들어왔다. 결심해줘라.'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이에 박안수는 작전회의실에 위치한 계엄사령부 참모진들에게 '특전사령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해도 되냐 자꾸 물어보는데 이것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의견을 구하였고, 참모진들이 '특전사령관의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 승인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자 00:42경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금지다.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지시하였다.

박안수는 위와 같이 곽종근과 통화하는 와중인 00:17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1분 56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이진우는 박안수에게 '지휘소 개소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 '병력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게 했다'는 취지의 최초 보고를 하였다.

박안수는 00:31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국회에 병력과 경력을 지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그때로부터 01:00경 사이에 국방부 정책실장 김흥준에게 '현장에 사람이 없다. 병력을 증원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고,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 이재식에게 '병력이 부족하다는데 가용병력을 파악해 달라'며 '2사단(2신속대응사단)도 있지 않나? 2사단도 가용하지 않나'라고 확인하였다. 이에 이재식은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권영환에게 유선으로 ‘2신속대응사단 준비상황을 한 번 확인해 봐라’, ‘2신속대응사단 예하 201, 203여단에 대해 출동은 아니고,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충돌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전달해라’고 지시하였으며, 위 지시를 받은 권영환은 재차 대테러특수전과장 정의현, 한영철에게 ‘제2신속대응사단 예하에 있는 201여단과 203여단에 출동준비 지시를 하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가용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박안수는 2024. 12. 4. 00:45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1분 11초 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여인형으로부터 경찰 증원을 요청받아, 00:47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1분 57초가량 통화하며 이진우에게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과 협조하라', '서울경찰청장님하고 협조해서 국민들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후, 참모진들과 '수방사령관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님께도 전화를 해서 국회로 경력을 좀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안수는 00:50경 즈음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권영환에게 ‘경찰청장 전화번호를 알아오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지시에 권영환이 ‘서울경찰청장의 전화번호입니까, 아니면 그 위의 경찰청장의 전화번호입니까?’라 고 되묻자 ‘서울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전화번호를 알아와라’고 말하였고, 권영환은 위 지시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계엄상황실에 위치해 있던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 계획장교 김성준에게 ‘서울경찰청장하고 경찰청장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 알려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김성준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 내선으로 전화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 상황관리담당관 김평재에게 ‘계엄사령관님께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봐달라고 한다.’고 요청하였고, 김평재를 통해 수사상황실장 강준규로부터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의 전화번호(전화번호 생략)을 전달받았다(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의 전화번호는 별도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안수는 같은 날 00:5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27초가량 통화하면서 피고인 조지호에게 ‘지금 국회에 경력을 좀 집중 지원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조지호는 '(경력) 여기도 투입되어 있고, 저기도 투입되어 있고 약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그래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방첩사령부

(1)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12. 3. 23:10경 내지 23:20경 사이 5층에 위치한 회의실에 사령부 주요직위자들을 소집하였다. 당시 여인형은 참모장 이경민으로부터 포고령이 발령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경민에게 이를 방첩사령부 처·실장 단체 대화방에 올릴 것을 지시하였고 주요직위자들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면서 ‘대통령님과 장관의 지시다’, ‘작계대로 그냥 해’라고 하였다. 여인형은 1처장 정성우에게 ‘너희들도 다 내려가서 임무 수행해’라고 지시하였는데, 당시 정성우로부터 ‘이게(선관위 출동, 서버 카피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야, 비상계엄인데 이씨’라고 대답하여 지시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여인형은 2024. 12. 3. 23:19경 피고인 윤석열과 통화하였다(합동수사본부를 개소 중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정성우는 2024. 12. 3. 23:50경 임무 지시를 위해 인원들을 모았는데, 당시 군사보안 실장 이종훈, 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 포렌식센터 겸 과학수사센터장 송제영, 정보보호단장 박태주, 사이버수사과장 안형욱, 보안조사과장 고광일, 868경호경비부대장 양승철, 868경호대장 최승리 등 정성우 포함 9명이 모였다. 정성우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피고인 김용현이 지시한 내용을 전달한 후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여론조사꽃,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4개 장

소의 서버실을 확보하고 그곳의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어 와야 하는 임무다.’, ‘상황이 너무 불명확하니까 대령급 정도가 팀장으로 가야 현장에서 무언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령 네 명을 불렀다’, ‘이 사건 포고령 2번(‘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과 관련해서 의심되는 장소를 확인하는 차원인 것 같다.’고 말하고 100명의 인원을 4개로 팀을 나누는 등 세부적인 지시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성우를 포함해 당시 참석한 인원들은 해당 임무가 이 사건 포고령 제2조에 비추어 가능한 것인지, 방첩사가 기술적으로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어 올 현실적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토의하면서 수사관 출신인 송제영이 ‘위법할 수 있다. 형사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소 회의적인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정성우는 ‘일단 출발을 시키라’는 여인형의 지시를 받고 2024. 12. 4. 00:30경 팀장들에게 ‘각 팀별 일단 출동은 하되 임의로 건물에 진입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지시하며 ‘내가 법무실에 갔다 오겠다. 그때까지 절대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 대기해라’고 말하였고, 송제영에게 ‘나도 잘 모르는데 사령관님에게 받은 예비역 장군이라는데 일단 적어봐’, ‘야. 이런 전화번호가 나한테, 너도 한 번 알고 있어라’라며 피고인 노상원의 전화번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현장지휘관(고동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정성우는 방첩사령부 법무실로 찾아가 2024. 12. 4. 00:34경부터 00:44경까지 법무실장 대령 윤비나, 법무장교 이승호 등 법무관 7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전산실 출입통제가 가능한지’, ‘영장 없이 서버를 복제하거나 떼어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실 소속 법무관 7명은 모두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무관들은 ‘계엄령 하에서도 형사소송법의 주요 규정들은 당연히 적용이 된다. 포고령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포고령의 내용에 의할 때 영장주

의만 제한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 이외에 나머지 형사소송법 규정들은 적용이 되어야 한다. 수사 과정 중에 적법절차에 대한 규정,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 사건 포고령에 근거한 임무수행이라고 하더라도 포고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로 압수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소급해서 적용할 법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고, 당시 법무관 1명 은 ‘처장님, 이 건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정성우가 법무실에서 나올 당시인 2024. 12. 4. 00:44경 피고인 노상원이 정성우에게 전화하여 출발을 독촉하였고, 00:51경 내지 00:56경 또 전화를 걸어 출발을 재촉하면서 ‘우리가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장악하고 있다. 너희가 와서 서버를 복사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정성우가 ‘뭘 소리시냐. 우리가 할 수 없다. 법무검토 다 했는데 할 수 없다, 우리가 맡은 임무는 전산실 서버 출입통제까지 만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의와 절차를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된다면 전산직원이 다 와서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현장상황도 모르고 범죄혐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버를 복사하냐?’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노상원은 정성우에게 ‘그러면 아침에 전산실 직원이 오면 동의받고 그렇게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정성우의 지시에 따라 방첩사령부 1처장실 산하 인원 함께 115명은 2024. 12. 4. 00:58경부터 01:43경까지 4팀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출동하였는데, 정성우는 00:58~59경 팀장급인 송제영, 박태주, 이종훈 등에게 전화해 ‘야,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원거리 대기해라. 들어가지 마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각 인원들에게 문자로 ‘법무적인 문제가 있다’, ‘떨어져 있어라’, ‘원거리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달

하였다. 정성우는 01:00경 방첩사령부 ○층에 위치한 방첩사령관실로 찾아가 여인형에게 위 법무검토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서버 복제 및 탈거에 대한 기술적 문제도 있어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는데, 여인형으로부터 임무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지는 못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첩사령부 115명이 2024. 12. 4. 00:58경부터 01:43경까지 4팀으로 나누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 4곳으로 출동하였는데, 1팀의 경우 00:58경부터 01:27경까지 팀장 포렌식센터장 송제영, 868경호경비부대장 양승철 및 경호경비 부대원 9명 포함 총인원 27명이 사복 차림으로 고무탄총 1정, 고무탄 5발을 지참한 채 승용차 4대를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향해 출발하였고, 2팀의 경우 01:01경부터 01:32경까지 팀장 정보보호단장 박태주, 868경호경비부대원 9명 포함총인원 27명이 사복 차림으로 가스총 1정, 가스총 카트리지 1개를 지참한 채 승용차 6대를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를 향해 출발하였으며, 3팀의 경우 01:02경부터 01:38경까지 팀장 군사보안실장 이종훈, 868경호경비부대원 9명 포함 총인원 33명이 사복 차림으로 가스총 1정, 가스총 카트리지 1개를 지참한 채 승용차 8대를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향해 출발하였고, 마지막 4팀은 01:03경부터 01:43경까지 팀장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 사이버수사과장 안형욱, 868경호경비 부대원 10명 포함 총인원 28명이 사복 차림으로 가스총 1정, 가스총 카트리지 1개를 지참한 채 승용차 7대를 이용해 여론조사꽃을 향해 출발하였다. 한편 방첩사령부 1처장 산하 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은 위와 같이 4팀으로 출동하기 전에 사이버보안실 소속 과장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저희는 그 선관위 서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어디에 하드기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가져오

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장비들조차도 없다'라는 의견을 들었고, 특히 출동 직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며 '가면 안 된다'고 판단하여 4팀 인원들에게 '우리는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여인형은 12. 3. 23:55경 정성우에게 전화해 '너네들 (선거관리위원회로 향할) 경호경비 부대를 국회로 돌릴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정성우로부터 '저희 인원들의 생존권도 있고 그건 안 됩니다. 저희 아무것도 지금 인원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래. 알았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희 또한 12. 4. 00:00경 868경호경비부대장 양승철에게 전화하여 '경호대원 10명을 방첩수사단으로 보내 달라, 해당 인원들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정성우는 이 법정에서 "김용현 장관이 주재하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내용은 공유받은 상황이었다. 23:10~20경 5층 회의실에서 저를 포함 대령들, 실장들이 다 모였는데, 여인형은 별다른 회의 진행 없이 '작계대로 해', '너희들도 다 내려가서 임무 수행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고 23:20경 회의실에서 여인형 사령관에게 '아까 제게 주신 명령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나 여인형이 '비상계엄인데 이 씨'라고 했다. 당시 여인형이 '포고령을 찾아봐'라고 지시하여 23:23경 발령된 포고령을 확인해 보게 되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내용과 관련된 일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23:50경쯤 저와 군사보안실장 이종훈, 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 과학수사(포렌식)센터장 송제영, 정보보호단장 박태주, 이렇게 4명의 팀장들, 그리고 868경호경비부대장 양승철 등을 포함하여 모두 9명이 제 방에 모였고, 제가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한 장관님의 지시사항을 알려주고 여인형이 부여한 임무를 하달하

자 이어서 00:20~30경까지 한 40분간 위법성, 절차상의 문제 등에 관한 토의를 했다. 당시 토의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테러나 간첩 혐의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곳의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올 현실적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지, 기술이 있더라도 법적인 문제, 예를 들어 영장이나 동의, 위법수집증거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토의를 마치고 00:34경 법무실로 갔고, 약 10분간 여인형 사령관이 지시한 임무에 관하여 법적 검토를 받았다. 당시 법무실 법무장교 이승호가 ‘계엄령 하에서도 형사 소송법의 주요 규정들은 당연히 적용이 된다. 포고령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포고령의 내용에 의할 때 영장주의만 제한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 이외에 나머지 형사소송법 규정들은 적용이 되어야 한다. 특히 수사 과정 중에 적법절차에 대한 규정,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준수되어야 한다. 포고령이 효력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포고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 압수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소급해서 적용할 법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해주었다. 그래서 저 혼자 5층 회의실로 올라가서 여인형에게 법무실 검토 내용을 말했는데 당시 여인형 사령관은 핸드폰 3~4대로 계속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어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12. 3. 23:55경 그리고 12. 4. 00:02경 여인형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경호부대를 국회로 돌릴 수 있느냐?’고 확인하기에 ‘돌릴 수 없다. 안 된다.’라고 답하였다. 당시 방첩수사단에서 국회로 부대원들을 출동시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만 우리가 4곳으로 가야 하는데 인원들을 돌리면 우리 생존권이나 자위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병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반대했다.”, “노상원으로부터 12. 3. 23:32경부터 12. 4. 00:56 경까지 5차례 전화를 받았는데 대부분 ‘너희들 출발했느냐?’는 등 재촉하듯이 짜증을 내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막 부대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시키기

직전인 00:51경 또는 00:56경 통화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노상원이 ‘우리가 선관위 전산실을 장악했으니 너희가 와서 카피를 해라’고 말했다. 당시는 법무검토가 끝난 상황이었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임무 맡은 것은 그게 아니다. 영장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동의부터 절차는 다 지켜야 한다. 동의 없이 어떻게 서버를 카피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을 했다. 계속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한발 물리서면서 ‘그러면 내일 전산실 직원이 출근하면 동의를 받아라.’고 말했다. 당시 노상원에게 왜 서버 카피를 강조하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너는 몰라도 된다.’는 식이었다. 나중에 문상호가 연락이 와서 ‘너희들 출발했나?’고 물어보기에 제가 ‘도대체 노상원 장군은 뭘니까?’라고 물었는데, 문상호로부터 ‘나도 몰라’라는 답변만 들었다. 당시 정보사령부에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12. 4. 00:59경부터 01:43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꽃에 함께 115명을 순차적으로 출동시켰다. 가용 인원이 100명 정도라는 보고를 받고 4개 팀으로 나누어 팀장들에게 편성과 장비를 위임했고, 경호경비부대장이 ‘가스총 3개와 고무탄총 1개가 있다.’고 해서 팀별로 한 개씩 나누어 지참을 하도록 했고 ‘반드시 현장에서 자위권 차원에서만 사용해라.’고 이야기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오버하지 마라,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등의 당부를 했다. 출동한 방첩사 부대원들이 포렌식 장비를 준비하지는 않았다. 기술적으로 검토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포렌식센터장 송제영이 ‘아예 장비 다 지참하지 말자’고 했다.”, “제 지시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 현장으로 출동한 방첩사 부대원들 중 실제 임무지역에 도착한 부대원들은 없다. 애초 제 통제 없이 임의로 건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12. 4. 01:15~20경 전화로 팀장들과 사이에 ‘이거 법적인 문제가 있다. 원거리 대기하고 들어

가지 마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01:00경이 넘어서 다시 5층 회의실로 올라갔고, 01:20~01:30경쯤에야 ‘국회에서 01:03경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즉시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부대원들에게 ‘들어가지 마라, 물러나라, 원거리 대기해라.’고 지시했다. 중앙선관위 쪽으로 간 팀은 선바위역, 수원 쪽 팀은 의왕역에서 반쯤, 관악 쪽 팀은 사당역, 여론조사꽃 쪽 팀은 반포대교 밑까지 가거나 그쯤에서 대기만 하고 있던 상황으로 실제 진입한 팀은 없었다. 사령관으로부터 별다른 지시가 없기에 자체 판단하여 02:30경 철수하라고 지시했다. 부대원들은 02:50~03:04경 순차적으로 방첩사 사령부로 복귀했다. 당시 여인형이 제게 최초 임무를 준 이후 경호부대를 돌릴 수 있느냐는 전화를 1번 한 것 외에는 어떠한 연락이나 지시가 없었다. 제가 보기에 사령관은 그때 방첩수사단이 국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 몰입되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유재원은 수사기관에서 “정성우 처장이 처장실에 모여 있던 저를 비롯한 참모들 8명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우리 임무는 4군데 서버실 현장 확보다. 일단 현장 확보하고 기다리다가 국정원 등이 와서 추가 작업을 할 텐데 안 되면 너희가 가져와라’고 했다.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 등의 데이터 자료 관련 내용이라 의아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이 사건 포고령 2항에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 그것 관련이라고 생각했다. 팀을 4개로 나누어 1팀은 송제영(중앙선관위), 2팀은 박태주(관악선관위), 3팀은 이종훈(수원 선관위연수원), 4팀은 저(여론조사꽃) 이렇게 팀장으로 해서 과학수사센터 직원과 사이버보안실 직원, 868경호부대, 정보보호단 등의 인원을 4개로 나눠서 팀에 배치하는 식이었다. 팀장까지만 정하였고 팀원은 각각 담당하는 부서 인원들을 적당히 나눠서 현장으로 바로 출발시키는 식으로 논의가 되었다. 1처장이 ‘일단 준비하고, 원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법무실과 토의해서 별도 지시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처장님 지시를 받고 나온 시간이 00:10경인데 저희들끼리 또 회의를 해 보니 ‘서버가 뭔지, 전산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시 이행이 가능한가?’ 등등 여러 반발이 있었다. 논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01:00경이 되었고 TV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하려고 모이는 상황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01:26경쯤 1처장이 출발했는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해서 형식적으로 지시를 이행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사이버실 윤진영 과장, 과학수사센터 안형욱 중령과 박성호 사무관 이렇게 몇 명과 제 차로 출발해서 잠수교 남단으로 갔다. 그곳에서 대기하면서 저희랑 합류할 예정인 팀원들에게도 ‘현장으로 가지 말고 근처에만 있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여인형은 2024. 12. 3. 23:47경, 23:52경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두 차례 통화하였는데, 당시 여인형은 재차 박헌수에게 ‘너희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 줘, 되는대로 빨리, 가용인원이라도 보내줘’라고 재촉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 역시 23:52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과 통화해 수사관 100명 지원을 재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출동을 하는데, 국가수사본부에서 인솔하고 같이 다닐 사람 5명을 지원해 달라’고 말하였다. 구민회는 12. 4. 00:10경에도 김성곤, 이현일과 삼자간 그룹통화를 하면서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의 지원 명단 회신을 재촉하였다. 구민회는 위 통화 직후인 00:13경 이현일로부터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5명의 이름과 팀장(정일현)의 연락처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구민회는 00:14경 이현일에게 다시 전화해 ‘출동인원이 늘어나서 5명을 추가로 요청한다.’고 말하였고, 00:20경 방첩수사단 군사기밀수사과 2팀장 소령 신동걸에게, 이현일로부터 수신한 경찰 5명(강력7팀장 정일현, YP,

YQ, YR, YS)의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으며, 00:23경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에게 전화하여 ‘방첩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국회로 출발한다.’고 알려주었고, 00:40경 이현일로부터 기존에 보내준 5명에 새로 5명이 추가된 10명의 명단(정일현, YT, YU, YP, LT, YR, YS, YV, YW, YX) 및 정일현과 LT의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구민회는 00:43경 이현일에게 다시 전화해 1분 28초간 통화하며 추가 파견 경찰 명단을 요청하였고, 00:45경 출동한 방첩수사단 팀장급 수사관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입니다.’라며 경찰관 10명의 이름과 그중 2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하였다.

(4)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군사기밀수사과 2팀장 신동걸은 2024. 12. 3. 23:50경 군사기밀수사과 사무실로 출근하였는데, 당시 군사기밀수사과 소속 부대원들이 차례로 복귀중에 있었고, 선임 팀장인 군사기밀수사과 1팀장 김보현이 출근한 인원들을 점검한 후 방첩수사단 회의에 참석한 상황이었다. 신동걸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 소속 소령 최석일로부터 ‘수사관 1명은 체육관으로 보내주고, 차량 2대를 체육관 앞으로 보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회의에 다녀온 1팀장 김보현으로부터도 ‘수사관 1명을 체육관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하달받았다. 신동걸은 방첩수사단 건물 3층에 위치한 수사조정과 사무실에서 최석일로부터 ‘복장이 갖춰진 인원 5명을 먼저 수사단장실 앞으로 모이게 해줘라’는 지시를 받았다.

(5) 한편 여인형은 2024. 12. 4. 00:00경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약 23초가량 박안수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후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나승민에게 ‘대령 서성훈, 중령 김종일, 중령 윤유중, 소령 김정길’의 명단을 불러주며 ‘4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즈음 여인형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전화하여 ‘빨리 우리 수사관들이라도 빨리 출동을 시켜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에 김대우가 ‘아직 비상소집도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합동수사단 구성이 안 됐습니다.’는 취지로 말하자, 여인형은 ‘우리 수사관들부터 들어오는 대로 빨리 먼저 출동시켜라’고 다시 말하고, 12. 4. 00:25경 피고인 윤석열과 전화통화를 하였다(출동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우는 00:25경부터 01:05경까지 5명 당 1개조를 편성해 방첩수사단 소속 수사관 49명을 순차적으로 국회로 출발시켰는데, 당시 김대우는 위 수사관들에게 ‘14명은 민간인이고 정치인이다 보니 방첩사혼자는 할 수 없고, 경찰청, 국방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회로 갈 것’, ‘경찰 주도하에 지원할 것’, ‘검거하면 인수받아 이송할 것’이라고 지시하였고, ‘신동걸, 이재명’, ‘최진욱, 한동훈’과 같은 방식으로 호명하여 1조 조장 신동걸의 경우 체포 대상으로 이재명, 2조 조장 최진욱의 경우 체포 대상으로 한동훈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체포대상자를 부여하면서 ‘체포조는 지금 체육관 가면 스타렉스 차량이 있을 테니까 그걸 타고 바로 출발하라’고 지시하였다. 김대우는 당시 이재학이 출력해 온 이 사건 포고령을 수사관들에게 배부하며 ‘가면서 읽어봐라’고 말하였다. 구민회 역시 출발하는 수사관들에게 재차 ‘단독행위를 하지 말라’, ‘삼단봉 등 무력 사용하지 말라’, ‘경찰 측 연락처를 줄 테니 가면서 연락해서 만나라’, ‘구체적인 것은 가면서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에 신동걸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라고 묻자 ‘국회로 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김대우는 이 법정에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22:50경부터 이재학, 구민회와 토의를 하고 있었는데, 23:30경 여인형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우리 수사관이라도 빨리 국회 쪽으로 출동시키자.’는 지시를 받았다. 제가 ‘우리 수사관들도 다 안 왔다. 조사본부에서는 올 수 있는 인력이 없고, 경찰은 10명 정도 국회로 올 수 있다고 한다. 합동수사단이 구

성도 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나 사령관께서 같은 취지로 ‘일단 집결된 수사관부터 국회로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장관님이나 계엄사령관의 지시가 뭔가 떨어졌나보다. 일단 출동시키라고 하니까 들어오는 대로 먼저 출동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구민회에게 ‘비상응소에 응하여 소집된 수사관들을 수사단 건물 1층에 먼저 집결시키자.’고 지시를 한 것으로 기억난다. 다만 그때 ‘합동수사단이 아니라 방첩사 수사관들만 출동해서 14명을 체포한다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했고, 그래서 수사관이 5명씩 모이면 바로바로 출동을 시킬 때 ‘우리가 직접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TV를 통해 특전사 병력이나 경찰이 국회를 에워싸고 있는 것과 국민들도 국회를 에워싸고 있는 등 엄청난 혼란상황을 봤기 때문에 ‘우리 임무는 직접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전사든 경찰이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14명이 됐든 몇 명의 인원을 신병인계하면 우리는 그 신병만 인계받아 수방사로 이송하는 임무만 하면 된다. 경찰과 합류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절대 민간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당시 계엄군이나 경찰이 14명의 이름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체포를 해서 신병을 인계해 주는 주체가 특전사인지 경찰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당시 체포를 해서 신병을 인계해 주는 것은 특전사라고 생각했다.”, “여인형의 지시를 받고 ‘수사단 1층에서 비상소집에 응한 인원을 바로바로 집결시키라. 오는 인원들은 차량 고려해서 5명 정도씩 하면 되겠다.’는 지시를 하였다. 2024. 12. 4. 00:25경부터 01:05경 사이에 차례로 10개조 49명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이미 14명의 명단을 받았고 출동 인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해야 하니까 단순하게 ‘국회로 가라.’고만 할 수 없어, ‘1조는 대상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에 대한 신병을 인계받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는 임무다. 우리가 직접 체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1개조씩 순서대로 명단에 적힌 이름 1명씩을 부여해 출동시켰다. 그런데 4, 5조쯤 되니까 전체 조가 14개 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나중에는 2명씩에게 명단에 적힌 이름 1명을 부여해 10조까지 49명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계엄 시에는 합동수사단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영장 없이 어떤 체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합동수사단이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첩사 수사관들만 출동을 시키는 상황이다 보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몇 개 조를 출동시켰을 무렵 여인형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이 3명에 집중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00:38경 구민회에게 그룹콜을 하여 출동조 팀장들에게 위 3명에 집중해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01:20경 방첩사 수사관들이 국회 정문 쪽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민회는 이 법정에서 “수사단 1층에서 김대우 단장, 이재학 대령과 함께 12. 4. 00:25~01:05경까지 방첩사 부대원 49명을 차례로 국회로 출동시켰다. 국회로 가라는 단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1층 로비에 소집된 수사관들을 5명씩 1개조로 하여 신동걸 소령이 조장인 1조는 ‘이재명’, 최진욱 소령이 조장인 2조는 ‘한동훈’과 같이 각 조별로 개별적인 체포대상자를 부여하여 국회로 출동시켰다. 부대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옷을 갈아입고 모이는 대로 그냥 급하게 출동시켰다. 김대우는 인원들에게 ‘경찰 주도 하에 지원할 것’, ‘검거되면 인수받아 이송할 것’ 등을 지시하였고, 저는 ‘단독행위를 하지 말 것’, ‘삼단봉 등 무력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하였다. 수사관들은 흑복을 입은 상태로 수갑, 포승줄 등 장비가 패키지화된 가방인 수사장비세트를 소지한 채 출동하였다.”, “저는 출동한 수사관들이 경찰, 조사본부 수사관 등과 함께 명단 대상자를 체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12. 3. 23:23경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었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1명이 인쇄를 해 와

1층에서 단장님, 실장님, 수사단 부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저는 포고령 1호를 근거로 주요 인사를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본래 무슨 중대사건에 연루된 것이라 생각했다가 포고령을 보고 ‘중대사건에 연루되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체포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 지시에 따라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은 2024. 12. 4. 00:25부터 01:05경까지 각 조별로 5명씩 총 49명이 차례로 출동하였는데, 이중 방첩수사단 군사기밀수사과 2팀장 신동걸은 1조 소속 수사관 김민수, ZC, ZD, ZE 4명과 함께 체육관으로 이동해 백팩 형태로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이 포함된 수사장비세트를 수령한 후 2024. 12. 4. 00:25경 국회로 출동하면서 영등포경찰서 소속 강력7팀장 경감 정일현에게 전화해 경찰의 현재 위치 및 만날 장소 등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신동걸이 ‘지금 국회로 가라고 해서 가는데 국회를 가본 적이 없다,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질문하자 정일현은 ‘국회 앞 주유소로 오면 된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신동걸은 재차 ‘국회 앞 주유소가 어느 쪽에 있느냐, 검색해서 가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정일현은 00:28경 신동걸에게 주유소 위치가 표시된 내비게이션 캡처 화면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며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쪽에서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동걸은 00:33경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YP으로부터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YP 경장입니다. 정일현 경감 연락 부재시 저한테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YP에게 ‘네, 확인했습니다. 방첩사 신동걸 소령입니다’라고 회신하였으며, 재차 정일현과 통화하여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2024. 12. 4. 00:25경 출발한 이후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는 00:37경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희의 휴대전화를 통해 국회

로 출동 중인 방첩수사단 소속 수사관들과 그룹통화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해당 통화에는 구민회, ZF, ZG, ZH, ZI, SG, 최진욱이 참여하였고, 당시 김대우는 위 인원들에게 ‘7개 팀 모두 부여된 인원이 아니라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3명 검거에 집중하라’, ‘3명중 먼저 검거된 인원이 있으면 포박하거나 수갑을 채워 수방사로 데리고 가라’,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또는 수갑을 채워서 수방사로 신병을 보내라’, ‘707, 수방사 병력이 의원들을 확보하면 인계 받아라’, ‘경찰과 현장병력들 통해서 임무를 수행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 12. 4. 00:30경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한동훈, 우원식, 이재명을 먼저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00:34경 김대우에게 전화해서 이를 전달하였다. 김대우에게는 직접적으로 ‘체포’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제 입에서 나온 임무는 ‘체포’가 아니라 ‘신병 인수’다. 누군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합동 수사본부라서 그 신병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이런, 이런 이유로 잘못된 게 있을 것 같은데, 당신들이 합동수사본부라니 이런 사람들 신병을 받아서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것을 밝혀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안 된다, 못한다고 상식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 신병 인수라는 임무로 저 밑으로는 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위 통화 직후인 00:41경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 소속 최석일은 함께 출동한 팀장급 수사관 신동걸, 김장호, 석기진으로 이루어진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현재 이동하시는 팀 카톡입니다.’,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 ‘포승

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최석일은 위 번호 전달 직후 재차 ‘현장에서 조인할 경찰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선하셔서 임무수행 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리며 위 단체대화방에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안보수사실장 이재학을 초대하였고, 이재학은 위 대화방에 00:56경 ‘집결지: 국회 수소충전소(국회경비대 옆)’, 00:57경 ‘전 팀은 집결지로 이동할 것’, 00:58경 ‘집결지에서 경찰과 조인하여 팀 편성 후 바로 임무수행’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한편 구민회는 2024. 12. 4. 00:48경 이후 영등포경찰서 형사4팀장 이병하에게 전화하여 ‘국회 정문에 도착했는데 막혀서 들어갈 수 없다’, ‘도착했는데 국회 정문이 막혀서 못들 어가고 있다’, ‘만나서 회의할 장소가 필요하다’며 형사들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당시 이병하로부터 ‘우리가 지금 수소충전소에 있다’, ‘이쪽으로 오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여기 공간이 충분하다. 우리 형사들이 40~50명인데 전부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는 답변을 들었다. 구민회는 00:49경 영등포경찰서 형사7팀장 정일현에게 전화하여 정일현으로부터도 ‘국회 수소충전소 앞에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후, 00:53경 이병하에게 전화하여 ‘방첩사에서 7명씩 5개 조가 온다.’,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며 ‘경찰관들, 형사들 2명씩 5개 조로 조 편성을 해 달라’, ‘조 편성을 해서 각 조 명단하고 조장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00:56경 정일현에게 전화하여 ‘국회 정문 쪽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구민회는 정일현으로부터 ‘저희가 나가겠다.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만나자’, ‘정문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보인다. 주유소 쪽으로 찾아오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후 00:58경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현재 국회(수소)충전소에 경찰 50명 대기 중입니다. 그곳으로 이동해서 팀별로 편성 후 활동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공유하였다. 당시 5개 조 25명의 수사관들이 방첩사령부에서 출발한 상황이었다.

구민회는 이 법정에서 “김대우는 12. 4. 00:38경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그룹통화로 우선 체포대상자로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을 지정했다. 이에 최석일 소령은 00:41경 저 포함 조장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 * 포승줄 및 수갑이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단장님께서 구두로 먼저 전화를 하신 내용을 최석일이 다시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은 2024. 12. 4. 00:54경 내지 01:00경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수도방위사령부 B1병커는 도저히 구금시설로 사용할 수가 없고,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가 있는데 현재 해당 수용소에는 방이 6개가 있어 30명 정도 수용 가능하며 3명이 입감되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에 김대우는 ‘사령관님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니 바로 사령관님께 보고드려 지침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다) 육군특수전사령부

(1)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1, 3, 7, 9지역대원들과 함께 헬기 12대에 나누어 탑승하여 2024. 12. 3. 23:22경부터 23:43경까지 차례로 국회 방향으로 출동하였다.

김현태는 23:25경 헬기 안에서 (국회 출동 관련 국회 내부 동선 등 사항을 묻기 위해) 국회 파견관의 연락처를 확보하고자 메신저 단체대화방(New 707 텔레그램 채팅방)에

‘국회파견관 연락처 확인요. 사령부요청’, ‘파견. 군인은?’이라고 올려 707특수임무단 지휘 통제실에 남아있던 부단장 및 참모들에게 확인 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위 ZJ, 인사장교 ZK로부터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받았다. 김현태는 23:46경 이동중인 부대원들에게 메신저 단체대화방(New 707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본회의장 막는 거 우선’, ‘진입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차단 막고’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에 9지역대장 박종성이 ‘수신완료’라고 답하였다.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4기록 1658번).

AO 국회파견관 연락처확인요. 사령부요청 염주호(5지역대장) 확인중입니다. AO 파견.군인은? ZJ(기획총괄담당관) 서기관 ZL 전화번호 생략 서기관 ZM 전화번호 생략 고위공무원 ZN 전화번호 생략 고위공무원 ZO 전화번호 생략 고위공무원 ZP 전화번호 생략 입니다 ZK(인사장교) 국회협력단장 준장 정재열 전화번호 생략 국회협력단장 준장(진) 양재웅 전화번호 생략 국회협력총괄담당 중령 김형남 전화번호 생략 국회대외협력장교 소령 이병희 전화번호 생략 국회총괄 소령 정동주 전화번호 생략 국회총괄담당 소령 차성우 전화번호 생략 이상입니다.
AO 7지 이륙? ZJ 37분부 이륙했습니다 AO ○○ AO 본회의장 막는거 우선 AO 진입시도의원 있을 듯 AO 문 차단 우선 AO 이후 진입차단 막고⁶⁵⁾ QH 수신완료

65) 이에 대해 김현태는 이 법원에서 “23:41경 ‘3지역대 도착 시 1지역대가 버거우면 의사당 본 건물을 지원해라’라고 메시지를 이미 보내았는데, 최초 사령부에서 이륙할 수 있는 헬기의 숫자가 6대로 한정되어 있었고, 1, 3지역대가 먼저 도착하고 7, 9지 역대가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 예상하여 의원회관을 목표로 하는 3지역대에게 일단 국회의사당을 담당하고 7지역대가 도착하면 의원회관으로 향하도록 목표를 수정할 목적으로 지시를 하였는데, 이후 7지역대가 이미 이륙을 하였다 는 이야기를 듣고 급방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7지역대는 별관(의원회관)으로 가지 말고 원래 임무대로 본청으로 이동하라는 이유에서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7지역대장에게 전송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곽종근은 2024. 12. 3. 23:50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로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여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곽종근은 즉시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707특수임무단의 후속병력을 수송하라’고 지시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이낙행(김현태의 전임 707특수임무단장이었다)에게 ‘707특수임무단 지휘통제실로 내려가 병력을 추가 편성하여 국회로 출동시켜라. 상황이 급박하니 실탄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출동시켜라’, ‘네가 내려가서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해라.’고 지시하였다. 이낙행은 707특수임무단 작전과장 조원민에게 2제대 101명 편성 지시를 유선으로 전달하였고, 위 지시를 전달받은 조원민은 23:53경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New 707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707특수임무단 2제대 출동 준비 관련 ‘사.66) 지시사항 96명 동일한 사항으로 출동준비 헬기 오는 중’, ‘96명 교탄, 탄약 장비 동일하게 세팅 중’, ‘준비완료 및 헬기 도착 시 보고예정’, ‘각 지역대장 랜딩 이륙 작전지역 도착 정확하게 보고 요망’이라며 곽종근의 지시사항을 전파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현태는 최초 출동 당시 ‘3지역대는 국회의원회관, 1지역대는 국회의사당 정면, 7지역대는 국회의사당 좌측면, 9지역대는 국회의사당 우측면을 맡아라.’는 취지로 지시한 바 있다. 1지역대 소속 인원들이 탑승한 3대의 헬기가 2024. 12. 3. 23:48경 국회의사당 본관 북측에 위치한 운동장에 착륙하였다. 이후 3지역대 소속 병력이 탑승한 3대의 헬기가 12. 3. 23:53경, 7지역대 소속 병력이 탑승한 3대의 헬기가 12. 4. 00:06경, 9지역대 소속 병력이 탑승한 3대의 헬기가 00:11경 차례로 위 운동장

66) 사. = 사령부

에 착륙하였다. 위 헬기들은 위 병력 약 96명을 내려준 후 다시 이륙하여 육군특수전 사령부(이천)로 돌아갔다.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 영내로 복귀한 특수작전항공단 602항공대 소속 헬기 12대는 곽종근의 지시로 00:29경부터 00:53경까지 707특수임무단 추가병력 약 101명을 태우고 국회로 다시 출동하였다.

김현태는 23:49경 707특수임무단 1지역대와 함께 헬기에서 내려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로 이동한 후 1층 후문으로 진입하였다.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은 바깥쪽에 유리문(외문)이 있고 안쪽에 유리문(내문)이 하나 더 있는 구조인데, 이들은 외문으로 진입해 외문과 내문 사이에 있는 공간을 지나게 되었고(김현태는 그 무렵 곽종근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현재 어디냐?’, ‘뭐 하고 있냐?’, ‘어떠냐?’ 등의 질문을 받자 ‘지금 후문 도착했는데 조용하고’라고 답하였다), 23:50경 국회경비인력 약 10명이 ‘들어오시면 안 된다.’, ‘들어 오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과 함께 후문 내문으로의 진입을 저지하여 이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김현태는 ‘그 앞을 지키고 서 있어라’며 약 10여 명의 병력만을 남긴 후 1층 후문 외문으로 다시 나와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좌측(본관 정문 방향에서 바라볼 경우 좌측) 외벽과 연결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2층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1지역대 최진호 등 4명은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우측 외벽 계단을 통해 2층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기자 유지웅을 발견하고 23:54경 그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 및 동영상을 삭제하고, 외벽으로 끌고 가 케이블타이로 팔목을 묶으려고 시도하다가 00:02경 풀어주는 일도 발생하였다.(다만 김현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동경로 및 포박장소는 다음과 같다.

1지역대 대원들의 이동경로



김현태와 1지역대 인원들은 2024. 12. 3. 23:57경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부근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 앞에 모인 국회 직원들, 기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이들이 정문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저지하여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고, 김현태 등은 정문 부근에서 물러났다. 김현태는 1지역대 인원만으로는 임무(정문 확보 및 출입통제)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3:59경 메신저 단체대화방(New 707 텔레그램 채팅방)에 ‘전원 정문’, ‘기자들 많음’, ‘전부 정문’이라는 메시지를 공유하였고, 사령부에 있던 5지역대장 염주호로부터 2024. 12. 4. 00:02경 2제대 출동 준비와 관련해 ‘2제파 준비 완료 1. 12대 2. 96명 3제파 편성 중’, ‘탄약 수령 후 2제파 출발 예정 *출발까지 40분 소요예상’이라는 메시지를 공유 받았다. 김현태는 00:02경, 00:04경, 00:07경 광종근으로부터 걸려온 각 전화를 받고 광종근에게 당시 정문 앞 상황에 대해 보고하였다.

김현태가 올린 ‘전원 정문’이라는 메시지에 따라 후문에 위치하였던 1지역대 일부 병력 및 막 국회 운동장에 도착한 3, 7, 9지역대 병력이 헬기에서 내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으로 합류하기 위해 차례로 이동하였고, 김현태 등 위 병력들은 00:04경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좌측면에 집결하여 장비를 옆에 내려놓고 다시 정문으로 다가가다가 이를

저지하는 국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저지당해 몸싸움을 하였다. 김현태는 00:12경 9지역대 병력에게 ‘9지역대는 우측으로 들어가서 정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막자’고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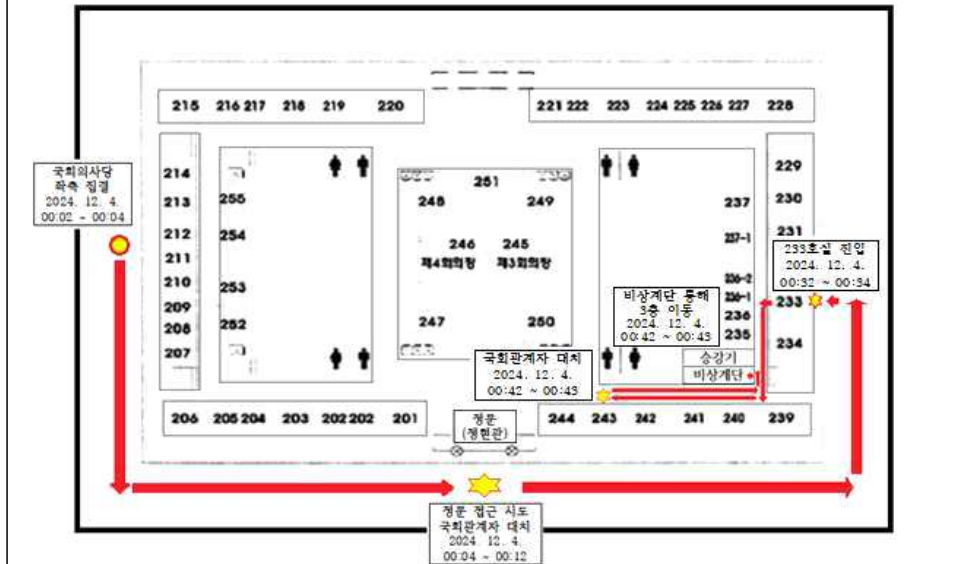
한편 707특수임무단 작전과장 소령 조원민은 00:05경 위 단체대화방에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라는 메시지를, 00:13경 다시 ‘사 지시로 교탄 없이 이동’, ‘3제파 차후 교탄 지참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차례로 공유하였다. 당시 707특수임무단이 국회 현장에서 통합보관하고 있던 실탄, 연습용 수류탄, 고무볼탄, 5.56mm 모사탄, 비전기뇌관, 도폭선 등 장비들은 국회의사당 본관 외벽 좌측에 모아져 보관되고 있었다.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우측면으로 이동한 9 지역대와 만났다. 당시 김현태는 9지역대 소속 상사 ZX에게 ‘정문 말고 다른 출입구가 없느냐’, ‘우회해서 유리창을 깨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ZX이 ‘진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깨라’고 재차 명령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9지역대 소속 병력이 00:32~00:34경 부근에 있던 국회의사당 ○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창을 망치와 소총 총구 부분으로 파손시켰고, ZX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정책위의장실 내부로 최초 진입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9지역대 병력이 연이어 진입하였다. 김현태와 9지역대장 박종성을 포함한 9지역대 병력 총 19명은 ○호 내부로 진입한 후 김현태의 지시(‘라인업을 해라, 바깥으로 나가면 문을 열자마자 좌측으로 이동한다’, ‘나가면 사람들이 많으니 조심해라’)에 따라 1명을 ○호에 남겨두고 나머지 18명이 ○호 문을 열고 나가 (정문 방향인) 좌측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해당 복도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만나 대치하게 되었다. 그 무렵 위 707특수임무단 단체대화방(New 707 텔레그램 채팅방)에 ‘YTN 뉴스 공유, 00:34 국회 내부 상황 비춰지는 중, 의원들 모이는 중, 무장병력 국회의사당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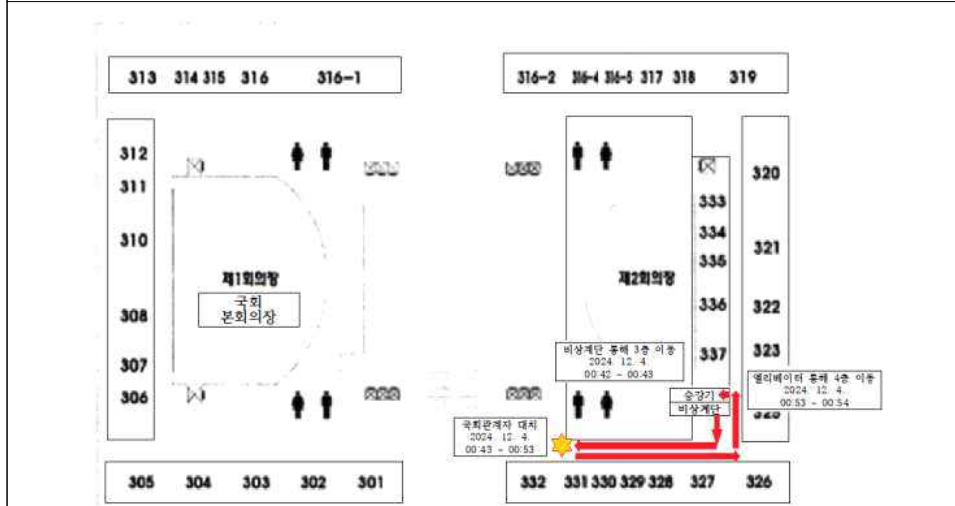
관 진입, 창문으로 진입 중'이라는 글이 공유되었다.

곽종근은 2024. 12. 4. 00:37경 김현태에게 전화하여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없겠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현태가 '사람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곽종근이 비살상무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하자 당시 육군특수전사령부 법무실장 노재현은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 강유미와 통화해 '지금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데 법무실장님하고 통화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강유미는 '법무실장님은 지통실에 있다', '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답변하며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위 번호를 받은 노재현은 재차 김상환에게 전화해 '지금 총장님하고 소통이 되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였는데 이에 김상환은 '지금 총장님하고 같이 있지 않다.', '나는 03:00경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기 위해 서울로 출발할 것이다.', '사령관 보좌를 잘 하라'고 말하였다. 이후 노재현은 곽종근에게 '무기 사용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사령관님 권한이 아닌데 혹시 계엄사령관님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으신 게 있냐?'고 물었고 당시 곽종근이 '비살상무기만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재차 '그 부분도 계엄사령관의 지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건 사령관께서 결정하실 부분이 아니니까 먼저 계엄사령관님하고 통화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건의하였다. 이에 곽종근은 00:39경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공포탄과 테이저건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박안수는 00:42경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시하였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및 이동경로
(숫자는 호실 번호임)



국회의사당 본관 3층 및 이동경로



김현태와 9지역대 병력 도합 18명은 00:42경 내지 00:43경 국회의사당 본관 2층 복도에 서 국회 관계자들과 대치하게 되자 계단을 이용해 본회의장이 위치한 본관 3층으로 이동하였고,67) 3층 복도를 이동하는 중 복도 중간에 본회의장으로 가는 방향에 설치된 유리문이 손잡이 부분이 소방호스로 묶여있는 상태로 닫혀있는 것을 보고 김현태의 지시

67) 이와 관련해 9지역대장 박종성은 이 법정에서 '당시 정문을 봉쇄하기 위해 나가던 중 복도에서 국회 인원들과 대치하자 다른 통로를 알아보기 위해 3층으로 이동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에 소방호스를 절단해 유리문을 열고 계속 본회의장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이어
서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로 이어지는 적색 카펫이 설치된 국회 복도 방향으로 진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로 진입하는 방향 복도에서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
이 병력들의 진입을 몸으로 막았다. 이에 김현태와 9지역대원들은 국회 관계자들을 몸으
로 밀면서 로텐더홀 방향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국회관계자들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저
항하자 더 이상 그곳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그 무렵 위 707특수임무단 단체대화방(New
707 텔레그램 채팅방)에 ‘YTN 뉴스 공유, 00:42 무장 계엄군 국회 유리창 깨고 국회의
사당 본관 진입, 국회 보좌진 등 소화기 뿌리며 격렬한 저항’이라는 글이 공유되었다. 당
시 2, 3층 이동경로는 위 그림과 같다(빨간 선 표시).

위 병력들 중 김현태는 포함한 8명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국회의사당 본관 4층으로
이동하였다. 나머지 인원들은 4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었다. 김현태는 함께
있던 9지역대장 박종성에게 ‘(밖에 있는 인원들에게) 10명씩 1개 조를 이루어서 여러 방
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서 전파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박종성은
00:46경 위 단체대화방(New 707 텔레그램 채팅방)에 ‘10명씩 내부진입 시도’, ‘다 방향으
로’라는 메시지를 공유하였다.⁶⁸⁾ 이후 707특수임무단 작전과장 조원민은 00:49경 위 단
체대화방에 ‘1여단 도착완료 진입 중’, ‘연결작전 요망’이라는 메시지를 추가 공유하였다.

김현태는 00:50경 곽종근에게 ‘올라왔는데 또 소화기 공격 맞아서 못 들어갑니다.’라고
상황을 보고하였고, 곽종근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라는 취지
로 물어보았으며, 이에 김현태는 ‘이걸 들어가려면 무리수를 두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총을 사용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소화기 공격도 맞았고 이건
아니

68) 이에 대해 박종성은 이 법정에서 “당시 함께 있던 김현태가 ‘10명씩 1개 조를 이루어서 다 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강구해서 전파해라’라는 무전 전파를 지시했으나, 무전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텔레그램으로 지역대장들에게 전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곽종근은 ‘그러면 더 이상 무리수를 두지 마라’고 말하였다. 곽종근은 00:57경 김현태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정전이라도 시킬 수 없겠냐?’, ‘전기라도 차단할 수 없느냐?’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김현태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9지역대장 박종성, 9지역대 일부 인원 등은 01:01경 국회의사당 본관 4층에서 엘리베이터로 지하 1층으로 이동하여 해매던 중(2층 정문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01:03경 국회의사당 지하 1층과 국회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 입구에 도달하자 김현태의 지시로 해당 통로 입구 문을 케이블타이, 소방호스를 이용해 묶는 방법으로 잠그려 하였고, 이에 대해 국회의사당 방호직원 김영완이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며 강하게 항의하면서, 통로 입구 셔터문을 내려 외부와 차단하였다. 한편 지하 1층에 도착하였을 때 김현태는 9지역대 소속 ZX에게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차단기를 찾아봐라’, ‘차단기를 내릴 수 없겠냐?’고 지시하였고, 한편 위 지하통로 입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규백 등이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길을 비켜주기도 하였다. ZX은 01:06~07경 지하 1층 배전함을 찾아내 전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의 전기를 차단하였고, 이에 지하 1층은 약 5분 넘게 소등되어 그 상태가 지속되었다.

김현태는 이 법정에서 “당시 본청(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을 봉쇄해야 된다는 임무를 맡았다. 23:46경 ‘본회의장 막는 거 우선’, ‘진입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고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은 본청이 본회의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회의장인지 본청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출동했다. 당시 테러나 테러와 유사한 위협이 있다는 가정 하에 출동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면 위험하니까 보호를 위해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었다. 부하들도 다 그때 그렇게 이해했다. 아마도 광종근 사령관이 저런 표현을 써서 제가 그대로 쓴 것일 수도 있다. 분명히 707과 1여단은 00:30경 이전까지는 본회의장이라든가 가결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시받은 것이 전혀 없다.”, “저희가 만약 본회의장을 봉쇄하려고 했다면 제일 처음 1층 후문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본회의장까지 진입했을 것이다. 후문은 사실 텅 비어있었다. 건물 봉쇄만 하면 되니까 몇 명을 남겨놓고 2층 정문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건물을 봉쇄하려고 갔고, 정문에서 건물 봉쇄가 안 되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내부를 봉쇄하려고 했다. 당시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줄도 몰랐다.”, “후문 1층 내문에 인접했을 때 몇 명이 오면서 ‘들어 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켜봤더니 안쪽에서 의자나 뭐를 막 들고 와 문을 막는 것 같이 보이기에 병력 10여명을 남기고 바로 이동한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따로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정문 쪽으로 이동한 후 남아있던 병력들이 후문 외문 밖에서 청테이프로 외문 손잡이를 감아 시정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후문 밖으로 나와 외벽이랑 연결된 계단을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갔다. 본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좌측면 쪽에서 올라간 것이고 2층 정문 쪽으로 향했다. 일부는 후문 밖으로 나와 반대편으로 가서 우측면 쪽에서 올라왔다. 이동경로를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 부대원들이 자체 판단하여 그렇게 나누어 이동한 것이다. 당시 우측면 쪽에서 올라온 병력들이 민간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 등을 삭제하고 케이블타이로 팔목을 묶으려 했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 “최초 도착해서 정문을 보고 모든 짐을 내렸고, 복귀할 때까지 안 건드렸다. 2층 좌측에서 정문으로 이동할 때는 깜깜하고 조용했다. 창문들이 대부분 잠겨있고 불이 꺼져 있었다. 그래서 ‘봉쇄할 게 특별히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문까지 갔는데 정문 방향으로 몸을 트니까 수백 명이 운집하고 있었고 카메라도 많

이 보여서 순간 놀랐다. 병력들을 정지시키고 저와 1~2명이 다가가 ‘왜 여기 계시냐?’, ‘뭐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처음에는 대화를 하는 식이다가 제 뒤에 병력이 점점 모아져 저항이 시작되었다.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니까 계엄사령부로 필요하면 항의하십시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대화가 안 되는 모습이어서 다시 좌측면 어두운 방향으로 복귀해서 부대원들과 논의를 했다. 00:12경 이후 1제대가 모두 정문 앞에 집결했다.”,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으로 1지역대 외에 3, 7, 9지역대 인원들도 모두 합류하였다. 그 무렵이 00:12경이다. 후문에 있던 인원들까지 합류하였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점점 인원이 많아지자 정문 앞에 있던 국회 관계자, 기자, 유튜버 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이 벌어진 후 병력이 정문 좌우측으로 약간 분산되게 되었다. 저는 우측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모인 인원들이 전체 인원의 반 정도밖에 안 되었다. 계속해서 상황을 곽종근에게 보고했다.”, “00:05경 특전사령부에서 비엘탄(실탄) 개봉을 승인했다는 메시지가 공유되었다. 그러나 이건 저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출동을 준비하고 있던 2제대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2제대가 출동을 해야 하는데 탄약고에서 탄을 가져오는 절차가 지연되자, 이미 헬기가 사령부에 도착해 있는 상황에서 평소에 개봉하지 않는 비엘탄이 마침 지통실에 있어 그냥 그걸 들고 가라는 취지에서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벽을 일렬로 장악하면 되겠어서 정문 우측에서 중앙 방향으로 외벽에 붙어 이동하면서 국회 관계자 등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태로 파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잘 안 돼서 몸싸움이 격화되었고 온갖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제가 중지시킨 후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이다. 곽종근에게 ‘본관 정문을 통해서는 진입하기 어렵다. 다른 루트로 들어가겠다.’고 보고하고 창문을 깼다. 열린 게 있는지 우측을 돌면서 창문을 차례차례

확인했는데 열린 게 없었다. 조급한 마음에 한 10번째 쯤 창문이 어두웠고 조용한 느낌이 들어서 깨라고 지시했다. 당시 곽종근으로부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유리창을 깨겠다고 하니 곽종근이 승인했다. 당시에는 빨리 봉쇄를 해야 한다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마음이 앞섰다.”, “유리창 깨는 동안에 카메라 든 사람, (카메라를 높이기 위한) 사다리 든 사람들이 촬영하려고 다가왔다. 창문을 넘으려면 마침 사다리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사다리 좀 가져와봐라’라고 지시했고 병력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왔다.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00:32경 창문을 깨고 넘어 233호로 들어가 차례로 19명이 그곳에 모인 후 00:40경 1명을 남기고 18명이 322호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정문 방향인 좌측으로 갔는데 유리문이 있어 열어보니 안쪽에도 바리케이트 친 상태로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저희들을 소화기로 공격했다. ‘여기도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바로 병력을 철수시켰다. 다시 322호 근처로 돌아왔고 근처에 계단이 있기에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 본회의장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 그냥 막연히 위쪽에서 보면 내부 구조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위로 가 본 것이다. 본회의장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장을 찾을 이유도 없었다. 그 무렵 곽종근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150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겠냐?’라는 말을 듣고 ‘못 들어간다. 이걸 들어가려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총을 사용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다시 곽종근은 ‘그러면 더 이상 무리수를 두지 마라’는 식으로 말했다. 당시 곽종근이 ‘150’이 라는 숫자를 언급한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 그러나 곽종근이 제게 ‘의원들이 의결하려고 하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꼬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체를 몰랐다. 단순히 국회를 봉쇄하려는 생각만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

었다. 봉쇄하고 나면 추가 임무를 줄 것이라 생각했다.”, “3층으로 올라와서는 방향감각이 없어 그냥 복도를 따라 갔다. 유리문이 닫혀 있는 곳을 지나려는데 유리문 반대편 문손잡이 쪽에 소방호스가 감겨서 문이 잠겨 있었다. 일부 대원이 가위나 칼로 절단을 하고 문을 열었고 유리문을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도니까 그 통로(레드카펫이 깔려있었던 것은 나중에 알았다)에서 잠깐 사람들과 대치가 있었고 우리가 물러서려고 하니까 갑자기 누군가 소화기를 저희에게 뿌렸다. 그래서 뒤쪽으로 물러났다. 당시 국회 관계자로부터 ‘여기 가시면 안 된다. 본회의장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 누군가 직급이 좀 있어 보이는 분이 나와서 ‘뒤로 물러나라, 군인들이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기억난다.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그쪽 관계자분이 ‘경사가 있어 위험하니 뒤로 조금씩 더 무르라’고 말해서 더 물러났다. 상황보고를 위해 곽종근과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연결이 되지 않다가 00:50경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때 ‘현재 위에서 들여다보려고 왔는데 여기도 또 소화기 맞고 더 이상 못 들어간다. 안 될 것 같다.’라고 보고했던 걸로 기억한다.”, “00:54경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4층으로 올라갔고, 7명이 따라 왔다. 3층이 막혔기 때문에 위에서 건물 내부를 내려다보고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 1층 더 올라간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머지 인원들 11명은 2층 화장실로 가서 모여 있다가 복귀하였다고 한다. 그때 따로 그들에게 임무를 준 것은 없었다. 사령관, 참모장에게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안 되다가 00:57경 곽종근과 통화가 되었다. 이때 아마 전기차단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령관이 ‘정전이라도 시킬 수 없느냐?’, ‘정전시키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이후 정전을 시키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헤매다가 엘리베이터로 지하 1층으로 갔다. 정전을 염두에 두고 간 것이 사실이다. 그때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지하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01:01경 지하 1층으로 내려왔는데 외부(당시에는 의원회관과 연결되는 것을 몰랐다)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건물 봉쇄의 일환으로 부랴 부랴 통로 문을 케이블타이로 묶었고, 케이블타이가 바로 터져서 소화전에서 호스를 당겨와 문을 묶었다. 그 와중에 안규백 장관이 통로로 몇 명과 함께 들어왔고, 얼굴을 알고 있던 저는 비켜드렸다. 소방호스로 문을 감고 있는데 국회 관계자가 오더니 리모콘으로 통로 셔터문을 내려서 닫았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전기 차단을 알아보았다. 제가 지시한 인원이 배전함으로 가서 지하 1층 전기를 차단했는데, 그 무렵 그 국회 관계자가 와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으니 군인은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래서 바로 01:07경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철수 지시를 받았고, 바로 병력들에게 철수 지시를 하였다. 그때 다시 국회 관계자가 와서 자기가 문을 내린 것을 다시 올리려면 전원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전기 차단을 해제했고, 국회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지하통로를 지나 의원회관으로 빠져나왔다. 그곳에서 다시 저희 장비를 내려놔던 본관 정문 좌측 부분으로 이동했다. 그곳이 집결지였다.”, “2제대 100명이 오는 것 자체를 몰랐다. 상황이 종료되고 철수를 위해 나와 보니까 100명이 와 있었고, 그때야 알게 되었다.”, “곽종근이 당시 ‘대통령 지시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저는 707특수임무단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TV에 계속해서 그 모습이 추적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김현태랑 통화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다. 당시 김용현으로부터는 여러 번의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 윤석열로부터는 딱 2번의 전화를 받았다. 2024. 12. 4. 00:31경 첫 번째 통화, 00:36경 두 번째 통화다. YTN 화면에 국회 의사당 본관에 의원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 윤석열이 00:31경 첫 번째

통화에서 제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했다. 그때부터 저도 부하들에게 ‘의결’, ‘문을 부숴라’ 이런 말을 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제가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300명이라는 것은 대략 알고 있었고 과반 150명이 계엄해제요구 의결 정족수라는 기본적 지식은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위 전화 이후 김용현이 제게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했다. 이후 제일 먼저 김현태에게 전화했는데 김현태가 ‘못 들어간다. 돌아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럼 돌아서 들어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TV를 보니 707이 유리를 깨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 김현태한테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있냐,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았고 김현태가 ‘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알았다’고 한 것은 맞는데 그때 제가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느냐?’는 취지의 말도 김현태에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 속에 있다. 이후 ‘전기라도 끊을 수 있냐?’는 말도 하였다.”, “12. 3. 23:50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707 특수임무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여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세운에게 후속 병력 수송을 지시해서 헬기가 회항하다가 사령부로 들어왔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의결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12. 4. 00:31경 이전까지는 왜 확보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 물어본 적도 없다. 12. 1. 내지 12. 3.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의원회관, 선관위 이렇게 3곳을 (병력을 동원해서)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확보하는 목적은 듣지 못했다. 그냥 확보하라 는 지시만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저도 부하들에게 출동지시를 하면서 ‘확보하라’고만 했지 확보의 목적 등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못했다. 출동해서 확보하려고 국회를 갈 때 제 인식은 저희들이 가면 정말로 건물 있고 일부 사람들 근무 서는 사람 빼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 “김용현 장관이 12. 3. 이전에 ‘실무장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12. 3. 지시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탄을 개인에게 주지 말라고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2대대, 3대대, 5대대는 23:50경 출동준비를 완료하였다.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안효영은 23:56경 제1공수특전여단 1대대장 김형기에게 전화하여 1대대가 출동 준비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39초가량 통화한 후, 23:57경 여단 지휘부 및 제1공수특전여단 1대대(대대장 김형기)와 함께 국회로 출동하였다. 당시 출동한 여단 지휘부는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여단 작전참모 중령 안효영, 방첩대장 소령 이시욱, 여단장 전속부관 상사 ZY, 운전관 중사 QX이고, 지휘 차량에 탑승해 국회로 출동하였으며, 위 지휘차량 경호 목적으로 특임대 경호팀 소형 지프차 2대(번호생략호, 번호생략호), 소형전술차량 2대, 특임대 지휘관 지프차 1대 도합 5대가 1개 팀으로 이동하였고, 해당 차량 중 소형 지프차 1대(번호생략호)에 소총용 5.56mm 실탄 550발, 권총용 9mm 실탄 12발이 적재되어 있었다.

1대대의 경우 출동 목표는 국회의사당, 출동 당시 대대장 김형기를 비롯한 1대대 병력 134명에 구급차(AMB) 탑승 인원 2명 포함 도합 136명에 대형버스 4대, 지휘차량 1대, 구급차 1대로 출동하였고, 출동 대원들은 전투복, 안면, 마스크, 방탄헬멧, 방탄조끼, 워벨트(탄띠)를 착용하고 무장으로는 K-1소총 등 개인화기, 통신장비, 조준경, 개인식별장치로 무장한 상태였는데, 다만 탄약은 지참하지 않은 상태였다(탄약고 담당자가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먼저 국회로 출동한 편의대 조장 이정현은

국회 정문(1, 2문) 인근에 도착 후 2024. 12. 3. 23:31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 여단장 이상현에게 문자메시지로 ‘단결! 신속대응조장입니다. 현재 국회의사당 주변 경찰 다수 배치되어 있으며 일부 입구에서 소수 민간인이 항의하고 있는 것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인 상황 확인 시 지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2. 4. 00:00경 ‘국회의사당 정문에 민간인들이 장갑차가 몰려온다고 도로에 누우면서 차량통행 방해 중에 있습니다.’, 00:11경 ‘국회로 들어가려는 군인버스를 민간인들이 막고 있습니다.’, 00:21경 ‘국회 담 넘어서 내부로 들어가는 민간인 다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보고하면서 현장 사진 등을 함께 보냈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한 편의대 조장 김찬호는 2024. 12. 3. 23:31경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한 후, 12. 4. 00:41경 문자메시지로 ‘[더불어민주당 앞] 1대대 8중대장 OG 대위 입니다. 00:40 특이사항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곽종근은 2024. 12. 4. 00:01경 및 00:05경 이상현에게 전화하여 출동한 병력의 현 위치를 확인하였고, 이상현은 00:04경 및 00:06경 작전참모의 휴대전화로 1대대장 김형기에게 전화하여 ‘최대한 빨리 국회 정문으로 가라’,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사령관님하고 한번 통화하고 알려줄게’, ‘야, 속도 어겨도 좋으니까 빨리 갈 수 있으면 빨리 가라’고 지시하였다. 이상현은 00:11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로부터 ‘국회 입구에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중인데, 정상적으로는 못 들어가니 담을 넘어야 될 거야’, ‘현재 지금 주 출입구가 막혀있다. 경찰이 막고 있고, 다수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출입구를 통해서는 국회 경내로 들어갈 수 없으니 담을 넘어서 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1공수특전여단 1대대장 김형기는 2024. 12. 4. 00:13경 이상현에게 전화하여 ‘국회에 있는 편의대가 주변에서 보고 있으니깐 기자들도 많은데 저희 군인들하고 군용버스를 민간

인들이 앞에 도로에서 대자로 누워서 통제하고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상현으로부터 ‘PRC 벨트 휴대하라’, ‘총기는 저 이렇게 해. 민간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뒤로 어깨, 어깨 메어 총 해’, ‘절대 총기를 들고 사람한테 지향해서 사진을 찍히지 않도록 해라’는 지시를 받고 ‘총기를 뒤로 각개 메어하겠다.’고 답하였다. 이상현은 00:16경 제1공수특전여단 @대대장 반효민에게도 전화하여 ‘민간인들을 향해 총기를 지향하지 말고, 뒤로 각개 메어하고 총기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상현은 00:20경 (사령부에서 막 출동 직전인) 2대대장 반효민에게 전화하여 ‘너희들 국회로 가고 있지’, ‘도착하면 너희들은 의원회관으로 가는 거야’, ‘의원회관으로 가서 의원회관에 있는 민간인들을 전부 회관 밖으로 퇴장시킨다.’, ‘*대대는 국회의사당, 너희들은 거기’, ‘근데 진입하기 전에 지금 민간인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다 섞여 있어’, ‘국회 앞쪽에 있는 인원들은 그 건물에 있는 쪽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 임무야’, ‘거기 도착해서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세부적으로 먼저 도착해서 임무 알려줄게’라고 지시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현 그거 뭐 국회의원들하고 다 섞여 있어 반효민 예. 이상현 그래서 어... 하여튼 국회 앞쪽에 있는 인원들은 그 건물에 있는 쪽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 임무야. 반효민 예, 알겠습니다..

위 전화 직후인 00:22경 2대대장 반효민을 비롯한 제1공수특전여단 2대대 소속 124명은 대형버스 2대, 중형버스 2대, 지휘차량 1대를 이용해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발하였고, 같은 시각 제1공수특전여단 참모장은 ‘1. 민간인 혼잡지역 하차 후 도보이동’, ‘2. 총기는 민간인 피해 / 위화감 방지를 위해 각개 메어, 총구는 민간인 지향 금지’, ‘3. 3인 1개조 행

동’이라는 여단장 이상현의 지침을 여단 부대원들에게 전파하였다.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2024. 12. 4. 00:14경 약 2분 48초간, 00:21경 26초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와, 00:19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각 통화하였다(이진우 역시 00:17경 박안수와 통화하였었다).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2024. 12. 4. 00:24경 지휘부 차량과 함께 서울 강서구 화곡지하차도를 통해 국회 2문 앞 도로에 먼저 도착했고, 제1공수특전여단 1대대 병력 136명은 00:26경 국회 앞에 도착했다. 1대대장 김형기는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안효영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상현에게 위 도착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상현으로부터 ‘차량을 우측에 대고 도보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상현은 00:28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재차 통화하여 이진우로부터 ‘여전히 국회 입구에 시민과 경찰이 대치중이므로 담을 넘어 진입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00:30경 안효영의 휴대전화로 1대대장 김형기에게 전화하여 ‘담 넘어가’, ‘담 넘어서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00:31경 안효영의 휴대전화로 2대대장 반효민과 통화하며 ‘국회의원 회관으로 가지 말고 의사당으로 가’, ‘담 넘어가야 돼’, ‘담 넘어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0:30경 이상현과 김형기의 통화	
이상현	담 넘어가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	어. 담 넘어서
김형기	예.
이상현	거기 내려서 담 너머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알았지?
김형기	예, 예 바로 내려, 다 하차해서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현	어.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00:31경 이상현과 반효민의 통화	

이상현 국회의원 회관으로 가지 말고,
반효민 예.
이상현 의사당으로 가
반효민 의사당으로, 알겠습니다.
이상현 어, 담 넘어가야 돼. 여기 들어오면
반효민 예
이상현 짝 막혔어
반효민 아...
이상현 그래서 담 넘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히면
반효민 예
이상현 하차를 해
반효민 예
이상현 그래서 담 넘어가, 담 넘어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반효민 예
이상현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 알았지?
반효민 밖으로 다, 네. 내보내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상현의 지시에 따라 제1공수특전여단 1대대 소속 136명 중 김형기 등 49명이 00:34 경부터 00:36경까지 개인화기인 소총을 휴대한 채 국회 2문 서쪽 약 50m 부근의 담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였고,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상현은 00:34경 곽종근과 통화하였다.

한편 육군특수전사령부 작전처는 00:30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1개 대대를 더불어민주당사로 투입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4. 00:31:04경 자신의 비화폰으로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00:32~00:36경 피고인 김용현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용현은 곽종근에게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 밖으로 이탈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곽종근은 00:34경 이상현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준비하고 있으니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현태를 포함한 19명의 병력이 00:32경 국회의사당 233호 유리창을 깨서 국회의사당 본관 2층으로 진입하였는데,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00:39경 작전참모 안효영의 휴대전화를 통해 (국회 경내에 진입해 국회의사당 본관 쪽으로 이동 중인) 1대대장 김형기에게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애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2기록 1677번).

이상현 그 국회 그, 저기,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애들이 문 걸어 잠그고,
김형기 예.
이상현 의결하려고 하고, 하고 있대.
김형기 예.
이상현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단장님 한 2개 지역대로 들어왔고 1개 지역대는,
이상현 어.
김형기 시민들이 너무 많이 패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이상현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어.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은 2024. 12. 4. 00:40경 (아직 국회 인근에 도착하기 전인) 제1공수특전여단 제2대대장 반효민에게 전화하여 ‘하차해서 담 넘어가’, ‘그래서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애들이 이제 뭐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 부셔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현 그래서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반효민 예.
이상현 애들이 이제 뭐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야.
반효민 예.
이상현 그 문짝 부셔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반효민 예. 알겠습니다.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광종근과 00:41경 3분 24초, 00:45경 1분 19초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제1공수특전여단은 00:45경 유사시 1대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소총용 5.56mm 실탄 26,770발을 탄약수송차량에 적재하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김형기 등 1대대 병력 49명은 00:43경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앞에 집결하였고, 그곳에서 문 앞을 막고 있는 국회 관계자, 기자 등과 대치하며 계속 몸싸움을 하였다. 당시 모습을 담은 CCTV 캡처 화면은 다음과 같다.



반효민 등 2대대 소속 병력 124명은 00:46경 국회 부근에 도착하였고, 이후 00:47경부터 00:55경까지 2대대 4지역대 37명, 5지역대 40명 도합 77명은 국회 3문을 통해, 제1공수특전여단 2대대장, 작전과장, 주임원사 3명은 국회 4문을 통해, 나머지 6지역대 소속 42명은 3문 북쪽 담을 넘어 각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이상현은 00:49경 작전참모 안효영의 휴대전화로 2대대장 반효민에게 ‘문짝 부셔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그 투표들 못 하도록’이라고 지시하였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현 야, 2대장
반효민 예.

이상현 너 뒤로 해서라도 넘어가.
반효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 국회 그 의사당에 들어가서,
반효민 예.
이상현 그 문짝 부셔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반효민 예. 지금 지역대들,
이상현 그 투표들 못 하도록.
반효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은 00:47경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안효영의 휴대전화로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입구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던 1대대장 김형기에게 ‘1대대의 국회의사당 정문 강행돌파’를 지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몸싸움이 계속되었다.

안효영 어. 그래. 뭐 보고인 상황이니?
김형기 예. 선배님, 지금 저희 앞에 본청 입구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아, 기자들이 지금 너무 완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효영 기자들, 기자들이 너무 완강히 대응해서,
김형기 예. 지금 강행 돌파를 할지 지금 지침을 좀 받으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안효영 강행 돌파요. 지금 어디 있다고? 여기 입구 앞에,
김형기 본청 입구에 있습니다.
안효영 잠시만.
이상현 야, 못 들어가냐?
김형기 예. 지금 너무 격렬합니다. 여단장님, 그냥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상현 뚫고 들어가 봐.
김형기 예. 그냥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김형기는 00:51경 이상현에게 ‘건물은 지금 막혀서 완전 못 들어가고’, ‘진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이상현으로부터 ‘유리창이라도 깨’라는 지시를 받았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현 건물은? 건물은 진입 못 했지?
김형기 건물은 지금 막혀서 완전 못 들어가고,
이상현 응.

김형기 진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현 유리창이라도 깨.
김형기 예. 후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어, 어, 어.

이상현은 00:57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박정환을 통해 광종근에게 ‘국회에 진입했는데, 건물 본청은 사람들로 꽉 막혀있어서 진입하지 못했다. 유리창을 깨서 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위 이상현의 지시에 따라 김형기를 포함한 1대대 병력 49명 중 일부는 00:55경 국회의사당 본관 1층 후문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재차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대대 병력 122명은 00:47경부터 00:55경까지 국회 경내로 진입한 후 바로 국회의사당 본관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00:57경 국회 본관 2층 정문에서 여전히 국회 관계자 등과 대치하고 있는 1대대 일부 병력과 합류하였다. 그리고 2대대 일부 병력 역시 본관 1층 후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위 2층 정문에서는 여전히 대치상황이 지속되었다. 당시 모습을 담은 CCTV 캡처 화면은 위와 같다.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은 바깥쪽 유리문(외문)과 안쪽 유리문(내문)이 있는 구조인데, 당시 바깥쪽 유리문은 잠겨있었다. 김형기가 00:57경 국회의사당 본관 1층 후문 바깥쪽 유

리문(외문)을 힘을 주어 흔들어 떼 내는 방법으로 문을 강제 개방하였고, 외문 안으로 1대대 병력 20여명이 들어갔다. 김형기 등이 진입하자마자 국회의사당 내부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국회 관계자 등이 문을 막으며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화전 호스로 물을 뿌리는 등 김형기 등 병력의 진입을 막으며 대치하였다. 뒤이어 후문 방향으로 온 2대대 소속 약 18명가량의 병력이 외문 안으로 들어와 합류하였고, 이후에도 대치상황은 계속 이어졌다.

이상현은 01:00경 김형기로부터 ‘후문 외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소화기 등으로 격렬하게 저항하여 내문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보고받자 ‘대통령님이 문 부셔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야,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전기?’라고 말하며 곽종근의 직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구체적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기 후문, 후문으로 문은 부수고 들어왔는데,
 이상현 어, 어.
 김형기 하필 내부에서 또 내부 안쪽 문 두 번째 문을 지금 돌파 못 하고 그쪽에서 소화기하고 소화전으로 지금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어. 거기 지금 몇 명 있어?
 김형기 지금 저희 한 40명 있습니다.
 이상현 40명?
 김형기 예.
 이상현 대통령이 문 부셔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김형기 알겠습니다.
 이상현 그 2대대한테 해서 니들 온 쪽으로 2대대를 그, 그쪽으로 유도해.
 김형기 예. 2대대 만났습니다.
 이상현 만났어?
 김형기 예.
 이상현 다 합해서 40명이야?
 김형기 예. 지금 40명쯤 됩니다.
 이상현 다른 애들은?
 김형기 지금 일부 인원은 진입을 못 해서 차량 하차 지점에 있습니다.
 이상현 응? 야,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전기?
 김형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단장님

이상현은 이 법정에서 “저는 1대대하고 같이 국회로 출발했는데, 소형차량이라 00:24경 전후로 먼저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상공에 있는 헬기였다. 헬기들이 막 이착륙을 하고 있었고, 본부에 연락해 보고 나서야 707특수임무단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부에서 ‘707이 투입됐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민간인하고 대치하고 있어서 못 들어가, 유리창 깨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 급하니까 너희들도 빨리 들어가’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다. 707특수임무단이 투입될 정도면 보통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테러인지 도발인지 당황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국회 담벼락에서 경찰들과 몸싸움하는 게 보였다.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난리였다. 게다가 도착 전에 이미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시민들이 경찰과 대립하고 있고 경찰이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다. 일부 시민들은 저희 차량에 와서 문을 두드렸다. 저는 소요사태라고 짐작하고 빨리 작전을 실행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대대는 00:30경 2대대는 00:46경 국회에 도착하였다.”, “저는 차량에 탑승한 채로 국회 2문 앞 도로가에서 작전을 지휘했다. 국회 내부 지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살펴보려고 문 앞에 갔다가 시민들에게 봉쇄되어서 그냥 2문 앞에 정지한 상태였다. 도착하기 전에는 국회 내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민간인을 끄집어내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회에 도착하기 전인 00:20경 반효민에게 비슷한 취지로 지시했다. 그런데 막 국회에 도착했을 때 광종근으로부터 ‘의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침을 받았다. 저는 ‘의원들이 싸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서서히 ‘국회의원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사령관의 지침이구나.’라고 인식했다. 그때부터 저나 참모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전을 진행했다. 제가 00:30경 김형기에게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하고, 00:31경 반효민에게 의원회관으로 가지 말고 의사당으로 가라고 지시한 것은 사령관

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 사령관 인지 참모장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참모장 역시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령관의 지시다.”, “당시 1대대 병력 49명, 2대대 병력 122명이 국회 경내로 진입 하였다. 1대대 병력 49명 및 2대대 병력 42명은 월담을, 나머지 2대대 병력 80명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3, 4문을 통해 국회 경내에 들어갔다.”, “00:40경 반효민에게 ‘애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는 모양이야, 문짝 부셔서라도 의원들 다 끄집어 내’라고 말할 당시 저는 상황을 알지 못했다. 사령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한 수준이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라든가 하는 내용은 잘 몰랐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지시한 것이다. 국회의사당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의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곽종근의 말을 그대로 그냥 전달하였다. 00:50경 김형기에게 유리창이라도 깨라고 지시한 것 역시 사령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지시한 것이다. 01:00경 ‘대통령님이 문 부셔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고 말한 것 역시 사령관의 위당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문을 부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도끼로’라는 단어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정환은 이 법정에서 “곽종근 사령관 옆에 있었다.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공수여단이 국회에 도착한 이후에 제가 기억하는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는 ‘유리창을 깨라’,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을 못하도록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내용이다. ‘전기를 끊으면 안 되느냐?’는 말도 하였는데 그건 현장 지휘관이랑 상의한 내용이어서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령관께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는 듣지 못했다. 단지 지시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다. 사령관께서 전화를 받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복명복창한 것은 기억난다. 그래서 김현태나 이상현에게 하는 지시

도 모두 김용현 등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사령관의 지시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지휘통제실 안에 있던 다른 인원도 같이 들었다.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할 때는 뜻밖이어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정보처장 한경태 대령, 작전처장 남기동 대령 등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 기억난다. 광종근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 등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자마자 바로 김현태나 이상현에게 그대로 지시를 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시점에 대하여) 전투통제실에 비디오월 왼쪽 아래에 TV 화면이 2개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YTN 영상을 틀어놓고 있었고, 소리 없이 자막만 나오고 있는 상태였다. 당시 화면에서 (국회의사당 본관) 안에 들어간 병력들이 소화기라든지 여러 가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고, 자막에는 표결정족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비디오월 화면에 비해 TV 화면은 매우 작은 편이다. 게다가 저희가 전투통제실 안에 개인전화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뉴스방송이었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뉴스방송을 힐끔힐끔 보면서 ‘상황이 좀 이상하다’ 이런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표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광종근이 ‘표결하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제가 옆에 있는 참모들과 ‘이건 아닌데’ 하면서 서로 쳐다봤다.”,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이 되기 전까지는 전화가 많이 왔다. (광종근이) 전화를 계속 받고 또 지시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옆에서 느끼기로 ‘매우 조급하고 또 압박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의 지시에 따라 신속대응부대로 지정되어 있던 제9공수특전여단 51특전대대(대대장 황준홍) 144명 중 본대 118명, 후발대 22명 총 142명이

2024. 12. 3. 23:42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나머지 2명과 52특전대대(대대장 유선민) 6지역대 약 60여명이 여론조사꽃(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으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광종근으로부터 ‘실탄과 공포탄을 함께 가져가되 실탄은 대대장 또는 지역대장이 통합보관하고, 공포탄은 개별 분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51특전대대장 황준홍은 출발 직전 군수참모 서현태로부터 ‘테이저건과 가스총 휴대’를 유선으로 지시받아 테이저건과 가스총을 휴대하였고, 52특전대대는 인원이 소집되자마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공포탄과 섬광폭음탄만을 지참한 채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여단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라’는 광종근의 지시에 따라 안무성과 제9공수특전여단 지휘부, 지원 병력 12명가량도 23:5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인원들은 단독군장을 한 상태에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였고, 권총을 지참하였다.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및 제9공수특전여단 지휘부 인원 약 7명과 51특전대대 대대장 황준홍 등 병력 약 150명은 2024. 12. 4. 00:23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도착하였고, 안무성의 지시에 따라 51특전대대 3지역대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경내 안쪽에서 외곽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대기하였다. 안무성은 00:54경 여론조사꽃(서울 서대문구)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무렵 여론조사꽃에 도착한 제9공수특전여단 52대대장 유선민은 부대원 약 15명을 여론조사꽃 건물 외곽 경계 임무에 배치한 후 나머지 인원들을 차량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경계 임무를 하던 위 부대원들은 일반인 3명이 여론조사꽃 건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막는 일이 있었다.

황준홍은 수사기관에서 “23:43경 출동 준비 완료를 해서 여단장님께 보고했고, 출동 지시하셔서 바로 출발했다. 출발 당시에는 어디로 가라는 지시가 없었지만, 신속대응부대는 즉시 출동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일단 출발해서 이동을 하고 있어야 해서 부대

밖으로 나왔다. 23:45경 차용환 작전참모로부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 단톡방으로 목적지를 전달한 후 이동하였다. 당시 작전참모가 목적지만 말해주고 임무를 말해주지 않아 무슨 임무인지는 몰랐다. 저희 선발대가 도착했을 때 안무성 여단장도 도착해 있었다. 관악청사는 정문이 없고 차량 출입 차단봉만 내려져 있었다. 여단장께서 00:23~00:30경 ‘1개 지역대는 관악청사 담벽 안쪽에서 외곽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 버스에 탑승해서 차량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했다. 3지역대 48명이 청사 경내 안쪽에서 경계근무를 했다. 여단장께서 00:45경~01:00경 여론조사꽃으로 간다고 하시며 가셨다. 관악청사 건물은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않았다. 다른 출입문이 있는지도 확인해 본 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제3대대(대대장 장희재 및 병력 114명)는 00:47경 사령부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출동 준비를 완료하고, 00:56경 대형버스 2대, 지휘차량 1대, 구급차(AMB) 1대를 이용해 여의도 소재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하여 01:01경 부대 위병소를 통과하였는데, 위 3대대가 통과한 후 위 위병소는 폐쇄되었다.

라) 수도방위사령부

(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23:00경 국회로 출동하여 23:25~30경 국회 부근에 도착하였고, 제1경비단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를 포함한 대테러특임부대 16명은 23:10경 국회로 출동하여 23:45경 국회 인근 여의도공원 주차장에 도착해 그중 15명이 국회 1문으로 이동하였다가 출입을 저지당하자 00:24경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국회 7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으며, 제1경비단 2특임대대 1지역대 1중대장 KV를 포함한 대테러초동조치부대 11명은 23:19경 국회로 출동하여 23:46경 국회 1문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인파로 인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이었고,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을 포함한 대테러초동조치부대 12명과 기동중대 2명은 23:30경 국회로 출동하여 12. 4. 00:04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 공포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은 2024. 12. 3. 23:25경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 김홍식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경비 병력 보강을 요청받았고, 이진우의 승인을 받아 12. 4. 00:40경 제1경비단 제1경비대대 소속 70명을 대통령 관저 경비 병력으로 추가 투입하였으며, 01:08경 위 병력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하였다.

(나)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2024. 12. 3. 23:30경 국회 외곽 남서쪽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당시 경찰에 의해 국회 경내로의 출입이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진우는 즉시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길을 막고 못 들어오게 한다.’,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진우는 국회 인근에 도착한 직후인 23:33:43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국회로 들어가는 문이 다 막혀 있어 부하들에게 총은 두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상황보고를 하였는데, 그때 국방부 비화폰으로 전화가 걸려오자 자신의 전속부관인 XN에게 국방부 비화폰을 건넸다가, 이후 XN가 위 전화가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걸려온 전화임을 알려주자 피고인 김용현과의 전화를 마친 후 피고인 윤석열과 통화하였다. 당시 피고인 윤석열은 이진우에게 ‘거기 현장 상황이 어때요?’라고 물었고, 이에 이진우는 ‘지금 여기 사람이 너무 많고, 경찰 경력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 막고 있어서, 저희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협조 받아서 담 넘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도 내려놓고’라며 ‘국회 경내로 들어가는 문이 다 막혀 있어 부하들에게 총을 두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진우는 이후에도 계

속 차량으로 국회 외곽을 돌면서 상황을 주시하다가 2024. 12. 4. 00:00~00:10경 수도방위사령부 본부에 유선으로 ‘여기는 장갑차는 오면 안 된다. 사람이 많아서 장갑차 오면 큰일 난다’, ‘지나다니지도 못 한다’, ‘차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국회 담 넘어서 들어가라’, ‘충은 버스에 두고 내려라’, ‘양재응이 국회에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협조를 구해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진우는 00:17경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아 1분 56초가량 통화하면서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최초 보고를 하였고, 00:19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과 통화하였다.

이진우는 23:37경 국회협력단장 양재응과 통화하며 ‘우리 병력 배치 좀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이진우는 여러 보고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00:40경 국회 인근에서 다소 떨어진 수도방위사령부 여의도진지(서울 영등포구 AAB 인근)로 이동하였다.

(타)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2특임대대 1지역대 대테러초동조치부대 11명(선발대) 이 2024. 12. 3. 23:19경 먼저 국회로 출동한 후, 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는 23:28경 2특임대대 연병장에 2지역대 병력과 함께 집합 후 장갑차에 탑승해 대기하면서 2특임대대장 윤태현에게 출동준비 완료 보고를 하였는데 ‘지금 바로 나갈 수 있기는 한데 장갑차를 정말 가지고 나가는 게 맞나?’,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금 걱정된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윤태현은 ‘확인해보겠다’, ‘일단 기다려봐, 단장님께 한 번 지침 받아볼게’, ‘(모듈 부대) 일단 놓고 가는 것으로 판단해라. 나머지 뒤는 내가 정리하겠다.’고 지시하였고, 제1경비단장 조성현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후 ‘단장님 지시다. 장갑차 원상복귀 시키고 버스로 갈아타라. 세부적인 것은 윤우 소령(차량 통제 군수 인원)하고

전화해서 조치를 받아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2특임대대 2지역대는 다시 출동 준비를 하였는데 중형버스 배차가 지연되어 대기하는 바람에 2024. 12. 4. 00:31경 버스에 탑승해 출동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다.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35특임대대 3지역대 대테러특임부대 16명(선발대)이 23:10경 먼저 국회로 출동한 후 35특임대대 대대장 박진우 포함 총원 29명은 장갑차에 탑승하는 등 출동 준비를 완료한 후 23:40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데, 조성현은 ‘사령관님 지시로 장갑차는 운용하지 않는다, 버스에 탑승하라’며 버스로 변경해 출동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아울러 35특임대 후속부대원들에게 삼단봉을 휴대하도록 지시하였다.

제1경비단장 조성현을 포함한 제1경비단 본부 병력 총 29명은 23:44경 국회로 출동하였고, 당시 위 인원들은 소총 22정, 권총 4정을 지참한 상태였으며, 출발 전 참모장 조백인으로부터 ‘총기를 두고 내려라, 안전에 유의해라’, ‘총과 탄을 놓고 내려라, 시민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하라’는 이진우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위 제1경비단 본부 병력 29명은 00:04경 국회 1문 앞을 지나 7문 앞에 도착하였다.

(라) 한편 (23:19경 국회로 출동한 2특임대대 선발대 10명을 지휘하던) 2특임대대 1지역대 1중대장 KV은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출동상황을 보고하라’는 1지역대장 김우진의 지시에 따라 23:40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약 1분 32초간 통화하였는데, 당시 KV은 이진우에게 ‘대테러초동팀이 출동하여 현재 국회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진우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을 막아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팀원들에게 전달하였다. KV 등 11명이 탄 버스는 23:46경 국회 1문 앞에 도착하였고, KV은 그 무렵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군중들이 버스 앞을 가로막거나 버스 밑으로 들어가 버스에서 하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 직후 KV은 다시 이진우로부터 전화

를 받았는데, 이진우는 2특임대대 선발대의 현 위치를 확인한 후 현재 이진우 본인도 국회 외곽에 있으나 국회 경내 출입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국회 정문을 봉쇄할 수 있냐’, ‘국회 출입이 쉽지 않을 텐데 경찰한테 이야기하면 문을 열어줄 것이다.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차량으로 진입이 어려우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을만한 그런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 이동해라’, ‘국회 정문에 사람이 많다. 현장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들어가라. 차량으로 들어가기 어려우면 버스를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시킨 뒤 총기를 버스에 내려두고 도보로 이동하라,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을 막아라.’라고 지시하였다. KV는 2024. 12. 4. 00:00경 이진우에게 전화해 ‘현재 국회 1, 2문 사이를 통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진입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00:15경 이진우에게 여전히 같은 상황(진입 제한)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23:10경 국회로 출동한)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를 포함한 대테러특임부대 16명(선발대)은 23:45경 국회 인근 여의도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김의규는 23:47경 수도방위사령부 이진우로부터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양재응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 지시에 따라 운전병을 제외한 15명은 12. 4. 00:10경 국회 1문 앞에 도착해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군중들에 의해 진입을 저지당해 자리를 피하였다.

(ㄸ)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군사경찰단 선발대 13명과 함께 23:19경 국회로 출동하였는데, 김창학은 23:51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도착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변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라고 물어보았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였고, 이들은 12. 4. 00:02~00:04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다. 김창학은 도착할 무렵 이진우와 통화하면서 이진우로부터 ‘군사경찰 그 특임 애들 왔으면, 개들은 담타고 집

어넣어 보내.’, ‘그 안에 보면 양재응 장군이라고 있거든? 본청에서 어디 하나 게이트 맡아서 거 못 들어오게 막는 것만 해. 알았지?’,⁶⁹⁾ 69) ‘당신들은 또 경찰이니까, 특임 애들 이랑 부딪히면 당신 체포한다고 하고 끌고 나가라고’, ‘최대한 경찰들 많이 들어가야 한다, 안에’라고 지시하였다. 구체적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창학 충성, 사령관님. 군사경찰단장입니다.
이진우 어. 나 지금 저 현장에 있는데,
김창학 예, 예. 사령관님.
이진우 여기에 다 경찰이 완전히 막혀서 절대 MC 못 들어가거든?
김창학 예, 예. 지금,
이진우 그냥,
김창학 도착은 했는데,
이진우 외곽에서 그냥 저,
김창학 예, 예.
이진우 에스크, 예, 여기서 *** 하면서,
김창학 예, 예.
이진우 무력시위만 해.
김창학 예, 예. 알겠습니다. 인근,
이진우 어.
김창학 주변에 그 기동순찰하면서 그런 활동만 하겠습니다.
이진우 어, 기동순찰하면서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보이면 빨리 어디라고 알려주고.
김창학 예,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이진우 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불가능해.
김창학 예, 예. 저, 저도 지금 봤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진우 어.
김창학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그 대신 저, 저 군사경찰 그 특임 애들 왔으면,
김창학 예, 예. 왔습니다.
이진우 개들은 담타고 집어넣어 보내.
김창학 아,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이진우 어.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양재응 장군이라고 *** 있거든?
김창학 예, 예. 예.
이진우 본청에서 어디 하나 게이트 맡아서 거 못 들어오게 막는 것만 해. 알았지?
김창학 예,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이진우 총 갖고 들어가지 말고.

69) 김창학은 이 법원에서 ‘위 지시를 국회의사당 본청의 문을 막아 출입을 차단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다만 그 대상을 국회의원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창학 그 총은, 총하고 탄은 놔두고,
 이진우 어.
 김창학 삼단봉은 휴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진우 그렇지.
 김창학 예, 예.
 이진우 그래서 당신들은 경찰이니깐,
 김창학 예, 예.
 이진우 경, 경찰 그 권한으로 하라고.
 김창학 예.
 이진우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저 계엄군으로 지금 선정이 됐어.
 김창학 예, 예.
 이진우 합참에서.
 김창학 예, 예.
 이진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정, 정당하니까 경찰, 당신들은 또 경찰이
 니까,
 김창학 예, 예.
 이진우 저, 우리 저 특임 애들이랑 부딪히면 경찰이 가서 저, 뭐냐, 안에 경찰 이게 있으니까 당신
 체포한다고 하고 끌고 나가라고.
 김창학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진우 과, 과감하게.
 김창학 예, 예.
 이진우 응, 응.
 김창학 예,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이진우 최대한 경찰들 많이 들어가야 된다, 안에.
 김창학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진우 오케이.
 김창학 예,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김창학은 이 법정에서 “제가 대테러초동조치팀을 국회로 보낼 당시 저 또한 제 임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임
 무는 부여하지 않았다. 저도 현장에 도착하여 조성현 대령에게 전화해 ‘우리 임무가 무엇
 이냐?’고 물어보았다. 조성현이 제게 ‘선배님이 들으신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하여 제
 가 ‘들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저는 12. 3. 23:30경 부대에서 출발해 국회 현장에 12.
 4. 00:05경 도착하였다. 대테러초동조치팀과 합류하기 위해 이동 중 사령관님께 전화를
 받아 임무를 하달 받았다. 이진우로부터 ‘내가 현장에 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너희 MC는 국회 바깥으로 순찰을 돌아라, 돌다가 혹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 달라’, ‘너희 특임중대는 비무장으로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국회협력관실 양재응 장군을 만나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 그곳을 차단해라,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체포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당신들은 군사경찰이니 합법적인 범위에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단 사령관님 지시대로 MC로 하여금 국회 외부를 돌아보도록 지시했다. 다만 담을 넘어 들어가고 민간인을 체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01:00경 조성현에게 제1경비단이 국회에 진입하였는지를 확인했는데, 조성현이 ‘자신들도 경찰 협조를 얻어 담을 넘어 들어왔다.’고 말하기에 특임대대장으로 하여금 경찰에 확인을 해 보라고 했고, 경찰이 협조를 하겠다고 하여 01:40경 특임중대장 포함 10명에게 ‘경찰의 협조를 얻어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 양재응 장군을 만나라’고만 지시하였다. 그 후 특임대대장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진입한 특임중대장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제1경비단 소속 인원들이 철수하고 있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조성현에게 확인해 보니 조성현이 ‘철수 중인 것이 사실이고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되었다.’고 알려주어서 바로 철수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당시 김창학 대령을 개인적으로 수방사령관실로 불렀었는데 이후 잊고 있었다. 조백인 참모장이 23:15경 제게 ‘군사경찰단 병력도 출동했다’는 취지로 알려줘서 그때 알았다. 본래 대테러작전을 하면 시민과 테러범을 분리시키면서 시민들도 테러범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현장에서 검문, 검색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제1경비단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 도착한 군사경찰단 인원들에게 차단과 검문을

명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또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았는지를 물어보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검사님은 TV를 보시니까 그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검사님이 저랑 차 안에서 TV도 못 보고 전화통화로 보고받는 내용, 그다음에 제가 육안으로 앞에 쉴드창으로 바깥을 내다보면 딱 모양이 미국의 폭동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시민이 폭동한다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잘못 하면 큰일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제가 이렇게 증언할 때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언론도 거기 현장 간 군인들, 수방사 특전사 병력들이 현장에서 보던 상황은 전혀 TV를 통해서 내부 상황도 모르고 임무 받고 갔는데 모양이 보여지는 데서 임무를 받으면 ‘아, 그런 거겠다.’하고 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저도 저의 조서 보면 제 밑의 중대장, 지역대장 전부 다 그래요. ‘아, 국회의사당 본관 안에 반국가세력이나 중복세력이 있나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2024. 12. 4. 00:12경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장 노주영과 통화하면서 ‘나 지금 사령관님하고 통화하긴 했는데, 뭔가를 부여받기는 했는데 그거를 지금 실행하기가, 쉽지 않아’, ‘사령관님하고 통화는 했는데, 그거는 뭐 하여튼 뭐 임무를 받긴 받았는데’, ‘하여튼 현장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후 김창학은 춘천 소재 제2군단 군사경찰단장 박성일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흐름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김창학이 노주영, 박성일과 한 구체적인 각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창학과 노주영의 통화 내용

김창학 음... 지금 VTC에서 회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노주영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

김창학 응.

노주영 그냥 참모장님하고 등장은 다 돼 계신데,
 김창학 응.
 노주영 저기 참모장님은 그 내부에서만 지금 토의하고 계십니다.
 김창학 지금 현장에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야.
 노주영 예.
 김창학 나 지금 사령관님하고 통화하긴 했는데,
 노주영 예.
 김창학 뭔가를 부여받고, 받기는 했는데 그거를 지금 실행하기가,
 노주영 예.
 김창학 아, 쉽지 않아.
 김창학 지금 하여튼 뭐 사령관님하고 통화는 했는데,
 노주영 네.
 김창학 그거는 뭐 하여튼 뭐 임무를 맡긴 받았는데,
 노주영 예.
 김창학 하여튼 현장에 있다,
 노주영 예.
 김창학 아, 그렇게 하고.
 노주영 예.
 김창학 응. 오케이, 알았어.
 노주영 네.
 김창학 그래, 그래.
 노주영 네, 충성.
 김창학 응.

김창학과 박성일의 통화 내용

김창학 어, 성일아.
 박성일 네, 충성. 선배님.
 김창학 응.
 박성일 아...
 김창학 니네도 소집됐나?
 박성일 저, 소집이 아니고 지금 뭐 난리, 난리입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김창학 야, 나는 지금... 가지? 이해가 가지?
 박성일 예.
 김창학 추측이 가지?
 박성일 아, 선배님 이걸 뭐 지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그냥 뭐 때로 이렇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면 어떡합니까, 진짜 다들?
 김창학 아, 글썄다. 이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뭐.
 박성일 예.
 김창학 나 여기 있어. 나 지금 나와 있어.
 박성일 아, 선배 어디 사령부 가십니까?

김창학 아니. 사령부가 아니라 나 지금 나와 있어.
박성일 나와 계십니까?
김창학 응. 그래. 뭐,
박성일 그렇습니까? 아...
김창학 우리는 역사의 한 흐름 속에 있는 것 같다.
박성일 아... 선배님.
김창학 어떤 흐름인지는 나중에 뭐 평가할 테고.
박성일 예. 그러면 뭐 다 때려. 다 때려 막겠쥬. 뭐 우리는.
김창학 응.
박성일 그래도 뭐 우린 뭐 그냥 하는 일 해야쥬, 뭐.
김창학 하는 일 하는 거고 지금 뭔가가 또 계속 내려오고 있어. 이런 그,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박성일 아, 저, 선배님 육군 소장이랑 좀 아까 통화하다가 짜증나가고.
김창학 왜? 왜? 왜? 왜?
박성일 비상계엄 선포됐으면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김창학 아, 그런가?
박성일 아, 그쥬. 우리 수사 인력 다 돌려줘야 되는데,
김창학 맞아. 맞아. 치안처도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박성일 예.
김창학 응.
박성일 근데 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명령이 없다고.
김창학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리된 게 없어.
박성일 (한숨)
김창학 위에서도 선포만 했지.
박성일 예.
김창학 그런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전혀 검토 안 하고 있을 거야.
박성일 (한숨)
김창학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소집되는 것도 아니고 소집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
박성일 뭐, 뭘 노린 거쥬, 지금? 대통령이?
김창학 몰라. 우리는 뭐 군인이니까.

위와 같이 통화를 마친 후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2024. 12. 4. 00:15경 자신과 함께 군사경찰단 선발대로 출동한 특임중대장 이찬흠에게 전화해 군사경찰단 선발대 인원의 현황 위치와 상황(국회 1문 근처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로 대기 중)에 대해 확인하면서 ‘네가 좀 정신교육을 해. 일단은 단장 오는데, 우리가 이거는 뭐 군인이니까 하게 되어 있는 거 하는 건데 절대 불법적인 건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 탄약을

갖고 나가진 않는다. 우리가 뭐 국민에게 위해행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며 선발대 인원들이 국회 1문 인근에서 차량대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군사경찰단 특임대대장 엄정섭을 포함한 군사경찰단 후속 병력 62명(대대본부 병력 3명, 특임중대 36명, 기동중대 23명)이 2024. 12. 4. 00:08경 수도방위사령부 본부에서 국회를 향해 출동하였다. 당시 대대본부 병력 3명은 권총 3정, 삼단봉 3개를 지참해 렉스턴 차량 1대로 이동하였고, 특임중대 36명은 소총 28정, 저격총 3정, 권총 35정, 삼단봉 35개를 지참해 버스 1대를 통해 이동하였으며, 기동중대 23명은 삼단봉 23개를 지참해 MC 23대를 이용해 출발하였고, 별도 탄약은 지참하지 않았다.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00:17경 엄정섭에게 전화하여 군사경찰단 후속부대의 출발 여부를 물으면서 ‘특임중대장 이찬흠과 연락하여 이찬흠이 대기하고 있는 위치로 오라’고 지시하였는데, 구체적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정섭 충성.
김창학 어. 정섭아, 출발은 했나?
엄정섭 지금 현재 출발했고,
김창학 응.
엄정섭 지금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김창학 아, 많이 왔네.
엄정섭 예, 예.
김창학 여기 그 찬흠이하고 통화를 해서,
엄정섭 예.
김창학 이 안쪽으로 잘못 들어와 버리면 차가 아예 못 움직여.
엄정섭 예, 예.
김창학 아, 그러니까 찬흠이랑 누구랑 통화를 시켜가지고,
엄정섭 예, 예.
김창학 나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 그 대기하는 데로?
엄정섭 예.
김창학 그쪽으로 가야 될 거야. 지금 뭔가를 들어가거나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내가 지금 사령관님 좀 전에 통화하긴 했는데,
엄정섭 예, 예.
김창학 임무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되게 애매하게 받았어.

엄정섭 아, 예. 예.
김창학 어, 그냥 그쪽으로 일단 와라.
엄정섭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창학 아, 그래. 그래.
엄정섭 찬함이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특임대대장 엄정섭 포함 군사경찰단 후속 병력 62명은 00:39경 국회의사당 인근 KBS 미디어텍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엄정섭은 00:40경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에게 도착 사실을 유선으로 보고하면서 ‘시민과 군병력의 충돌이 목격된다.’고 말하였는데, 김창학으로부터 ‘총이나 탄은 절대 가지고 안 내린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 있는 병력들하고 충돌이 있다는 거지?’, ‘야! 그 촬영을 해서 나한테 한 번 좀 보낼 수 있을까?’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엄정섭은 현장 영상을 촬영해 김창학에게 전송하였고, 00:47경 김창학으로부터 ‘자신(김창학)이 있는 위치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엄정섭은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해 김창학을 만났는데, 김창학으로부터 ‘내가 이찬흠 특임중대장에게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협력단장 양재응 장군을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임무를 주었다’, ‘다만 이찬흠으로부터 현재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 구체적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00:40경 통화

김창학 어
엄정섭 단장님! 여기 국회의사당 간판 앞인데 여기서 단장님 계신데까지가 한 250~300m입니다. 근데 시민들이 지금 저희 말고 군 병력 대상으로 지금 약간 물리적 충돌하면서 막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김창학 군병력은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엄정섭 저기 보니까 경비단? 어딘지 모르겠는데. 전투복 입은 인원들이... 지금 소총 매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총 뺏고 있습니다.
김창학 거기 특전사 아닐까 싶은데.
엄정섭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저희도.
김창학 그래서 우리는 내리지 말고 일단 내가 여기 교육은 총이나 탄은 절대 가지고 안 내린다. 그렇

게 얘기를 했거든.

엄정섭 특임대 인원들은 차량에 탑승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MC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거기 건너가려면 저 인원들을 뚫고 지나가려면 시민의 피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창학 시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엄정섭 예 여기서 지금 막혀 있습니다. 여기 저희 있는데서 단장님 계시는데 까지 김창학 아니 그래서 내가 봤어 내가 거기를 지나왔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차 안에 타고 있고 MC에도 위해를 가한다고?

엄정섭 아니 MC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어서 지금 이동은 안하고 있어요. 저희 보이는 50m 앞에 지금 아마 특전사 애들 같은데 개네들하고 민간시민하고 엉켜있습니다.

김창학 그러면 버스 있지! 니네 버스타고 오고 있지?

엄정섭 예 버스 지금 정차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창학 버스하고 너네 차량... 그럼 MC는?

엄정섭 MC도 지금 다 정차해서 서 있습니다.

김창학 MC를 이렇게 돌아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엄정섭 돌아서 그쪽 길로 말입니까?

김창학 그러니까 MC는 기동성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건물 뒤쪽으로 돌아서 그럴 수는 없나?

엄정섭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학 그리고 니네 차량은 경광등이나 이런 거는 뭐 경찰이잖아! 우리 차량들은 내리지만 않으면 팬 찰을 것 같은데

엄정섭 예! 예!

김창학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 있는 병력들하고 충돌이 있다는 거지?

엄정섭 예! 저기 앞에 전투복 입은 인원들

김창학 야! 그 촬영을 해서 나한테 한번 좀 보낼 수 있을까?

엄정섭 예!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00:40경 통화

엄정섭 충성!

김창학 어 정섭아! 근데 그 동영상 보면 충돌이 있거나 그런 건 없다.

엄정섭 예!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잠깐 특전사애들 한 3~4명 민간 시민들이 감싸가지고 막 옷 뺏고 막 이것저것 뺏었는데 옛날에 한우 파동이 있었을 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좀 약간

김창학 지금은 근데 그런 현상은 없고?

엄정섭 예 지금은 또 없습니다. 없고 지금 경찰 기동대가 순차적으로 도착해서 그쪽으로 도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학 아~!

엄정섭 차량은 못 들어가고 저기 인원들도

김창학 그러니까 그 뚫고도 못 와?

엄정섭 저희가...

김창학 좀 전에 내 차량은 우리 차량은 지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아예 막고 있냐고?
 엄정섭 예 시민들이 도로에 다 막고 있습니다.
 김창학 그러면 거기 다 세워놓고 있다 이거지!
 엄정섭 예!
 김창학 그러면 200m 200m라고 그랬나 여기
 엄정섭 약 한 250m입니다.
 김창학 그러면 대대장이 거기 잘 대기하라고 그리고 대대장이 이쪽으로 한번 와 봐! 내가 있는
 쪽에 당신 혼자 오지 말고 작조를 해서 오든지 와 봐
 엄정섭 예 알겠습니다.
 김창학 그 다음에 MC 누구든지..
 엄정섭 MC 2대는 지금 지형정찰시켰고 저랑 정작과장 둘이 가겠습니다.
 김창학 어 그래 그래 오케이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엄정섭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2024. 12. 4. 01:02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조성현으로부터 ‘제1경비단 소속 인원들은 울타리를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경찰하고 협조해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 전화통화에 따라 김창학은 특임대대장 엄정섭에게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특임대대장 엄정섭, 특임중대장 이찬흠 등이 함께 이동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후 엄정섭은 김창학에게 “경찰이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가는 거는 허용하겠다.'라고 했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이찬흠 등 군사경찰단 선발대 5명은 국회 1, 2문 기준 우측, LC 등 후속부대 5명은 국회 1, 2문 기준 좌측으로 각 월담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찬흠 등 5명은 01:35경 국회 1, 2문 우측 울타리를 넘어, 뒤따라 LC 등 후속부대 5명은 01:46경 국회 1, 2문 좌측 울타리를 넘어 각각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위 김창학과 조성현의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창학 거기 뭐, 뭐야. 내, 나도 사령관님께 지금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조성현 예, 예.
 김창학 아니, 아니. 아니, 지금 그리고 저기 뭐야, 지금 단장도 들어가 있어요?
 조성현 아닙니다. 저는 바깥에 있습니다.
 김창학 병력들만 들여보내고?

조성현 예, 특임대만 들여보내고,

김창학 예.

조성현 저, 그, 저기 군사경찰 투입했습니까?

김창학 아니, 우리 아직 못 들어갔어.

조성현 몇 명 왔습니까?

김창학 우리야 뭐 여기 온 거는 7, 나까지 73명 왔지. 근데 뭐 사령관님은 울타리를 보고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조성현 아니, 우리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김창학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갔다고?

조성현 예. 그거 경찰하고 협, 협조해가지고,

김창학 응.

조성현 한적한 곳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김창학 지금 근데 경찰에서 하는 얘기는 울타리로도 안 되고 거기 양재웅 장군님 뭐, 그 보좌관인가가 그 비엔비 건물 있는 쪽으로 나와 주면 신원 확인 후에 들여보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들어갔어요?

조성현 예, 아닙니다.

엄정섭은 이 법정에서 “저를 포함한 군사경찰단 후속병력 62명은 12. 4. 00:08경 수방사를 출발해 00:39경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00:39경 KBS미디어텍 인근 앞 도로 갓길 쪽에 차량하고 MC들을 다 정차시켜 놓고 나서 그다음에 정면을 바라봤을 때, 당시 군인들로 보이는 인원들이 시민들과 뒤엉켜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군인들 2~3명이 시민들로부터 뭔가 총이든, 옷이든 뺏기는 모습이 멀리서 관측됐고, 이후 군인 1명이 시민한테 뭘가 달라고 하면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뛰어가면서 도로를 횡단해서 가는 모습을 봤고, 그 군인 1명은 뛰어간 다음에 자기 것을 회수했는지 유유히 천천히 다시 걸어서 복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최초 도착해서는 MC로 순찰이 가능한지, 지형이 어떤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판단해 보니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 같아 MC는 아예 운행을 안 하고, 도보로 MC가 운행 가능한지 확인하고 김창학에게 ‘제한된다.’고 보고 드렸고, 김창학이 본인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했다. 김창학은 제게 ‘특임중대장 이찬흠에게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찬흠으로부터 현재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고, 이후 조성현과 통화하더니 ‘조성현으로부터 자기들은 다 울타리 넘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도 안으로 최소 인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저와 이찬흠 등이 정문 우측에 있는 간부에게 다가가 ‘우리도 정상적으로 지시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민들 때문에 정문으로 들어갈 수 가 없다. 그래서 좀 들어갈 수 있게 안내를 해 달라’고 말했고, 그 경찰 간부가 제게 ‘시민들이 동요되고 같이 넘어가지 않게 저쪽, 우측 어두운 쪽, 한 쪽으로 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고 안내해 주었다. 그래서 이찬흠 등 군사경찰단 선발대 5명과 후속부대 5명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찬흠 등 5명은 01:35경에 정문 우측 울타리를, LC 등 5명은 01:46경 정문 좌측 울타리를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총기는 따로 휴대하지 않고 흑복에 삼단봉만 휴대한 상태였다. 그 후 저는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국회 경내로 들어간 이찬흠으로부터 ‘경비단이 철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01:47경 바로 김창학에게 ‘10명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 경비단하고 안에 있는 인원들이 다 철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제가 01:29경 임순빈 소령과 통화하면서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긴 하였지만, 정확한 보고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5명, 5명을 차례로 안에 들어가게 한 것이었는데, 안에 들어간 인원들로부터 경비단이 철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바로 철수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여 바로 김창학에게 보고한 것이다. 01:51경 김창학 단장으로부터 ‘국회 경내로 진입한 병력들을 철수시켜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창학은 당시 MC 5대를 남겨두고 20대만 주둔지로 복귀시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출동한 버스들을 안전하게 호송해서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남겨둔 것이다. 실제 MC 2대는 경비단을 부대로 복귀하는데 지원했고, 나머지 3대는 저희와 같이 복귀하는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되었다. 한편 당시 국회 경내로 진입

한 10명은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 진입하지 못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02:10경 국회 밖으로 나와 02:17경 차량에 탑승했다. 이찬흠 대위는 현장에서 단장님으로부터 02:20경 복귀지시를 받아 복귀했고, 저희들은 아마 02:35~02:40경 복귀하기 시작했다. 03:06경 부대로 모두 복귀한 것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배) 한편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미결수용실 담당 예방과장 김혜인은(후속부대로 출동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2024. 12. 3. 23:47경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장 노주영으로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의 김윤정 중령이 물어본다. 현재 수방사 미결수용실에 수용 중인 미결 수용자 3명을 이감시키려면, 어느 소속의 어떤 검사로부터 이감 지휘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을 한 후 김윤정 중령에게 알려드려라’는 취지로 연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혜인은 23:48경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 계획과장 김윤정과 전화통화 하였고, 김윤정에게 ‘수방사 미결수용실에 3명의 미결수용자가 있는데, 이감하려면 2명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감 지휘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1명은 수방사 ○검찰대로부터 이감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확인해주었다.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또한 23:52경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으로부터 전화로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실에 위치한 인원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될 수도 있다. 줄줄이 체포되면 수도군(단)과 수방사 미결수용실이 1인 1거실로 활용될 수 있다.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감 준비를 요청 받았고, 통화 종료 후 23:54경 군사경찰단 예방안전과(정창균)에 전화해 ‘수용 중인 3명에 대해 이감 지시가 떨어질 수 있다. 예방과는 그걸 준비하고 현장으로 오지 말라. 이감한다는 이야기는 미결수용실이 (비상계엄 관련)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니 그것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정창균으로부터 ‘저희도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국군교도소로 이감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다.’라고 보고받았다. 당시 김창학이

김성곤으로부터 이감 준비 연락을 받은 통화 내용 및 직후 예방과 정창균에게 지시한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창학과 김성곤의 통화 내용

김창학 어, 성곤아.
김성곤 네, 선배님.
김창학 어.
김성곤 그, 지금 미결수용실에 있는 인원 3명,
김창학 응, 응.
김성곤 교도소로 지금 이감을 지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김창학 응.
김성곤 지금 저, 수도군들하고 수방사 미결수용실이,
김창학 응.
김성곤 그 뭐 줄줄이들 체포되면은 1인 1거실로,
김창학 응.
김성곤 지금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창학 응.
김성곤 그래서 일단은 군검찰하고,
김창학 응.
김성곤 이감 지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김창학 응.
김성곤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학 저긴 어떡하나? 우리 저기 수도병원 지금 입원 중인데 내일 퇴원 예정인데.
김성곤 뭐 개도 그러면 퇴원할 때 교도소로 보내야지 말입니다, 이감 지휘를.
김창학 응, 응.
김성곤 예. 선배님 일단은 아직 본부장님이 지금 주요지휘관 들어가셔서,

김창학과 정창균의 통화 내용

정창균 충성. 단장님,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김창학 어, 어. 지금 헤인이 통화 중인 것 같은데,
정창균 예, 예.
김창학 그 같이, 같이 오고 있나? 아니면 헤인이만 뭐 따로 출발했나?
정창균 아아, 같이 갑니다. 지금,
김창학 그,
정창균 아직 출발 안 했고,
김창학 출발하지 말고,
정창균 예, 예.
김창학 지금 우리 이감지시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애.

정창균 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학 예, 그러니까 여기 현장 오지 말고,
 정창균 예.
 김창학 그거 대비해요. 그리고 담당자가 아마 법무관리관실에 정유림 대령일 거야.
 정창균 정유림 대위,
 김창학 예. 대령, 대령.
 정창균 예, 대령.
 김창학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3명 포함해서,
 정창균 예.
 김창학 그, 저기, 저기 병원, 수도병원.
 정창균 예.
 김창학 가있는 인원까지 아마 이감을 갈 수도 있고,
 정창균 예.
 김창학 이감을 간다는 얘기는 우리 미결 수용실이,
 정창균 예.
 김창학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정창균 예, 예.
 김창학 예, 그러니까 그 준비도 해야 돼.
 정창균 예. 단장님, 저도 요거 전파 방금 받았고,
 김창학 예.
 정창균 국군교도소로 가는 걸로 지금 국, 조사본부에서 연락받았습니다.
 김창학 예, 예.
 정창균 준비 잘 하겠습니다.
 김창학 오케이, 알았어요.
 정창균 이상이십니까?
 김창학 예, 예.
 정창균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이후 김혜인은 23:54경 군사경찰단 특임대대장 엄정섭에게 전화하여 ‘미결수용실에 있는 인원들 조사본부에서 아마 수도군단으로 다 이감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호병력 추가로 좀 지원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서 그거 참고 차 먼저 보고드립니다.’, ‘혹시나 이감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전화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김혜인은 12. 4. 00:06경 재차 김윤정과 통화하였는데, 김윤정으로부터 ‘이감 계획을 작성하라는 준비 지시를 받았다. 이감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예방과에서도 군검찰과의 연락 등을)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김혜인은 군사경찰단 예방안전과

추적부사관 FQ을 통해 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미결수용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전 투복으로 갈아입게 하고 집을 챙기도록 지시하였고, 2024. 12. 3. 23:59경, 2024. 12. 4. 00:10경 군사경찰단 교도관 UN(수도방위사령부로 복귀 중이었다)에게 전화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감 준비 지시를 받았다. 국군교도소로 이감될 것 같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할 것 같은데 수용자들 짐 정리시키고 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니 빨리 와라, 이감 지휘 받는 것 등도 우리가 해야 하니 군검찰과의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장 노주영은 00:02경 국방부 조사본부 계획과장 김윤정으로부터 “00시부 이감 ‘준비’ 지시 / 확인 답변 바람”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확인’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방첩사령부 소속 대령 노영훈, 800방첩부대 방첩대장 조위현 등 총 6명이 2024. 12. 4. 01:08경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미결수용실을 담당하던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예방과장 김혜인에게 ‘수용 가능 인원이 몇 명인지’, ‘내부시설을 좀 볼 수 있는지’ 등을 물었는데, 이에 김혜인은 ‘미결수용실 내부는 현재 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이감 준비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이감되고 나면 단장님 지침 받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사) 제1경비단 35특임대대 후속부대(35특임대대장 박진우, 운전원 및 증원부대 27명 포함 총 29명)는 2024. 12. 4. 00:10경 수도방위사령부 본부에서 국회로 출동하였는데, 소총 27정, 권총 16정, 공포탄 5.56mm 929발을 소지한 상태였다. 한편 35특임대 선발대장 김의규는 00:16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00:18경 내지 00:20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국회 경내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차례로 보고하였는데, 이진우로부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돌아서 경찰 협조를 받아 담을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를 받았다. 위 지시에 따라 김의규와 35특임대대 선발대 15명은

00:24경 경찰의 안내를 받아 국회 7문 인근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 경내로 진입하였다.

김의규는 국회 경내 진입 후 이진우에게 ‘15명 진입했습니다.’, ‘일부 후속해서 진입을 시도합니다.’라고 보고하였고, 이후 제1경비단장 조성현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 근처에 있는 ‘국회의사당 한국전력 전기차충전소’ 인근으로 집결하였다.

(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2024. 12. 4. 00:40경 즈음 수도방위사령부 여의도진지로 출발하였는데, 위 출발 직후 수도방위사령관 전속부관 XN의 연락을 받은 수도방위사령부 여의도진지장 전승혁은 00:52경 1층으로 내려가 대기하였다. 이진우와 XN가 탑승한 차량이 여의도진지 앞에 도착하였으나, XN가 전승혁에게 ‘다가오지 말고 대기하라’는 신호를 하여 전승혁은 다가오지 않고 대기하였고, 이후 이진우는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였다.

한편 이진우는 여의도진지로 이동하고 있던 2024. 12. 4. 00:32, 00:34, 00:36경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윤석열은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라고 물었고 이에 이진우가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는 병력이 갖는데 그 앞에서 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에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야,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이진우는 00:37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전화하였고, 00:42경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야, 안에 지금 들어갔다, 인원들 끌어내라’,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저는 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통화가 세 번의 통화인줄 모르고 한 번의 통화로 기억했었다. ‘너 도대체 아직까지 못 가고 뭐하냐?’는 이야기를 들은 걸로 기억난다. 첫 번째 통화가 끝나고 제가 바로 김봉식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보니 대통령께서 ‘들어가려면 어디어디로 가서 협조하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으로 짐작한다. 두 번째 통화는 끊자마자 제가 양재응 국회협력관한테 전화를 한 것으로 보니 제가 대통령께 ‘진출이 안 되고 위험하다.’고 하니까 ‘빨리 이동하려면 협조를 잘 받아라.’고 대화한 것으로 짐작한다. 이걸 모두 추정인데, 00:36경에 있었던 세 번째 전화에 대해서는 기억난다. 원래는 이것도 기억이 안 났는데 제가 12. 6. 직무정지 되고 나서 부관 XN에게 당시 통화내역이 기억나는지 물어보았다. XN의 말로는, 그 때 대통령님이 제게 ‘안 가고 뭐 하나’, ‘왜 진행도 못 하나?’ 하시면서 ‘4명이 들어가서 1명 정도 못 들고 나오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억이 났다.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께서 제게 지시하시는 게 아니라 혼잣말로 화내시는 것 같았다. 막 화를 내시면서 혼잣말 같이 막 짜증을 내시고 막 언성이 올라가셨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 군인들이 민간인들 그걸 의식하면서 그렇게 안 되냐?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끌어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기억이 난다.”, “당시 ‘4명 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는 말에 제가 ‘아이고 뚫렸구나, 큰일 났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해 가지고 결국 국회 기능유지가 안 되겠구나, 이것 잘못하면 오늘 세계 언론에 이상하게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또 기억나는 것이 ‘발로 차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는 이야기였다. 부끄럽지만 사실 제가 수방사 병력이 출발한 상태만 확인하였을 뿐 아직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 도착했는지는 보고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께 정확한 상황을 보고 못 하고 ‘시민들에게 꼭 막혀서 아무것도 안 되고 안전도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니까 대통령께서 ‘야, 군인이 그런 거 딱딱딱 해서 열의 있게 못 하나?’, ‘뭐 그렇게 그 모양으로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것은 되게 이상했다. 그

래서 ‘아, 이분 지금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실망했다. 제가 ‘안 되고 위험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니까 저한테 굉장히 불편하게, 그리고 좀 화도 내시고 질책성으로 했다고 이해했다.”, “대통령과 통화할 무렵 김용현 장관도 제게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재)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국회의사당 본관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를 받은 조성현은 2024. 12. 4. 00:43경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이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단독으로도 제한되고, 그래서 육군특수전사령관님과 소통을 한 번 하시라’는 취지로 건의하였는데, 이에 이진우는 ‘특전사령관이 통화가 안 된다, 알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이진우는 00:54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곽종근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요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진입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00:56경 다시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그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길을 터주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들은 조성현은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김의규 등 35특임대대 선발대 14명은 00:24경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상황이었다)에게 전화하여 ‘이따 가 국회의원들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재)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35특임대대 후속부대 대대장 박진우 포함 총 29명은 2024. 12. 4. 00:43경 국회의사당 인근 여의도 한강공원 제3주차장에 도착하여 이를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보고하였는데, 조성현은 박진우에게 ‘후속 증원부대도 경내로 진입해서 3지역대장과 합류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하면서 ‘35특임대대 선발대 김의규가 위

치한 국회 경내로 진입하여 합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박진우는 35특임대대 후속부대원 중 지원중대장 대위 1명과 상사 FB 등에게 ‘3지역대장 등 선발대가 국회 7문으로 넘어갔으니 너희도 그쪽으로 이동해서 넘어간 다음에 3지역대 선발대와 합류해라’고 지시하였다. 위 합류 지시에 따라 상사 FB 포함 25명이 01:03경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국회 7문 인근에서 월담을 하였고, 2명이 민간인들에 의해 저지되어 차량으로 복귀한 2명을 제외한 FB 포함 23명은 국회 경내로 진입하여 35특임대대 선발대 15명이 대기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 근처에 있는 ‘국회의사당 한국전력 전기차충전소’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캐) 이후 2024. 12. 4. 00:44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은 2특임대대장 윤태현에게 2특임대대 2지역대의 출동 지시를 하달하였고, 윤태현은 위 지시를 2지역대장 윤덕규에게 하달하였는데, 당시 윤태현은 윤덕규에게 ‘서강대교 북단으로 가서 단장님과 전화통화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특임대대 후속부대 2지역대장 윤덕규 포함 51명이 00:48경 버스로 서강대교 북단 방면 국회 방향으로 출발하였고, 당시 소총 44정, 권총 22정, 공포탄 5.56mm 1,320발을 소지한 상태였다. 이들은 01:04경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하여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도착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조성현은 윤덕규에게 ‘국회로 일단 이동해야 될 것 같다. 거기에는 지금 35특임대대가 국회 안에 있으니 35특임대대장과 통화를 해서 한 번 접촉을 해 봐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윤덕규가 ‘저희의 구체적 임무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조성현은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된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윤덕규가 ‘국회 안에 인원 전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묻자 조성현은 ‘그래. 그리고 무장을 해제해라. 총기, 탄약은 차량에 놓고 총기, 탄약을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 거기에 경계인원을 배치해놓고, 국회 안으로 투입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윤덕규는 35특임대대장 박진우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박진우는 윤덕규에게 ‘국회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도보로 들어갔다. 너희도 차량을 타고 온다면 아마 차량이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도보로 투입하는 것을 판단해 보라’, ‘자세한 사항은 3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와 통화해 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윤덕규는 다시 김의규와 통화한 후 서강대교 남단을 향해 출발하였는데, 01:20경 조성현으로부터 ‘국회 진입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당시 지시에 대해 조성현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윤덕규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부여받은 전반적인 임무가 특전사와 함께 그러한 임무다. 그렇지만 너희를 투입할 나쁜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대기하고 있고 35특임대대가 이미 투입되어 있으니까 소통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윤덕규는 이 법정에서 ‘조성현이 당시 불명확하게 지시를 하달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성현이 한 말이 임무였다고 판단하였다. 조성현의 진술은 큰 틀에서 제 이야기와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 취임 예정자인 장성관은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가 회의 중이던 회의실과 수사상황실 사무실을 오가며 지시사항을 수사상황실에 전달하던 중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정승기로부터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수사관 명단 100명을 작성해야 하며,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40명, 육군 30명, 해군 공군 해병대 각 10명으로 작성할 것’을 지시받았다. 해당 지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 또한 정승기의 옆자리에 자리한 상태였는데, 위 지시를 받은 장성관은 2024. 12. 3. 23:22경 강준규에게 ‘방첩사 요청인데, 수사관 명단 100명을 짜야 한다, 본부 40명, 육군 30명, 해군 공군 해병대 10명씩 짜야한다’고 지시하였고, 이에 강준규는 수사상황실 소속 김평재에게 수사관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40명, 육군수사단 소속 수사관 30명, 해군수사단 소속 수사관 10명, 공군수사단 소속 수사관 10명, 해병대수사단 소속 수사관 10명 도합 총 100명을 계급, 이름, 연락처, 거주지를 정리한 편성 현황 문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평재는 최초 지시받을 당시 ‘2024. 12. 4. 02:00 경까지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후 ‘최대한 빨리’, ‘지금 바로’라는 말을 들으며 명단 회신을 재촉받았다. 위 지시에 따라 김평재는 해군수사단 상황실장 홍종택, 해병대수사단 상황실장 홍지창에게 각 전화해 수사단 별로 수사관 10명 명단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후 해군수사단 상황실장 홍종택이 2024. 12. 4. 00:23경 김평재에게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공군수사단 상황실장 박성호가 00:29경 강준규에게 이메일을 통해, 육군수사단 담당자 AEZ이 00:49경 강준규에게 이메일을 통해, 해병대수사단 담당자 AFA가 01:20경 강준규에게 이메일을 통해 각 명단을 송부하였는데, 김평재는 이를 취합해 지시받은 대로 100명의 명단이 기재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인원 현황'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김평재는 위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인원을 취합해 60명 명단을 작성한 후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40명 부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군 수사관 명단을 출력해 강준규에게 전달하였고, 강준규는 01:30경 내지 02:00경 수사단장 정승기에게 보고하였는데, 보고를 다녀온 강준규가 ‘명단이 필요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여 김평재는 위 문서의 작성을 중단하였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수사지도과 수사계획장교 MT은 위 문건과 별개로 계엄시행계획에 따른 수사관 명단을 별도 작성하였는데, 김평재는 MT으로부터 위 문건을 건네받아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부분을 작성한 것이었다.

한편 위와 같이 문서 작성이 진행되던 2024. 12. 3. 23:31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장 정승기는 강준규에게 ‘장기교육자와 오늘 출장자를 제외한 수사단 전원을 비상소집하여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해라, 합수부로 나가는 인원들은 출동준비를 해라, 출동준비는 수정 (수갑)과 복장을 준비하고 복장은 가급적 검정 옷으로 맞춰 입어라’고 지시하였고, 강준규 는 위 지시사항을 내선전화를 통해 수사대장 4명에게 각 전파하였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은 2024. 12. 3. 23:44경 및 23:51경 총 2회에 걸쳐 수도권단⁷⁰⁾ 군사경찰단장 백철기에게 전화하여 수도권단 군사경찰단 내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및 미결수용자 이감 준비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첫 통화에서 김성곤은 ‘미결수용실 내의 거실이 몇 개이며, 적정 수용인원은 몇 명입니까’라고 물었고 백철기는 ‘과밀 수용이면 약 65명, 적정하게 수용이면 약 45명 정도 될 것 같다’, ‘수용 거실은 6개가 있고, 현재 수용자가 3명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위 이야기를 들은 김성곤은 ‘미결수용실 이감 준비를 3명, 기존에 있던 수용자들을 이감 준비를 좀 해 달라’,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내 미결수용자를) 국군교도소로 이감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이감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백철기가 ‘이감 지시의 근거가 무엇이나’, ‘이감을 하려면 명확한 이감 지휘서가 있어야 한다.’고 묻자 김성곤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한 후 전화를 종료하였다. 위 통화 종료 후 백철기는 수도권단 군사경찰단에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이감 준비 요청이 왔는데, 이감을 하려면 이감 지휘서가 있어야 하니 이감 지휘서가 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백철기는 23:51경 김성곤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고 ‘현재 있는 미결수용자 3명을 국군교도소로 이감할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에 백철기는 ‘이감을 하려면 검사의 이감 지휘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김성곤은 재차 ‘국방부 법무관

70) 서울특별시 내곽을 방위하는 수도방위사령부와 달리 수도권단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서남부 지역을 방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군단이다. 수도방위사령부와 통합 논의가 있다.

리관실에 확인해 보겠다.’, ‘검사와 미리 연락을 해서 이감할 준비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통화 종료 후 백철기는 재차 수도권단 군사경찰단에 ‘이감 지휘서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고 지시한 후, 검사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후 만일에 대비해 호송차량을 점검토록 지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성곤은 23:52경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에게 전화하여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실에 위치한 인원 3명에 대해 이감 준비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미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 계획과장 김윤정은 23:48경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미결수용실 담당 예방과장 김혜인에게 미결수용자 현황 및 이감 관련 절차 등을 물어 본 상황이었고, 김윤정은 12. 4. 00:02경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장 노주영에게 “00시부 이감 '준비' 지시 / 확인 답변 바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00:06경 재차 김혜인과 통화하면서 ‘이감 준비 지시가 있었으니, (이감 지휘 등 관련 절차 진행에 관해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예방과 측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다)는 2024. 12. 3. 23:52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42초가량 통화하면서 여인형으로부터 ‘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줘, 되는대로 빨리, 가용인원이라도 보내줘’라고 재촉 받았다.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 편강철(조사본부 5층 회의실에 있었다)은 23:59경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앱에 ‘본부장 지시사항, 수사관 소집 시 과천이동 예정, 수사관 5명, 2개 팀 국회로 이동시켜라’라고 위 지시사항을 메모하였다.

그리고 이즈음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 편강철은 2024. 12. 4. 00:13경 기획처장 김성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정승기, 안전정보처장 박재욱에게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해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1.pdf' 파일을 각 전송하였다. 위 파일은 ‘대비계획 세 부자

료’라는 제목으로 위수령 및 경비·비상계엄의 경우에 관한 세부계획이 21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는 약 67쪽 가량의 문건인데, 13항 항목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 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므로,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합동수사단은 이를 위반하는 반정부 정치활동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구속 등 사법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3항 항목에 1쪽 가량 분량으로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 주요 조치방안(고려사항)

○ 국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 가결 시도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시 대통령은 해제해야 함(헌법 77조)

○ 현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 계엄 해제 가능

* 국회의원 총 299명 중 진보성향 의원 160여 명, 보수성향 의원 180여 명

○ 黨·政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

■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 黨·政 협의 제한 시, ‘해제요구’ 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 검토

○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 계엄사령부,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중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

■ 합수단,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
- 검토 의견

○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 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한 바, 黨·政 협의를 통해 직권상정 및 표결 저지 대책 필요

편강철은 이 법정에서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민조단)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건, 사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부서이고, 저는 군무원으

로서 그 부서를 총괄하고 있다.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 조사본부장 박헌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집에서 잠을 자다가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기획처장 김성곤과 연락하여 23:29경 조사본부 1층 민조단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곧바로 5층 회의실로 올라갔는데 김성곤 기획처장, 정승기 수사단장, 박재욱 안전정보처장 등 간부들이 와 있었다. 당시 본부장과 차장은 합참 지휘통제실로 이동해 있는 상황이어서 볼 수 없었다.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 5층 회의실에 있는 인원들은 전화나 대화 등을 하면서 여러 말들이 오가는 등 분주했다. 그 상황에서 수사단장 아니면 기획처장이 ‘수사관 소집하면 과천으로 간다.’, ‘수사관 5명 2개팀 국회로 출동시켜야’는 말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 제가 23:59경 휴대전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 수사단장이나 기획처장의 전화 상대방이 조사본부장이나 차장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시사항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 정보 관련 업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메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제가 12. 4. 00:02경 민조단 단체대화방에 전원 소집을 지시했는데 그건 조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비상소집을 한다고 해서 한 것이고, 위 메모와는 관련이 없다.”, “김용현 장관의 청문회 때 계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무렵 언론인으로부터 위 문건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비상계엄 당일 처음으로 이런 상황을 접하다 보니 위 문건이 생각났고, 대비문건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볼까?’, ‘현재 상황하고 맞나?’ 이런 생각으로 비교해서 상황파악을 하려고 했었다. 저는 건성건성 전체 내용을 다 훑어보았다. 우리 조사본부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수사단장, 기획처장 등과 공유하였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냈고 파일을 받은 사람들이 앞에서 바로 열어 본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성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때 편강철 민조단장이

2017

년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에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똑같은 것 같다고 말을 하기에, 제가 보여 달라고 얘기를 해서 위 파일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재욱은 수사기관에서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을 보고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될 수 있나?’로 말했더니, 편강철이 ‘예전 기무사 문건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위 문건을 공유해 준 것이다. 읽어보니 실제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 편강철은 2024. 12. 4. 00:02경 이후 무렵 정승기로부터 ‘국회에 보낼 수사관 5명을 민조단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복귀하는 순서대로 5명(MO, MQ, MP, MN, MR)을 모아 00:26경 출동 준비를 지시하였고, 그 무렵 정승기에게 이를 알렸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중대범죄·반부패수사대 수사팀장 이상민은 2024. 12. 3. 23:30경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준위 ADI, 준위 MU 총 3인으로 구성된 메신저(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된 사실과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뉴스 기사를 공유한 후 23:31경 ‘우와~~ 모든 수사 활동도 중지되겠네. 우리보고 다 잡아오라고 할 텐데 개편은 나중에 할 듯’이라고 글을 올렸고, 2024. 12. 4. 00:15경 국방부 조사본부 사무실로 복귀한 후 수사상황실로 이동하였다. 이상민은 해당 상황실에서 수사단장 정승기로부터 ‘(이상민에게) 조장이다, 출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5명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5명(이상민, 수사팀장 MU, 반장 MV, 반장 MW, 반장 MX)을 모아 조를 꾸린 후 00:30경 내지 00:40경 정승기에게 보고하였다.

정승기는 00:33경 수사상황실 5층에서 수사단 소속 이상민 등 5명, 민조단 소속 MO 등 5명 도합 10명에게 ‘국회로 지금 출동해야 하는데 현장에 가서 방첩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하면 된다. 다만 출동할 때 검정색 복장을 하고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해라’는 지시를 하면서, ‘판단 안 될 때는 수사단장 지침 받고’, ‘적법 지시 따르고 불법 언동 조심’, ‘개인 보호’, ‘도착 시 텔레그램 보고할 것’ 등을 당부하였고, MS에게 방첩사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국회 출동 관련 방첩사 측 담당자인데, 구민회 중령하고 통화를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통화해 보라’라고 말하였다. 수사단 소속 5명, 민조단 소속 5명 총 10명 2개 조는 01:00경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 1층 출입구 방면에 주차된 카니발 2대에 탑승하여 출동하였다.

편강철은 이 법정에서 “12. 4. 00:02경 민조단 전부를 비상소집 지시한 후 정승기 수사단장으로부터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 5명을 민조단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본부장이 명령해서 민조단 단원도 나가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다. 01:13경 민조단 소속 MO 준위로부터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이 국회에 도착하면 경찰, 방첩사와 함께 섞여 조가 편성된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00:25경 김성곤 기획처장은 박헌수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5층 회의실에서 나가 합참 지휘통제실로 갔다. 00:26경 MO 준위 등 순서대로 복귀한 민조단원 5명에게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 당시 수사단장이 누군가에게 출동 지시를 하면서 복장을 이야기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 단원들에게도 ‘복장은 검정색 사복, 조사본부 마크는 미부착, 마스크 휴대바람’이라고 지시했다. 민조단 소속 조사관 5명이 01:08경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수사단 소속 수사관 5명과 함께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조단은 수사단보다 먼저 복귀를 해서 5

명이 바로 채워졌는데, 수사단 5명이 다 채워지기를 기다리기 위해 20~25분 정도 대기했던 것 같다. 그 무렵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위 10명은 수사단장 또는 기획처장의 복귀지시를 받고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민은 2024. 12. 4. 01:03경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에게 전화하여 ‘저희가 임무 하달받고, 국방부에서 출발했고, 수사단장님으로부터 구 중령님 통제를 받으라고 들었다.’, ‘두 개 조 해서, 열 명 출발했다.’라고 말하였고, 구민회로부터 ‘국회 수소충전소로 오십시오. 국회 수소충전소에 가시면 방첩사 수사관, 경찰 수사관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접촉하셔서 방첩사 김기령 중령이라는 책임자가 있는데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김기령 중령의 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10명이시니까 한 명씩 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방첩사 수사관 45명, 경찰관 수사관 50명이 있으니 분배되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와 같이 출동 위치를 확인한 MS 등 10명은 국방부 조사본부 패치를 옷에 부착하지 않은 채 수갑 총 4개, 마스크 10개를 지참해 국회 수소 충전소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안수의 지시에 따라 계엄과장 권영환으로부터 경찰청장 전화번호를 알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 소속 계획장교 김성준(당시 계엄상황실에 나와 있었다)은 2024. 12. 4. 00:50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로 전화해 김평재에게 ‘계엄사령관님께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봐달라고 한다.’고 요청하였고, 김평재를 통해 수사상황실장 강준규로부터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김성준에게 전달하였다(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의 전화번호는 별도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3) 경찰

가) 경찰청 본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고령 선포 즈음인 2024. 12. 3. 23:22경 피고인 조지호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들으면서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조지호는 23:34경 이 사건 포고령이 출력된 문건을 가지고 본인의 집무실에서 비서실로 나와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로 군 관련 문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던)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위 문건을 제시하며 ‘지금 포고령이 언론에 공포되었다. 공식 문서는 안 왔지만 그런 의미로, 포고령이 언론에 공포된 자체로 포고령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포고령대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으니 서울경찰청에 전화해서 모든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를 전달해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임정주는 23:35경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전화해 ‘모든 국회 출입을 통제해라’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피고인 조지호 또한 23:36경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이 다시 전면 차단되었다.

한편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장 피고인 목현태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 출입을 다시 막는 것에 대해 항의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오부명은 23:41경, 23:43경 다시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있고 국회사무처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임정주로부터 위 내용을 보고받은 피고인 조지호는 ‘계속 통제를 유지

하라고 해라’는 지시를 하였고, 임정주는 23:48경 오부명에게 ‘청하나(경찰청장) 지시이다. 어쩔 수 없다. 그대로 해라’라고 전달하였다.

임정주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로 23:35경 오부명에게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하였는데, 5분가량 지나서 오부명으로부터 ‘현장에 항의가 있다. 통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등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조지호에게 ‘국회사무처 측의 항의가 있다.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많다.’는 뉘앙스로 보고하였는데 ‘통제를 유지하라고 전달해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한편 조지호로부터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때가 국관회의 전, 즉 위와 같이 오부명의 보고 내용을 전달할 때였는지, 아니면 국관회의 끝나고 TV를 보면서 그런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국관회의 직전에 피고인 윤승영이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를 하러 집무실에 들어와 보고를 한 것이 기억난다. 마침 경비과장 신종묵과 제가 집무실 안 의자에 있었고, 조지호 청장님과 윤승영 국장님이 문 근처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기억난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저는 국관회의가 끝난 후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유승렬 정보국장, 김동권 대변인 등과 함께 TV를 보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 조지호가 계엄군을 보고 지나가는 말로 ‘군이 이제야 왔네, 늦게 왔네.’라는 뉘앙스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부명은 이 법정에서 국회의원 출입 재통제와 관련해 “2024. 12. 3. 23:41경과 23:43경 피고인 목현태로부터 ‘국회의원 출입을 다시 차단하는 것에 대한 항의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느냐’는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임정주에게 전달하며 ‘본청에서 검토해 지침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후 임정주로부터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조지호는 이 법정에서 임정주의 위 법정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제가 그걸 아마도 임정주 국장이 포고령과 관련된 프린트를,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포고령 관련된 프린트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같이 그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임정주 국장이 저 포고령하고 그다음에 무슨 페이퍼 하나를 더 줬는데 그게 이제 아마 헌법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걸 놓고 거기서 이제 저는 봤고, 거기에서 둘이 이제 논의를 했고 '야, 이거는 포고령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 '서울경찰청에 이렇게 지시를 해라' 그렇게 제가 전달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추가로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임정주의 '포고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에 대해 "그러니까 아마 저게 분명히 들었으면 저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제가 전에 그 페이퍼를 보면서 논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했던 말인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4. 00:00경 국관회의 개최 직전 경찰청 경비과장 신종묵에게 '여의도 상황을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신종묵으로부터 '영등포서장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여의도로 차장하고 지휘부가 나가야지, 서장이 관리하면 되나. 그렇게 지시를 전달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는 00:08경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경찰청장님 지시인데, 여의도로 나가서 지휘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곧이어 '용산은 상황 봐서 본부장하고 나눠서'라는 메시지를 각 보냈고, 위 지시에 따라 오부명은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기동본부장으로 하여금 용산으로 출동하도록 지시하도록 하였고, 본인은 직접 여의도로 출동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조지호는 국관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인 2024. 12. 3.

23:59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방첩사령부의 수사관 100명 파견 요청 및 5명 지원 요청 등을 보고받았고, 피고인 조지호는 명단을 제공해줄 것을 지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윤승영이 ‘여의도에서 가까운 영등포경찰서 소속 인원들로 하겠다.’는 취지로 건의하자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윤승영의 국관회의 전 보고 내용에 대해 “(피고인 윤승영이 말하기를 방첩사에서) ‘수사요원 100명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한테는 (수사요원이 아니라)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피고인 윤승영이 말하기를 방첩사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 보내달라’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안보수사요원 100명’ 관련해서는 ‘준비만 하시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 ‘체포조 5명 지원’ 관련해서도 나는 ‘그것도 준비만 하시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한동훈’ 체포조라는 말을 직접 들었고, 피고인 윤승영이 자신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체포조 명단 작성 등을 지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4. 00:00경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국관회의를 약 20분간 진행하였다. 당시 국관회의에는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안보수사국장 백동흙, 국제협력관 이준형이 출장으로, 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가 휴가 일정으로 각 참석하지 못하였고, 이 외 경찰청 산하 전체 국장급, 경무관급 이상 관리관, 심의관이 전원 참석하였으며, 18개 시도경찰청장이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사상초유의 일이라 당황스럽다’, ‘비상상황인 만큼 자기 업무에 잘 대응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4. 08:40경 국관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지시한 후 국관회의를 마쳤고, 그 무렵인 00:20경부터 자신의 집무실

에서 경비국장 임정주, 정보국장 유승렬, 대변인 김동권, 경비과장 신종묵 등과 함께 모여 TV를 통해 뉴스를 시청하였다.

당시 위 국관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조지호의 비서실장 권범중은 피고인 조지호의 발언 내용을 수첩에 차례로 메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9기록 395번).

기능 불문 각종 헌법 등 법령, 관례 확인 → 현장에 명확한 지시를 해야 함 ① 정보, 기획 비상계엄 하 경찰이 해야 할 일 검토 ② 기능별 수습해야 할 일 검토 ③ 수사를 중심으로 계엄사 요청 시 법령에 따라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검토	대변인 - 기자 상대로 유언비어 유포 모니터링 경비 - 여의도 상황에 집중 내부 직원들의 동요, 불필요한 언행 08:40 국관회의

권범중은 이 법정에서 “청장님 비서실장이어서 청장님께서 주재하시는 회의 중 내부에서 하는 회의는 제가 모두 참석한다. 혹시 청장님 지시사항이 각 기능이나 국관에 전파가 안 될 경우를 보충하기 위해 메모를 하였다. 당시 청장님께서 정보나 기획국은 총괄검토를 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하에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셨고, 또 정보,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기능별로 자체 해야 될 일을 검토하라고 하셨으며 계엄사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할 게 무엇인지 검토하라는 취지 등으로 지시를 하셨다. 그게 위 ① 내지 ③항으로 기재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경비 - 여의도 상황 집중' 부분은 당시 여의도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출입이 통제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하신 말씀인 것 같다. 국관회의 당시 군에 대한 말씀은 일절 안 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신종묵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출근하기 전 이미 경찰청장께서 경비국장을 통해 경비계

장에게 전국 기동대에 구두로 비상소집을 내린 상황이어서, 저는 23:35경 출근하자마자 전국 각 기동부서에 발송할 공문들을 결재하였다. 그 후 경비국장 임정주가 9층 청장님 집무실에서 전화로 호출하여 23:51경 청장님실로 올라갔다. 당시 집무실 안팎으로 분주하고 저도 경황이 없어 경비국장 외에 누가 있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경찰청장께서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제게 ‘국회 주변에 계엄군이 나타난 상황이냐?’고 물어보았고, 제가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전화하여 물어본 뒤에 청장님께 ‘계엄군은 안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 기억나는 것은 청장님께서 난감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있던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포고령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제가 느끼기로는 ‘포고령이 나왔으니 어쩔 수 없이 국회를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12. 4. 00:00경부터 국관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찰청 지휘부 현장 회의는 대략 8~9분 했고, 이어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했다. 알맹이 없는 회의라는 생각을 했었다. 평소 청장은 사족을 붙이는 것을 싫어하고 명확한 것을 좋아하기에 보고나 지시도 명확하다. 그런 데 그날 회의에서는 청장이 계속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한숨도 좀 쉬고, 계속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장도 법적 확신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 당시 회의는 ‘다들 계엄 상황을 처음 겪어본다.’로 시작하여 ‘해당 기능(경찰청 법무과)에서는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서둘러 법리 검토를 해 달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끝났다. 다만 중간에 경비국에 ‘국회가 워낙 넓으니 정문을 위주로 대비하되 뒤쪽도 잘 수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회의가 끝난 후 00:28경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위와 같은 청장님 말씀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는 2024. 12. 4. 00:32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하여 국회 내부

로 들어간 국회의원 숫자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의원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월담 시도를 자꾸 해서 추가 기동대 경력이 오면 필요한 곳에 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후 임정주는 00:36경 재차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하여 '군부대는 어느 정도 와 있어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 목현태는 '일부 군인들이 헬기로 내리고 일부 군인은 4문 쪽으로 들어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부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니까 국회의사당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경찰청 경비과장 신종묵은 경찰청 경비안전계장 김만중을 통해 00:46경 전국 경찰관서에 '전국 경찰관서 비상근무 발령 하달(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쪽과 같다(증거순번 6기록 245번).

경찰청장 비서실장 권범중은 00:56~57경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부관이 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으로부터 '계엄사령관님이 청장님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조지호의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직후 피고인 조지호에게 '계엄사령관님이 청장님께 전화하려고 하십니다.'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00:59경 박안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7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박안수로부터 '지금 국회에 경력을 좀 집중 지원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받았고, 이에 피고인 조지호는 '(경력이) 여기도 투입되어 있고, 저기도 투입되어 있고 어렵다', '그래도 한 번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제목 전국 경찰관서 비상근무 발령 하달(통보)

1. 관련근거

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24.12.3.)

나. 경찰 비상업무규칙(경찰청 훈령 제1132호)

2. 위와 관련, 경찰 비상근무를 다음과 같이 발령하니 전 국·관, 시·도경찰청장, 부속 기관장은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4.12.4.(수) 00:00 ~ 종료 시

나. 등 급 : 경계강화

다. 대 상 : 전 경찰관서

라. 근무지점

1) 경찰관 등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 대기태세 유지

2)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끝.

나) 서울경찰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로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은 23:07경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는 지시를, 23:15경 국회 직원 등 출입증소지자, 기자 등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는 지시를 각 전파한 상황이었다.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3:11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고인 김용현과 약 1분 21초가량, 이 사건 포고령 공포 이후인 23:23경 내지 23:25경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와, 23:28경 피고인 김용현과, 23:30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차례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23:30경 통화에서 이진우로부터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통화 직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군인들은 신분 확인 후에 국회로 들여보내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에 최창복은 23:31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황태준에게 ‘계엄군 출입을 허가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황태준으로부터 ‘군인 출입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현재 군 관련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23:31:01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CK	생략	정문 입구 정문 출구 사이, 군 계엄 관련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지 파악 하 고 도착한 경우에는 신분확인 후 출입 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23:31:16	영등포 경비과장 SI	생략	영등포 경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2:49	영등포 경비과장 SI	생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영등포 경비 과장입니다. 국회 정문 입구 부 근에 군 관련자 확인한바 현재까지 는 없습 니다.
23:33:00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CK	생략	국회 정문 입구 부근. 현 시간까지 군 관련자는 없음. 알겠습니다.

최창복은 위 무전이 종료된 이후 23:33경 휴대전화로 각 기동단장들에게 전화하여 용산 대통령실 및 국회로 출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은 23:33경 서울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국회 관련해서는 기자, 국회 출입 기자까지 전부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은 2024. 12. 3. 23:35경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로부터 전화를 받아 ‘포고령이 발령되었으니 포고령에 따라 다시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 청 하나 지시’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바로 피고인 김봉식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김봉식 역시 23:36경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달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은 23:37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 의사당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황태준에게 국회 출입 전면 차단 및 차벽 설치를 지시하였고, 위 지시는 ●, ●, ●, ●, #@기동대대장들에게 전파되었다. 위 지시로

2024. 12. 4. 01:45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외부 인원의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되었다. 위 전면 차단 지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23:37:25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CK	생략	네.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23:37:35	영등포 경비과장 SI	생략	알겠습니다.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
23:37:41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CK	생략	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 아울러 재차 차벽 설치하세요.
23:37:48	영등포 경비과장 SI	생략	영등포 경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2:14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CK	생략	영등포 경비과장. ●, ●, ●, ●, #@기동대대장.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잠깐 전 계엄 포고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력은 계엄 포고령에 따라 차단함을 관련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아울러 가능한 장소부터 차벽을 설치. 우리 경력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장소부터 차벽 설치하세요.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당시 아산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2024. 12. 3. 23:40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 전창훈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1분 23초가량 통화하였는데, 전창훈으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방첩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합동 수사 본부를 꾸려야 된다고 한다. 합동수사본부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니까 여기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 같다.’,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일단 수사관 100명 명단 작성을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경규는 23:43경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최광원에게 전화하여 ‘군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명단 요청이 왔다. 자네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위 요청을 전달하였다. 최광원은 23:45경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 이재현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내 유치장의 준비 내지 정비를 지시하며 ‘군에서 수사팀으로 100명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는 언급을 하였고, 2024. 12. 4. 00:06경 서울경찰청 사무실에 도착해 서울경찰청 8층에 위치한 상황지휘센터에서 수사차장 손제한, 수사부장 임경우에게 김경규로부터 들은 말을 보고하였고, 임경우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을 지시받아 00:15경 직접 전창훈에게 전화하여 방첩사의 요청 내용 등을 임경우에게 재차 보고하였다. 임경우는 00:22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100명의 명단 작성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광역수사단 지원팀장 이종욱이 01:26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경감 이하 104명의 직위와 이름이 기재된 ‘광역수사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현황’ 문건을 작성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국회의원 및 국회출입증 소유자들의 국회 출입이 2024. 12. 3. 23:37경 다시 전면 차단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경비대장 피고인 목현태가 23:41경, 23:43경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계속 전화하여 ‘국회의원 출입을 다시 막는 것에 대해 항의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오부명은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있고 국회사무처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달라’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⁷¹⁾ 이에 임정주는 피고인 조지호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나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계속 통제를 유지하라고 해라’는 지시를 받아 23:48경 오부명에게 전화하

71) 오부명은 법정에서 “저는 당시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맞지 않는 것 같고 국회의원 들은 국회로 들여보내줘야 하는 것 같다.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여서 어쩔 수 없다, 그대로 해라’고 말하였다.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은 2024. 12. 3. 23:50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 경비대 부대장 김영호에게 국회 1문의 폐문을 지시하였다. 구체적 무전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23:50:09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KI	생략	국회경비대 부대장. 서울경찰청 경비과장입니다.
23:50:13	국회경비대 부대장 KK	생략	국회경비대 부대장입니다. 현 시간 1문 폐문 시도 중에 있는데 경력이 부족해서 지금 폐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23:50:25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KI	생략	조치하세요. 1문. 폐문조치.
23:50:30	국회경비대 부대장 KK	생략	알겠습니다. 지속 시도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은 23:51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각 비상응소한 기동대는 모든 기동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버스 한 대에 인원이 찰 때 마다 순서대로 1개 제대씩이라도 먼저 출발하라. *, %기동단 경력은 용산경찰서 관내, \$, 8기동단 경력은 영등포경찰서 관내로 출발하면 된다. 이외에 @, #, ☆, 기동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시하겠다.’라고 전파하여, 기동본부에 비상응소한 기동대들로 하여금 용산경찰서 및 영등포경찰서 관내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2024. 12. 4. 00:00경까지는 앞서 본 5개의 기동대가 국회에 배치되었을 뿐이나 위 지시에 따라 00:00경부터 01:45경까지 약 24개 기동대가 차례로 국회에 증원되어 주변에 순차 배치 되었다. 01:00경 기준 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3기동단장 등의 지휘 하에 국회 동편에

○, ○, ○, ○, ○, ○, ○기동대가, 4기동단장 지휘 하에 국회 1문부터 동편 경계까지
◆, ◆, ◆, ◆, ◆, ◆, ◆, ◆, ◆기동대가, 6기동단장 지휘 하에 국회 서편에 ▣, ▣,
▣, ▣, ▣, ▣, ▣기동대가, 8기동단장 지휘 하에 국회 2문부터 ●, ●, ●, ●, #@
기동대대가 각 차벽을 형성하고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고, 그밖에 ♡, ♡기동대가 국회경
비대장의 지휘 하에 국회 출입 차단에 투입되었다.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기동대는 29개 기동대 총 2,036명가량,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출동 한 기동대는 24
개 기동대, 총 1,765명가량이다.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23:37경 있었던 피고인 조지호의 이 사건 포고령에 기한) 국회
전면 차단 지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 및 이에 기한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에 의문을 표하며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시 이에 대해 질문을 받은 서울경찰청 생
활안전차장 최현석(경찰청 본청 법무과장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은 피고인
김봉식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에 대해 ‘헌법상 유사한 국가긴급권인 헌법 제76조 제1
항이 법률적 효력이 가지는 명령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이와 유사한 긴급권인 계엄도 통
치권에 근거하여 법령은 아니지만 그 정도 효능이 있지 않겠느냐?’, ‘계엄법 제9조 제1항
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이
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회 전면 통제는 이 조항 상의 '이전'에 근거하여 포고령 상 특별 조치
를 만든 것 같다’, ‘긴급권이니 긴급한 사항이면 대통령 법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지 않겠
느냐’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후 피고인 김봉식은 23:54경 직접 서울경찰청 지휘망 을
통해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 등
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장경태
등

3명이 국회 3문 부근 담장에서 한꺼번에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는데, 피고인 김 봉식의 위 지시에 따라 당시 3문을 통제하던 \$@기동대원 4명이 위 3명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에워싸 이른바 ‘고착’하였다.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23:54:11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D	생략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일방 적 으로 지시합니다.
23:54:16		생략	23시부로.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 고 령 1호가 발령되었습니다.
23:54:25		생략	포고령.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 치활동을 금한다고 내용이 있습니 다.
23:54:33		생략	현시간부로 국회 내에서 출입하는 국 회의원 등 보좌관 등 국회 사무처 직 원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통제 를 하기 바랍니다.
23:54:47		생략	아울러 차벽을 철저히 설치하고 검 문 검색해서 포고령 내용을 잘 설명 해서 물리적 마찰 없이 통제를 해주 기 바 랍니다. 이상

정동실은 이 법정에서 “당시 \$@기동대장이었다. 22:20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서 ’\$@기동대는 국회 3문으로 이동해서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에서 나가는 사람은 나갈 수 있게 해 주되, 들어오는 사람은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여 22:50경 국회 3 문 앞에 차벽 설치를 완료하였다. 22:47~49경 국회의원, 국회 직원들 등 출입 허용 지시 를 받고 그 무렵부터 선별적 통제를 하다가 갑자기 23:37경부터 출입자 전면 차단을 한 다고 하니 거기 모여 있던 사람들의 항의가 심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 이 월담 시도를 했었고, 실제 두 분 정도가 월담을 통해 국회 경내로 들어갔다. 한편 당 시 월담자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 출동 인원이 워낙 적어 담

장 밖에 배치하면 무력화될 것 같아서 담장 안으로 들어가서 수비를 하라고 배치하였다. 국회사무처의 승인 없이 제 임의로 판단한 것이다. 23:54경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포고령이 발령돼서 일체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었으니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친절하게 알리고 출입자를 차단해라'는 무전을 듣고 '정치적 활동 금지'에 근거해서 출입 차단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국회의원 장경태 등 3명이 3문 부근에서 월담을 하여 경내로 진입하였으나 마침 담장 안쪽에 배치해 놓았던 저희 \$@기동대원 4명에게 에워싸여, 즉 고착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3:55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는 23:56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 1, 2, 3, 6문을 완전 폐문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를 받은 최창복은 23:57경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황태준에게 ‘수방사 대테러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 도착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는 무전을 하였다. 구체적 무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23:56:49	국회경비대 부대장 KK	생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국회경비 대 부대장입니다. 국회 1, 2, 3, 6문 완전 폐문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1 문에 굉장히 압박이 심한 가운데 폐 문 조치한 상황입니다.
23:57:05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CK	생략	국회 전 문 1문부터 7문까지 폐문 완료한 상황. 알겠습니다.
23:57:59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CK	생략	영등포 경비과장. 수방사 대테러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이후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4. 00:03경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

화하였고, 이후 00:04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재차 통화하였다.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은 00:06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에게 국회 경정문으로 이동해 대테러특임부대 등 병력이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김영호는 00:09경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 1, 2문, 경정문, 도정문은 인파로 인해 병력이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국회 3문으로 출입시킬 것을 건의하였고, 만일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 4문으로 이동하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 무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0:06:55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CK	생략	경회경비대 부대장.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0:07:04	국회경비대 부대장 KK	생략	국회경비대 부대장입니다.
0:07:07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KI	생략	네, 국회경비대 부대장은 경정문으로 이동해서 경정문에서
0:07:13	국회경비대 부대장 KK	생략	경력 특임부대. 대테러특임부대 등 병력들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0:07:22	국회경비대 부대장 KK	생략	국회경비대 부대장 알겠습니다. 경력이 지원되면 경력으로 통과시키도록
0:07:35	국회경비대 부대장 KK	생략	지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0:07:39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KI	생략	경정문으로 이동해서 수비하란 얘기에요. 경정문.
0:07:45	국회경비대	생략	국회경비대 부대장 알겠습니다.

	부대장 KK		
0:09:11	국회경비대 부대장 KK	생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국회경비대 부대장입니다. 지금 1, 2문 경정문, 경정문 도정문은 인파가 많이 몰려서 병력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3문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0:09:29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 장	생략	알겠습니다. 3문 쪽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0:09:33	국회경비대 부대장	생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여의치 않으면 4문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우리 경력이 가서 문을 열어줄 겁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은 2024. 12. 4. 00:15경 국회경비대장 피고인 목현태로부터 전화를 받아 ‘지금 국회 모든 문은 안정적으로 닫혀가지고’, ‘완전히 차단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헬기로 뒤에 운동장에 내려가지고 본관 안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도 받았다. 이에 오부명은 ‘놔두세요. 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였다. 구체적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현태 네, 지금 국회 모든 문은 안정적으로 닫혀가지고,
오부명 오케이.
목현태 완전히 차단되고 있습니다.
오부명 안에 의원님 얼마나 들어와 계세요?
목현태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보좌진들하고 한꺼번에 몰려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요.
오부명 네.
목현태 그 다음에 이제 월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그, 170하고 맞춰가지고 막아내긴 하는데
간간히 넘어오고 있습니다.
오부명 네네 그건 어쩔 수 없고.
목현태 그리고, 그 저기, 군부대에서 헬기로 뒤에 운동장에 내려가지고 본관 안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부명 군이?
목현태 예, 군이.
오부명 알았습니다. 그건 놔두세요. 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
목현태 네네.

이후 국회경비대 상황실은 00:16경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군 병력들과 인원들이 대치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당시는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단장 김현태 및 1, 3, 7, 9지역대 병력이 헬기로 국회 경내 운동장에 착륙하여 00:04경 국회의사당 본관 정현관(2층 정문) 앞에 집결해 국회의사당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국회 관계자 등과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은 00:23경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로부터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대치중이던 군부대가 정현관(2층 정문)으로 진입하였음’을 보고받자, 이에 최창복은 ‘수방사 군인들 국회 안으로 진입 완료, 알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국회경비대 상황실은 00:3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및 9지역대 병력 19명이 국회의사당 본관 233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로 진입하려는 모습을 확인해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 정현관으로 진입 시도하려다가 저지당하자 우회해서 창문 깨고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이즈음인 00:32:09, 00:32:59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계속 통화하였고, 최창복은 00:34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영등포경찰서 관내 근무 지원 경력들에게 ‘국회 진입 전체 인원을 차단하되 군 병력의 경우 출입을 허용해주거나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한편 2024. 12. 4. 00:50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2대대 소속 병력 124명이 국회의사당 3문 방향에 도착하였는데, 위 최창복의 지시에 따라 당시 국회의사당 3문 방면을 담당하던 \$@기동대장 정동실은 위 병력들의 진입을 허용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인원들 중 2대대 4지역대 소속 37명, 5지역대 소속 40명이 국회 3문을 통과해, 2대대장,

작전과장, 주임원사는 국회 4문을 통과해, 나머지 6지역대 소속 42명은 3문 북쪽에 위치한 담을 월담해, 총 122명의 제1공수특전여단 2대대 소속 병력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 박창균 및 형사과 소속 형사 10명은 2024. 12. 3. 23:30경 국회 1문 쪽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국회 1문 방면에 경력과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 1문에 배치되어 있던 @!기동대를 보조하며 지원을 하던 중, 지원 경력이 도착하자 기동대 경력 뒤쪽에서 일시 대기하였다. 그런데 국회경비대에서 1문 철문을 닫으려 하며 철문과 인파 사이에 형사들이 위치하게 되자 박창균은 형사들에게 ‘철문 뒤쪽으로 빠져라’고 지시해 국회 경내로 들어가 대기하게 되었다.

영등포경찰서 강력계장 이치수는 23:41경, 영등포경찰서 형사7팀장 정일현은 23:46경, 영등포경찰서 형사4팀장 LT는 23:50~55경 국회 정문 앞에 도착하여 다른 형사들과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이들은 ‘형사과장 박창균이 강력7팀 소속 GK 등과 함께 국회 경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치수, 정일현, LT 등을 포함 그곳에 모인 형사 10명이 국회 1문을 통해 내부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국회 1문을 통제하던 @!기동대로부터 ‘못 들어온다.’, ‘안 된다.’라며 출입을 저지당하였고, 이에 정일현 등이 ‘영등포 비상소집 받고 도착한 형사들이다’라고 말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출입이 차단되어 결국 국회 1문 앞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 이재현은 2024. 12. 3. 23:35경 메신저(카카오톡) 영등포 경찰서 형사 단체대화방(영등포 상황방)에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이라는

메시지를, 23:39경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14조(벌칙),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내용이 각 기재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휴대폰 캡처 사진 화면을, 23:44경 ‘계엄포고령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해지며, 이에 따라 계엄법 제14조 적용됩니다.’라는 메시지를, 23:49경 ‘군에서는 계엄법 위반사범 관련 서울경찰청에 수사인력 100명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서는 유치장 준비해달라는 서울경찰청 중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각 공유하였다. 이재현은 위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던 중인 23:45경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최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군에서 수사팀으로 100명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 ‘유치장 준비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다.

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은 23:52경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 박창균에게 연락해 국회 정문 앞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영등포경찰서 형사지원팀 소속 GL은 23:59경 메신저(카카오톡) 단체대화방(형사 1, 2과 전체 공지방)에 이 사건 포고령 내용 전부를 게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황태준은 23:57경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으로부터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수방사 대테러특임대 등 수방사 병력도 착하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는 지시를 받았다.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 박창균은 23:57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이현일로부터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거야’,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금 그 방첩사 애들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 그거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5명 필요해’, ‘어, 5명 명단 좀 짜줘’, ‘지금 바로 해줘야 돼. 내가 지금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한 거고 국장님한테 바로 지금 가서 전화드릴거야’라고 요청하

였고, 위 전화를 받은 박창균은 23:58경 영등포경찰서 강력계장 이치수에게 전화해 ‘5명 정도, 방첩사가 여기 체포조가 뭐 온대요.’, ‘우리 형사들 5명을 같이 좀 붙여달라고 하거든요.’, ‘계장님이 5명 정도 뭐 1개 팀 데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경력 1개 팀’이라며 말하며 직원 5명 명단을 작성해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치수는 위 박창균의 지시에 따라 함께 대기하던 정일현 등 10명의 형사들에게 ‘과장님이 그러는데 군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한다.’, ‘빨리 명단을 달라고 한다.’, ‘방첩사가 이쪽으로 나온다.’, ‘방첩사에 협조해 줄 일이 있으니까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불러 달라.’고 하여 5명(LT, YR, YS, 정일현, YP)의 명단을 작성해 2024. 12. 4. 00:01경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이를 박창균에게 전달하였고 위 5명에게는 ‘방첩사에서 연락이 올 거다’, ‘방첩사를 만나서 직접 지시를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박창균은 2024. 12. 4. 00:02경 재차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이현일이 ‘일단 우리 국장님(피고인 윤승영) 보고 드렸고, 청장님(피고인 조지호) 보고 드렸고’, ‘그러니까 1개 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 팀장 하나하고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경찰인 거 티가 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 ‘뭐 형사 조끼 이런 거 입 하지 말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5명 이름하고, 계급, 전화번호’, ‘이렇게 나한테 문자로 좀 넣어줘’라고 명단을 요구하자, 박창균은 ‘뭘 체포하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였고, 이현일은 ‘누구 체포하겠나? 국회 가면’이라 대답하였으며, 이에 박창균이 한숨을 쉬자 이현일은 ‘일이 커. 넌 왜 또 이런 때 영등포로 가 있니, 어, 빨리 명단 줘’라고 말하였다.

박창균은 00:04경 이현일에게 (영등포경찰서 강력계장 이치수로부터 전달받은) 정일현 등 5명의 명단과 정일현의 연락처를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전달하였고, 00:06경 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에게 전화하여 ‘서장님, 본청에서 연락 와서요.’, ‘그 방첩대에서 여기

뭐 검거조로 온다고’, ‘우리 형사들 5명 붙여달라고 해서요’, ‘네, 붙여주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00:09경 이치수에게 전화하여 ‘정일현 팀장님한테 방첩사 쪽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정일현 팀장님을 책임자로 해가지고 그쪽에 아마 지시를 받으면 될 거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치수는 00:10경 박창균에게 전화하여 ‘과장님 지금 직원들은 사무실에 다 도착했는데 거기 지금 대기하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라 질문하자 박창균은 ‘이쪽으로 다 나오라고 하세요.’라며 형사들을 국회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국회경비대 상황실은 2024. 12. 4. 00:17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담벼락이 무너진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는 00:17경 같은 무전망을 통해 ‘국회 수소충전소 쪽으로 월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력을 국회 안쪽으로 좀 이동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였는데, 위 무전은 당시 영등포경찰서 행사망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전파가 되었고,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황태준은 00:18경 영등포경찰서 행사망을 통해 ‘수소충전소 북쪽에 있으면 담벼락이 조금 무너져있는 거 같은데 부상자 있으면 확인해 주세요’, ‘8기동단 경비과장 얼마나 왔나요?’, ‘수소충전소 쪽 담벼락이 일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더 이상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력을 신속히 배치해주세요.’라는 취지로 지시사항을 전파하였다. 이에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 박창균은 영등포경찰서 형사지원팀 GM에게 연락해 수소충전소 쪽을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는데, 이에 GM는 단체대화방(영등포 상황방)에 ‘수소충전소로 이동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공유하였다. 당시 국회 외부에 위치하고 있던 강력계장 이치수 및 강력7팀 정일현, YP, LT, YR, YS를 포함한 영등포경찰서 형사들 역시 00:20경 수소충전소 방면으로 이동하였는데, 국회 수소충전소 방면을 통제하던 #@기동대대의 허용

하에 국회 수소충전소 안쪽에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60여 명 정도 모여 대기하게 되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박창균은 2024. 12. 4. 00:18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이현일로부터 ‘1개 팀 더 필요하다, 5명’이라며 5명의 추가 명단을 요청하자, 00:19경 영등포경찰서 강력계장 이치수에게 재차 전화하여 ‘아까 그거 한 팀 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라고 말하였고, 당시 이치수로부터 ‘형사들이 모두 수소충전소에 모여 있다.’는 말을 듣자 ‘강력 4, 7팀 형사들을 보내면 될 것 같다.’, ‘강력4, 7팀의 명단을 보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00:21경과 00:22경 이치수로부터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YT YU’, ‘GK은 과장님 주변에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00:27경 이치수에게 ‘6팀 5명, 7팀 5명으로 맞춰주세요’라고 답장하였다.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 정일현은 위와 같이 다른 형사들과 함께 국회 수소충전소에 모여 있던 중 2024. 12. 4. 00:25경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군사기밀수사과 2팀장 신동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당시 신동걸은 정일현에게 ‘지금 국회로 가려고 해서 가는데 국회를 가본 적이 없다,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물었고 정일현은 ‘국회 앞 주유소⁷²⁾로 오면 된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신동걸이 재차 ‘국회 앞 주유소가 어느 쪽에 있느냐, 검색해서 가겠다.’고 묻자, 정일현은 00:28경 신동걸에게 주유소 위치가 표시된 내비게이션 캡처 화면을 전송해주며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쪽에서 연락 주십시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강력7팀 소속 YP이 00:33경 신동걸에게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YP 경장입니다. 강력 7팀장 정일현 경감 연락 부재 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신동걸로부터 ‘네, 확인했습니다. 방첩사 신동걸 소령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정일현과

72) 국회 앞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도로를 두고 국회 수소충전소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신동걸이 재차 통화하여 국회 수소충전소로 만날 장소를 결정하였다.

한편 박창균의 지시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형사지원팀 GM는 2024. 12. 4. 00:33경 박창균에게 LT 등 5명의 명단 및 LT의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박창균은 00:36경 기존 5명과 추가 5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정리한 10명의 명단을 이현일에게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후 국회 경내에 대기하고 있던 박창균 및 형사과 소속 형사 10명은 국회 내부에서 1문에서 수소충전소, 도정문, 헌정문 방면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기동대 경력을 지원하였다.

영등포경찰서 형사4팀장 LT는 2024. 12. 4. 00:48경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구민회로부터 ‘국회 정문에 도착했는데 막혀서 들어갈 수 없다’, ‘도착했는데 국회 정문이 막혀서 못 들어가고 있다’, ‘만나서 회의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LT는 ‘우리가 지금 수소충전소에 있다’, ‘이쪽으로 오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이쪽으로 와라’, ‘여기 공간이 충분하다. 우리 형사들이 40~50명인데 전부 다 여기 모여 있으니 이쪽으로 와라’고 말하였다. 영등포 경찰서 형사7팀장 정일현 또한 00:49경 구민회로부터 전화를 받아 ‘국회 수소충전소 앞에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LT는 00:53경 재차 구민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구민회는 ‘방첩사에서 7명씩 5개 조가 온다.’,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며 ‘경찰관들, 형사들 2명씩 5개 조로 조편성을 해 달라’, ‘조 편성을 해서 각 조 명단하고 조장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정일현 역시 00:56경 구민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구민회로부터 ‘국회 정문 쪽에 도착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수소충전소와 도로를 두고 마주하고 있다)에서 만나기로 하며 ‘정문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보인다.’, ‘주

유소 쪽으로 찾아오라'고 방향을 안내해주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황태준은 2024. 12. 4. 00:50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방금 전에 국회 3문을 통해서 군인들 100명을 국회 안으로 이동조치 완료한 상황입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2대대 소속 124명 중 4지역대 37명, 5지역대 40명 도합 77명이 국회 3문을 통해 국회의사당 경내로 진입한 상황이었다. 이후 황태준은 01:03경 영등포경찰서 행사망을 통해 '군 차량이 오면 7문으로 출입시키라'고 지시하였다.

라) 국회경비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경비대장 피고인 목현태,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는 2024. 12. 3. 23:31경부터 약 3분간 2제대장 정성채, 경비계장 오신타 등과 국회경비대 회의를 진행한 후 피고인 목현태는 2문, 정성채는 1문, 김영호는 도정문 방면으로 각각 이동하였다. 그런데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은 2024. 12. 3. 23:37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의원 및 국회출입증 보유자들을 포함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는 23:40경 국회경비대에도 국회 출입 전면 차단(인도, 차도 모두 포함)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위 지시에 따라 국회경비대원들 역시 배치된 기동 대 인원들과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 인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위 통제 지시에 따라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는 국회 1문 폐문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이 부족해 폐문을 못하다가, 23:50경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으로부터 호출을 받아 '1문 폐문 시도 중인데 경력이 부족해서 지금 폐문을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박주현으로부터 '1문 폐문조치하세요'라는 취지로 지시받고, '계속 시도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경비대장 피고인 목현태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 출입을 다시 막는 것에 대해 항의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오부명은 23:41경, 23:43경 다시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있고 국회사무처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임정주로부터 위 내용을 보고받은 피고인 조지호는 ‘계속 통제를 유지하라고 해라’는 지시를 하였고, 임정주는 23:48경 오부명에게 ‘청하나(경찰청장) 지시이다. 어쩔 수 없다. 그대로 해라’라고 전달하였으며, 이는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 김봉식은 23:54경 직접 서울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라고 전파하였고,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는 23:56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 1, 2, 3, 6문을 완전 폐문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최창복은 ‘1 내지 7문이 모두 폐문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전파하였다.

한편 피고인 목현태는 23:47경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 이지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시 이지환은 ‘지금 국회 출입이 차단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고, 피고인 목현태가 ‘현재는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답하자, ‘자신을 출입시켜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목현태는 이지환에게 ‘(국회경비대 건물 인근에 있는) 경정문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지환은 2024. 12. 4. 00:03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경정문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전화하였고, 피고인 목현태는 ‘우리 계장한테 보좌관님 찾아서 문을 열어드리라고 했다. 성함을 말씀하시면 바로 열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목현태는 00:04경 당시 국회 경정문에 위치해 있던 경무계장 송민주에게 연락해 ‘이지환 비서관이 경정문 쪽으로 올 것이니 그곳 앞에서 누가 이지환인지 물어서 찾아 들여보내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송민주는 이지환이 경정문

회전문을 통해 국회 경내로 들어가도록 해 주었는데,⁷³⁾ 73) 당시 이지환으로부터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 운동장으로 들어와 국회의사당 쪽으로 진입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00:05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하여 이지환을 국회 경내로 들어오게 하였다는 사실 및 군인들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들어온 사실을 각 보고하였다(피고인 목현태는 당시까지 군인들이 헬기로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은 00:06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에게 ‘국회 경정문으로 이동해 대테러특임부대 등 병력이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김영호는 00:09경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 1, 2문, 경정문 및 도정문은 인파로 인해 병력이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국회 3문으로 통과시킬 것을 건의하였고, 만일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 4문으로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후 국회경비대 경무계장 송민주는 00:14경 재차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하여 ‘헬기를 타고 온 군인들(707특수임무단)이 국회운동장에 내려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송민주로부터 위 보고를 받은 피고인 목현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00:15경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전화하여 ‘국회 문이 모두 닫혀서 차단된 사실’을 보고하면서 ‘군부대에서 헬기로 뒤에 운동장에 내려가지고 본관 안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이에 오부명은 ‘놔두세요. 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였

73) 이와 관련해, 송민주는 이 법정에서 ‘회전문이 국회출입증을 인증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 이지환뿐만 아니라 출입증이 있는 인원들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지환은 수사기관에서 “일단 제가 경정문 앞으로 갔더니 기동대 대원들 수십 명이 경정문 앞에 경계를 서고 있었고, 국 회의원 보좌관들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인파를 뚫고 경정문 앞까지 들어가서 그 안쪽에 있던 국회경비대로 보이는 사람에게 제 신분을 알리면서 ‘저는 들어갈 수 있게 해달 라’고 했다”, “제가 위 인파를 비집고 회전문 앞까지 가서 ‘의장실 이지환 비서관입니다. 들어가게 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회전문 안에 국회경비대로 보이는 대원 3~4명이 있었는데 저를 보고 ‘저 사람 열어줘’라고 해서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 회전문이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전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뒤쪽에서 다른 보좌관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라는 항의가 있었습니다.”라며 출입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통제하며 허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후 국회경비대 상황실 또한 00:16경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 내 본관에 군 병력들(단장 김현태 및 707특수임무단)과 인원들이 대치중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국회경비대장 피고인 목현태,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에게 군 병력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후 국회경비대 상황실은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에게 군부대가 정현관(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으로 진입하였다고 보고하였고, 김영호는 00:23경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서울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대치중이던 군부대가 정현관으로 진입하였음’을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에 최창복은 ‘수방사 군인들 국회 안으로 진입 완료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국회경비대 상황실은 00:3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및 9지역대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 233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해 이를 서울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보고하였고, 최창복은 00:34경 서울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영등포경찰서 관내 근무 지원 경력들에게 ‘국회 진입 전체 인원을 차단하되 군 병력의 경우 출입을 허용해주거나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의 지시에 따라 2024. 12. 4. 00:50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2대대 소속 병력 124명이 국회 3문 방향에 도착하였는데, 위 인원들 중 77명이 국회 3문을 통과해, 2대대장, 작전과장, 주임원사는 4문을 통과해, 나머지 42명은 3문 북쪽에 위치한 담을 월담해 총 122명의 제1공수특전여단 2대대 소속 병력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였다.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4. 00:32경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와 통화하며 임정주로부터 ‘국회 내에 있는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를, 00:36경에 재차 임정주와 통화하며 ‘국회 내에

군인들이 얼마나 와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각 질문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목현태는 임정주에게 ‘국회의원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월담 시도를 자꾸 해서 추가 기동대 경력이 오면 필요한 곳에 배치하겠다.’, ‘일부 군인들이 헬기로 내리고 일부 군인은 4문 쪽으로 들어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사당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니까 일부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 전창훈은 2024. 12. 3. 23:27경, 피고인 윤승영은 23:29경, 이후 이현일은 23:36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 사무실이 위치한 경찰청 북관 7층에 도착하였다. 이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는 중에 이 사건 포고령이 23:23경 선포된 상황이었다.

이현일은 국가수사본부 사무실로 복귀하던 도중인 2024. 12. 3. 23:32경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로부터 전화를 받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방첩사에)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었는데, 해당 인원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명단을 알려 달라. 호송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복귀 후 23:36경 전창훈에게 ‘방첩사령부에서 연락이 왔다.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하니 경찰에서 수사 인력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보고하였다. 위 보고를 받은 전창훈은 ‘법령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경감 김준형, 경감 이정도, 경위 GN 등으로부터 계엄법 및 시행령을 건네받으면서 이들로부터 ‘방첩사로부터 요청이 오면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위 보고를 받은 전창훈은 23:39경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총경 김경규(당시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에게 전화하여 1분 23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지원을 요청하며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방첩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니까 여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면서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준비를 해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는데, 김경규가 답변을 머뭇거리자 ‘가능하면 명단 작성이나 좀 하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김경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김경규는 이후 위 사항을 23:43경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최광원에게 전화하여 ‘군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명단 요청이 왔으니 자네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위 요청을 전달하였다.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최광원은 2024. 12. 4. 00:15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 전창훈에게 전화하여 ‘김경규 수사과장님께서 전창훈과장님이 서울경찰청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인력 100명, 차량 20대를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꾸려야 합니까?’라고 물었고 전창훈은 ‘일단은 정확한 법령상 근거는 우리가 찾고 있다. 그래도 수사관 100명이란 인원이 많으니 미리 작업을 해둬야겠다. 너희는 일단 준비는 해둬라. 내가 오케이하면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현일은 2024. 12. 3. 23:45경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계장 박현준에게 전화하여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나? 근거가 뭐냐?’, ‘이거 너희 안보에서 더 잘 아는 거 아니냐?’며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박현준으로부터 ‘저희 안보수사국도 계엄 담당은 아니다. 저희도 잘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전창훈과 이현일은 2024. 12. 3. 23:49~23:50경 (국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현일이 불러 잠시 수사기획과 사무실에 들어온) 피고인 윤승영에게 방첩사령부의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하였다. 전창훈은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방첩사에 협

조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법령상으로 의무사항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한 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과 차량 20대 지원 요청이 있었다. 서울경찰청에 알아보니 인력과 차량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파견하게 되면 서울경찰청 직수부서에서 총경 하나, 경정 서너 명 이런 식으로 100명을 구성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윤승영이 ‘가능하다면 다음으로 결정의 주체가 경찰청장님인지, 국수본부장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전창훈은 법령 검토 후 ‘이 사항은 우리 경찰법에 따라서 경찰청장 승인 사항입니다, 14조하고 32조에 의하면 수사 관련 사항이라도 파견인력 보내는 것은 경찰청장 승인사항입니다’, ‘이 사항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경찰청장님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수사기획과 사무실에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 간부 전창훈, 이현일, 김준영, GN 등과 함께 계엄 관련 법령 및 경찰 관련 법령(경찰청법, 계엄법 및 동법 관련 시행령, 계엄사령관 직제 등)을 검토하였다. 이후 피고인 윤승영은 피고인 조지호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기로 결정한 후 자신의 사무실과 수사기획과 사무실이 있는 북관 7층을 떠나 나가 국관회의가 개최되는 회의실이 있는 본관 9층으로 이동하였고, 전창훈 또한 피고인 윤승영의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보고와 국관회의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뒤따라 이동하였다.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은 2024. 12. 3. 23:52경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로부터 전화를 받아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출동을 하는데, 국가수사본부에서 인솔하고 같이 다닐 사람 5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들었다. 당시 이현일이 ‘국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도 되느냐?’고 묻자 구민회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 전화가 종료된 후 이현일은 23:57경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박창균에게 연락하여 ‘방첩사에서 국회로 지금 체포조를 보내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들이 5명 필요하니 5명 명단 좀

짜 달라.’, ‘지금 바로 해줘야 돼. 내가 지금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한 거고 국장님(피고인 윤승영)한테 바로 지금 가서 전화드릴거야’는 취지로 말하였고, 23:58경 (국관회의 참석을 위해 본관 9층으로 이동한) 피고인 윤승영에게 전화하여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다닐 인력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영등포 형사로 보내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한편 국관회의는 2024. 12. 4. 00:00경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직전인 2024. 12. 3. 23:59경 피고인 윤승영은 피고인 조지호의 집무실에 먼저 도착해 피고인 조지호에게 ‘방첩사령부의 수사관 100명 파견 명단 제공 요청, 체포조 인력 5명 지원 요청’을 보고 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윤승영은 2024. 12. 4. 00:01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에게 전화하여 ‘청장님(피고인 조지호)께 보고 드렸다, 영등포 형사들 명단을 보내줘라, 사복 입히고, 형사 조끼 같은 것 입히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현일은 2024. 12. 4. 00:01경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위와 같이 연락받은 후 00:02경 재차 박창균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5명, 1팀 구성 인원의 명단 작성을 요청하였다. 당시 이현일은 ‘일단 우리 국장님(피고인 윤승영) 보고 드렸고, 청장님(피고인 조지호) 보고 드렸고’, ‘그러니까 1개 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 팀장 하나하고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 ‘뭐 형사 조끼 이런 거 입히지 말고’, ‘어, 그렇게 해 가지고 5명 이름하고 계급, 전화번호’, ‘이렇게 나한테 문자로 좀 넣어줘’라고 하면서 명단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박창균이 ‘뭘 체포하는 거예요?’라고 묻자 이현일은 ‘누구 체포하겠 나?, 국회 가면’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박창균이 한숨을 쉬자 이현일은 ‘일이 커. 넌 왜 또 이런 때 영등포로 가 있니, 어, 빨리 명단 줘’라고 말하였다. 박창균은 위 전화가 종료된 이후 00:04경 영등포경찰서 강력계장 이치수로부터 전달받은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 정일현 포

함 5명의 명단 및 정일현의 연락처를 이현일에게 메신저(카카오톡)로 보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은 2024. 12. 4. 00:10경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구민회,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과 삼자간 그룹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구민회는 김성곤, 이현일에게 경찰 수사관 100명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의 명단 회신 및 파견을 독촉하였고, 이에 김성곤과 이현일은 ‘준비가 완료되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당시 이현일은 ‘명단을 어떻게 주면 되느냐’, ‘계급 아니면 연락처를 다 줘야 되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현일은 2024. 12. 4. 00:13경 구민회에게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입니다. 강력7팀장 정일현 경감 전화번호 생략, 경사 YP 경위 LT 경사 YR 경사 YS’, ‘정일현 경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문자를 수신한 구민회는 00:14경 이현일에게 전화해 ‘이분들하고 통화를 하면 되느냐’, ‘추가 인원을 계속 보내 달라’고 요구하며 ‘출동인원이 늘어나서 5명을 추가로 요청을 한다.’, ‘체포 과정에서 조율할 부분이 있으니 경비 책임자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이현일은 경찰청 경비국 경비안전계장 김만중에게 전화하여 ‘군 측에서 기동대 현장 지휘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한 번 연락을 해봐라’라고 하며 구민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이에 김만중은 ‘아까 무전 내용 들어보니 국회에 군인들 들어온 것 같은데 알아서 가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김만중은 2024. 12. 4. 00:25경 구민회에게 전화하여 ‘국회 내에 진입한 군인들이 방첩사령부 인원들인지’를 확인하였고, 00:33경 이현일에게 재차 전화하여 ‘국회에 없다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수사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이현일은 00:18경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박창균에게 재차 전화하여 ‘방첩사에서 5명 1개 팀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추가 명단을 요

청하였다.

이현일은 2024. 12. 4. 00:23경 피고인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 전창훈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방첩사에서 영등포서 형사 1개팀 추가 요청하여, 명단 확보 중입니다. 아울러 방첩사에서 체포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며, 경비책임자 연락처를 요청하여, 본청 경비국으로 연결해줬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피고인 윤승영은 곧바로 ‘오케이’라 답변하였다.

한편 피고인 윤승영은 2024. 12. 4. 00:20경 국관회의가 종료된 직후 00:20경 복도 등에서 국관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전창훈에게 ‘청장님(피고인 조지호)께서 합동수사본부 100명 구성과 관련해서는 명단 작성 준비하라고 지시하셨고, 방첩사 5명 지원 요청 관련해서는 사복 차림으로 보내라고 하셨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윤승영은 경찰청 본관 5층에 위치한 수사국 내부 회의실로 전창훈과 함께 이동하여 전창훈, 수사국장, 형사국장, 과학수사심의관, 사이버수사심의관 등과 TV를 통해 국회 상황을 시청하면서 ‘저기 왜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 있지?’, ‘비상계엄 해제 관련 아니겠냐?’, ‘꼭 여기서 해야 되냐,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되냐’, ‘국회법에는 국회의사당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윤승영은 전창훈에게 ‘본부장님께 보고했냐?’고 물었고 전창훈이 ‘안 했다’라고 답하자 00:38경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에게 직접 전화하여 ‘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지원을 요청받은 사실’,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지원을 요청받은 사실’,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여 100명 명단 작성을 준비하고,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을 지원한 사실’ 등을 보고하였고, 우종수로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해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현일은 2024. 12. 4. 00:35경 구민회로부터 ‘추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

였고, 이에 따라 00:36경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박창균에게 전화해 ‘5명 더 달래’, ‘명단 좀 빨리 보내줘’라고 말하였으며, 그 무렵 박창균으로부터 추가 파견 수사관 5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00:40경 구민회에게 기존에 보내준 5명에 새로 5명이 추가된 10명을 정리한 명단(강력7팀장 정일현 경감 전화번호 생략 YT, YU, YP 강력4팀장 경위 LT 전화번호 생략 YR, YS, 강력3팀 YV, YW, YX)을 전송하였고, 00:45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회의실에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실로 복귀한 전창훈에게 ‘5명, 5명해서 10명을 보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후 전창훈은 수사기획담당관실 직원 김준형, 방지원, GN 등에게 ‘합동수사본부가 방첩사에서 구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현일은 2024. 12. 4. 00:56경 국가 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계장 박현준에게 전화하여 재차 ‘국가수사본부가 방첩사령부 요청에 협조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고, 이에 AFC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김준형은 01:00경 국방조사본부 소속 사무관 이진욱에게 전화해 확인하였는데, 이진욱으로부터 ‘방첩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들은 후 이를 전창훈에게 보고하였다. 전창훈은 그 무렵 ‘방첩사에서 전화 오는 것은 다른 직원은 전혀 받지 말고 혹시 전화가 오더라도 이현일 계장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도 다른 데 선불리 전화하지 마라’고 지시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관한 이현일, 전창훈 등의 법정진술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4. 2024. 12. 4. 01:03경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 이후의 상황

가. 국회

국회의장 우원식은 2024. 12. 3. 23:57경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의장실 옆 접견실에서 국회방송 및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우원식 TV'를 통해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된 긴급 기

자회견을 하였는데,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대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국회 관계자 등 사이에 ‘헬기 소리가 들린다.’, ‘군인들이 내리고 있다.’, ‘지금 기자회견을 했으니 의장님 위치가 노출됐을 거다.’라는 취지의 말이 돌아, 우원식은 국회경비대 의장경호대장 김성록의 안내에 따라 국회의사당 본관 5층 빈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국회사무처에서는 2024. 12. 4. 00:01경 국회의원들에게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본회의 개의예정 안내>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12. 4.(수) 오전 1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00:30경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3층 본회의장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국회의장 우원식 또한 00:48경 본회의장으로 이동한 후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최하였고, 2024. 12. 4. 01:01경 본회의 안건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상정되어 01:03경 재적 300명, 재석 190명, 찬성 19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위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 경내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었으니 경내에 들어온 군인들과 경찰들은 밖으로 나가달라’, ‘지금부터 이 계엄은 무효가 됐다’, ‘국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군인과 경찰은 지금 즉시 복귀해 달라’는 취지로 방송하였다. 우원식은 01:26경 국회경비대 사무실에 ‘국회의사당 본관 후면 안내실을 군인 9명이 막고 있으니 이들을 저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국회경비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황이 모두 정리된 후 국회사무처는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된 물적 피해를 조사하였는데 ‘본관 정현관 내·외부 자동문 파손 손실액 200만 원을 비롯하여 함께 65,634,000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증거 순번 2기록 362번).

12.3. - 12.4. 시설설비 등 손실 내역			
1 개요			
○ (손실 개요) 현재 집계된 손실액은 약 6,600만원으로 추정되며, 추후 증가 가능			
구 분	손실대상	손실액 추정	비 고
시설	4개 시설	11,100,000원	▶ 추후 복구과정에서 증가 가능 ▶ 본관 2층 비품창고 정리 등에 따라 증가 가능성
설비	20개 설비	7,850,000원	
물품	96개 집기	46,684,000원	
계		65,634,000원	
○ (물품 손실 위치)			
▶ 본관 2층 비품창고(220호 옆) : 소화기 분말/소화수 분사 및 집기 떨어짐 등에 따른 파손			
▶ 본회의장 및 예결위원회의장 옆 / 본관 후면 안내실 / 정현관 : 바리케이드 설치 등에 따른 파손			
▶ 본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233호) : 유리창 파손에 따른 파편으로 집기 파손			

또한 국회사무처 자체조사 결과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문 폐쇄로 인해 국회사무처 직원 중 최대 539명의 국회 출입이 차단되었고, 이로 인해 142명이 월담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으며, 군 병력 또는 경찰과 대치하거나 월담하는 과정에서 46건의 인적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중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군 병력과 대치중 발생한 인적 피해가 27건, 월담 등 경내진입 시도로 발생한 인적 피해가 13건, 외곽 경찰대치 등 기타 상황으로 발생한 피해가 6건이라고 확인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 순번 10기록 258, 259번).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근한 국회사무처 직원 수(보좌직원 제외)
※경찰통제로경내에진입하지못한직원도포함

일자	12. 3.			12. 4.			
시각	21:00	22:00	23:00	00:00	01:00	02:00	03:00
인원 합계	203	134	135	314	527	539	462
○ 당시 국회출입 차단으로 인해 월담하여 국회로 들어온 국회사무처 직원 수(보좌직원 제외) 142명							

○ 인적피해 상황

- 총피해신고접수46건(국회사무처14건,보좌진32건)
- 보좌진32건중BV관련접수건수없음(K당29건,UD당2건,UF당1건)
- 본청계엄군대치관련27건(58.7%),월담등경내진입시도관련13건(28.3%),외곽경찰대치등기타6건(13.0%)

○ 물적피해상황

- 총피해신고접수16건(보좌진16건)
- 보좌진16건중BV관련접수건수없음(K15건,UF당1건)
- 휴대전화피해5건(31.3%),안경피해4건(25%),의류·신발피해4건(25%),기타3건(18.7%)

한편 국회사무처 자체 조사 결과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차단으로 인해 월담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우원식 포함 총 85명, 군 병력, 경찰과 대치하거나 월담하는 과정에서 인적 피해를 입은 국회의원은 42명, 보좌관은 37명이며, 국회 출입 차단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김민석, 박수현, 박용갑, 안규백, 이광희, 이병진, 이춘석, 정동영, 개혁신당당 소속 국회의원 이주영, 이준석 등 총 10명으로 확인되었다. 월담한 국회의원들의 구체적 이름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10기록 296번).

정당	인원	성명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79명	강득구,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광상언, 권철승, 김교홍, 김남근, 김남희, 김민석, 김성희, 김영환, 김태선,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찬대,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재봉, 신영대, 양부남, 여기구, 오기형, 윤종균, 윤후덕, 이강일,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학영, 임광현, 임미애, 장경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희
조국혁신당	1명	서왕진
개혁신당	1명	천하람
진보당	2명	전종덕, 정혜경
기본소득당	해당없음	—
사회민주당	해당없음	—
무소속	1명	김종민

나. 대통령실

1)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진 직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4. 01:06경, 01:13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하였다. 그 무렵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알게 된 이진우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들의 철수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01:06경 통화에서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이진우는 ‘지금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을 못 합니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은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어? 어?’라며 확인하였는데, 이에 이진우는 '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01:13:24경 통화에서 이진우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라는 취지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낼 것을 지시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가지고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 ‘결의안

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XN는 이 법정에서 “여의도진지에 가서는 제가 윤석석과 조수석 상에 제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소리를 켜서 YTN 생방송을 켜 두었기에 이진우도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 기억으로는 피고인 윤석열과 이진우의 세 번째 통화가 여의도진지에 도착할 즈음이었고, 여의도진지에 도착한 이후에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네 번째 통화는 여의도 진지에서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안에 정차해 있는 상태였다고 기억한다.”, “피고인 윤석열과 이진우의 세 번째 통화는 계속 본회의장에 사람이 늘고 혼란스럽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윤석열이 ‘아직도 못 들어갔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이진우가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니까 피고인 윤석열이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바로 대답을 안 하자 대통령이 서너 번 큰소리로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사령관이 대답을 안 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제가 생각하기로는 총을 허공에 한 발 ‘팡’ 쏘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그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했었기 때문에 기억한다. 수방사 병력들은 총을 안 가지고 들어갔었다.”, “네 번째 통화는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통과되고 5분 내에 있었던 것 같다. 조각조각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 윤석열이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 가지고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운전했던 수방사령관 운전수행 부사관 QT는 이 법정에서 “저는 카니발 차량 운전석, XN 대위는 조수석, 이진우 사령관은 조수석 뒤편에 앉아 있었다. 제가 골전도 이어폰을 끼고 국회 상황을 라이브로 듣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진우가 피고인 윤석열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국회에서 여러 번 돌 때 한 번, 여의도진지 그 주위에 도착했을 때 한 번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첫 번째 전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전화내용은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그리고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는 내용이 기억난다. 피고인 윤석열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당시 XN가 이진우에게 ‘대통령님 전화오셨습니다.’라고 하며 전화를 건네서 알게 되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었는데, 제가 너무 긴장하고 떨렸었고 저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다. 지금은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을 못해서 그 내용에 잠이 안 오고 저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여의도진지에 도착한 후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세 번...’ 제가 들었던 게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총을 쏘서라도’라는 말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4. 01:16경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당시 전투통제실에 위치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 및 합동참모의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직위자들과 악수하며 ‘수고 많네.’, ‘수고 많다.’라고 격려인사를 한 후 피고인 김용현의 안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부에 위치한 결심지원실로 들어갔고, 국방부장관 피고인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 국가안보실 2차장 인성환, 국방비서관 최병옥 등이 함께 결심지원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결심지원실 안에서 법령집을 가져다 줄 것을 지시하였고,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철진이 법령집을 가지고 와 국방비서관 최병옥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윤석열은 ‘다 좀 나가 있어라’, ‘다들 나가고 우리 셋만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를 제외한 인원들을 내보낸 뒤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이 01:46경 전투통제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윤석열은 결심지원실에서 나왔고 ‘곧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대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01:47경 내지 01:49경 신원식, 정진석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퇴장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01:38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화하였으나 2초간 통화가 되었고 그 직후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화하여 1분 14초간 통화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노상원이 재차 01:41경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화하여 2분 12초가량 통화하였는데, 위 통화 당시 피고인 김용현은 ‘응, 노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02:43경부터 02:45경까지 2분 3초가량 피고인 노상원과 통화하기도 하였다.

위 결심지원실에서의 대화와 관련해 RO(가명)은 이 법정에서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다가 결심지원실에 따라 들어갔다가 나왔다. 결심지원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현에게 ‘그걸 핑계라고 대요.’,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철진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현에게 ‘국회에는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 김용현이 ‘500여 명 정도’라고 답변하자 이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대통령께서 전투통제실 들어오셔서 ‘국회에 몇 명 투입했는지’ 물어보았고, 결심지원실로 이동하면서 물어보았는데 김용현 장관이 대답을 잘 못했고, 결심지원실 들어가서도 같

은 질문을 했는데, 이때 김용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변하자 대통령께서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한다. 장소와 시간이 오버랩되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국회법 책자를 찾아 가져다 드리고 바로 결심지원실에서 나와 그 뒤의 일은 잘 모른다.”, “장관님께서 02:30 경부터 03:10경까지 대통령실에 회의를 다녀오셨다. 회의에 가기 전 결심지원실에서 여러 인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중 ‘응, 노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나?’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평소 장관님께서 친근한 인원,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인원들은 이름을 부르는 스타일이 있다. 장관님 수행하면서 정확한 내용은 들을 수 없으나 가끔 차를 타고 갈 때나 ‘응, 노상원아’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으시는 경우가 두세 번 정도 있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군내에 장성인사가 있고 나서 노상원 예비역 장군에 대한 소문이 돌아 안 그래도 장관님께 한 번 여쭙보려던 찰나여서 당시 새벽이었지만 ‘응, 노상원아’라는 통화를 하셨을 때가 명확하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RO과 김철진의 위 법정진술과 관련해)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으나 피고인 윤석열에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렸고, 피고인 윤석열이 장병 중 다친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병력은 철수시키겠습니다.’라고 철수 건의를 드리자 피고인 윤석열이 ‘그러시죠.’라고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 12. 4. 01:58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신원식에게 전화해 3분 40초가량, 02:04경 AFC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1분 27초 가량 각 통화하였는데, 당시 신원식이 ‘병력들 다 철수시켜라. 철수하고 안전한 곳에 있는

지 확인하라'라고 지시하자 박안수는 '실장님, 제가 병력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재차 신원식은 '알고는 있다. 사령관들에게 이야기해서 병력들 추가 투입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국민들하고 이격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위 지시를 받은 박안수는 02:08, 02:10, 02:13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02:16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4)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4. 03:00경 대통령실에서 국방부장관 피고인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등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 윤석열은 '국무위원 소집에 시간이 걸려서 계엄해제 선언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 김용현에게 '군의 계엄상황을 먼저 종료시키라'며 군 병력의 철수를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는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03:47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3분 39초가량 통화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04:20경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그 심의를 거쳐 04:26경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를 공표하였다.

5)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4. 06:02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58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조지호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조지호) 덕분에 빨리 잘 끝났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재차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김봉식이 국회의원들을 출입시켜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 '수고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국방부 및 군

1)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가)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는 2024. 12. 4. 01:00경 내지 02:00경 사이 인사팀이 작성

한 '국방부 인사명령' 초안을 보고받아 수기로 중간결재를 하였으나, 당시 국회에서 비상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자 '더 이상은 결재를 진행하지 마라'고 지시하여 위 인사명
령은 발령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4. 01:06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전화해 '어떻
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았는데, 이에 곽종근은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
고, 이에 피고인 김용현은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용현은 01:32경 곽
종근과 재차 통화하였는데, 당시 곽종근이 '병력을 좀 빼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에
혼자말로 '조금만 더 버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02:13경 육군
특수전 사령관 곽종근과 재차 통화하며, 곽종근에게 현 병력 상황을 물은 후 '병력을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곽종근은 '장관님, 지금 국
회에서도 병력들이 다 철수했는데 선관위로 다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
송합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용현은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과 01:10경부터 1분 20초가량, 01:13경부
터 4분 53초가량, 01:57경부터 9분 25초가량, 03:01경부터 5분 59초가량 총 4회 통화하
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01:38경, 01:41경 피고인 노상원과 통화하며
'응, 노상원 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나?'라 말하였고, 02:43경 재차 피고인 노상원에
게 전화하여 2분 3초가량 통화하였다.

다)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 12. 4.
03:09경, 국방부장관 피고인 김용현은 03:19경 차례로 입장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03:20경부터 03:25경까지 장관 주관 화상원격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위 회의에는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
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만 참석하였고, 당시 피고인 김용현은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을 진다. 여기 있는 작전사령관 이하 모든 분들은 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질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군인으로서 명령에 충실한 여러분의 충심에 장관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를 치하합니다. 수고 많았고 안전하게 병력들 잘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용현이 ‘수방사는 철수했나요?’라고 묻자 이진우가 ‘예. 철수 지금 중에 있고, 인원 장비는 현장에서 이상 없는 것 다 확인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용현은 ‘응, 특전사는?’이라고 묻자 곽종근이 ‘예. 출동했던 인원 전체 다 인원 장비 이상 없고, 1여단만 빼고 나머지 3, 9, 707은 부대로 복귀 중에 있습니다. 1여단은 최종 국회 출발하기 위해 차량 탑승 및 준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복귀시키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오케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마지막까지 안전에 이상 없이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주기 바랍니다. 우리 장병들 복귀하면 장관을 대신하여 우리 사령관님들께서 잘 격려하고 위로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 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챙겨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마무리하며 회의를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용현은 국방부장관 집무실로, 박안수는 국방부 지하 4층 작전회의실로 이동하였다.

라) 국방부장관 집무실로 복귀한 피고인 김용현은 군사보좌관 김철진과 대화를 하였는데, 당시 김철진이 ‘포고령을 누가 썼습니까?’라고 묻자 이에 ‘포고령? 내가 썼어.’라고 말하였고, 김철진이 재차 ‘왜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되묻자 이에 ‘내가 왜 말해, 너희들 다칠 수 있는데’라고 말하였다.

김철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전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시간 순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수기로 작성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6기록 704번).

12.3.(화)

- 시간미상 공관에 손님 방문(양호열 비서관이 안내)
- 10:00 국무회의(총리, 서울경찰청사) 참석 (공관에서 09:15 出) (11시 이후 국방부로 복귀)
- 11:30 8·15 통일 독트린 챌린지 참여(전시실에서 피켓 들고 사진 촬영)
- 11:40 격려 오찬(컨벤션, 국방혁신기획단 7명)
- 16:30경(약 30분 이내) 육군총장보고(집무실 독대)
- * (복귀하시면서 "4건 보고 준비했는데, 다 보고 못 드렸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며 복귀)
- 17:00경 인사기획관 결재(집무실 독대)
- * (복귀하시면서 군사보좌관에 와서 "21:30쯤 집무실로 오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 라는 취지로 물으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여 무슨 일 있으신지 반문했음(이유 모르겠다고 하셨음))
- 18:00경 결산보고(군사보좌관, 정책과장, 의전과장) * 다음날과 차주일정, 오스틴 장관 방문(9日) 관련 준비사항
- 18:40경 대통령실 회의 출발(식사까지 하신다고 말씀)
- * (차후에 부관을 통해 삼청동 안가에 먼저 가셨고, 대통령님과 함께 대통령실로 복귀하셨다고 보고받음)
- 22:25경(담화문 발표 직후) 지하 3층 전투통제실로 위치(엘리베이터 1층에서 장관님, 작전부장(안찬명 소장) 합류, 지하 3층으로 함께 이동)
- * 전투통제실은 전혀 세팅되어 있지 않아서 그때부터 전파하고(지통실로 내려가서 TV소리를 직무통제실로 연결토록 요청) 준비
- * (장관님 통화 내용) (담화문 발표와 동시에 안보폰으로 연락하심.)
-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에게 ○담화문 시청토록 전파
- 장관님은 바로 지휘통제실(전투통제실 의미)로 가겠다고 말함
- 대기실에 대기중인 인원 6명은 지통실로 내려오라고 전파
- ** 21:30~40사이 집무실로 오라고 지시받은 인원 (장관 직접 지시)
- 육군총장 대장 박안수(16:30분 보고시 지시받은 것으로 추정)
- 육.정책실장 소장 김홍준(육군총장이 데려온 것으로 추정)
- 합참차장 중장 정진팔(장관님께서 개별전파하였다고 함)
-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준장 이재식(장관님 개별전파 또는 합참차장 통해서 전파)

-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17:00경 보고시 장관님 직접 지시)
-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장관님께서 전화로 직접 지시 무슨 일 있는지 문의전화 해옴)
- ※ (대기실에 모인 인원들 모두 무슨 이유로 오라고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문의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기자단에게 "망을 열라(무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는 전파가 있다며 성명발표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대기실 TV를 틀고 뉴스를 시청 중에 있었음)
- 22:30경 장관주관, 화상회의(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을 하달함
 -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 단,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이 있다면 장관의 몫,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
 - 혹여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중한지 알릴 것
 -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기 지시한 사항 관련 이행 제한사항 확인 및 준비되는 대로 이행
 - * 방첩사는 화상 미연결(평소 망이 대기상태가 아니어서 오래 걸린다고 확인 -정성우 준장 통화)
 - * 육군 총장을 불러, 노란색 서류봉투에서 A4 1장을 꺼내어 전달. 가까이 다가서서 보니 "포고령" "12.3"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이후 23:00경 포고령 1호가 하달됨
 - * 이후 장관님은 안보폰을 번갈아 가며 직접 통화하며 작전을 지휘 ("왜 늦어지지?" "응 그래, OK" "헬기..." 등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
- 12.4.(수)
 - 01:20경~01:50경 대통령, 전투통제실 방문(결심지원실 회의)
 - 참석인원: 장관, 계엄사령관, 안보2차장, 안보실국방비서관 (추정) 등
 - 대통령 말씀(기억의 의존): "국회에는 몇 명이나 투입...?" (500여명 정도로 장관 답변),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거야"
 - * 국회법(법령집)을 찾으셨고, 결심지원실에서 나와 정책과장에게 국회법을 받아 들어가 국방비서관에게 전달(추정), 이후 대통령 3명만 남고 나가달라고 하셔서 나왔으며, 3명은 장관, 계엄사령관, 2차장인 것으로 추정.(먼저 나와서 볼 수 없었음.)
 - * 안보실장, 비서실장은 늦게 도착한 것으로 기억, 대통령님 나가실 때 복도에서 따라 가는 것만 목격
 - 02:30~03:10경 대통령실 회의 다녀옴
 - * (회의 가시기 전까지는 결심지원실에서 여러 인원과 통화, 통화 인원 중에 "응, 상원아... 이제 더이상 어떻게 하냐?..." 취지의 언급하신 것을 들었음)
 - 03:20~03:25경 장관님 주관 화상회의(지작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수방사령관)
 - 고생 많았음. 특히, 현장에 투입한 수방사, 특전사 장병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통제권자 명예 의거 노력
 - '중과부적'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나, 최선을 다했음.
 -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지겠음. 노고를 치하하고, 명령에 따라준 것에 감사함. 안전하게 병력 복귀하면 잘 격려해주기 바람
 - 어려운 여건하 임무수행한 작전사, 합참의장, 합참참모부 및 지통팀
 - 04:20경 대통령실 '해제 국무회의' 참석
 - * 대통령님 해제 발표(04:26), 해제 국무회의 의결(04:30)
 - 복귀 후 휴식 전 집무실 접견 간 말씀

- "포고령? 내가 썼어..."
- "내가 왜 말해.. 너희들 다칠 수 있는데..."
- 11:00경 식사(군사보좌관, 곰탕)
- 13:00경 대통령 관저 방문
- 17:00경 국방위 대비 토의(차관, 법무관리관, 대변인, 군사보좌관, 정책관리과장..)
- * Q&A 토의 후 정리하여 공관으로 넣어드리겠다고 보고
- 18:00경 퇴청
- 12.5.(목)
- 11:00 퇴직에 따른 서류 작성, 절차 설명 (공관2층)
- 군사보좌관, 정책과장, 의진과장
- * 특이말씀: "너희를 보호하려고 말하지 않은 거야..."라는 취지로 말씀

마)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4. 08:00경 내지 08:30경 방정환에게 전화하여 ‘부탁했던 가방을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물었고, 방정환이 ‘아직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노상원은 10:00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국방혁신기획단장 방정환을 만나 방정환으로부터 검은색 백팩, 크로스백 각 1개를 돌려받았다. 이때 피고인 노상원은 방정환에게 자신의 안보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장관님 보좌관을 통해 장관님께 드리면 된다.’고 말하였다. 방정환은 김철진을 찾아가 11:00경 국방부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받은 비화폰을 건네주며 ‘혁신기획관 격려식사할 때 장관님께서 두고 가신 거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김철진이 ‘안보폰 장관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두고 오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라는 취지로 되묻자, 방정환은 ‘아니야 장관님 두고 가신 거야. 장관님 드리면 알 거야, 장관님께 드려라’라고 말한 후 돌아갔다. 이에 김철진은 위 비화폰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달하였다.

바)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4. 13:00경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하였고, 17:00경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 준비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토의에는 국방부 차관 김선호, 법무관리관 홍창식, 대변인 전하규, 군사보좌관 김철진, 정책관리담당관 박홍배가 참여하

였고, 위 토의 중 전하규가 ‘계엄 선포 건의를 장관님께서 하셨습니까?’, ‘장관님,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건의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김용현은 ‘어, 내가 했어’, ‘내가 건의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후 피고인 김용현은 18:00경 내지 18:30경 국방부 청사에서 퇴청하였다.

사)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4. 고향인 창원으로 내려갔고, 2024. 12. 17.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후 기기를 깨뜨려 쓰레기장에 버린 후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2) 국방부 작전회의실(계엄상황실)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 12. 4. 01:03경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권영환으로부터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하면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지금 그런 조언을 할 때가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 ‘아니, 우리가 하는 것,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게 뭐냐?’는 취지로 권영환에게 말한 후, 01:13경 피고인 윤석열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하자 전투통제실로 들어가 피고인 윤석열을 맞이하였다.

박안수는 03:25경 피고인 김용현 주재 화상원격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위 회의가 종료된 후 작전회의실로 돌아와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고, 역시 훈련이 된 부대라서 그런지 속도도 빠르고 잘 단련이 되어있다. 모두들 다 고생했다.’라며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지만, 곧 해제될 것이다. 장관님 지시로 계엄상황실 임무는 해제한다.’며 계엄상황실 구성 중지 및 해제를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이재식은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권영환에게 ‘2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상황실 구성을 해제한다고 알려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권영환은 자신의 비화폰을 이용해 지상작전사령부 제1지구계엄사령부 작전처장(또는 작전참모부장), 제2작전사령부 제2지구계엄사령부 작전처장(또는 참모장),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조백인,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박정환(또는 작전계획과장)에게 전화하여 계엄상황실 구성 해제를 전파하였고, 또한 국방부 계엄상황실에 위치한 참모들로부터 '피고인 조지호에게도 이를 전파해 상황 종료를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아 03:34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청장님, 최종상황 종료 선언되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며 상황 종료 지시를 전파하였다.

한편 박안수로부터 '육군본부 소속 참모들을 합동참모본부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조종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2. 4. 02:30경까지 육군본부 인원들 중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할 참모진 34명을 구성하였는데, 해당 인원들은 케이직스(케이직스)를 운용할 수 있는 장비 총 11대를 소지하고 단독군장 상태로 육군본부 대형버스 2대에 탑승해 03:00경 계룡시 소재 육군본부에서 용산구 소재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출발하였다가 피고인 김용현 주관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 해제 및 철수 지시가 하달되자 03:30경 다시 육군본부로 귀환하였다.

3) 정보사령부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이를 알게 된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는 정보사령관 문상호와 통화하며 문상호에게 '우리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문상호로부터 '조금만 기다려라. 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출동한 인원들은 2024. 12. 4. 01:1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건물에서의 철수 지시를 받았고, 위 지시에 따라 출동했던 인원 10명은 건물에서

나와 차량 2대에 나눠 탑승해 대기하였으며, 01:30경 문상호의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철수하여 정보사령부로 복귀하였다. 위 복귀 과정에서 메신저(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폭파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위 10명은 해당 단체대화방에서 모두 퇴장하였다.

한편 정보사령부 100여단에서 대기하던 요원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는 의결을 뉴스로 확인하였다.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2. 4. 02:00경 김봉규에게 전화하여 ‘임무 중단시키세요. 임무 중단하세요.’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요원들은 100여단에서 취침하였다(인원들이 잠을 못 잔 상태여서 졸음운전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침에 보내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05:30경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지시로 대회의실에 소집되었다. 당시 문상호는 요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출동을 안 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천만 다행이다.’, ‘보안은 유지해라. 각자 부대로 복귀해라’라는 해산 지시를 하였고, 위 요원들은 배부받았던 명찰과 장비를 반납한 후 해산하였다.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2. 4. 15:54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4분 6초 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용현은 ‘수고했다. 모든 것은 다 장관인 내가 지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문상호를 위로하였다.

4) 방첩사령부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2024. 12. 4. 01:03경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중대범죄·반부패수사대 수사팀장 준위 MS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의 출동 여부 및 집결 장소를 확인하였다. 당시 MS이 ‘저희가 임무 하달받고, 국방부에서 출발했고, 수사단장님으로부터 구중령님 통제를 받으라고 들었다.’, ‘두개 조해서, 열 명 출발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구민회는 MS에게 ‘국회 수소충전소로 오십시오. 국회 수소충전소에 가시면 방첩사 수사관, 경

찰 수사관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접촉하셔서 방첩사 김기령 중령이라는 책임자가 있는데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김기령 중령의 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10명이시니까 한 명씩 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방첩사 수사관 45명, 경찰관 수사관 50명이 있으니 분배되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라고 안내하였다.

한편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소속 수사관 49명 중 1명인 소령 신동걸은 2024. 12. 4. 01:04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는데, 방첩수사단 출동조 팀장급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현장 사진을 전송하며 ‘현장 들어가고 있는데 시위 인파가 많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공유하였고, 위 메시지를 확인한 국군방첩수사단장 김대우는 ‘그러면 우리 수사관들은 아예 국회에서 떨어진 외곽 큰 대로변에 차를 다 그냥 대로변에 주차시키고, 그 안에서 대기해라. 절대 차에서 내리지도 마라, 대기만 해라’라고 지시하였으며, 위 지시에 따라 구민회는 신동걸에게 유선으로 ‘내리지 말고 옆에서 대기해라’고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신동걸은 차량에서 대기하였고, 이후 최석일 또한 01:11경 위 단체대화방에 ‘cg(사령관) 지시로 현 상태 대기 지시 내려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는 2024. 12. 4. 01:09경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 정일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정일현은 ‘여기 현대오일뱅크주유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대로’라며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이 대기 중인 위치를 설명해 주었다. 구민회는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로부터 임무 대기 지시를 받고, 01:13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중대범죄·반부패수사대 수사팀장 MS에게 전화하여 ‘MS준위님, 현재 상황에서 대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MS이 ‘가지 말고요?’라고 반문하자 ‘네’라고 답변하였다. 곧이어 구민회는 01:15경 정일현에게 전화하여 ‘명령이 떨어졌다. 안 만

나도 될 것 같다.’, ‘상황이 해제됐다.’, ‘그러니까 안 만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구민회는 이 법정에서 “국회 주변에 먼저 도착한 신동걸 소령 조가 현장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현장사진을 보내 주었는데, 너무 많은 인파가 있어 물리적 접촉이 있을 것을 우려해 당시 본부에 있었던 김대우 단장이 ‘차에서 내리지 말고 옆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여 제가 이를 출동한 수사관들에게 전달하였다. 최석일은 12. 4. 01:11경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cg(사령관) 지시로 현 상태 대기 지시 내려왔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공유하였다. 나중에 최석일 소령을 통해 알게 된 것인데 기획관리실장 박성하 대령이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을 보고 당연히 계엄이 해제된다는 생각에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사령관 명의로 대기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01:45경 국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방첩사 부대원들은 복귀 지시를 받고 차례로 부대에 복귀하였는데, 저는 위 대기지시나 철수지시에 대해서는 전파를 받지 못했다. 최석일 소령이 주로 전파를 받아 단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현장으로 내용을 전파한 것으로 안다.”, “12. 4. 00:48~01:15경 이현일 보내준 명단에 기재된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 정일현과 4회, 강력4팀장 이병하와 2회 각 통화하였다. 둘이 같이 있었는데 정일현과 주로 깊숙하게 이야기를 했었다. 경찰이 몇 명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만날지 등에 대한 대화를 하였다. ‘경찰지원인력 50명이 국회 수소충전소에 있다’고 해서 좀 놀랐었다. 10명만 오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경찰과 만나 체포조 팀을 편성하고 바로 체포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생각해서 경찰 측에 ‘미리 조를 나누어 달라’고 했다. 01:03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MS에게 ‘국회 수소충전소로 오라, 거기에 방첩사 수사관, 경찰 수사관이 대기하고 있으니 접촉하면 된다, 방첩사 ZH 중령의 통제를 받으

면 된다, (조사본부에서) 오는 인원이 10명이니까 한 명씩 팀에 들어가면 된다. 방첩사 수사관 45명, 경찰 수사관 50명이 있으니 분배해서 편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01:15경 정 일현에게 전화하여 ‘대기명령이 떨어졌다, 안 만나도 될 것 같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투입된 868경호경비부대장 양승철과 868경호경비부대 소속 9명 인원들은 01:15경 내지 01:20경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인근 주차장에 도착하여 대기하였는데,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한 팀의 팀장인 송제영(당시 선바위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라. 거기도 가깝다.’는 이야기를 듣고 01:35경 과천시청 시내버스 6번 차고지로 이동해 대기하였다. 송제영 등 위 인원들은 02:35경 1처장 정성우로부터 부대복귀 지시를 받고 02:50경 방첩사령부로 복귀하였다.

또한 1처장 정성우 지시로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한 군사보안실장 이종훈은 01:27경 방첩사령부 위병소를 통과하였는데, 01:54경 과천의왕고속도로 의왕휴게소에 집합해 대기하던 중 02:35경 1처장 정성우로부터 부대복귀 지시를 받고 함께 출동한 인원 33명과 함께 02:57경 위병소를 통과하여 부대로 복귀하였다.

마찬가지로 1처장 정성우 지시로 선관위 관악청사로 출동한 정보보안단장 박태주는 2024. 12. 4. 01:03경 출동하여 01:27경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상호명 '킷쇼' 주점 앞에 도착해 대기하였는데, 01:34경 1처장 정성우로부터 ‘최대한 원거리로 떨어져라. 근처도 가지 마라.’,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해당 장소에서 계속 대기하던 중 02:34경 정성우로부터 부대복귀 지시를 받고 부대로 철수하였다. 또한 1처장 정성우 지시로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한 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 등은 2024. 12. 4. 01:03

경 출동하기는 하였으나, 유재원 및 함께 출동한 사이버수사과장 안형욱, 윤진영은 후속으로 출발하는 팀원들에게 ‘한강 넘지 마라, 넘으면 안 된다, 현장 현 위치에서 어떻게든 대기해라’고 지시한 상황이었다. 유재원은 01:26경 1처장 정성우로부터 전화를 받아 ‘출발했냐?’, ‘너희 원거리 대기하고 내 통제 없이는 움직이면 안 되다’는 지시를 받았고, 재차 01:34경 정성우로부터 ‘너희는 아예 가지 마라, 아예 딴 데 가 있어라’는 지시를 받아 ‘딴 데 가 있을 겁니다. 강 안 넘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이들은 잠수교 남단 방면 주차장에 정차해 대기하였는데, 유재원은 02:05경 자신의 팀에 합류할 예정이던 정보보호단 인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재차 팀원들에게 ‘현 위치에서 대기하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강을 넘었느냐, 강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하는 등 자신의 팀원들에게 비슷한 취지의 지시를 전파하였으며, 02:35경 정성우로부터 '부대로 복귀하라'는 철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다.

이후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는 2024. 12. 4. 01:46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에게 방첩사령부의 복귀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취지로 ‘저희 이제 복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황이 종료돼서 저희는 철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연락하였고, 방첩수사단 인원들에게도 방첩사령부로 철수하라는 지시를 전파하였다.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12. 4. 05:34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곽종근에게 ‘어, 방송 보고 알았다고?’, ‘TV 보고 알았다고 합시다.’, ‘어, 이거 부관이 매일 지우는데’라고 말하였다.

5) 육군특수전사령부

가) 국회에서 2024. 12. 4. 01:03경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될 무렵, (00:32경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경내로 진입한 병력 19명 중) 4층으로 올라간 김현태 등

707특수임무단 병력 8명은 지하 1층에 내려와 김현태의 지시로 이정원이 분전함 전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 전기를 차단하는 중이었고, 10명은 3층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1명은 233호에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월담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해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온 제1공수특전여단 1대대 49명, 2대대 122명의 병력은 약 38명가량이 본관 1층 후문 외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 국회 관계자 등과 대치하고 있었고, 나머지 병력은 본관 2층 정문 앞에서 국회 관계자 등과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707특수임무단 후속부대인 2제대 101명은 위 1제대가 탔던 헬기 12대에 나누어 타고 00:16경부터 00:24경까지 특전사사령부에서 출동하여 00:48경부터 01:18경까지 국회 운동장에 차례로 착륙하였고,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부근으로 이동하였는데, 아예 실탄이나 공포탄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김현태는 이 법정에서 ‘2제대 출동 여부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가 있자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2024. 12. 4. 01:0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에 ‘병력들이 시민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를 시켜라, 철수를 시켜라’며 병력 철수 지시를 하달하였고, 이에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박정환은 01:06경 내지 01:08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안이 의결되었으므로 병력을 철수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후 곽종근은 01:08경, 01:15 경, 01:33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이진우로부터 ‘병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자 ‘지금 빼면 시민이랑 접촉이 있으니 일단 국회 공터에 집합시켜 놓으려고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이진우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곽종근은 2024. 12. 4. 01:32경 피고인 김용현과 통화해 ‘병력을 좀 빼겠다.’는 취지로 보

고하였고, 그 무렵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부대들에 ‘각각 투입한 장소 인근 눈에 안 띄는 곳에 재집결해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01:44경 제1공수특전여단 1대대장 김형기에게 전화하여 ‘어. 1대대장’, ‘복귀하지 말고, 하여튼 저기, 사람 없는 곳에서 대기’라며 복귀가 아닌 대기를 지시하였고, 위 즈음 2대대장 반효민에게도 전화하여 ‘가다가 어디 중간에 좀 설 데 찾아봐’, ‘그래서 하여튼 복귀는 아니니까 완전히 떨어진 데서 있어라 여기’, ‘여의도, 여의도에서 좀...’라고 말하며 복귀가 아닌 대기를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이루어진 후 김용현과의 통화에서 김용현이 혼잣말로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콧 찍어서 ‘어디가 더 버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박정환은 이 법정에서 “01:03경 당시 지휘통제실에서 TV로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화면을 보고 곽종근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에 웅크리면서 좌우측에 있는 참모들을 향해 ‘병력들이 시민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시켜라, 철수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결의안 통과 전에는 현장 지휘관들과 직접 소통하였고, 결의안 통과 이후에는 참모들이나 실무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3대대 대대장 장희재 및 총원 114명은 여의도 소재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을 개시하며 2024. 12. 4. 01:01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위병소를 통과하였는데, 이후 장희재는 01:06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전화하여 출발하였다는 취지로 보고 하였는데, 이상현으로부터 ‘가지 말고 길가 옆에 서 있어라’, ‘내가 지시하면 그냥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아 당산역 인근 도로에 멈춰 이동을 중단한 후 대기하다가 부대로 복귀하였다.

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1대대장 김형기는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에서 국회 관계자 등과 대치중이었는데, 01:07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으로부터 안효영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를 받아 ‘형기야, 가결됐어, 너희들 더 이상 진입하지 마’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에 김형기가 ‘진입하지 맙니까?’라고 질문하자 이상현은 ‘일단 집합해. 2대대하고 다 같이’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김형기는 제1공수특전여단 1대대 소속 병력들을 물러나게 한 후 위 병력들에게 ‘국회 인근 여의도 주차장에 02:55경까지 재집결할 것’을 지시하고 국회 경내에서 철수하였다.

이상현은 01:08경 제1공수특전여단 2대대장 반효민에게 전화하여 ‘국회 가결됐으니까’, ‘더 이상 진입하지 말고 일단 모여 있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반효민이 ‘예. 모여 있겠습니다.’, ‘건물 앞에서 집결 보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자 ‘일단 내부에 있어 봐.’, ‘더 이상 충돌하지 말고’라며 대기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1대대, 2대대는 01:11경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01:20경 일단 집결지로 1대대는 국회의사당 대로변, 2대대는 국회 5문 일대를 선정해 걸어서 밖으로 이동하였다(출동한 3대대는 당산역에 모여 대기하기로 하였다). 위 철수 과정에서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들이 ‘이쪽으로 나가면 큰일 날 수 있다, 지금 시민들이 시위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부상이 생길 수 있다.’며 경로를 안내해주어 위 병력들은 국회 7문을 통해 국회 밖으로 나왔고, 아울러 월담 과정 중 부상을 입었던 부상자들(1대대의 경우 시민들에게 붙잡혀 인대가 파열된 병력 1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은 경찰 또는 국회경비대 차량을 통해 후송 지원을 받았다.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던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병력은 국회 7문을 통해 나와 02:15경 까지 국회 인근 주차장 공터에 집결하였고, 03:40경 최종 철수 및 부대복귀 명령이 하달 된 뒤에야 부대로 복귀하였다. 한편 01:25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탄약고에서 O, O, O, O대대의 5.56mm 공포탄 3박스 6,840발이 스타렉스 승합차에 적재가 완료 되었다.

김형기는 이 법정에서 ‘(국회 인근에서 계속 대기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저희가 최초에 투입할 때 차량 6대가 왔다. 그 6대는 국회 정문 인근에 있었는데, 시민들과 각종 차량들 때문에 차를 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일단 7문으로 이탈하고 저희가 둔치 주차장에서 대기하면서 저희 차량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부대의 차를 협조 받아서 이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 장소 변경을 몇 번 했고, 장소 변경하는 과정에서 병력들의 안전 문제, 차량 이동문제, 수송문제들 때문에 좀 늦게 지연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 1층에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단장 김현태, 9지역대장 박종성 및 9지역대 소속 일부 병력은, 9지역대 소속 상사 ZX이 지하 1층 분전함을 열고 지하 1층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 01:07경부터 01:12경까지 지하 1층을 소등된 상태로 만들었다. 김현태는 01:07경 곽종근과 전화통화를 한 후 부대원들에게 ‘야, 이제 나가자’, ‘나가자, 퇴출하자, 나가자’라며 철수를 지시하였고, 위 철수지시에 따라 9지역대장 박종성은 01:08경 메신저(텔레그램) 707특수임무단 지휘부 단체대화방에 ‘전원 정문 앞으로 집결’, 01:10경 ‘전원 가방 있는 곳으로 집결하세요.’라며 철수 지시를 하달하였다. 한편 707특수임무단 작전과장 조원민은 01:11경 위 단체대화방에 ‘정문 전원 모이면 말씀주십시오. 조용한 루트로 들어가는 것 확인예정(사령부)’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74)

74) 707특수임무단 작전과장 조원민은 ‘조용한 루트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 ‘조용한 루트는 시민들이나 기자들이 모여 있지 않은 그 곳으로, 그런 통로로 우리 철수 버스를 보내겠다는 그런 의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X은 01:12경 지하 1층의 전기 차단을 해제하였다.

김현태와 ZX 등 8명은 국회의사당 직원의 안내로 다시 올라간 셔터문을 통해 01:13경 지하통로를 통해 국회의사당 지하 1층을 빠져나왔다. 이들은 지하통로를 통해 의원회관 지하 1층으로 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원회관 2층으로 올라간 후 01:17경 의원회관 2층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장비 등을 쌓아놓은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좌측에서 집결하였다.

국회의사당 본관 3층에 있던 10명은 01:11경 2층으로 내려가 다시 233호로 들어가 나머지 1명과 합류한 후 01:13경 깨진 창문을 통해 다시 나와 장비 등을 쌓아놓았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좌측에 다시 집결했다. 이때 후속부대인 2제대 역시 헬기에서 내려 순차적으로 위 장소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김현태는 이 법정에서 ‘의원회관을 빠져나와 다시 집결했을 때야 2제대 병력을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소속 병력들은 2024. 12. 4. 01:43경 내지 01:53경 국회 5문을 통해 국회에서 나왔다. 작전과장 조원민은 01:49경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단장님 사 지시로 집결보유 지시했습니다. 복귀미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공유하였다. 위 인원들은 02:38경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파견된 버스에 탑승해 대기하다 03:21경 사령부로 복귀하기 시작하였고, 김현태는 03:27경 ‘복귀하면 인원장비 최종 확인하고 전원 이상 없을 시 주요직위자 지통실로 모입시다.’라고 지시를 하달하였다.

마) 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은 2024. 12. 4. 01:09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여론조사꽃(서울 서대문구)으로 이동하던 중 제9공수특전여단 작전 참모로부터 전화를 받아 ‘사령부에서 출동했던 모든 병력들은 차량 탑승 후 대기하라고 합니다.’라는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고, 01:19경 여론조사꽃에 도착한 후 당시 차량에 탑승해 대기중이던 제9공수특전

여단 52특전대대 지역대 인원들을(52특전대대 인원들 역시 01:09경 작전참모로부터 ‘임의 지역을 선정하여 버스에 탑승해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상황이었다) 확인하여 ‘지금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재차 51특전대대가 확보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이동하였다. 위 52특전대대 지역대 인원들은 이후 현장에서 철수해 인근 경기대학교 캠퍼스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02:16경 안무성으로부터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부대로 출발하여 03:36경 여단에 복귀하였다.

한편 51특전대대(대대장 황준홍)는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01:09경 버스 탑승 후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계근무 중인 지역대 인원들이 모두 버스로 탑승하여 대로변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02:15경 복귀 지시를 받고 그 무렵 부대로 출발하여 03:07경 여단에 복귀하였다.

안무성은 이 법정에서 “곽종근으로부터 중앙선관위 분청과 여론조사꽃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22:23경 곽종근으로부터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일단은 편의조 2개조를 준비시키고, 가용한 부대를 출동 준비시켜라’라고 지시를 받았고, 22:27경 조금 더 구체적인 임무를 받았는데 ‘1개 특전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청으로, 그리고 1개 지역대 규모는 여론조사꽃으로 출동시키되, 편의대 2개조가 먼저 현장으로 가서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편의대가 본 대대를 안내할 수 있게 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라고 말해주지 않고 그냥 임무만 부여하고 전화를 끊었다. ‘해당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주었기 때문에 확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곽종근 사령관이 22:50경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전 부대 공통으로 ‘개인화기 휴대하고 공포탄, 실탄을 가져가되 실탄은 개인 분배하지 말고 통합보관하며, 안면 마스크 착용하고’ 등등을 지시했던 것 같다. 이후 저희가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등에 대해 계속 작전

참모한테 이야기해서 사령부로부터 지침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모든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그런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 당시 2개 대대는 아예 출근을 안 한 상태여서 다른 2개 대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1개 대대 규모 병력이 필요한 선관위 관악청사에는 신속대응부대로 지정되어 있던 51대대(약 150명)를 보냈고, 여론조사꽃에는 52대대 6지역대(약 60명)를 보냈다. 병력들은 23:42경 거의 동시에 버스, 트럭 등을 타고 각 목적지로 출동했고, 사령관께서 저도 현장에 가서 지휘하라고 해서 저를 포함한 지휘부(약 12명)는 23:50경 선관위 관악청사로 출동했다. 급하다보니 6지역대는 실탄 없이 출동했는데, 탄약 보급은 나중에 지역으로 보내도 된다고 생각해서 대대장이 그냥 출동시킨 것으로 안다. 저와 51대대 병력들이 거의 동시에 00:23경 선관위 관악청사에 도착하였다. 먼저 도착한 편의대가 ‘현재 여기 특이사항 없습니다.’라고 보고해서 편의대 안내를 따라서 4~5층 정도 높이 청사 경내로 들어갔고, 건물은 불이 다 꺼져있고 경비나 당직근무자라고 할 수 있는 인원조차 없는 상태로 입구인 자동 유리문이 잠겨있었다. 전 직원 다 퇴근해 있는 상태의 건물이었다. 51대대장 황준홍에게 ‘청사 담벽 안쪽에서 외곽을 확보하고, 나머지 병력은 버스에 탑승해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너무 조용하고 평온해서 1개 대대는 너무 과다하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개 지역대 규모만 시설 외곽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51대대 3지역대 병력이 청사 경내 안쪽에서 외곽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저나 병력들은 청사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지 않았다. 누군가 외부에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해서 00:54경 바로 여론조사꽃으로 출발해서 01:19경 정도에 여론조사꽃에 도착했는데, 이동 중인 01:09경 여단 작전참모로부터 ‘사령부에서 「출동했던 모든 병력들은 차량 탑승 후 대

기하라」고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던 상태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위 지시에 따라 병력들은 다 차량에 탑승해 있었고 52대대장 유선민 등이 나와서 제게 ‘지금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라고 보고해서 다시 선관위 관악청사로 이동했다. 대대장으로부터 들으니 ‘그곳도 규모가 작아 최초 15명 정도만 배치하였다가 사령부 지시를 받고 모두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민간인 3명이 건물에 들어가려고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보고도 받았다. 02:15경 사령관으로부터 ‘모든 병력들은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 복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 11특전대대장 이경종은 01:08경 선관위 과천청사에 도착하여 정보사 인원 및 경찰들과 이야기를 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11특전대대 1제대 병력은 선관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집합하여 대기 중이었다. 이경종은 01:10경 작전과장 남상용으로부터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기하라’는 사령부의 지시를 전달받으면서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공유받았다.

제3공수특전여단 12특전대대 병력은 2024. 12. 4. 01:07경부터 차례로 수원 선거연수원에 도착하였다. 12특전대대장 박기근은 01:13경 도착하였는데, 당시 선거연수원 진입로에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 인력 약 20~30명가량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박기근은 도착하기 직전인 01:10경 대대 당직근무자로부터 ‘이동 중지하고 그곳에서 재집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판단해서 대기하라’는 사령부의 지시를 전달받았고 일단 선거연수원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내린 후 경찰서장 등을 만나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연락하여 임무 중지 및 대기 지시를 받았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은 2024. 12. 4. 01:16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

게 전화하여 ‘사령관님, 이제 11대대와 12대대가 이상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광종근으로부터 ‘야, 현시간부로 작전 종료한다. 병력들 다 철수시키고 중지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차량에 탑승해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11특전대대장 이경중, 12특전대대장 박기근에게 ‘다 빠져나와서 건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차량에 탑승해서 대기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김정근의 지시에 따라 11특전대대의 경우 01:20경부터 출동할 때 타고 왔던 대형버스 2대, 중형버스 2대를 돌려 청사 밖 인근 도로로 철수한 후 일정 시간 대기하였다. 12특전대대는 수원 선거연수원 도착 후 차량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12특전대대장 박기근이 현장에 위치한 경찰서장과 소통하며 위 대기명령을 하달받아 대기하였다. 광종근은 02:14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전화하여 ‘부대로 완전 철수해라’라고 하면서 전체 철수명령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의 지시 하에 각 대대는 모두 부대로 철수하였다.

이경중은 이 법정에서 “비상계엄 사실을 알고 김정근 여단장과 함께 지휘통제실로 들어갔다. 광종근 사령관이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3공수특전여단에 대한 지시를 하였는데 ‘1개 대대는 불순세력으로부터 서버 반출 및 방화, 탈취에 대한 위협,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하고 협업해서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계하고 확보해라, 1개 대대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이동해서 마찬가지로 경계 및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정근 3여단장은 저희 11대대에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무를, 12대대에는 수원 선관위 연수원 임무를 부여했다. 사령관이 말한 문장 그대로 저희에게 지시했다. 당시 ‘단독군장에 공포탄을 휴대하라. 실탄은 지휘관이 휴대하고 개봉하지 말라’는 지시도 그대로 하달되었다.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은 나머지 13대대, 15대대는 일단 대기 및 차후 상황에 대한 준비 등의 지시를 하였다. 저희 대대(편의대 인원 포함 약 119명)는 버스를 타고 과

천으로 출동했다. 당시 앰불런스가 같이 출동했는데 원래 저희 부대가 출동하게 되면 앰불런스가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다. 먼저 편의대를 과천으로 보냈는데 ‘서버실 위치와 출입구 이런 것들을 포함해 건물 전체에 대해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편의대로부터 ‘현장에 정보사 인원들이 경찰과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경찰은 모르겠는데 정보사 인원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의아했다. 제가 1제대 부대원들과 함께 01:08경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5분 전에 제3공수여단장 김정근도 와 있었다. 제가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과천경찰서 방호과장하고 정보사 인원 대령 한 분, 중령 한 분이 계셨다. 같이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황을 물어보니, 경찰은 외곽 봉쇄 및 출입통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었고, 정보사 인원들은 어떤 임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서버실과 입구 쪽이랑 출입구 쪽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에 01:10경 사령부로부터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1제대 인원들은 선관위 청사 안 1층 로비에서 명령 하달을 기다리면서 집결해 있다가 바로 나가서 차량에 탑승하였고, 01:20경 선관위 경내에서 나와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대기하였다. 당직실이나 서버실 등은 아예 가보지 못했다. 2제대는 제가 도착한 후 20분쯤 지나서 도착했는데 이미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여서 아예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02:15경 철수 및 복귀 명령이 하달되어 그대로 복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기근은 이 법정에서 “곽종근이 화상회의에서 ‘이번에 출동하는 기본임무 자체가 서버실, 그리고 선거조작장비를 확보하고 파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추후 방첩사에서 확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근 여단장께서 ‘그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를 해라’라고 부

연 설명했다. 위 과종근의 말은 제3공수특전여단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특전사 예하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한 말이다. 화상회의는 22:50경에 시작해서 23:00경 조금 넘어서 끝났다. 회의가 끝날 무렵 연락해서 먼저 편의대를 보내도록 지시했다. 12대 대 병력(편의대 포함 약 127명)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버스 등 차량 7대에 타고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했던 것 같다. 아마 12. 4. 00:05경 전후였고 공포탄은 10발씩 지급했는데 총에 끼우는 삽탄을 하지 않고 탄알집에 끼운 상태로 휴대만 하게 하였으며, 실탄은 공장에서 불출된 봉인된 상태 그대로 제가 차량에 가지고 있었다. 이동 과정에서 편의대로부터 ‘경찰들이 선거연수원 주위에 다 배치되어 있다. 편의대 인원들이 경찰서장하고 그쪽에 나와 있는 경찰 간부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도착한다고 말했다. 경찰서장이 통화하고 싶어 한다.’라고 보고받았고, 현장 책임자인 수원서부경찰서장 김재광 총경의 연락처를 보내주어 김재광과 통화하였다. 김재광은 ‘경찰에서 받은 임무는 수원 연수원을 외곽에서 경계하는 것이다. 연수원 출입통로가 총 4군데인데 이를 경찰이 모두 확보하고 봉쇄했다.’, ‘연수원 건물이 3개 있는데 하나는 연수원 본동이고, 하나는 생활관동, 하나는 지원동이다.’라고 설명했고, 저도 ‘우리 임무도 해당 시설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이다. 현장에 도착해야 정확하게 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버나 선거조작 장비 같은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다. 저희 병력은 12. 4. 01:07경부터 01:15경 사이에 선거연수원에 차례로 도착하였다. 제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말라고 해서 다들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는데, 제가 01:13~14경 도착하였는데, 도착하기 전인 01:10 경쯤 당직근무자로부터 ‘지금 사령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동하는 것을 중지하고 근처에 가까운 집결지를 정해서 그쪽으로 집결해라’는 중지 지시를 전달받았고, 여단장께 ‘중지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여단장께서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제가 중지되었다고 말했는데 ‘그래, 알았어, 현장 도착해서 경찰서장 만나고 보고해’라고 말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진입로부터 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경찰 차량이 너무 많아 진입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진입로 자체가 바리케이트로 차단되어 있었다. 선관위 직원이나 민간인 등은 전혀 보지 못했다. 저와 작전참모만 차에서 내려 경찰서장 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가 ‘우리 군부대는 중지 지시를 받았다. 경찰은 받은 것이 없냐?’고 묻자 그쪽에서는 ‘받은 것 없다.’, ‘우리가 이렇게 출입구 다 봉쇄하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연수원에 들어와 있는 인원들이 몇 명 들어가려고 해서 못 들어가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제가 ‘그럼 나도 다시 한 번 보고하고 추가지시 받은 것 있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했다. 그때가 01:17경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바로 김정근 여단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상황을 보고했다. 그때 여단장이 ‘근처에 가까운 집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곳으로 이동해서 좀 떨어져서, 연수원하고 떨어져서 모여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저희 병력은 선거연수원 농업박물관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02:20경 철수 및 복귀 지시를 받고 복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2024. 12. 4. 02:13경 피고인 김용현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용현이 곽종근에게 현 병력 상황을 물은 후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곽종근은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도 병력들이 다 철수했는데 선관위로 다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곽종근은 02:30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과 전화통화 하였고, 03:20경 피고인 김용현이 개최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VTC)에 참석하였다. 위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이후 곽종근은 2024. 12. 4. 03:40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최종 철수지시를 하달하였고, 이상현은 제1공수특전여단 1대

대장 김형기, 2대대장 반효민에게 전화하여 ‘현 시간부로 복귀’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은 그 무렵 부대로 복귀하였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12. 4. 02:13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를 들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저는 이미 01:09경(까지는) ‘전체 6군데 병력을 다 임무 중지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했었다. 당시 저는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시민들하고 우리 인원들을 분리시키는 게 우선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촉발되거나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 조치를 01:09경에 했는데, 김용현 장관이 제게 물어 보아 ‘이미 현장에서 병력이 철수했는데 거기를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솔직히 그러한 사실 이 기억이 안 나서 ‘기억 안 난다.’고 말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듣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 정황을 맞추어보니, 당시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국회에서 병력이 이미 철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워딩이 기억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영권은 이 법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550방첩부대장으로 특전사에 대한 보안 및 방첩 관련 업무를 지원했다. 12. 3. 23:00경 특전사령부 전투통제실로 이동했다. 이미 곽종근을 포함해서 박정환 참모장, 각 주요 참모들, 한 20~30명 되는 일반 전투 참모단 이 다 소집되어 있었고, VTC에 각 여단장들이 전부 등장해 있었다.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긴박한 상황이었다. 제가 기억하는 곽종근 사령관은 굉장히 차분한 분인데, 그때는 좀 흥분한 상태로 긴박하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랬다. 전투통제실에 입실한 후 20~30분 정도 지났을 때 작전처장 남기동 대령이 작성한 노트를 보고 김찬규 대위를 시켜 노트를 촬영하였다. 군 관련 정보수집이 방첩사의 임무이기 때문이

다.”,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가 된 후 광종근 사령관이 02:13경 김용현 장관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는 장내가 다 정리가 돼서 김용현 장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광종근 사령관의 답변은 정확했다.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도 병력들이 다 철수했는데 선관위로 다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회의 결의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이거는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음과 같이 메모를 했다. ‘MND’는 국방부장관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영권의 메모 중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2기록 1590번).

0213 MND 현 병력상황 하문 선관위 투입? → 국회 × ✓ 미처가는구나... 다 수사 대상

아) 광종근은 계속 전투통제실에 있다가 2024. 12. 4. 05:34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광종근은 05:59경, 참모장 박정환은 06:03경 전투통제실에서 퇴장하였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박정환은 이 법정에서 “광종근은 05:34경 전화를 받았는데 받을 때 ‘방첩사령관’이라고 하면서 받았다. 그래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부대가 안전지역으로 철수한 상태에서 복귀를 하고 있었거나 이미 도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투통제실 안은 상당히 조용한 상태, 소강상태였다. 그래서 전화가 누구한테 오면 바로 들을 수 있었다. 통화 내용은 다 들을 수 없었지만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반응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광종근은 ‘어, 방송 보고 알았다고?’ 이런 말을 했고,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손에서 내려다보면서 ‘어, 이거 부관이 매일 지우는데’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통화내용을 추측컨대 여인형이 먼저

‘(계엄을) 방송 보고 알았다고 하자’라고 말했다고 짐작했다. 실제 이후 유튜브에 출연하
신거나 국회 국방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전부 다 ‘방송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에 ‘아, 그게 그 통화였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원래 지우는데’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
인형이 ‘비화폰 통화기록 다 지우자’ 이런 식으로 말한 것에 대한 답으로 추측했다. 곽종
근은 12. 4. 05:59경 전투통제실에서 나갔고, 저는 06:03경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05:34경 여인형과 비화폰으로 통화하였다. 박정환이 당시 저와
여인형의 통화내 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 여인형이 제게 ‘TV보고 알았
다고 합시다.’하고 ‘휴대폰 내용을 삭제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한편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2024. 12. 4. 오전 합동참모의장 주관 군사 대비
태세 회의 종료 후 육군특수전사령관 집무실에서 550방첩부대장 김영권에게 ‘방첩부대장,
사실은 장관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언질을 미리 받았다.’, ‘이 정도에서 멈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후회된다.’고 말하며 ‘지작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리고 본인은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야기하며 ‘변호사는 또 어떻게 구하냐’고 말하였다.

김영권은 이 법정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집무실에서 곽종근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면
서 제게 ‘방첩부대장, 사실은 장관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언질을 미리 받았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부 의사를 밝혀서 실제로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좀 반신반의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 정도에서
멈춘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후회된다.’는 말도 했었다.
마지막에 장관 주관 VTC에 참석했던 작전사령관들이 4명 있었는데 ‘지작사령관, 수방

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리고 나는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변호사는 또 어떻게 구하냐’ 이런 말을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채)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2024. 12. 4. 19:51경 국회협력단장 양재응과 전화하며 “너만 들어라. 대통령님이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 내라’고 했어. 그걸 내가 차를 타고 있는데 VTC로 통화하신거야. 내거 이런 걸 터는 순간에 이게 탄핵의 저게 되겠지?”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양재응이 ‘선배님, V하고, VIP하고 직접 VTC 하신 겁니까?’라고 묻자 “아니, 우린 안 했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사령관님한테 전화가 왔어. ‘지금 VTC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막 「문을 뿌개서라도 데려오라」고 했다’는 거야, 데리고 나가라”라고 말하였다.

이상현은 이 법정에서 “12. 4. 19:51경 양재응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 제가 전화를 했는데 계엄이 해제되고 5일인가 6일날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국방위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원래 특전사 여단장급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녁에 취소가 되고 장관님과 총장님, 의장님만 참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왜 여단장을 참석 못 하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 제가 전화를 했던 것이고 평소에 잘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위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수도방위사령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의도진지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던 이진우는 2024. 12. 4. 01:06경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였으나 당시 국회 인근에 있던 이진우는 아직 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윤석열은 ‘너 도대체 아직까지 못 가고 뭐 하냐?’, ‘발로 차고서라도 부수

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이진우는 ‘지금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을 못 합니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해, 어? 어?’라는 말을 듣고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진우는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01:08경, 01:15경, 01:33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병력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고, 곽종근으로부터 ‘지금 빼면 시민이랑 접촉이 있으니 일단 국회 공터에 집합시켜 놓으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진우는 01:13경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아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가지고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진우는 01:17경, 01:36경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우리도 병력 집합시켜 놔라, 내가 가서 상황 설명하고 위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일단 병력을 국회에서 나오게 해 근처에 집합시키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속부관 XN는 01:18경 여의도진지 앞에서 대기 중이었던 여의도진지장 전승혁에게 ‘진지장님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늦게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전승혁으로 하여금 여의도진지로 복귀하게 하였다.

이진우는 01:30~01:40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으로부터 ‘특전사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보고받고 철수를 승인하였고, 조성현은 이에 따라 01:47경 제1경비단

전 병력에 대해 ‘특전사 인원들과 합류를 해서 같이 철수해라’라며 전 병력에 대해 철수 및 부대 복귀 지시를 하달하였다.

조성현은 이 법정에서 “제가 01:30경 사령관께 ‘특전사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퇴출하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고, 사령관께서 승인하여 제 예하 부대 병력과 밖에 있는 부대들에게 철수를 지시했다.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35특임대대 대원들은 01:48경 국회 5문을 통해 철수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01:08경, 01:15경 광종근과 통화한 후 01:17경 조성현에게 전화해 ‘야, 비상계엄 해제됐다, 철수해야 하는데’라고 말하였고, 조성현으로부터 ‘사령관님, 특전사가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수하면 안 됩니까’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 맞아. 나 지금 특전사령관한테도 얘기 들었으니까 너 따로 하지 말고 특전사 따라서 그쪽에서 모이는 데로 같이 모여. 그럼 내가 가서 내가 정신교육 할게.’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01:30경이 되어서야 철수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수도방위사령부 2특임대대 후속부대 2지역대장 윤덕규 포함 51명은 2024. 12. 4. 01:04경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하여, 제1경비단장 조성현으로부터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는 것이 임무다. 무장을 해제하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방향으로 가기 위해 01:20경 서강대교 남단을 지나던 중이었다(당시 차량이 막혀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윤덕규는 01:20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넘어가려고 이동하고 있는데 차가 막혀서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조성현으로부터 ‘너 왜 여기 왜 오냐, 신속하게 돌려서 안전한 곳에 대기해라, 그리고 2특임대대 선발부대까지 통제를 해서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해’,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봐.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너희가 들어오면 시

민들과 충돌이 있을 것 같다. 너희와 시민들 둘 다 다치면 안 된다. 일단 너희는 국회에 들어오지 말고 근처에 아무 곳이나 주차할 수 있는 데서 대기해’, ‘국회 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서 주차하고 다시 전화해라’, ‘일단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2특임대대 선발부대)와 접촉을 해서 그 인원들을 너희 쪽으로 붙여라’, ‘붙이고 나서 되면 다시 한 번 나한테 전화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위 인원들은 차를 돌려 서강대교 북단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즈음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 계획과장 김윤정은 2024. 12. 4. 01:18경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장 노주영 및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에 전화하여 ‘이 감 안 해도 됩니다.’라고 지시해 미결수용자 이감 준비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파하였다. 노주영은 01:20경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예방과장 김혜인에게 전화하여 ‘응. 그 조사본부 연락 왔거든, 그 미결수용실 이감 준비 잠정 중단’이라고 알려주었고, 김혜인은 즉시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에게 전화하여 ‘예, 단장님. 그 일단 조사본부에서 이 감 준비하는 거를 중단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800방첩대에서 인원들이 여기 수용 시설 보고 싶다고 해서 와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35특임대대 후발대 이응순 포함 23명은 2024. 12. 4. 01:23경 35특임대대 김의규 포함 선발대 15명이 대기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 근처에 있는 전기 차충전소 인근에 도착해 위 선발대 인원들과 합류하여 대기하였다. 김의규는 지휘부에 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 소속 병력들의 철수 상황을 보고하였고, 지휘부로부터 ‘위 병력들과 함께 철수해 국회에서 나와라(이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인원들은 707특수임무단 병력과 함께 01:48경 전기차충전소에서 가까운 국회 5문을 통해 국회 경내에서 나왔고, 도보로 한강을 따라 걸어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35특임대대 인원들은 그곳에서 차량으로 부대로 철수하였다.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2특임대대 1지역대 1중대장 KV 포함 2특임대대 선발대 병력 총원 11명은 01:20경 내지 01:30경 2특임대대 1지역대장 김우진으로부터 ‘35특임대대는 7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네도 7문으로 이동을 해서 들어가 봐라’라는 지시를 받아 국회 7문 인근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KV은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해 ‘국회 7문을 통해 국회의사당 경내에 진입하겠다.’는 보고를 하였는데, 이에 조성현으로부터 ‘들어가지 말고, 2지역대장(윤덕규 소령)과 합류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위 인원들은 같은 날 01:30경 내지 01:40경 서강대교 북단으로 이동해 2지역대장 윤덕규 등과 합류하였다. 윤덕규는 01:47경 조성현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 뒤 조성현으로부터 ‘인원 장비에 대한 이상 유무가 있냐?’, ‘현시간부로 주둔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그곳에 있던 전원이 함께 철수하여 02:20경 부대에 도착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찬흠 등 군사경찰단 선발대 5명 및 LC 등 군사경찰단 후속부대 5명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기로 하여, 이찬흠 등 5명은 2024. 12. 4. 01:35경 국회 정문 우측 울타리를 넘어, LC 등 후속부대 5명은 01:46경 국회 정문 좌측 울타리를 넘어 각각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이후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이동하였다. 이찬흠은 01:43경 군사경찰단 특임대대장 엄정섭에게 전화하여 ‘네 대대장님, 넘어와서 지금 국회의사당 본관까지 왔는데 지금 제1경비단이 전부 다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철수로를 알려주고 있어서 국회에서 혹시 그거에 응하면 되겠습니까?’, ‘국회 안에 있는 군 병력들이 전부 다 철수했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이찬흠으로부터 ‘제1경비단 소속 병력이 철수한다.’는 보고를 받은 엄정섭은 01:47경 군사경찰단장 김창학과 통화하여 ‘군사경찰단 소속 병력 10명이 모두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는데 국회의사당 본관에 들어가

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 ‘제1경비단 병력들이 철수하고 있다.’, ‘울타리 안에서만, 안쪽에서 대기만 하고 있겠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김창학은 01:48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제1경비단 소속 병력들의 철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조성현으로부터 ‘(우리 병력이) 퇴출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가결돼서 전체적으로’, ‘특전사 애들도 지금 퇴출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김창학은 ‘아, 저 안에서 벌써 가결이 돼버렸어?’라고 말하였고, 당시 조성현이 ‘사령관한테 제가 퇴출권유를 했다. 우리도 은밀히 그냥 나오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렸다.’, ‘퇴출시키십시오, 은밀하게’라며 김창학에게 철수를 건의하였다. 구체적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2기록 1973번).

조성현 예, 충성.
 김창학 예, 단장님. 우리 애들은 이제 들어갔는데 경비도 없이 철수해요?
 조성현 퇴출하고 있습니다.
 김창학 왜? 왜? 왜?
 조성현 아, 지금 가결돼서 전체적으로,
 김창학 예.
 조성현 특전사 애들도 지금 퇴출하고 있습니다.
 김창학 아, 저 안에서 벌써 가결이 돼버렸어?
 조성현 예.
 김창학 응.
 조성현 퇴출시키십시오.
 김창학 응, 알겠습니다.
 조성현 몇 명 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김창학 이제, 이제 막 10, 10명 들어갔어.
 조성현 아, 제가 사, 사령관님 통화를 했고,
 김창학 응.
 조성현 사령관한테 제가 퇴출권유를 했거든요.
 김창학 응.
 조성현 그래서, 그래서 왜냐면 이게 퇴출할 때 우리도 은밀히 그냥 나오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창학 응, 응.
 조성현 퇴출시키십시오, 은밀하게.
 김창학 그, 그러면 뭐 여기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얘기는 없었고?
 조성현 예, 그래서 사령관님이 저희한테는 어디 집결해서 사령관님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사령관님 직접 설명한다고,

김창학 아, 그래요?

조성현 그래서 어디 집결시켜서, 좀 떨어진 곳에 집결시켜서 보고를 한번 드리십시오.

김창학 응, 사령관이 지금 안에 들어가 계세요?

조성현 아닙니다. 밖에 계신 것 같습니다.

김창학 그래, 못 들어갔잖아.

조성현 못 들어가신, 예.

김창학 예, 알았어요. 사령관 한번, 통화를 한번 할게요.

조성현 예, 예. 충성.

김창학 예, 예.

이후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01:51경 군사경찰단 특임대대장 엄정섭과 통화하여 ‘어 엄정섭아! 일단 먼저 이찬흠이한테 아니면 네가 접촉을 해보든지 제1경비단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 인원들하고 같이 집결을 하라고 해’, ‘본 장소를 확인해서 집결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드렸거든. 참모장한테도 보고했고 사령관님한테도 승인을 받았는데 (MC) 5대를 남겨두고 20대는 지금 즉시 주둔지로 복귀를 시켜’라고 지시하였다. 김창학은 01:52경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장 노주영에게 전화하여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MC는 20대는 지금 즉시 복귀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복귀하라 그랬어.’, ‘나머지는 여기 현장에 다 있을게’라며 상황을 알려주었다. 이후 기동중대 소속 20명은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본부로 복귀하였고, 이외 군사경찰단 소속 인원들은 03:30경 수도방위사령부로 복귀하였다. 김창학과 노주영의 구체적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2기록 1975번).

노주영 충성. 단장님.

김창학 어, 주영아. 그 뉴스에 저기 뭐 저기 국회에서 해산 가결됐다고 나오냐?

노주영 예.

김창학 벌써 가결이 된 거야?

노주영 190명 의원 전원 가결했고,

김창학 응.

노주영 한동훈 여당 대표도 '이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막 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여당은 단체로다 서가지고 '불법적인 거다. 군인과 경찰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라.'

김창학 응.
 노주영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성명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학 응. 그,
 노주영 예, 예.
 김창학 일단 내가 뭐 상황을 설명해주면 우리 그 특임중대 애들도 찬흠이 포함 10명 넘어갔어요.
 들어갔어.
 노주영 예. 예.
 김창학 근데 이제 경비단하고 같이 집결해있으면 사령관님이 와서 교육하신다 그랬고,
 노주영 예.
 김창학 MC는 20대는 지금 즉시 복귀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복귀하라 그랬어.
 노주영 아, 예, 알겠습니다.
 김창학 25, 5개. 그렇게만 좀 알고 있고 나머지는 여기 현장에 다 있을게.
 노주영 네. MC 20대만 부대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창학 어. 5대는 뭐 만일을 대비해 일단 대기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가는 걸로.
 노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창학 그래, 그래.
 노주영 이거 참모장님께 유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있으면,
 김창학 아, 내가 했어. 좀 전에.
 노주영 아, 하셨습니다까? 아, 알겠습니다.
 김창학 사령관님 통화하고 참모장님하고도 통화했어.
 노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창학 그래, 그래.
 노주영 네, 충성.
 김창학 응.

한편 수도방위사령부 일부 병력은 01:43경 내지 01:5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
 무단 병력과 함께 국회 5문을 통해, 나머지 병력들은 국회 5문과 6문 사이 담을 넘어 국
 회를 빠져나갔다.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02:30경 내지 03:00경 부관 XN에게 ‘우리도 철수하자’라고
 지시하여 여의도진지 앞을 출발하여 약 20분 후 수도방위사령부로 복귀하였다. 이진우는
 복귀 후 03:20경 피고인 김용현 주관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원격회의에 참석하였고,
 03:47경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아 3분 39초가량 통화하였다.

7)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중대범죄·반부패수사대 수사팀장 MS 등 10명은 2024. 12. 4. 01:13경 국방부 서문 위병소를 나와 100m 가량 이동한 상태에서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와 13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구민회가 ‘MS준위님, 현재 상황에서 대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자 MS는 ‘가지 말고요?’라고 물었고, 이에 구민회는 ‘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MS는 01:14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정승기에게 전화하여 ‘방첩 중령 전화 왔는데, 오지 말고 부대 대기해 달립니다.’라고 보고하였고, 위 보고를 받은 정승기는 ‘오케이, 복귀하시오’라고 말하였다. MS 등 10명은 그대로 01:40경 국방부 조사본부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 계획과장 김윤정은 2024. 12. 4. 01:18경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장 노주영 및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에 전화하여 ‘이감 안 해도 됩니다.’라고 지시해 미결수용자 이감 준비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파하였다.

라. 경찰

1) 경찰청 본청

국회에서 2024. 12. 4. 01:03경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는 01:17경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으로부터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됐으니 국회 통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드려봐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에게 위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나,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아직 대통령의 계엄 해제 지시가 안 내려왔으니 기다려라’는 지시를 받고, 오부명에게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01:30경 경찰청장 집무실에 있던 경찰청 본청 참모들에게 ‘곧 해제 지시가 내려올 것 같으니 방에 가서 기다리자.’라고 지시한 후 집무실 내부에 위치한 내실로 입장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각 참모들은 본인의 집무실로 해산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이즈음 피고인 김봉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김봉식이 '지금 계엄군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쯤 다시 국회를 해제하는 게 맞겠다.'는 취지로 건의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은 01:45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전파하였고, 이에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전화하여 ‘무전에 해제 무전이 나오던데 자체적으로 해제한 것이냐’고 물어, 오부명으로부터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한편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4. 06:02경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58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조지호가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조지호 덕분에 빨리 잘 끝났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 조지호는 06:23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찰청 경찰국장 박현수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박현수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청장님이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제가 '청장님 이른 시간인데 안 주무십니까?'라고 말했는데, 저한테 삼청동 안가에 다녀온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퇴근 무렵에 대통령이 안가로 오라고 해서 김봉식 청장님과 같이 갔고 ‘저녁이라도 사주려고 하나 보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있었고 대통령이 대뜸 계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지호청장님에게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습니까?’라고 물어보았더니 조지호청장님이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할 틈을 안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안가를 나와서 조지호청장님과 김봉식 청

장님이 금융연수원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봉식 청장님이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다고 했고, 두 분이서 한숨만 쉬다가 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처음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조지호 청장님한테 위치추적조인지 체포조 인지를 요청해서(조지호 청장님이 한 말이 둘 중 하나인데 무엇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여인형에 대하여 '정신 나간 새끼구나, 미친놈이구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고, 여인형에게 '그건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엄사령관 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포고령을 내려줄테니 국회를 봉쇄해달라'고 하였고, 대통령도 몇 차례 전화가 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지호청장님이 '대통령이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이 법정에서 '박현수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체적인 맥락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서울경찰청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4. 01:00경 서울경찰청 9층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시내 소재 경찰서장 31명이 참석한 화상원격회의를 주재하였고, 위 회의는 약 10분 내지 15분 가량 진행되었다. 피고인 김봉식은 위 서울특별시 소재 경찰서장 화상원격회의가 종료된 후 상황센터로 복귀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4. 01:30 내지 01:40경 사이에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지금 계엄군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쯤 다시 국회를 해제하는 게 맞겠다.'는 취지로 건의를 하였고, 피고인 조지호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2024. 12. 4. 01:45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해제한다.'는 지시를 전파하였다.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은 01:17경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전화하여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됐으니 국회 통제를 풀어야되지 않느냐, 경찰청장님께 건의를 드려봐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곧이어 임정주로부터 ‘아직 대통령의 계엄해제 지시가 안 내려왔으니 기다려라’라는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를 하달받았다.

한편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이준석을 포함한 약 100여명의 인파가 2024. 12. 4. 01:44 경 국회 3문에서 그곳에 배치된 경찰들을 밀어내면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였고, 당시 국회 3문 방면을 통제하던 61기동대 등 기동대들이 위 인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였다. 당시 61기동대장 이수진은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이준석, 이주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안상훈의 출입을 통제하며 ‘지금 계엄령이 발효돼서 저희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안내하였고, 6기동단 경비과장이 01:44경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위 사실을 보고하였다. 당시 구체적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01:44:00	6기동단 경비과장	방30 1600단3입니다. 국집 3문 앞에서 이준석 산원 포함 진군 100점. 국집 진입을 시도하며 용넷을 밀고있어 국61, 국66으로 검단중에 있습니다.	경비안전계장 6기동단 경비과장입니다. 국회 3문 앞에서 이준석 국회의원 포함한 사람들 100명.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력을 밀고 있어 61,66기동대 차단 중에 있습니다.
01:44:20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	170 국집 3문 앞 일반 진군 100여점이 내안 진입을 요구하며 용넷을 밀고 있는 풀발. 예투.	영등포경찰서 관내 국회 3문 앞 일반 군중 100여명이 안쪽 진입을 요구하여 경력을 밀고 있는 상황. 알겠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는 01:51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 전창훈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전창훈은 ‘파견 준비하라고 했던 부분은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김경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김경규는 01:55경 서

울경찰청 수사2계장 최광원에게 ‘좀 전 국수본 전창훈 과장 연락. 수사관 파견 명단 취합 취소’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최광원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한편 ‘국회 출입 차단 지시’가 해제된 이후부터 2024. 12. 4. 03:00경 즈음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 중 여의도 및 국회의사당 인근에 배치되었던 ○, ○, ○기동단장 및 ○, ○, ○, ○, ○, ○, ○, ○, ○, ○, ○, ○, ○, ○, ○, ○, ○, ○, ○기동대 및 용산구 대통령 관저 및 대통령실에 배치되었던 기동본부장, 제○, ○, ○기동단장 및 제○, ○, ○, ○, ○, ○, ○, ○, ○, ○, ○, ○, ○, ○, ○, ○, ○, ○, ○기동대가 각 철수하였다.

3) 서울영등포경찰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은 2024. 12. 4. 01:09경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 박창균에게 전화하였는데, 당시 이현일은 ‘아니, 지금 저기 그 해제, 해제 요구 지금 의결됐잖아.’, ‘그 지금 아직 그 방첩사 애들은 아직 뭐 체포하러 출발 안 한 거 같거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체포를 하겠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박창균이 ‘계엄이 끝났는데 뭐로 체포해?’라고 응하였으며, 이현일이 ‘그러니까 우리도 판단 잘 해야 될 거 같아’, ‘개네들이 출발하면 우리 쪽에 연락해 가지고, 한다고는 했는데 그 상황 판단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라 말하였다.

한편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 정일현은 01:09경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이 대기 중인 위치(현대오일뱅크주유소)를 설명해 주었는데, 이후 01:15경 구민회로부터 ‘대기명령이 떨어졌다. 안 만나도 될 것 같다.’, ‘상황이 해제됐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일현은 01:16경 영등포경찰서 강력계장 이치수에게 전화하여 위 구민회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하였고, 01:23경 박창균과 통화하며 박창균에게 ‘방

접대하고 여기서 접선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대기하라고 했다고, 갑자기'라며 구민회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후 이치수 또한 01:30경 박창균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알렸고, 이에 박창균은 '제가 혹시 방첩대 연락 오면 연락 달라고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응하면 안 되니까'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정일현 및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서 대기하던 영등포경 찰서 소속 형사들 약 60여 명은 계속 대기하였다.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 박창균은 01:33경 재차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이현일은 '박창균아, 그 아까 인력들, 혹시 군에서 연락 와가지고 뭐 한 거 있어?', '연락 오면 가급적이면 협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이제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의결까지 된 이후에 어, 뭔가 그 조치를 하는 거는 사실 우리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시간을 끌어',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도 다, 그러니까 개네들도 내가 볼 때는 약간 눈치 본 것 같 아, 그 새끼들도', '야, 끝났어, 개네들도'라고 말하였다. 박창균은 재차 01:49경 이현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현일은 '어, 그 방첩사에서 연락 와 가지고, 자기네 병력 철수한다고'라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을 공유하였다.

박창균은 2024. 12. 4. 03:03 공지방에 '갑작스런 상황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승차 대기해 주세요. 곧 공지 드리겠습니다.'라며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서 대기하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60여 명에게 승차 대기 지시를 하달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형사들은 해산하여 각자 차량으로 복귀한 후 귀가 또는 경찰서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이후 박창균은 2024. 12. 4. 11:58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박창균은 '선배, 저를 나락으로 떨어트리려고 하셨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이현일이 '왜?' 라고 말하자 '왜냐뇨,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시키시려고 했으면서', '하지 말라

고 했어야죠.’라고 말하였고, 재차 이현일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라고 말하자 이에 박창균은 ‘아니, 그런 데 하라고 했었잖아요. 뭐 본청 분위기 어때요?’라고 말하였으며, 이현일은 ‘조용하다. 야. 눈치 보고 있지’라고 답하였다.

4) 국회경비대

국회에서 2024. 12. 4. 01:03경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는 국회경비대 상황실을 통해 ‘군인들이 다 국회 경내 밖으로 나갔다.’는 무전을 보고받았고, 보통 때와 같이 각 문에 국회경비대 소속 야간 근무 인원을 1명씩 위치시켰는데, 해당 인원으로부터 ‘(군인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는 무전 보고를 받자, 01:41경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수방사 병력이 나갔다가 다시 국회 안쪽으로 들어온다는데, 다시 들어오는 거는 허가를 해 줘야 하는지 확인 부탁’이라는 무전을, 01:46경 ‘7문 쪽에서 군부대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무전을 각 보냈는데, 이에 최창복은 01:46경 ‘군 관련자들은 진입 조치하세요.’라고 지시하였다.

김영호는 이 법정에서 “저 당시에 계엄 해제가 되고 군인이 다 나갔다고 상황실에서 제가 무전으로 들었고 각 문에 한 명씩 보냈다,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됐으니 각 문에 한 명씩 가라고. 그런데 직원이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또 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봐라’ 그래서 최창복 계장한테 제가 ‘들어오려고 하니 판단을 서울경찰청에서 해서 나한테 줘라. 들여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내용이다. 들어오게 하라고는 했는데 사무처 직원들이 ‘다 끝났으니까 됐다.’라고 해서 실제 들어오지는 않고 끝난 걸로 알고 있다. 실제 군인들이 다시 들어왔는지는 모른다. 저는 계속 도정문에만 있었다. 당시 계엄해제요구가 의결된 사실은 알았는데 피고인 목현태가 제게 특정 국회의원이나,

특정 국회사무처 직원 등을 국회 안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직접 말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은 2024. 12. 4. 01:33경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 박창균과 통화하면서 ‘방첩사령부의 협조 요청에 협력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01:46경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로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상황이 종료돼서 저희는 철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현일은 01:49경 피고인 윤승영에게 메신저(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국장님 방첩사에서 병력 철수한다고 합니다. 지원요청 한 부분은 해제한다고 합니다. 영등포서에도 연락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윤승영은 ‘오케이’라고 답장하였다. 이현일은 01:49경 박창균에게 전화하여 ‘어, 그 방첩사에서 연락 와 가지고, 자기네 병력 철수한다고’라며 구민회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체포조 출동이 중단되었음)을 공유하였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 전창훈은 01:47경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당시 우종수는 ‘이거 확실해? 아직 TV 방송에는 국회에서 그걸 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께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 해제된 것 맞아? 확실해?’라고 되물었다. 전창훈은 01:51경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에게 전화하여 ‘파견 준비하라고 했던 부분은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현일은 2024. 12. 4. 11:58경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박창균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박창균은 ‘선배가 제게 이상한 거를 시켜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하지 말라고 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현일은 한편 2024. 12. 12. 23:11:56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 전창훈에게 언론

대응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들을 전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독] 경찰 특수본, 계엄 전 방첩사 국수본 연락 정황 포착’ 보도와 관련 국가수사본부의 입장입니다. 일부 틀린 사실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입장을 냅니다.

- 계엄 선포 전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가 연락한 사실이 없다.
-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투입되는 고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국수본은 기동대 배치여부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기동대와 국수본은 지휘관계가 서로 달라 관여할 수 없다.
- 다만 23:32경 방첩사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하여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하여 영등포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음
- 국수본과 방첩사는 지난 6월에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MOU상 합동수사본부는 2006년에 맺은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공조협정(경찰청 고시 제2006-3호) 제3조에 규정한 합동수사본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보범죄사건 특성상 필요한 때에는 상대기관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훈련 시 상호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계엄시 운용하는 합동본부수사와는 다른 것이다.

한편 전창훈은 2024. 12. 13. 14:01경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어윤빈으로부터 ‘현장 배치 형사들이 임무를 체포조로 인식했는지 실제 현장 또는 현장 도착 전 방첩사와 같이 어떤 역할, 대화, 논의가 있었는지 등 차장님께 문자 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았고, 이에 전창훈은 14:22경 경찰청 차장 이호영에게 국가수사본부, 영등포경찰서가 작성한 방첩사령부 체포 업무 지원 관련 문서 사진 5장을 전송하며 ‘국수본과 방첩사와 전화 통화 및 진행사항이며 영등포 형사들 진행사항은 신속히 파악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은 2024. 12. 16. 18:14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 전창훈에게 ‘19:30 채널A에서 방첩사 명단제공 관련 보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을 잘 반영해 달라고 하였는데 대응사항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전창훈은 같은 날 18:25경 ‘ㅇㅋ’라고 답신하였다.

6)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과천경찰서 경력 등은 12. 4. 02:00경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철

수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수원서부경찰서 경력 등은 12. 4. 02:11경 선거연수원에서 철수하였다.

결국 이들 경력들은 2024. 12. 3. 23:09경부터 2024. 12. 4. 02:00경까지 선관위 과천 청사 출입구를, 2024. 12. 3. 23:17경부터 2024. 12. 4. 02:11경까지 선거연수원 정문·후문 등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5. 사실관계 정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개략적인 사실관계를 인정·추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인식·공유한 내용

1) 대통령 피고인 윤석열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정부의 주요 관료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쉽게 하는데 반하여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에 대항하여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생각하였다. 점차 국회가 반국가세력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깊어져(피고인 윤석열은 대국민담화에서 국회가 내란을 저지르고 있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마음을 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 12. 1.경에는 그와 같은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이 위와 같은 결심을 하기 이전부터 ‘현재의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반국가세력이 되어 버렸다.’, ‘부정선거 등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등의 생각을 하면서 전 정보사령관 피고인 노상원 등과 이런 생각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노상원과 사이에 정보사령부의 정예 요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반국가세력이 부정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등으로 당선되어 반국가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들은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서버 내에 있는 전자정보 등을 강제로 압수·수색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체포·구금하여 심문하는 등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계획을 구상하면서 이를 진행할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 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노상원은 2024. 9~10.경 자신과 인연이 있는 정보사령부의 사령관 및 주요 지휘관 등에게 접근하여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하였다. 당시의 준비정도, 구체적 계획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용현은 당시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자연스럽게 ‘현재의 국회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실상 반국가세력에 다름 아니어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하게 되었는데, 과거의 비상계엄, 긴급조치 등의 예를 떠올리며 ‘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활동 및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공고한 후, ② 군을 국회에 보내어 회의를 봉쇄하고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국회의장 및 여당과 야당의 각 대표, 그리고 특정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여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계획을 구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1.경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선포문, 포고령 등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과거 사령관으로 있었던)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로 출동하여 국회 경내 등을 점거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가 본회의장 등이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하여 국회의원이나 국회 관계자들이 본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하며, 비상계엄 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방첩사령부가 국회의장 우원식,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등 정치인, 국회의원 및 주요 인사들을 포고령 위반 명목으로 체포·구금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 김용현은 이에 부수하여 자신이 그동안 피고인 노상원과 구상·계획하였던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부정선거 수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도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김용현이 세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받거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활동,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어기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체포하며,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등의 개략적인 사정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포고령이 발령되는 즉시 선제적으로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 등 특정인들을 체포하려고 하였던 계획, 피고인 노상원을 중심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이루어진 수사단이 구성되어 선관위 전산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고 하였던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받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준비과정

1) 피고인 김용현은 자신이 구상한 계획을 문서화시켜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에게도 자신이 구상한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

을 택하지 않았다. 이는 선불리 이야기했다가 계획이 외부에 노출될 염려가 있는데다가, 위 사령관들 모두 비상계엄을 통한 국회 장악 등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김용현은 위 사령관들에게 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여인형에게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상황 시 합동수사본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등을, 이진우에게는 ‘국회에 무슨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비상상황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을 암시하면서 각 사령부가 취해야 할 절차를 생각하고 점검해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시켰고, 곽종근에게는 직접적으로 ‘상황이 생기면 국회 등 몇몇 장소를 확보하라.’는 식으로 막연한 임무를 주어 준비를 하도록 만들었다.

2)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과 사이에 정식으로 ‘비상계엄이 발생할 것이고 그때 어떻게들 해야 한다.’는 식의 언급을 하거나 지시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와 같이 어떠한 비상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그때 각 사령부에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거나 막연하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각 사령관들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막연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구체적인 지시(‘비상상황 발생 시 국회 등 몇몇 장소를 확보하라’)를 받은 곽종근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군의 국회 봉쇄 등에 대해 어렴풋하게 예상하고 이를 걱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령관들에게도 자신의 우려를 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인형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비상상황 발생에 관한 암시는 물론 비상계엄 등에 대한 언급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김용현이 정치상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한탄하듯 하는 이야기 중 하나로 치부해 버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역시 국회에 비상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하였으나 비상계엄 등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은 바 없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인형과 이진우는 2024. 12. 3.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생활했고, 정해진 일정을 최대한 소화한 것으로 보이는 등 비상계엄 선포가 임박하여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비상계엄 선포가 그날 22:00로 예정되어 있다는 구체적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광종근은 2024. 12. 2. 밤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과 통화한데다가 2024. 12. 3.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헬기를 사령부에 전개시켜 놓으라.’는 지시를 받기까지 하여 어느 정도 비상계엄 선포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사령관들은 모두 ‘군인으로서 명령이 내려진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등 어떤 상황이 발생하여 군이 국회로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김용현은 준비과정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군이 투입되면 실제 국회에 도착하여 봉쇄를 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어 국회 봉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공백을 막을 필요가 있고(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김용현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절대 군을 출동시키지 말라’고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국회경비대를 맡고 있어 국회에 출동하는 군과 충돌이 벌어질 우려가 있으며, 집회나 시위 등을 평소에 다뤄본 경찰이 국회 밖에서 시민들을 잘 통제해 주어야 군의 국회 봉쇄가 더 원활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 전 급하게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와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을 만났고, 피고인 윤석열이 직접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게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말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에 군을 투

입할 예정'임을 알리고 '질서유지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다.

4)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노상원에게 따로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리며 미리 구상한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할 것을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다.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공고

1)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12. 3. 밤에 국무위원 일부를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누어주고, 비상계엄 선포 예정임을 알리면서 '지금 이게 국무회의 심의이고, 심의를 마쳤으니 발표하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자리를 떴다. 출석한 국무위원들은 위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23경 대국민담화를 시작하였고,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하면서 대국민담화를 마무리하였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국회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변하였는바, 이를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한다.'는 내용으로 그 자체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미리 준비한 포고령은 23:23경 공고되었다(본래 계획은 22:00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같은 시각에 포고령을 공고하려던 것이었으나,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위원들이 모여지는 것이 늦어져 애초 계획보다 20여분 뒤로 미뤄진 것으로 보이고, 포고령 공고는 국방부장관의 참모들이 그 내용의 적법성 등에 의문을 표시한데다가 시각을 23:00로 고쳐 다시 타이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

수, 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차단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 역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라.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조지호와 상의하여 22:47경 경찰기동대를 각 문에 배치하여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들의 외부에서 국회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였다(1차 출입통제). 이후 서울경찰청 간부들이 1차 출입통제의 적법성에 대해 재고 요청을 함에 따라 피고인 김봉식은 기동대에 지시하여 23:07경부터 23:35경까지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포고령이 공고되자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23:35경부터 다시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들의 외부에서 국회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였다(2차 출입통제).

국회경비대 대장인 피고인 목현태는 23:23경 국회경비대로 다시 출근하였는데, 출근하기 전부터 전화로 상황을 보고받아 서울경찰청의 지시대로 국회경비대 역시 국회 1차 출입통제를 돕도록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출입을 차단당한 국회의장 우원식이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일도 있었고,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접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는 국회 출입통제에 가담하는 것’에 관한 항의를 듣기도 하였다.

마. 군의 국회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1) 본래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바로 특전사 병력이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여 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하려는 계획을 구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광종근이 미리 헬기를 특전사령부로 전개시켜 놓지 않아 헬기가 특전사령부에 오는

데 시간이 걸렸고,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태운 헬기가 비행을 하다가 진입 승인을 받지 못하여 상공에서 대기하는 등의 사유로 위 병력은 23:49경에야 차례로 국회 운동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구상한 계획 및 광종근이 예상한 국회 봉쇄 계획에는 중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요일 밤 22:00경이 넘은 시간에 국회의사당 본관 안에 상당히 많은 국회 관계자들이 남아 야근 등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

위 707특수임무단 병력들 약 96명은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서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앞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대치를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옆으로 물러난 후, 약 19명가량이 본관 우측 233호실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진입하였고, 이들은 2, 3층을 헤매다가 본회의장으로 연결되는 복도 등에서 국회 관계자들의 저항에 부딪쳐 다시 4층으로, 다시 지하 1층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지하 1층 전원을 차단하였다. 이들은 그 무렵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자 철수 지시를 받고 국회 경내에서 철수하여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부대로 복귀하였다.

위 병력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몸싸움 외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총기로 겁을 주는 등의 행위는 사실상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부 병력이 자신들을 촬영하는 기자의 스마트폰을 빼앗고 해당 기자를 포박하려던 행위, 기자의 사다리를 빼앗은 행위 등은 있었다).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들은 국회 관계자들과 부딪치는 경우에는 거의 뒤로 물러나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총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아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 지리를 몰라 건물 안을 무작정 헤매고 다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제1공수특전여단은 위 707특수임무단 일부 병력이 막 국회의사당 본관 233호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갈 무렵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고, 광종근으로부터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모여 의결을 하려고 하니,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 이들 병력들은 국회 경내로 진입해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앞까지 갔으나 국회 관계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였고, 이후 일부 병력이 후문 쪽으로 가서 강제로 유리문을 뜯어내고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국회 관계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진입에 실패했다. 곧이어 비상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자 이들 역시 철수 지시를 받고 국회 경내에서 나와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부대로 복귀하였다.

3) 수도방위사령부 병력들은 비교적 국회 인근에 일찍 도착하였는데, 경찰의 출입통제와 많은 인파로 인해 대부분 국회 경내로 들어가지 못했고 2024. 12. 4. 00:24경 15명 정도가, 01:03경 23명 정도가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으나, 그 무렵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어 위 병력들은 철수 지시를 받고 국회 경내에서 나왔다. 출동한 병력들은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부대로 복귀하였다. 한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단 인원 중 10명이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갔으나 철수 지시를 받고 바로 나왔다.

바. 국회의원, 정치인, 주요인물 등 체포 시도

본래 방첩사는 비상계엄 상황에 매뉴얼에 따라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합동수사단장은 방첩수사단장인 김대우가 맡게 되어 있었다.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 후 김대우에게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등 14명을 잡아서 수방사 B1병커로 이송시키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 무렵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우원식, 한동

훈, 이재명 등 명단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대우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경찰에 경력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 병력 100명을 각 요청하였는데, 위와 같이 경력과 병력을 파견받아 팀을 꾸려 출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일단 방첩사 요원들을 복귀하는 순서대로 5명씩 조를 짜 차례로 임무대상자를 알려주고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다.

여인형, 김대우의 생각은 방첩사에서 100명의 경력을 받아 방첩사 요원과 함께 팀을 꾸릴 시간이 없으니, 방첩사 요원을 바로 국회 현장에 출동시켜 그곳에서 경찰 병력과 만나게 하여 팀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에서 방첩사 측은 (100명의 경력 지원 요청을 받았던) 경찰 측 업무담당자 이현일에게 다시 연락하여 ‘국회에 방첩사 체포조가 출동하니 5명의 경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현일은 5명의 요청을 위 100명 지원 요청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수사본부 소속 이현일은 앞서 100명의 경력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다시 위 5명의 경력 지원 요청을 받았다. 이현일은 위 2개의 요청을 차례로 피고인 윤승영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윤승영은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한 후 이현일에게 ‘경찰청장 승인을 받았으니 지원해 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이현일은 영등포경찰서 측으로부터 형사 5명의 명단을 받아 이를 방첩사 측에 전달하였다. 이후 방첩사 측이 추가로 5명의 지원을 더 요청하여 이현일은 추가로 5명의 명단을 더 전달하였다. 방첩사 체포조는 국회로 출동하면서 위 10명의 인원과 국회 인근 장소에서 만나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현장에 방첩사 체포조 요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고, 이들은 위 영등포경찰서 형사들을 만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첩사령부로 복귀하였다.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반출 시도 등

1)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정보사령부 소속 10여명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 사건 비상계엄 직후 청사 내부에 침입하여 서버실 등 청사를 확보하고, 서버실 등 내부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이들은 방첩사 요원이 도착하면 현장을 넘겨주고 떠날 예정이었다). 이후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귀뜸을 받은 경기 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의 지시로 과천경찰서장 문진영이 경력 약 13명과 함께 청사에 도착하여 정문을 경계하는 등 위 청사 확보를 도왔고, 특전사 제3공수특전여단 소속 병력 약 130명이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어 이들은 차례로 철수하였다.

한편 정보사령부 100여단에서는 김봉규, 정성욱과 약 36명의 정보사 소속 요원들이 12. 3. 저녁부터 모여 있었다. 이들은 12. 4. 아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가서 전산 담당 직원 등 30여명을 체포해 이송하고, 위 청사에 있는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어오는 임무를 부여받고 대기하였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어 다음 날 해산하였다.

2)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전사 제9공수특전여단 소속 병력 약 118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도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관악청사 경내를 점거하여 내부에서 경계를 서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자 철수하였다.

3)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귀뜸을 받은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의 지시로 수원서부경찰서장 김재광

은 경력 약 48명과 함께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특전사 제3공수특전여단 소속 병력 약 133명이 도착하였으나, 이미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어 철수 지시를 받았고, 위 경력과 병력은 이후 철수하였다.

4) 여론조사꽃

특전사 제9공수특전여단 소속 병력 57명은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여 일부 병력이 건물 앞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자 철수를 지시 받고 철수하였다.

㉒ 구체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비상계엄 사전 준비 과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1) 검사

가) 피고인 윤석열은 ‘2023. 10. 이전부터’ 피고인 김용현과,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노상원과 비상계엄을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은 2023. 10. 단행될 군사령관 인사(여인형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보임하는 등의 인사) 앞두고 수첩에 자필로 메모하였는데 (이하 위 수첩을 ‘이 사건 노상원 수첩’이라 한다), 이는 비상계엄 실행 전 준비계획과 비상 계엄 실행 후 조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나) 또한 피고인 노상원은 2024. 8.말경 내지 9.초경 피고인 김용현에게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유임’을 조언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문상호가 유임되자 2024. 9. 내지 10. 경 문상호, 정보사령부 소속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대령 및 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 대령에게 정보사 요원을 추천해 줄 것을 지시하는 등 2024. 10.경 이전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을 준비하였

다.

다) 피고인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2023.경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다. 또한 2024.경에 있었던 군 사령관들과의 모임은 단순히 격려나 시국에 대한 언급을 하는 자리였지,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3)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0.경 이전은 물론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까지 김용현 등 그 누구와도 이 사건 비상계엄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노상원 수첩은 2023. 10.경 이전부터 계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2024. 12. 5.경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노상원은 2024. 8. 말경 내지 9. 초경 피고인 김용현에게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유임을 조언하는 등 그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또한 피고인 노상원이 2024. 9. 내지 10.경 문상호, 정보사 소속 김봉규 및 정성욱에게 정보사 요원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대량탈북에 대비하여 미리 인원을 선발 및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이행한 것뿐이고,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초순경 피고인 김용현에게 군사경찰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것도 국방개혁

TF의 구성을 위한 것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 노상원이 이 사건 비상계엄 내지 그에 따른 구체적 행위를 모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노상원 수첩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노상원이 2023. 10.경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 전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상원 수첩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먼저, 검사는 ① 이 사건 노상원 수첩에 ‘여인형’, ‘박안수’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2023. 10.경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에서 여인형은 국군방첩사령관으로,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으로 각 보직된 점, ② ‘강은 차후’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강호필은 2023. 10.경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에서는 대장 진급을 하지 않았고 이후 2024. 4.경 대장으로 진급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상원 수첩은 2023. 10.경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를 앞두고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23. 11. 6. 여인형이 국군방첩사령관으로 보직됨과 동시에 곽종근, 이진우도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각 보직되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이 사건 노상원 수첩은 2024. 12. 15. 충남 서천군에 있는 피고인 노상원의 모친 주거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 노상원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2023. 10.경 이전부터 계획하고 그러한 계획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그리고 피고인 김용현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에게 전달하였다면, 위 수첩은 자신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1년 전부터 이를 준비하고 계획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수사기관에 발견하기 쉬운 위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노상원 수첩이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23년 즈음부터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김용현과,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노상원과 비상계엄을 논의하였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공소사실 부분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노상원이 문상호 유임을 조언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II.의 제3. 나.항(이하 이 부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따르면 ‘2024. 8. 말경 내지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상호의 유임을 조언하였다는 것인데, 그 시기와 장소,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 노상원과 피고인 김용현의 각 진술증거 밖에 없는데, 피고인 노상원은 자신이 문상호의 유임을 조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문상호를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문상호의 보직해임 및 징계 이야기가 나온 원인이 부하 장군과의 맞고소 사건 때문이었는데,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문상호에게 하급자 폭행,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오영대에게 ‘야, 그거는 신중해야 된다. 결과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 신중해라.’는 취지에서 지시한 것이다. 계엄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을 유임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의 의견을 듣거나 그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 노상원이 2024. 8. 말경 내지 9. 초경 피고인 김용현에게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유임을 조언하였다’는 취지의 검사 주장 및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군 지휘관들의 유인을 통한 비상계엄 준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Ⅱ.의 제2항(이하 이 부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과 관련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과 군 지휘관들의 발언 내용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각 모임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각 진술증거 밖에 없는데,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1) 2023. 12.경 대통령 관저 격려 만찬 부분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이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추가된 것인데, 이에는 ‘(피고인) 노상원 수첩 기재와 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노상원 수첩이 2023. 10.경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 전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상원 수첩이 그와 같은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만찬은 피고인 윤석열이 주관하여, 피고인 김용현(당시 경호처장),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가 참석하였는데, 참석자들의 각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위 만찬에 이 사건 비상계엄에 관한 언급 또는 이를 추정이라도 할 수 있는 언급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12.경 대통령 관저 격려 만찬 부분은 이 사건 비상계엄 내지 이 사건 내란 등 범행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공소사실 부분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24. 3. 말경 내지 4. 초경 삼청동 안가 모임 부분

위 모임은 피고인 윤석열이 주관하여, 신원식(당시 국방부장관), 조태용(당시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김용현(당시 경호처장), 여인형이 참석하였다. 위 모임에 대하여 ① 신원식

은 수사기관에서 “비상조치 비슷한 얘기는 2024. 3. 말인지 4. 초인지 저녁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시국에 관한 얘기를 사적인 식사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말하셨다. 그러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비상조치’라는 단어는 기억이 나고, ‘계엄’이라는 단어는 기억에 없다.”, “당시 대통령이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②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께서 일반적인 시국 걱정 정도 얘기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가끔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모임에서의 발언 등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하였으며, ③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님께서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어느 자리에서든 시국 걱정을 많이 하셨다. 신원식 장관이 들었다는 ‘군이 나서야 한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신원식이) 개인적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저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위 모임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신원식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고, 그마저도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다.”는 내용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모임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3) 2024. 4. 중순경 경호처장 공관 모임 및 2024. 5.경 강남구 소재 식당 모임 부분

(개) 위 경호처장 공관 모임은 피고인 김용현이 주관하여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가 참석하였었다. 위 모임에 대하여 ①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용현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노동계, 언론계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 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국이 어렵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②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 경호유관부대 겸 경호지원부대인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의 각 사령관을 대통령경호처장이 주기적으로 불러 격려식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이에 따라 진행된 모임이다', “그 자리 자체가 경호유관부서에 격려하는 자리였고 또 업무 협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가 나올 상황은 아니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당시 시국 상황 얘기는 없었고, 관계관 회의였기 때문에 경호처장 관저 이동지, 대통령실 이동에 따른 경계, 방호 관련 소요 등에 대한 조치 진행 상황 등을 식사하며 대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위 모임에서 피고인 김용현이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대화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곽종근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고, 그마저도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했다.’와 같이 피고인 김용현이 말한 구체적인 표현을 제대로 묘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김용현이 위와 같이 말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대화’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모임에서 피고인 김용현이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위 강남구 소재 식당 모임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가 참석하였는데, 위 모임에 대하여, ①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일상적인 대화, 인사 관련 대화, 시국 관련 대화, 주로 그런 류의 대화가 있었다. 여인형이 ‘피고인 윤석열이 계엄령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무릎을 꿇고 반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을, 전화인지 만나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분명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당시 곽종근에게 ‘첫째, 평시계엄은 안 된다. 둘째, 국무회의라는 통제장치가 있는데 계엄이 되겠느냐, 셋째, 잘 못하면 애들이 다 다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③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식사 당시 장군 진급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여인형으로부터) 무릎 꿇고 말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④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했던 여인형도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는 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명료하지 않다.”, “(위 저녁식사 모임 당시) 곽종근, 이진우에게 앞서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계엄을 반대했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위 모임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종종 말하는 비상계엄의 현실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곽종근과 여인형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고, 그마저도 곽종근은 ‘(여인형이 무릎을 꿇고 반대했다는 것은) 전화(로 들은 것)인지 (위 모임에서) 만나서 (직접 들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여인형도 군사법원에서는 ‘무릎을 꿇고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 말한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위 각 진술내용의 일부분으로 위 3명이 ‘비상계엄의 현실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2024. 5. 내지 6.경 삼청동 안가 모임 부분

위 모임은 피고인 윤석열이 주관하여, 피고인 김용현(당시 경호처장), 여인형이 참석하였다.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위 저녁식사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어는 좀 헛갈리나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이런 말씀을 하시며 긴급명령권, 재정명령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윤석열이 위 모임에서 ‘비상대권 및 비상조치’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2024. 6. 17.경 삼청동 안가 모임

위 모임은 피고인 윤석열이 주관하여, 피고인 김용현(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합동참모본부 차장 강호필이 참석하였다. 위 모임에 대한 피고인 김용현, 이진우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김용현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이 4명(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강호필)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 하는 장군’이라는 취지로 말한 이유는 당시 피고인 윤석열이 수도방위사령관인 이진우에 대한 칭찬이 집중되는 상황이어서 다른 3명의 장군들에 대하여도 언급했을 뿐이라는 것인데, 이를 두고 피고인 김용현이 ‘군을 통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반국가들, 종북세력 관련된 사항들 때문에 시국이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김용현이 군을 통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6) 2024. 8. 초순경 대통령 관저 모임 부분

위 모임은 여인형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정보사령부 간첩 혐의 사건’을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용현도 참석하였다. 위 모임에 대하여 ① 피고인 김용현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사법체계 하에서 어쩔 방법이 없으니 비상대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 중국인은 간첩죄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고, 전반적인 국가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한 우려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② 여인형도 이 법정에서 “정보사령부 간첩 혐의 사건 수사 경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간첩수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민노총, 경기동부연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윤석열이 관련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23. 12.경 대통령 관저 격려 만찬’ 부분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과 관련된 공소사실 부분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군 지휘관들의 구체적 준비 경과’에 대한 판단

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2, 3부 및 수사1부 인원 선발에 대한 판단

피고인 노상원이 2024. 9. 내지 10.경 문상호, 정보사 소속 김봉규 및 정성욱에게 정보사 요원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것, 2024. 11. 초경 피고인 김용군에게 군사경찰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것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노상원이 위와 같이 요청을 한 것을 들어 이 사건 비상계엄 내지 그에 따른 구체적 행위를 모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이 ① 2024. 11.초경 피고인 김용군에게 군사경찰 추천을 요청하면서 정확히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 잘하는’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 ② 2024. 11.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에서 문상호와 김봉규에게 정확히 ‘계엄 같은 상황’, ‘계엄이 선포되면’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해당 부분과 관련된 공소사실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24. 10. 1. 국군의 날 행사 후 대통령 관저 모임에 대한 판단

(1) 위 모임은 피고인 윤석열이 주관하여,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가 참석하였다. 위 모임에 대하여 ①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모임은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고생해서 장병들 대표해 몇 명 불러 격려하시는 자리였고, 무거운 자리는 아니었으며, 비상대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니었고, 저도 들은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②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그 시간은 식사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합쳐진 시간인데, 그 기억 속에서 그때 확보해야 할 장소 여러 가지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이런 내용들이 그때부터 제 기억 속에 자리하기 시작했다. 아마 그 시점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이 있다.”, “(피고인 윤석열이) 한동

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총으로 쏘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③ 이진우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정치인, 방송계, 노동계의 부정적 활동으로 인한 국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도중에 한마디씩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식은 있어도 쪽 정리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지는 않은 것 같다”,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1. 9. 더 술을 많이 드셔서 ‘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라고 하며 한동훈의 이름을 호명하였던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④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2024. 10. 1.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고 따라 대통령 관저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인, 방송계,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상대권 이야기를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했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일반적인 시국 관련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라 걱정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 모임 당시 곽종근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이진우는 ‘한동훈의 이름을 말한 것은 들은 적이 있으나, 이는 2024. 11.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여인형은 군사법원에서 진술함에 있어 ‘한동훈’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곽종근의 위 일부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 윤석열이 위 모임 당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내 앞으로 잡아오면 총으로 쏘서라도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삭

제한다.

그러나 위 모임의 참석자 중 피고인 김용현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 즉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는 이 법정 또는 군사법원에서 일치하여 ‘위 모임 당시 피고인 윤석열이 시국에 대한 불만 내지 국정 운영의 어려움 등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윤석열은 위 모임 전부터 비상대권 내지 비상조치의 필요성과 관련된 언급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로서는 위 모임 당시에도 정확히 ‘비상 대권’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적인 발언과 함께 적어도 비상대권의 행사를 암시하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2024. 11. 9. 국방부장관 공관 모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위 모임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모임 당시 비상계엄 선포 시 특전사, 수방사 예하 부대의 출동 준비태세를 점검하거나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등 각 사령부의 예하 부대의 출동 준비태세를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① 앞서 본 곽종근, 이진우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윤석열은 위 모임에서 ‘나라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 안 되는 게 난 참 우려스럽다.’,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 선거도 국민들이 다 믿지 못하게 제대로 투명하게 되지도 않는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 김용현조차 “당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특전사, 수방사 예하 부대가 어

떻게 출동하고 임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모임 당시) ‘비상계엄’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고, 기억도 없다. 다만 대비태세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각 부대별로 거기에 따라서 대비태세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은 있었다. 광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한 마디씩 해보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모임 당시) ‘비상사태’에 대한 어떤 얘기는 있었던 것 같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이 군부대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이 물었고, 이에 광종근, 이진우가 답변한 얘기가 있다. 어떤 걸 물어봤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광종근도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식사 당시 피고인 윤석열이 합류하여 시국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이 분명히 기억 속에 있다.”, “당시 (비상사태가 생기는 경우, 자신이 사령관으로 있는 특전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령부의 부대들의 출동 장소와 관련하여) ‘수방사가 국회로 간다.’, ‘선관위 여기에 방첩사가 온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그때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24. 11. 30. 국방부장관 공관 및 대통령 관저 보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위 보고는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형의 대통령 관심 사안에 대한 즉흥적인 보고였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비상계엄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용현은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여인형에게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하였음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은 대통령 관저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인형은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과의 대화에 대하여, 이 법정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김용현이 ‘계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지는 헌법상 권한 내에서 부여된 비상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나는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김용현조차도 대통령 관저에서의 대화에 대하여,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윤석열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저는 대통령님의 결정이나 결심에 존중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과 사명,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영토를 보전하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고뇌에 찬 결단이고 헌법상에 보장된, 그리고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적극 저는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비상계엄에 반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의 준비시기 및 목적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현 등과 ‘2023. 10.경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각 판단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국무회의 및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무회의 절차의 적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참석하기 전에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기도 했으며,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도 비상계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는 실제로 존재했고, 고도의 긴급성과 중대성 및 보안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며, 국무회의록은 국무회의 이후에 작성되는 것이므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지켜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이하 '헌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5호, 구 계엄법(2025. 7. 22. 법률 제209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 제5조 제1항].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헌법 제88조 제2항),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헌법 제88조 제3항),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정부조직법 제12조 제1항).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데(국무회의 규정 제6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과반수는 11명 이상이다. 국무회의의 '심의'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 안전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그에 관한 다양한 관점 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통지 절차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저녁 무렵 피고인 김용현과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을 만난 후 국무총리 한덕수,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과 국무위원이 아닌 국정원장 조태용을 대통령실로 소집했다. 한덕수는 같은 날 20:45경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은 나머지 국무위원 중 6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장관 조

규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에
게만 대통령실 수행실장 김정환과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를 통하여 전화연락의 방식으
로 대통령실로 올 것을 지시하였고, 국무위원 7인(교육부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유상임,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에게는 위와 같은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②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인정되는데
(헌법 제87조 제2항), 피고인 윤석열은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연락을 하였고, 나머지 국
무위원들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할 경우에 최소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는 점에 대
한 고지는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취
지로 지시하였을 뿐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피고인 윤석열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국무회의 소집 사유를 고지하지 않으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 절차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도 주장하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윤석열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 당시 국무 위원들에
게 단순히 국무회의 소집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는 사실
자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오영주는 2024. 12. 3. 22:16경 대통령실과 연결된 대접견실로 들어갔고, 피고인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같은 날 22:18:22경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자리를 이탈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22:18:10경 계엄 선포문 복사본을 국무총리 한덕수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등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배부했으나, 같은 날 22:18:22경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자리를 이탈했으며, 오영주와 조규홍 등은 위 계엄 선포문을 배부받지 못했다. 불과 12초의 시간 동안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문을 검토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문건을 배부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윤석열이나 피고인 김용현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필요성,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고도 볼 수도 없으며, 실제로 구두로라도 그러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최상목과 조태열은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문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송미령은 위 사건에서 '계엄 선포문 배포 시부터 피고인 윤석열이 접견실에서 나갈 때까지 시간이 너무 짧아 위 문건을 읽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인 윤석열이나 피고인 김용현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조규홍은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12. 3. 밤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짧은 시간에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의 취지는 짧게 설명을 하셨지만 계엄의 구체적 내용이라든지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 중요한 것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었고, 또 참석자들 간의 논의가 없었다. 또 형식적으로 봤을 때 통상 국무회의에서는 안건 상정, 그다음에 담당 장관의 제안 설명, 안건 심의, 안건 의결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제가 2년 좀 넘게 국무위원이었는데 국무회의에서는 일부 부처만 참석하는 경우는 없다. 장관이 부재중이거나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신 참석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논의에는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최상목은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서명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왜 모였는지 사실 몰랐다. 그런데 서명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이게 어떤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회의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계엄에 반대했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성격의 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여러 번 강하게 말했다.”, “제가 국회 나가서 이것은 처음도 끝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회의 형식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최상목의 증언에 의하면 최상목은 서명을 요청받기 전까지

는 국무위원들이 모인 이유가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없었던 사정을 뒷받침한다.

⑥ 조태열은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접건실을 나가려고 하는 데 직원 하나가 저쪽에서 종이 한두 장을 들고서 ‘회의 참석하신 것은 서명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들어오기에 저는 기본적으로 회의가 있었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반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거나 정당화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회의도 없는데 참석은 무슨 참석이냐.’ 그래서 저는 서명 못하겠다고 그랬고 최상목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함께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조태열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송미령은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는데 저는 저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한 2~3분 동안 대통령께서 오셔서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 무력하고 무능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머릿수 11명 채우기 위해서 불러가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됐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송미령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무회의 개최 시 의안 제출 절차 및 국무회의록 작성 절차 역시 준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

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1항, 제3항). 그런데 피고인 윤석열은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무위원 9명이 모였을 때 약 2분간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피고인 윤석열이나 피고인 김용현이 지금 현재 상황이 국무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거나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를 한다거나 회의의 안건이 무엇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일부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생각하고 있었으며, 당시 무슨 논의를 하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국무회의 전에 비상계엄 선포 심의라는 의안이 상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 윤석열은 긴급한 의안은 사전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무회의 규정은 긴급한 의안의 경우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게 배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무회의 심의사항의 의안 제출 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4항, 제5항). 의안 제출 절차도 없다면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긴급한 상황에서도 의안 제출 절차 자체가 생략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의정관을 국무회의의 간사로 두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

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배석자에게 송부한다(국무회의 규정 제10조, 제11조). 행정안전부 의정관 김한수는 이 법원 2025고합1172 사건에서 “저는 국무회의 간사로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했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제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김상춘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174회 전부에 저 또는 의정담당관이 참석했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록의 요약본을 저희가 작성을 하고 회의록 초안을 작성해서 각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게 송부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대통령실에 최종적으로 보내서 확인을 받고, 국정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보공개포털에 업로드를 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 저나 의정관실 직원들 모두는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이상민은 2024. 12. 4.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 후 오전에 출근하여 저를 불러 ‘간사로서 궁금한 것이 있을 텐데 어제 회의 관련해서 국무회의인지는 판단을 받아봐야겠다.’ 라고 말했고, 제가 ‘성원은 되었습니까?’라고 여쭙보니 ‘성원은 된 것 같다.’라고 답변하셨다. 저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제가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는데 참석자, 시간, 안건명만 회신 받고 안건 내용과 발언 요지는 받지 못했다. 제가 의정관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결과 당시 국무회의록은 아직까지 작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국무회의록이 이와 같이 작성되지 않은 사례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은 김한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거나 행정안전부 의정관 또는 의정담당관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 또한 김한수와 김상춘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

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실로부터 국무회의의 안건 내용과 국무위원들의 발언 요지를 회신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김한수와 김상춘에게 안건 내용 및 발언 요지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애초에 위 회의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발언했을 뿐 안건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했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나 그에 관한 국무위원들의 심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이나 피고인 김용현은 국무회의록의 존재 여부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추후에 작성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애초에 위 회의에서 충분한 안건 설명이나 논의가 존재하지 않아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 절차의 하자로 볼 수 있다.

나. 법원이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이므로 법원이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

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비상계엄의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상계엄 선포가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하 부분에서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률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대국민담화 생중계 방송으로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통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국회 통고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또한 국무위원들의 부서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엄선포 시 부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계엄 선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국회 통고 절차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구 계엄법 제4조 제1항).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회 통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계엄해제요구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국민담화가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공식적인 통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피고인 윤석열이 대국민담화를 한 것 외에 국회에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고한 사실은 없고, 대국민담화가 국회에의 통고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 제77조 제4항과 구 계엄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국회 통고 절차를 위반하였다.

나) 문서주의·부서제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헌법 제82조). 계엄 선포 역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국

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내부적 권력통제절차이다.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절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루어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 나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문 또는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부서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외교부장관 조태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2024. 12. 3. 22:44경 '국무위원들은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대해 항의하며 서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대접견실을 나갔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또한 같은 날 22:48경 서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뒤 대접견실에서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국무위원들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라도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하였으므로 헌법 제82조를 위반하였다.

다) 국무회의 심의 여부에 관한 판단

헌법과 구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피고인 윤석열 및 피고인 김용현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비상계엄 선포 시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의 미공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구 계엄법 제3조).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의 구체적인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소결

피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질적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고,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겁박했으며,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의결하고, 핵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당시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적법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며,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헌법 제77조 제2항, 구 계엄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데(헌법 제77조 제1항 및 구 계엄법 제2조 제2항), 이에 관하여는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일정 정도의 판단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판단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주관적 확신만 존재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피청구인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대통령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헌법 제 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

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사변’이란 국토를 침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봉기한 모든 형태의 무장반란집단의 폭동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헌법 제77조 제1항의 문언을 고려할 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침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말한다(헌법재판소 2025. 4. 4. 선 고 2024헌나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력

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윤석열의 임기가 개시된 후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인 및 그 직 무대행 1인, 감사원장 1인에 대하여 재발의를 포함하여 함께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그 중 5건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으나, 그중 3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기각결정을 선고한 상태였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는데,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과 여러 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2)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헌법 제53조).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

률안의 공포를 15일 동안 보류할 수 있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야 그 법률안을 법률로 확정시킬 수 있다(헌법 제53조 제1항 내지 제4항).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들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포를 보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있었으므로, 위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의 의결로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었을 뿐, 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4)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있다면 조사나 수사, 재판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이를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것은 아니

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범죄에 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일 뿐 형사재판 절차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적인 수단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5028 판결 등을 통해 이미 그 의혹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5) 비상계엄은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따라서 병력의 동원이 위기상황을 수습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력만으로 위기상황이 수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6)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계엄법 제2조 제2항). 즉,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

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국회 봉쇄 및 국회 활동 저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경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및 1차 출입통제 경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검사 주장의 요지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19:20경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을 만나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고 말했고,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47경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였다(이하 ‘1차 출입통제’라 한다).

(2)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 윤석열은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게 ‘경찰이 질서유지를 잘 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을 뿐 ‘국회를 봉쇄하라’거나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1차 출입통제는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증언) 및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진술(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 윤석열이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한 지시의 구체적인 표현은 ‘국회를 포함해서 몇 곳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다.’, ‘이따가 국회에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서유지를 잘 해 달라.’

는 것으로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 김봉식이 “피고인 윤석열이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고 말했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뿐만 아니라 다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한 피고인 김봉식의 증언을 살펴보다도 피고인 김봉식은 위와 같이 증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김봉식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윤석열이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질서유지 지시’에는 ‘국회 통제 지시’ 및 ‘국회 출입 차단 지시’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1차 출입통제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윤석열은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 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국회를 포함해서 몇 곳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다.’, ‘이따가 국회에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서유지를 잘 해 달라’고 말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A4 크기의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였는데, 해당 문건에는 '22:00 국회', 'MBC, 여론조사꽃' 등 비상계엄 이후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피고인 김용현이 ‘국회 외부 경비를 위해서 경

찰에게 부탁을 직접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날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김용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투입하는 병력만으로는 질서유지가 힘드니 국회 외곽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 인원을 배치하기로 해서 그날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고인 윤석열이 밝힌 계엄선포의 이유, 피고인 김용현이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을 일부러 만나 질서유지를 부탁한 동기와 경위, 문건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윤석열이 말한 ‘국회에서의 질서유지’란 ‘국회에 출동하는 계엄군을 도우라’는 의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만일 피고인 윤석열의 ‘질서유지 지시’가 경찰의 통상적인 치안유지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이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을 불러 ‘질서유지 지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들이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을 만나 경찰을 국회에 배치하도록 한 이유는 결국 국회에 출동하는 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 역시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질서유지 지시를 받고 난 직후인 2024. 12. 3. 19:40경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유선으로 사무실에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 역시 사무실로 바로 복귀하였으며, 이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와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으로부터 국회 쪽 투입이 가능한 야간 기동대에 관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철야 집회 대비를 위한 기동대 4개(◀, ▲, ♣, ●기동대)」, 「당일 철야근무 예정인 여의도 타격대 1개(☆☆기동대, 국회 1, 2문 쪽 기본 배치)」 등 총 5개 기동대가 국회 부근에 근무하고, 그 외 「광화문 타격대」, 「용산 타격대」 등이 철야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0:25경에서 20:32경 사이에 주진우에게 야간 가용 경력 현황, 국회 출입문 수, 출입문의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

에 대해 질문하였고, 주진우를 통해서 당일 철야 근무 중인 광화문 타격대(鬪기동대)가 국회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주진우에게 ‘광화문 타격대를 승차 대기 시켜서 국회 쪽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후 주진우는 피고인 김봉식에게 국회 출입문과 관련해 ‘야간에 10개 정도 있지만, 실제로 여는 것은 한 3개 정도 됩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김봉식의 계엄 선포 전 경력 운용 현황 및 국회 출입문 현황 파악 경위를 살펴보면, 애초에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 국회 출입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경력 배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1:15경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광화문 타격대를 국회에 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용히 보내라’며 보안을 강조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1:49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하였고, 이후 주진우에게 ‘아마 (22:00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오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지연된 사실을 이야기했다.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마친 직후인 2024. 12. 3. 22:27경 주진우에게 전 화해서 기동대원들의 복장 및 대기 상황, 경력배치 현황 등을 확인한 다음,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경찰 기동대 배치를 지시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 김봉식의 경찰 기동대 국회 배치 경과를 보면,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바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 자체를 전면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실제로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현장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후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까지 국회의원, 국회 출입증 소지자, 기자 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국회 출입문은 10개인데, 그중 7개는 야간에는 문이 닫혀있고, 1, 2, 3문만 야간에 개방된다. 그리고 원래부터 야간에는 국회출입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이 제한된다.

게다가 피고인 김봉식은 이 법원 2025고합1172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 직후부터 경력을 이동하거나 국회를 전면 통제한 22:47경 사이에 ‘국회 주변에 다중의 사람들이 모인다. 그로 인해 안전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고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국회는 행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국회는 입법권, 예산심의권 및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권 등을 가진 권력기관이고,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에 대하여 비판 및 견제 역할을 하면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찰이 국회사무처와의 별도의 협의 없이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시민 전부에 대해 국회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봉식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국회 주변에 6개 기동대를 준비시켜놓은 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피고인 조지호와 상의하여 위 기동대들을 국회 각 문에 배치하고 국회 출입문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까지 동원해 모든 사람들이 외부에서 국회 내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조지호나 피고인 김봉식이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대통령이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시위대가 몰려간다거나 다수 군중에 의해 극도의 혼란이 초래되어 질서

유지가 필요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예방적으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 내부로의 출입을 일제히 전면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다. 오히려 불법적인 소요나 시위 사태 등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면 출입을 허용하는 문 1, 2곳을 정해두고 경력들이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 등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 원활하게 국회를 출입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장에서나 방송 등을 통해 질서유지 차원의 활동임을 알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출입이 폐쇄된 문에도 경력을 배치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문으로 유도하거나 안내해주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 조지호나 피고인 김봉식은 계엄 선포 예정임을 안 이후부터 실제 계엄이 선포되기까지 이를 고민하여 준비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 설령 급하게 상황이 전개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전면적으로 차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일단 차단하였으나 곧 허용되는 출입문을 안내해 줄 것이다’)을 설명하도록 경력들에게 전파하고, 지휘부에서 적절한 질서유지 방식을 의논하여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회는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므로, 비상계엄 선포 시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국회에 난입하거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김용현과 상의하여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질서유지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는 결국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어 계엄해제요구

의결 등을 포함한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국회 경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나 목적 하에 행하여지는 ‘질서유지’라는 상호 간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질서유지 지시에는 계엄군 업무 협조 및 그를 위한 국회 출입 차단 지시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1차 출입통제, 즉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조지호가 1차 출입통제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조지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조지호는 피고인 김봉식에게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이므로, 피고인 김봉식의 1차 출입통제, 차벽 설치, 경력 증원 등의 조치는 피고인 조지호와 무관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3. 22:45경 피고인 김봉식에게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 차단 지시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차벽 설치, 경력 증원 등의 행위 역시 피고인 조지호의 피고인 김봉식에 대한 출입 차단 지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른바 1차 출입통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조지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1차 출입통제가 이루어진 아래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조지호는 1차 출입 통제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조지호와 함께 관용 차량을 타고 삼청동 안가에서 복귀하면서 피고인

조지호에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경력 대비를 체크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조지호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하여 이를 동의 내지 승인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사무실에 복귀한 뒤 국회 쪽에 있는 기동대 수와 철야 근무하는 기동대 현황 등을 알아 보았고, 2024. 12. 3. 20:07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5개 기동대가 국회 부근에서 근무 중으로 가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피고인 김봉식의 위 보고에 대하여 ‘알겠다.’고 답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31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준비된 기동대를 배치하겠다.’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조지호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45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국회에 기동대 배치가 완료되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조지호는 '비상상황이 되었으니까 배치했던 국회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피고인 김봉식과 국회에 대한 '진공조치'를 취하고 유지하자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봉식은 같은 날 22:46경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으로부터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를 받은 최창복은 22:47경 내지 22:49경 서울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국회에 배치된 ●, ●, ●, ●, #@기동대대 및 국회 경비대 각 지휘관 등에게 ‘국회 외부에서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전원 차단하라. 국회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로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의 출입은 불가하다.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48경부터 같은 날 23:06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인원의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피고인 김봉식은 같은 날 22:50경 휴무 부대를 제외한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에 비상소집을 지시하고, 국회와 대통령실에 기동대 경력 증원 배치

를 지시하였다.

(2) 피고인 김봉식은 매 결정의 시기마다 피고인 조지호에게 계속하여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조지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경력 배치, 차단 지시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김봉식은 단순히 피고인 조지호에게 자신이 취하려는 조치를 사전에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을 통해 지시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자신이 취하려는 조치에 관한 보고에 대해 피고인 조지호의 의사가 달랐다면 피고인 김봉식은 그와 같은 경력 배치, 차단 지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피고인 조지호의 피고인 김봉식에 대한 지시 내역, 피고인 김봉식의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보고 내역과 실제 서울경찰청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의 경력 배치 및 국회 출입 차단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3. 22:45경 피고인 김봉식에게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비록 피고인 조지호가 그 주장대로 구체적인 경력 배치 현황이나 경력 증원 여부, 그리고 차벽 설치 여부 등을 직접적으로 피고인 김봉식에게 그때그때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여러 정황,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경력 배치 및 증원, 차벽 설치 등은 애초에 피고인 조지호가 피고인 김봉식에게 지시한 국회 출입 차단 지시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차 출입통제 경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이 2024. 12. 3. 23:37경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한 것(이하 ‘2차 출입통제’라 한다)은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 출입통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윤석열이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내린 질서유지 지시에는 ‘국회를 통제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1차 출입통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은 2024. 12. 3. 23:07경 서울경찰청 지휘망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허용된 것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경비부장 주진우, 수사부장 임경우가 헌법 제77조⁷⁵⁾의 조문을 피고인 김봉식에게 제시하면서 ‘국회의원들은 계엄해제요구의결을 할 헌법상 권한이 있으므로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대통령 담화문만 가지고 국회의원을 통제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으니 이분들을 들여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건의하였고, 위와 같은 서울경찰청 간부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이 이들을 납득시키거나 반박할 만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3. 23:15경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 후 피고

75)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인 윤석열은 2024. 12. 3. 23:17경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되었는지를 물어본 후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이 하달된 사실을 알려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 용현은 박안수로부터 피고인 윤석열이 위와 같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박안수에게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박안수는 2024. 12. 3. 23:22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설명한 후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에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의원 출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박안수로 하여금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이 하달된 사실을 알려주라고 지시하였고, 실제로 박안수는 피고인 윤석열 및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이행하면서 피고인 조지호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 윤석열 및 피고인 김용현의 박안수에 대한 포고령 하달 사실 전파 지시의 의도는 국회의원 출입의 차단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3. 23:22경 박안수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위 박안수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23:34경 임정주에게 ‘지금 포고령이 언론에 공포되었다. 이 포고령대로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으니 서울경찰청에 전화해서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해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임정주는 같은 날 23:35경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전화해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는 취지인 위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피고인 조지호 또한 같은 날 23:36경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에 따라 다시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의 하달 경과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조지호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다시 차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조지호는 자신은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지시를 따른 것이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를 따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으로, 이미 피고인 윤석열이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조지호에게 국회 통제를 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점, ②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3. 23:15경 피고인 윤석열에게 국회 통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박안수가 같은 날 23:22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 해 달라’고 말했으므로, 위와 같은 박안수와 피고인 조지호의 통화는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조지호가 나눈 국회 출입 차단의 법적 근거에 대한 대화의 연장선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인 조지호는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박안수와 별다른 접점이 없었고, 박안수는 피고인 김용현의 비화폰을 사용하여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으므로, 피고인 조지호로서는 자신이 통화를 하는 상대방이 박안수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을 것임에도, 자신이 통화하는 상대방이 실제 박안수인지 여부도 확인하지도 않고, 단순히 ‘박안수라고 주장하는 통화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조지호는 위와 같은 박안수의 지시가 피고인 윤석열이나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다시 전면 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조지호가 계엄 관련 법 규정들을 잘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법에 의거하여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조지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하였으므로, 포고령을 근거로 다시 출입을 통제할

경우에는 그러한 포고령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포고령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조지호는 계엄사령관 박안수로부터 ‘포고령이 발령되었으니, 그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김봉식 역시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를 받고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6)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3:15경부터 2024. 12. 4. 00:48경까지 피고인 조지호에게 6회 전화하여 ‘국회를 통제하라’,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조지호의 국회 전면 차단 지시와 전혀 무관하다면, 위와 같이 6차례나 전화통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국회를 통제하라거나, 월담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 조지호는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조지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에서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그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두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반복된 증인신문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 조지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데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조지호 증언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조지호가 이미 2024. 12. 3.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난 후에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당시 피고인 윤석열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차례 통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각 통화의 시점과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조지호

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로 국회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굳이 위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조지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 조지호가 허위로 위와 같이 증언할 이 유도 없는 점, ④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4. 새벽 무렵 피고인 윤석열이 전화하여 '조 청장 수고했어. 덕분에 빨리 끝났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조지호에게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전화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2차 출입통제 전에 포고령의 효력을 검토했다는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조지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조지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조지호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군으로부터 온 공식문서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이후 임정주라고 생각되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언론 기사에 나온 이 사건 포고령 출력본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조지호는 포고령을 가져온 부하직원과 포고령을 따라야 하는지를 논의하였고, 포고령 위반 시 처벌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2차 출입통제를 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조지호가 23:35경 국회 출입 전면 차단(2차 출입통제)을 지시

하기 전에 임정주와 논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개) 임정주는 이 법정에서 “2024. 12. 3. 23:26~23:27경 경찰청장실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 조지호가 ‘군에서 온 문서가 있는지 확인할 것’, ‘전국 기동대 출동 대기할 것’이라는 지시를 하고 비서실에서 대테러위기와장에게 군 관련 포고령 문서가 왔는지 확인 전화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 조지호가 집무실에서 비서실로 나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프린트한 포고령을 보면서 ‘지금 포고령이 언론에 공표되었다. 공식 문서는 안 왔지만 그런 의미로, 포고령이 언론에 공포된 자체로 포고령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포고령대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으니 서울경찰청에 전화해서 국회 모든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 조지호를 포함해 자신이나 경찰청 간부들이 포고령 공포 직후 포고령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조지호가 일방적으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임정주는 이 법원 2025고합1172 사건 재판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며, 실제로 임정주는 2024. 12. 3. 23:35경 오부명에게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임정주가 자신의 상관이었던 피고인 조지호에게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믿을 만하다.

(나) 피고인 조지호는 위와 같은 임정주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권범중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권범중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임정주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제가 목격한 상황과 대략 비슷한데, 다만 제 기억으로는 누군가 포고령 출력본을 가지고 가서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를 드렸고, 피고인 조지호가 그것을 보고받은 이후에 들고 나와서 ‘이게 효력이 있는 문서야?’ 이렇게 경비국 직원들에게

질문을 했다. 이에 경비국 직원들이 ‘지금 정식으로 저희가 송달받은 문서는 없고, 이게 포고령이 맞긴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조지호가 ‘이것이 효력이 있으니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라고 말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권범중은 검사의 재주신문에는 ‘경비국에서 보고를 한 것은 맞는데, 그 당시 경비국 직원이 형광펜을 칠한 포고령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포고령에 형광펜을 칠하고 있을 때 피고인 조지호가 집무실에서 나와서 포고령을 봤는지가 헷갈린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위와 같은 권범중의 증언을 이유로 임정주의 증언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김봉식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봉식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김봉식은 서울경찰청 참모들과 이 사건 포고령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생활안전차장 최현석이 ‘비상계엄 하에서 포고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상급청의 지시도 법률검토를 거친 적법한 명령이라고 이해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따라 국회 출입을 다시 차단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서울경찰청 참모들이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에 대하여 논의를 했고,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최현석이 ‘포고령이 준법률적 성격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른바 2차 출입통제를 명한 국회 차단 지시 경위에 관한 피고인 김봉식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 피고인 김봉식이 주장하는 포고령 효력 검토의 시기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이에 대하여 최현석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봉식이 ‘포고령을 가져와봐라’고 해서 제가 직원에게 ‘포고령을 출력해 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각이 2024. 12. 3. 23:49경이다. 따라서 포고령에 관하여 제가 피고인 김봉식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이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진우는 이 법정에서 “포고령이 발령된 후에 피고인 김봉식이 최창복에게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⁷⁶⁾ 그즈음 포고령이 나온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임경우, 오부명 그리고 제가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차단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최현석이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준법률적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 김봉식이 ‘야, 이건 본청장님 지시야’ 그러면서 손사래를 치시고 ‘그만 해라’ 얘기를 하시면서 무전기를 잡고 직접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무전⁷⁷⁾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최현석과 주진우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24. 12. 3. 23:37경 국회 출입 차단 지시가 내려가기 전이 아니라 이미 국회 출입 지시가 내려간 후에 서울경찰청 참모들이 포고령의 효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3:36경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전화를 받아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은 23:37경 서울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국회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다(2차 출입통제). 위와 같 이 1분 만에 피고인 김봉식이 포고령의 효력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서울경찰청 참모들의 논의는 참모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었을 뿐, 피고인 김봉식이 참모들에게 포고령의 효력이나 포고령을 근거

76) 2024. 12. 3. 23:37경에 있었던 두 번째 전면 차단 지시를 의미한다.

77) 이 무전 시각은 2024. 12. 3. 23:54경이다.

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각자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최현석이 피고인 김봉식에게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최현석은 이 법정에서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오부명은 이 법정에서 “최현석이 ‘포고령이 준법률적 성격이 있다.’고 발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만, 최현석이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참모 중에 누가 명쾌하게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는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임경우는 이 법정에서 “최현석이 ‘긴급 상황에서는 포고령도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다.’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주진우는 이 법정에서 “최현석이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라고도 진술했다가, 다시 “최현석이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준법률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말했고, 당시 그 말을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말로 이해했다. 최현석이 구체적으로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최현석이 피고인 김봉식에게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5) 국회 출입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

2차 출입통제시기에도 국회 출입을 한 국회의원들이 있으므로 당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피고인 윤석열 측). 출입통제 당시 통제 대상은 시위대(경찰 음어 ‘진군’)였을 뿐, 국회의원(경찰 음어 ‘산원’)은 아니었고, 국회의원들은 실제 출입이 가능했다. 실제로 국회의원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했으므로 국회의원 출입이 통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피고인 김용현 측).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로 인하여 실제 국회의원 및 (국회 근무자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금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를 받은 최창복은 2024. 12. 3. 22:47경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같은 날 23:07경 ‘국회의원의 출입은 허용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가, 같은 날 23:37경 다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와 국회경비대는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차단하였다. 즉 본래 야간에는 통상 국회경비대 인원 1명씩이 각 국회 출입문에 배치되는데, 이와 달리 각 국회 출입문을 기준으로 수비 영역을 배정받은 각 기동대가 국회 출입문마다 앞에 일정 수의 경력을 배치하고, 그 앞에 차벽을 설치하며, 일정 인원은 문 양 옆에 있는 담을 순찰하는 등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저지하였다.

(2)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간 국회의원 등을 경력이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장 정동실은 이 법정에서 ‘2차 국회 출입통제 이후 차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3문으로는 시민들이 통행을 할 수 없어 월담자가 생겼다. 그래서 저희 기동대원들 대부분을 국회 3문 양쪽 담장 안쪽에 배치를 했는데 국회의원 장경태(더불어민주당)와 성명 불상의 국회의원 등 2명의 국회의원이 월담을 하여 담장 안쪽에 있는 기동대원들이 고착(에워싸는 행동)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기동대장 이수진은 이 법정에서 ‘국회 3문 쪽에서 국회의원 이준석(개혁신당), 이주영 (개혁신당), 안상훈(국민의힘)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기동대대장 최호는 이 법정에서 ‘22:40~22:45경 국회 2문에 차벽 설치와 배치를 완료한 이후 처음에 국회 2문 쪽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국회의원 한 명이 와서 출입을 요구하였는데, 위 국회의원은 국회 출입을 하기 위해 다른 문 쪽에서부터 시도를 해왔던 것 같았다. 위 국회의원에게 국회 1문 쪽으로 가보라고 했다. 당시 국회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막연히 국회 1문 쪽으로 가면 출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실제 국회의원 김민석, 박수현, 박용갑, 안규백, 이광희, 정동영, 이주영, 이준석은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으로 인해 01:03경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5)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어 ‘월담해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85명이라고 밝혔는데, 국회의원들의 출입문을 통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했다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할 이유도 없다. 일부 피고인들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여 계엄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차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국회의원들의 의결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월담은 정상적이지 않은 출입 방법이므로 이를 두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자유로웠거나 국회의원들의 의결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6)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의원 김희정이 2024. 12. 4. 00:00경 휠체어를 타고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으로 들어갔고, 국회 진입이 자유로웠으므로, 국회 출입이 자유로웠다.’

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2024. 12. 3. 23:14경부터 23:37경까지 사이에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허용되어, 국회의원 김희정 역시 위 시간대에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1차, 2차 출입통제시기에 국회의원 김희정이 국회 경내로 출입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문에 배치된 경력들이 출입 차단 지시를 제대로 전파받지 못하였거나 출입 차단 조치를 느슨하게 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경비대 경무계장 송민주가 이 법정에서 ‘2024. 12. 3. 23:37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는 국회출입증이 있으면 국회 출입이 자유로웠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실제로 현장에서는 국회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송민주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송민주는 ‘2024. 12. 3. 23:40경부터 24:00경 사이에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 이지환을 출입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지환을 비롯하여 국회출입증을 가진 사람들은 위 시간대에 별도 통제를 받지 않고 국회로 들어왔으며, 2024. 12. 3. 24:00경부터는 국회의원도 출입이 금지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지환이 피고인 목현태에게 ‘경정문에 도착하였으니 출입을 시켜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건 시각은 2024. 12. 4. 00:03경이고, 피고인 목현태가 송민주에게 ‘이지환 비서관이 경정문으로 올 것이니 그를 찾아서 통과시켜줘라’는 지시를 한 시각은 같은 날 00:04경이며, 송민주가 피고인 목현태에게 ‘이지환을 지금 들여보냈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건 시각은 같은 날 00:05경이다. 위 각 통화시각은 통화녹음파일이 있어 그 구체적인 시각이 특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송민주가 국회 출입이 자유로웠다고 밝힌 시각은 객관적인 통화녹음 파일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 이지환은 2024. 12. 3. 23:47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하여 지금 국회 출입이 차단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고, 피고인 목현태가 ‘현재는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답하자, 자신을 출입시켜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목현태는 ‘수소충전소 근처 출입문(경정문)으로 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또한 경정문에 도착한 이지환은 2024. 12. 4. 00:03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경정문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통화하였는바, 위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 있어 위와 같이 말을 주고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 만일 국회 출입이 자유로웠다면 이지환이 피고인 목현태에게 출입을 시켜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 목현태 역시 현재 국회 출입이 차단 중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24. 12. 3. 23:37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는 국회출입증을 가진 사람의 출입이 자유로웠다는 송민주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이지환은 이 법정에서 ‘2024. 12. 3. 23:47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국회 출입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던 당시의 국회 상황’에 관하여 ‘서강대교 남단에서부터 국회를 정면에서 봤을 때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걸어갔는데, 걸어가는 과정에서 못 들어가시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을 목격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정문을 출입할 때의 상황에 관하여 “기동대 대원들이 경정문 앞에 있었고,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국회 사무처 직원 등 인파가 국회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항의하고 있었으며, 제가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 ‘의장실 이지환 비서관입니다. 들어가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문 안에 국회경비대로 보이는 사람이 저만 들여보내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지환의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앞서 살펴 본 통화 녹음 내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송민주의 ‘이지환이 들어올 당시에는 별다른 출입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지환이 스스로 출입증으로 들어온 것이다.’라는 진술은 위와 같은

이지환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경비대 행정과 소속 KP가 국회의원 백승아, 이춘석, 박수현, 안규백, 박범계를 출입시켰으므로, 국회의원의 출입이 차단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회의원 이춘석, 박수현, 안규백이 경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목현태가 KP에게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출입시켜라’라는 취지로 별도의 지시를 하였기 때문인데, 당시 피고인 목현태는 피고인 조지호나 피고인 김봉식과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KP에게만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 출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춘석, 박수현, 안규백, 박범계는 계엄해제요구 의결에도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KP를 제외한 다른 경찰들은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 통제되던 시기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허용해 준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 목현태가 KP를 제외한 다른 국회경비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출입시켜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P가 2024. 12. 4. 00:29경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용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하지 않았거나, 당시 국회의원의 출입이 차단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9)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은 출입통제 당시 통제 대상은 시위대(음어 ‘진군’)였을 뿐, 국회의원(음어 ‘산원’)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ㄱ)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은 2024. 12. 3. 22:47경 ‘국회 안에서 외부로 나오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국회 내로 진입하는 진군들은 전원 차단하세요.’라고 지시하였

으나, 22:49경 ‘다시 한 번 지시합니다. 현 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내부에서 외부로의 출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내부에서 입은 불가합니다. 전부 차단하세요.’라고 출입이 통제되는 대상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임을 명확하게 밝혀 지시하였다.

(나)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황태준은 이 법정에서 최창복이 사용한 ‘진군’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진군들은 시위대를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말인데, 이 경우에는 ‘일반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서울경찰청 *기동대장 조운제는 이 법정에서 “‘진군’은 여러 사람 또는 여러 시위대를 뜻하고, ‘진자’는 개별적인 사람 또는 시위대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위대와 업무를 하다 보니 시위대를 뜻하는 말이지만, 사람을 언급하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황태준과 조운제의 진술에 더하여 당시 국회경비대 2제대장 정성채가 최창복의 ‘진군 차단 지시’를 듣고 서울경찰청 무전망에 ‘국회 외곽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인원 전원 차단하겠다.’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창복의 ‘진군 차단 지시’를 ‘시위대로 그 대상을 한정해서 차단하는 지시’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황태준은 2024. 12. 3. 22:56경 영등포경찰서 행사망을 통해 ‘국회 정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덕유산 산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차단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무전을 하였다.

6)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의 주된 목적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은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시 출동한 경력의 숫자로는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국회 의결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에 따른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 주된 목적은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기 위한 것, 즉 국회의 무력화로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 피고인 윤석열은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해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중북 좌파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고, 또한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하여 사법업무 및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주요 예산을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였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중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윤석열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 역시 (비록 그러한 명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윤석열이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국회를 포함해서 몇 곳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다.’, ‘이따가 국회에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

서유지를 잘 해 달라.’고 말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당시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A4 용지 크기의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였는데, 해당 문건에는 '22:00 국회', 'MBC, 여론조사꽃' 등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이 각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당시 위 문건 내용이 계엄군의 출동 장소와 시간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듯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알려주었다. 그 렇다면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결국 ‘국회로 출동하는 계엄군을 지원해 달라’는 의도로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경찰의 질서유지 지시를 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밝힌 계엄선포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계엄군 투입의 목적은 국회 무력화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찰의 국회에서의 계엄군 지원 임무 역시 이러한 목표에 기여한다는 사실 역시 쉽게 알 수 있으며,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도 이러한 임무를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윤석열의 삼청동 안가에서의 지시에 따라 경찰 기동대 6기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 인근에 배치되었고,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과 울타리에 배치하였으며, 피고인 조지호와 상의 후 출입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일시에 차단하였다. 당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여서 국회 인근에 대규모의 군중이 밀집했다거나 극도의 혼란이 초래되는 등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근무자들의 선별적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 야간에는 일반인들의 제한 없는 출입은 통제되고(차량의 출입도 1 내지 3문으로만 가능하다)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출입증 소지자 등 국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그런데 피고인 김봉식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

자 1 내지 7문 등 모든 국회 출입문에 상당수의 기동대를 배치시키는 등 경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출입증 소지자 등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것이다.

(4)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국회 경내의 둘레가 방대함에도 6개 기동대만으로 국회를 외곽에서 봉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만일 위 피고인들이 국회를 봉쇄하여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방해하거나 막으려 했다면 더 많은 경력을 동원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가) 피고인 윤석열은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이따가 국회에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서유지를 잘 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안이 중요하니까 국회 담장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는 등 보안 유지도 강조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최창복과 주진우로부터 여의도 부근에 배치된 기동대가 5개라는 사실과 광화문 타격대 거점 근무 중인 1개 기동대(㉮기동대)가 국회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2024. 12. 3. 21:15경 주진우에게 ㉮기동대를 국회에 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용히 보내라’며 보안을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보안 유지 지시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 김봉식이 6개 기동대만 국회에 배치한 것은 계엄 선포 전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배치할 수 있는 경력을 최대한 배치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국회 출입문은 10개인데, 그중 야간에 개방되는 문은 3개에 불과하므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6개 기동대로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인 3개를 우선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김봉식은 이 법정에서 ‘완벽한 진공상태를 유지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경력 동원 대비라든지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사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고, 우선 있는 경력만 가지고 배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국회 전체를 봉쇄하는데 3,000명이 필요한데 320명이 경비대가 들어갔으면 이게 봉쇄의 목적이 아니라 질서유지의 목적임이 분명한 것이겠네요?’라는 피고인 윤석열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다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반드시 3,000명이 있어야만 (국회) 통제가 가능하다고 당시 판단했던 겁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좀 전에 변호사님 쪽의 신문에서 그렇게 산술적으로 물으시기에 제가 대답했던 것이고, 그 현장상황 그리고 시위 대상자들의 나이나 부류, 또 인적 자원이 아닌 물적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동대 경력은 얼마든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김봉식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봉식은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우선 가용 가능한 6개 기동대로 3개의 출입문을 막는 방법으로 국회를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서울경찰청 8기동단장 김완기는 이 법정에서 ‘약 320명의 경력으로 국회 출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단순 인력만으로는 속단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개 출입문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당시에 모인 시민들 자체가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출입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단순히 경력의 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6개 기동대를 동원해서 국회 각 출입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폭력 과격 시위가

아닌 이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 백현석은 이 법정에서 ‘국회에 최종적으로 출동한 경력 합계 약 1,963명과 소수의 병력으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국회 의결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저거는 장비 뭐 이런 것하고도 관련 있겠지만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출동 나간 사람들의 의지만 있었으면 저 인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경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통제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기동대 494명으로 국회 출입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폭도냐, 아니냐 그런 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고, 그냥 항의만 하고 구호만 외치면 사실 문만 잠그고 있어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폭도로 변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이 인원 가지고는 어렵도 없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ㄷ)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46경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후 같은 날 22:50경 휴무 부대를 제외한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에 비상소집을 지시하고, 국회와 대통령실에 기동대 경력 증원 배치를 지시하였다. 그 결과 2024. 12. 3. 22:48경부터 국회의원 등의 출입 차단을 완전히 해제하고 일부 기동대가 국회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2024. 12. 4. 01:45경까지 사이에, 경찰 기동대 총 29개(약 2,036명)가 국회 출입문 바깥쪽에 배치되었고, 지휘차 총 43대, 경찰버스 총 85대 등이 동원되어 국회 출입문 바깥쪽에 차벽 등이 설치되었다.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출동한 기동대 경력의 숫자는 당시 용산 대통령실 경비 경력을 제외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서울경찰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력이었다고 보인다.

(ㄹ)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3:17경에서 23:22경 사이 박안수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1호)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

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2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위 지시를 이행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4. 00:31경 박안수에게 다시 전화하여 ‘국회에 병력과 경력을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여인형은 같은 날 00:45경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박안수는 같은 날 00:5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지금 국회에 경력을 좀 집중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김용현 등의 경력 증원 요청에 비추어 보면, 단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회에 6개 기동대만을 배치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국회 봉쇄를 통한 국회 활동 저지, 마비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5) 특히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2024. 12. 3. 22:30경 이진우로부터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같은 날 23:30경부터 2024. 12. 4. 01:00경까지 6회에 걸쳐 이진우와 통화하면서 이진우로부터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 출입을 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 김봉식은 위와 같은 이진우의 요청에 따라 최창복에게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협조해주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최창복은 무전망을 통해 ‘계엄군 도착 시 국회 진입을 허용하라’는 취지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에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경찰이 외부에서 내부로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면서도 국회 내부로의 계엄군 출입을 허용한 것은 국회 차단의 주된 목적이 질서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 조지호는 ‘당시 피고인 김봉식이 위와 같이 계엄군의 출입을 협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조지호가 이미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계엄군 임무 수행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경찰의 질서유지 지시를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24. 12. 4. 00:00 무렵 경찰청 경비

과장 신종묵에게 ‘군이 오나 알아봐라’는 취지로 직접 지시한 바 있는 점, 같은 날 00:00경 개최된 국관회의에서 ‘경비는 여의도 상황에 집중할 것’을 지시한 점, 같은 날 00:20경 TV 뉴스에서 군인의 모습이 등장하자 ‘군이 이제야 왔네. 늦게 왔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던 점, TV를 통해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국회의사당으로 가 내부로 진입하거나 진입을 시도하면서 국회 관계자 등과 몸싸움을 하거나 대치하는 모습 등을 지켜보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조지호는 피고인 김봉식이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협조한다거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3:07경부터 23:35경까지 사이에는 국회의원, 국회출입증 소지자, 기자 등에 대해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므로, 자신들이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한 주된 목적이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이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것은 서울경찰청 참모들로부터 국회의원 출입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건의를 들어서였고,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포고령이라는 형식적인 근거를 갖추자마자 위 포고령의 효력이나 위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차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바로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일체 인원의 출입을 다시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반면 군인들의 출입은 허용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이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했던 사정을 두고,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한 주된 목적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7) 만일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이 국회 의결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 등에 한하여 신분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국회 구성과 기능 유지, 활동을 위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로서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 등이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경력을 통해 물리적인 실행행사를 하였다.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국회의원까지도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 버린 점, 1차 출입통제 시기와 2차 출입통제 시기 사이에는 국회의원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출입을 허용한 점, 2차 출입통제시기에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면서도 계엄군의 국회 출입은 허용한 점, 2차 출입통제 당시 KP가 일부 국회의원을 경정문을 통해 국회 경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한 점(이와 같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질서를 유지하는데 곤란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고인 목현태의 인식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목현태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출입 차단을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서울경찰청의 지침이 없었음에도 KP, 김진욱, 송민주를 통해 국회의원 백승아, 이춘석, 박수현, 안규백, 박범계, 국회사무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이양성, 국회사무처 인사과장 남궁철,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 이지환 등을 출입시켰고,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여 국회의 의결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목현태는 적어도 국회 출입 차단 조치가 국회의 의결을 방해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3. 22:50경 국회경비대 경비계장 오신탉과의 전화통화에서, 오신탉에게 5개 기동대가 국회 외곽 출입문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오신탉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차단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인 목현태가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 ‘국회를 보호하라는 목적이 아니고?’라 되묻자 오신탉은 ‘예, 예. 그래서 지금 밖에서부터 사무실에 있는데, CCTV 보면 영등포 170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막고 있습니다. 국회로 들어오는 걸’이라 답변하였으며, 이후 오신탉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국회경비대 2제대장 정성채에게 서울경찰청의 최초 지시 내용 및 국회 출입 차단 지시의 주체, 지시 시각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정성채는 피고인 목현태에게 서울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를 차단하라는 지시가 하달된 사실을 보고하였고, 영등포경찰서에서 기동대 차량으로 국회 각 출입문을 차단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목현태는 1차 출입통제 당시부터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이 국회를 보호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목현태는 위 전화통화 당시 정성채로부터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회 3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하니 출입문을 개방해줄 계획이다.’는 취지로 보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3. 22:55경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으로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박주현에게 ‘국회의장 우원식도 차단할 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박주현으로부터 ‘국회의장도 일단 차단 조치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목현태는 같은 날 22:58경 오신타에게 전화하여 ‘의장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일단은 차단을 하라는 이야기고’, ‘의장님도 잠시 대기를 시켜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하여 국회의장 우원식의 출입 차단을 지시하였고, 국회경비대 전원 소집을 지시하였다.

(3)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 이지환은 2024. 12. 3. 23:06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하여 ‘국회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목현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지환이 ‘국회는 의장님 관할 지역이다. 헌법상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계엄해제를 본회의 열어서 할 수 있다. 이거를 막으시는 행위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고인 목현태는 ‘저로서는 지금 어떻게 답변을 드릴 방법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이지환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목현태는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헌법상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국회의장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찰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는 2024. 12. 3. 23:15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들도 막는 거예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목현태는 ‘지침은 현재 안에 있는 사람은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차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민기는 ‘국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아니, 국회

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국회 들어오는 의원님들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막을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격앙된 어조로 항의하였다. 위와 같은 김민기의 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목현태는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이 국회사무처와 협의된 바도 없고,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3. 23:23경 국회의원의 출입 차단이 일시적으로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신타에게 ‘의원님들 중에 일부가 들어오신 분이 계시나?’, ‘사람을 들여보내고 있냐?’라고 물었고, 이에 오신타가 ‘지금 일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야, 들여보내면 안 된다 그랬잖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3. 23:57경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허명구와 전화를 하면서 ‘차단 지시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제일 큰 정문을 이제 막 겨우 닫았다. 그리고 나가는 2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막 들어오려고 계속 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안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허명구가 ‘지금 들어온 의원들은 한 얼마나 되냐?’, ‘반은 안 넘겠지?’라고 묻자 ‘보좌진하고 섞여 들어와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벌어져가지고’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에 들어온 국회의원의 숫자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통화 내용에 더하여 국회경비대 근무일지, 서울경찰청 지휘망, 오신타와 김영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목현태가 지휘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문을 닫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밖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안에서 막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7)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4. 00:02경 허명구와 통화를 하면서 ‘기동대가 일부 차

벽을 치고, 전체 문은 안에서 다 우리가 막았는데, 담이 너무 낮으니까 월담자들이 종종 생기고 있어서 그거 팀을 구성해서 지금 막아내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허명구는 ‘일단은 본회의장 안으로 안 들어오면 되니까. 청사 정문을 잘 막으세요. 필요하면 경력도 좀 보내 달라 그러고’라고 말했다. 위와 같은 통화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담장 안쪽에서 월담자를 막는 역할을 했고, 본회의장 진입을 막는 것을 주된 임무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4. 00:15경 오부명과 통화를 하면서 오부명으로부터 ‘안에 의원님 얼마나 들어와 계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확인이 안 됩니다. 보좌진들하고 한꺼번에 몰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월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지금 막아내긴 하는데 간간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이 헬기로 운동장에 내려서 본관 안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오부명은 ‘알았습니다. 놔두세요. 군에서 알아서 하게’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목현태는 같은 날 00:32경 및 00:36경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와 통화하면서 ‘국회 내부에 국회의원 숫자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통제하고 있는데, 담이 낮아서 월담을 자꾸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경력이 이쪽으로 오면 제가 받아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겠다.’, ‘일부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위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서도, 피고인 목현태는 자신의 국회 출입 차단 임무가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회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 목현태가 2024. 12. 4. 00:04경 국회경비대 경무계장 송민주에게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 이지환을 출입시키라고 지시하고, 송민주가 그 무렵 이지환을 국회 경내로 출입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목현태가 이지환을 출입시킨 것은 이지환이 피고인 목현태에게 항의하

면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자 이지환만 개별적으로 출입하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목현태의 국회 의결 방해에 관한 인식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피고인 목현태가 2024. 12. 4. 00:12경 국회경비대 제1제대장 김진욱에게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이양성을 4문으로 출입시키라고 지시한 사실과 같은 날 00:20경 김진욱에게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를 4문으로 출입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목현태가 박태형과 이양성의 출입 허용을 지시한 것은, 김진욱이 이양성과 김상수로부터 출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김상수, 이양성, 박태형이 국회 출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보고를 했기 때문이고, 피고인 목현태가 김진욱에게 위 3명 외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한 흔적은 찾을 수 없으며, 김진욱은 이양성과 박태형을 출입시키지 못 했고, 2024. 12. 4. 01:24경 김상수만 개별적으로 출입시켜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시를 근거로 피고인 목현태의 국회 의결 방해에 관한 인식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11) 피고인 목현태가 2024. 12. 4. 00:29경 이후 KP에게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출입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KP가 2024. 12. 4. 00:50경 경정문에서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이양성, 국회사무처 인사과장 남궁인철을 출입시킨 사실은 인정되고, 여기에 KP의 법정진술과 국회의원 이춘석, 박수현, 안규백이 2차 출입통제 시기에⁷⁸⁾ 경정문을 통해 국회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KP는 당시 경정문에서 국회의원 이춘석, 박수현, 안규백을 국회 경내로 출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목현태는 KP에게 ‘안면이 있는 보좌진을 출입시켜라.’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하나, KP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KP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며, KP는 ‘보좌진을

78) 국회의원안규백은 2024. 12. 4. 00:45경, 국회의원박수현은 2024. 12. 4. 01:00경, 국회의원이춘석은 2024. 12. 4. 01:24경 각 국회 경정문으로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출입시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목현태가 KP에게 ‘안면이 있는 보좌진을 출입시켜라.’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목현태의 국회 의결에 관한 방해 인식을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 목현태가 KP에게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출입시켜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게 된 경위는 KP가 국회의원 안규백의 보좌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은 국회의원의 공간인데 왜 막느냐?’라는 항의를 받고 나서 이를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달하자, 이에 대해 피고인 목현태가 KP에게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출입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이는 위와 같은 항의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피고인 목현태가 KP를 제외한 다른 국회 경비대원에게 국회의원 출입을 지시했다거나 KP를 제외한 다른 국회경비대원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허용해 준 사실은 발견하기 어렵다.

(나) 국회 출입문을 열고 닫는 업무는 국회경비대의 업무인바, 국회경비대는 2차 출입 통제 지시에 따라 2024. 12. 3. 23:40경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국회 출입문을 폐문하였고, 심지어 국회 1문은 국회 출입 차단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폐문을 하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경비대에서 이를 제압하고 강제로 닫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경비대의 국회 출입문 폐문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다(만약 피고인 목현태가 국회의원을 출입시키고자 하였다면 이러한 조치를 무리하게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회 출입문 폐문 이후 국회경비대는 피고인 목현태의 지시에 따라 국회 앞 쪽 출입문 안에서 월담자 수비 등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목현태가 KP에게 보좌진의 출입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목현태가 KP에게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출입을 지시한 사실 역시 인정

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KP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박태형, 이양성, 남궁인철을 출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KP는 경정문에 약 50여 명의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출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3명만 출입을 시켜주었다. 따라서 KP가 박태형, 이양성, 남궁인철을 출입시킨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 목현태의 국회 의결에 관한 방해 인식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라) 서울경찰청 %@기동대장 변영찬은 이 법정에서 “2024. 12. 4. 00:43경 국회 4문을 안에서 열어줘서 국회 4문으로 들어갔고, %@기동대는 피고인 목현태의 지휘를 받았다. 피고인 목현태를 국회 1문(정입구) 안쪽에서 만났고, 피고인 목현태가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1개 제대는 6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고, 나머지 2개 제대는 1문(정입구) 쪽에서 1시간 쯤 대기하다가, 도정 문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목현태는 KP에게 ‘안면 있는 국회의원은 출입시키라’는 지시를 한 무렵에도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지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수도권방위사령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이진우에게 국회 봉쇄 및 침투 계획을 지시하고, 이진우가 이를 준비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진우에게 이른바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를 부여하며 준비태세를 갖추라거나 2024. 12. 3. 21:46경 위 임무 실행이 임박하였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이진우가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 실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2024. 12. 3. 21:48경부터 병력 소집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김용현이 이진우에게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를 명시적·직접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1. 이진우와 수 회 통화하면서 ‘비상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태세를 잘 갖춰라’, ‘국회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지시 및 질문 등을 함으로써 사실상 ‘비상계엄 가능성’을 암시하고 ‘(명령 시)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를 부여하면서 이에 대비·준비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2024. 12. 3. 21:46경 이진우에게 직접적으로 위 임무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진우 역시 12. 1.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시적 지시를 받으면서 그 즉시 또는 차차 ‘비상계엄 가능성’ 및 ‘(명령 시)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이해한 후(다만 이진우는 곽종근, 여인형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 다.’는 생각과 기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4. 12. 3. 21:46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임무 수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2024. 12. 3. 21:48경부터 병력 소집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우리 군인들에게는 항상 명시된 과업이 있고 추정된 과업이 있다. 명시된 과업은 상급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임무가 부여되는 것을 말하고, 추정적 과업은 상급자로부터 받은 명시된 과업에서 본인이 추정적 과업을 염출하여 본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상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태세를 잘 갖춰라’는 지시를 명시된 과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정된 과업을 염출할 수 있다.”, “12. 1. 오후에 이진우와 4차례 약 30분

가까이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진우에게 일반적인 대비태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제가 곽종근, 여인형과 마찬가지로 이진우에게도 직접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그냥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잘 갖추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당시 피고인 김용현은 이진우에게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잘 갖추라’는 지시만을 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여 사실상 그에 대한 대비태세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시 및 질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2024. 12. 2. 11:3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모(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12. 2.자 메모’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김용현에게 보고하였다.

의명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최초 V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

1. 전 장병 TV시청 및 지휘관 정위치 지시

2.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및 영내 사이버방 인터넷망 폐쇄 지시

3. 출동 ○○○TF병력 대상.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4.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 (1경비대대) 의명 출동 준비

5. 사령부 포함 사여단급 부대 위병소 폐쇄 시행

6. 외부 언론들의 접촉시도 차단

장관님 ○○회의 직후

1. 수호신TF 출동 지시

2. 대테러대기부대 선 투입, 본관 배치

3. 후속대 1개대대(+) 투입, ○○협력단 지원하 구역 세밀 배치

4.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과 공조통화 실시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서 “제가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잘 갖추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과업에 대해서 이진우가 추정된 과업을 염출(捻出)해서 정리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용현이 2024. 12. 1. 경 ‘국회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적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는 이진우가 독자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진우는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 및 질문을 받으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비상계엄 가능성 및 이에 따라 ‘명령을 받을 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여 내부 봉쇄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 이진우는 2024. 12. 2. 여인형, 곽종근과 전화통화를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통령 국회해산권 있나요?’를, 다음 날인 2024. 12. 3. 07:01경 재차 ‘국회해산이 가능한가요?’를 검색해 보았다. 이진우는 이에 관하여 ‘비상계엄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생각도 안했다. 다만 장관님이 국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쳐 본 것에 불과하고, 다행히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여인형의 말대로 비상계엄 같은 것이 전혀 없구나 하고 이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는 상황은 이진우가 주장하는 대비 상황인 적의 침투·도발 상황인 통합방위사태나 일반적인 비상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고, 피고인 김용현이 이진우에게 국회에서의 일반적인 비상상황을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면 이진우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궁금해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진우가 위와 같은 내용을 검색하였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이 사건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을 상정하고 검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진우 스스로 인정하듯이 당시에는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군을 국회에 투입시켜야 할 정도의 북한 도발이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한 상태였다는 징후가 없었

다. 반면 이미 그 당시로부터 몇 개월 이전부터 계엄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나 관련 이야기들이 국회로부터 지적되거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이진우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진우는 직접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용’, ‘국회의 비협조로 인한 정부의 어려움’, ‘반국가단체, 중북세력 등의 위협’ 등을 들은 바도 있다.

(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개최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피고인 김용현은 이진우 등에게 ‘기 지시된 사항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따로 전화를 하여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이진우는 바로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였다.

(래) 국회에 대한 적의 도발, 테러 등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태세 상황만으로 인식하였다면 수도방위사령관인 이진우로서는 국회 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이나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서울특별시청 등 서울에 있는 국가 주요 기관 등에 대한 방어태세 등 역시 점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전에 경찰과의 연락 등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매) 이진우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주요지휘관 일부를 소집하거나 병력 출동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진우는 2024. 12. 3. 21:46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직후인 2024. 12. 3. 21:48경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수호신TF를 소집하고, 너는 사령부로 들어와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조성현 역시 대대장과 주요직위자들 및 수호신TF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이진우는 같은 날 21:53경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및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을 각 소집하였다. 이진우가 2024. 12. 3. 21:46경과 그 이전에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임무에 관한 지시를 받고 이를 구상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시나 설명을 듣지 않고 곧바로 수호신TF나 주요 직위자들을 곧바로 소집했을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다.

이진우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조성현 및 수호신TF, 김창학, 조백인을 소집한 것 외에는 다른 예하부대 주요지휘관이나 참모들을 소집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비상상황이었다면 주요지휘관이나 참모들을 소집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임에도 이진우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대기 명령’을 받고 하급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호신만 소집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진우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도 그다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키고 관련 사항들을 지시하였으며, 이후 본인도 실제 국회로 바로 출동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엄이 선포될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을 부하 등에게 확인하거나 군이 국회로 출동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이나 국방부에 문의하거나 검토하는 등의 행동을 일체 하지 않았다. 사전에 비상계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배) 12. 2.자 메모의 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위 메모에 기재된 사항 중 V(대통령)가 연설을 하고 전 장병이 TV로 이를 시청하는 상황, 전 장병으로부터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공포탄을 불출하는 조치, 외부 언론들의 접촉시도 차단 등은 국회 내부에서 벌어진 어떠한 긴급한 국가위기 사태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적의 침투·도발에 대비하여 무기가 아닌 쇠지렛대와 망치, 톱, 공포탄을 미리 준비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와 같은 쇠지렛대, 망치, 톱, 공포탄은 대테러부대가 지참하는 기본적인 장비로 보이지도 않는다.

12. 2.자 메모 중 ‘○○협력단’은 국회협력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는 이 법

정에서 “메모의 ‘○○협력단’은 국회협력단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조백인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진우는 23:15경 제게 ‘우리 수방사의 임무는 국회협력단의 도움을 받아서 현관에서 출입자를 통제, 출입자나 국회의원을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창학은 이 법원에서 “이진우는 00:02경 제게 ‘일단 양재응 국회협력단장한테 도움을 받아서 일단 출입구 하나라도 막아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 이진우는 비상계엄 이후 여러 차례 국회협력단장 양재응과 통화를 시도하였다.

그렇다면 위 메모 하단의 내용은 결국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부대를 먼저 투입하여 본관에 배치하고, 후속부대로 1개 대대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며, 국회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위 부대들을 국회 내에 세밀하게 배치한다.’는 것으로 국회 내부에 병력을 투입하여 봉쇄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 이진우는 조백인에게 2024. 12. 3. 21:53경 전화하여 ‘전투복을 입고 내 방으로 빨리 와라’고 지시했고, 조백인이 수도방위사령관실에 들어온 뒤 수도방위사령관 전속 부관 XN로 하여금 수도방위사령관실 안에 있는 TV를 켜서 YTN 채널을 나오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으며, XN는 TV 전원을 켜는데 나름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이진우는 별다른 말없이 약 10분간 TV를 보다가 2024. 12. 3. 22:23경 뉴스 속보로 나오는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시청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진우는 평소에 수도방위사령관실에서 TV를 시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날 따라 전속부관으로 하여금 시간이 걸리는데도 TV를 켜놓도록 한 점, ② 이진우는 조백인에게 ‘빨리 사령관실로 오라’는 취지로 지시해 놓고, 정작 조백인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은 채 TV를 계속 시청한 점, ③ 이진우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

보려는 노력을 했다거나 조백인에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12. 2.자 메모에도 대통령의 TV 대국민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진우는 피고인 윤석열이 TV 대국민담화 방식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e) 이진우는 비상계엄 가능성이나 이에 기한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김용현 장관과 2024. 12. 1. 경 수 회 통화하였는데, 장관께서 ‘국회에서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너희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통합방위사태 갑종사태를 염두에 두고 ‘만약에 국회에서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인지전(하이브리드전)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장병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국회에 출동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짜뉴스, 왜곡뉴스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담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이야기했더니 ‘머리 아프다, 적어서 작성해 보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명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서 그 메모를 적어 장관님께 보내드렸다. 당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메모를 작성해 보낸 것이 아니다.”, “12. 2. 저녁에 김용현 장관이 전화해서 ‘쓰레기 풍선’, ‘적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곽종근이 제게 전화하더니 ‘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냐?’라는 취지로 물어봐서, 제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여인형이 ‘대북상황 특별한 거 없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해서 곽종근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진우는 피고인 김용현의 대비태세 준비, 국회 비상상황 발생 시 대책 계획 수립 등 지시를 받고

적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정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국회 비상상황 발생 시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를 부여받았다.’, ‘위 비상상황은 비상계엄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각은 2024. 12. 3. 22:27경이고, 대국민담화를 시작한 시각은 같은 날 22:23경이다. 그런데 이진우는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22:24경 조성현에게 전화해 ‘전 간부를 소집하라’는 지시를 했다.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진우가 조성현에게 미리 전 간부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고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진우가 피고인 윤석열이 대국민담화 도중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거나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이진우가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로 입장한 시각은 2024. 12. 3. 22:31경이다. 이후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22:32경 개최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는데, 이진우에게 따로 전화하여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시각은 같은 날 22:33경이다. 그런데 이진우는 2024. 12. 3. 22:30경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50초 가량 통화하면서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12. 2.자 메모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진우는 이미 12. 3. 이전에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국회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비상상황 발생 시 수호신TF를 출동시켜 본관에 배치하고 후속대를 투입하여 국회협력단의 지원 하에 병력을 세밀하게 배치하는 계획’ 등을 구상해 피고인 김용현에게 보고하였던 상황이었다. 결국 (이진우의 주장과는 달리) 이진우는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기 이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국회로 출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미 예상하거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하여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봉식과 통화 당시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김봉식이 ‘국회 쪽으로 지금 경력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통제가 안 됩니다. 혹시 군도 옵니까?’라고 물어봤으며, 이에 대해 수궁하는 의미가 아니라 대화를 이어나가는 의미에서 ‘아, 예’라고 대답하였고, 다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통화가 끊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진우가 피고인 김봉식과 통화할 당시인 2024. 12. 3. 22:30경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로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인파가 국회에 몰려있지 않았고, 피고인 김봉식은 그러한 인파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6개 기동대 경력의 국회 배치 지시가 있었던 상황이고 야간에는 국회 출입문 10개 중 3개만 열려있어 피고인 김봉식으로서의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문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힘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봉식이 먼저 ‘사람이 너무 많아 통제가 안 된다.’는 언급을 하면서 군의 출동 여부를 물어보았다는 취지의 이진우의 위 법정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김봉식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22:30경 이진우와의 통화에서 이진우가 ‘계엄이 선포되어 수방사 군인들도 출동을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것 외에 다른 특별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수방사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이 협조해 달라’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김봉식이 제게 ‘군도 오느냐?’라고 이야기하기에 긍정의 취지가 아니라 말을 계속 이어가는 취지에서 ‘예’라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다른 전화를 받다가 전화가 끊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이진우 역시 자신의 본 의는 아니지만 수방사 병력이 출동하는 내용으로 대화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4) 12. 2.자 메모에는 ‘최초 대통령 대국민 연설 실시’, ‘전 장병 TV시청 및 지휘관 정 위치 지시’,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전 부대 장병 개인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사령부 포함 사여단급 위병소 폐쇄 시행’, ‘장관 ○○회의 직후 수호신 출동 지시, 대테러대기 부 대 선 투입, 본관 배치, ○○협력단 지원하 구역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 과 공조통화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 메모에 기재된 사항은 이 사건 비상계 업 선포가 된 이후 대부분 이행되었다.

이 사건 비상계업 선포는 피고인 윤석열이 대국민(특별)담화를 TV로 방영하는 방식으 로 시행되었고, 이진우는 이 사건 비상계업 선포 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 성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조백인을 소집하였으 며, 2024. 12. 3. 22:26경 52사단장 이우현, 같은 날 22:28경 56사단장 박진희에게 전화 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이진우는 이 사건 비상 계업 선포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수호신TF의 소집과 공포탄 준비를 지시하였고, 이 사건 비상계업 선포 이후에는 조성현에게 대테러특임부대인 2특임대대 및 35특임대대를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며,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조백인, 작전 처장 김문상 등에게는 ‘사령부 위병소 폐쇄 및 통제’, ‘전 장병 스마트폰 통합 보관’ 등을 지시했다. 또한 피고인 김용현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이진우에게 ‘기 지시된 사항의 이행’을 지시하였다. 이진우는 35특임대대 선발대를 지휘하던 김의규에게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양재응이 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라’라고 지시하였고, 2특임대대 선발대를 지휘하던 KV에게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을

막아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김창학에게는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게이트 하나 맡아서 못 들어오게 막아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또한 이진우는 2024. 12. 3. 22:58경부터 2024. 12. 4. 00:34경까지 사이에 국회협력단장 양재응에게 8번 전화하여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배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경찰청장 김봉식과도 여러 차례 통화하였다. 위와 같이 실제 이행된 조치들을 보면 위 메모는 이진우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명령 시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를 부여받은 상황에서 해당 임무를 구체화시켜 기재한 메모로 보인다.

(5)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이진우는, “피고인 김용현이 2024. 12. 3. 21:46경 이진우에게 한 지시는 ‘부대에서 대기하라’는 것이었고,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이진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김용현이 2024. 12. 3. 21:46경 이진우에게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 김용현과 이진우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김용현의 당시 지시는 ‘상황이 엄중하니 부대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었을 뿐 ‘부하들을 소집하라’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진우는 피고인 김용현과의 통화 직후 조성현에게 수호신의 소집을 지시하였다. 이는 피고인 김용현이 통화 당시 이진우에게 국회 봉쇄 계획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79) 제1항은 ‘지휘관은 영내거주

79) 제12조(영내대기의금지)

① 지휘관은 영내거주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局地挑發)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영내대기를 명하려는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 개시시점 등을 해당 군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의 영내대기를 금지하면서 이유 없는 영내대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진우가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대기 명령’을 받아 수호신을 소집했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소집된 2특임대대 및 35특임대대 그리고 조성현과 김창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실제 국회로 출동했다는 사정은 피고인 김용현이 이진우에게 미리 ‘국회 침투 및 봉쇄 계획을 준비·이행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6)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32경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위 회의에서 이진우에게 별달리 부가적인 임무를 주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는 그 자체로 이진우에게 사전에 국회 봉쇄 및 침투 임무가 하달되어 있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7) 피고인 김용현은 이진우에게, 2024. 12. 3. 22:32경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당시 ‘기존에 하달됐던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 외에 2024. 12. 3. 22:33경 9초간 통화하면서 ‘야, 지금 국회로 빨리 출동해라. 그리고 도착 즉시 보고해라’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다. 이진우는

정확한 임무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채 위와 같은 짧은 지시만으로 즉시 국회로 출동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지휘관이 어떤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동원할 병력의 숫자나 물자의 양도 미리 판단해야 한다. 이진우는 그 주장에 의하면 어떤 임무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위와 같은 짧은 지시만으로 직접 국회로 출동하고 대테러부대를 움직였다는 것인데, 그 주장은 국회의 정치적 민감성 및 지휘관의 통상적인 임무 수행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윤석열이 이진우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사실 등과 같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이진우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이를 들었다는 XN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윤석열과 이진우는 2024. 12. 3. 23:33경, 2024. 12. 4. 00:32경, 00:34경, 00:36경, 01:06경, 01:14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3:33경 이진우에게 현재 상황을 묻고 이진우로부터 ‘이동 중’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다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위 시간은 이진우가 국회 인근에 도착한 시간도 아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4. 00:32경, 00:34경, 00:36경 이진우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날 01:06경, 01:13경 이진우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2024. 12. 3. 23:33경 통화 내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진우는 2024. 12. 3. 23:33경 현장 상황을 묻는 피고인에게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X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이진우의 23:33경 통화에 관하여 “이동 중인 차량 안이었다. 대통령께서 이진우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제가 이를 이진우에게 건네 주었다. 당시 대통령께서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셨고, 이진우가 ‘다 막혀 있는데 총은 두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대는 국회 인근에 도착해서 국회를 1바퀴 돌았을 때로 기억하고, 시간대를 추측해보자면 23:30경에서 23:40경 정도일 것으로 추측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2024. 12. 3. 23:33경 이루어진 통화인지, 아니면 2024. 12. 4. 00:32경 이루어진 통화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대통령님께서 ‘거기 현장 상황이 어때요?’라고 물어보셨고, 이에 ‘지금 여기 사람이 너무 많고 경찰 경력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 막고 있어서 저희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한 거는 이걸 하기 위해 경찰 협조를 받아서 담 넘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때 ‘총도 내려 놓고’ 이런 얘기를 다 말씀드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군사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첫 번째 통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3:33경에는 이진우가 국회 인근에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XN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진우, XN와 함께 국회로 출동했던 수도방위사령관 운전수행부사관 QT는 이 법정에서 ‘국회 출동 시각은 23:00경이었고, 국회까지 30분 정도 소요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진우 역시 이 법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한 시각은 2024. 12. 3. 23:00경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은 이 법정에서 “이진우가 2024. 12. 3. 23:00경 제게 ‘먼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 임무를 줄 테니 2특임대와 35특임대에서 최초 출동하는 팀장들로 하여금 (나에게) 직접 전화하게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후 곧바로 이진우는 국회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2특임대대 선발대를 지휘하던 2특임대대 1지역대 1중대장 KV은 이 법정에서 “이진우가 2024. 12. 3. 23:46경 전화를 해서 2특임대대 선발대의 현 위치를 확인하여 ‘거의 다 왔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이진우가 ‘나는 먼저 지금 국회에 와있는데 사람이 많아서 출입이 쉽지가 않다.’, ‘아마 출입이 쉽지 않을 텐데 경찰한테 이야기하면 문을 열어줄 것이다.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차량으로 진입이 어려우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을만한 그런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 이동해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이진우는 2024. 12. 3. 23:30경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수방사 군인의 국회 출입을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는데,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위 통화에 대하여 “국회 앞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국회 내부로의 출입을 통제당해서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해 ‘제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 우리부대들 곧 있으면 대테러초동조치부대 들어오는데 못 들어갈 것 같다.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안내해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진우는 2024. 12. 3. 23:33경 국회 인근에 도착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진우는 일관되게 이 법정에서 ‘XN가 기억하는 내용대로 당시 피고인 윤석열과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정확한 통화 시각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보다 약 7개월

앞서 실시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의 증인신문에서는 ‘해당 전화통화가 피고인 윤석열과의 첫 번째 통화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담 넘어가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화가 첫 번째 통화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사실상 XN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② QT는 ‘국회에 도착했는데 경찰이 진입로를 막고 사람이 많아 국회 주위를 돌았다. 국회를 돌 때 피고인 윤석열과 이진우가 통화를 한 사실이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통화 당시 경위에 대한 XN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③ XN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XN가 위증의 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윤석열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윤석열과 이진우 사이의 첫 번째 통화에 관한 XN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다) 2024. 12. 4. 00:32경, 00:34경, 00:36경 통화 내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4. 00:32경부터 00:36경 사이에 이진우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에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윤석열은 이진우와 2024. 12. 4. 00:32:18~00:32:47경, 00:34:13~00:34:29경, 00:36:10~00:36:35경 각 통화하였는데, 위와 같이 비슷한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진우나 XN는 이를 ‘두 번째 통화’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위 세 번의 통화를 한 번의 통화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X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이진우의 두 번째 통화에 관하여 “YTN을 보고 있

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계속 들어가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대통령이 전화로 ‘아직도 못 들어갔어?’라고 상황을 물어 사령관께서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했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에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알았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후 사령관이 예하 지휘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끌어내야 한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XN가 진술하는 두 번째 통화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는 병력이 갔는데 그 앞에서 더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한 적이 있다.”, “제가 사실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 병력이 갔다는 건 보고받고 안 상태에서 보고 드린 게 아니라 24분(00:24)에 (수도경비사령부 제1경비단 35특임대대 선발대 15명이 국회 담을) 넘어갔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가지 않았을까’하고 상상하고 얘기한 것이었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끌어내라’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있다.”, “대통령님이 저한테 지시하는 게 아니라 혼잣말로 화내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셨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병력이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혼잣말 같이 막 짜증을 내시고 막 언성이 올라가셨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야, 너네 군인들이 민간인들 그걸 의식하면서 그렇게 안 되냐?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끌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기억이 난다.”, “조성현에게 ‘빨리 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 시각은 2024. 12. 4. 00:42경으로 추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진우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두 번째 통화 당시 피고인 윤

석열에게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기 되게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때 기억에 ‘너희가 4명이 가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올 수 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실제로 이진우는 2024. 12. 4. 00:42경 조성현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진우가 조성현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시점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 전에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위 (2)항에서 살펴본 XN의 법정진술은 (3)항에서 살펴본 이진우의 법정진술에 전체적으로 부합하고, 이진우가 조성현에게 지시한 내용 및 시점에도 부합하며,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당시 차량 안에 이진우, XN 등이 함께 있는 상황이어서 이진우가 전화로 피고인 윤석열과 통화를 나누는 내용을 XN가 충분히 들을 수 있던 상황으로 보인다(게다가 피고인 윤석열은 당시 화를 내듯 큰 소리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이 이진우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강제로 데리고 나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점, 당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요구 의결을 위해 모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이진우가 조성현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 이진우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세 번째 전화통화를 할 무렵부터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가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윤석열의 이진우에 대한 지시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로 봄이 타당하다.

(7) 한편, 피고인 윤석열은, 이진우가 피고인 윤석열과 세 번의 통화를 마친 후인 00:36경 이후 00:42경 조성현에게 전화를 하기 전인 2024. 12. 4. 00:37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전화를 한 사실에 비추어 XN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성현보다 이상현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경위에 관하여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조성현은 병력이 들어간다는데 깜깜무소식이고 근데 이상현도 저한테 부탁해서 ‘어떻게 들어 가냐?’ 해서 ‘담 넘어 들어가라’ 얘기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야, 그러면 개네도 거기 근처에 있으면 우리 애들 봤을까’하고 제가 우리 병력들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여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으로 이동 중인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이진우로서는,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병력은 국회의사당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상황이었으므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근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지휘관인 이상현과 통화를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인다. 진술 내용에서 밝힌 경위와 동기, 이유 등이 모두 자연스럽고 달리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2024. 12. 4. 01:06경 통화 내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4. 01:06경 이진우로부터 ‘지금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을 못합니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받고, 이에 ‘충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은 이진우와 2024. 12. 4. 00:32경, 00:34경, 00:36경 각 통화하였는데, 위와 같이 비슷한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진우나 XN는 이를 ‘두 번째 통화’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이진우나 XN는 피고인 윤석열과 이진우의 2024. 12. 4. 01:06경 통화를 ‘세 번째 통화’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진우 역시 이 법정에서 ‘통화 내역이 나오고 나서 확인해보니 2024. 12. 4. 01:06경 이루어진 통화가 (기준에) 세 번째 통화라고 기억했던 통화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XN는 이 법정에서 ‘세 번째 통화’에 관하여 "대통령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라며 질책하는 말투로 큰소리로 말하며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하니, 사령관이 ‘지금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을 못합니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대통령이 ‘충을 싸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XN가 진술한 ‘세 번째 통화’에 관하여 “제가 ‘사람이 많고 그래서 본청 앞에까지 갔지만 본청 안에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피고인 윤석열이 ‘야, 그건 문 부수고라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라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 윤석열이 ‘충을 싸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충’이라는 단어와 피고인 윤석열이 ‘발로 차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은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제가 ‘저희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여기 되게 위험하고 사람이 꽉 막혀있습니다.’라고 같은 얘기를 또 드렸는데, 피고인 윤석열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다. 그러면서 ‘발로 차고라도 부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Q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이진우 사이의 전화통화는 몇 차례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제가 기억나는 것은 두 번이다. 첫 번째 통화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통화 때에는 피고인 윤석열이 ‘총을 쏘서라도’라고 말한 것과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 (2)항에서 살펴 본 XN의 진술은 이진우 및 QT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부합하고, 그 진술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다. 특히 당시 차량 안에 이진우, XN 등이 함께 있는 상황이어서 이진우가 전화로 피고인 윤석열과 통화를 나누는 내용을 XN가 충분히 들을 수 있던 상황으로 보인다(게다가 피고인 윤석열은 당시 화를 내듯 큰 소리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XN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비록 이진우가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진우도 ‘총’이라는 단어를 피고인 윤석열이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점, ② 이진우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위 통화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면서 ‘발로 차고라도 부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흥분만 엄청나게 한 것 같아서 이분 얘기는 지금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었다. 저도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나고 블랙아웃이 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진우는 당시 상황 중 일부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던 이진우는 제3자적인 관점에서 통화를 들은 XN만큼 통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QT 역시 “피고인 윤석열이 ‘총을 쏘서라도’라는 말을 했

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N의 진술이 이진우의 진술보다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있고, 이진우의 진술에 비추어 XN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마) 2024. 12. 4. 01:13경 통화 내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4. 01:13경 이진우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 해라’,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가지고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XN는 이 법정에서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되고 5분 내에 ‘네 번째 통화’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내용은 대통령이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라는 취지였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가지고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위 통화 시점이 이진우가 수방사 병력들에게 공터로 가서 집결해 있으라는 지시를 한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대통령께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면 병력을 물린 이후였다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이후에 여의도진지 인근에 주차하고 있던 당시에 있었던 일로 기억한다는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2024. 12. 4. 01:13경 피고인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XN의 위 진술과 같은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위 통화가 있었는지 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제가 ‘세 번째 통화’ 때 문 부수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갑자기 블랙아웃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Q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이진우 사이의 전화통화는 몇 차례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제가 기억나는 것은 두 번이다. 첫 번째 통화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통화 때에는 피고인 윤석열이 ‘총을 쏘서라도’라고 말한 것과 ‘결의 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 (1)항과 같은 XN의 진술은 QT의 진술에도 부합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XN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도 없으므로, 믿을 만하다.

(5)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4. 01:16경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윤석열이 전투통제실에 입장하기 2분 전 XN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윤석열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결의가 통과된 상황임에도 2024. 12. 4. 01:06경 통화에서 이진우에게 화를 내며 국회 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바 있다.

(6) 피고인 윤석열은 “XN가 통화시점을 ‘이진우가 조성현에게 병력들에게 공터로 가라고 지시한 이후’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진우와 조성현이 통화를 한 시각은 2024. 12. 4. 01:17경이므로, 위와 같은 XN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XN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 XN는 이 법정에서 “위 통화 시점이 이진우가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수방사 병력들에게 공터로 가서 집결해 있으라는 지시를 한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대통령께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면 병력을 물린 이후였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통화가 수방사 병력들에게 집결해 있으라는 지시 이전인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을 전제로 병력 철수 지시 이후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XN는 군검찰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서는 사령관님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셔서 ‘병력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시니, 상대방이 ‘지금 빼면 시민이랑 접촉이 있으니 일단 국회 공터에 집합시켜 놓으려고 한다.’라고 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통화하신 후 경비단장인지에게 전화를 하셔서 ‘우리도 병력 집합시켜 놔라, 내가 가서 상황 설명하고 위로해 주겠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대상이 경비단장이냐 군사경찰단장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2024. 12. 4. 01:08경 광종군에게 전화를 했더니, 특전사도 이미 철수 지시를 특전사령관이 하고 있었다. (광종군이) ‘어떻게 해서 철수하라고 임무를 줬다.’라고 해서 제가 ‘그럼 우리도 따라가겠다. 같이 움직이겠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XN와 이진우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미 이진우와 광종군 사이의 01:08경 병력 철수에 관한 통화 내용을 먼저 들은 XN로서는 ‘대통령께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

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보이고, 이미 병력 철수에 관한 통화들이 진행중인 시점이어서 피고인 윤석열과 이진우의 통화가 수방사 병력들에 대한 철수 지시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오히려 피고인 윤석열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이 법원이 지켜본 피고인 윤석열의 말할 때의 특징, 화법, 톤, 내용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어떤 말을 할 때 짧고 간단하게 하기보다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섞어 가면서 말을 하고 실제 뜻하려는 바보다 다소 장황하고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나름의 아쉬움과 답답함, 당혹스러움 등 여러 감정이 겹친 피고인 윤석열이 이진우와 통화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의 말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피고인 윤석열의 전체적인 변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설령 그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본심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한다).

3)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출동의 목적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수도방위사령부 병력들이 국회에 출동한 이유는 질서유지 목적이었을 뿐 의결 등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국회로 출동한 주된 목적은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회 내부로 진입해 이 사건 포

고령의 내용(정치활동 금지 등)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 등 국회의원과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윤석열은 대국민담화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하여 사법업무 및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주요 예산을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였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중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위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의하면, ‘국회가 사법업무, 행정업무를 마비시키고 국가 주요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있어 이를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윤석열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목적에 따라 군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계엄해제요구 결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77조 제4항).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미리 군의 국회 출동을 준비시키고 질서유지 명목으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도록 조치해 두며, 비상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킴과 동시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포고령을 공고한 것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또 이러한 군의 행동에 나름의 명분을 만들어 두기 위함이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국회 통제는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게 되면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회의 속성과 그 기능의 작동원리상 이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면 국회의 활동은 정지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하게 한 목적은 결국 군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00:32경부터 00:36경 사이에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에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고, 2024. 12. 4. 01:06경 이진우에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까지 말하였으며, 같은 날 01:13경 이진우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윤석열의 이진우에 대한 지시는 그 자체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투입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4)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력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혼란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들은 국회로 출동했다. 당시 국회나 경찰에서 계엄군을 출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한 바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미리 지시된 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어 이진우에게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진우는 직접 국회로 출동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병력들의 출동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혼란한 상황을 우려하여 수도방위사령부 병

력들을 출동시켰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5)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들을 국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에 출동시켰다. 질서유지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비상계엄 선포 전 후 국회사무처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6) 이진우는 35특임대대 선발대를 지휘하던 김의규에게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양재응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라’라고 지시하였고, 2특임대대 선발대를 지휘하던 KV에게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을 막아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에게는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게이트 하나 맡아서 못 들어오게 막아라. 당신들은 경찰이니까, 특임 애들이랑 부딪히면 당신 체포한다고 하고 끌고 나가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진우는 부하들에게 국회의사당 본관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 등은 통과시키라거나 보호하라는 지시를 따로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국회의원 등을 구별하지 않은 채 모든 사람들의 국회의사당 본관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엄군인 수방사 병력 투입의 주된 목적이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내 회의장에 모이는 것을 막아 계엄해제요구 의결 등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7) 이진우는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2024. 12. 4. 00:42경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달했고, 다시 같은 날 00:56경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그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길을 터주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들을

은 조성현은 이미 국회 경내로 진입한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에게 전화하여 ‘이따가 국회의원들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가 하달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들의 출동 목적은 국회 의결 방해를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8)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들의 주된 임무는 국회 통제였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독립되고 대등한 기관이자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그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국회를, 국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통제할 목적’에서 계엄군을 출동시켰다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방법으로 국회를 제압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엿볼 수 있다.

다. 육군특수전사령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들의 계엄 선포 전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육군특수전사령부는 707특수임무단의 헬기 훈련을 준비했을 뿐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들을 투입해 국회의사당 본관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광종근은 2024. 12. 1. 16:53경부터 약 13분 30초, 이후 17:06경 재차 1분 18초가량 피고인 김용현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사, 여론조사꽃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광종근은 이 법정에서 “위 지시를 받은 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대 위치를 고려하여 제1공수특전여단을 국회, 더불어민주당사로, 제3공수특전여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제9공수특전여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와 여론조사꽃으로, 707특수임무단과 특수작전항공단을 국회로 각 투입할 계획을 마음속으로 구상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2) 광종근은 2024. 12. 1. 17:09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사흘 뒤(12. 4.) 예정되어 있는 3대대 제주도 훈련을 연기하라’, ‘다음 주 일주일간 전 부대 야외훈련을 중단하고 부대 내에서만 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광종근은 2024. 12. 2. 13:00경 육군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 한빛부대 환송식 행사에서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국제평화지원단장 김대성을 만나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등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정보가 있다. 여단별로 출동 가능한 대대가 몇 개냐. 대대장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으나 출동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어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외훈련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위와 같은 훈련 중단 조치 및 출동 준비태세 강조는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후 병력 출동을 엄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 광종근은 2024. 12. 2. 저녁 무렵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피고인 김용현의 비화폰을 통해 ‘준비되면 며칠 뒤에 보자’라는 말을 들었고, 재차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깜짝 놀랐지’, ‘아니야, 내일 보자’라는 말을 들었다. 또한 광종근은 2024. 12. 3. 13:55~14:09경

‘2025년 교육훈련 방향 토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로 ‘헬기를 특전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태세를 갖춰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다만 광종군은 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출동을 원하지 않았던 데다가, 헬기를 기지로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로 이동시켜 놓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김용현이 지시와 달리 헬기를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전개시켜 놓지는 않았다).

(4) 광종군은 2024. 12. 3. 10:55경 내지 11:26경 사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연락해 ‘오늘 불시에 헬기 출동 훈련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라, 오늘 헬기 출동 훈련은 21:30경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불시 훈련이니 작전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 헬기 12대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11:09경 내지 11:48경 사이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오늘 부대원들 비상소집 시켜서 불시 점검 하라’, ‘작전복 착용 등 훈련 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김현태와 김세운은 야간 헬기 훈련을 준비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와 그에 따른 광종군의 병력 출동 계획, 그리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실제 훈련을 준비하던 헬기와 707특수임무단 병력들이 출동준비가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곧바로 국회로 출동 한 점, 광종군이 2024. 12. 3. 22:20경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면서 김현태에게는 ‘야간 훈련을 정상 시행할 것이니 계속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야간 헬기 훈련 준비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바로 국회로 출동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것임이 명백하다.

(5) 광종군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예하 부대장들 및 참모들에게 ‘대비태세를 갖추 것’을 재차 강조하였고,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현 시간부로 여단 전체 인원 비상소집을 실시하라’, ‘지역대장급(소령) 이상만 비상소집하여 영내대기 시켜라’라고 지시하기

도 하였다. 위와 같은 곽종근의 지시 역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출동을 엄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 707특수임무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국회로 출동한 707특수임무단이 부여받은 임무는 ‘질서유지를 위한’ 국회 확보 임무였고, 707특수임무단이 국회 의결 방해 등 임무를 부여받거나 이를 실행한 사실이 없으며, 임무 수행 중 국회 관계자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어 내란죄에서의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이 지시하여 곽종근으로 하여금 707특수임무단을 출동시켜 국회 확보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국회 보호 등 질서유지 목적이 아니라 의결 등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봄이 상당하고, 임무 수행 과정에서 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들

이 저지른 행동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내란죄에서의 ‘폭동을 일으킨’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는 국회의사당 정문을 확보해서 외부로부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일체 차단하는 것이고, 달리 국회의사당 정문이 확보된 후 선별적으로 국회의원을 출입시키려 했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실제로 김현태는 헬기에 탑승해 국회로 이동하던 중인 2024. 12. 3. 23:46경 707특수임무단 각 지역대장들에게 ‘본회의장 막는 거 우선’, ‘진입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차단 막고’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메시지와 김현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는 것이 707특수임무단의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할 수 없는바, 국회의사당 자체를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결국 그와 같은 국회의사당 본관 확보의 목적은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엄해제요구 결의 등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들에게 부여한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의 목적과 같다.

(2) 김현태는 2024. 12. 3. 23:49경 707특수임무단 1지역대원들과 국회 경내 운동장에 헬기를 타고 도착한 이후, 국회의사당 후문 외문 안으로 진입하여 후문을 봉쇄하려 했다. 그런데 국회 경비인력들이 이들의 후문 내문 진입을 막으며 대치하자 국회 경비인력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이후 1지역대 병력들 일부만 남은 채 나머지 인원들은 2층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남아있던 1지역 병력들 역시 후문 외문 밖으로 나가 외문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아 시정하였다(이후 이들 역시 2층 정문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3) 1지역대 소속 최진호 등 4명은 2024. 12. 3. 23:50경 헬기에서 내려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으로 가기 위해 같은 지역대 소속 4명의 단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상황을 취재 중이던 기자 유지웅이 휴대전화기로 단원들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23:54경 위 기자에게 함께 다가가 에워싼 뒤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위 기사를 강제로 건물 외벽 쪽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케이 블타이로 포박을 시도하는 등 위 기사를 붙잡고 있다가 위 기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한 다음 00:02경 풀어주었다.

(4) 김현태와 1지역대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에서 나와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으로 이동하는 상황은 방송용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으로 모두 촬영되었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앞에는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등 수 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있었고, 다가오는 이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김현태 등은 정문 안으로 진입하여 정문을 봉쇄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문 앞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1지역대원들은 몸싸움을 벌였으나 정문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김현태는 뒤이어 도착한 3, 7, 9지역대원들과 함께 재차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으로 진입하여 정문을 봉쇄하고자 하였고,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국회의사당 정문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진입할 수 없었다.

(5) 김현태와 9지역대원들은 국회의사당 2층 우측면으로 이동하여 2024. 12. 4. 00:32경

국회의사당 233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창을 망치와 소총 총구 부분으로 파손시킨 후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대원들이 주변에 있던 기자의 촬영용 사다리를 빼앗고, 내부 진입을 저지하려는 시민을 밀치기도 하였다.

(6) 김현태와 9지역대원들 일부는 깨진 유리창 틈을 통해 233호 안으로 들어갔고, 233호 안에서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복도에 몰려있던 사람들을 밀치기도 하였고, 정문 방향으로 가까이 가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과 대치 끝에 다시 233호 근처로 돌아가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갔다.

(7) 국회의사당 본관 3층으로 진입한 김현태 등 병력은 3층에서 본회의장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이동하는 방향에 본회의장이 있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장 진입 방향 복도에서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이 이들 병력의 진입을 몸으로 막았다. 이에 김현태 등 병력 역시 국회 관계자들을 몸으로 밀면서 본회의장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였으나 국회 관계자들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저항하자 더 이상 그곳으로 진입할 수 없어, 김현태와 일부 인원만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4층으로 올라갔다.

(8) 김현태 등 4층으로 올라간 병력은 광종근으로부터 전기를 끊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4. 12. 4. 00:59경 내지 01:00경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1층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김현태는 9지역대 소속 ZX에게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차단기를 찾아봐라’, ‘차단기를 내릴 수 없겠냐?’고 지시하였고, 이에 ZX은 01:07경 지하 1층 분전함에서 전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의 전기를 차단했다. 또한 김현태 등은 01:03경 국회의사당 본관과 국회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의 출입문을 케이블타이, 소방 호스로 묶는 방법으로 시정하려 하였는데, 당시 국회의사당 방호직원 김영완이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며 문 시정에 대해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9) 위와 같이 707특수임무단의 국회의사당 본관 확보 임무 수행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 및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유리창, 전기시설, 문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707특수임무단의 활동 과정에서 아무런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윤석열 및 피고인 김용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폭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 보호 등 질서유지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일으킨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10) 곽종근 등은 국회사무처 방호 인력들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들이 707특수임무단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저지하거나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정문을 장악하여 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의사당 본관 창문을 부수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국회 보호 등 질서유지 목적의 행위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제1공수특전여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국회로 출동한 제1공수특전여단이 부여받은 임무는 ‘질서유지를 위한’ 국회 확보 임무였고, 제1공수특전여단이 국회 의결 방해 등 임무를 부여받거나 이를 실행한 사실이 없으며, 임무 수행 중 국회 관계자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어 내란죄에서의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이 지시하여 광종근으로 하여금 제1공수특전여단을 출동시켜 국회 확보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국회 보호 등 질서유지 목적이 아니라 의결 등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봄이 상당하고, 임무 수행 과정에서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부대원들이 저지른 행동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내란죄에서의 ‘폭동을 일으킨’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이 국회 출동 이전에 광종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2개 대대를 국회로 출동시켜 1개 대대는 국회의사당 건물, 1개 대대는 의원회관 건물로 보내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봉쇄하라’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임무는 국회의원의 선별적 출입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었고, 국회의원을 건물 안에 남겨두고자 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임무에 대하여 이상현은 2024. 12. 4. 00:20경까지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사람들만 국회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같은 날 00:30경부터는 김형기에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건물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끄집어내는 것,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이다.

(2) 이상현은 2024. 12. 4. 00:30경 및 00:31경 제1공수특전여단 1대대장 김형기와 2대대장 반효민에게 각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가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같은 날 00:38경 김형기에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으며, 같은 날 00:40경 반효민에게도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상현은 같은 날 00:49경 반효민에게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문짝 부셔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투표들 못하도록’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군의 투입이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그 자체로 명백하다.

(3) 김형기와 *대대 병력 48명은 2024. 12. 3. 00:40경~00:50경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그곳에 모여 있던 국회 관계자, 기자 등에 의해 진입이 저지되었다.

(4) 김형기 등 *대대 병력은 반효민 등 2대대 병력과 합류하여 국회의사당 후문 본관에서 재차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을 시도하였다.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 외문(바깥쪽 유리문)은 잠겨있었는데, 김형기가 힘으로 유리문을 떼 내어 외문 안으로 *대대 병력 20명과 2대대 병력 18명이 들어갈 수 있었고, 내문 안쪽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소화기와 소화전을 뿌리면서 위 병력들의 진입을 저지하여 대치 상태가 지속되었다.

(5) 위와 같이 제1공수특전여단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 및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후문 바깥쪽 유리문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제1공수특전여단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아무런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윤석열 및 피고인 김용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폭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 보호 등 질서유지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일으킨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6) 김형기는 이상현의 ‘국회의원을 끄집어 내오라’는 지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 진입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안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는 등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았고, 위와 같은 이상현의 지시를 부하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김형기가 이상현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들의 임무 수행 행위가 국회 의결 방해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7) 이상현 역시 이 법정에서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1대대와 2대대 병력 38명이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들의 행위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계엄해제요구 의결 등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곽종근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4. 00:31경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또한 같은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의 진술은 통화내역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4. 00:31경 곽종근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

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한 사실과 피고인 김용현이 2024. 12. 4. 00:32~00:36경 광종근에게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 밖으로 이탈시켜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위와 같은 각 지시는 결국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의미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광종근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두 번이다. 2024. 12. 3. 23:36경과 2024. 12. 4. 00:31경이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3:36경 전화를 걸어 ‘헬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 ‘지금 사령관 위치가 어디냐?’라는 취지로 물었다.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4. 00:31경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 당시 말씀하실 때 제가 YTN 영상을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기억한다.”, “피고인 윤석열과 통화한 이후 그 통화와 비슷한 내용의 통화를 피고인 김용현과 했다.”,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2024. 12. 4. 00:35경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 밖으로 이탈시켜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광종근의 진술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지방법원에서 한 진술과도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광종근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피고인들이나 공동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진술을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3:36:00부터 59초간, 2024. 12. 4. 00:31:04부터 40초간 각 광종근과 통화를 하였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까지 광종근이

피고인 윤석열이 통화한 것은 위와 같이 단 두 번이고, 군 장성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작전 지시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곽종근은 피고인 윤석열이 각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기억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살펴 본 곽종근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육군특수전사령부를 담당하는 550방첩부대장 김영권은 이 법정에서 “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이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국회의 상황은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되기 30분 전 정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화면에 많이 있었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모이는 상황이었다. 대통령과 통화 당시 곽종근이 목소리 톤이나 외형적인 자세가 굉장히 굳어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당시 707특수임무단과 1여단이 국회의사당에 전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추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와 같은 김영권의 진술 역시 “피고인 윤석열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곽종근의 (1)항과 같은 진술은 믿을 만하다.

(4)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박정환은 이 법정에서 “곽종근이 상관과 통화할 때 ‘네, 문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명복창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박정환의 진술은, 비록 그가 기억하는 곽종근의 통화의 상대방이나 통화시기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고인 윤석열 및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곽종근의 진술에 부합한다.

(5) 곽종근은 2024. 12. 4. 00:31경 피고인 윤석열과 통화한 이후 같은 날 00:34경 이상현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준비하고 있으니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

을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이상현은 2024. 12. 4. 00:39경 김형기에게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애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셔 서라도 다 끄집어내’,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00:40경 제1공수특전여단 2대대장 반효민에게 전화하여 ‘하차해서 담 넘어가’, ‘그래서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애들이 이제 뭐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 부셔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광종근의 지시는 이상현을 거쳐 김형기와 반효민에게 하달되었는데, 위와 같이 하달된 지시의 내용은 광종근이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지시의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6) 김현태는 이 법정에서 “광종근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냐?’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했는데, 위와 같은 김현태의 진술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점을 광종근이 언급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라는 광종근의 진술에 부합한다.

(7)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4. 00:31:04~00:31:44경 광종근과 통화를 했고, 그 이후 같은날 00:32:18~00:32:47경, 00:34:13~00:34:29경, 00:36:10~00:36:35경 이진우와 각 통화하였다. 피고인 윤석열과 이진우 사이의 위 각 통화 중 피고인 윤석열이 이진우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에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이 이진우에게 2024. 12. 4. 00:32경부터 00:36경 사이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이 그 무렵 광종근에게도 유사한 취지의 지시를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8) 이진우는 2024. 12. 4. 00:32경부터 00:36경 사이에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0:42경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야, 안에 지금 들어갔다, 인원들 끌어내라’,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진우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조성현은 2024. 12. 4. 00:43경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이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단독으로도 제한되고, 그래서 육군특수전사령관님과 소통을 한 번 하시라’는 취지로 건의하였는데, 이에 이진우는 ‘특전사령관이 통화가 안 된다, 알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이진우는 00:54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곽종근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요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진입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00:56경 다시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그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길을 터주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들은 조성현은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에게 전화하여 ‘이따가 국회의원들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이진우와 곽종근 사이의 통화 내용과 이진우의 조성현에 대한 지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윤석열이 곽종근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9) 한편,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윤석열과 곽종근의 통화 이전에 이상현이 김형기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미 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은, 곽종근이 자신의 판단으로 이상현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여 놓고 마치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처럼 사실과 달리 진술한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윤석열과 곽종근은 00:31:04~00:31:44경 통화를 했는데, 그보다 앞서 이상현은 00:30:53~00:31:30경 김형기에게 전화로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00:31경 반효민에게 전화로 ‘의사당으로 가’,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4. 00:31경 곽종근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곽종근은 임무를 하달하면서 2024. 12. 3. 22:31경 김현태에게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확보하라’, ‘확보할 때 안에 있는 근무자들하고 있는 인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확보해라’라고 지시했고, 같은 날 22:33경 이상현에게 ‘1개 대대는 국회의사당, 1개 대대는 의원회관으로 보내서 건물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봉쇄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각 지시의 내용에 더하여 곽종근과 김현태, 이정환 등의 진술 및 김현태가 2024. 12. 3. 23:46경 ‘본회의장 막는거 우선’, ‘진입시도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곽종근의 국회 확보 또는 봉쇄 지시는 애초부터 국회의원을 제외한 사람들만 국회의사당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국회의사당 건물의 통제권을 군이 획득하는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위와 같은 곽종근의 지시에 대하여 이상현은 2024. 12. 4. 00:19경까지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국회에서 내보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이 부여한 임무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상현은 2024.

12. 4. 00:19경 반효민에게 ‘의원회관으로 가서 의원회관에 있는 민간인들을 전부 회관 밖으로 퇴장시킨다.’, ‘1대대는 국회의사당, 너희들은 거기’, ‘근데 진입하기 전에 지금 민간인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다 섞여 있어’, ‘국회 앞쪽에 있는 인원들은 그 건물에 있는 쪽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 임무야’, ‘거기 도착해서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세부적으로 먼저 도착해서 임무 알려줄게’라고 말했다.

(ㄷ) 이상현은 2024. 12. 4. 00:30경 및 00:31경 김형기와 반효민에게 각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이유에 관하여 ‘곽종근으로부터 같은 날 00:20경부터 00:30경 사이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 제가 국회에 도착했을 시점인 2024. 12. 4. 00:24 무렵에 곽종근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ㄹ) 곽종근은 ‘2024. 12. 4. 00:24 무렵에 이상현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상현이 같은 날 00:30경 및 00:31경 김형기와 반효민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이상현에게 최초 과업 지시를 ‘안에 있는 사람들, 근무자들,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의원들 이런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나서 확보해라’라고 했고, 이상현이 참모장 박정환과도 통화하면서 제 지시를 전달받아서 조치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곽종근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상현이 2024. 12. 4. 00:30경 및 00:31경 김형기, 반효민에게 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피고인 윤석열의 곽종근에 대한 2024. 12. 4. 00:31경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상현이 곽종근이 부여한 임무의 내용을 뒤늦게 제대로 파악하여 한 지시로 보인다. (ㅁ) 이상현이 2024. 12. 4. 00:30경 및 00:31경 김형기와 반효민에게 각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

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애초에 곽종근이 이상현에게 부여한 임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시 후에 피고인 윤석열의 곽종근에 대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상현의 지시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는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상현의 지시가 피고인 윤석열과 곽종근의 통화보다 먼저 있었다는 이유로 “2024. 12. 4. 00:31경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윤석열 가) 홍장원과의 2024. 12. 3. 20:22경 및 22:53경 각 통화 내용 등 부인 (1) 홍장원과의 2024. 12. 3. 20:22경 통화 내용 부인 피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2024. 12. 3. 20:22경 국정원 1차장 홍장원과 통화(이하 ‘홍장원과의 1차 통화’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는 단지 국정원장 조태용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전화를 한 것이고, 당시 ‘별 일 없죠. 원장이 부재중이니 국정원을 잘 챙기세요. 이따가 전화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 당시 ‘내가 꼭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1~2 시간 후에 전화할 테니까 전화기를 잘 들고 잘 대기하세요.’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홍장원과의 2024. 12. 3. 22:53경 통화 내용 부인 피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2024. 12. 3. 22:53경 홍장원과 통화(이하 ‘홍장원과의 2차 통화’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는 단지 앞서 홍장원과의 1차 통화에서 ‘전화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던 것이 생각이나 자신의 전화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하고 격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한 것이고, 당시 ‘국정원이 방첩사를 도와 간첩 잡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처럼 ‘봤지? 비상 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하는 등 ‘정치인 등 체포·검거하는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여인형이 22:58경 내지 23:06경 홍장원에게 소재파악을 요청한 사실 부인

여인형은 2024. 12. 3. 22:58경, 23:06경 홍장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홍장원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체포 대상자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한 홍장원의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도 없다.

나) 방첩수사단 수사관들의 ‘체포’ 임무 부인 등

방첩사령부 산하 방첩수사단의 단장 김대우, 수사조정과장 구민회 등 방첩수사단에서 임무를 지시한 사람과 지시받은 사람 그 누구도 자신들의 임무를 ‘체포’로 인식하지 않았다. 즉, 국회 인근으로 출동한 방첩수사단 소속 신동걸 소령, 최진욱 소령, 석기진 소령 등 및 수사관들(이하 ‘방첩사 체포조’라 한다)의 임무는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체포된 사람들을 ‘인계’받는 것에 불과했다.

다)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의 ‘체포’ 관련 임무 부인

국회 인근으로 출동해있던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 정일현 경감 등 형사 10여명(이하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방첩사 체포조를 ‘인솔하고 지원’하는 임무만 부여받았을 뿐, 정치인들을 직접 ‘체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

라) 서울경찰청에서 작성된 수사관 100여명 명단의 방첩사 체포조와의 관련성 부인

서울경찰청에서 작성된 수사관 100여명 명단(이하 이 부분에서 ‘서울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이라 한다)은 경찰 자체의 매뉴얼에 따라 작성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이 들은 방첩사 체포조와 관련이 없다.

마) 구체적 폭동행위로 평가할 만한 사실관계 부인

(1) 방첩사 체포조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이 ‘국회로 출동하였다.’는 것뿐이어서 폭동으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다. 즉,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는 합동체포조의 일원이라는 경찰이나 군사경찰을 만난 적이 없고, 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대기하였을 뿐이며, 단 1명도 국회 경내로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체포하여 이송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과 관련하여, 이들은 방첩사 체포조와 합류한 사실도 없고, 수갑, 장구류 등을 휴대·착용하거나 준비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2) 피고인 조지호

가) 여인형의 경력 지원 요청 수락 사실 부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27경 여인형으로부터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정치인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가 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여인형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거나 즉시 들어주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지원해 주겠다.’와 같은 수락의 의미가 아니었다.

나) 윤승영에 대한 한동훈 체포조 인원 지원 등 지시 및 승인 사실 부인

2024. 12. 4. 00:00경 개최된 국관회의 직전인 2024. 12. 3. 23:59경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방첩사에서 합수부를 구성할 예정이니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라고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위 방첩사의 지원 요청에 대해 승인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보고받을 당시 특히 체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피고인 윤승영에게 ‘(액션, 즉 실행하지 말고) 준비만 하라’고 말함으로써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윤승영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조지호에게 ‘방첩사에서 국회 주변에서의 체포 활동 지원 인력 5명을 요청했고,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명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보고하자, 피고인 조지호가 ‘예. 보내주세요. 사복으로 입혀서 보내세요.’라고 말하여 지원 요청을 승인하고 이에 대해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믿을 수 없다.

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우선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한 사실 부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2024. 12. 4. 00:30경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3명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윤승영

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의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관련 주장

(1)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체포’ 관련 임무 부인

국회 인근에 출동했던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이 방첩사 체포조와 만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그들의 임무 및 역할은 국회 인근의 ‘안내 내지 인솔’에 불과하였을 뿐 ‘체포 활동을 함께 하거나 돕는 것’이 아니었다.

(2) 체포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점을 보고받은 사실 및 방첩사의 요청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부인

이현일은 구민회로부터 ‘체포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윤승영도 이현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조지호에게 ‘한동훈을 체포하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고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윤승영은 방첩사가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는 방첩사 체포조에 관해 경력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인력’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현일은 2024. 12. 3. 23:32경 및 23:52경 구민회와의 각 통화에서 구민회로부터 ‘체포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구민회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체포대상자(이재명, 한동훈)를 알려준 상대방은 이현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으나, 이는 추측에 근거한 것인 점, 구민회가 체포대상자를 말한 상대방이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이거나 다른 제3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 윤승영도 전창훈과 이현일 등 실무진으로부터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① 2024. 12. 4. 00:00경 개최 예정이던 국관회의 참석을 위해 피고인 윤승영의 사무실이 있는 경찰청 북관 7층에서 국관회의가 개최되는 본관으로 이동하던 중 2024. 12. 3. 23:48경 내지 23:50경 전창훈, 이현일이 있는 수사기획과 사무실 근처에서 전창훈, 이현일로부터 간략히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방첩사 소속 구민회가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서울경찰청에서 가능할 것 같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당시에는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 ② 그 후 경찰청 본관으로 이동하여 국관회의 개최를 기다리던 중 23:58경 이현일로부터 전화로 보고받은 내용도 ‘체포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구민회가

방첩사 체포조를 위해 경찰 5명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윤승영 또한 2024. 12. 3. 23:5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방첩사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조지호는 이 법정에 피고인 윤승영 등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한동훈 체포조’라는 취지로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신빙성이 없다.

나) 서울경찰청에서 작성된 수사관 100여명 명단 등 관련 주장

(1) 방첩사 체포조와의 관련성 부인

구민회가 요청한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는 계엄 선포 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것이었다. 서울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을 작성한 것도 향후 구성될 ‘합동수사본부’를 위한 사전 준비일 뿐이고, 당시 국회 인근에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와는 무관하다.

(2) 서울경찰청에 대한 명단 작성 지시 및 보고 사실 부인 등

(가) 피고인 윤승영은 2024. 12. 3. 23:5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방첩사가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지원을 요청하였다.’라고 보고하면서 ‘수사관 100명 등은 준비만 하면 될 것 같다.’고 건의하여 이를 승인받은 사실이 있을 뿐,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100여명의 명단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즉, 전창훈이 23:40경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에게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100명 및 차량 20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전창훈이 사전 준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 윤승영은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사후에라도 전창훈 등으로부터 ‘서울경찰청에 위와 같이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윤승영은 구민회 등 방첩사 측이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의 지원을 요청

한 것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윤석열은 방첩수사단 인원들이 방첩사 체포조의 임무를 ‘체포’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이하 이 부분에서 ‘공통주장 ①’이라 한다)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따르면 기관 간의 요청은 방첩사 내지 방첩수사단 측에서 먼저 경찰청 내지 국가수사본부측으로 정치인들의 위치 확인, 경력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① 주장과 관련하여 이른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의 구성원인 ‘방첩사 체포조’ 즉, 국회 인근으로 출동한 방첩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임무가 특정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것이었는지, 방첩수사단 인원들이 그러한 임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윤승영의 위 주장의 요지 중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의 임무 및 역할’에 관한 주장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 등 국회로 출동한 경찰은 방첩사 체포조를 안내 내지 인솔하는 임무만 부여받았을 뿐, ‘체포 활동’을 함께 하거나 돕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그 내용이 유사하고(이하 이 부분에서 위 주장을 ‘공통주장 ②’이라 한다), ③ ‘서울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과 방첩사 체포조의 관련성’에 관한 주장은 “위 명단은 계엄 선포 시 적법하게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준비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당시 국회 인근으로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그 내용이 유사하다(이하 이 부분에서 위 주장을 ‘공통주장 ③’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이 주장하는 ‘구체적 폭동행위로 평가할 만한 사실관계 부인’(이하 이 부분에서 ‘공통주장 ④’이라 한다)은 다른 이 부분과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 즉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윤승영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앞서 본 공통주장 ①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 위 공통주장 ②, ③, ④에 대하여 판단하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윤승영의 개별적인 주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판단한다.

1) 방첩사 체포조의 임무에 관한 주장(공통주장 ①)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회 인근으로 출동한 방첩수사단 소속 수사관들, 즉 방첩사 체포조의 임무대상자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이었으며, 그 임무 내용은 경찰 등과 공동작전을 수행하여 이들을 ‘체포’하는 것이었거나 적어도 체포된 사람을 ‘인계’받아 구금시설에 ‘이송’하는 것으로, 결국 ‘체포’와 관련된 것이었고, 단지 ‘인계받아 다시 인계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체포’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방첩사 체포조의 임무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사람을 인계받아 구금시설에 이송하는 등 체포활동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를 지시한 김대우는 물론 이를 지시받은 방첩사 체포조도 이러한 임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방첩사 체포조의 출동 경과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 체포조의 출동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비상계엄 선포 후 소집 명령을 받은 방첩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은 방첩사령부 영내에 있는 방첩수사단 건물로 각자 모이고 있었다(일부 인원은 1층에 그대로 있었고, 일부 인원은 3층으로 갔다가 1층으로 내려왔다). ② 그 과정에서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는 건물 1층 로비에서 모이고 있는 인원들을 상대로 임무를 하달하였다, ③ 김대우는 소령급 장교와 부사관들이 모여 하나의 조(組)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인원이 모여지면(주로 소령급 장교 1명과 부사

관 4명이 하나의 조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을 하나의 조로 만든 다음[이른바 작조(作組)] 조별로 체포대상자를 지정하고, 조별로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준비된 장비 등을 챙겨서 (일단) ‘국회’ 내지 ‘여의도’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④ 그 후 각 조는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준비된 장비 등을 챙겼고 ⑤ 2024. 12. 4. 00:25경부터 01:05 경까지 사이에 방첩사 영외로 나가 순차로 출동하였다. ⑥ 1조(체포대상자로 이재명을 지정받았다) 조장 신동걸은 같은 날 00:25경 출동하면서 영등포경찰서 소속 정일현에게 전화하는 등 출동 이후부터 경찰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2) 우원식 등에 대한 우선 체포 임무 하달 및 전파

방첩사 체포조가 순차로 출동하는 과정에서 이미 출동한 조에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우선 체포하라.’는 변경된 임무 지시가 전파되었다.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김대우는 2024. 12. 4. 00:37경 구민회의 휴대전화를 통해 국회로 출동 중인 방첩사 체포조 인원 일부와 그룹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해당 통화에는 2조(한동훈 체포조) 조장 최진욱, 3조(우원식 체포조) 조장 석기진 등이 참여하였고, 당시 김대우는 위 인원들에게 ‘7개 팀 모두 출발 시 부여된 체포대상자가 아니라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3명 검거에 집중하라’, ‘3명 중 먼저 검거된 인원이 있으면 포박하거나 수갑을 채워 수방사로 데리고 가라’,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또는 수갑을 채워서 수방사로 신병을 보내라’, ‘707, 수방사 병력이 의원들을 확보하면 인계 받아라’, ‘경찰과 현장병력들 통해서 임무를 수행해라’라고 지시하였다.

②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 소속 수사정책계획장교 최석일은 위 그룹통화 직후인 같은 날 00:41경 국회 인근으로 이동 중인 방첩사 체포조의 조장들(신동걸, 석기진 등)과 구민회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공유해 변경된 임무 지시

를 공지하였다.

[00:38] 현재 이동하시는 팀 카톡입니다

[00:41]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 / * 포승줄 및 수갑 이용

[00:41] 문자 확인하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3) 체포대상자가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첩사 체포조는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받으면서, 각 조별로 특정인을 임무대상자로 부여받았다. 먼저 방첩사 체포조의 임무대상자가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김대우는 1층에서 위와 같이 조별로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1조 및 2조의 수사관들, 1조 조장 신동걸이 모인 상태에서 ‘신동걸(1조 조장), 이재명’, ‘최진욱(2조 조장), 한동훈’이라고 말하였고, 3층에서 1층으로 뒤통게 내려온 2조 조장 최진욱에게 ‘한동훈’이라고 말하여 1조, 2조의 각 임무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한 김대우는 3조 조장 석기진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자 ‘합법적인 임무수행이다. 우원식, 국회에 가서 인계 받아라’라고 말함으로써 3조의 임무대상자가 우원식이라는 것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비상계엄 직후 방첩사 체포조가 국회출동을 지시받은 점, 김대우가 최초 출동지시 당시부터 조별로 대상자의 이름을 각각 호명하면서 명시적으로 지정한 점, MY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공유 내용, 이재명이나 한동훈 등은 이미 정치인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첩사 체포조 인원들은 방첩수사단 건물 1층에서 김대우로부터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최초로 받을 때부터 애초에 임무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과 같은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임무내용이 ‘체포’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다음으로, 방첩사 체포조의 임무내용이, 피고인 윤석열 등의 주장처럼 단지 ‘인계’에 만족한되어 ‘체포’와는 무관한지, 아니면 ‘체포’에 관련된 행동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방첩사 체포조의 임무내용은 대상자를 직접 ‘체포’하는 것이었거나 적어도 체포된 사람을 ‘인계’받아 구금시설에 ‘이송’하여 구금하는 것과 같이 체포·구금을 돕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방첩사 체포조 인원들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방첩사 체포조의 1조 조장 신동걸, 2조 조장 최진욱, 3조 조장 석기진의 다음과 같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대우가 2024. 12. 4. 00:38경 그룹통화로 지시한 내용, 같은 날 00:41경 최석일이 그룹채팅방에서 전파한 임무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방첩사 체포조 일부는 ‘체포’하는 임무를 명시적으로 지시받고 출동하였으며, 스스로도 자신들의 임무가 ‘체포’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늦어도 2024. 12. 3. 00:38경 및 00:41경 우원식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전파된 이후에는 방첩사 체포조가 자신들의 임무 내용에 임무대상자를 직접 ‘체포’하는 것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신동걸은 이 법정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소집 명령을 받고 2024. 12. 3. 23:50 경 방첩수사단 건물에 갔는데, 같은 날 24:00경 김대우로부터 ‘신동걸 (조는) 이재명’, ‘최진욱 (조는) 한동훈’, ‘준비되는 대로 출동해’, ‘체포조는 체육관으로 가서 차량을 타고 출발해’라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체포조와 임무수행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가, 내가 방첩수사단 건물에서 나가기 직전에 김대우가 ‘체포조 출동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

였을 뿐만 아니라, “체육관에 가니, 패키지화된 가방(수사장비세트)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이 있었는데, 이를 보고서 부여받은 임무가 ‘특정 대상자를 체포하러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막연하게나마 알았다. 그런데 어떤 혐의로 체포하라는 건지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다.”, “체육관에 가기 전에 ‘신동걸, 이재명’, ‘최진욱, 한동훈’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체포하는 임무라는 정도의 생각은 막연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신동걸은 “출동 준비 당시부터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체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최진욱은 이 법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된 후 소집 명령을 받고 2024. 12. 3. 23:20경 내지 23:22경 방첩수사단 건물 3층에 있는 대공수사과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무실 도착 후 대기하던 중에 구민회로부터 ‘각 과별로 수사차량 2대 및 방검복 등의 보호 장비를 불출해야 하니 과원 1명을 체육관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과원 1명을 체육관으로 보냈다.”, “3층에 있다가 이후 1층으로 내려갔는데, 김대우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던 것 같은 분위기였고, 수사관들은 교육이 끝나고 보호장비 착용을 위해 체육관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중이었다.”, “당시 김대우으로부터 ‘한동훈’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는 나에게 ‘한동훈’을 지정한 것이었다. 당시 김대우로부터 ‘체포해 와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받을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 나는 늦게 내려가서 교육(임무 하달)을 직접 받지는 못하였고, 수사관들을 통해서 임무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전달받은 내용은 ‘현장에 있는 경찰이나 특전사 인원들이 신병을 확보하면 신병을 인계받아서 수방사 미결 수용실로 인치시켜라’라는 취지였다. 당시 내가 이해하기로는 ‘경찰이 국회에 있는 한동훈을 체포 또는 신병확보를 하면 인계받아서 호송해서 구금시설에 구금하라’는 것,

즉 ‘체포’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단지 ‘인계받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최진욱의 진술에 따르면, ‘체포된 인원을 인계받아 호송해서 구금하라’는 지시는 결국 체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체포·구금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석기진은 이 법정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소집 명령을 받고 2024. 12. 3. 23:20 경 내지 23:30경 방첩사령부에 도착했고, 비상소집 응소현황을 확인한 후 얼마 뒤에 방첩수사단 건물 3층에 있는 수사조정과로 올라갔다. 2024. 12. 4. 00:00경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때 김대우와 1조, 2조로 추정되는 일부 인원들이 1층 출입구 쪽에 모여 있었다. 당시 김대우가 나를 보고 ‘합법적인 임무수행이다. 우원식, 국회에 가서 인계받아라’는 지시를 하였다. ‘체포’라는 말은 그때는 안 썼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석기진은 이 법정에서 2024. 12. 4. 00:38경 및 00:41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우원식 등을 우선 체포하라’는 변경된 지시가 전파된 다음 본인이 인지한 임무내용에 관하여 “김대우 단장이 (같은 날 00:38경) 그룹통화로 지시한 내용을 들었는데,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 명시적으로 ‘체포’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체포하라’는 취지로 들었다.”, “나는 최석일의 (같은 날 00:41경) 문자 공지를 보고 우원식을 ‘인계받는 것’이 아니고 ‘체포하라’는 것으로 임무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석기진은 “최초 출동 지시 당시에는 ‘체포’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지만, 2024. 12. 4. 00:38경 김대우의 그룹통화 상의 지시 및 같은 날 00:41경 최석일의 문자공지를 보고 대상자를 ‘체포하라’는 임무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김대우는 방첩사 체포조에 최초로 출동을 지시할 당시 일부 인원에게는 ‘체포

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인계 받아라. 직접 체포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대우는 이 법정에서 “경찰이 포함된 합동수사단이 아니라 군인들인 방첩사 수사관들만 출동해서 14명을 체포한다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예상했고, 그래서 방첩사 수사관 5명씩 모이면 바로바로 출동시킬 때 ‘우리가 직접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김대우의 진술내용에 따르더라도 방첩사 체포조의 임무는, 경찰 등과 공동으로 팀을 꾸린 다음 함께 ‘민간인인 대상자의 위치파악 → 경찰 등의 신병확보 및 체포 → 방첩사 체포조의 인수 → 방첩사 체포조의 구금시설로의 호송 및 인계’로 이어지는 체포·구금 합동임무를 수행하되, 단지 ‘군인들로만 이루어진 방첩사 체포조가 경찰 없이 민간인에 대해 직접 체포행위를 하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로 하여금 직접 체포행위를 하도록 하되, 방첩사는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도 내지 동기에서 위와 같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 윤석열은, 경찰이나 특전사 병력과 같이 현장에 있는 다른 작전부대가 대상자를 ‘체포’하면, 방첩사 체포조는 이를 ‘인계’받는 임무만 부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방첩사 체포조 2조 조장 최진욱 등 일부 인원은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상자를 체포하는 작전은 경찰이나 특전사 병력만의 단독작전이 아니라, 경찰과 방첩사 체포조 등의 합동작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여인형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방첩수사단,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의 각 인력들이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체포조’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여인형은 2024.

12. 1. 15:44경 및 2024. 12. 3. 11:25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인형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내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 ‘합동수사본부 하에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은 방첩수사단장인 김대우를 임명’하며,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체포조를 운영하되, 방첩사 병력 5명, 경찰 5명,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 5명, 경호부대 인력 5명을 1개의 조로 구성’하고,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 받는 것’까지 염두에 두었 던 것으로 보인다.

메모시각	메모 내용
12. 1. 15:44경	■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김대우 - 경찰/조본,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 수방사, 조본,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 합동팀 편성 ·방첩5, 군사경찰5, 경찰5, 경호5 기준 20명 1개팀 ·장비, 차량 등 정밀편성 - 합동체포조 작전개시 - 출국금지
12. 3. 11:25경	■ 최초 지시 -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조치할 것. -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 - 참모장은 의명 합수본부로 전환준비 - 영외거주자 소집, 광수대 전 수사관 사령부로 소집 - 부대방호태세 최고로 격상, 주둔지 방호 및 요인경호 -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세력 수사본부, 제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 과학수사실, 정보보호단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 지휘를 받을 것 - 제1처장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 받을 것 - 참모장은 경찰,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 - 예하부대는 포고령과 작계에 의거 조치

② 김대우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처음부터 경찰 등과 합동 및 연계작전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방첩사 체포조는 김대우의 명령에 따라 출동한 것인데, 김대우는 방첩사 체포조의 작조(作組) 및 출동 전인 2024. 12. 3. 23:04경 방첩수사단 수사단장실에서 안보수사실장 이재학, 수사조정과장 구민회에게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인원들(방첩사 체포조)은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방첩사 혼자 할 수 없고,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 내용에 따르면, 김대우는 처음부터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방첩사 체포조 등이 공동으로 팀을 꾸린 다음 함께 ‘체포대상자의 위치파악 → 신병확보 및 체포 → 인수 → 구금시설로의 호송 및 인계’로 이어지는 이른바 체포·구금 합동작전을 구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후 실제로 국회 인근에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와 경찰이 서로 연락하는 등 공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구민회는 위와 같은 김대우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32경 및 23:52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 수사기획계장 이현일과 각 통화하였는데, 23:52경 통화에서 ‘국회에 출동하는’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경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현일은 같은 날 23:57경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박창균에게 전화하여 ‘방첩사에서 지금 국회로 체포조를 보낼 거야. 방첩사 애들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 그거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 5명이 필요해, 5명 명단 좀 짜줘’라고 말하면서 형사 5명의 명단을 요청하였고, 2024. 12. 4. 00:04경 박창균으로부터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 정일현 경감 등 형사 5명의 명단을 받은 다음, 00:13경 구민회에게 위 명단을 제공하였으며, 같은 날 00:40경 구민회에게 형사 5명의 명단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④ 위와 같이 공조 여건이 조성된 후, 국회 인근에 도착한 방첩사 체포조와 영등포 경찰서 10여명의 각 조장은 실제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접선 장소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방첩사 체포조 1조 조장 신동걸은 2024. 12. 4. 00:25경 국회로 출동하면서 강력7팀장 정일현과 통화하며 ‘지금 국회로 가라고 해서 가는데 국회를 가본 적이 없다, 어디로 가면 되느냐?’라고 물었고, 정일현은 ‘국회 앞 주유소로 오면 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동걸은 재차 ‘국회 앞 주유소가 어느 쪽에 있느냐? 검색해서 가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정일현은 00:28경 신동걸에게 주유소 위치가 표시된 내비게이션 캡처 화면을 전송해주며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쪽에서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신동걸은 재차 정일현과 통화하며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라) 방첩사 체포조 인원들은 김대우로부터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조별로 임무대상자를 부여받은 후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준비되어 있던 장비가 패키지화된 가방인 수사장비세트를 확인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챙겨 출동하였다. 수사장비세트 안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었는데, 이러한 장비들은 사람을 제압하여 체포 활동을 하거나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비로 보인다. 굳이 방첩수사관들이 야간에 조를 이루어 임무대상자를 부여받아 국회로 출동하면서 위와 같은 장구들을 지참하였다는 사실은 결국 이들이 임무대상자를 체포·구금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이 된다.

나) 따라서 방첩사 체포조의 임무가 단지 ‘인계’에만 국한되어 ‘체포’와는 무관하였으며, 방첩사 체포조 인원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체포’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대상자를 체포·구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 등의 임무 및 역할에 관한 주장(공통주장 ②)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회 인근으로 출동해있던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에게 하달되어 그들이 수행하기로 예정되어있던 임무내용은, 방첩사 체포조와 연락하고 접선한 뒤 공동작전을 수행하여 이들을 ‘체포’하는 것이었거나 적어도 방첩사 체포조의 체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국 ‘체포’와 관련된 것이었고, 단지 방첩사 체포조를 ‘안내 내지 인솔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체포’와는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1) 관련 규정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의 명에 의해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방첩수사단장이 합동수사단장이 되고 합동수사단 예하에 국정원, 경찰, 군사경찰, 방첩사 인원이 수사단원이 되어 계엄사범 등에 대한 검거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여인형은 이를 구체화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방첩수사단,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의 각 인력들이 함께 계엄사범 등의 체포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체포조’를 구상했고(이를 2024년 상반기 훈련에서 가상으로 실행해 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대우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처음부터 경찰 등과 ‘합동 및 연계작전’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방첩사 체포조의 경찰 지원 요청에 따른 명단 작성 요청·지시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 수사기획계장 이현일 →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당시 공석이었던 형사 2과장 겸직) 박창균 →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 소속 강력계장 이치수 →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 소속 형사7팀장 정일현 및 같은 소속 형사4팀장 이병하’ 순서로 전파·하달되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과정 및 경위를 살펴보면, 이현일과 박창균은 형사들이 방첩사 체포조와 같이

활동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박창균과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소속 형사 10여명은 23:30경 국회 정문(1, 2문) 앞에 도착하여 어찌다가 국회 경내로 들어가 대기하게 되었고, 이치수는 23:41경, 정일현은 23:46경, 이병하는 23:50~55경 국회 정문 앞에 도착하였으나 국회 정문을 통제하던 기동대의 저지 및 많은 인파로 인하여 이들과 합류하지 못하였다. 이후 박창균은 23:57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 수사기획계장 이현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거야’,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금 그 방첩사 애들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 그거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5명 필요해’, ‘어, 5명 명단 좀 짜 줘’, ‘지금 바로 해줘야 돼. 먼저 너한테 전화한 거고 국장님한테 바로 지금 가서 전화 드릴거야’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박창균은 23:58경 국회 정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영등포경찰서 강력계장 이치수에게 전화하여 ‘5명 정도, 방첩사가 여기 체포조가 뭐 온대요.’, ‘우리 형사들 5명을 같이 좀 붙여달라고 하거든요.’, ‘계장님이 5명 정도 뭐 1개 팀 데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경력 1개 팀’이라고 말하여 ‘방첩사 체포조에 붙여줄’ 형사 5명 명단을 작성해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치수는 곧바로 국회 정문 앞에서 함께 모여 있던 정일현, 이병하 등 10명의 형사들에게 ‘과장님(박창균)이 그러는데 군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한다.’, ‘빨리 명단을 달라고 한다.’, ‘방첩사가 이쪽으로 나온다.’, ‘방첩사에 협조해 줄 일이 있으니까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불러 달라.’고 말하여 국회 정문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 5명의 이름(정일현, 이병하, YR, YS, YP)을 들었다.

(3)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의 명단은 ‘이치수(작성·전송) → 박창균(전달) → 이현일’ 순서로 작성·전송 및 전달되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과정 및 경위를 살펴보면, 이치수가 위 명단에 기재된 정일현, 이병하 등에게 국회로 출동하는 방첩사

병력과 접선하여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을 것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박창균은 이현일에게 체포대상자를 물어보고,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나?’라는 말을 듣는 등 체포대상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들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치수는 위 형사들 5명의 이름을 듣고 곧바로 1차 명단을 작성한 다음 2024. 12. 4. 00:01경 박창균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시 위 5명에게는 ‘방첩사에서 연락이 올 거다’, ‘방첩사를 만나서 직접 지시를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후 박창균은 00:02경 재차 이현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이현일이 ‘일단 우리 국장님(피고인 윤승영) 보고드렸고, 청장님(피고인 조지호) 보고 드렸고’, ‘그러니까 1개 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 팀장 하나 하고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경찰인 거 티가 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 ‘뭐 형사 조끼 이런 거 입히지 말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5명 이름하고, 계급, 전화번호’, ‘이렇게 나한테 문자로 좀 넣어줘’라고 말하여 명단을 재차 요구하자, 박창균은 ‘뭘 체포하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였고, 이현일은 ‘누구 체포하겠나? 국회 가면’이라 대답하였으며, 이에 박창균이 한숨을 쉬자 이현일은 ‘일이 커. 넌 왜 또 이런 때 영등포로 가 있니, 어, 빨리 명단 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박창균은 00:04경 이현일에게, 이치수로부터 받았던 1차 명단과 정일현의 연락처를 전달하였다.

(4) 한편 박창균은 위와 같은 2024. 12. 3. 23:57경 및 2024. 12. 4. 00:02경 이현일과의 통화 및 요청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형사들은 방첩사 체포조를 안내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인식했다.’, ‘방첩사 체포조의 체포대상자가 불법적인 폭력사태를 저지르는 사람들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통화들은 물론 그 후 이치수와의 통화 등 어디에서도 ‘국회 인근을 안내해라’는 취지로 요청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을 추정할 만한 대화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박창균은 이치수에게 ‘방첩사 체포조에 붙여줄 형사 5명

명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통상적인 의미에서 보더라도 체포조의 체포 업무를 도울 형사 5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때 체포 업무를 돕는 것에 국회 인근 길 안내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단지 길 안내를 위해 형사가 5명이나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방첩사 체포조가 국회 인근 폭력행위자 등을 체포함에 있어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은 단지 ‘안내’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박창균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치수도 형사들의 역할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24. 12. 3. 23:58경 박창균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지시를 받을 당시 ‘방첩사 병력이 오니, 그들을 안내하라’는 취지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진술하나, “당시 방첩사를 도와서 ‘국회를 안내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이해한 것은 내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여 스스로도 ‘방첩사를 안내하라’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이 1차 명단을 이현일에게 전달한 후, 박창균은 2024. 12. 4. 00:18경 이현일로부터 ‘1개 팀 더 필요하대, 5명’이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형사 5명의 추가 명단을 보낼 것을 요청받고, 00:19경 이치수에게 ‘아까 그거 한 팀 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강력 4, 7팀 형사들을 보내면 될 것 같다. 강력4, 7팀의 명단을 보내 달라’라고 말함으로써 형사 5명의 추가 명단을 작성해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치수로부터 00:21경과 00:22경 카카오톡을 통해 ‘YT YU’, ‘GK은 과장님 주변에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00:27경 이치수에게 ‘6팀 5명, 7팀 5명으로 맞춰주세요.’라고 답장하였다. 한편 영등포경찰서 형사지원팀 GM는 2024. 12. 4. 00:33경 박창균의 지시에 따라 박창균에게 LT 등 5명의 명단 및 이병하의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에 박창균은 00:36경 이현일에게 기존 5명과 추가

5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정리한 10명의 명단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6) 또한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 정일현, 강력4팀장 이병하는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 방첩수사단 군사기밀수사과 2팀장 신동걸과 다음과 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접선하여 회의를 할 장소를 안내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은 방첩사 체포조와 함께 조 편성이 될 예정이었으며, 정일현, 이병하와 신동걸 등은 임무내용 등에 관하여 회의도 할 예정이었다.

정일현은 형사들과 함께 국회 수소충전소에 모여 있던 중 2024. 12. 4. 00:25경 방첩사 체포조 2조의 조장인 방첩수사단 군사기밀수사과 2팀장 신동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어디로 가면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국회 앞 주유소로 오면 된다.’고 답하였다. 이후 이병하는 00:48경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만나서 회의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국회 수소충전소에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 회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이쪽으로 와라’고 말하였으며, 정일현도 00:49경 구민회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국회 수소충전소 앞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이병하는 00:53경 재차 구민회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구민회는 ‘방첩사에서 7명씩 5개 조가 온다.’,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며 ‘경찰관들, 형사들 2명씩 5개 조로 조편성을 해 달라’, ‘조 편성을 해서 각 조 명단하고 조장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정일현도 00:56경 구민회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국회 정문 쪽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수소충전소와 도로를 두고 마주하고 있다) 에서 만나기로 하며 ‘정문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보인다.’, ‘주유소 쪽으로 찾아오라’고 방향을 안내해주었다.

(7)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을 비롯한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등포

경찰서 소속 형사 60여명이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면서 따로 수갑, 포승줄 등을 챙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부 인원은 기본적으로 수갑을 휴대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방첩사 체포조 인원들은 수갑 등이 포함된 패키지화된 가방(수사장비세트)을 휴대하고 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의 역할이 체포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결국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의 임무내용은 설령 체포행위를 직접적으로 실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상자를 추적하는 등 방첩사 체포조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수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의 임무가 단지 방첩사 체포조를 ‘안내 내지 인솔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체포’와는 무관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수사관 100여명 명단과 방첩사 체포조와의 관련성에 관한 주장(공통주장 ③) 대한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에서 작성한 수사관 100여명 명단이 방첩사 내지 방첩수사단의 ‘합동체포조’ 내지 ‘방첩사 체포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 윤석열은 서울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은 비상계엄 하 매뉴얼에 따라 경찰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명단 작성과 관련된 요청·지시가 보고·하달된 경로는 ‘방첩사령관 여인형(지시) →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지시) →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요청) → 경찰청 국사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 수사 기획계장 이현일(보고) → 수사기획과장 전창훈(요청) →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지시)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지원팀장 이종욱(명단 작성)’과 같이 ‘방첩사 내지 방첩수사단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서울경찰청'이다. 위 주장처럼 경찰청 내지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위 명단을 작성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윤승영은 서울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을 작성한 것은 ‘합동수사본부’를 위한 사전 준비에 불과하므로 당시 국회 인근에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엄 선포 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 산하에는 이른바 ‘반국가세력 수사본부’가 구성되고, 이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에서 방첩사 체포조를 포함한 합동체포조를 운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경력이 일단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부 조직인 반국가세력 수사본부가 운영하는 합동체포조 내지 방첩사 체포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윤승영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개) 앞서 공통주장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여인형은 2024. 12. 1. 15:44경 및 2024. 12. 3. 11:25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메모 시각	메모 내용
12. 1. 15:44경	■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김대우 - 경찰/조본,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 방첩5, 군사경찰5, 경찰5, 경호5 기준 20명 1개팀 - 합동체포조 작전개시
12. 3. 11:25경	■ 최초 지시 -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세력 수사본부, 제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 과학수사실, 정보보호단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 지휘를 받을 것 - 제1처장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 받을 것 - 참모장은 경찰,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

(나) 이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에는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구성되고,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엔 경찰로부터 파견 받는 100명의 수사관을,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⁸⁰⁾는 사이버사령부로부터 파견 받는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각 배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는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는 ‘합동체포조’를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합동체포조는 결국 앞서 ①, ②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은 방첩사 체포조 인력 5명과 경찰 인력 5명 등으로 구성되는 체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더욱이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의 아래와 같은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방첩사 내지 방첩수사단 측은 방첩사 체포조와 함께 합동체포조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 내지 국가수사본부 측에 수사관 100명 및 호송차량 20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점은 보다 분명해진다.

구민회는 이 법정에서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경찰로부터 지원받는) 100명이 전부 체포에 들어간다(방첩사 체포조와 함께 합동체포조를 구성한다)’는 말을 명확히 듣지는 않았다. 또한 이현일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경찰 100명이 전부 체포에 들어가는 요원이다(방첩사 체포조와 함께 합동체포조를 구성한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윤승영의 변호인이)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체포조 운용을 별개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질문하는 것 같은데), 합동수사본부가 설치가 되면 (방첩사 인력,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 경찰 인력)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같이 하게 된다.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 100명, (경찰 인력) 100명씩 해서(파견 받아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것은 맞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체포’ 임무였다. 방첩사 인력들과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 100명, 경찰 인력 100명을 소집해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80)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된 것으로, 제2수사단은 선관위 점거, 서버실 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 인원들한테 부여된 임무는 ‘그 14명에 대한 체포’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처음에 통화(2024. 12. 3. 23:32경 이현일과의 1차 통화)에서 말했던 (경찰) 100명은 체포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100명을 받아서 그들을 5명씩 나누어 다른 기관(방첩사, 국방부 조사본부)과 TF를 구성해서 체포조를 운영해야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 과정을 보니) 이현일이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방첩수사단)가 생각했던 것은 경찰 100명을 받아서 그들을 5명씩 나누어 체포조의 일원으로 다 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전달(요청)했는데, 즉 합동수사본부에 100명을 보내주면 그 100명들을 5명씩 나누어 체포조를 구성하겠다고 전달(요청)했는데, 이현일은 100명은 별도의 100명으로 생각하고, 내가 ‘5명, 5명, 5명, 10명으로 25명 한 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한 것을 (이현일은) ‘5명만 보내주면 되는구나’라고 이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구민회는 자신이 이현일에게 경찰 100명을 요청한 것은 그들을 파견받아 방첩사 체포조와 함께 합동체포조로 운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4) 한편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은 이 법정에서 ‘1차 통화에서 구민회가 요청한 경찰 100명(서울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 관련)과 2차 통화에서 구민회가 요청한 경찰 5명(방첩사 체포조 관련)은 별개라고 인식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과는 별개여서 방첩사 체포조 지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설령 이현일이 자신의 주장처럼 경찰 100명은 국회 인근에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와는 무관하다고 인식하였더라도, 합동수사본부는 경찰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파견 받으면 그들 5명과 방첩사 체포조 5명 등으로 구성되는 합동체포조를 운영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구민회는 이현일에게 ‘방첩사 체포조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경찰 100명을 요청한 것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정은 이러한 이현일의 주관적 인식과는 무관하다.

나) 결국 서울경찰청에서 작성된 수사관 100여명 명단은 경찰 자체의 매뉴얼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단지 계엄 선포 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와 관련이 있을 뿐 방첩사 체포조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구체적 폭동행위로 평가할 만한 사실관계 부인 주장(공통주장 ④)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방첩사 체포조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 등이 국회 인근의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① 방첩사 체포조는 방첩수사단 건물에 집합한 다음 출동 지시를 받기 전 이미 김대우 등으로부터 조별로 체포대상자를 특정받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에 따라 출동하였다. 이후 방첩사 체포조는 방첩사령부 체육관에 준비되어 있던 패키지화된 가방(수사장비 세트)을 확인하였는데, 그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이 들어 있었고, 방첩사 체포조는 그 가방 또는 그 안에 있던 장비 일부를 챙겨서 국회로 출동하였다. 이와 같은 출동 경위에 비추어 보면, 방첩사 체포조는 특정된 체포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하였고, 그 체포 임수 수행 과정에서 대상자가 반항하거나 시민들이 저지할 경우 이를 제압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장비들을 챙겨서 출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방첩사 체포조는 기본적으로 체포대상자 또는 시민들을 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하

기 위한 용도에서 위와 같은 장비들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② 방첩사 체포조가 특정 체포대상자에 대한 체포행위의 구체적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은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기 때문에, 방첩사 체포조가 체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비들을 챙겨 출동한 이상 그들이 체포행위의 구체적 실행행위에 나아가야만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처럼 방첩사 체포조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은 서로 실제로 만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첩사 체포조 1조의 조장 신동걸은 2024. 12. 4. 00:25경 국회로 출동하면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 강력7팀장 정일현과 통화하여 ‘어디로 가면 되느냐’라고 물어 ‘국회 앞 주유소로 오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같은 날 00:28경 주유소 위치가 표시된 내비게이션 캡처 화면과 함께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쪽에서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으며,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희는 같은 날 00:48경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 강력4팀장 이병하와, 00:49경 정일현과, 00:53경 재차 이병하와, 00:56경 재차 정일현과 각 통화하면서 ‘만나서 회의할 장소가 필요하다.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 형사들 2명씩 5개 조로 조편성을 해달라’, ‘국회 정문 쪽에 도착했다’라는 말을 하였고, ‘국회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저희가 (마중) 나가겠다’ 등과 같은 말을 들었다. 이와 같이 방첩사 체포조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은 연락을 적극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접선하여 임무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처럼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는 차에서 하차하지도 않고 대기하였고, 그 중 1명도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 않은 것,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을 비롯한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60여 명이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면서 일부 인원은 따로 수갑, 장구류 등을 휴대·착용하거나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첩사 체포조가 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대기하고 그 중 1명도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당시 국회 인근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가 몰린 상황이었고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로 인한 것일 뿐인 점,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60여명 중 일부 인원은 기본적으로 수갑을 휴대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그들이 반드시 수갑 등을 휴대하여야만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폭행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소극적인 사정만으로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 윤석열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홍장원과의 20:20경 1차 통화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윤석열은 당시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경위, 당시 홍장원이 술을 마셨던 정황 등을 근거로 들면서, 피고인 윤석열이 홍장원과의 1차 통화에서 한 말의 내용에 관하여 세세한 표현을 다두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따가 전화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내용 내지 홍장원의 진술내용의 핵심인 “피고인이 ‘1~2시간 전화를 할 수도 있으니 전화를 잘 듣고 대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과 세세한 표현만 다소 다를 뿐, 피고인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전화를 잘 받을 있게 대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또한 홍장원은 위와 같은 전화통화 후 곧바로 국정원으로 복귀하여 상황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위와 같이 대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홍장원과의 1차 통화에서 한 말의 세세한 표현을 다투는 피고인 윤석열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앞서 범죄사실 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나) 홍장원과의 22:53경 2차 통화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윤석열은 홍장원과의 2차 통화를 한 것은 단지 격려 등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해당 통화에서 ‘국정원은 정치인 등을 체포·검거하는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단지 국정원 내지 홍장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하였다는 주장은,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 이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윤석열은 “‘계엄선포’ 봤지요. 원장(조태용)이 여기 있다는 말을 왜 안했어요.”라고 말한 다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뺏겼으니 ‘방첩사를 도와’ 간첩 잡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국정원이 경찰에만 지원하지 말고 방첩사에도 국정원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예산이 부족한 방첩사에 국정원 ‘특활비(예산)’도 지원하고, 방첩사도 간첩 수사를 잘하니 간첩 ‘정보’도 경찰뿐만 아니라 방첩사에게도 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윤석열은 홍장원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환기시킨 다음, 그러한 상황, 즉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정원은 방첩사를 지원하라. 인력·예산·정보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단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한 격려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정원은 방첩사가 수행하는 체포·검거 등 수사에 필요한 인력·예산·정보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 윤석열은 당시 ‘간첩’에 대한 수사를 언급했을 뿐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검거 등을 언급한 것은 아니어서, “국정원에서 ‘정치인 등’을 체포·검거하는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정치인 등’을 언급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윤석열도 이러한 지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이 ‘정치인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홍장원과의 2차 통화에서 ‘국정원은 정치인 등을 체포·검거하는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윤석열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여인형이 홍장원에게 소재파악을 요청한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인형은 2024. 12. 3. 22:58경, 23:06경 홍장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홍장원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인형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여인형, 홍장원의 각 진술증거만 있다. 그런데 여인형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홍장원은 이 법정에서, “22:58경 통화 당시 여인형은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 “23:06경 통화 당시 내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명단을 사람을 통해서 시켜서 보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에 여인형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바로 그냥 불러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호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윤석열은, 홍장원의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전문하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홍장원의 진술은 본인이 위와 같이 여인형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와 같은 원진술인 여인형의 진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두고 전문증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은 홍장원이 진술한 통화를 한 장소, 위 각 통화의 세부적인 내용이 반복된 점 등을 이유로,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홍장원은 ‘22:58경 통화에서 여인형이 명단을 불러주려고 할 즈음 보안폰으로 통화하기 위하여 전화를 잠시 끊었는데, 보안폰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다시 23:06경 일반전화로 전화하여 대화가 이어졌다.’와 같이 각 통화가 끊어지고 이어진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본인의 기억이 없거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인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여인형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이 들고 있는 이유만으로 홍장원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위와 같은 홍장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인형이 2024. 12. 3. 22:58경, 23:06경 홍장원과 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체포 대상자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조지호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여인형의 경찰력 지원 요청 수락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으로부터 ‘경찰에서 안보수사요원을 지원해 달라. 정치인들을 체포하여야 하는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당시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두고 있다.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조지호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개) 여인형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30~40경 또는 그즈음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녹음 파일, 통화 내역 등 위 통화 당시 어떠한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여인형과 경찰청 경찰국장 박현수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조지호가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를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조지호 또는 여인형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조지호가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담긴 각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 모두 피고인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피고인 조지호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여인형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조지호에게 두 가지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첫 번째는 ‘법령과 작전계획에 따라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어야 하니 경찰 인력을 좀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바이다.”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 조지호에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을 뿐, 이를 들은 피고인 조지호의 반응이나 대답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다.

(다)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요청에 대한 피고인 조지호의 반응이나 대답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피고인 조지호가 체포와 위치 확인을 요청한 (여인형의) 발언 내용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증언을 거부하였고, 피고인 조지호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들었는지만 물어보겠다.”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 조지호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라고 반문하기도 하였고, 재판장으로부터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기억나는 대로요? 사실상 기억이 안 나요.’라고 답하였으며, 그 후에는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지금 사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조지호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뉘앙스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내 생각을 말하면 (피고인 조지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지 않다.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가 처음 통화하는 나에게 ‘실무적인 것은 국가수사본부장하고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대화 맥락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 조지호의 변소와 부합한다.

(태) 한편 경찰청 경찰국장 박현수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2024. 12. 4. 06:22경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14분간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내(피고인 조지호)가 여인형에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해라」 라고 말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위 전화통화)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피고인 조지호가 여인형에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 자체가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한 것이거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진술내용을 근거로 피고인 조지호가 여인형에게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도 결국 박현수가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조지호가 여인형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와 같이 불확실한 기억을 진술한 것이거나 자신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② 또한 박현수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위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이 아니다. 지금 기억을 되짚으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위 내용은 사실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만약 ‘지금 기억해보라’라고 하면 정확히 기억이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더욱이 검사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증거순번 6기록 707번)에는 아래와 같이 검사가 박현수의 답을 타이핑한 부동문자를 박현수가 일부 삭제하고 자필로 추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박현수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이런 식(피고인 조지호로부터 들은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으로 조서를 작성하기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답)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

고 해서 일부를 삭제하고 추가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과거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정확한 기억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피의자 C가 G에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해라”고 말했다고 분명히 진술인에게 말하였는가요.
답	예,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동영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의자 C가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들은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C님이 G에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씀하 ~~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생각 같습니다} G이 요청을 했고 그렇다면 C님이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라고 했으면 기억이 안 날 텐데 C님이 ~~분명히~~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했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시 C님이 저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G이 지원 요청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속으로 미친 새끼라고 생각했고,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으로} 차분히 말씀하였습니다. 그 내용 ~~을~~ ^{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 또한 만약 피고인 조지호가 위와 같은 여인형의 요청을 수락하였거나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피고인 조지호로서는 곧바로 경찰청 본청 또는 국가수사본부에 여인형의 위와 같은 요청과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경찰청의 지휘체계에 부합하는 것일 텐데, 그와 같은 지시나 언급을 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결국 피고인 조지호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당시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하거나 ‘알겠다.’는 취지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한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 해당 부분들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3. 23:59경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방첩사의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보고 받고 이에 응할 것을 실질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설령 피고인 조지호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락하는 대답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 내란 범행에 대하여도 여인형 등과 함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동훈 체포조 지원 등 지시 및 승인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3. 23:59경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방첩사에서 수사요원 100명 등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 ‘방첩사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실행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준비만 하라’고 말함으로써 체포조에 대한 지원을 진행시키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조지호는 영등포경찰서의 형사들이 방첩사 체포조를 지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개) 피고인 조지호는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3. 22:30~40경 여인형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를 받았다. 자신 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고 소개를 하더니 ‘계엄이 발령되어 내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것이다, 경찰이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고 하였고, 메모를 해 달라고 하면서 사람 이름을 쪽 부르고 제가 다 적으니까 ‘여기 우리가 체포할 건데 위치추적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위치추적은 수사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좀 해 달라'고 말하면서 대충 전화가 끊어졌다. 곧이어 바로 전화가 왔는데 '위치추적 요청 명단에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제 기억은 그런데 두 번의 전화내용에 대해 여인형이 기억하는 것(여인형은 첫 번째 통화에서 수사관 100명 요청을 요청하였고, 두 번째 통화에서 체포대상자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과 차이가 있다면 그게 맞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동훈 추가'라는 말을 들은 것은 분명하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조지호는 "국관회의 직전인 2024. 12. 3. 23:59경 내 집무실에서 피고인 윤승영로부터 방첩사의 요청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피고인 윤승영이 먼저 '방첩사에서 수사요원 100명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라고 말하였고, 나는 윤승영에게 '저한테는 안 보수사요원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준비만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에서 한동훈 체포조에 대한 경찰 5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보고하기에, 나는 '그것도 준비만 하시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윤승영이 이어서 '그러면 영등포 형사가 가겠습니다(또는 영등포 형사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조지호는 한동훈 체포조에 대한 경찰 5명 지원 요청에 대하여 '준비만 하라'고 말하면서도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가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에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을 뿐, 별다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특히 위 지원 요청에 대해서 '준비만 하되, 내 지시가 있기 전에는 실제로 출동·지원 등을 하지 말라'와 같이 유보적인 승인 내지 지시임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당시 방첩사로부터 급박하게 지원 요청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조지호의 주장처럼 피고인 조지호가 이 사건 보고 과정에서 ‘준비만 하라’라고 말하였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 윤승영의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가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보고 및 건의를 실질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이현일은 2024. 12. 4. 00:01경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곧바로 같은 날 00:02경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 박창균에게 전화하여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윤승영은 이현일에게 ‘청장님(피고인 조지호)께 보고 드렸다.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의 명단을 보내줘라’는 말을 하였고, 이현일도 박창균에게 ‘일단 우리 국장님(피고인 윤승영) 보고드렸고, 청장님(피고인 조지호) 보고드렸다.’는 말을 하였는바, 그 경위와 대화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는 승인을 포함한 내용으로 보인다.

① 이현일은 이 법정에서 “2024. 12. 3. 23:58경 국관회의 참석을 위해 본청 9층에 올라가 있는 피고인 윤승영에게 전화를 걸어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다닐 인력 5명을 국수본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국수본은 야간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 형사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는 취지로 보고 드렸다. 이에 대해 피고인 윤승영은 아마 ‘청장님(피고인 조지호)께 보고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 같다.”, “2024. 12. 4. 00:01경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청장님께 보고드렸다.’, ‘영등포 형사 사복으로, 명단 보내줘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이현일은 위와 같이 피고인 윤승영의 승인을 받고, 곧바로 같은 날 00:02경 재차 박창균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5명, 1팀 구성 인원의 명단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이현일은 ‘일단 우리 국장님(피고인 윤승영) 보고 드렸고, 청장님(피고인 조지호) 보고 드

렸고’, ‘그러니까 1개 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 팀장 하나하고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 ‘뭐 형사 조끼 이런 거 입히지 말고’, ‘어, 그렇게 해 가지고 5명 이름하고 계급, 전화번호’, ‘이렇게 나한테 문자로 좀 넣어줘’ 라고 하면서 명단을 요청하였다.

(타) 피고인 조지호의 주장처럼 설령 피고인 조지호가 당시 피고인 윤승영에게 ‘사복으로 보내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조지호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윤승영의 건의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2) 결국 방첩사 체포조 지원을 지시 및 승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조지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재명 등을 우선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한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조지호가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임박해 지자 2024. 12. 4. 00:30경 위 의결을 주도하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조지호가 위 사람들에게 대한 우선 체포지시를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에 대한 최초 지시는 ‘피고인 김용현 → 여인형 →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경로로 하달되고, 경찰 지원에 대한 최초 요청은 ‘여인형 → 피고인 조지호’ 및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정 구민회 →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 경로로 이루어지는 반면,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위 사람들

을 우선 체포하도록 지시한 시점은 2024. 12. 4. 00:33경임에도, 피고인 조지호가 위 사람들을 우선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하였다는 시점은 같은 날 00:30경으로 위 00:33경보다 앞선 시점인바, 이는 위와 같은 지시 하달 경로 및 요청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위 사람들에게 대한 우선 체포 지시가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 및 방첩사의 지휘체계에 따라 ‘피고인 김용현 → 여인형 → 김대우 →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 조장 등’의 경로로 하달되었다는 기재는 있는 반면,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 및 국가수사본부 또는 영등포경찰서의 어떠한 지휘체계에 따라 하달되었는지, 즉 피고인 조지호가 피고인 윤승영 또는 국회로 출동해있던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 등에 대하여 언제, 어떠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우선 체포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다.

②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 조지호가 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2) 결국 피고인 조지호가 2024. 12. 4. 00:30경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 해당 부분들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3. 23:59경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방첩사의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보고 받고 이에 응할 것을 실질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설령 피고인 조지호가 그 후 2024. 12. 4. 00:30경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 내란 범행에 대하여도 여인형 등과 함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피고인 윤승영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윤승영 주장의 핵심은 결국 ①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윤승영은 방첩사 체포조의 임무가 ‘이재명, 한동훈’ 등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을 체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② 서울경찰청 작성 수사관 100여명 명단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윤승영이 지시 등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 주장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위와 같은 인식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윤승영에게 내란죄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 지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방첩사의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요청·보고는 ‘구민회(요청) → 이현일(보고) → 전창훈 및 피고인 윤승영’의 경로로 진행되었고, 그 후 피고인 윤승영이 피고인 조지호에 보고하여 피고인 조지호의 승인 및 지시를 받아 이현일에게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윤승영도 이현일이 구민회로부터 ‘체포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자신도 그와 같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① ‘구민회 → 이현일’ 단계에서 이현일이 구민회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 ‘이현일 → 피고인 윤승영’ 단계에서 피고인 윤승영이 이현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1) 이현일이 구민회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먼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현일이 구민회와 의 2024. 12. 3. 23:32경 통화 내지 같은 날 23:52경 통화(이하 이 부분에서 위 각

통화를 ‘1차 통화’, ‘2차 통화’라 한다) 당시 구민회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개) 구민회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이현일은 구민회와의 1, 2차 통화 당시 구민회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전화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구민회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 등에서 “내가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한다’고 말해준 상대방은 이현일이다.”라고 진술한 구민회의 진술 내용이 유일하다. 그런데 구민회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상대방으로 이현일을 지목하게 된 경위와 근거,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구민회의 진술내용에 의존하여 구민회가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한다’고 말해준 상대방이 이현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먼저, 구민회가 수사과정에서 검찰 3회 조사 당시 체포대상자 관련 대화의 상대방으로 이현일을 지목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구민회는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에서 총 5회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체포대상자를 언급했다는 상대방으로 이현일을 지목하게 된 경위와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최초 위 진술서 작성 및 제출(2024. 12. 9.), 1회 조사(2024. 12. 10.) 때까지는 “(누군가에게)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진술하지 않았다. ㉡ 그 후 2회 조사(2024. 12. 12.)에 비로소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누군가가 ‘도대체 누구를 잡는 거예요’라고 물어보기에 ‘이재명, 한동훈

잡습니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내가 수사지휘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통화였는데, 그 장면(상황)과 대화 내용은 기억나는데,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체포대상자를 언급했다는 점은 진술하면서도 그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술 직후 검사는, 이현일이 “구민회가 방첩사 병력을 국회를 ‘안내’해 줄 경찰 인력을 요청했다(즉, 경찰은 안내만 하고 방첩사 병력이 직접 체포 임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제시하였고, 이에 구민회는 “방첩사에서 직접 체포 임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현일에게) ‘안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리가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제시받은 이현일의 진술 내용을 반박하였다. 이에 따라 방첩사 소속 구민회와 국수본 소속 이현일 사이에서 체포 임무를 직접 또는 주로 수행하는 주체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 조직에게 전가하는 취지의 상반된 진술이 있었고, 구민회는 이현일이 자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㉔ 이후 구민회는 3회 조사(2024. 12. 2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상대방으로 이현일을 지목하게 되었다. 그런데 구민회가 3회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이현일을 지목하게 된 경위 및 그에 관하여 구민회가 설명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㉑ 먼저 검사가 ‘상대방은 경찰이었나요’라고 질문하자 ‘맞다’고 대답하였고, ㉒ 그 후 검사가 ‘그와 같이 말한 것이 2024. 12. 4. 00:13경 (이현일로부터) 경찰관(영등포경찰서 형사) 5명의 명단을 받기 전인가요, 받은 후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 대화를 나눈 시점의 주변 상황이 방첩수사관들이 (방첩수사단 건물 로비에서) 출동을 준비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워, 로비에 있는 사무실(방첩수사단 수사지휘실)에 들어가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현일로부터) 처음 명단을 받은 시점은 2024. 12. 4. 00:13경이고, 그때에는 방첩수사관들이 (방첩수사단 건물 로비를 벗어나) (수갑 등 수사 장비가 준비

된) 체육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무렵이었으니 로비가 많이 소란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체포대상자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은) (2024. 12. 4. 00:13경 이현일로부터) 5명 명단을 받은 후는 아니고, 그 전에 누구를 체포하는 것인지 대화를 나눈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였고, ㉡ 이에 검사가 “5명 명단을 받기 전에 통화한 경찰관은 정한글, 이현일 2명인데 (그 중) 누구와 통화하면서 체포대상자에 관한 대화를 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정한글과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으니 이현일과 대화한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였다.

㉢ 위와 같이 3회 조사에서 검사가 먼저 구민회에게 ㉠ ‘상대방은 경찰이었나요’, ㉡ ‘체포대상자를 말한 것이 2024. 12. 4. 00:13경 영등포경찰서 형사 5명 명단을 받기 전인가요, 후 인가요’, ㉢ ‘위 명단을 받기 전에 통화한 경찰관은 정한글과 이현일 2명인데, 그 중 누구인가요’와 같이 각 질문하여 구민회가 각 대답하였고, 구민회는 그 과정에서 체포대상자 관련 대화의 상대방으로 이현일을 지목하였는데, 위 ㉡ 질문에 대한 대답의 추론 자체는 비교적 자연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검사가 그 전에 이미 위 ㉠ 질문을 하고 그 후부터는 상대방이 ‘경찰’임을 전제로 ㉡, ㉢의 문답이 이루어진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민회는 2회 조사 당시 이현일이 체포 임무를 직접 또는 주로 수행하는 주체와 관련하여 책임을 자신이 속한 방첩사에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을 알게 된 점, 구민회가 이를 알게 된 2회 조사로부터 약 11일이나 지난 후에야 3회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민회가 3회 조사 당시 체포대상자 관련 대화의 상대방으로 이현일을 지목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② 무엇보다도, 구민회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체포대상자 관련 대화의 상대방으로 이현일로 지목하게 된 것은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후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따라

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즉, 구민회는 이 법정에서 “지금도 이현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딱 잘라서 ‘이현일이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누군가와 통화 했었지만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두 이름을 말하며 대화했던 것은 사실이고, 당시의 상황이나 시간대를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 이현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체포대상자 관련 대화의 상대방이 이현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상 이현일로 ‘추정’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조지호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에 대한 검토

① 검사는 피고인 조지호가 이 법정에서 “2024. 12. 3. 23:59경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방첩사의 한동훈 체포조를 지원할 형사 5명 요청’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한바, 경찰 조직의 보고 체계 및 흐름에 비추어 보면 ‘구민회 → 이현일 → 피고인 윤승영 → 피고인 조지호’와 같이 이현일이 구민회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 윤승영에게 보고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윤승영이 위와 같이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조지호의 위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조지호는 이 법정에서 “2024. 12. 3. 22:30~50경 여인형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를 2차례 받았는데, 여인형이 (체포 대상자 명단) 메모를 해 달라고 하면서 사람 이름을 쪽 붙렸는데, 나중에 ‘한동훈 추가’라는 말을 들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조지호는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같은 날 23:59경 전 위와 같이 여인형으로부터 ‘한동훈 추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여인형으로부터 사전에 방첩사에서 한동훈 등 특정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던 피고인 조지호로서는 기억에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가

능성도 있고, 따라서 피고인 조지호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피고인 윤승영의 보고를 통해서 들은 것이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㉔ 다음으로, 피고인 조지호는 당시 위 보고에 대해 “피고인 윤승영에게 ‘준비만 하라’는 취지로 말해 사실상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부분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 윤승영은 ‘피고인 조지호가 승인했다.’고 이현일에게 알렸고, 이에 따라 실제로 영등포경찰서 형사 5명의 명단이 방첩사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에게 전달되었는데(피고인 윤승영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하는 직책인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불과한데, 자신의 직근 상급자인 국가수사본부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그보다 더 상급자인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 지시를 임의로 어겼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피고인 조지호의 진술 내용은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조지호의 “나는 ‘준비만 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렵다면, 피고인 조지호의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한동훈 체포조’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위 진술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㉕ 또한 설령 피고인 조지호의 증언처럼 피고인 윤승영이 2024. 12. 3. 23:5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면서 ‘한동훈 체포조’를 언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로써 ‘피고인 윤승영 → 피고인 조지호’ 단계에서 이루어진 보고 내용을 인정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그 전단계인 ‘이현일 → 피고인 윤승영’에서의 보고 및 그 전전단계인 ‘구민회 → 이현일’에서의 전화통화상 언급에 ‘체포대상자 가 이재명, 한동훈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까지 추인하는 것은 무리이다.

(ㄷ) 그 밖에 검사가 근거로 드는 간접적인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검토 등

① 검사는 2차 통화 직후 2024. 12. 3. 23:57경 이루어진 이현일과 박창균과의 전화통화 녹음(증거순번 2기록 2218번)에 따르면 이현일이 ‘방첩사에서 국회에 지금 체포조를 보낼거야.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금 방첩사 애들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라고 말하였는 바, 위 2개 팀은 신동걸 소령이 이끄는 이재명 체포팀, 최진욱 소령이 이끄는 한동훈 체포팀을 의미하므로 구민회가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화통화 녹음에는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단어 또는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언급이 전혀 없는 점, 구민회는 이 법정에서 “2회 통화 당시 (신동걸 소령이 이끄는) 1조(이재명 체포팀), (최진욱 소령이이끄는) 2조(한동훈 체포팀)가 (방첩수사단 건물에서 장비가 준비되어 있던 별도의 건물인 체육관으로) 출발했을 시점이었다. 그래서 이현일에게 ‘(일단) 방첩사에서 2개 팀 정도 출발했다’라고 말한 것을 이현일이 ‘2개 팀만 간다’고 이해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현일이 2024. 12. 3. 23:57경 박창균에게 전화로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 등과 같이 말하였고, 실제 그 당시 이재명 체포팀, 한동훈 체포팀이 방첩수사단 건물 1층 로비에서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 체육관으로 이동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구민회가 이현일에게 ‘이재명, 한동훈(2명)을 체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그 밖에 수사기획과 수사기획계 서무반장 김준형은 이 법정에서 “이현일과 같은 사무실에서 이현일의 구민회와의 2차 통화를 들었다. 그 통화를 할 때에 내가 계속 있었는데, 다 듣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들었다. 그런데 이현일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물었던 것은 기억에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윤승영이 이현일, 전창훈 등으로부터 ‘체포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이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윤승영이 구민회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 또는 이현일의 직근 상급자인 수사기획과장 전창훈 등으로부터 ‘방첩사 체포조의 체포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이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개)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현일이 1, 2차 통화 당시 구민회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사실을 전제하여 그 다음 단계인 “이현일이 위 말을 듣고 피고인 윤승영에게 ‘방첩사 체포조의 체포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이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한편 이현일이 구민회로부터 ‘국회에 출동하는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경찰의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피고인 윤승영에게 보고한 시점 및 그 방법과 경위는 다음과 같은데, 이에 따르면 이현일은 구민회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윤승영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일단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박창균에게 형사 지원을 요청한 다음, 그 후에 피고인 윤승영에게 사후 보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

① 이현일은 2024. 12. 3. 23:32경 이루어진 1차 통화가 아니라 같은 날 23:52경 이루어진 2차 통화 과정에서 구민회로부터 ‘국회에 출동하는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경찰의 지원을 요청받은 것으로 보인다. 구민회는 이 법정에서 “이현일과의 1차 통화에서 이현일에게 ‘합수부를 운영하기 위해 100명의 수사관들이 온다고 들었다. 해당 인원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현, 즉 워딩이 ‘체포조를 운용하기 위해서 100명을 보내달라’와 같은 워딩으로 말했는지는 기억 안 난다. ‘100명 오게 되면 5명, 5명, 5명 등으로 조를 운용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은 맞는데 1차 통화에서 한 것인지 2차 통화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1차 통화는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로부터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이 국회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기 전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현일도 1차 통화에서는 ‘수사관 100명 및 호송차 20대 지원’과 관련된 말을 들었고, 2차 통화에서 ‘방첩사 체포조’에 관한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② 이현일은 구민회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같은 날 23:57경 박창균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형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③ 그런데 이현일은 위와 같이 박창균에게 요청을 하기 전 피고인 윤승영에게 보고하거나 그와 논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박창균에게 요청하는 선조치를 취한 다음, 같은 날 23:58경 피고인 윤승영에게 전화하여 방첩사의 요청 및 선조치 사항을 후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 2차 통화가 이루어진 2024. 12. 3. 23:52경부터 23:55경까지(2차 통화는 같은 날 23:52:39경 시작되어 약 2분 34초간 진행되어 23:55:13경 종료되었다) 사이에 이현일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북관 7층을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 윤승영은 본관 9층에서 개최되는 국관회의 참석을 위해 북관 7층을 떠나 지하 연결통로를 지나 본관 지하 1층을 통과한 시점이었다[경찰청 출입내역(증거순번 9기록 424번)에 따르면, 피고인 윤승영은 2024. 12. 3. 23:50경 본관 지하 1층을 통과하였다]. 이에 이현일은 피고인 윤승영에게 ‘구민회로부터 국회로 출동하는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경찰의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대면보고하지 못하였고, 일단 2024. 12. 3. 23:57경 박창균에게 전화하여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낸다. 2개 팀 정도가 가는데, 그들을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영등포경찰서 형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선조치를 취한 다음, 같은 날 23:58경 본관에서 국관회의 참석을 기다리던 피고인 윤승영에게 전화를 하여 ‘방첩

사로부터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경찰의 지원을 요청받았는데, 영등포경찰서가 좋겠다’는 취지로 후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23:57경 이루어진 이현일과 박창균과의 전화 통화 녹음(증거순번 2기록 2218번)에 따르면, 이현일은 박창균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형사 5명의 명단을 요청한 다음 통화 말미에 ‘지금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한 거고, 국장님(피고인 윤승영)에게는 바로 지금 가서 전화드릴거야’라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도 이현일이 선조치 후보고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다) 위와 달리 검사는 이현일이 2024. 12. 3. ‘23:32경 내지 23:52경’⁸¹⁾ 2차례에 걸쳐 구민회로부터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현일이 박창균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은 같은 날 ‘23:57경’이므로, 이현일, 전창훈, 피고인 윤승영 사이에 2024. 12. 3. ‘23:32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사이에는 ‘구민회로부터 국회에 출동하는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경찰의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응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윤승영은 ‘방첩사 체포조의 체포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점도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구민회가 ‘국회에 출동하는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경찰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2차 통화가 이루어진 2024. 12. 3. 23:52경으로, 그 당시 피고인 윤승영은 2024. 12. 4. 00:00경 개최되는 국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24. 12. 3. 이미 북관 7층을 떠났으므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검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현일은 2024. 12. 3. 23:32~23:52경 구민회로부터 2회에 걸쳐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 그 무렵 전창훈, 피고인 윤승영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는 기재되지 않음) 보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밑줄 표시한 부분과 같이, 이현일이 구민회로부터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은 시점, 이현일이 이러한 요청사실을 피고인 윤승영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각 요청받은 내용(경찰 인력 100명 등의 지원을 요청한 것과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이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보고한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또한 검사는 국수본에서 이 사건 후 2024. 12. 22.경 작성된 ‘계엄 사태 관련 국수본 지휘기능 등 타임테이블’(증거순번 9기록 190번)에는 아래와 같이 2024. 12. 3. 23:35경 이루어진 조치로 수사기획과장 전창훈이 수사기획조정관(국장) 피고인 윤승영에게 대면으로 어떠한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내용’란에 ‘국수본 수기과장 → 수기국장 대면보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윤승영이 위 23:35경 수사기획과장 전창훈 등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23:32	방첩사 최초 연락 (합수본 구성)	방첩사 ⇨ 국수본(수기계장) 최초 전화 연락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여명, 차량 20대 파견을 요청할테니 미리 준비해달라"
23:35	수기과장 대면보고	국수본 수기과장 ⇨ 수기국장 위 내용 관련 대면 보고 ※ 합동수사본부 설립 시 의무적 협조 사항임을 확인 (계엄법, 계엄법 시행령, 계엄법사령부직제 근거) ※ 수사관 협조 관련 최종 책임자는 경찰청장임을 확인 (경찰법 제14조, 제32조 근거)

그러나 방첩사로부터 최초로 요청을 받은 국수본 인원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인 점, 위 타임테이블에는 보고의 상대방을 앞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열의 ‘키워드’란에는 ‘수기과장 대면보고’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란의 기재는 수사기획 계장 이현일이 수사기획과장 전창훈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었어야 할 ‘국수본 수기계장 → 수기과장 대면보고’의 오기로 보여[실제 이후 2025. 1. 9.경 다시 작성된 계엄사태 관련 국수본 지휘기능 등 타임테이블(증거순번 9기록 309번)은 위와 같은 오기가 정정된 것으로 보인다],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 윤승영이 2024. 12. 3. 00:35경 어떠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내용’란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보고 내용은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여명, 차량 20대 파견을 요청할 테니 미리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방첩사 체포조의 체포대상자가 ‘이

재명, 한동훈’이다.”라거나 “방첩사로부터 ‘국회에 출동하는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경찰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

(배) 피고인 조지호는 이 법원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윤승영이 국관회의 직전 ‘방첩사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피고인 조지호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조지호가 기억에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 조지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내용만으로 피고인 윤승영이 이현일, 전창훈 등으로부터 ‘체포대상자가 이현일, 한동훈이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현일이 구민회로부터 ‘체포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윤승영이 이현일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윤승영이 체포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 등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서울경찰청 작성 수사관 100여명 명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현일이 2024. 12. 3. ‘23:32~23:52경’ 구민회로부터 2차례 걸쳐 요청을 받았고, ‘그 무렵’ 전창훈, 피고인 윤승영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그 사이’ 전창훈은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에 지원 요청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윤승영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윤승영은 이를 승인하였다.”는 것이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현일이 구민회로부터 수사관 100명

등 지원을 요청받은 시점은 2024. 12. 3. 23:32경인 점, 전창훈이 김경규에게 지원 요청을 한 시점은 같은 날 23:40경인 점은 분명하나, 이와 달리 피고인 윤승영이 위와 같은 방첩사의 요청을 보고받은 시점이 불분명하고 그 시점은 피고인 윤승영이 전창훈의 요청 전에 지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① 피고인 윤승영이 이현일, 전창훈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시점을 먼저 판단한다. 그 다음으로 ②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등 지원 요청이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지원을 승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윤승영이 보고받은 시점 및 피고인 윤승영의 사전 지시 여부

(가) 검사는, 이현일이 2024. 12. 3. 23:32경 구민회로부터 ‘경찰 100명 및 호송차 20대의 지원’ 요청을 받고 이를 23:36경 전창훈에게 뿐만 아니라 즉시 피고인 윤승영에게도 보고했으며, 피고인 윤승영은 같은 날 2024. 12. 3. 11:35경부터 11:48경까지 전창훈과 함께 YTN 시청을 하면서 대화를 하였으므로, 이때 전창훈이 이현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보고하거나 전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4. 12. 3. 국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23:49경 내지 23:50경’에야 비로소 수사기획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 윤승영이 위 ‘23:49경 내지 23:50경’ 보고 전인 ‘방첩사의 요청(23:32~23:35) 후 즉시 내지 23:35경’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현일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윤승영이 국관회의(2024. 12. 4. 00:00경 개최 예정) 개최 10분 전 쯤 국관회의를 가기 위해 저희 사무실(수사기획담당관실) 앞 복도를 지나가실

때 잠깐 불러서 보고드렸다. 그 전에 보고드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이현일은 이 법정에서 “2024. 12. 3. 23:35경 구민회와의 1차 통화를 마칠 무렵 복귀하여 23:36경 북관 7층 수사기획과 사무실(수사기획담당관실)에 들어가 전창훈에게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요청에 대해 보고하였다. 전창훈과 사이에 명단을 준비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였고, 전창훈이 23:40경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에게 전화해서 ‘명단을 준비해 놓으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장님(피고인 윤승영)에게도 보고를 하였는데, 국장님이 12시 국관회의(2024. 12. 4. 00:00경 개최 예정)가 있기 10분 전쯤 국관회의를 가기 위해 저희 사무실(수사기획담당관실) 앞 복도를 지나가실 때 잠깐 보고드릴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국장님이 잠깐 수사기획담당관실 안으로 들어 오시자마자 제가 문 앞에 서서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요청에 대해 보고를 드렸다. 옆에 전창훈도 서 계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장님이 당시 수첩에 ‘방첩사’, ‘합동 수사본부’,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파견지 과천’ 이런 것들을 적으셨다.”, “과장님께 보고 드린 이후 국장님께 보고 드린 시간이 조금 걸린 것은 제가 방첩사 요청사항의 근거에 관해 법령을 찾아보고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었기 때문이다. 그 전에 제가 국장님께 따로 보고 드린 기억은 없다. 국장님이 올라가시는 걸 보고 회의 가시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랴부랴 국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현일은 위와 같이 피고인 윤승영에 대한 최초 보고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법령을 검토하고 전화통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인 이현일의 전화통화 내역(증거순번 9기록 425번)에 따르면 이현일은 구민회와의 1차 통화를 23:35:11경 종료하였고(1차 통화는 23:32:56경 시작되어 약 2분 15초간 진행되어

23:35:11경 종료되었다), 그 후 3차례 전화통화(박종민과의 23:36:20경~23:38:09경 통화, 박현준과의 23:45:50경~23:46:15경및23:47:16경~23:47:44경각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현일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수사기획과 수사기획계 서무반장 김준형은 이 법정에서 ‘12시 전(2024. 12. 4. 24:00전)은 아주 짧은 순간에 모두들 정신없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순간이었고, 그 당시는 빨리빨리 파악하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각자 급한 상황이 있으면 필요하면 국장(피고인 윤승영)에게 보고하는 것이지, 뭔가 논의하고 토론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들은 위와 같은 이현일의 설명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② 전창훈도 이 법정에서 이현일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즉, 전창훈은 이 법정에서 “국관회의 직전인 23:49경 내지 23:50경에 국장님(피고인 윤승영)이 우리 과 사무실(수사기획담당관실)에 들렀었기에 그때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방첩사에서 수사 인력 100명, 차량 20대 지원 요청한 사실’을 보고 드렸다. 당시 제 옆에 이현일도 함께 있었다.”, “당시 국장님(피고인 윤승영)께서 보고받을 당시에 헛갈려하고 난처해하는 얼굴 표정이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전창훈은 검찰 조사 시 “이현일로부터 보고받고, 그 내용을 ‘곧바로 피고인 윤승영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창훈은 이 법정에서 “그것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고, 통상 그렇게 보고가 되면 계장(이현일)이 국장(피고인 윤승영)에게 보고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피고인 윤승영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 피고인 윤승영에게도 보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고체계상 내가 이현일에게 ‘국장님(피고인 윤승영)에게도 보고하라’라고 지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현일이 피고인 윤승영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현일이 실제 보고를 했는

지, 언제 어디서 보고를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단지 본인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수사기획과 수사기획계 서무반장 김준형은 검찰 조사 시 ‘전창훈이 출근한 후 국장실에 왔다갔다 했다. 이현일과 전창훈이 같이 국장실(피고인 윤승영의 사무실)에 가서 보고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김준형은 이 법정에서 ‘이현일이나 전창훈이 각자 국장실을 들어가는 것을 명시적으로 본 것은 아니다.’, “검찰에서 진술할 때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2명이 국장실을 갔다 왔는지 잘 모른다’라고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은, 그와 같 이 구분해서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위 2명 이 국장실에 ‘간 것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고 ‘간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도 나의 추측이었다. 위 2명이 밖에 나가면 내가 명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아 저쪽(피고인 윤승영의 사무실)으로 가시겠구나’라고 추정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단지 본인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김준형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 윤승영이 국관회의에 참석하러 이동하기 전 이미 이현일이나 전창훈으로부터 방첩사의 요청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한편 국수본에서 이 사건 후 2024. 12. 22.경 작성⁸²⁾된 ‘계엄 사태 관련 국수본 지휘기능 등 타임테이블’(증거순번 9기록 190번)의 12. 3. 23:35경 이루어진 조치로 기재된 ‘내용’ 란에 ‘국수본 수기과장 → 수기국장 대면보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국수본 수기계장 → 수기과장 대면보고’의 오기로 보인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근거로 23:35경 피고인 윤승영에 대한 대면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82) 전창훈과 이정도가 같이 작성함. 309번은 1.9.자 작성된 것인데 위와 같은 오기가 정정됨

⑤ 또한 검사는, 피고인 윤승영의 자필 메모(증거순번 2기록 508번)에 따르면 ‘11:35~11:48 사무실에서 YTN 시청 및 수기과장(전창훈) 대화’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무렵 전창훈으로부터 이현일이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메모는 피고인 윤승영이 기억나는 대로 기재한 것이어서 시점 등에 대한 기재가 부정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내용에 따르더라도 23:35경부터 23:48경까지 사이에 사무실에서 YTN을 시청하고 전창훈과 대화를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지, 전창훈과 계속 대화를 했다거나 이현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다.

(나) 따라서 전창훈이 2023. 12. 3. 23:40경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에게 요청한 것은, 피고인 윤승영에 대한 최초 보고가 있는 같은 날 23:49경 내지 23:50경 전에 선조치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 윤승영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의 요청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지원을 사후 승인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윤승영은 2024. 12. 3. 23:49경 내지 23:50경 국관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방첩사의 요청 및 전창훈의 선조치 사항을 간단히 보고받았고, 국관회의가 끝난 후 2024. 12. 4. 00:20경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창훈에게 ‘합동수사 100명은 명단을 준비하라’고 말하여 승인 내지 지침하달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윤승영이 위와 같이 보고받거나 승인 내지 지침하달을 할 당시 방첩사의 요청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등 지원 요청’을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과 상황, 그리고 그 내용은, 2024. 12. 4. 00:00경 예정된 국관회의 참석

을 위해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북관 7층에서 나와 이동하던 중 2024. 12. 3. 23:49경 내지 23:50경 같은 층에 있는 수사기획담당관실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간단히 보고받은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피고인 윤승영이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을 당시 전창훈, 이현일 등에게 위 요청과 관련한 어떠한 지시를 하였거나 구체적으로 전창훈의 건의를 승인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② 피고인 윤승영은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직후 전창훈, 이현일 등과 논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북관 7층에서 국관회의가 개최되는 회의실이 있는 본관 9층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전창훈만 동행하고 이현일은 동행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윤승영은 북관 7층에 도착해서 국관회의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3:58경 이현일로부터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보고받았고, 그 직후 23:59경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대면보고를 실시하였으며,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대면보고가 끝난 후 2023. 12. 4. 00:00경부터 00:20경까지 국 관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윤승영은 2024. 12. 3. 23:49경 내지 23:50경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등 지원 요청’을 최초로 보고받은 다음 2024. 12. 4. 00:20경 전창훈에게 승인 내지 지침하달을 할 때까지는 본관으로의 이동, 이현일로부터의 추 가 요청 보고,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대면보고, 국관회의 참석 등이 있었던 이유로,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등 지원 요청’이 적법한지, 그 절차는 어떠한지는 물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더욱이 다음과 같은 이현일, 구민회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현일은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등 지원 요청’과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요청’은 별개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현일은 이 법정에서 ‘1차 통화에서 구민회가 요청한 경찰 100명(서울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 관련)과 2차 통화에서 구민회가 요청한 경찰 5명(방첩

사 체포조 관련)은 별개라고 인식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구민회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통화 (2024. 12. 3. 23:32경 이현일과의 1차 통화)에서 말했던 (경찰) 100명은 체포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100명을 받아서 그들을 5명씩 나누어 다른 기관(방첩사, 국방부 조사본부)과 TF를 구성해서 체포조를 운영해야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현일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경찰 100명이 전부 체포에 들어가는 요원이다(방첩사 체포조와 함께 합동체포조를 구성한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이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 과정을 보니) 이현일이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방첩수사단)가 생각했던 것은 경찰 100명을 받아서 그들을 5명씩 나누어 체포조의 일원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전달(요청)했는데, 이현일은 100명은 별도의 100명으로 생각하고, 내가 ‘5명, 5명, 5명, 10명으로 25명 한 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한 것을 (이현일은) ‘5명만 보내주면 되는구나’라고 이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여, 본인 내지 방첩사의 의도와는 달리 이현일 내지 경찰에서는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윤승영은 2024. 12. 3. 23:49경 내지 23:50경 국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등 요청’을 간단히 보고받았을 뿐, 그 전에 이를 보고받아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윤승영이 2024. 12. 4. 00:20경 전창훈에게 지침을 내릴 당시 방첩사의 요청이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전창훈의 조치를 사후 승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윤승영에게 내란죄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피고인 윤승영에 대한 공소사실은 결국 방첩사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경력

100명의 지원을 요청하고, 방첩사 체포조가 국회의원이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는 것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식·공유하면서도 이에 공모·가담하여 방첩사의 지원 요청에 협조함으로써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윤승영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인식·공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윤승영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인식·공유하면서 방첩사의 위 지원요청에 협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윤승영의 변호와 같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방첩사에서 군과 경찰 등으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이에 필요한 경력을 지원하도록 협조한 것이고, 계엄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국회 인근으로 방첩사 체포조가 출동한 것으로 알고 체포조를 지원하도록 협조한 것이었을 뿐 위 합동수사본부 및 방첩사 체포조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국회의원이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 윤승영은 대국민담화를 보지 못하여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제 사무실에 출근한 시각도 23:29경이다. 출근 후 국관회의를 가려던 도중 잠시 전창훈과 이현일로부터 방첩사의 경력 100명 지원 요청 사실을 들었고, 이에 대해 사무실에 있던 인원들과 잠시 상의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력을 보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윤승영은 국관회의를 위해 회의실에 가 있다가 이현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방첩사 체포조가 국회로 오는데 당장 경력 5명의 지원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을 뿐이다. 방첩사 체포조가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등의 체포대상자를 체포할 임무를 부여 받아 국회로 출동하였다는 사실에 관해 아는 바가 없었고, 이를 들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찰이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 요원으로 경력 100명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던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체포조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크게 의문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윤승영은 피고인 조지호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을 만나 ‘국회가 반국가세력이 되어 이를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니 경찰이 국회 질서유지를 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조지호는 국관회의 때도 피고인 윤승영 등 참석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을 만나 지시를 받은 사실을 밝힌 바 없다.

④ 피고인 윤승영은 국관회의 직전에 잠깐 틈을 보아 피고인 조지호에게 위와 같은 방첩사의 지원 요청 두 가지를 짧게 보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윤승영과 피고인 조지호는 당시의 대화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르게 진술하나,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의 위 두 가지 요청을 아주 짧게 간단히 보고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⑤ 피고인 윤승영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방첩사가 사전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등 특정 체포대상자를 정하여 두고 체포조를 보낸 사실을 몰랐다.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법 등을 어기는 일반적인 계엄사범을 검거·체포하기 위해 체포조가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만약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등 특정 체포대상자를 정하여 두고 체포조가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알았다면, 수사기획조정관인 피고인 윤승영으로서는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기 전에 체포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영장 등을 갖추었는지, 어떤 혐의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한 뒤 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윤승영이 전창훈, 이현일 등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파악해 볼 것을 지시하거나 그 타당성 등에 의문을 표시하거나 검토를 명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이현일이나 전창훈 역시 마찬가지다.

⑥ 국관회의는 12. 4. 00:00에 개최되었고, 피고인 윤승영의 동선을 살펴보면 적어도 국관 회의 약 10분 전부터는 전창훈, 이현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는 등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주의 깊게 접할 시간을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회 경내에 군 병력이 실제 들어온 시간은 707특수임무단이 헬기를 이용해 23:48경 국회 운동장에 착륙해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을 때이다. 피고인 윤승영이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기 전에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국회에서 2차 출입통제를 한 시각은 23:35경이기는 하나 경찰청 본청의 근무자들은 이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임정주는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청 본청 사람들은 국회 2차 출입통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다수의 경찰들은 비상계엄 후 국회 출입통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 군이 투입되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 윤승영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⑦ 보기에 따라서는, 피고인 윤승영이 미필적으로나마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국회의원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방첩사에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방첩사 체포조가 국회로 온 것’이라는 사정을 내심 인식하고 그러한 목적을 공유하여 방첩사의 위와 같은 요청에 협조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정도 없는 것은 아니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윤승영이 그와 같은 목적을 인식·공유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윤승영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한 결론

(1) 결국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승영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공소사실과 같이 이현일이 구민회로부터 요청을 받을 당시 ‘(체포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이현일이 피고인 윤승영에게 위와 같은 체포대상자를 보고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등 지원 요청’이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 체포를 위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에라도 승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무엇보다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윤승영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과 공모하여 그들의 내란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윤승영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5.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윤석열

가) 선관위 출동 목적에 관한 주장

선관위 과천청사에 정보사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 등 정보사 선발대 10명이 출동하였는데, 그 목적은 방첩사 병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불순세력이 선관위 서버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이와 같이 선관위 내지 선관위 서버를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인식하였고, 실제 임무도 이와 같았다.

방첩사 병력도 선관위 등으로 출동하여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목적도 정보사 선발대 10명이 출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관위 등의 서버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구체적 폭동행위 부인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행위로 평가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었다.

(1) 정보사 선발대 10명이 수행한 임무는 아무런 물리력 행사 없이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지침을 받고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했고, 이들이 공포탄이 없어 부득이 실탄을 챙겨가긴 하였으나 실탄은 차량에 통합 보관하였고 실제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할 때에는 공포탄과 실탄이 없는 빈총에 불과했다. 이후 이들의 임무 수행은 실제로도 아무런 물리력 행사 없이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이들은 선관위에 강압적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안내와 협조를 받아 진입한 것이고, 선관위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받지도 않았다.

특히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관한 조치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전혀 사용을 못 하도록 통제한 것이 아니라, 유언비어가 퍼지거나 외부와의 불필요한 연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직원과 선발대 병력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고동희가 선관위 직원 5명의 명단을 전달받은 것은 그들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고, 선관위 서버실 내부 등 현장을 촬영한 것은 문상호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선관위 조직도를 촬영한 것은 현장에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 윤석열 또는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며,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어떠한 물건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2)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대령 내지 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 대령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정보사 요원 36명이 정보사령부에 소집되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어떠한 임무도 받지 않은 채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 후 해산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구체적 폭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방첩사 병력도 목적지인 선관위 과천청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꽃 (이하 위 4곳을 합하여 ‘선관위 등’이라 한다)의 건물에 도착한 사실 자체가 없고 목적지와 한참 떨어진 장소에서 대기만 하다가 복귀 지시에 따라 복귀한 것에 불과하며, 누군가를 폭행·협박한 사실 또는 다른 군부대나 기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하거나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구성 등에 관한 주장

검사가 주장하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 배치될 예정이었다.’는 정보사 요원들(수사2, 3부 배치 예정)과 군사경찰들(수사1부 배치 예정)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나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와는 무관하고, 피고인 노상원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의 실질

적인 단장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2, 3부에 배치될 예정이었다는 정보사 요원들은 처음부터 제2수사단에 배치되기 위해 선발된 것이 아니라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발된 것이다. 즉, 정보사 요원 선발은 피고인 김용현이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여 그에 관한 지침을 준 것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사 요원 선발 요청은 2024. 9. 초순 내지 중순경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 또한 검사는 정보사 요원 선발 지시에 관하여 ‘특수임무수행요원을 포함시켜라.’라는 지시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문상호는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

(2) 또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1부에 배치될 예정이었다는 피고인 김용균 작성의 군사경찰 추천명단에 기재된 인원들도 부정선거 수사를 위하여 선발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 김용균은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국방개혁 TF 구성을 위한 인원’의 추천을 요청받고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 노상원에게 주었을 뿐이지,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은 부정선거나 선관위에 대한 수사와는 무관하고 그러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능력도 없다.

(3) 한편 제2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없었고 수사경험이 없는바, 피고인 노상원이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제2수사단 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 노상원이 비상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가서 실제 수사를 지휘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노상원은 ‘정보사 100여단’에 가려고 했던 것이었다.

라) 피고인 윤석열의 정보사 병력에 대한 선관위 출동 지시 사실 부인

피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비로소 정보사 병력의 선관위 출동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윤석열은 정보사 병력의 선관위 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김용현

가) 선관위 출동 목적에 관한 주장

특전사, 방첩사 등 군 병력과 경력이 선관위에 출동한 목적은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선관위를 방호·보호하거나 선거정보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선관위를 점거하거나 서버를 반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 구체적 폭동행위 부인

군 병력이 선관위에 대하여 실제 실행한 조치는 시설방호, 출입통제, 우발사태 예방, 질서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이를 두고 특정 지역의 평온을 깨뜨리기 위한 무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선관위 과천청사 등의 인근 지역이 평온하게 유지되었으며,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전혀 없었고 군인들이 ‘협조’를 요청하여 선관위 직원들이 이에 응하였을 뿐이며, 자료 탈취가 없는 등 선관위의 피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정보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로 합동수사본부 자체가 구성되지 못하였고, 검사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2, 3부 소속이라는 주장하는 정보사 요원 36명이 선관위 직원 등 민간인을 실제로 체포하려는 실행행위나 그 착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 ② 또한 특전사 병력은 선관위 과천청사 1층 로비,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인근에 방호를 위해 잠시 대기하였을 뿐 그 직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았다. 또한 출동한 정보사 및 특전사 군인들의 무장 상태는 비례 원

칙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수준이었다. ③ 한편 경찰과 관련하여, 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인근에 경력이 배치되고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가 이루어진 것은 계엄 선포 시 민·군 협력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조치 과정에서 폭행·협박·사회혼란이 수반되지 않았다. ④ 더욱이 방첩사 병력은 선관위 청사 내부나 서버실에 진입하지 못한 채로 임무 종료를 통보받고 복귀하였을 뿐, 방첩사 군인들이 서버의 점거, 장비의 분리 등을 시도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치 등을 두고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 폭동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피고인 노상원

가) 선관위 출동 목적에 관한 주장

고동희 대령 등 정보사 선발대 10명이 출동한 목적은 선관위 서버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설령 공소사실 내지 검사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노상원의 행위는 선관위 과천청사에서의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위하여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의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선거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 노상원에게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폭동행위 부인

선관위 과천청사의 경우 몇 명의 군인 및 경찰이 출동했을 뿐이고 이는 선관위 과천청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선관위 과천청사 직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일대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합동수사본부 제2합동수사단의 실질적 단장 역할 부인 등

피고인 노상원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비상계엄과 관련된 명령을 받은 피고인 김용현의 임무수행을 극히 부분적으로 조력하였을 뿐, 합동수사본부 제2합동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라) 선관위 과천청사 외에서의 계엄사무 인지 부인

피고인 노상원은 ‘선관위 과천청사’에서의 계엄사무 수행만 인지하였을 뿐, 국회 등 그 외 장소에서의 계엄사무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한 바 없으므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서의 폭동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즉, 피고인 노상원은 선관위 과천청사 외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꽃과 관련된 계엄사무에 대하여는 일체 관여하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가 아닌 위 5개 장소와 관련된 계엄사무에 대하여도 피고인 노상원을 내란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형사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마) 공모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

(1)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에서의 사실관계 부인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9. 오후 무렵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에서, ‘계엄과 같은 상황’, ‘선관위에 가야할 수도 있다’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정보사 중앙신문 단장 김봉규 대령에게 계엄임무가 기재된 A4용지 10여장의 임무문건 2부를 교부하고, 그 중 1부를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 대령에게 전달하게 한 사실도 없다.

(2) 2024. 11. 17. 안산 롯데리아 모임에서의 사실관계 부인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17. 15:00경 롯데리아에서 문상호와 정성욱에게 임무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선관위 직원을 위협할 물품을 구입하라고 재촉한 사실이 없다.

(3) 2024. 12. 1. 안산 롯데리아 모임에서의 사실관계 부인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1.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최초로 들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을 만나 계엄 시 정보사의 임무에 관한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을 뿐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 노상원은 공소사실과 같이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제2수사단 수사2, 3부와 관련하여 ‘기존에 지시했던 임무를 숙지하라’고 지시한 사실, 문상호에게 정보사 선발대 10명과 관련하여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중앙선관위로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 등을 확보해라. 믿을만한 인원으로 10 명 정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4)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 모임에서의 사실관계 부인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3.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오늘)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라는 말을 최초로 들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롯데리아에서 피고인 김용균을 만나 계엄 시 조언이 가능한지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뒤늦게 합류한 구삼희, 방정환에게 ‘그들이 제2합동 수사단의 단장, 부단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피고인 김용현의 말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 노상원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김용균에게 ‘오늘이 계엄이다.’라고 알려 준 후 제2수사단 조직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보여주면서 제2수사단 수사1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신문 대상자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 김용균, 구삼희, 방정환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문상호와 통화하면서 정보사령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한 사실, 피고인 김용균에게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이 없다.

4) 피고인 김용균

가) 2024. 11.경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군사경찰 추천 요청 사실 및 제2수사단 수사1

부의 구성 관여 내지 인원 선발 사실 부인

피고인 김용균은 피고인 노상원의 요청에 따라 2024. 11. 6. 군사경찰 25명을 기재한 명단(이하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이라 한다)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같은 달 10. 피고인 노상원을 만나 직접 위 명단을 건네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김용균은 공소사 실과 같이 2024. 11. 초순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하니’라는 말을 듣거나 ‘수사 잘하는 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김용균이 작성한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하여 수사요원을 추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김용균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1부의 구성에 관여하거나 수사1부의 구성원으로 선발하기 위해 위 명단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 김용균은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에서 (구삼회와 방정환이 도착하기 전) 피고인 노상원이 보여준 제2수사단 조직도를 보고 앞서 보내준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으로 제2수사단 수사1부를 구성한 것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나) 2024. 12. 3.자 3차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서의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한 임무수행 논의 등 사실 부인

(1) 피고인 김용균은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구삼회, 방정환이 도착하기 전 피고인 노상원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사경찰 자문 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보여준 제2수사단 조직도를 보고 앞서 보내준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으로 제2수사단 수사1부를 구성한 것에 항의하였다. 이후 단지 피고인 노상원이 ‘구삼회 등이 오니 내 체면을 봐서 자리에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후에도 위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 김용균은 공소사실과 같이 구삼회, 방정환이 도착하기 전 피고인 노상원의 위 제안을 수락하고 노상원과 함께 수사1부의 준비상황을 확인

하거나 체포 및 신문 대상인 중앙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 노상원이 보여준 제2수사단 조직도를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피고인 김용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에 구삼회, 방정환이 도착한 후 구삼회, 방정환과 함께 선관위와 관련된 계엄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거나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한 서버 확보를 논의한 사실, 피고인 노상원이 구삼회, 방정환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지시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

5) 피고인 조지호

가) 피고인 조지호의 계엄군 임무수행 지원 목적 부인

피고인 조지호가 경기남부경찰청의 경력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배치하도록 지시한 목적은 계엄군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 등 민간인과 계엄군의 충돌이 우려되어 우발사태를 대비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조지호는 계엄군의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등 임무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에게 경력 출동을 지시할 당시 계엄군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출입통제’ 지시 부인

피고인 조지호는 선관위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우발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 즉,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이 ‘우발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묻자 ‘평상시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통제하고 나오는 사람은 내보내라’고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

다) 지시의 구체적 내용 부인 등

한편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총기와 실탄을 소지’하고 출동한

것은 과천경찰서의 자체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조지호가 총기 등을 소지하고 출동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또한 수원서부경찰서장 김재광이 수원 선거연수원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신원을 불문하고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은 김재광이 김준영의 지시를 오해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중 ① ‘정보사, 특전사, 방첩사 등 군 병력이 선관위 4곳에 출동을 한 목적은 불순세력 등으로부터 선관위 청사 및 서버 등을 보호하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 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거나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서버를 반출·탈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경력이 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출동한 목적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계엄군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하 이 부분에서 ‘공통주장 ①’이라 한다), ② ‘출동한 군 병력, 경력 등은 선관위 직원들 등에 대한 어떠한 폭행·협박·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임무수행은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므로 선관위 등과 그 인근 평온을 해하는 구체적 폭동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하 이 부분에서 ‘공통주장 ②’라 한다)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균, 피고인 조지호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③ “소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다. 즉, ㉠ 정보사 요원 선발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수사2, 3부 구성과 그에 따른 부정선거 수사와는 무관하고, ㉡ 피고인 김용균이 작성한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은 ‘국방개혁 TF 구성을 위한 인원’ 추천 명단이지 수사1부 구성과 그에 따른 부정선거 수사와는 무관하며, ㉢ 피고인 노상원은 제2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이하 이 부분에서 ‘공통주장 ③’이라 한다)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균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먼저 위 공통주장 ①, ②, ③에 대하여 판단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개별 주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판단한다(한편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뒤에서 판단한다).

1) 선관위 등 출동 목적 관련 주장(공통주장 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출동 목적의 인정 여부

먼저 이 부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선관위 등 4곳 출동 목적인 ‘불순세력 등으로부터 선관위 등을 보호하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은 인정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군 병력이 출동할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대해서 실질적이든 추상적이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협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비록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시위나 집회가 비교적 소규모로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후 내지 군 병력이 선관위 3곳으로 출동할 즈음에는 특별히 군 병력이 출동하여 질서유지를 하여야 할 만한 규모의 시위나 집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일대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은 이 법정에서 ‘평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30명 내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이나 선관위 청사 주변에서 집회를 한 것으로 정보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는 큰 관심을 두는(크게 경비수요가 필요한) 집회 사항

은 아니었다. 2024. 12. 3. 앞뒤로 약 일주일 정도 기간에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정보과나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서 선관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동향을 보고받은 것이 없다. 그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가 그 기간에 있었는지는 기억에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정보사 선발대 10명이 가장 먼저 출동한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일대는 특별히 경력으로 질서유지를 하여야 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던바, 경력을 넘어서 군 병력을 동원하여 질서유지를 하여야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이는 선관위 관악청사 일대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여론조사꽃은 단지 민간 여론조사 업체일 뿐 선관위의 하부기관이라거나 헌법 기관이 아님에도 특전사 제9공수특전여단 52대대 병력들이 출동하여 건물 앞을 점거하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런데 여론조사꽃 일대도 선관위 과천청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일대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경력을 넘어서 군 병력이 출동하여 질서유지를 유지하여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군 병력이 수행하기로 예정된 임무 등에 따라 추정되는 출동 목적

오히려 아래와 같은 선관위 등으로 출동한 군 병력의 예정된 임무 등에 비추어 보면, 군 병력과 경력이 선관위 등으로 출동한 목적은 공소사실 내지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른바 ‘부정선거 내지 여론조작’의 증거를 찾기 위하여 서버를 확보하고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 정보사 선발대 10명의 예정된 임무

먼저 문상호의 지시로 정보사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 등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대기하다가 선포 직후 청사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그들이 편성된 경위, 그들에 대한 지시 내용, 그들이 출동한 경위, 진

입 후 구체적으로 수행한 임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선발대 10명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한 목적 내지 수행한 임무는 방첩사 병력 등 서버장비 내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전산실 및 서버실에 대한 통제권한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가)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1.자 2차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상호에게 ‘선발대 (또는 1개 팀)를 먼저 보내서 전산실에서 서버실을 확보해라. 1개 팀(선발대)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추가 인원을 투입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선관위 과천청사의 서버실 등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선발대를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상호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 12. 3. 오전경 정보사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 및 작전과장 서지윤 중령에게 ‘소령급 인원 8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고동희, 서지윤과 소령급 인원 8명을 포함한 정보사 선발대 10명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사 선발대 10명이 편성된 이유는 선관위 과천청사의 서버실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나) 문상호는 2024. 12. 3. 16:00경 내지 17:00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로 ‘선관위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고동희에게 ‘선관위 청사(과천청사)에 들어가 출입통제를 하고 전산실 위치를 파악하고, 서버실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라고 구체적 임무 장소와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후 고동희, 서지윤을 포함한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같은 날 20:00경 정보사 소회의실에서 집결하였고, 이때 고동희는 선발대 인원들에게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출입통제하고 전산실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서버실을 확보해야 한다.’와 같이 임무 장소와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출동 직전에 전산실 내지 서버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임무를 숙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타) 이후 선발대 10명은 같은 날 20:30경 정보사에서 출발하여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으로 이동하였고, 21:00경 내지 21:10경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도착하였으며, 고동희는 문상호에게 대기하고 있는 위치를 보고하였다. 고동희가 같은 날 21:24경 문상호에게 ‘선관위 청사에 근무 중인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문상호는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야근 인원들은 퇴근시키고, 외부 인원들 출입을 통제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침을 받았고, 고동희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지시하였는데, 당시 ‘다른 팀이 가면 전산실을 인계하고 철수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도 함께 하였다. 이와 같이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일단 초동조치로 선관위 전산실 등을 확보한 다음 이를 ‘다른 팀’에게 인계하는 것을 전제로 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상호는 같은 날 21:40경 내지 21:50경 자신의 수첩에 적힌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고동희의 보안폰으로 전송해주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에 대한 군사법원 사건에서 ‘(문상호에게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준 이유에 대하여) 계엄이 선포되면 서버실이 핵심이기 때문에 전산실에 서버와 관련된 요원들이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 방첩사가 인계를 받는다. 그런데 처음에 서버의 위치, 비밀번호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산실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명단을 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위와 같이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공유해준 것도 전산실 직원의 협조를 받아 서버를 확보하여 ‘방첩사’ 병력에게 인계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위와 같이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22:27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문상호로부터 ‘청사 진입 등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청사 내부에 진입한 후 1층에 있는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산실을 찾아 2층으로 올라갔다. 이와 관련하여 고동희는 “현장에 갔을 때(선관위 과천청사 내부에 진입했을 때) 2층 전산실만 확보하면 (되어서) 어차피 출입통제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들을 1층 좌·우측 이렇게 안 보내고 1층만 확인하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갔다. 당시 1층에 있는 건물안내도를 보니 2층이 ‘정보, 전산’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전산실을 찾아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경비실(안내실)에 ‘2층 신관 후문 전산실’라는 표시가 있어서 ‘2층 신관 후문 쪽에 전산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ACC에게) ‘2층 신관 후문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외부로부터의 출입통제나 사무실 확보보다는 ‘전산실 확보’ 임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외부에서의 불순세력 등이 선관위 청사 내지 서버실을 점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외부 경계 임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그러지 않았다.

(㉸) 문상호는 고동희에게 서버실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고동희가 처음에는 서버실 출입문 쪽에서 서버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촬영하여 전송해주었는데, 그 사진만으로는 해당 사진이 선관위 서버실을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통합선거인명부 관리 서버’, ‘통합스토리지 서버’라는 등으로 기재된 서버 장비를 촬영하여 전송해주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선관위의 서버실’, ‘선관위 서버 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동한 것으로 보인다.

(㉸) 문상호는 같은 날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방첩사에서 1개 팀이 (선관위 과천청사로) 갈 것이니 방첩사에 인계하고 철수해라. (방첩사

1처장) 정성우에게 연락해보라'는 말과 함께 방첩사 1처장 정성우의 연락처를 전달받았고, 같은 날 22:48경 내지 22:49경 정성우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 다음 문상호는 고동희에게 전화하여 '방첩사에서 인수받을 팀이 갈 것이다. 인계해주고 철수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그 후 문상호는 고동희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방첩사 병력이 도착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설령 자신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방첩사 병력이 도착할 것을 예정하고 출동한 것이고, 선관위 과천청사에서의 예정된 구체적 임무는 초동조치로서 서버실을 확보한 다음 방첩사 병력에게 인계해주는 것이었다.

(2) 정보사 요원 36명의 예정된 임무

또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2부장으로 예정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대령, 수사3부장으로 예정된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 대령이 선발한 정보사 요원 40명 중 약 36명은 정보사령부 본부 100여단에 집결하여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전 모임에서의 지시 내용, 김봉규과 정성욱이 위 36명에게 설명한 임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6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하여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임무는 2024. 12. 4. 06:00경까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도착하여 같은 날 아침 내지 오전 무렵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선별하여 체포한 다음 수방사의 시설에 이송하는 것, 그밖에 수방사의 시설을 (구금 또는 수용으로서 적합한지) 점검하는 것, 부정선거와 관련한 자수를 안내하는 것 등이었다.

(개) 피고인 노상원, 문상호, 김봉규는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에 모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 김봉규에게 '계엄 같은 상황'을 언급하였고, 김봉규에게 임무 문건 2부를 주었고, 김봉규는 그 중 1부는 자신이 가지고 다른 1부는 다음 날 정성욱에게 전달하였다.

위 문건에는 초반부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고,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 김봉규, 정성욱이 해야 할 행동요령, 신병확보의 대상인 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 케이블타이 등 정성욱이 사전에 구매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물품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계엄이 선포될 경우 김봉규, 정성욱이 해야 할 행동요령 내지 임무 내용으로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06:30까지 중앙선관위로 갈 것’, 정성욱의 임무로 ‘선관위 직원 30명이 출근하면 그들을 (김봉규가 확보한) 회의실로 데리고 갈 것’, 김봉규의 임무로 ‘인사부서를 통해 중앙선관위 직원 현황을 확인하고 회의실 2~3개를 확보할 것’,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및 선거조작 관련 양심제보를 할 수 있는 안내 공고를 할 것’, ‘일반전화 3개 회선을 개설하여 양심제보를 받을 것’, ‘수방사 문서고(B1병커)에 인원과 차량의 출입과 관련하여 수방사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을 것’, 김봉규의 임무 또는 정성욱과 김봉규의 공통임무로 ‘30명 정도의 인원들 (선관위 직원들)이 확보되면 수방사 문서고로 데리고 갈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김봉규, 정성욱 등이 이끄는 정보사 요원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하여 수행하기로 예정된 주요 임무는 ‘선관위 직원의 신병을 확보 내지 그들을 체포하여 일단 선관위 청사 내의 회의실로 이동시킨 후, 수방사의 시설로 이송하는 것’,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수 내지 제보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노상원, 문상호, 정성욱은 2024. 11. 17. 15:00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모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그 자리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방이, 케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을 잘 준비해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성욱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상원,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은 2024. 12. 1. 12:18 경부터 12:58경까지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모였다. 노상원은 그 자리에서 김봉규, 정성욱에게 지시를 하였는데, 그 내

용은 앞서 2024. 11. 9. 전달하였던 이 사건 임무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상당히 중복되었고, 다만 ‘준비하여야 하는 물품을 2세트 정도 더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추가하였다.

(태) 김봉규, 정성욱은 2024. 12. 3. 16:00경 문상호의 지시로 선발한 요원들을 소집하였고, 요원 40명 중 약 36명이 21:30경 정보사 100여단 대회의실에 집결하였다. 이에 문상호는 김봉규, 정성욱에게 ‘다음 날 05:30경 선관위로 가서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확인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임무 내용을 공유해주었고, 정성욱은 집결한 요원들에게 임무를 하달하였다.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정성욱은 집결한 요원들에게 선관위 직원 30명 명단을 호명하면서 ‘해당 인원은 부정선거 관련자이므로 (우리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아침에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증을 찍으면 이름을 확인하고 그 명단에 있는 직원들이면 (김봉규가 확보한) 사무실에 데려다 놔라’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소집된 요원들 중 일부가 정성욱이 준비한 장비인 케이블타이, 두건 등을 예행연습으로 사용해보고 ‘이거는 정당한 임무라도 나중에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봉규는 집결한 요원들에게 2024. 11. 9.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임무 문건에 기재된 행동요령과 같이 ‘인사부서를 통해 중앙선관위 직원 현황을 확인하고 회의실 2~3개를 확보할 것’,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및 선거 조작 관련 양심제보를 할 수 있는 안내 공고를 할 것’, ‘일반전화 3개 회선을 개설하여 양심제보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김봉규, 정성욱 등이 이끄는 정보사 요원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하여 수행하기로 예정된 주요 임무는 앞서 본 이 사건 임무 문건에 기재된 행동요령 내지 임무 내용과 동일하게 ‘선관위 직원의 신병을 확보 내지 그들을 체포하여 일단 선관위 청사 내의 회의실로 이동시킨 후, 수방사의 시설로 이송하는 것’,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수 내지 제보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3) 방첩사 병력의 예정된 임무

특히 방첩사 병력은 선관위 3곳과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여 이동 중 이를 중단하여 멀리 떨어진 곳 또는 목적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복귀 지시를 받고 복귀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여인형과 방첩사 1처장 정성우의 대화내용, 여인형의 정성우에 대한 지시 내용, 정성우 주재의 회의 내용 및 법무실의 법무검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방첩사 병력이 선관위 3곳과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여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임무는 그곳의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복사) 내지 서버장비 자체를 확보(탈거)’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여인형은 2024. 12. 3. 19:00경 내지 20:00경 방첩사 1처장 정성우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선관위 등 4곳(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꽃)의 위치를 물어보았고, 정성우는 20:23경 여인형에게 위 4곳의 위치를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 즈음 여인형은 곽종근과 통화하면서 ‘이거 연수원이 뭐냐? 수원 선거연수원이 뭐지?’라 고 물어보았고, 곽종근은 ‘거기에 서버가 있대’라고 답하였다. 이후 여인형은 20:37경 즈음 정성우로부터 피고인 조지호의 연락처를 보고받을 당시 ‘우리도 4곳에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면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변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 있어’라고 말하였고, 정성우가 ‘어떻게 서버를 카피합니까?’라고 묻자, ‘그러면 떼어 와야겠다. 떼어 와’라고 답하였고, 정성우는 ‘사령관님, 이거 왜 혹시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겁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여인형은 계엄 선포 당일 저녁 즈음에 정성우에게 방첩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키고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복사) 내지 서버장비 자체를 확보(탈거)’하는 임무를 미리 언질을 주면서, 선관위 등 4곳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 2024. 12. 3. 22:27경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여인형은 22:45경 내지 22:50경 사이에 방첩사 위기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정성우에게 ‘정보보호부대 포렌식센터, 과학수사센터를 포함하여 전산실을 꾸러라. 868경호경비부대는 너(정성우)가 통제해서 데리고 나가라’, ‘선관위 4곳에 가서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확보하라’, ‘그리고 (그 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주되, 상황이 변해서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카피해라. 서버 카피가 안 되면 떼어 와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성우는 사이버보안실장 이종훈 및 팀장 4명 등 여러 사람들과 23:50경 자신의 사무실에 모여 위와 같은 지시내용을 하달하고 이에 대해 의논하였다. 이와 같이 여인형은 앞서 미리 언질을 준 것과 같이 비상계엄 선포 후 정성우에게 실제로 선관위 등 4곳에 출동하여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복사) 내지 서버장비 자체를 확보(탈거)’하는 임무를 하달하였다.

(다) 이후 2024. 12. 3. 23:50경 정성우가 주재하여 토의가 시작되었는데, 군사보안실장 이종훈, 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 포렌식센터 과학수사센터장 송제영, 정보보호단장 박태주, 과학수사센터 포렌식과장 겸 사이버수사과장 안형욱, 보안조사과장 고광일, 868경호경비부대장 양승철, 868경호대장 최승리가 참석하였고, 당시 선관위 등 4곳의 서버를 복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 유무, 법적 문제 유무 등이 지적되어 법무실의 법무검토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24. 12. 4. 00:02경 정성우와 여인형은 통화를 하였는데, 정성우가 ‘사령관님, 저희가 전산실 출입통제입니까? 서버 카피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여 지시받은 임무의 구체적 내용을 물어보았고, 여인형은 ‘서버 카피 어려우면 서버를 떼어 와라’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법무검토를 받기로 결정됨에 따라 같은 날 00:34경부터 00:44경까지 법무실의 법무검토가 진행되었는데(법무관들이 돌아가며 간단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무 중 전산실 출입통제, 서버 정보복사 및 탈거 등에 대

해 법무실은 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법적 위험이 따른다는 취지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정성우는 여인형, 피고인 노상원에게 위 법무검토 내용을 보고 내지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노상원은 00:44경 정성우와 통화하면서, 정성우로부터 ‘법무검토 결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현장상황을 모르는데 어떻게 서버 복사를 하나?’는 말을 들었으나, 그럼에도 ‘그러면 아침에 전산실 직원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서버 복사를) 해라’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은 ‘서버 복사’ 임무를 수행하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정성우 등은 토의를 통해 ‘방첩사 병력이 선관위 등 4곳의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논의하였고, 법무실도 법무검토를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 전산실 출입통제, 서버 정보복사 및 탈거 수행은 법적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알려주었음에도, 여인형과 피고인 노상원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복사하거나 서버장비 자체를 탈거할 것’을 재차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회의 내용, 법무검토 내용, 반복된 지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방첩사 병력은 선관위 등 4곳에 출동하여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복사) 내지 서버장비 자체를 확보(탈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다.

(ㄷ)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처럼 정보사 병력이 단지 국정원이나 민간 전문가들이 오기 전까지 서버실 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서버에 저장된 정보 내지 서버장비 자체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이상 설령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처럼 출동한 방첩사 병력들에게 ‘서버 복사 또는 탈거를 위한 장비, 운송장비, 포렌식을 위한 장비를 챙겨가라’는 세부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앞서 본 방첩사 병력의 주된 임무 내용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정보사 병력이나 경찰이 선관위 청사를 확보하면 그 후 방첩

사 병력은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에 임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제권을 인수하는 역할만 부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사 병력이나 경찰이 선관위 청사 내지 전산실 출입에 관한 통제권을 확보하였다면 굳이 방첩사 병력이 그에 관한 통제권을 재차 확보하거나 이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특전사 병력의 예정된 임무

그 밖에 특전사 병력과 관련하여, 제3공수특전여단 11대대는 선관위 과천청사 건물 내 1층 로비, 제9공수특전여단 51대대는 선관위 관악청사 경내를 각 점거하였고, 제3공수특전여단 12대대는 수원 선거연수원 청사 인근에서 대기하였고, 제9공수특전여단 52대대 서울 서대 문구에 있는 여론조사꽃에 도착하여 건물 앞을 점거하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지시 내용, 그들이 출동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임무는 일단 선관위 청사 등에 대한 출입통제 권한을 확보하거나 정보사 선발대 10명 또는 경찰이 확보한 출입통제 권한을 유지·강화한 다음, 방첩 병력 등 서버장비 내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다만 실제 방첩사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도착할 때까지 청사, 전산실 및 서버실에 대한 통제권한을 확보·유지하는 것이었다.

(5) 경기남부경찰청 경력의 예정된 임무

또한 경찰과 관련하여, 경비남부경찰청 4기동대, 0기동대 및 과천경찰서 경찰관들은 선관위 과천청사로, 경기남부경찰청 2기동대 및 수원서부경찰서 경찰관과 서호지구대 소송경찰관들은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각 출동하여 청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지시 내용, 그들이 출동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들이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임무도 일단 선관위 청사 등에 대한 출입통제 권한을 확보하거나 정보사 선발대 10명 또는 특전사 병력이 확보한 출입통제 권한을 유지·강화한 다음, 방첩사 병력 등 서버장비 내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청사, 전산실 및 서버실에 대한 통제권한을 확보·유지하는 것이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군 병력과 경력이 선관위 등 4곳에 출동한 목적이 질서유지, 불순세력 등으로부터 선관위 등을 보호하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체적 폭동행위 관련 주장(공통주장 ②)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각 장소에 출동한 군 병력과 경력의 규모 등

선관위 과천청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꽃, 더불어민주당사에 출동한 군 병력과 경력의 인원,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퇴거한 시점, 실제 수행한 임무, 무장상태 등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추정이어서 일부 수치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장소 부대	선관위 과천청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꽃	민주당사
정보사 선발대 10명	10명				
	22:30경~01:30경				
	청사 내 진입하여 서버실 등 확보 및 직원 감시				
	빈 총 휴대 (실탄 차량 보관)				
정보사 요원 36명	38명(김봉규, 정성욱 포함)				
	100여단에서 대기·연습 후 해산				
	20:00경~05:30경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				
특전사 병력	제3공수특전여단 11대대 총 138명	제9공수특전여 단 제51대대 총 188명	제3공수특전여 단 12대대 편의대 총 133명	제9공수특전여 단 52대대 총 72명	제1공수특전여 단 1대대 편의대 8명 및 3대대 112명
	00:40경 또는 01:08경~01:20경	00:45경~01:19 경	01:07경~(미상)	00:50경~10:0 9경	제1대대 : 23:31경~(미상)
	86명 : 외곽 경계 52명 : 1층 로비 점거(정보사 선발 대와 함께)	경내 점거	먼저 도착한 경찰과 합류	건물 앞 점거하고 외부인들 출입통제	1대대 편의대 : 당 사 앞 도착 3대대 : 이동 중 당산역 일대 도로 에서 대기
	개인 소총 및 공포탄 10발 휴대 (실탄은 차량 보관)	본대 : 단독 군장(개인화기 등) 후발대 : 공포탄, 실탄, 연막탄 등 탄약(트럭 적재)	개인 소총 및 공포탄 10발 휴대 (실탄은 차량 보관)	단독 군장(개인화기 등)	-
경력	합계 115명	-	총 111명	-	-
	23:09경~02:00경		23:17경~02:1 1경		
	정문 봉쇄 후 직원 출입통제 및 특전사 병력 출입 허용		4개 출입문 봉쇄 후 교육생 출입통제		

	K1소총 5정과 실탄 300발 휴대(과천경찰서 초동대응팀 5인)				
방첩사 병력	4개팀 총 114명				
	정부청사 인근 주차장 및 인근 과천시청 인근 주차장 대기	사당역 인근 대기	이동하다가 중단하여 (목적지와 먼) 의왕휴게소 대기	이동하다가 중단하여 (목적지와 먼) 잠수교 남단대기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선관위 과천청사 및 직원들에 대하여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2024. 12. 3. 21:00경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도착하여 대기를 하며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21:24경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21:24경 문상호에게 이에 대한 지침을 문의하였고, 같은 날 21:49경 문상호에게 대기 위치를 보고하는 등 미리 청사 침입을 계획했다. 그러다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된 22:27경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2:30경 문상호의 청사 진입 지시를 받고 그 즉시 청사에 침입하였다. 그 자체로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임이 명백하고, 청사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신체에 직접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으나, 심야에 총을 휴대한 군인 10명이 한꺼번에 청사에 진입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에게 외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동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들은 정보사 선발대 10명이 휴대한 총은 탄이 없는 빈총이어서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대방으로서는 해당 총에 삽탄이 되어있는지 빈총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출동한 군인들의 무장상태가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수준

이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청사에 진입한 후 일부 직원을 청사 밖으로 나가게 하도록 하고, 자리를 이동하는 일부 직원을 따라 다니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 역시 사람에 대해 일체의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동희 등은 선관위 직원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서버실 내부나 선관위 조직도를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행위도 위에서 본 의미의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한편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일부 직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 역시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소유자의 협조에 따라 같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둔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무단으로 침입한 병력의 수와 그들의 무장상태, 야간이라는 시간대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외포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선관위 과천청사 건물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피해 및 직원들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나 신체적인 피해가 없거나 어떠한 물건이 반출·탈취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도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특전사 병력들도 마찬가지다.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상황, 야간이라는 시간대와 위와 같은 병력의 규모, 점거 시간, 군인들의 복장·무장 상태, 무단으로 건물 로비, 청사 윗타리 안 등으로 침입하거나 건물 입구 근처에 병력을 배치한 사

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선관위 과천청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꽃에 출동한 각 특전사 제대의 병력들도 각기 위 4곳의 청사 및 직원들 등에 대하여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한 특전사 병력 중 일부는 위에서 본 정보사 선발대 10명과 합류하여 청사 안 1층 로비를 점거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경력들도 마찬가지다. 당시 상황, 시간대, 경력의 규모, 점거시간, 경찰들의 무장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 및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의 지시 등에 따라 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출동한 경력도 각기 위 2곳의 청사 및 직원들 등에 대하여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위 2곳에 출동한 경찰들은 직원들 및 교육생들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설령 이러한 경력의 출동이 민군 협력구조의 작동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한편 정보사 요원 약 36명은 2024. 12. 3. 21:30경 정보사 100여단 대회의실에 집합한 뒤 그곳에서 임무 내용을 교육받고 준비된 장비들을 확인·점검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사령부 영외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방첩사 병력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출동은 하였으나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와 상당히 떨어진 장소 등에서 대기하다가 복귀 명령을 받고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보사 요원 36명 및 방첩사 병력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나아가기 전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들은 그 자체로는 가장 넓

은 의미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 그러나 내란죄에서의 폭동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 및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므로 이 역시 준비·보조 행위로서 내란죄에서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제2수사단 구성 관련 주장(공통주장 ③)에 대한 판단 가) 정보사 요원 선발 요청의 목적 및 경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노상원이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대령,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 대령에게 정보사 인원 내지 요원을 선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 내지 그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2, 3부의 구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개) 피고인 노상원의 요청 및 문상호의 지시에 따라 정보사 요원을 선발한 김봉규와 정성욱은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상 각각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수사2부장, 수사3부장에 임명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위 문건상 수사2, 3부의 인원들은 2024. 12. 3. 22:00까지 정보사령부에 집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위 인원들 중 정보사 요원 36명은 김봉규 및 정성욱의 소집명령에 따라 2024. 12. 3. 21:30경 정보사 100여단 대회의실에 집합하여 수사2, 3부의 요원으로서 그 임무 내용(앞서 살펴 본 정보사 요원 36명의 임무 내용)을 듣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노상원의 요청으로 김봉규와 정성욱이 작성하여 2024. 11. 19. 문상호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고 피고인 노상원에게도 전송된 정보사 요원 40명 명단은 다음과 같이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① 위 최종명단의 인원들은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의 수사2, 3부에 기재된 인원들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봉규는 법정에서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국

방부 일반명령’ 문건을 여러 번 보았는데, 증인이나 정성욱 대령이 추천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저희 수사1부라고 해서 제가 부장을 맡은 그 인원과 관련해서, 또는 정성욱 대령 부서 관련해서는 추천하지 않은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그 당시 명단을 받았을 때’라고 진술하여, “나와 정성욱 대령이 추천하지 않은 인원들은 ‘국방부 일반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성욱도 이와 유사하게 이 법정에서 ‘(수사과정에서 본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상 수사2, 3부와) 관련되어 적혀 있는 인원들이 증인과 김봉규가 추천한 명단 안에 들어있는 인원들이 맞지요?’라는 물음에 ‘예, 거의 일치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김봉규는 위 최종명단을 완성하기 전인 2024. 10. 15. 및 같은 달 21. 문상호에게 중간 보고를 하면서 명단을 전송해주기도 하였는데, 그 중 2024. 10. 21. 전송한 정보사 요원 20명단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기재된 10명은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 상 김봉규가 부장으로 예정된 수사2부에, 2명은 정성욱이 부장으로 예정된 수사3부에, 1명(이준배 소령)은 수사2부와 수사3부에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었다(문상호는 위 명단과 정성욱이 작성한 명단을 검토한 후, 2024. 10. 하순경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일부 인원이 중복되므로 서로 조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김봉규와 정성욱은 그 무렵 만나서 명단을 조율하였다).

인원현황 (20명)									
구분	성명	출신 (입관년도)	지역	학력	비고				
중령 - 중령 (전)					사업개발, 참모업무				
					사업개발, 특수원장				
					사업개발, 해외지사 경력				
					사업개발				
					사업개발				
소령					사업개발, 특수분야				
					사업개발				
					사업개발, 영어, 지사경력				
					활동능력, 리더십, 영어				
					사업개발, 특수분야 강점				
대위					사업개발, 해외파병				
					참모업무				
					참모업무				
					참모업무				
					참모업무, 토익 990점				
부사관					특수출신				
					특수출신				
					우회, 해외경험				
									특수출신

김봉규가 작성한 2024.10.21.자 중간보고명단(증거순번8기록 587번)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윤석열 등은 위와 같은 정보사 요원 선발은 처음부터 제2수사단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노상원이 2024. 9.초경 최초로 문상호에게 ‘일 잘하는 인원을 추려봐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을 당시에는 ‘대량 탈북사태의 징후가 있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문상호의 아래와 같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노상원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는 민간인인 자신이 요청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노상원이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실제로 당시 대량 탈북사태의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정보사 요원 선발은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현직 정보사령관이었던 내가 알고 있던 범위에서는 피고인

노상원이 말한 바와 같은 대량 탈북사태의 징후가 없었다. 피고인 노상원의 연락을 받기 전 대량 탈북사태의 징후가 있어 이에 대비하여 정보사령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업무도 특별히 없었다.”,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상황이 발생하면 너네 병력이 선관위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내가 ‘무슨 상황이나’라고 묻자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는 식으로 설명을 미루었다. 피고인 노상원이 상황에 대해서 ‘대량 탈북사태’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2024. 11. 25.경부터 해외 출장이 있었는데, 피고인 노상원이 전화하여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냐, 취소하라’고 하였는데, 당시 ‘중요한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정보사 요원 선발 요청을 받은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이, 요청받을 당시 해당 요청이 비상계엄 선포 내지 그에 따른 제2수사단 수사2, 3부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요청받은 상대방의 인식은 요청한 주체, 즉 피고인 노상원의 인식과는 불일치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노상원이 요청한 목적과 의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사 요원 선발은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 제2수사단 수사2, 3부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윤석열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상호가 2024. 10. 중순경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특임수행요원 (속칭 HDL특전여단요원)을 포함하여’ 요원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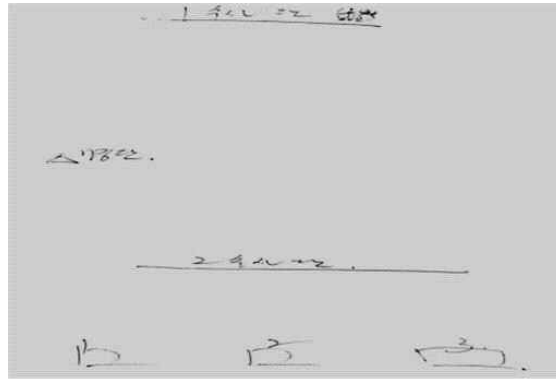
그러나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내가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요원 선발을 지시하면서 ‘특임수행요원을 포함시켜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특수요원’ 언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

였고, 김봉규와 정성욱도 이 법정에서 “문상호가 요원 선발을 지시할 때 ‘특임수행 요원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선발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문상호가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위와 같이 ‘특임수행요원을 포함하여’ 선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문상호가 위와 같이 ‘특임수행요원을 포함하여’ 요원 선발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위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무죄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 작성 요청의 목적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군사경찰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비상계엄 선포 내지 그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1부의 구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노상원의 요청으로 피고인 김용군이 작성하여 2024. 11. 6. 전송된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은 다음과 같이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의 인원들은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의 수사1부 기재된 인원들과 거의 일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 대령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1명(박선영 소령)만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국방부 일반명령’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김용군이재연한 피고인 노상원이 가져온 문건(증거순번 8기록 579번)

② 또한 피고인 노상원과 피고인 김용군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김용군은 2024.12.3. 안산 롯데리아 모임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보여준 온 문건에 기재된 제2수사단 수사1부의 명단에 자신이 제공했던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의 인원들이 기재된 것을 보고 항의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김용군은 피고인 노상원이 가지고 온 문건에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의 인원들이 제2수사단의 조직도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위 문건을 재연한 자료(증거순번 8기록 579번)는 위와 같은데, 이에 따르면 위 문건에 ‘명단’과 함께 제2수사단의 하부 조직으로 수사1부, 수사2부, 수사3부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들은 피고인 노상원이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을 제2수사단의 조직, 특히 수사1부의 인원 구성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 윤석열 등은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은 처음부터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방개혁 TF와 관련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위 명단이 국방개혁 TF와 관련하여 활용된 자료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고, 피고인 윤석열 등 역시 어떠한 국방개혁 TF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형사 처분으로 인하여 제적당한 피고인 노상원이 퇴역한 군사경찰 출신인 피고인 김용군에게 국방개혁 TF 구성을 위한 명단을 요청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은 국방개혁 TF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위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설령 군사경찰 추천 요청을 받은 피고인 김용균이, 요청받을 당시 해당 요청이 비상계엄 선포 내지 그에 따른 제2수사단 수사1부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요청받은 상대방인 피고인 김용균의 인식은 요청한 주체, 즉 피고인 노상원의 인식과는 불일치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노상원이 요청한 목적과 의도를 부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군사경찰 추천명단 요청은 국방개혁 TF 구성과 관련된 것일 뿐, 제2수사단 수사1부 또는 부정선거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윤석열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노상원의 제2수사단장 역할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한편 피고인 노상원은 제2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4., 같은 달 6.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하였으며, 이후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 매일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해 피고인 김용현을 만났다. 특히 피고인 노상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2024. 12. 1. 09:15 경부터 11:24경까지 사이에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났고, 곧바로 같은 날 점심 무렵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을 만나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하고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곧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라고 알리면서 계엄 선포 시의 임무 등을 숙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2. 저녁 무렵부터 자정 무렵까지 약 4 시간 동안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나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을 전달받

았으며, 다음 날인 2024. 12. 3. 오전 무렵에도 국방부장관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약 2 시간 동안 피고인 김용현을 만나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오늘(2024. 12. 3.) 계엄이 선포된다.’는 말을 들었고, 곧바로 같은 날 오후 안산 롯데리아에서 피고인 김용균, 구삼희, 방정환을 만나 ‘오늘 계엄이 선포된다.’고 알리면서 피고인 김용균에게 제2수사단 조직도, 수사1부에 편성된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의 인원들 등이 기재된 문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 노상원과 함께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 병력 등을 이용해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운영하고자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제2수사단과 관련된 그런 구성 준비는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수사단의 단장, 부단장, 부장, 수사관들을 임명하는 국방부 일반명령에 기재된 명단들은) 2024. 11. 말경 피고인 노상원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노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 김용현과 대면 또는 전화로 수차례 연락하면서 제2수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도 의견을 조율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무엇보다도 전 정보사령관이었던 피고인 노상원은 정보사령관 문상호, 국방부 인사 명령 문건 상 제2수사단의 단장으로 예정된 구삼희, 부단장으로 예정된 방정환, 수사2부장으로 예정된 김봉규, 수사3부장으로 예정된 정성욱을,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 2024. 11. 17., 2024. 12. 1., 같은 달 3. 각 안산 롯데리아 모임에서 만나 각기 임무를 숙지하게 하는 등 지시를 하였고,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 등은 실제로 그 지시를 이행하기도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에서 문상호와 김봉규에게 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상황(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원점타격)을 암시 또는

설명한 뒤 계엄 내지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임무를 설명하였는데, 당시 ‘선관위에 가야 할 수도 있다.’, ‘선관위로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들의 임무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노상원은 김봉규에게 계엄임무가 기재된 A4용지 10여장의 임무 문건 2부를 교부하고 그 중 1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게 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계엄을 전제로 하여 김봉규와 정성욱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정성욱에게 전달된 1부에 만 있었을 수도 있으나) 준비해야 할 물품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②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17. 안산 롯데리아 모임 당시 문상호와 정성욱에게 임무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정성욱이 물품들을 구입해놓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정성욱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할 물품을 구입하라고 재촉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에 따라 정성욱은 2024. 11. 20. 알루미늄 배트 1개, 재단기, 망치, 핑거가위, 송곳, 드라이버, 니퍼 등 공구, 신발주머니 등을 구입하였고, 2024. 11. 22. 일회용 안대 10개, 2024. 11. 26. 케이블타이, 스틸목망치, 니퍼 등을 각 구입하였다.

③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1. 안산 롯데리아 모임 당시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제2 수사단 수사2, 3부와 관련한) 기존 지시상의 임무를 숙지하라’고 사실상 지시하고, 문상호에게 ‘정보사 선발대 10명을 준비하고 계엄선포 즉시 선관위에 진입하여 서버실 등을 확보하라’고 사실상 지시하였으며, 정성욱에게 ‘준비하여야 하는 물품을 2세트 정도 더 준비하라’고 사실상 지시하였다. 실제로 정성욱은 위 지시에 바로 그 다음 날인 2024. 12. 2. 로프 1개, 2024. 12. 3. 관광명찰 6개를 각 추가로 구입하였다.

또한 문상호는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 12. 3. 10:00경 정보사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 및 작전과장 서지윤 중령에게 ‘소령급 인원 8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정보사 선발대 10명이 편성되었고, 2024. 12. 3. 16:00경 내지 17:00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로 ‘선관위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는 취지의 사실상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고동희에게 정보사 선발대 10명의 선관위 과천청사 출동 준비 지시를 하였으며, 이후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21:00경 내지 21:10경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2024. 12. 3 22:30경 문상호의 진입 명령을 받아 그 즉시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하여 서버실 등을 확보하였다.

④ 한편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 모임에서 피고인 김용군에게 ‘오늘이 계엄이다.’라고 알려준 후 제2수사단 조직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보여 주었으며, 구삼회와 방정환에게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제2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삼회 장군이 단장, 방정환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다) 한편 ‘국방부 일반명령’에 따르면 제2수사단의 단장으로 제2기갑여단장 구삼회를 임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구삼회는 이 법정에서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 모임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구삼회 너가 단장이지만, 실질적인 단장은 나야’라고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가 당시에 느낀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직접 할게’, 그런 표현들을 중간에 얘기했고 중간에 내가 ‘저는 뭐 합니까?’라고 묻자 ‘너는 별 거 하는 거 없어, 내 옆에 따라다니거나 내 옆에 앉아있거나 내가 가면 따라다니면 돼’라고 얘기한 거, 그런 상황들을 하면서 제가 수첩 메모 맨 위에 적어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라 즉, ‘구삼회’가 아니라 ‘노상원’가 주실무 단장 역할을 하겠구나 (생각)해서 ‘노상원’에 동그라미를 치고 ‘구삼회’에다 엑스를 쳤던 기억이 나중에 났다.”, “저거는 계속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거를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피고인 노상원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당시에든 그런 느낌을 많이 줬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너는

하는 거 별로 없다’ 그런 걸 여러 차례 강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피고인 노상원은 구삼회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제2수사단의 단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구삼회는 보병 병과로서, 주로 전시에 역습 등을 통해 문산 축선에 대한 방어를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제2기갑여단의 여단장이었을 뿐, 1994년경 임관 후 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여인형이 2024. 12. 3. 11:25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에는 ‘제1처장의 부정 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 제1처장 정성우는 여인형의 지시에 따라 2024. 12. 3. 22:50경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노상원이 방첩사 병력들이 선관위 등으로 출발했는지 물어보자 ‘영외 거주자 소집된 상황입니다.’라고 답하고, 같은 날 23:32경 피고인 노상원이 전화하여 재차 물어보자 ‘지금 우리 인원들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방첩사 병력의 출동여부를 보고한 점, ② 2024. 12. 4. 00:34경부터 00:44경까지 이루어진 법무실의 법무검토 결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법적 위험이 따른다.’는 의견을 받은 것 역시 같은 날 00:44경 전화로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달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노상원은 ‘그러면 아침에 전산실 직원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서버 복사를) 해라’라고 재차 지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 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노상원이 정성우에게 방첩사 병력의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수사 임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 한편 피고인 노상원이 특별히 수사 경험이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 노상원이 제2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제2수사단 수사2, 3부는 선관위 직원들을 직접 심문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주로 선관위 과천청사의 서버실 등을 확보하고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 노상원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었더라도 위와 같은 임무를 구상하고 지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2수사단을 이렇게 구상했던 것(수사1부를 제외한 수사2, 3부를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임명하려 했던 것)은 나중에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여러 가지 수사하는 데 인력 소요가 많이 소요될 텐데 아무래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제2수사단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보사에 임무를 부여할 때도 딱 두 가지를 부여했다. 하나는 ‘선관위 서버실을 선점해서 서버가 유출되거나 훼손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고, 선점을 했다가 그걸 방첩사 오면 인계해라’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합수부가 구성되면 합수부 통제 하에 수사 지원 임무를 수행해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보사의 임무는 매우 단순하고 인력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큰 임무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다.”, “(제2수사단은) 수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사지원’ 임무를 하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노상원이 민간인 신분이었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다음 날 아침 선관위 과천청사가 아닌 정보사령부 100여단으로 가려고 했다는 사정도 피고인 노상원이 제2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노상원은 형사처벌로 제적당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제2수사단의 ‘정식’ 단장으로 임명될 수 없어 부득이 ‘실질적’ 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설령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노상원 등의 주장처럼 피고

인 노상원은 2024. 12. 4. 아침 무렵 선관위 과천청사가 아닌 정보사령부 100여단으로 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선관위 과천청사라는 현장이 아닌 100여단에서도 충분히 현장에 있는 인원들을 지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노상원은 제적당한 민간인이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진 선관위 과천청사라는 공개적인 장소에 가는 것보다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100여단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100여단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 12. 3. 아침에 지침을 준 것 같은데, 당시 첫 번째로는 정보사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자들 정신교육도 시키고 임무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 ‘너는 민간인이니까 어떤 특별한 임무를 공식적으로 줄 수가 없다.’, ‘판교에 있는 □□부대(100여단) 가서 거기서 대기하면서 필요하면 내가 조연도 받고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정보사령관과도 소통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판교에 있는 100여단으로 가 있으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선관위로 보낼 수 없었던 게 선관위로 보내는 순간 공식적인 입장되어 버린다. 민간인에게 공식적 임무를 줄 수 없으니까, 선관위로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노상원은 단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 구삼희, 방정환이 수행하여야 할 계엄임무를 전달한 것이어서 극히 부분적으로 조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노상원은 제2수사단의 구성 및 그 인원들의 임무수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단지 피고인 김용현의 임무 수행을 극히 부분적으로만 조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은 피고인 김용현과 수차례 대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조율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 구삼희, 방정환에게 계엄선포시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역할 분담까지 시켰으며 준비상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문상호를 통해 정보사 선발대 10명을 선관위 과천 청사 인근에 대기시키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성우를 통해 방첩사 병력의 선관위 출동 현황을 파악하고, ‘임무수행에 법적 위험이 따른다.’는 법무검토 결과를 듣고도 정성우에게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확보하라’고 재차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은 스스로 정보사 군인들 및 방첩사 군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

② 정보사에서는 피고인 노상원을 2024. 12. 4. 아침 무렵 데려오는 인원과 관용차량까지 특별히 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령부 소속 신준호 소령은 국방부 일반명령에 따르면 수사2부 요원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2024. 12. 3. 17:18경 정성욱 대령으로부터 ‘오늘 20:00까지 100여단 본부로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20경 100여단에 도착하여 21:20경 대회의실로 이동하여 소집된 다른 인원들과 함께 임무를 하달 받고, 김봉규로부터 별도로 ‘피고인 노상원을 픽업해서 중앙선관위로 모셔오라’는 취지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당시 김봉규는 신준호에게 ‘수사단장님을 모시고 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노상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신준호는 피고인 노상원의 전화번호를 ‘수사단장’으로 저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2023. 12. 3. 22:00경인지 저녁인지 통화를 하면서, 안산 거주지의 주소를 알려주며 ‘(다음 날) 새벽 05:40경까지 차량 한대를 보내 달라’, ‘소령급의 간부가 차를 가지고 와서 나를 픽업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며칠 대기할 것이니 보좌역할 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신준호는

이 법정에서 ‘김봉규가 각 조에 임무를 부여한 후에 임무가 부여되지 않은 인원을 손을 들어 보라고 하여, 나와 이용호 소령이 손을 들었다. 김봉규가 나에게 별도로 지시했던 임무는 수행 보좌관으로서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지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행하는 역할이었다. 내가 받은 임무는 수사단장의 수행비서로 인식했었다.’, ‘(수사2부로 예정된) 이용호 소령은 행정보좌관의 역할이었고, 나의 역할은 수행보좌관이었다’, “당시 김봉규가 ‘수행보좌관’, ‘행정보좌관’이라는 워딩을 직접 썼다.”, ‘구삼회나 방정환을 수행하기 위한 요원은 따로 선발된 것이 없었다.’, ‘내가 배차받은 소나타 차량은 정보사령부의 관용차량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노상원은 다음과 같이 문상호, 구삼회, 방정환, 김봉규, 정성욱 등에 대하여 전 정보사령관이라는 지위, 피고인 김용현과의 관계, 정보사령관 문상호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그들을 제2수사단의 구성 과정에 끌어들이거나 그들에게 임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0.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다음 보직으로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는 가야 하지 않겠냐. 내가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24. 10. 14.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직접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또한 문상호는 2024. 12. 1. 안산 롯데리아 모임에서는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상부에 보고하고 왔다.’ 또는 ‘(국방부장관 공관이 있는) 한남동 갔다 왔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문상호는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현과 임무를 조율하고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대령은 피고인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으로 취임한 2015. 11.경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노상원이 2016. 10.경 정보사령부에서 떠난 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자신의 장군 진급 문제에 대하여 들었고

‘문상호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진정성 있게 고개를 숙이고 화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듣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김봉규는 피고인 노상원이 전 정보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장군 진급 인사에 관여할 만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㉔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 대령은 피고인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으로 취임한 2015. 11. 경 알게 되었는데, 당시 김봉규는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김봉규는 스스로 인간정보특기의 사실상 유일한 장군 보직인 100여단장(준장)으로 진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2024. 10. 초순경 노상원으로부터 연락이 와 ‘너의 진급을 도와주겠다.’, ‘김봉규 대령 먼저 진급하고, 다음에는 네가 진급하면 되겠다.’는 취지의 말을 2차례 정도 들었고, 피고인 김용현과의 친분에 대해 듣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024. 10. 10.경에는 공작요원 추천 요청을 받았는데 그 즈음 본인의 직속상관인 정보사령관 문상호로부터도 비슷한 요청을 받게 되었고, 2024. 11. 19.경에는 문상호로부터 ‘최종적으로 보고한 명단을 피고인 노상원에게 보내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성욱은 피고인 노상원이 전 정보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진급을 도와줄 수 있고, 자신의 직속상관인 문상호와도 친분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㉕ 구삼회는 2007년경 1군사령관 김근태의 전속부관으로 근무하면서 김근태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노상원을 알게 되었다. 구삼회는 2024. 3. 중순경 김근태 등과의 모임에서 ‘너가 자꾸 진급이 안 되는데, 도와줘야 할 거 같다.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같은 달 말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김근태의 부탁을 받았다. 너가 자꾸 진급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알아 보고 도와주라고 해서 연락했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실제로 다음 달인 2024. 4. 초경 김근태로부터 연락이 와 ‘피고인 노상원에게 너의 진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너에 대하여 방첩사가 평가한 자료를 보았다.’는 취지

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구삼회는 피고인 노상원의 영향력 등에 대한 신뢰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 방정환은 피고인 노상원과 2008.경, 2013~2015.경 2차례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방정환은 피고인 노상원과 2024. 9. 6.경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 12. 3.경까지 총 24차례 이상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2024. 11. 25.자 장군인사에서 진급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격려와 함께 ‘장관님이 너보고 잘하고 있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방정환은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현과 근무연 등으로 인하여 친분이 있고 진급 등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인 노상원이 제2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노상원 등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 노상원이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에게 정보사 요원 선발을 요청 내지 지시하고, 피고인 김용현에게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을 요청한 것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노상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설치되는 제2수사단의 실질적 단장 역할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윤석열의 정보사 병력에 대한 출동 지시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윤석열은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한 것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어서, 자신은 이에 대하여는 내란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1. 11:00경 피고인 김용현과 구체적 부대출동 계획을 논의하여, 간부 위주로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정도의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군 병력 동원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과 군 병력의 국회 및 선관위 등 투입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김용현은 이른바 비선인 전 정보사령관 피고인 노상원에게 ‘정보사 병력으로 하여금 선관위 과천청사로 신속히 출동하여 서버실을 선점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피고인 노상원이 정보사령관 문상호에게 위 지시를 하달한 이상, 설령 피고인 윤석열이 ‘정보사 병력을 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하라.’와 같이 일일이 개별적인 병력 투입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정보사 선발대 10명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하여 서버실 등을 점거하는 등의 폭동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도 ‘폭동을 일으킨’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례는 내란죄와 관련하여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피고인 윤석열이 주장하는 사정은 내란죄 성립 인정 자체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피고인 노상원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인은 극히 일부분 조력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노상원은 피고인 김용현, 문상호 등과 공모하여 제2수사단의 구성 및 그 인원들의 임무 수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단지 피고인 김용현의 임무 수행을 극히 부분적으로만 조력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공통주장 ②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노상원은 극히 일부분만 조

력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국회 등에서의 계엄사무 사전 인지 부인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노상원은 국회 등과 관련된 계엄사무는 일체 관여하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노상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전제하고 본인의 계엄사무 수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정보사 요원 36명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 12. 4. 05:40경까지 선관위 과천청사에 도착한 뒤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확인하고 체포하여 수방사의 구금시설로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었고, 위 정보사 요원 36명 중 신준호 소령은 김봉규로부터 ‘수사단장님(피고인 노상원)을 2024. 12. 4. 05:40까지 선관위 과천청사로 모시로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또한 ‘국방부 일반명령’에는 ‘속초인원(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소속 군인들을 의미함)은 2024. 12. 4. 06:00까지 정보사령부로 집결’,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갑 50개를 제2수사단 수사2부장 정보사 대령 김봉규에게 2024. 12. 4. 중앙선관위(과천청사)로 와서 건네주고, 추가로 수갑 100개를 육군수사단 협조하여 2024. 12. 4. 19:00까지 (구금시설이 있는) 수방사에서 김봉규에게 건네줄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계엄사무는 적어도 2024. 12. 4. 오후 경까지는 계속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제2수사단의 단장, 부단장, 수사2부장, 수사3부장으로 각 예정된 구삼희, 방정환, 김봉규, 정성욱 등 제2수사단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로 예정된 인원들은 파견 명령을 받을 예정이라는

말을 듣거나 피고인 노상원 내지 문상호 등의 지시로 며칠간의 옷가지를 챙겨서 임무 수행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원들은 단 하루 정도가 아닌 며칠 정도에 걸쳐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노상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 12. 2. 밤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을 지급받았는데, 만약 비상계엄 상황이 단기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면, 굳이 비화폰을 지급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나) 그런데 피고인 노상원이 위와 같이 비상계엄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전제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에 대한 유일한 헌법상 견제장치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즉시 행사되지 못하고 일정기간은 무력화된다고 예상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 피고인 노상원은 약 34년간 군인으로 재직하였고 특히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비상계엄 및 그에 따른 계엄사무를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과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보사령관 문상호와 정보사 소속 군인 김봉규, 정성욱 및 군사경찰 출신인 피고인 김용군에게 정보사 요원 및 군사경찰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계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인을 투입시키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군’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상당 기간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4. 01:03경 국회의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자, 피고인 김용현은 01:38경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화하였으나 약 2초간 통화가 되었고 그 직후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화하여 1분 14초간 통화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노상원이 재차 01:41경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화하여 약 2분 12초

간 통화하였는데, 위 통화 당시 피고인 김용현은 ‘응, 노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였다(이후, 피고인 김용현은 02:43경부터 02:45경까지 약 2분 3초간 피고인 노상원과 통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의 위와 같은 전화통화의 빈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노상원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계엄사무 수행을 논의하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 된 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이 일정기간 행사되지 못하여 비상계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에도, 예상과 달리 국회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신속히 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하자 그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다음과 같이 피고인 노상원은 피고인 김용현 등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2024. 11.경부터 국방부장관 공관에 ‘보안 손님’으로 출입하여 피고인 김용현을 수차례 직접 대면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현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 및 그에 따른 계엄사무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추단케 한다.

①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4., 같은 달 6.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하였으며, 이후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 매일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해 피고인 김용현을 만났다.

② 특히 피고인 노상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2024. 12. 1. 09:15경부터 11:24경까지 사이에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났고, 2024. 12. 2. 저녁 무렵부터 자정 무렵까지 약 4시간 동안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나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을 전달받았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 12. 3. 오전 무렵에도 국방부장관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김용현을 만나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직접 ‘오늘(2024. 12. 3.) 계엄이 선포된다.’는 말을 들었다.

③ 한편 형사처벌로 군에서 제적당한 피고인 노상원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 연속으로 ‘보안 손님’ 명목으로 국방부장관 공관에 방문하여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을 대면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그 밖에 앞서 공통주장 ②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은 피고인 김용현, 문상호 등과 공모하여 제2수사단의 구성 및 그 인원들의 임무수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례는 내란죄와 관련하여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피고인 노상원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내란죄의 죄책을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3) 위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헌문란의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공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단지 선관위 과천청사에서의 계엄사무만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는 이상 선관위 과천청사가 아닌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특히 국회에서의 계엄사무에 대해서도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노상원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나) ‘계엄’, ‘비상계엄’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노상원이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에서, 문상호와 김봉규에게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을 하면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들을 잡아와야 한다.’와 같이 정확히 ‘계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임무 문건에 ‘비상계엄 임무지시서’라는 제목 또는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와 같이 정확히 ‘비상계엄’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노상원이 나와 김봉규에게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너희 병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제가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알게 된다,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라고만 말했다. 피고인 노상원이 ‘계엄’이라는 말을 언급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카페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선발 인원 준비가 다 되었느냐?’,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서 원점을 타격할 수 있어 임무수행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 같은 상황에 관한 언급도 하였다. 계엄에 관한 언급을 할 당시 문상호 사령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도 정확히 ‘계엄’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피고인 노상원이 증인(김봉규)과 문상호한테 ‘곧 계엄이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물음에 단지 ‘예. 제 기억으로는 계엄 같은 상황도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

다.’라고 진술한 것이어서, 오히려 김봉규가 피고인 노상원이 설명한 상황을 듣고 본인 스스로 ‘계엄 같은 상황’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제게 계엄이 선포될 경우 수행해야 할 임무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이 사건 임무 문건)를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내용도 그 자체로 이 사건 임무 문건에 ‘계엄’ 또는 ‘비상계엄’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피고인 노상원이 증인에게 준 문서에 ‘계엄 선포 시 수행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이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워딩 표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목 비슷한 식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글자가 기억나지는 않고, 계엄시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런 인식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김봉규가 이 사건 임무 문건을 보고 본인 스스로가 ‘계엄시 해야 할 임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나) 계엄 내지 비상계엄을 전제로 임무를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에서 문상호와 김봉규에게 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상황(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원점타격 등 전시에 준하는 상황)을 암시 또는 설명한 뒤 계엄 내지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임무를 설명한 사실, 당시 ‘선관위에 가야 할 수도 있다.’, ‘선관위로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들의 임무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 김봉규에게 이 사건 임무 문건 2부를 교부하고 그 중 1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게 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계엄을 전제로 하여 김봉규와 정성욱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

던 사실이 인정된다.

① 문상호는 “피고인 노상원이 ‘계엄’이라는 말을 언급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나는 그날 피고인 노상원과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금방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노상원이 내가 자리를 뜨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당황했었다. 그날 내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둘이 무슨 이야기를 더 했나’싶어서 그날 밤인지 다음 날 밤인지 김봉규를 제 방으로 불러 물어보았다. 그러나 김봉규는 자세한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문상호가 자리를 떠나기 직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황당한 이야기’였다는 것이고, 본인이 자리를 떠난 후 피고인 노상원과 김봉규가 이야기를 더 했다는 것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노상원의 말을 듣고 ‘계엄 같은 상황’이라고 인식하였고, 임무 문건을 보고 ‘계엄시 해야 할 임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임무 문건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노상원이 내게 계엄이 선포될 경우 수행해야 할 임무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를 주었다. 앞부분에는 부정선거 등에 관해 정리된 내용과 그와 관련된 언론기관 등에 관한 설명이 쪽 있었고, 중반 부부터 나와 정성욱이 해야 할 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06:30경 중앙선 관위로 출동해서 인사부서를 통해 직원현황을 확인하고 회의실 2, 3개를 확보한 후 문건에 기재된 30명 정도의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확보되면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B1 병커)로 데리고 가 수용하는 내용이었다. 신병확보 부분은 정성욱 대령조의 임무였다. 그밖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및 선거조작 관련 양심제보를 할 수 있는 안내공고를 하며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전화회선 3개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

었다. 또 수사단(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수사단장 구삼희, 부단장 방정환, 수사1부장 예비역 대령 HK(문건 자체에 ‘HK’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임), 수사2부장 나(김봉규), 수사3부장 정성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문건에 기재된 제2수사단의 구성, 수사3부장으로 기재된 본인과 수사2부장으로 기재된 구체적인 임무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위 문건 중 1부를 김봉규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노상원이 문건 2부를 주면서 ‘1부는 정성욱에게 주라’고 하여, 다음 날 정성욱을 만나 전달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이 카페에서 했던 말을 전달하였다. 이후 제가 받았던 문건 1부는 세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전달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③ 정성욱은 김봉규로부터 위 문건 1부를 전달받은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2024. 11. 10. 밤에 김봉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김봉규로부터 문건(이 사건 임무 문건)을 전달받으면서 ‘계엄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문건을 받았고, (문건 안에) 계엄에 대한 내용과 네 역할, 내 역할이 다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노상원이 다 보고 꼭 세절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김봉규의 진술내용과 일치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의 내용에 대하여 “나중에 서류를 보니까 앞부분 7장 정도는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고, 뒷부분에 나와 관련된 내용이 붉은 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빨간 색 글씨로 인쇄된 부분만 메모하고 바로 문건을 세절했다. 빨간 부분에 기재된 내 임무는 ‘계엄이 선포되면 저희 인원들이 아침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30명이 출근하면 이들을 김봉규가 확보한 회의실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고, 선관위 전산직원 5명, 정보보호직책 2명 등 30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었다. 구매할 물품 목록, 펜치, 망치, 니퍼, 케이블타이 등도 일부 적

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김봉규의 진술내용과 일치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④ 한편 다음과 같은 사후적인 사실 등도 위 인정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즉,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위 카페 모임 다음 날인 2024. 11. 10. 12:00경 문상호가 나를 사령부 집무실로 불러 ‘(국방부)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중앙선관위에 가야 될 수도 있다. 군인이니까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 노상원이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회동에서 ‘선관위로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17. 안산 롯데리아 모임에서 정성욱에게 물품 구입을 재촉하였고, 문상호도 2024. 11. 19. 정성욱에게 ‘물품 구입을 했는지’ 물었으며, 이후 실제로 정성욱은 2024. 11. 20.부터 망치, 니퍼, 케이블타이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도 정성우가 전달받았다는 이 사건 임무 문건 1부에 구매할 물품 목록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에서 문상호와 김봉규에게 정확히 ‘계엄’, ‘비상계엄’과 같은 명시적인 단어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위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무죄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당시 계엄 내지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임무를 설명하고, 그러한 임무 내용이 세부적으로 기재된 이 사건 임무 문건 2부(다만 위 문건 2부 중 1부는 수사2부장으로 예정된 김봉규의 임무가 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1부는 수사3부장으로 예정된 정성욱의 임무가 주로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 구체적 기재 내용까지 완전히 동일한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를 김봉규에게 전달하고 그 중 1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024. 11. 17. 안산 롯데리아 모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개) 다음과 같은 증언 내용 내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노상원은 공소사실과 같이 2024. 11. 17. 안산 롯데리아 모임 당시 문상호와 정성욱에게 임무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정성욱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할 물품을 구입하라고 재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당시 롯데리아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다.’, ‘내가 조사하면 다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과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 도구를 언급한 것은 기억난다. 피고인 노상원은 위협을 언급하면서 도구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당시 롯데리아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나에게 ‘준비가 되었냐? 준비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똑바로 해라.’라는 말을 하며 화를 내었다. 피고인 노상원은 나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을 잘 준비해둬라.’라는 지시도 하였다. 문상호는 나에게 ‘먼저 위 물품을 구매하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또한 김봉규와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2024. 11. 17. 안산 롯데리아 모임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4. 11. 19.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이 함께 점심식사 후 정보사령부 영내에서 산책을 하면서 문상호가 지시사항 준비 상태를 점검하면서 ‘물품 구입은 했는지’를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산책을 하면서 문상호가 지시사항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질문들을 하였다. ‘구체적인 조 편성은 하였는지’, ‘조별 임

무는 어떻게 나누었는지’, ‘장비는 다 구입하였는지’ 등을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정성욱도 이 법정에서 “산책을 하면서 문상호가 나와 김봉규의 임무를 확인했다. 그리고 문상호가 나에게 ‘물건을 구매했냐’고 물어보면서 ‘물건을 구매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다음 날인 11. 20.경 물건을 하나씩 구매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실제로 정성욱은 위와 같이 문상호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라는 말을 듣고, 바로 그 다음 날인 2024. 11. 20. 알루미늄 배트 1개, 재단기, 망치, 핑거가위, 송곳, 드라이버, 니퍼 등 공구, 신발주머니 등을 구입하였고, 2024. 11. 22. 일회용 안대 10개, 2024. 11. 26. 케이블타이(200mm), 송곳2P/SET, 드라이버세트(PH2/6mm), 스틸목망치, 니퍼150 각2개, 핑거가위, 티타늄코팅가위를 각 1개를 구입하였고, 2024. 12. 2. '로프' 1개, 2024. 12. 3. '관광명찰' 6개를 추가로 구입하였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노상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24. 12. 1. 안산 롯데리아 모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개) 다음과 같은 증언 내용 내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노상원은 공소사실과 같이 2024. 12. 1. 안산 롯데리아 모임 당시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제2수사단 수사2, 3부와 관련한) 기존 지시상의 임무를 숙지하라’고 지시한 사실, 문상호에게 ‘정보사 선발대 10명을 준비하고 계엄선포 즉시 선관위에 진입하여 서버실 등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나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을 확보해라. 믿을만한 인원으로 우선 10명 정도 준비해라.’, ‘1개 팀 준비해서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 ‘차량 필요하면 차량, 아니면 식사 너희(정보사)가 지원해야 된다.’, ‘전산실 일단 가서 확인하고 지키고 있으라.’는 등 임무를 확인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기준에 임무 문건을 통해 지시받은 임무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피고인 노상원은 ‘나(피고인 노상원)를 단장이라고 부르라’고 하였고, ‘부정선거나 선거조작에 대한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이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직접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기억이 있다.”, “문상호에게는 ‘아침, 점심 등 식사 지원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선발대 10명 정도와 지원팀을 준비하라’는 지시도 하였다. 위 선발대가 계엄이 선포된 후 선관위에 실제 투입된 고동희 대령과 10명(정보사 선발대 10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나에게 ‘인원이 30명쯤 될 거야, 그 인원들 출근하면 김봉규 대령이 확보한 회의실로 인원들 데리고 오면 돼.’라고 말하였다.”, “문상호에게는 ‘도시락, 차량 등’ 지원 업무를 이야기했다.”, “김봉규에게는 ‘인사부서 등에서 선관위 직원 명단을 파악해 나(정성욱)에게 주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관련 자수하라는 배너를 올려라, 회의실을 확보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수방사 수용시설 확인 임무 역시 김봉규에게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노상원이 나(정성욱)는 ‘3부장’, 김봉규는 ‘2부장’으로 부르라고 호칭을 정하였고, 편의상 자신(피고인 노상원)을 ‘단장’으로 부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문상호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 12. 3. 10:00경 정보사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 작전과장 서지윤 중령을 정보사령관실로 호출하여 고동희와 서지윤에게 ‘소령급 인원 8명을 선발하라’고 지시하면서 긴급출동 준비를 지시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정보사령관실에서 고동희에게 ‘오늘 야간에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임무가 진행될 것이니 출동 준비를 하라. 가게 되면 출입통제하고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실제로 고동희, 서지윤, 소령급 인원 8명으로 구성된 정

보사 선발대가 출동하여 같은 날 21:00경 선관위 과천청사 앞에 도착하였고, 문상호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같은 날 22:30경 고동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들어가면 된다.’고 지시하여, 정보사 선 발대 10명은 그 즉시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한 뒤, 그중 일부 인원은 전산실과 서버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사 선발대 10명의 선발 경위, 임무수행내용 등은 문상호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노상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 모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노상원이 부인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

먼저 피고인 노상원도 2024. 12. 3. 15:00경 피고인 김용군을 만나 ‘계엄시 조언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면서 조언 등을 요청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인 김용군도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오늘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 제2수사단 조직도를 보았는데,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의 인원들이 제2수사단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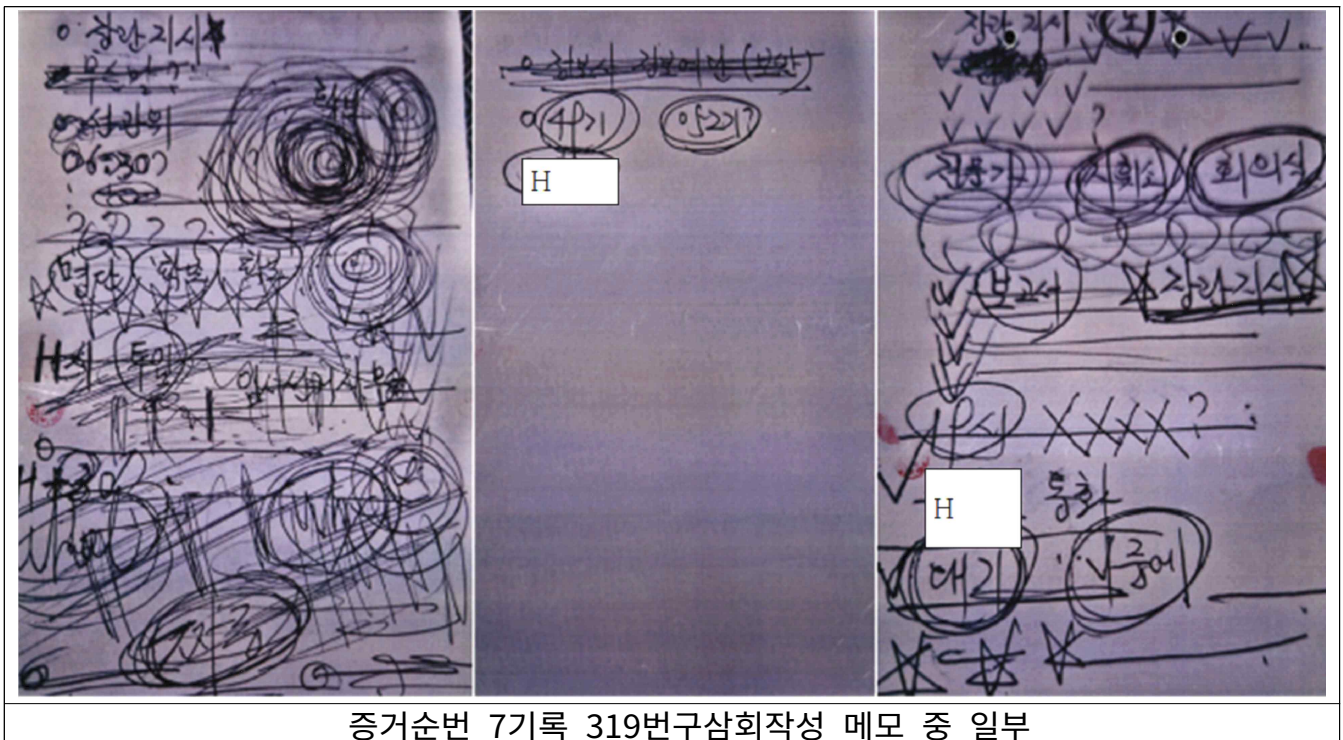
다만 피고인 노상원과 피고인 김용군은, ㉠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수사1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신문 대상자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한 사실, ㉡ 피고인 김용군, 구삼희, 방정환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문상호와 통화하면서 정보사령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한 사실, ㉢ 피고인 김용군에게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 증거 개관

위 각 사실에 관련된 증거로는 이 법정 내지 군사법원에서의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군과 구삼희, 방정환의 각 법정진술, 구삼희 작성 메모지(증거순번 7기록 319번), 그리

고 롯데리아 CCTV 영상 등 USB 및 네이버 회신자료 CD(증거순번 7기록 960번) 중 @@@83),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 CCTV 영상 분석(증거순번 7기록 360번), 2024. 12. 3.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 CCTV 영상 캡처 화면(증거순번 7 기록 628번)(이하 이 부분에서 위 롯데리아 CCTV 영상 등 USB 및 네이버 회신자료 CD를 포함한 관련 증거 3개를 ‘CCTV 영상증거’라 한다)등이 있다.

그런데 구삼회 작성 메모지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에게 한 말의 내용’(위 ㉠,㉡ 사실 관련) 내지 ‘피고인 노상원이 문상호와 통화하면서 한 대화 내용’(위 ㉢ 관련)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추단하기에 부족하다(이는 문상호의 진술내용을 더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CCTV 영상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균과 구삼회, 방정환이 모여서 서류를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는 등의 모습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서류의 내용이나 대화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83) 롯데리아 CCTV는 2번 압수되었는데, 12.3. 모임에 대한 것과, 12.1. 모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사실들의 인정여부를 이 법정 내지 군사법원에서의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군과 구삼희, 방정환의 각 법정진술 등으로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 위 ㉠ 사실 인정여부

다음과 같은 방정환, 구삼희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수사1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신문 대상자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방정환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위 ㉠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은 “맥락상으로는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어떤 역할을 좀 당부하는 것이 있었는데 유추해보면 ‘수사단 1개 팀을 맡으라.’는 취지였던 것 아닌가 한다. 다만 이는 상황의 맥락 속에서 내가 느낀 것을 말한 것이고, 두 분이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는 나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억나는 사항이 없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는 결국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수사 단 1개 팀을 맡으라.’는 취지로 역할을 당부했던 것 같은데, 이는 자신의 ‘유추’ 내지 ‘느낌’에 불과하지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② 구삼희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위 ㉠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두 사람이 주로 했던 대화가 ‘몇 시에 어디에 가서 누구누구를 확보해라’ 이런 식이었고, 마치 임무를 최종 확인하는 자리 같았다.”, “피고인 노상원이 지시하는 듯한 말투나 표현을 사용했으며, 피고인 김용군은 ‘예 알겠습니다.’라는 식의 반응이었고, 계속 진지한 태도를 유지했고 노상원의 이야기를 메모도 하고, ‘준비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표현을 써가며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위 진술에는 ‘이런 식이었고’, ‘자리 같았다’, ‘지시하는 듯한’, ‘라는 식의 반응’과 같이 잠정적이고 모호한 표현이 들어가 있

고, 그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수사1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신문 대상자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한 사실’(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라) 위 ㉡ 사실 인정여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 구삼희, 방정환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문상호와 통화하면서 정보사령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노상원이 모임 당시 피고인 김용군과 구삼희, 방정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와 몇 차례 통화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구삼희, 방정환이 이 법정에서 각 ‘위 자리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누군가와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노상원이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 모임 중 김용군과 구삼희, 방정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몇 차례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위 증거와 문상호, 구삼희, 방정환의 법정진술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노상원의 위 각 통화 당시 그 상대방이 공소사실과 같이 ‘문상호’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노상원이 위 자리에서 문상호와 통화하였다는 시각이 불분명하고 특정되지 않았다.

㉣ 또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 모임 당시 피고인 노상원의 각 통화 시각’과 문상호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2024. 12. 3. 오후 경 피고인 노상원과의 통화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CCTV 영상에 따르면, 방정환이 합류하여 4명이 다 같이 있게 된 시점은 15:09경부터인 사실, 피고인 김용군은 15:53경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롯데리아 밖으로 간 사실, 피고인 노상원이 누군가와 각 통화를 하는 시점은 모두 15:47경 이전인 사실이 확인된다(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 하여 진술하는 피고인 노상원에게 “증인은 2024. 12. 3. ‘15:33경 내지 15:38경, 15:39경, 15:40경’ 3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증인은 피고인 김용균, 구삼희, 방정환 준장과 같이 있으면서 누구와 통화를 하였나요?” 라고 질문하기도 하였다). 반면 정작 통화 상대방으로 지목된 문상호는 2023. 12. 3. 오후 무렵에 피고인 노상원과 통화를 한 시각에 대해 이 법정에서 “그날 ‘13:00 어간’에 다시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선발해놓은 인원들 소집해서 대기를 시켜야 될 것 같다. 며칠 정도 대기할 수 있으니까 준비시켜서 대기를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 노상원이 2024. 12. 3. ‘16:00경 내지 17:00경’ 사이에 나에게 또 다시 전화를 하여 21:00경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도록 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라거나 “2024 12. 3. ‘17:00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모 부대로 두 명을 보낼 테니, 부대 위치를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통화시각을 ‘13:00 어간’, ‘16:00경 내지 17:00경’, ‘17:00경’으로 특정하였을 뿐, 피고인 노상원이 위 3명과 같이 있는 시점(15:09경부터 15:53경까지) 즈음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㉔ 더욱이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노상원이 각 통화한 상대방이 ‘문상호’라고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통화 당시 대화 내용,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보사령부의 계엄 준비상황 및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하는 준비태세를 점검’한 내용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바) 위 ㉔ 사실 인정여부

다음과 같은 방정환, 구삼회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㉔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방정환은 ㉔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서버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거나 ‘QR코드 관련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만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위 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조차도 하지 않았다.

② 구삼회의 진술 중 위 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노상원의 대화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한다. 3일 이내로 찾아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당시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QR코드라는 단어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부분이고, 이에 따르면 일응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 구삼회, 방정환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서버’와 ‘서버확보’라는 단어를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삼회의 진술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 위 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㉕ 먼저 피고인 노상원이 ‘서버’라는 말을 한 시점과 상황에 대한 구삼회의 진술이 불분명하다. 구삼회는 “그날 1시간 사이에 분명히 ‘서버’라는 단어는 여러 번 얘기를 들었다. ‘서버’에 관련된 것은 전화통화(피고인 노상원과 문상호 사이의 전화통화) 때 나온 얘기인지 그 전화통화 어간에 나온 건지,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노상원이 문상호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10명(정보사 선발대 10명)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제가 기억하고, ‘서버를 확보하라’ 이런 것들은 전화를 한 타임과 유사한 시간에

얘기가 돼서 전화일 수도 있고(전화통화 과정에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중간의 대화일 수도 있다(피고인 김용균 등의 대화 과정에서 말한 것일 수도 있다). 중간에 ‘서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전화를 하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㉔ 또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김용균이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 서버는 누가 확보할 것인지?’와 같은 질문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삼회의 진술이 없다. 구삼회는 “피고인 노상원이 ‘서버는 누가 확보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피고인 김용균과 피고인 노상원의 대화 과정에서, 혹시 피고인 김용균이 피고인 노상원에게 ‘서버 증거 찾으려면 내가 직접 해야 되냐? 아니면 누가 하나?’ 이런 거 혹시 물어본 적 있었나요?”라고 묻자, “내가 기억하는 것은,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균에게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한다, 3일 이내로 찾아야 한다.’ 그거는 내가 명확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워딩은 정확한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 김용균이 ‘서버에서 증거 찾으려면 누가 해야 되냐?’ 이런 식의 대화가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것이지요? 아니면 ‘피고인 김용균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 잘 안 나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반드시 증거를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는 분명히 그날 누군가가 했다. 그런데 저는 그게 피고인 노상원이 오히려 한 거로 기억하지, 피고인 김용균이 (‘반드시 증거를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㉕ 무엇보다도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균에게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삼회의 진술이 불명확하다. 구삼회는 피고인 노상원의 변호인이 “QR코드에 대한 수사는 선관위 전산실 서버에 대한 수사로서, 이는 정보사가 전산실 서버 확보 후 방첩사에 인계하여 이후 민간 전문분석팀이 분석하도록 예

정되어 있어서, 이 역시 군사경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고인 노상원이 군사경찰 관련 피고인 김용군에게 QR코드 수사를 언급할 이유가 없는데, ‘당시 증인이 QR코드 수사 관련 피고인 노상원의 언급과 이에 대한 피고인 김용군의 답변을 들었다.’는 진술은 거짓 진술 아닌가요?”라고 묻자, “아니다. 분명히 ‘3일 안에 확보해야 되고’라는 표현을 반드시 썼다.”라고 진술하여, 위 질문과는 관계없는 대답을 할 뿐, 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

한편 검사가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QR코드 관련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건가요?”라고 묻자, “그 QR코드 얘기가, 전화통화가 끝난 이후로 피고인 노상원이 QR코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피고인 김용군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서 한 것인지, 어떤 중간에 ‘QR코드라는 단어’가 얘기가 지나가가지고 제가 그걸 기억하는 거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그때 피고인 김용군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그 과정에 나왔던 ‘단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내용에 따르더라도 ‘QR코드 단어’가 나와서 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일 뿐,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서)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두 번째 진술은 검사가 ‘QR코드 관련해서 강조를 할 때, 증인 또는 방정환 장군은 어떤 임무가 주어지고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받으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QR코드 관련해서 강조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김용군 대령한테 밖에 할 수없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한 진술인바, 그 진술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위 QR코드라는 단어를 말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군과 구삼희, 방정환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등의 모습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대화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

런 내용도 확인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배)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 모임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오늘이 계엄이다.’라고 알려준 후 제2수사단 조직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보여준 사실은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군이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제2수사단 수사1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신문 대상자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한 사실(위 ㉠ 사실), 피고인 김용군, 구삼희, 방정환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문상호화 통화하면서 정보사령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한 사실(위 ㉡ 사실), 피고인 김용군에게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한 사실(위 ㉢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위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무죄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6) 피고인 김용군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2024. 11.경 군사경찰 추천 요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김용군이 2024. 11.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군사경찰 추천명단을 요청을 받으면서,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또는 ‘수사 잘하는’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김용군이 피고인 노상원에게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을 보내면서, 해당 인원들이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 김용군이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부정선거 수사’ 관련한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② 오히려 피고인 노상원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김용군이 ‘노상원장 군님(피고인 노상원)이 일 잘하고 똑똑한 애들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했는데, 왜 그 명단(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이 여기(피고인 노상원이 보여준 제2수사단 조직도 내지 명단)에 있냐?’라며 오히려 나에게 항의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피고인 김용군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③ 피고인 노상원이 내심으로 ‘피고인 김용군으로부터 군사경찰 추천 명단을 받고, 이를 가지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1부 인원을 구성해야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으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에 기재된 인원들은 ‘국방부 일반명령’에 그대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노상원의 위 의도는 내심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고, 위 사실은 간접적인 사실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 내지 사실만을 근거로 ‘피고인 김용군이 2024. 11.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 김용균은 2024. 11. 6.경 피고인 노상원에게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저는 국방개혁 TF로 생각하고 명단을 제공했는데 다르게 쓰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해 당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에게 항의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 김용균은 어떠한 국방개혁에 대한 TF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노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 노상원이 어떤 용도인지 설명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국방개혁 TF 관련’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은 ‘국방개혁? 국방개혁하려면 방산 카르텔 수사하는데 필요한 요원이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요청에 응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예. 그런 종류의, 그때는 마약에 대한 부분이 새로 많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김용균에 대한 공소 사실의 핵심을 이루는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당시에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한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이 피고인 김용균이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자신이 추천하는 군사경찰 인원이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 김용균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김용균이 ‘부정선거 내지 여론조작 수사’를 위해 설치가 예정되어 있던 제2수사단 수사1부의 구성에 관여하거나 그 인원을 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 모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김용균이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 모임에 참석하여, ‘피고인 노상원의 제안 내지 요청을 수락한 사실’ 내지 ‘서버 또는 증거 확보 등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의 계엄임무

에 대하여 확인하고 논의한 사실’을 의심할만한 정황 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정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군사경찰 출신인 피고인 김용균이 2024. 11. 6.경 피고인 노상원에게 준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에 기재된 인원들이 위 모임 당시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균에게 보여주었다는 제2수사단 조직도 내지 명단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 피고인 김용현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023. 12. 3. 22:45경 국방부 인시기획관 오영대에게 건네준 ‘국방부 일반명령’에도 수사1부장(김상용 대령) 및 수사1부 요원(JG 준위 등)이 기재 되어 있었다.

② 피고인 김용균은 12. 3. 14:49경부터 15:53경까지 약 1시간가량 피고인 노상원 등과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오늘 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 김용균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노상원과 함께 각자 가지고 온 여러 문서들을 보면서 대화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김용균은 피고인 노상원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곧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추후 합류한 구삼희, 방정환을 소개받아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였다. 그런데 ‘국방부 일반명령’에 따르면 구삼희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단장으로, 방정환은 부단장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④ 구삼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균을 소개하면서 ‘같이 일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으로 같이 일할 때 무슨 일을 같이 일한다는 말이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균을 소개해주긴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같이 수행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방정환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김용균을 소개하면서 ‘예비역 대령’이라고 소개

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군사경찰이다’, ‘중요한 일을 같이 하실 분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지시를 하거나 질책을 하는 모습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어떤 하나의 역할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던 것 같은데, 그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김용군은 15:53경 먼저 자리를 떠났는데, 그 후 같은 날 16:55경 제2수사단 수사1부장으로 예정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 대령에게 전화하였고, 같은 날 16:57경 및 17:41경에는 수사1부 요원으로 예정된 육군본부 중앙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JG 준위에게 전화하였으며, 같은 날 18:35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중식당 ‘청원’에서 위 김상용을 직접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⑥ 피고인 김용군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 김용군이 ‘피고인 노상원의 제안 내지 요청을 수락한 사실’ 내지 ‘서버 또는 증거 확보 등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의 계엄 임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12. 3. 이전에 피고인 김용군이 자신이 추천하는 군사경찰 인원들이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선거 내지 여론조작 수사’를 위해 설치가 예정되어 있던 제2수사단 수사1부의 구성에 관여하거나 그 인원을 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이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 모임에서, ㉠ 피고인 김용군에게 제2수사단 수사1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신문 대상자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한 사실, ㉡ 피고인 김용군, 구삼희, 방정환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문상호화 통

화하면서 정보사령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한 사실, ㉔ 피고인 김용군에게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김용군이 위 모임 당시 수사1부의 준비상황을 확인하거나, 선관위 서버 또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는 계엄임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논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 김용군은 민간인으로 이미 퇴역한지 몇 년이 지난 상황이었고, 국방부장관이나 군 관련 인원들과 나름 연락을 하고 의사소통을 해 온 피고인 노상원과 달리 군의 업무나 생활 등에 대해 별다른 접점을 이어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김용군이 부정선거 주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거나 이를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등을 해 온 것으로 불만한 증거나 자료, 정황 등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김용군이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 노상원이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하여 선발하거나 예정한 인원들은 100여단에 집합하여 대기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이들을 추천한 김봉규, 정성욱과 상당 기간 의사소통과 교류를 하였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때로는 질책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김용군과의 사이에 그와 같은 의사소통이나 교류를 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⑤ 피고인 노상원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김용현이 ‘(피고인 김용군도 (예비역이고 민간인이므로) (본인이) 동의하면, 그쪽 □□여단으로 구삼회가 가는 편에 같이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김용군은 ‘나는 댓글 사건으로 10개월 감옥 생활했고, 더 이상 이런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공식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고, ‘노상원장군님(피고인 노상원)이 일 잘 하고 똑똑한 애

들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했는데, 왜 그 명단(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이 여기(피고인 노상원이 보여준 제2수사단 조직도 내지 명단)에 있냐'라며 오히려 나에게 항의했다. 구삼회나 방정환이 오기 전에 본인의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런 상황에서 구삼회가 들어오는 것 같기에 내가 '내 체면 봐서 좀 있어 줘라'라고 한 것이(고) (피고인 김용균이) 거기 앉아 있다 보니까 얼떨결에 (연루된 것이다). 피고인 김용균은 본인이 (거절)의사를 나에게 명확히 표현했고, 그냥 건성으로 앉아서 꼬덕꼬덕하고 앉았다가 구속이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김용균의 변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구삼회, 방정환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용균이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김용균의 설명에 의하면 그들이 오기 전에 이미 거절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이어서 위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 김용균이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한편 피고인 노상원의 위 진술내용 및 피고인 김용균의 주장과 달리, 설령 피고인 김용균이 "피고인 노상원에게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으로 제2수사단 수사1부를 구성한 것에 항의하였고, 이후 단지 피고인 노상원이 '체면을 봐서 자리에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후에도 위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을 뿐(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김용균이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김용균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 김용균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한 결론

(1) 결국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용균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김용균이 2024. 12. 3. 전부터 부정선거 내지 여론조작 수사를 위해 설치가 예정되어 있던 제2수사단 수사1부의 구성에 관여하거나 그 인원을 선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김용균이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 모임에서 피고인 노상원의 제안 내지 요청을 수락하였거나 서버 또는 증거 확보 등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의 계엄임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②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용균은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 모임 후, 제2수사단 수사1부장으로 예정된 김상용과 전화통화를 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였고, 수사1부 요원으로 예정된 AFD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김상용, AF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 김용균이 그들에게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1부 또는 비상계엄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③ 무엇보다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김용균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과 공모하여 그들의 내란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김용균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7) 피고인 조지호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엄군 임무수행 지원 목적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조지호는 선관위에 경력출동을 지시한 목적은 선관위 직원 등 민간인과 계엄군의

충돌이 우려되어 우발사태를 대비하고 치안을 유지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계엄군 내지 방첩사 군인들이 선관위에 출동하여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를 할 예정임을 알고도 그에 협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에게 경력의 출동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경력이 출동할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대한 실질적이든 추상적이든 어떠한 위협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은 앞서 공통주장 ①에서 본바와 같다.

② 피고인 조지호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자신에 대한 변소로 원용하고 있다. 피고인 조지호는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 12. 3. 22:3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여인형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였는데, 여인형이 자신을 방첩사령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선관위 3곳을 ‘관악, 수원, 과천’으로 말하면서 ‘선관위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선관위와 관련하여 부정선거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방첩사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사를 하러 가는가보다.’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관악청사는 서울에 있는데 서울경찰청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에 발생하는 상황이 있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경찰청 측에는 경력 출동을 지시하지 않았고, 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관할 구역 내에 특별한 상황이 없었고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과는 친분이 있어서 김준영에게 전화를 하여 경력 출동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조지호는 ‘경기남부경찰청의 관할 구역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방첩사 내지 계엄군 병력이 부정선거 수사 목적으로 선관위로 간다.’고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③ 만약 피고인 조지호의 주장처럼 ‘선관위 직원 등 민간인과 계엄군의 출동’이 우려되어 경력출동을 지시하였다면, 김준영에게 ‘계엄군 내지 방첩사 병력이 출동한다.’ 또는 ‘군인과 민간인 출동을 방지하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김준영은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당시 ‘군’에 관련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조지호도 당시 김준영에게 계엄군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한편 피고인 조지호는 계엄군의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등 임무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조지호의 위 진술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24. 12. 3. 22:30경 내지 22:40경 여인형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방첩사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사를 하러 가는가보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조지호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까지 34년 넘게 경찰로서 근무한 점,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경찰청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조지호로서는 수사에는 임의수사 외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개념상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조지호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조지호가 계엄군 내지 방첩사 군인들이 선관위에 출동하여 수행하는 부정선거 수사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를 수 있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포함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또한 피고인 조지호의 주장처럼 김준영에게 경력 출동을 지시할 당시 계엄군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전혀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조지호에게 계엄군 임무 수행 지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출입통제’ 지시 부인

피고인 조지호는 경력출동을 지시하면서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우발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조지호가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에게 지시한 내용의 실질은 선관위 과천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대한 ‘출입통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24. 12. 3. 22:41경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경력출동을 지시받은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은 “피고인 조지호가 ‘관내에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이 있는데, 그곳에 경력을 배치해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놔두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이 당시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사항의 정확한 워딩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 내용의 구체적 표현까지 정확히 진술하고 있다. 반면 “당시 피고인 조지호가 ‘우발대비’라는 용어를 썼는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이 법정에서 진술한 2025. 12. 19.까지) 진술하면서 피고인 조지호가 명시적으로 ‘우발대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조지호가 ‘우발대비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무엇보다도 피고인 조지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조지호가 한 지시의 실질은 ‘출입 통제’에 해당한다. 즉, 피고인 조지호는 “내가 김준영에게 ‘우발대비를 하라’라고 하였는데 김준영이 ‘우발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묻자, ‘평상시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통제하고 나오는 사람은 내보내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따르면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하라’는 것이어서 그 실질은 결국 ‘출입통제’에 해당한다.

다) 지시의 구체적 내용 부인 등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 조지호는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총기 등을 소지하고 출동한 것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고, 수원서부경찰서장 김재광이 ‘신원을 불문하고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 역시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의 지시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례는 내란죄와 관련하여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피고인 조지호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지 내란죄 성립 인정 자체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6.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등 시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윤석열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이상민은 소방청장 허석곤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윤석열이 이상민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과 이상민이 허석곤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김용현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과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의 이 사건 법정,

이 법원 2025고합1172 사건 및 헌법재판소에서의 각 증언, 피고인 조지호의 배우자인 DN의 이 법원 2025고합1172 사건에서의 증언, 이상민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용현이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교부할 문건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이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건넨 문건에는 ‘2200 국회’, ‘2300 더불어민주당’, ‘MBC’, ‘여론조사꽃’ 등이 각 기재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김용현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게 교부할 의도로 작성한 문건은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삼청동 안가에서 교부한 문건과 동일한 문건이며, 위 문건에는 “소방청 단전·단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김용현이 작성한 계엄 관련 문건들은 국무총리 한덕수,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외교부장관 조태열,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에게 각 실제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상민은 허석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의 특정 언론사에 대한 진입 계획을 알려주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③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이상민이 2024. 12. 3. 22:54~23:03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상의 안쪽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한덕수와 함께 살펴보고 상의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상민은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상민이 허석곤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대한 조치 지시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ㄱ) 허석곤은 이 법원 2025고합1172 사건에서 “2024. 12. 3. 23:37경 이상민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예, 장관님’이라고 하면서 받았다. 이상민이 ‘특별한 사건, 사고에 소방이 출동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 ‘특별한 상황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이상민이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어서 제가 ‘요청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이상민이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24:00에 경찰이 투입(또는 진입)된다. 연락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상민이 언론사를 빠르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몇 번 되묻고 되뇌었고, 메모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허석곤이 이상민과 통화를 할 당시 소방청 차장 이영팔, 소방청 기획조정관 배덕곤, 소방청 대변인 백승두,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김학근 등 소방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상황판단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허석곤은 이상민과의 통화 종료 직후 이영팔과 배덕곤 쪽을 바라보면서 단전·단수가 소방청의 업무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소방청 간부들 사이에서는 ‘단전·단수는 소방청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허석곤과 이영팔은 ‘이상민이 언급한 특정 언론사의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므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아보자’라고 의견을 교환하였고, 이영팔은 같은 날 23:40경 서울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서 상황이 제일 많을 것 같다’, ‘포고령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협조를 요청해 오면 잘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황기석은 위 통화 직후인 같은 날 23:42경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대응팀장 고재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관할하는 일선 소방서에 시달할 공문에 경찰청이나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조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허석곤은 같은 날 23:50경 황기석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상황 및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었는지 묻고 ‘상황 관리를 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위 (가)항에서 살펴 본 허석곤의 증언은 위와 같은 통화 당시 옆에 있었던 소방청 기

획조정관 배덕곤의 이 법원 2025고합1172 사건에서의 증언에 부합하고, (나)항에서 살펴본 이상민과의 통화 이후 허석곤의 조치 내역에도 부합하며,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허석곤이 향후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굳이 할 이유도 없는 등 허석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만 하다.

IV.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내란죄 성립 여부

가. 내란죄의 의의 등

1) 내란죄의 연원

로마법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교란하는 내란(內亂)과 이적행위를 국가범죄로 처벌하였는데, 점차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나 국가의 기본질서 교란 행위에 황제에 대한 반역행위(황제의 위엄과 주권적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였다. 게르만법은 로마법에서의 황제에 대한 반역행위와는 다소 결을 달리하여 ‘주군에 대한 충성의 파기’라는 개념 하에 봉건적 상위자인 주군 개인에 대한 배신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하였다(게르만법에서는 ‘왕에 대한 적대행위’는 특별한 제제가 없었던 것으로 소개되곤 하는데, 왕에게 저지르는 사소한 반역죄와 직속 영주에게 저지르는 중한 반역죄가 구분되었다고 한다). 이후 중세 유럽에서 반역은 왕·군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왕·군주 개인에 대한 적대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되었다. 따라서 왕을 살해하거나 교체시키는 행위, 왕이나 왕실을 위협하는 행위 등은 모두 대역죄로 규정되었다. 반역죄는 카논법(Canon Law, 기독교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정립한 내부 규

범과 법체계로 교회법이라 불리기도 한다)에 계승되었고,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4세 가 1356년 공포한 법령인 이른바 황금문서에도 도입된 것으로 소개된다.

영국(잉글랜드)에서는 반역의 개념이 국왕(이나 왕족) 개인에 대한 공격(신체적 침해)으로부터 국왕의 주권적 권위에 대한 침해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국왕의 권위를 부인하거나 국왕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것 역시 반역죄에 포함되었다. 영국 국왕 찰스 1세는 (세금 징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왕의 부하들을 탄핵하여 처형하는) 의회와 권력 분쟁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주권이 국왕이 아닌 의회에 있다는 이념이 등장하여 의회와의 사이가 점점 더 험악해져 가던 중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반란을 계기로 의회에서 찰스 1세의 잘못을 200개 조항에 걸쳐 지적하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놓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여 위 결의문 통과를 주도한 5명의 의원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이에 의회 역시 의회 경비병들을 동원해 왕을 저지하였고, 의장은 왕에게 의회 주권이 왕권보다 앞선다는 취지의 말로 맞서자, 왕은 의회를 그 자리에서 해산시켰다. 이에 국왕과 의회는 내전 상황에 들어갔고, 두 차례 내전 끝에 찰스 1세는 의회(올리버 크롬웰)의 포로가 되어 반역죄(High Treason, 주된 혐의사실은 잉글랜드 의회, 신민들에 대한 적대적 전쟁행위임) 등으로 1649. 1. 20. 기소되었고, 영국 특별고등법원은 1649. 1. 27. 반역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1649. 1. 29. 참수형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위 판결은 1660년 찰스 2세의 왕정복고 이후 위법성을 이유로 무효가 되었고,⁸⁴⁾⁸⁵⁾ 판결에 참여한

84) 당시 위 재판은 크롬웰이 1648. 12.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기습하여 찰스 1세의 처형에 반대하는 200여명의 의원들을 가두 고 자신을 지지하는 135명만을 선별해 의회를 편성한 후 해당 의회를 통해 왕을 재판할 특별법원을 연 것이었다. 찰스 1세 는 당시 국왕은 주권자로서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특별고등법원은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법원이므로 공소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85) 1660년찰스2세는왕정복고(Stuart Restoration)를하며, 의회와합의하여찰스1세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 '사법절차확인 법률(An Act for Confirmation of Judicial Proceedings, 1660)'을 만들어 공표하였는데, 위 법률에따르면, 찰스 1세에 대한 위 특별고등법원의 판결은 무효이고, 위 판결을 수행한 올리버 크롬웰 등 인원들을 반역자로 처벌토록 되어 있다.

인원들 역시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그러나 종래 반역이 국왕에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퍼져있던 시대였음에도 국왕 자신이 국가에 대한 반역을 행하였다고 결정한 찰스 1세에 대한 위 판결은⁸⁶⁾ 국왕 역시 국가, 즉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함으로써 주권을 침해하여 반역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린 판결로 이해된다.

정식으로 반역죄가 국가존립에 대한 죄로 인식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으며, 1851년 프로이센 형법과 1871년 독일제국형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소개된다. 이후 이러한 개념은 각국의 입법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형법상 내란죄 역시 국가존립에 대한 죄, 즉 주권 침해에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토침탈 목적 내란과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고, 특히 국헌문란의 의미를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 국가기관의 권능 무력화로 정의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의 죄는 구형법(의용된 일본형법)상의 규정과 거의 같지만 부분적으로 일본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우리 형법 제정 시 신설된 것이다.

2) 내란죄의 의의

내란죄는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내부로부터의 헌법적 기본질서를 침해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내적 안전이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기수가 된다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형법은 내란죄를 국토침탈 목적 내란과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국헌문란의 의미에 대해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관여의 정도(역할의 차이)에 따라 수괴,

86) 위 판결은 찰스 1세가 ‘헌 의회와 그 의회를 통해 대표되는 인민들을 상대로 반역적이고 악의적인 전쟁을 일으켰다.’, ‘의회 와 국민에 대항해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유지 및 지속시킨 죄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요임무종사자 등, 부화수행자 등으로 구분하여 그 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9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내란죄의 법적 성격은 필요적 공범 중 다중의 집합을 요하는 집합범이며, 목적범 및 상태범에 해당한다. 집합범이므로 다수인의 공동범행이 되어야 한다.

3) 각국의 입법례

가) 각국의 내란죄 조문

(1) 일본국 형법

形法

(内乱)

第七十七条

国の統治機構を破壊し、又はその領土において国権を排除して権力を行使し、その他憲法の定める統治の基本秩序を壊乱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暴動をした者は、内乱の罪とし、次の区別に従って処断する。

一 首謀者は、死刑又は無期拘禁刑に処する。

二

謀議に参与し、又は群眾を指揮した者は無期又は三年以上の拘禁刑に処し、その他諸般の職務に従事し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拘禁刑に処する。

三 付和隨行し、その他単に暴動に参加した者は、三年以下の拘禁刑に処する。

2 前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ただし、同項第三号に規定する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형법

(내란)

제77조

①… 국가의 통치기구를 파괴하거나, 그 영토에서 국권을 배제하고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밖에 헌법에 정한 통치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의 죄로 하며,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구금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군중을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하고, 그 밖에 각종 직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한다.

3. 부화수행하거나, 그 밖에 단순히 폭동에 참가한 자는, 3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는 별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독일 형법

Strafgesetzbuch

"□ 81 Hochverrat gegen den Bund

(1)… Wer es unternimmt, mit Gewalt oder durch Drohung mit Gewalt

1.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beeinträchtigen oder

2. die auf dem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uhend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zu ändern,

wird mit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oder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ehn Jahren bestraft.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 82 Hochverrat gegen ein Land

(1)… Wer es unternimmt, mit Gewalt oder durch Drohung mit Gewalt

1. das Gebiet eines Landes ganz oder zum Teil einem anderen L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zuverleiben oder einen Teil eines Landes von diesem abzutrennen oder

2. die auf der Verfassung eines Landes beruhend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zu ändern,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92 Begriffsbestimmungen

(1)… Im Sinne dieses Gesetzes beeinträchtigt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er ihre Freiheit von fremder Botmäßigkeit

aufhebt, ihre staatliche Einheit beseitigt oder ein zu ihr gehörendes Gebiet abtrennt.

(2)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Verfassungsgrundsätze

1. das Recht des Volkes, die Staatsgewalt in Wahlen und Abstimmungen und

durch besondere Organe
der Gesetzgebung,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ung
auszuüben und die Volksvertretung
in allgemeiner, unmittelbarer, freier, gleicher und geheimer Wahl zu wählen,
2. die Bindung der Gesetzgebung a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und die
Bindung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ung an Gesetz und Recht,
3. das Recht auf die Bildung und Ausübung einer parlamentarischen
Opposition,

- 533 -

4. die Ablösbarkeit der Regierung und ihre Verantwortlichkeit gegenüber der Volksvertretung,
5. die Unabhängigkeit der Gerichte und
6. der Ausschluß jeder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3)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1. Bestrebungen gegen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lche Bestrebungen,
deren Träger darauf

hinarbeiten,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beeinträchtigen (Absatz 1),

2. Bestrebungen gegen di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lche Bestrebungen,
deren Träger darauf

hinarbeiten, die äußere oder inner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beeinträchtigen,

3. Bestrebungen gegen Verfassungsgrundsätze solche Bestrebungen, deren Träger darauf
hinarbeiten, einen

Verfassungsgrundsatz (Absatz 2) zu beseitigen, außer Geltung zu setzen oder zu untergraben.

형법

제81조 연방에 대한 내란

①... 폭력이나 폭력에 의한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도한
자는 무기자유형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침해하는 행위

2.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기초한 헌법질서를 변경시키는 행위

②... 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82조 주(州)에 대한 내란

①... 폭력이나 폭력에 의한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주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일연방공화국의 다른 주에 합병하거나 주의 일부를 해당
주로부터 분리하는 행위

2. 주 헌법에 기초한 헌법질서를 변경시키는 행위

②... 중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92조 개념정의

① 독일연방공화국의 주권을 폐지시키거나 국가의 통일성을 제거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에 속하는 영토를
분리시키는 자는 이 법에서 의미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에서 의미하는 "헌법질서(Verfassungsgrundsätze, 헌법원칙)"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선거와 투표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특별기관을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로 국민대표를 선출할 국민의 권리

2. 헌법질서(verfassungsmäßige Ordnung)에 입법부의 기속, 법률에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속

3. 야당의 구성과 그 활동 수행에 대한 권리

4. 정부의 해산 가능성과 국민대표에 대한 책임

5. 법원의 독립

6. 모든 폭력적·전제적 지배의 배제

③ 이 법에서 의미하는

1.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에 반하는 계획(Bestrbungen, 노력, 예비)이란 그 수행자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침해함을 목표로 하는 계획(Bestrbungen, 노력, 예비)을 의미하고 (제1항 Absatz 1),

2. 독일연방공화국의 안보에 반하는 계획(Bestrbungen, 노력, 예비)이란 그 수행자가 독일연방공화국의 대내외적 안보를 침해함을 목표로 하는 계획(Bestrbungen, 노력, 예비)을 의미하며,

3. 헌법질서(Verfassungsgrundsätze)에 반하는 계획(Bestrbungen, 노력, 예비)이란

헌법질서(Verfassungsgrundsätze)(제2항, Absatz 2)의 철폐, 무효화 또는 침해를 목표로 하는

계획(Bestrbungen, 노력, 예비)을 말한다.

(3) 대만 형법

中華民國刑法

第100條

①… 意圖破壞國體，竊據國土，或以非法之方法變更國憲，顛覆政府，而以強暴或脅迫著手實行者，處七年以上有期徒刑；首謀者，處無期徒刑。

②… 預備犯前項之罪者，處六月以上五年以下有期徒刑。

第101條

①… 以暴動犯前條第一項之罪者，處無期徒刑或七年以上有期徒刑。首謀者，處死刑或無期徒刑。

②… 預備犯前項之罪者，處一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102條

犯第一白條第二項或第一百零一條第二項之罪而自首者，減輕或免除其刑。

중화민국형법

제100조

①… 국체를 파괴하고, 국토를 탈취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헌을 변경하거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를 실행한자는, 7년 이상의 유기도형에 처한다; 그 우두머리는, 무기도형⁸⁷⁾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예비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유기도형에 처한다.

제101조

①… 폭동을 통해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도형 또는 7년 이상의 유기도형에 처한다; 그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도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예비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 유기도형에 처한다.

제102조

제100조 제2항 또는 제101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4) 스위스 형법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Art. 265 Verbrechen oder Vergehen gegen dens Staat. Hochverrat
Wer eine Handlung vornimmt, die darauf gerichtet ist, mit Gewalt
die Verfassung des Bundes oder eines Kantons abzu.ndern,
die verfassungsm.ssigen Staatsbeh.rden abzusetzen oder sie ausserstand zu
setzen, ihre Gewalt
auszuüben,
schweizerisches Gebiet von der Eidgenossenschaft oder Gebiet von einem
Kanton abzutrennen,
wird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bestraft.

스위스 형법

제265조 내란

폭력을 통해 아래의 목적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상의 무기자유형에 처한다.

스위스 연방 또는 주(州) 헌법의 변혁,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도록 방해,

스위스 연방의 국토 또는 주토를 연방 또는 주로부터 참절.

(5) 프랑스 형법

Code p.nal

Chapitre II : Des autres atteintes aux institutions de la R.publique ou .

l'int.grit. du territoire national

Section 1 : De l'attentat et du complot

Article 412-1

Constitue un attentat le fait de commettre un ou plusieurs actes de violence
de nature . mettre en p.ril

les institutions de la R.publique ou . porter atteinte . l'int.grit. du territoire
national.

L'attentat est puni de trente ans de d.tention criminelle et de 450 000 euros
d'amende.

87) 도형은 한국의 징역과 같은 개념이다.

Les peines sont portées . la détention criminelle . perpétuité et . 750 000 euros d'amende lorsque l'attentat

est commis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 la période de sûreté . sont applicables . l'infrac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Article 412-2

Constitue un complot la résolution arrêtée entre plusieurs personnes de commettre un attentat lorsque cette

résolution est concrétisée par un ou plusieurs actes matériels.

Le complot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Les peines sont portées . vingt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 300 000 euros d'amende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Section 2 : Du mouvement insurrectionnel

Article 412-3

Constitue un mouvement insurrectionnel toute violence collective de nature . mettre en péril les institutions

de la République ou . porter atteinte . l'intégrité du territoire national.

Article 412-4

Est puni de quinze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de 225 000 euros d'amende le fait de participer . un

mouvement insurrectionnel :

1. En .difiant des barricades, des retranchements ou en faisant tous travaux ayant pour objet d'empêcher

ou d'entraver l'action de la force publique ;

2. En occupant . force ouverte ou par ruse ou en détruisant tout .difice ou installation ;

3. En assurant le transport, la subsistance ou les communications des insurgés ;

4. En provoquant . des rassemblements d'insurgés,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

5. En .tant, soi-même, porteur d'une arme ;

6. En se substituant . une autorité légale.

Article 412-5

Est puni de vingt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de 300 000 euros d'amende le fait de participer . un

mouvement insurrectionnel :

1. En s'emparant d'armes, de munitions, de substances explosives ou dangereuses ou de matériels de

toute esp. ce soit . l'aide de violences ou de menaces, soit par le pillage, soit en d.sarmant la force publique ;

2. En procurant aux insurg.s des armes, des munitions ou des substances explosives ou dangereuses.

Article 412-6

Le fait de diriger ou d'organiser un mouvement insurrectionnel est puni de la d.tention criminelle . perp.tuit. et de 750 000 euros d'amende.

형법

제2장 : 공화국 제도 또는 기관, 국토의 완전성에 대한 기타의 위협

제1절 : 헌정파괴 및 모의

제412조의1

①... 공화국의 제도 또는 기관을 위협에 빠뜨리거나 국토의 안전을 침해할 정도의 하나 이상의 폭력행사는 헌정파괴를 구성한다.

②... 헌정파괴를 범한 자는 30년의 금고 및 4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진 때에는 무기금고 및 7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④...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조의23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412조의2

①... 2인 이상의 자가 헌정파괴의 실행을 모의한 경우, 그 모의가 하나 이상의 객관적 행위에 의하여 구체화된 때에는 헌정파괴모의를 구성한다.

②... 헌정파괴모의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에 의해 행해진 때에는 20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절 : 내란 목적 폭동

제412조의3

공화국의 제도 또는 기관을 위협에 빠뜨리거나 국토의 안전을 침해할 정도의 집단적 폭력행사는 내란 목적폭동을 구성한다.

제412조의4

내란 목적 폭동에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15년의 금고 및 22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장애물, 참호를 구축하거나, 공권력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또는 저지할 목적으로 토목작업에 임하는 행위

2. 위력의 과시 또는 책략으로 건조물 또는 시설을 점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폭동참여자의 수송, 물자보급 또는 통신을 확보하는 행위

4. 방법을 불문하고 폭동참여자의 집결을 교사하는 행위

5. 흥기를 휴대하는 행위

6. 적법한 기관을 교체하는 행위

제412조의5

내란 목적 폭동에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20년의 금고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 약탈 또는 공권력 무장해제를 통해 흉기, 탄약, 폭발물, 위험한 물건 기타 모든 종류의 물질을 탈취하는 행위
2. 폭동참여자에 대하여 흉기, 탄약, 폭발물 또는 위험한 물건을 제공하는 행위

제412조의6

내란 목적 폭동을 지휘하거나 조직한 자는 무기금고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9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6) 미국 형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2383. Rebellion or insurrection

Whoever incites, sets on foot, assists, or engages in any rebellion or insurrection against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or the laws thereof, or gives aid or comfort thereto,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en years, or both; and shall be incapable of holding any office under the United States.

"□2384. Seditious conspiracy

If two or more persons in any State or Territory, or in any plac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conspire to overthrow, put down, or to destroy by forc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to levy war against them, or to oppose by force the authority thereof, or by force to prevent, hinder, or delay the execution of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 by force to seize, take, or possess any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contrary to the

authority thereof, they shall each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enty years, or both.

"□2385. Advocating overthrow of Government

Whoever knowingly or willfully advocates, abets, advises, or teaches the duty, necessity, desirability, or propriety of overthrowing or destroying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the government of any State, Territory, District or Possession thereof, or the government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therein, by force or violence, or by the assassination of any officer of any such government; or Whoever, with intent to cause the overthrow or destruction of any such government, prints, publishes, edits, issues, circulates, sells, distributes, or publicly displays any written or printed matter advocating, advising, or teaching the duty, necessity, desirability, or propriety of overthrowing or destroying any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by force or violence, or attempts to do so; or Whoever organizes or helps or attempts to organize any society, group, or assembly of persons who teach, advocate, or encourage the overthrow or destruction of any such government by force or violence, or becomes or is a member of, or affiliates with, any such society, group, or assembly of persons, knowing the purposes of thereof—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enty years, or both, and shall be ineligible for employment by the United States or any department or agency thereof, for the five years next following his conviction. If two or more persons conspire to commit any offense named in this section, each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enty years, or both, and shall be ineligible for employment by the United States or any department or agency thereof, for the five years next following his conviction.

As used in this section, the terms "organizes" and "organize", with respect to any society, group, or assembly of persons, include the recruiting of new members, the forming of new units, and the regrouping or expansion of existing clubs, classes, and other units of such society, group, or assembly of persons.

미국법전 제18편 -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2383조 반란 또는 폭동

누구든지 미합중국 정부 또는 그 법률에 반하여 반란 또는 폭동을 선동, 개시, 보조, 참여하거나 이에 도움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벌금 또는,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합중국의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2384조 선동적 음모

모든 주, 국토, 또는 미합중국 관할권 하의 모든 장소에서 2인 이상이 미합중국 정부를 전복, 제압, 또는 파괴하기 위해 음모하거나, 또는 전쟁을 야기하기 위해 음모하거나, 미합중국의 모든 법의 집행을 방지, 방해,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음모하거나, 미합중국 기관에 반하여 압력으로 국유재산을 장악, 탈취, 점유하기 위해 음모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벌금 또는, 그리고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85조 내란옹호

누구든지 고의 또는 악의로 미합중국 연방정부 또는 각 주 정부, 국토, 관할, 속령 또는 그 하위행정구역을 위력 또는 폭력으로 전복 또는 파괴하거나 그와 같은 정부의 공무원을 암살하는 것이 의무, 필요, 바람직하거나 타당하다고 옹호, 방조, 조언 또는 교육하는 경우, 또는

누구든지 위와 같은 정부 등을 전복 또는 파괴하려는 의도로 위 정부 등을 위력 또는 폭력으로 전복 또는 파괴하는 것이 의무, 필요, 바람직하거나 타당하다고 옹호, 방조, 조언 또는 교육하는 내용의 서면 또는 인쇄물을 인쇄, 출판, 편집, 발행, 유통, 배포 또는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또는

누구든지 위와 같은 정부 등을 위력 또는 폭력으로 전복 또는 파괴하는 것을 교육, 옹호, 응원하는 집단, 조직, 연합을 조직 또는 이를 시도하거나 협력하는 경우, 또는 위와 같은 집단 등에 그 목적을 알면서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벌금 또는, 그리고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유죄판결 후 5년간 미합중국의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상실한다.

2인 이상이 위항의 죄를 공모한 경우, 각각이 이 법에 따른 벌금 또는, 그리고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유죄판결 후 5년간 미합중국의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조직"이란 모든 집단, 조직, 인적 구성으로서 새로운 구성원이 선발, 결성, 또는 기존재하는 조직의 재조직 또는 확장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나) 학설, 판례

(1) 일본의 학설, 판례

1. 일본 형법상 내란행위의 목적

내란죄는, '헌법이 정한 통치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힐 것'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위 목적은 크게 '헌법에 정한 통치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힘'(헤이세이 7년 형법 개정 이전 '조헌의 문란'), 국가 통치기구 파괴'(헤이세이 7년 형법 개정 이전 '정부전복'), '영토에서 국권을 배제'(헤이세이 7년 형법개정 이전 '영토침탈')로 이루어지는데, 정부전복, 영토침탈은 위 '헌법이 정한 통치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힘'의 예시에 해당한다.

①… 헌법에 정한 통치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힘

헌법에 정한 통치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의미는, 일본국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아래에 있는 국가의 기본적 통치 조직(이른바 '5.15 사건'⁸⁸⁾, 大判昭10.10.24集14券1267頁)을 불법적으로 변혁 및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독재정권, 무정부주의의 실현, 군정권의 수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관련 판결

○ 교토지방법재판소 쇼와 31년(1956년) 12월 27일 판결(京都地判昭31.12.27判時112号1頁)
「조헌문란이란 (중략) 헌법에 규정된 국회제도, 천황제, 내각제도, 재판제도 등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수단방법으로 변혁하는 것」

○ 대심원(최고재판소) 쇼와 10년(1935년) 10월 24일 판결(이른바 '5.15 사건', 大判昭10.10.24集14券1267頁)

「형법 제77조에서 이른바 조헌을 문란케 함이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한다는 의미로 이는 정부전복, 영토침탈과 함께 예시적 규정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도 정부를 행정조직의 중심인 내각제도를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지배계급에 일격을 가하고 그에 대한 반성 및 각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가혁신의 기운을 조성하려고 기도한 것과 같은 본건의 행위는, 의회제도의 부정을 기도해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의 파괴를 직접 의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기화로 혁명 기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의 변혁 및 파괴를 직접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상을 살해하려 한 본건 범행의 목적은, 계엄령 선포 하에 내각을 개조해 소위 군사정부를 수립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본건 범행은 그 폭동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내란의 상태를 야기할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⁸⁹⁾ 설령 그로 인해 내란 상태의 발생을 예견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상을 습격한 경우에 있어, 그에 따라 즉각적으로 내란의 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다만 내각각료의 경질을 가져오거나, 내각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형법 제77조의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국가 통치기구 파괴

국가의 통치기구를 파괴한다는 것은 일본국 헌법이 정하는 국민주권 하의 입법.사법.행정의 삼권기관 즉, 국권의 최고기관인 국회제도 및 의회제 민주주의 하의 의원 내각제 및 사법제도의 기구를 변혁.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헤이세이 7년 개정 이전 형법에서는 '정부전복'이라 명명되어 단순 내각제도만이 문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법개정을 통해 '국가 통치기구 파괴'로 규정해 단순 내각제도만이 아닌 입법.사법을 확실히 포함하고 있다.

(2) 독일의 학설, 판례

내란죄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Grundgesetz)에 근거한 헌법 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독일 형법 제81조 제1항 2호). 그러나 이 개념의 구체적인 범위에

88) 1932. 5. 15. 일본 해군 소속 장교들이 당시 내각총리대신 이누카이 쓰요시를 암살한 사건이다(내란죄 성립 부정).

89) 내각총리대신의 살해 이후 이루어질 계엄령 선포 및 이에 따른 내각 개조를 통한 군사정부 수립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사건의 직접적 목적 자체는 '내각총리대신의 살해'라는 특정 정치인 살해라는 테러행위에 불과하고, 이후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계엄 선포 및 군사정부 수립은 어디까지나 위 행위의 직접적 목적이 아닌 부수적 목적이라는 의미. 다만 이와 유사한 이른바 '2·6사건'의 군법회의는 동일한 요인 암살이라는 행위가 있었으나, 위 행위가 단순 테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일본 내각 자체(내각 주요 구성원 상당수)의 암살 및 이에 따른 천황중심제의 복권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 주목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 권력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질서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단순히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과 그 기능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진다. 또한,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민주적 법치국가의 본질적 요소인 권력 분립, 법치주의, 기본권 존중, 사법부의 독립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보호범위의 확장은 권력 구조를 직접 무너뜨리지 않더라도 헌법을 점진적으로 잠식하는 방식의 체제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내란죄가 보호하는 대상에는 국민, 의회, 정부 간의 권리 및 명확한 구분, 다당제(Mehrparteiensystem), 입법부(의회) 선출방식, 권력분립(Gewaltenteilung),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의 기능, 기본권 존중 및 사법부 독립 등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폭력적인 권력 교체는, 그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⁹⁰⁾ 또한, 헌법을 직접 폐지하지 않더라도 체제를 점진적으로 무너뜨려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예를 들면, 샤리아법 도입)도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 보호(Amtsinhaberschutz)는 개인의 신변 보호가 아니라 국가기관 자체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헌법 기관의 무력화 시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목적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 각국 내란죄 관련 분석

(1) 세계 각국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구분한 후,⁹¹⁾ 91) 내란죄의 경우 다수인이 전제가 되는 ‘폭동’ 또는 다수인이 전제가 되지 아니하는 폭행·협박을 그 실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대체로 모든 국가들은 ‘국토침탈 목적’(일정 지역에서 기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새로운 국가권력을 만들려는 목적)에 대하여는 이를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 인정하

90) LK-StGB/Steinsiek, § 81, Rn. 12; NK-StGB/Paeffgen/Kluszczewski, § 81, Rn. 12

91) 통상 국가에 대한 반역인 외환, 주권자인 국왕에 대한 반역인 내란으로 구분되던 전통의 영향이라 봄이 일반적이다.

여 처벌하고 있다. 다만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하여, 헌법에 의해 설치·구성된 정부기관에 대한 일시적 공격행위까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독일은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괴가 아닌 권능행사의 저지를 포함하는지(스위스는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프랑스는 공화국의 제도 또는 기관을 위협에 빠뜨리거나 국토의 안전을 침해할 정도의 집단적 폭력행사는 내란 목적 폭동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일본의 경우, 앞서 본 쇼와시대 군인들에 의한 요인암살사건(이른바 5·15사건)을 기준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대단히 협소(폭동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을 요구)하게 인정하고 있는 한편, 독일의 경우 국헌문란의 내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상세히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란죄를 일본에 비해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독일은 국헌문란의 기준이 되는 헌법질서(Verfassungsgrundsätze)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① 선거와 투표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특별기관을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로 국민대표를 선출할 국민의 권리, ② 헌법질서(verfassungsmäßige Ordnung)에 입법부의 기속, 법률에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속, ③ 야당의 구성과 그 활동 수행에 대한 권리, ④ 정부의 해산 가능성과 국민대표에 대한 책임, ⑤ 법원의 독립, ⑥ 모든 폭력적·전제적 지배의 배제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4) 우리나라 형법상 내란죄 규정은 일본과 스위스의 그것을 각 차용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일반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의 해석에 있어 일본의 태도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헌문란 등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보충해주는 조문을 두고 있는 형태는 독일 및 스위스의 그것과 유사하다.

4) 주변국의 사례

가) 아프리카나 남미 등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이 여러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진다. 그러나 실제 이로 인해 내란(또는 반란, 역모 등 유사한 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는 문헌상 찾아보기 쉽지 않다.

대개는 위와 같은 시도가 실패한 경우 해당 대통령이 외국으로 망명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행위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처벌 사례가 있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그런 형사 자료를 제대로 남겨놓지 않거나 이를 다른 나라에 제대로 소개하지 않는 등 해당 사례를 수집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다.

나)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갈등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회를 상원, 하원 양원으로 구성하여 의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거에서 의원의 일정 비율씩만 교체하도록 하여 급격한 의회 구성의 변화를 막거나, 임기 내에 의원에 대한 신임을 묻게 하는 중간투표 등의 제도를 두어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는 장치 등이 대표적이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왕이 첨예한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등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경우도 있다.

나.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1) 형법 등의 규정

우리 형법은 외환죄와 내란죄를 구분하여 두고 있고, 군형법에 별도로 반란죄를 두고 있다. 외환죄의 경우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군형법상 반란죄의 경우에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킬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반면, 내란죄의 경우에는 ①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이른바 ‘국토참절 목적 내란죄’) 또는 ②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만약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내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형법상의 반란죄가 내란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87 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9 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1 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군형법

제5조 (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7조 (미수범)

제5조와 제 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중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의 구성요건 등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국헌문란 목적), ② 폭동을 일으킬 것(폭동)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위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주체

내란죄의 주체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된 집단으로서 다수의 자이어야 하고, 형법 제87조 각 호에서 정한 것처럼 그 역할도 수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한 자 등으로 나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경우, 즉 조직성이 결여된 다중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적, 행위지 역시 불문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나) 국헌문란 목적

- (1) 형법은 별도로 ‘국헌문란’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헌문란이

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제91조 제2호)을 의미한다.

(2) 형법이 정한 위 국헌문란의 정의 중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제91조 제2호)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례는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국가기관인 자연인만을 살해하거나, 그 계승을 기대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반드시 초법규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산, 군주 또는 독재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학설은 일반적으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개인을 살해하거나 특정 정권을 타도·실각시키려는 목적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폭동을 하여 정부로 하여금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사퇴를 강요하려는 목적도 헌법질서의 교란일 뿐 헌법기관 자체를 전복시키거나 그 본질을 변경시킨 것이 아니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4)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

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 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폭동

(1)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수인의 결합은 어느 정도 조직화될 필요는 있으나, 그 수를 특정할 수는 없다.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 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내란죄의 실행행위인 폭동행위는 살상, 파괴, 약탈, 단순 폭동 등 여러 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되어 있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는바(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폭동행위로서의 집단행동이 개시된 후 국토침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폭동행위로 말미암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에 기수가 된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등 참조).

(2) 판례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 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

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다수인의 폭행·협박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일지라도 국토참절,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소요죄가 성립된다.

라) 고의

(1)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의 경우에는 「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폐지 또는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② 다수인이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폭행, 협박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이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한편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함께 폭동행위를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가담한 폭동행위에 관하여만 개별 형법 규정(예를 들어 폭행죄, 협박죄, 손괴죄, 살인죄 등)에 따른 죄책을 부담한다.

(2) 형법 제87조 각 호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조직화된 집단으로서 다수의 자들을 그 역할에 따라 수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한 자로 나누고 있는 바, 이는 고의의 유무나 정도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내란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그 맡은 역할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내란죄의 고의가 없는 이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지, 형법 제87조 제3호의 부화수행한 자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3) 균형법상 반란죄와 관련해, 판례는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그에게 반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 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내란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는 내란죄와 관련하여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 3376 판결 등 참조).

마) 역할

(1) 형법 제87조 제1호의 ‘우두머리’는 폭동을 조직·통솔하는 최고 지휘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수괴는 수인일 수도 있고, 반드시 폭동 현장에서 주동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주모자일 필요도 없다.

(2) 형법 제87조 제2호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폭동계획을 세움에 있어 함께 모의하거나 폭동을 전후하여 지휘한 자, 폭동의 중요한 임무를 맡아 수행한 자 등을 의미한다.

(3) 형법 제87조 제3호의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폭동의 중요한 임무를 맡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폭동에 가담하여 개별적·구체적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단순한 심적 격려나 성원만으로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1) 대통령과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형법상 내란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제84조).

대통령이 이른바 국토침탈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구체적인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 국군을 통수하는 등 그 자신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선뜻 생각하기 어려운바, 국토침탈 목적 내란죄는 일부 지역이 벌이는 독립전쟁과 같이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위치에 서 있지 않은 다수의 조직화된 세력이 자신들만의 국가를 따로 세우기 위한 봉기를 일으키는 경우 등을 상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국민들이 통상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전형적인 내란죄의 모습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특히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내란죄의 본질은 주권 침해에 있다. 우리 헌법상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분산하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이나 사법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는바, 그러한 권능을 침해하는 행위는 내란죄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해산시키거나 의회가 모일 수 없게 만들어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일 것이다 (헌법 등 법령상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히 행정부의 수반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는 자칫 갈등과 긴장 관계에 놓이기 쉽고, 이 경우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는 행정부의 수반은 군을 동원해 의회의 기

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방해 없이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밀고 나가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위와 같은 경우는 종종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주변국에서 직접 목격되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러한 국헌문란의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폭동을 인식·공유하고 대통령과 함께 폭동을 공모·가담한 자에 대해서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그 역할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

한편, 주권 침해가 본질인 내란죄의 성격상 의회나 법원 역시 내란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관념적으로는 상정할 수 있으나 실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굳이 상정해 보면, 의회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기간 정지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대통령을 국외로 내쫓고 다시 국내로 못 들어오게 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헌법은 국회에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윤석열이 대국민담화에서 국회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사실상 마비시켜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 국가긴급권과의 관계 - 비상계엄의 경우를 중심으로

가) 헌법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1) 비상계엄에 관해 헌법과 계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7 조

-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0 조

-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엄법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 (拘禁)·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2.>⁹²⁾
-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 (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 (燒却) 할 수 있다.

제10 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 14 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1. 내란 (內亂)의죄
2. 외환 (外患)의죄
3. 국교 (國交)에 관한 죄
- 4.公安 (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 (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 (放火)의죄
8. 통화 (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제14 조(벌칙) ② 제8조제 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판례는 계엄의 요건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규

92) 개정 전 조항에는 계엄사령관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에 ‘거주·이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국가긴급권, 특히 비상계엄은 헌법 등 법령과 제도에 의해 행정부나 법원 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제약하므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사실상 상당 기간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러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군대가 동원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이 다른 국가기관이 갖고 있던 권한을 가지게 되는 등 위협적인 효과 역시 인정된다. 결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속성에 의해 그 자체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갖추고, 아울러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이라는 ‘폭동’의 구성요건까지 충족하며 나아가 이에 관한 고의까지 인정되는 외양을 갖추는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먼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 실체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응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의 구성요건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의 요건, 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고 등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일응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판례는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 다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하여 이를 선포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해당하는바, 법원이 ‘헌법 제77조 제1항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 나름의 판단을 사후적·객관적으로 심리하여 내란죄의 성부를 선불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실체적 요건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부여된 권한임에도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내란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어서 실체적 요건을 이유로 내란죄 성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임에도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고려하지 않게 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여지도 적지 않다.

결국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면 이에 대해 탄핵 등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족하지,⁹³⁾ 형사 책임의 부담을 지울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절차 등 형식적 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내란죄의 성부를 논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내란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소한 것부터 중한 절차적 흠결 등의 다양한 경우에 있어 어느 정도의 흠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텐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93)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 나8 전원재판부 결정).

원칙 등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등 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성부를 논할 것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 돌아가 대통령이 어떠한 목적(의도)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실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따져 내란죄의 성부를 논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즉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에서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이용해 의도한 행위를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겉으로만 비상계엄 권한을 내세운 것일 뿐 실제로는 자신이 통수권을 가지는 군을 이용하여 헌법과 법률이 비상계엄 하에서도 허용하지 않은 권한을 사실상 실력으로 행사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의의와 취지가 충분히 존중되면서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고도의 정치행위에 관한 사법적 심사 자제, 책임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과도 균형을 이룬다.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제77조 제3항),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있게 하며(제110조 제4항), 이에 따라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 등 일정

한 요건 하에 체포·구금·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동원, 징발,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제9조). 따라서 그 반대해석상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계엄사령관이 입법사무를 관장하거나 입법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나 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정지시키려는 조치 등을 할 권한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계엄을 해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헌법 제77조 제4항, 제5항)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비상계엄 하에서 행사 가능한 권한이 아닌 일종의 실행행사, 즉 ① 국회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 ② 행정부나 법원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본질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마비·정지시키려는 특별한 조치 등을 행사하여 해당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을 동원해 위와 같은 특별한 조치 등 행사에 나아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앞서 본 전자의 견해는 비상계엄은 그 속성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일응 충족하

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반해, 후자의 견해는 비상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으로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할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내세워 이를 실행한 경우에만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두 가지 견해를 절충하는 견해, 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능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그러한 권한 행사에 나아갔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내란죄의 성부를 살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수공하기 어렵다.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살펴 바와 같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해 내란죄 성립과 연결됨으로써 자칫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이 형해화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견해는 결국 외형적으로 비상계엄을 내세워 적법한 권한인 것처럼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은 경우에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외형적으로 비상계엄을 내세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간접사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비상계엄의 선포가 곧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나,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에서도 할 수 없는 실력행사(국회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 행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정지시키려는 조치 등)를 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내세워 그러한 실력행사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국헌문란의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비상계엄 및 이에 따른 실력행사임을 인식·공유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및 이에 따른 실력행사에 공모·가담한 자에 대해서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공유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 절차에만 관여하거나 이에 따른 실력행사에만 가담한 경우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고, 관여한 해당 행위에 대한 별개의 형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죄책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는 사람들끼리 그 맡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뇌동자로 나누어 법정형에 차이를 두어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체계에 부합한다.

라. 이 사건의 경우

1) 국헌문란의 목적 및 고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1)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 폭주, 탄핵 남발과 예산 폭거 등 권한 남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시스템 문제로 인한 헌정질서 위기 상황을 맞아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고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형법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정의 중 하나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제 91조 제2호). 판례는 이때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따라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회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

헌법과 관련 법령의 규정들에 의하면,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결국 법률안을 포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한다면 이는 결국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 즉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도록 국회의원 개개인을 회유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는 형법상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칠 목적이어서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까지는 아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했으며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에 의하면, 야당의 탄핵,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면서 이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표현하였고,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라고도 표현하였다.

이는 국회 또는 국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범죄자집단,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야당이 다수를 점하면서 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국회는 사실상 반국가세력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놓아둘 수 없으니 척결하겠다.’는 것이어서 국회 및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명확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인 김용현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경위와도 일치한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의 승인과 동의를 얻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용현이 세운

계획은 헬기를 이용해 특전사 소속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바로 국회의사당 본관에 투입해 본관 건물 자체를 봉쇄하고, 수방사 병력을 국회 경내에 배치하여 국회 경내에서의 이동을 통제하며, 방첩사 병력이 위와 같은 군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 등을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위반하였다는 명목으로 체포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계획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국회, 특히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자체의 출입을 통제하여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 직원 등 국회 관계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회를 봉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와 같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은 결국 국회의 본질적 활동, 즉 국회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계엄군을 국회에 침투시켰고, 계엄군의 행위는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어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을 막는 등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이를 위해 계엄군들은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하거나 국회의사당 후문을 떼어내고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회 직원들 또는 보좌진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에게 크고 작은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 또는 마비

시키기 위한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임박하자 이진우와 곽종근에게 각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면서까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 이러한 지시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 또는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③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경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 행위의 주된 목적이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경찰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바람에 국회의원 김민석, 박수현, 박용갑, 안규백, 이광희, 이주영, 이준석, 정동영은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에 심의·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 행위 역시 국회의 기능을 정지 또는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④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은 ‘반드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만 국회의원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막았다고 하여 국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회 본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더하여 실제로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 역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으므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의사당 본관을 통제하려 한 행위는 국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상당 기간’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국회법 제110조 제1항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13조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국회법 제148조의2는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법은 기본적으로 의장석이 설치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여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회법 제112조 제1항은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에서 기본적인 표결 방법을 전자투표로 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15조 제2항은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역시 전자투표시스템과 속기시스템이 구비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회의 본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 나아가 실제로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오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만 국회의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김용현 측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언제 봉쇄를 끝낼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대국민담화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밝힌 바 없고, 실제 국회로 병력을 보낸 각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사령관들도 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이 모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해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 있는 한 언제든 비상계엄해제요구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자신들이 스스로 마음먹기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상당 기간’ 모일 수 없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 자체를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라)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정적·일시적으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을 군대로 보내어 국회를 봉쇄하려 하였다. 단지 군을 국회에 배치해 힘을 과시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사당 본관 자체를 봉쇄하고 국회 경내를 통제하여 국회의 활동, 즉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국회 봉쇄를 푸는 시기에 관하여도 따로

정하여 둔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의 마음먹기에 따라 해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계엄해제요구를 막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국회를 봉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법상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른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계엄법 제2조 제2항). 즉,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대통령은 평상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헌법 제77조 제3항). 그러므로 중대한 위기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주장 자체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그 본래의 목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바, 그럼에도 위와 같이 군대를 국회로 보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이상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로 병력을 보낸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회가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장관,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수습 건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거나 시도하고, 마약범죄 등 치안유지에 필요한 예산, 복지예산, 개발예산, 군에 투입할 예산 등을 이유 없이 삭감하며, 판사를 겁박하는 등 이른바 입법 독재로 대한민국의 행정·사법 시스템을 마비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이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 명분 등을 그 행위의 목적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주장과 같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하였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에 불과하지,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배) 다음과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빌려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①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목적 역시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필요성, 즉 군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군통수권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국회로 군을 보내어 국회를 봉쇄하라는 명령에 군이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수 군인들은 국회 봉쇄 명령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이행하였고, 명령과 지시를 이행한 군인들 상당수 역시 ‘국회 내에 테러가 있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면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높은 분들만 아는 어떤 특별한 전시상황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후회된다.’는 등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군 지휘관과 병력들이 비상계엄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의 한계, 군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 실제 비상계엄을 겪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이용해, 비상계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군이 국회 출동 및 국회 봉쇄 지시를 이행하게끔 만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자체가 군을 국회로 동원하여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후적·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와 같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나름 존중받아야 하고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지 군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뒷받침할 강력한 정황으로 보기에에는 충분하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정식으로 국회에 통고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며, 관련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없었다. 계엄 선포문이나 포고령 등은 정식적인 지휘계통과 체계를 거쳐 작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률검토 등도 전무했다.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현과 사이에 계엄선포를 통해 국회와 선관위로 군을 보내기로 의논한 후 사실상 피고인 김용현 혼자 관련 문서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였으며, 피고인 윤석열이 저녁 무렵 갑자기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통지하여 급히 모이게 한 후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등을 밝힌 후 한밤중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미 군 병력이 국회로 출동하도록 준비를 마쳤었고, 비상계엄 선포 후 바로 군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위와 같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성급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병력 동원을 통한 중대한 위기상황 극복이라는 비상계엄의 본질과 무관하게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배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③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는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정, 즉 군을 군대에 보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특전사령관 곽종근, 수방사령관 이진우,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국회에 보내 국회를 봉쇄하려는 계획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단편적인 형태의 임무만을 그때그때 부여하였다. 곽종근에게는 이유나 설명 없이 ‘국회와 선관위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만을, 이진우에게는 ‘국회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보고 보고하라’는 지시만을 하였을 뿐이고 군의 국회 출동 시기, 이유, 출동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보안상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비상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국회로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령관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전체 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인식하였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형식적으로만 거칠 이유도 없었고, 제대로 된 논의를 생략할 이유도 없었으며,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통지를 할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긴급한 상황이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에 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만한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공고한 이 사건 포고령은 피고인 김용현이 작성하고 피고인 윤석열이 검토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포고령은 위헌·위법하므로 무효이고,⁹⁴⁾ 그러한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94)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계엄법 제14조 제2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는 헌법 제77조 제3항,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계엄사령관에게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 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으로서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 능을

공고한 것은 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제1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며(제2항),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고(제3항),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를 금하며(제4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며(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구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야당 또는 국회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포고령이 공고될 당시의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 제77조 제1항,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②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 147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포고령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 제118조 제1항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으며,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헌법 제8조가 규정한 정당 제도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부인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포고령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15조가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33조가 규정한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공고되었고, 그 내용도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정당제도를 부인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과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

④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버렸다. 이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이고, 위와

같은 포고령의 내용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공고로 국회와 지방의회의 권능행사를 배제하려고 했음을 뒷받침한다.

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단순히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이 사건 포고령을 공고한 것이지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 집행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군 병력을 국회로 보내 국회를 봉쇄하게 하기 위해 마치 법률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권한행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이 사건 포고령 규정 등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위 포고령 규정 등에 의해 적법한 명령이라고 인식하여 상당수의 군인들이 국회 출동 및 봉쇄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김용현이 작성한 이 사건 포고령을 사전에 검토하면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피고인 윤석열이 이 사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과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피고인 윤석열이 이 사건 포고령이 공고될 무렵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이 공고된 사실을 알려주라고 한 점, ㉣ 피고인 조지호가 박안수로부터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이 사건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재차 차단한 점, ㉤ 피고인 김용현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계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32경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이란 제목의 문건을 건네주었는데, 위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순번 6기록 302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문건의 내용은 문언의 의미 그대로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그 문언 자체로 예비비 확보,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이라는 세 가지 내용임이 명백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다. 게다가 위 내용은 당시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던 목적과도 부합한다. 예산 삭감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예비비 확보를 강구하고,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국회 관련 자금을 모두 차단하며, 활동이 정지된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② 피고인 윤석열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는 국회의 입법 독재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일체의 정치활동 즉, 사실상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군대와 경력을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문건의 내용은 문언 그대로 국회를 배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위 문건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를 통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차단하라거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산하의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㉔ 실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려고 했다는 자료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발하는 재정·경제에 관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고, 대통령이 위와 같은 명령을 한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헌법 제76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서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령하고, 국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㉕ ‘국가비상 입법기구’라는 문언상 국가비상 시 입법을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 또는 기관으로 해석되고, 이것이 단순히 기획재정부 산하의 조직 명칭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령을 위한 기구를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치하려 했다면 기존 조직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평소에 ‘국민경제와 민생회복과 관련해 정부·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100개 넘게 있고, 이런 것들이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완전히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으니 가슴이 아프다. 이를 입법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해서 제가 최상목 문건에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국회의 관련 기능을 배제하기 위한 비상입법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㉔ 과거 군사쿠데타 이후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실제로 구성되었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포고령 문건 및 계엄 선포문, 담화문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계엄령 문건, 10·26 사태, 12·12사태 등 과거의 자료들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문건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㉕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의 ‘국가비상 입법기구’는 단순히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산하의 조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기구의 예산 편성은 그 자체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국회를 배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뒷받침한다.

㉖ 설령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조직을 기획재정부 안에 만들어 직접 입법 활동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국회의 핵심적인 권한인 입법권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재) 또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은 방첩사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특정 국회의원 및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하기 위한 합동 체포조를 편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회의원 및 정치인을 체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하였다. 특히 위와 같은 합동

체포조의 체포대상자가 아예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이를 주도하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과 같은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을 우선하여 체포하는 지시가 하달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합동 체포조도 국회의 권능, 특히 이 사건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러한 시도 역시 군대를 국회로 보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헌문란의 목적을 더욱 공고히 실현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채) 그 밖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부정선거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선관위 과천청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과 같이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에 군 병력 내지 경찰력을 보내 해당 기관 내지 청사에 대한 출입통제권한을 확보하고 장악한 다음, 방첩사 병력 등을 진입시켜 서버 자체 내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임의로 확보하고, 정보사 요원 36명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고, 실제로 방첩사 선발대 10명과 특전사 병력 약 52명은 선관위 과천청사에 건물 내로 진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도와 임무 수행은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헌법 기관을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한 다음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고 임의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 노상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전제하고 본인의 계엄사무 수행을 준비하였는데, 피고인 노상원은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했던 점,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과 이 사건 비상계

업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수사단의 계엄사무 수행에 있어 군인을 투입시키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국회’에 출동하여 상당 기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킬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러한 예상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한 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하자 피고인 김용현과 전화를 하여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이 있던 피고인 노상원으로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이를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노상원에게도 내란죄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1)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내란행위에 가담한다는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국헌 문란 목적(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공유하면서 경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등의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두

차례에 걸쳐 전면 차단하였고, 피고인 조지호는 특정 정치인에 관한 체포조라는 사정을 여인형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체포조 지원을 승인하였다. 국헌문란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수단으로서의 유형력의 행사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란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저녁 무렵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 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국회를 포함해서 몇 곳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다.’, ‘이따가 국회에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서유지를 잘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밝힌 계엄선포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려는 목적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경찰에 요청하는 질서유지 요청 역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시이므로 결국 경찰의 지원 활동 또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윤석열은 대국민담화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하여 사법업무 및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주요 예산을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였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

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윤석열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이유 역시 국회를 척결의 대상으로 보고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 역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윤석열의 삼청동 안가에서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김봉식은 경찰 기동대 6기를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 인근에 배치하였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과 울타리에 배치하였으며, 피고인 조지호와 상의 후 출입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당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여서 국회 인근에 대규모의 군중이 밀집했다거나 극도의 혼란이 초래되는 등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근무자들의 선별적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 했다. 이러한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의 1차 출입통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의 국회 투입 목적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일시적으로 국회출입증 소지자들에 한하여 국회 출입을 허용하였다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포고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포고령의 국회의 활동 및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근거로 다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2차 출입통제 경위 역시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자신들의 행동이 피고인 윤석열의 국회 봉쇄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정 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마) 이 사건 포고령에는 헌법이 비상계엄 하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최고위 간부로서 이 사건 포고령의 해당 규정이 위헌·위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각자 자신의 참모들로부터 위헌·위법 여부의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듣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이 사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포고령을 국회 출입 차단 지시의 법적 근거로 삼고 이를 명분으로 현장에 국회 차단 지시를 다시 하달하였다.

(바)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30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수방사령관 이진우로부터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같은 날 23:30경부터 2024. 12. 4. 01:00경까지 6회에 걸쳐 이진우와 통화하면서 이진우로부터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 출입을 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 김봉식은 위와 같은 이진우의 요청에 따라 최창복에게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협조해주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최창복은 무전망을 통해 계엄군 도착 시 국회 진입을 허용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으며, 실제로 경찰은 계엄군이 국회 출입문을 통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피고인 조지호 역시 이러한 피고인 김봉식의 계엄군 출입 협조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경찰의 계엄군 국회 출입 허용 경위에 보아도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윤석열의 국회 봉쇄 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사) 특히 피고인 조지호는, 피고인 조지호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 등을 체포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려는데

위치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후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방첩사에서 한동훈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결국 피고인 조지호는 적어도 방첩사 군인들이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활동을 하려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조지호로서는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의 국회 투입 목적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인식·공유한 것과 아울러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 목현태

(1) 피고인 목현태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출입통제가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이를 위한 폭동에 가담한다는 내란의 고의도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 목현태는 KP를 통해 국회의원들과 국회사무처 보직자들을 출입시켰고, 송민주와 김진욱을 통해 국회사무처 보직자들을 출입시켰다. 또한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출입문을 닫고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다른 행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으므로 내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 피고인 목현태가 국회 의결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 목현태가 자신의 행위가 국회 의결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한 점, 피고인 목현태가 국회경비대장으로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임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목현태는 자신을 포함한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행위가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의욕하여 위와 같이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특히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회 출입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 우원식의 출입 차단을 지시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목현태 역시 매우 출입 차단 지시에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서울 경찰청 지휘부의 지시에 관한 타당성에 대해 나름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국회의장의 출입을 차단하면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목현태는 자신의 국회 출입 차단 행위가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등의 국회 봉쇄 행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 이지환으로부터 헌법상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 이러한 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목현태는 자신의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목현태는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허명구와 통화를 하면서 허명구로부터 국회로 들어 온 국회의원의 숫자가 절반이 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으로부터도 국회로 들어온 국회의원의 숫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목현태는 허명구로부터 ‘본회의장 안으로 안 들어오면 되니까 청사 정문을 잘 막아라. 필요하다면

경력을 보내달라고 해라.’는 취지의 지시도 받았다. 이러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에 들어온 국회의원의 숫자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지 여부와 국회 본회의장으로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목현태가 송민주와 김진욱을 통하여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 이지환과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를 국회 안으로 출입시킨 사실, 피고인 목현태가 김진욱에게 국회사무처 사무 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이양성을 출입시키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목현태가 KP에게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출입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KP가 국회의원 이춘석, 박수현, 안규백의 국회 출입을 허용한 사실, KP가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이양성, 국회사무처 인사과장 남궁인철의 국회 출입을 허용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피고인 목현태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의 국헌문란 목적(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공유하였다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이유로 피고인 목현태의 국헌문란 목적이나 내란 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부정할 수는 없다.

(باء)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봉쇄 이외의 다른 행위에 대한 인식은 없어서 내란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죄의 본질은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데에 있는바, 피고인 목현태가 자신의 국회 출입통제 가담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공유하면서 국회 봉쇄 행위를 행한 이상 내란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국회 봉쇄 행위와 함께 일어난 폭동행위에 대해 인

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란죄의 고의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사) 피고인 목현태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목현태는 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통제 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 목현태의 국회경비대장으로서의 지위, 피고인 목현태가 이지환 및 김민기로부터 경찰의 국회의원 출입 차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항의를 받은 점, 실제 피고인 목현태가 자신이 받은 지시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출입통제를 주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목현태는 이 사건 포고령 및 이에 근거한 국회경비대의 국회 출입통제 행위가 위헌·위법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폭동 인정 여부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목적을 인식·공유하면서 폭동에 공모, 가담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등은 아래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진다.

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 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의 공고 행위는 그 자

체로 앞서 본 국헌문란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동행위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이 사건 포고령의 공고가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행해졌음과 이 사건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고, 이 사건 포고령이 위헌·위법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계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선포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선포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비상계엄의 선포의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선포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포고령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제1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며(제2항),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고(제3항),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를 금하며(제4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며(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구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4)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이 사건 포고령 공고는 결합하여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하며, 파업·태업·집회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중 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강제하며, 국민들이 포고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며 구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단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인, 언론인, 의료인 및 국민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나) 국회 출입통제 및 국회 봉쇄 시도 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행위 및 국회 봉쇄 시도 행위는 모두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1)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회를 봉쇄하려는 위법한 목적 하에 군 병력이 다수를 이루어 단독군장 등으로 개인화기를 소지한 채 버스 등 차량에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는 위세와 위력의 과시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일반인들에 대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러한 군 병력의 출동 및 이동 행위 자체는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동에 해당한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이 이러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국회를 봉쇄하려는 위법한 목적 하에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소속 병력들은 헬기를 이용해 강제로 국회에 침입하였고,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과 후문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국회 관계자 등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촬영하는 기자를 끌고 가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케이블타이로 포박을 시도하였으며,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의 유리창을 손괴하여 국회의사당 본관에 강제로 침입하여 내부를 돌아다녔으며, 그 과정에서도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국회 관계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나아가 국회의사당 지하 1층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 조명을 소등하는 등 전원을 차단하였고, 지하 1층 연결 통로의 문을 강제로 시정하려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일체로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707특수임무단 소속 병력들의 국회 봉쇄 시도 행위는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동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이 이러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국회를 봉쇄하려는 위법한 목적 하에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병력들은 담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경내에 강제로 침입하였고,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과 후문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국회 관계자 등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후문의 바깥쪽 유리문을 떼고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 안쪽으로 일부가 강제로 침입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병력들의 국회 봉쇄 시도 행위는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동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이 이러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4) 국회를 봉쇄하려는 위법한 목적 하에 국회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들의 행위 역시 내란죄에서의 폭동에 해당한다. 35특임대대 선발대 병력들은 담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국회에 침입하였고, 선발대를 지휘하던 김의규는 제1경비단장 조성현으로부

터 ‘이따가 국회의원들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은 후,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 경내에서 35특임대대 후속부대와 합류한 뒤 대기하였다.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소속 병력들 역시 담을 넘어 강제로 국회 경내에 침입하였다. 또한 2특임대대 병력들과 제1경비단 본부 병력들 역시 개인 병기 등을 소지한 채 국회로 출동하였다. 이러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들의 국회 봉쇄 시도 행위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의 공고라는 폭동행위를 유지 및 강화시키기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행위 역시 폭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이 이러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5) 국회를 봉쇄하려는 위법한 목적을 인식·공유하여 국회 봉쇄에 투입된 서울경찰청 기동대원들은 국회 담장 바깥쪽에서 국회 각 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내부로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였으며, 담을 넘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국회경비대원들은 경찰의 2차 출입통제 당시 열려 있던 국회 출입문을 모두 닫고,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국회 안쪽을 순찰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그 자체로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이 이러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방첩사 체포조는 조별로 체포 대상자를 처음부터 특정 받아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에 따라 출동하면서 체포대상자 등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방검복, 수갑 등이 들어 있던 수사장비세트를 챙겨서 국회로 출동한 점, ② 위와 같

이 다수의 군수사관들이 특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한꺼번에 조를 짜서 차례로 국회로 출동하는 것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점(반드시 방첩사 체포조가 특정 체포대상자에 대한 체포행위의 구체적 실행행위에 나아가야만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방첩사 체포조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은 연락을 적극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접선하여 임무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경찰이 합동 체포조로 편성하여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던 행위도 모두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라)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2024. 12. 3. 21:00경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도착하여 대기 중이며 상황을 살펴보는 등 미리 청사 침입을 계획했고, 그러다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된 직후인 22:30경 문상호의 청사 진입 지시를 받고 그 즉시 청사에 침입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임이 명백한 점, ②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청사에 진입한 후 일부 직원을 청사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따라다니기도 하였고, 서버실 내부나 선관위 조직도를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앞서 본 의미의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점, ③ 선관위 등 4곳에 출동한 특전사 병력들도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상황, 야간이라는 시간대, 병력의 규모, 점거 시간, 군인들의 복장·무장 상태, 무단으로 건물 로비, 청사 윗다리 안으로 침입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선관위 등 4곳의 청사 및 직원들 등에 대하여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출동한 경력들도 당시 상황, 시간대, 경력의 규모, 점거시간, 경찰들의 무장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곳의 청사 및 직원들 등에 대하여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보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각 군인들과 경찰이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 또한 모두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마) 위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의 폭동 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포고령의 공고로 인하여 전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파업·태업·집회 행위가 금지되었고,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현장 복귀가 강제되었으며, 이를 위반하는 국민들은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의 대상과 피의자가 되는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이나 실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 사건 포고령에 의거하여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당할 위험과 피의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의 공고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계엄선포 후 계엄군은 단독군장 등을 갖추고 개인화기를 소지하여 다수의 병력으로 버스 등을 이용해 국회로 출동하였고 경찰은 국회 외곽에서 각 국회 출입문을 막아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을 전면 차단하였다. 계엄군의 국회 침투 과정에서 국회의사당 안과 밖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기물이 파손되었으며, 계엄군을 저지하는 국회 방호직원들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대치상황이 계속되었고, 국회의원들은 월담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 국회의원은 계엄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과정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계엄군과 경찰에 의한 국회 봉쇄는 곧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중단을 의미한다.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려고 하였고, 실제 계엄군은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진행 중이던 국회의사당 안에 진입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투 및 통제 시도 활동은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윤석열

가) 소송조건 등에 관한 주장

(1) 불소추특권 관련 주장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이 있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한 뒤 기소하였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의 점은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

(2) 이중기소 관련 주장

검찰은 2025. 1. 26.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후 2025. 5. 1.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하여 추가기소 하였는데, 두 혐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했어야 함에도 추가기소하였으므로 이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추가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의 점은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

(3)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도 내란우두머리의 점과 마찬가지로 공범, 공모의 시기·장소·방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특정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용된 직권이 누구(피고인 윤석열의 직권인지, 다른 공범의 직권인지)의 어떠한 직권인지, 같은 군인들 등에 대하여 ‘통하여’와 ‘하여금’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어떤 문구 앞인지 불분명하다.

(4)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이 사건 공소장은 검사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가 기술되어 있고,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증거를 직접 인용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고의 부인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계엄선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다) ‘직권 남용’ 부인

피고인 윤석열 또는 공범들의 직권 행사의 목적은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과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에 근거하여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었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 외 불법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인을 소집하여 국무회의를 진행하였는바, 비상계엄에 관한 자료나 근거의 작출, 조작, 은닉, 묵비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라) 국회의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관련 '권리행사 방해' 부인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타인(상대방)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그 타인(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무원의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권리행사가 간접적으로 방해되었더라도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이 아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8명의 심의·의결권이 방해되었다는 점과 관련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간접적인 방해의 형태로 되어 있다. 즉, 직권행사의 상대방은 '경찰 기동대 대원 2,036명 및 국회경비대 대원 85명' 등과 같이 경찰 등이 기재되어 있고, 권리행사가 방해된 사람은 '국회의원 김민석 등'과 같이 국회의원 8명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 등에 대한 직권행사로 인하여 직권행사의 상대방인 '경찰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국회의원 8명'의 권리가 간접적으로 방해되었다는 공소사실은, 그 구조 자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마) 경찰 또는 군 병력의 행위 관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부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거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과 관련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 의무 없는 각 행위는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 명단 작성, 대기, 출동, 연습’ 등과 같이 사실행위에 불과한데, 그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거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 구체적 사실관계 등 부인

(1) 피고인 윤석열의 국회 출입통제 지시 사실 및 인과관계 부인

국회 출입통제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 출입통제는 피고인 윤석열의 직권행사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윤석열의 직권행사와 국회 출입통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결국 피고인 윤석열의 직권행사와 검사가 주장하는 국회의원 8명의 권리행사방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

(2)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금지 내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 방해 사실 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전면 금지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특히 국회의원 박수현, 안규백은 경찰을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국회 경내에 진입하였음에도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경찰의 어떠한 방해행위도 없었다.

2) 피고인 김용현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모두 대통령에게 전속하는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의 지시는 정당한 권한 행사이지 '직권 남용'이 아니다. 또한 하급자인 군인들과 경찰들은 위와 같은 정당한 권한 행사에 기초한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들이 수행한 임무는 '의무 없는 일'이 아니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 노상원

가)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한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선관위 서버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출동한 것이며, 출동한 군인들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선관위 직원들도 군인들의 협조요청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수사2, 3부와 관련된 정보사 군인들, 즉 정보사 요원 36명에 대한 소집 및 그들의 연습은 정보사 군인들이 스스로 한 것일 뿐, 피고인 노상원이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또한 피고인 노상원이 방첩사 제1처장 정성우와 몇 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방첩사 군인들은 여인형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것일 뿐이지, 피고인 노상원은 방첩사 군인들의 임무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조지호⁹⁵⁾

95) 피고인 조지호는 ① 국회 외곽 봉쇄와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은 18시 이후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가 없으므로, 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정당한 출입권자라도 경찰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받아들이 수인의무가 있으므로, 포고령에 근거한 경찰 조치에 반하여 국회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조지호는 시민들에게 수인의무가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②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위 청사들의 시설담당자들과는 협의를 거쳤으므로, 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③ 선관위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합동체포조가 실제로 조직되어 운용되지 않았으므로, 체포대상자들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리행사가 방해된 상대방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상대방은 '군인, 경찰, 국회의원 등'이고, 위 주장에서 지정한 '일반시민, 선관위 청사의 시설담당자, 합동체포조의 체포대상자 등'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각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직권 남용’ 부인

(1) 국회 외곽 봉쇄와 관련하여, 피고인 조지호는 국회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이를 두고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 조지호가 서울경찰청 작성 수사관 100여명 명단 및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의 방첩사 체포조 지원에 관하여 ‘준비만 하라’고 한 것을 두고 ‘승인’으로 평가되더라도, 하급자들이 사전에 임무를 진행한 다음 사후적으로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조지호가 경찰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 조지호가 그들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선관위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조지호는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에게 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대하여 ‘우발대비’만을 지시하였는바, 이를 두고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부인

또한 피고인 조지호의 우발대비 지시를 받은 김준영 등의 지시에 따라 경찰들이 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출동하고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등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를 이행한 행위는, 비상계엄 하에서 심야시간에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경찰들의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 김봉식⁹⁶⁾

피고인 김봉식에게는 직권남용죄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6) 피고인 윤승영

96) 피고인 김봉식은 ‘상관인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 그 명령에 따른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대가 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판단한다.

가) 공소사실 불특정에 따른 공소기각 주장

피고인 윤승영의 공모 관계의 성립 과정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남용되었다는 직권이 피고인 윤승영의 직권인지 다른 피고인들의 직권인지 불명확하다. 따라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

나) 일반적 직무권한 부인

피고인 윤승영은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의 참모에 불과하여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남용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

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부인

설령 피고인 윤승영에게 서울경찰청 또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더라도,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경찰관들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이 될 수 없다.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장차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될 수사관 명단을 준비하거나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이 방첩사 체포조 안내를 위해 기다리는 것은 행정응원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 아니다.

7) 피고인 목현태⁹⁷⁾

가)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실 부인

국회경비대가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받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목현태가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고의 부인

97) 피고인 목현태는 ‘위법성 인식의 착오가 있었고, 그와 같은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는 뒤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판단한다.

피고인 목현태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용하였는데,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
서 심의·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고 특정된 피해자 국회의원 김민석 등을 국회에
출입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목현태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
었다.

다) 국회경비대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주장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목현태에 지시에 따른 국회경비대원 약 85명도 피고인 목현
태와 공범관계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범이 피해자가 될 수는 없으므로 논리상 국
회경비대원들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나. 피고인 김용균, 피고인 윤승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① 위 주장 중 피고인 윤석열의 ㉠ 불소추특권 관련 주장 ㉡ 이종기소 관련 주장, 일부
피고인들의 ㉢ 공소사실 불특정 관련 주장,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소송 조건 등
에 관한 주장이므로 이를 먼저 판단한다. ② 그 다음으로 일반적 직무권한, ‘직권을 남
용’, ‘권리행사를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하여는 피
고인들이 공통적으로 다투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충족여부를 판단한 다음, ③ 각 피고인
들의 고의 인정여부를 판단한다. ④ 한편 피고인들 중 일부는 개별적으로 구체적 사실관
계를 다투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과 관련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별적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한다(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용균, 피
고인 윤승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의미한다).

1) 소송조건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소추특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윤석열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의 점에 대한 수사

는 위법한데,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이 부분은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는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사상 소추와 분명히 구분되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 문언의 반대해석상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는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중기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윤석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공소사실은 피고인 윤석열이 직권을 남용하여 군인 또는 경찰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회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내란우두머리의 점 공소사실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군인 또는 경찰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은 범행의 시기 및 장소가 같아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공소사실과 이 사건 내란우두머리의 점 공소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이고(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유지와 헌법 질서의 수호로서(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로서 그 보호법익이 다르다.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 ‘권리행사방해’ 등이 구성요건이고,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등이 구성요건으로서 그 구성요건이 다르며, 그에 따라 각 범죄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상대방의 유무도 다르다.

③ 이 사건 내란우두머리의 점 공소사실과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공소사실은 양립이 가능하고, 반드시 유·무죄 판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를테면 피고인 윤석열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윤석열이 단순히 군인과 경찰들을 법령상 근거 없이 여러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된다면, 내란 우두머리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

④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면,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규정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의 요건인 ‘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직접 관련성’은 공수처의 수사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법적으로 다른 개념인 점, ② 직접 관련성의 판단기준은 기본적으로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는 것’과는 다른 점, ③ 특히 직접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각 혐의의 자

연적 사실관계의 연관성이 필요할 뿐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적 사실 관계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자연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하고, 그에 더하여 법률적 평가 및 규범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일부 피고인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있어 공소 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부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윤석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장 (2025 고합586 사건의 공소장)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충족여부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이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일반적 직무권한 인정여부, 직권 남용 해당여부,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여부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순차로 판단한다.

가) 피고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 인정여부

(1) 관련 규정의 내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질뿐만 아니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바(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1항, 제2항, 제4항), 행정권에 포함되는 경찰권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 제1항, 국군조직법 제6조). 한편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데, 상관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포함되므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조 제3호], 대통령은 군인에 대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며(대한민국헌법 제87조 제2항),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구 정부조직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국군조직법 제8조). 한편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데, 상관에는 국방부장관도 포함되므로(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제2조 제3호), 국방부장관은 군인에 대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또한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제1항 본문). 따라서 경찰청장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국가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다. 시·도경찰청은 시·도의 치안에 관한 사무

를 수행하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 시·도경찰청장은 소관 국가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경찰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다.

국회경비대장은 국회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총괄하고 국회경비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대장과 행정과·경비제대·의장경호대를 두고 있는데, 행정과는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검문에 관한 사항 등을, 경비제대는 국회청사 경비 및 출입자 통제, 국회청사 내 집회시위 등 초동조치 등, 국회청사 내 주요인사 경호 및 안전활동을 각 분장한다[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2025. 4. 8. 훈령 제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이에 따라서 국회경비대장은 경비제대장을 비롯한 국회 경비제대 대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므로(경찰법 제16조 제2항),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서울영등포경찰서장 및 그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하는데, 그 보좌하는 사항으로는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지원, 수사경찰 기구·인력의 진단 및 관리, 수사경찰의 배치·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수사정책 관련 대내외 협업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제2항 제1, 2, 3, 8호).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

위와 같은 대통령,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국회경비대장의 지위와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군인 및 경찰에 대한, 국방부장관이었던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군인에 대한, 경찰청장이었던 피고인 조지호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었던 피고인 김봉식에게는 소속 경찰 등에 대한, 피고인 목현태에게는 자신 이 지휘하는 경비제대장을 비롯한 국회경비대 대원들에 대한 각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노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단독으로는 진정신분범인 형법 제123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스스로는 정보사 군인들 등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나, 공무원으로서 신분범인 피고인 김용현과 문상호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범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나) 직권 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는 불법행위책임에 그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중 형사처벌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무거우므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 행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당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 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인들의 직권행사의 목적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가 직권을 행사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다만 피고인 노상원은 본인의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을 직접 행사한 것은 아니고 방첩사령관 여인형 또는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직권행사에 가담한 것이다).

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가 경찰 기동대, 수방사 및 특전사 병력들로 하여금 국회로 출동하게 하거나 경찰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차단한 목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하여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국회가 그 의결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 포함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려고 했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헌법상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 거의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윤석열의 위와 같은 조치들은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상 국가권력의 기본 구조인 삼권분립을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위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단순한 불법목적의 실현을 넘어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위헌성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는 앞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서 살펴본 ‘국헌문란의 목적’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이 직권을 행사한 목적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 및 운영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등을 이용하여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서버를 반출하며 주요 직원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 했던 것인데, 이러한 시도 역시 헌법상 영장주의를 잠탈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무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다.

② 특히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가 방첩사 병력, 국방부 국방조사본부 병력, 경찰력을 동원하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 및 운영하려고 한 목적은, 위 ①항에서 본 목적에 부대하여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그 밖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가 경찰로 하여금 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게 하여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를 하게 하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특전사 병력으로 하여금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꽃으로 출동시켜 청사 1층 로비 또는 경내를 점거하게 하거나 경찰과 합류하게 하거나 건물 앞을 점거한 채 건물 출입을 통제하게 하게 한 목적은 일단 선관위 청사 등에 대한 출입통제 권한을 확보하거나 정보사 선발대 10명이 확보한 출입통제 권한을 유지·강화한 다음, 방첩사 병력 등 서버장비 내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도착할 때까지 청사, 전산실 및 서버실에 대한 통제권한을 확보·유지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경찰이 출동한 목적이 ‘우발대비’만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 단지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과 여인형이 방첩사 병력으로 하여금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게 한 목적은, 위 기관의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복사) 내지 서버장비 자체를 확보(탈거)하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과 문상호가 정보사 선발대 10명으로 하여금 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게 한 목적은 방첩사 병력 등 서버장비 내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도착할 때까지 전산실 및 서버실에 대한 통제권한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정보사 요원 36명으로 하여금 100여단 회의실로 집합하게 하고 연습을 하게 한 목적은 선관위 직원들을 선별하여 체포한 다음 수방사의 시설에 이송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정보사 선발대 10명은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출동한 것이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노상원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의 목적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은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 이므로, 이들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 윤석열은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없었음을 이유로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있어야만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조지호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 조지호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 조지호가 피고인 윤승영의 ‘서울경찰청 작성 수사관 100여명 명단’ 및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방첩사 체포조 지원’의 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이는 사후 보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조지호가 어떠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조지호는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 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므로 (경찰법 제14조 제3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윤승영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는바, 단지 ‘사후 보고에 대한 승인’을 하였으므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경찰청장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저버리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권리행사 방해 여부

(1)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등 참조).

(2) 국회의원 8명의 심의·의결권이 단지 ‘간접적으로’ 방해된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 윤석열 주장의 논리구조

피고인 윤석열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국회의원 김민석, 박수현, 박용갑, 안규백, 이광희, 이주영, 이준석, 정동영 등(이하 ‘김민석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이라 한다)의 심의·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직권행사의 상대방은 ‘경찰 기동대 대원 2,036명 및 국회 경비대 대원 85명’로 기재되어 있는데, 행사를 방해받았다는 권리로는 그 상대방들의 권리가 아니라, ‘김민석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의 심의·의결권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직권행사에 따라 간접적으로 방해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검토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① ㉡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등과 순차 공모하여, … 함께 총 29개의 경찰 기동대 대원 2,036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하고, ㉠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 등과 순차 공모하여, … (국회경비대) 대원 85명으로 하여금 국회 안쪽에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국회의원 김민석, 박수현, 박용갑, 안규백, 이광희, 이주영, 이준석, 정동영 등의 심의·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위 공소사실을 분설하면, 위 ㉠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공소사실이고, 위 ㉡는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이며, 위 ㉠은 다시 그 직권행사의 상대방에 따라 ㉠ ‘합계 총 29개의 경찰 기동대 대원 2,036명’인 부분(피고인 목현태와는 공모하지 않음)과 ㉠ ‘국회경비대 대원 85명’인 부분(피고인 목현태와도 공모함)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의 상대방이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처럼 ‘합계 총 29개의 경찰 기동대 대원 2,036명’이 아니고, ‘김민석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부의 수반인 피고인 윤석열이 입법부의 구성원인 ‘김민석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 125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므로, ‘김민석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에 대한 구체적 직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

(대) 소결론

따라서 직권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간접적으로 권리행사를 방해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윤석열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김민석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의 심의·의결권 등 권리의 행사가 방해되었는지 여부

(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김민석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등 권리의 행사가 방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위와 같이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한 방해된 권리는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표결)권’이라는 구체화된 권리였다. 즉,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는데(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의원은 그러한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표결)권이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윤석열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초유의 상황에서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표결)권은 구체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또한 위와 같은 구체화된 권리는 그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되었다. 즉, 김민석 등

국회의원 8명 등은 국회 봉쇄 및 출입통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그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음은 분명하다. 비록 국회의원 안규백과 박수 현이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 전 경정문을 통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위 국회의원들은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로 인하여 국회 진입이 늦어져서 이 사건 비상 계엄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심의·의결권이 방해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방해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 아 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목현태가 김민석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의 심의·의결권 등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는지 여부

(가) 피고인 목현태는,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서울경찰청 기동대에 의해서 출입이 통제된 것일 뿐 국회경비대가 관리하는 경정문 등과 같은 구역에 서 출입을 통제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목현태가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목현태는 피고인 윤석 열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의 국회 봉쇄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 한 것이므로, 피고인 목현태나 국회경비대가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목현태 피고인 윤석열 등과 공모하여 김민석 등 국회의원들의 심의·의 결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4668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 목현태는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통제에 가담하였다. 국회경비대는 경찰의 2차 통제 당시 열려있던 국회 각 출입문을 다시 닫았고, 국회 출입문을 모두 닫은 뒤 국회 안쪽에서 월담자 수비를 하였다. 특히 국회1문은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 항의를 하여 폐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경비대가 이를 강제로 닫았는데,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출입문 폐문을 지휘하였다. 피고인 목현태는 단순히 국회경비대만 지휘한 것이 아니라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를 통하여 서울경찰청에 추가 경력을 요청하여 서울경찰청 %@기동대를 배속 받아 국회 경내로 들어온 %@기동대를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 경내에서 월담자 수비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목현태는 서울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윤석열 등의 경찰을 동원한 국회 출입 차단 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③ 피고인 목현태가 국회 의결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피고인 목현태는 자신이 피고인 김봉식의 국회 출입 차단 행위로 인한 국회 의결 방해 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피고인 목현태의 인식과 국회경비대장으로서의 지위, 피고인 목현태가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를 받아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한 점, 실제 피고인 목현태가 수행한 국회 출입 차단 업무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목현태가 피고인 조지호 및 피고인 김봉식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회 출입통제로 인한 국회 의결 방해 행위에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목현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의무 없는 일 여부

(1)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 1376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2) 직권행사의 상대방인 군인들과 경찰들이 실무 담당자로서, 단지 그들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가) 피고인 윤석열 등은, 군인들과 경찰들의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그들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들이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윤석열 등이 지시를 통해 지시사항을 직접 이행한 군인들과 경찰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들에게 단지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지시 당시 군인들과 경찰들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다음과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군인들과 경찰들이 설령 그들이 실무 담당자 일지라도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제7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제8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군인의 정치청 중립의무와 관련하여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5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는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제33조 제1항은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경찰법 제3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는 경찰공무원이 복무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강령으로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제1호),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군인들과 경찰들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고,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지시의 이행행위를 단지 군 내지 경찰 지휘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군인들과 경찰들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군과 경찰은 조직적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의 체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며, 일부 조직 내지 인원들에는 압수·수색·체포 등과 같은 강제수사를 포함한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무기 사용권도 부여되어 있어, 군과 경찰의 직무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지시를 이행한 군과 경찰의 실무 담당자들에게도 각자 자신들이 수행할 국토방위,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등 업무에 관하여 그 대상과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지시의 이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이행행위를 단지 군 내지 경찰 지휘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 등은 군인들과 경찰들로 하여금 직무집행의 기준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 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윤석열 등 지시의 행위자들은 그 지시를 통해 군과 경찰의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의무, 법령준수의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 등을 위반하여 국토방위,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무관한 국회 봉쇄, 정치인 등 체포시도, 선관위 점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더욱이 군과 경찰의 지휘부의 목적, 국회 봉쇄의 경위와 의도, 체포대상자의 지위와 그들의 활동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지시에 따른 군과 경찰의 실무 담당자들의 행위는, 야당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또는 비상계엄해제의결을 주도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제압, 부정선거 수사라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군인들과

경찰들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경찰들의 행위 내지 임무수행이 ‘의무 없는 일’이 아닌지 여부

(가) 피고인 조지호 등은 경찰들의 행위 내지 임무수행이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찰들의 행위 내지 임무수행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조지호가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 등에게 지시하여 경찰력을 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출동시킨 목적은 단지 ‘우발대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계엄군 내지 방첩사 병력에 대한 협조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조지호는 그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이므로, 단지 지시를 받은 경찰들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고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심야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출입통제를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도 하급자는 소속 상급자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행정응원(行政應援)은 행정청이 법령 등의 이유 내지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 다른 행정청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행정절차법 제8조 참조), 적법 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정응원도 위법 내지 불법한 목적·동

기·내용 등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조지호가 방첩사의 요청에 응하여 ‘서울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 작성’ 및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의 방첩사 체포조 지원’을 지시 내지 승인한 것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서울경찰청 내지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지시 내지 승인에 따른 명령 내지 요청을 따라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 따라서 피고인 조지호 등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각 피고인들의 고의 인정여부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국회 의결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군인과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고 국회를 봉쇄하였으며,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였고, 선관위 청사 및 서버 등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군인과 경찰을 선관위 청사 등에 출동시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노상원은 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 내지 여론조작’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설치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구성에 깊숙이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 등에게 지시를 하였으며, 특히 문상호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미리 정보사 선발대 10명으로 하여금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으로 출동시켜 대기하도록 직접 지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노상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국회 의결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고 국회를 봉쇄하였다. 특히 피고인 조지호는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였고, 선관위 청사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찰을 선관위 청사에 출동시키고 선관위 청사를 봉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이 자신들의 국회 기능 마비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였음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라) 피고인 목현태

피고인 목현태가 피고인 김봉식 등과 공모하여 국회 의결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목현태는 이러한 인식 하에 국회경비대원들에게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김민석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의 심의·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목현태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목현태로부터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은 출입시켜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KP가 위 국회의원 8명 중 박수현과 안규백을 출입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목현태가 KP에게 박수현과 안규백을 출입시키라거나 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도우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목현태는 KP에게 국회의원 출입 지시를 한 이후에도 국회 1문 근처에서 월담자 수비 등 출입 차단 행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목현태가 직접 국회경비대가 폐문한 국회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경찰기동대의 국회 외부에서의 출입 차단 행위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이 어렵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목현태는 박수현, 안규백을 포함하여 김민석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윤석열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의 국회 출입통제 지시 사실 및 인과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윤석열의 ‘질서유지 지시’에는 ‘국회 통제 지시’ 및 ‘국회 출입 차단 지시’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통제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회 출입통제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윤석열의 직권행사와 국회 출입통제 및 김민석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의 권리행사방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경찰 국회 출입 전면 금지 내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 방해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로 인하여 국회의원 등 국회 근무자의 국회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국회의원 안규백과 박수현이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 전 경정문을 통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위 국회의원들은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로 인하여 국회 진입이 늦어져서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국회 경내에 진입하였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노상원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노상원은, 정보사 선발대 10명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한 목적은 선관위
서

버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사 선발대 10명으로 하여금 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게 한 목적은 방첩사 병력 등 서버장비 내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도착할 때까지 전산실 및 서버실에 대한 통제권한을 확보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을 뿐이지 그들에 대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선관위 직원들의 ‘협조’라는 것이 당시 상황, 병력의 무장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조인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은 ‘정보사령부 작전과장 중령 서지윤과 소령급 장교 8 명’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다는 것이어서, 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나) 한편 피고인 노상원은 정보사 요원 36명은 그들이 스스로 소집되어 연습한 것이고, 방첩사 병력들은 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것일 뿐, 피고인 노상원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노상원이 정보사 요원 36명이 포함된 합동수사 본부 제2수사단의 구성, 그들에 대한 임무 하달, 그들이 선관위 직원 위협용으로 사용할 물품 구매 등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 방첩사 제1처장 정성우에게 전화하여 방첩사 병력의 출동 현황을 보고받고, 선관위 등에 저장된 서버 정보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 목현태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목현태는,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목현태에 지시에 따른 국회경비대원 약 85명이 피고인 목현태와 공범관계에 있고, 공범관계에 있는 국회경비대원들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목현태의 지시를 이행한 국회경비대 85명은 피고인 목현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경비대 제1경비제대장 김진욱 등을 비롯한 대원 84명에게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지시하였다(이하 이러한 지시를 이 부분에서 ‘이 사건 지시’라 한다).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객체인 ‘사람’은 행위자와 공범자 이외의 모든 타인을 말하므로, 행위자의 부하 공무원은 물론 기타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일반적 직무권한 인정여부’에서 본 피고인 목현태가 가지는 직권(지휘 권한)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피고인 목현태의 이 사건 지시를 받은 국회경비대 대원들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③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지시를 이행한 국회경비대 대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목현태의 지휘 권한에 복종하여 그 지시를 따랐을 뿐, 피고인 목현태 등과 사이에 내란에 관한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 목현태 등의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위 대원들은 이 사건 지시를 통한 직권남용행위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들이 이 사건 지시에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개재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의 상대방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고인 목현태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김용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직권을 남용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

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김용균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문상호, 피고인 노상원,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 등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용균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김용균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목현태, 김대우, 이상현, 김현태,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박현수 및 성명 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범행(내란죄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김용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김용균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문상호, 피고인 노상원,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사 선발대 10명 중 9명(계획처장 고동희 대령 제외) 및 정보사 요원 36명으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사실관계는 앞서 무죄로 판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의 일부를 구성한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 김용균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문상호, 피고인 노상원 등과 이 부분 범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범행)을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 김용균은 민간인 신분으로 본인의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직권이 있는 다른 공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행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하여야만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김용균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1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노상원의 요청으로 2024. 11. 6.경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26명 명단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송한 점, 해당 명단이 피고인 김용현의 ‘국방부 인사명령’에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용균도 피고인 노상원 및 신분자인 피고인 김용현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 김용균이 피고인 노상원에게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을 제공할 당시 해당 명단에 기재된 인원들이 계엄 선포 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1부에 편성될 예정이거나 해당 인원들이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 밖에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 김용균의 변소가 일관되지 못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며,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 모임 후 수사1부 인원으로 기재된 김상용, AFD에게 연락하고 그 중 김상용을 만났다는 다소 의심스러운 사후적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김용균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구성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용균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문상호, 피고인 노상원 등의 제2수사단 구성에 관련된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김용균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김용균은 ‘문상호,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등’과 공모하여, ① ‘고동희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보사령부 작전과장 중령 서지윤과 소령급 장교 8명’(정보사 선발대 10명 중 고동희를 제외한 9명)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② ‘김태용을 비롯한 36명의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정보사 요원 36명)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김용균은 문상호,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을 전혀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 노상원 등이 그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다는 것조차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검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김용균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수사1부’의 구성에 관여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기재된 ‘정보사 선발대 10명 중 고동희를 제외한 9명’, ‘정보사 요원 36명’은 ‘수사2부’와는 관련이 있더라도 ‘수사1부’와는 관련이 없다.

(3) 한편 피고인 김용균은 2024. 12. 3. 안산 롯데리아 모임에서 피고인 노상원과 함께 구삼회, 방정환과 만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용균은 그 당시 구삼회, 방정환을 처음 보았고, 그들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서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 김용균이 위 모임에서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오늘이 계엄이다’라는 말과 함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이 수행할 임무의 내용을 들음으로써 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법리에서 본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김용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윤승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구체적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윤승영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김대우, 피고인 조지호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 등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윤승영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윤승영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목현태, 김대우, 이상현, 김현태,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박헌수 및 성명 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범행(내란죄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윤승영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윤승영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김대우, 피고인 조지호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이종욱 경감 및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 박창균으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사실관계는 앞서 무죄로 판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의 일부를 구성한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윤승영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김대우, 피고인 조지호 등과 이 부분 범행(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윤승영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서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의 직무

를 보좌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엄선포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는 출장 중이어서 피고인 윤승영이 우종수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 윤승영은 우종수가 수사에 관하여 가지는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영등포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경찰청 내지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방첩사의 요청에 응하여 ‘서울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 작성’ 및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명의 방첩사 체포조 지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 내지 요청을 따라야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윤승영에게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거나 직권행사의 상대방이 한 행위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승영으로서는 경찰청장의 적법한 승인에 따라 이현일 등에게 지침을 하달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윤승영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 윤승영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서 직근 상급자인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그보다 더 상급자인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피고인 윤승영으로서는 자신의 직근 상급자보다 더 상급자인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윤승영은 2024. 12. 3. 23:49~23:50경 국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현일, 전창훈으로부터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간략히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 ‘최종 결정권자는 경찰청장이자’라는 취지의 검토 내용도 보고받으며, 이후 국관회의 개최 직전인 23:58경 이현일로부터 전화로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도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윤승영은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에게 국관회의 개최 직전인 23:59경 대면 보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조지호의 승인 및 지시를 받았다.

② 피고인 윤승영이 이현일 등에게 지침을 하달할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는 출장 중이어서 피고인 윤승영은 그의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윤승영은 자신이 대리하는 것에 불과한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명확히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윤승영은 수사기획조정관으로서 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그와 같이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 윤승영은 2024. 12. 4. 00:20경 국관회의가 끝난 후 수사국 회의실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전창훈을 질책하고, 20:38경 우종수에게 전화하여 직접 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정황도 피고인 윤승영에게 권한 남용의 인식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③ 또한 피고인 윤승영이 이현일 등에게 지침을 하달할 당시에는 매우 급박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가지는 직권의 범위와 행사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윤승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V.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봉식의 기대가능성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김봉식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김봉식은 상관인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것이다. 피고인 김봉식에게는 경찰청장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다.

나. 판단

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고,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조지호와 함께 관용 차량을 타고 삼청동 안가에서 복귀하면서 피고인 조지호에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경력 대비를 체크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조지호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하여 이를 동의 내지 승인하였던 점, 피고인 김봉식은 사무실에 복귀한 뒤 국회 쪽에 있는 기동대 수와 철야 근무하는 기동대 현황 등을 알아보았고, 2024. 12. 3. 20:07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5개 기동대가 국회 부근에서 근무 중으로 가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조지호는 피고인 김봉식의 위 보고에 대하여 ‘알겠다.’고 답한 점,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31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준비된 기동대를 배치하

했다.’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조지호는 이를 승낙한 점,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45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국회에 기동대 배치가 완료되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조지호는 '비상상황이 되었으니까 배치했던 국회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피고인 김봉식과 국회에 대한 '진공조치'를 취하고 유지하자고 결정한 점, 피고인 김봉식이 피고인 조지호에게 건의하여 1차 출입통제 후 국회의원의 출입이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봉식은 단순히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했던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조지호와 상의하면서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김봉식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더하여 피고인 김봉식은 1989년부터 경찰로 근무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서울 경찰을 지휘하는 서울경찰청장이었던 점, 피고인 김봉식은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김봉식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피고인 목현태의 위법성 인식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목현태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목현태는 피고인 김봉식이 참모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것이고, 피고인 목현태가 언론보도 등을 확인하고 사실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출입통제 지시의 내용이 계속 변경되었으므로 위법성 인식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

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여부를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상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목현태가 국회 출입 차단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목현태가 이 사건 포고령 및 이에 따른 자신의 국회 출입통제 행위가 위헌·위법하다고 인식했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목현태는 자신의 행위가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목현태의 통화녹음에 의하면, 피고인 목현태가 2024. 12. 3. 22:55~22:56 경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과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국회의장의 출입 조치 여부에 관하여 물어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목현태는 당시 국회의장의 출입 조치 여부에 관하여 질문한 것일 뿐 상급청에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조치의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지는 않았고,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 이지 환으로부터 국

회에 계엄해제요구 의결권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후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상급청에 알리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목현태가 이 사건 포고령의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목현태는 피고인 김봉식이 참모들의 의견까지 검토하고 국회 봉쇄 지시를 내렸으므로 그러한 지시가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러한 생각에서 더 나아가 그 지시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경비대장으로서 국회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고,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 이지환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로부터 출입통제 행위에 대한 항의를 들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인들보다 높은 수준에서 자기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심사숙고했다거나 자기의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은 탄핵소추발의, 법률안 발의, 예산안 삭감을 일삼는 국회 및 거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국회 및 거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국회 및 거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 등에 보내어 이를 봉쇄하는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회와 국회공무원 등 국회관계자들에게 신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며, 사회적으로 크나큰 혼란이 초래되었으므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이 균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비상계

업 선포와 군·경의 국회 등 출동 외에도 대국민담화, 법률안거부권 행사, 국민투표부의 권 행사 등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국회를 정치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이 사건 범행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인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법률안 발의, 예산 삭감 등은 모두 헌법이 권력분립과 행정부 견제를 위하여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로 보이므로, 이를 위법·부당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이 사건 범행을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

VI. 결론

결국 피고인 윤석열에 대하여 내란우두머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 성립하고,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 김용균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하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나.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각 징역 5~35년

다. 피고인 목현태: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내란우두머리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별 선고형

- 1)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 2)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 3)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 4)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 5)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 6)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나. 구체적인 양형 사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공통되는 양형 사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이다. 이는 공동체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내란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하여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였으며,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되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등 그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이 크다. 또한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및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거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상관의 지시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내란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군인 및 경찰관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특히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직권남용범죄는 국가기능의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2) 개별적인 양형 사유

가) 피고인 윤석열

(1) 불리한 정상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제2항). 피고인 윤석열은 오랜 기간 동안 검사로 봉직해 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일반적인 정치인들보다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윤석열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국회, 지방의회, 정당제도를 부인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15조가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33조가 규정한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으며,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배제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군과 경찰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에 침투시켰고, 국회를 봉쇄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군과 경찰을 통하여 국회 봉쇄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미리 예정하지도 않았다. 군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려 하는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국회 기물이 파손되었으며, 국회 관계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은 월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윤석열은 또한 정치인 및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를 반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하려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윤석열은 군을 더불어민주당과 여론조사꽃에 보냈고,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를 시도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별다른 사정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윤석열이 사전에 군·경을 동원한 작전이나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국정 운영에 대하여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지속시간은 비교적 짧았다. 군·경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침투 및 봉쇄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침투한 군인들은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을 소지하였고, 군·경과의 충돌로 인하여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윤석열이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군·경의 숫자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수의 군·경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등 체포조는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한 채 체포 활동을 종료했고, 선관위 직원 등 체포 활동 또한 준비 단계에서 더 나아가 실제 체포 활동을 하지는 못 했다. 선관위 및 여론조사꽃에서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출동한 방첩사 군인들은 선관위와 여론조사꽃에 도달하지 못했고, 군은 더불어민주당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 피고인 윤석열은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65세로 고령이다. 한편, 위와 같은 정상 중 피고인 윤석열의 계획이나 지시가 실제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피고인 윤석열의 국회 기능 정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사정 등은 내란범이 위험범이라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만 고려 한다.

나) 피고인 김용현

(1) 불리한 정상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명문의 규정을 두면서까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하여 정치에 영향을 미친 다수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정치세력들이 군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장악하고자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국군통수권과 인사권 등의 권한을 이용하여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피고인 김용현을 비롯한 군의 구성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경계할 헌법상의 책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용현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였고, 이 사건 포고령 역시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과 이 사건 포고령이 위헌·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군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 더불어민주당 출동과 경찰의 국회 출동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국회에 군을 침투시키고 국회를 통제하여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을 통하여 경찰로 하여금 국회를 외곽에서 봉쇄하게 하였다. 군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려 하는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국회 기물이 파손되었으며, 국회 관계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 김용현은 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꽃에서 서버 반출을 시도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수사하려 했다. 또한 방첩사 군인들을 이

용하여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군을 더불어민주당사에 보냈고, 피고인 윤석열이 이상민에게 교부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김용현이 사전에 군·경을 동원한 작전이나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국정 운영에 대하여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지속시간은 비교적 짧았다. 군·경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침투 및 봉쇄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침투한 군인들은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을 소지했고, 군·경과의 충돌로 인하여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용현이 국방부장관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수의 군인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등 체포조는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한 채 체포 활동을 종료했고, 선관위 직원 등 체포 활동 또한 준비 단계에서 더 나아가 실제 체포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선관위 및 여론조사꽃에서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출동한 방첩사 군인들은 선관위와 여론조사꽃에 도달하지 못했고, 군은 더불어민주당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 피고인 김용현은 오랜 기간 동안 군인 및 공무원으로 봉직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66세로 고령이다. 한편, 위와 같은 정상 중 피고인 김용현의 계획이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피고인 김용현의 국회 기능 정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사정 등은 내란범이 위험범이라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다) 피고인 노상원

(1) 불리한 정상

피고인 노상원은 형사처벌로 인하여 제적된 민간인 신분임에도 이른바 ‘보안 손님’ 명목으로 국방부장관 공관에 빈번히 출입하면서 피고인 김용현과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그 후의 후속 조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前 정보사령관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김용현과의 친분 등을 언급함으로써, 김봉규, 정성욱, 구삼희, 방정환에게는 마치 자신이 그들의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여 그들이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와 정보사 소속 군인 김봉규, 정성욱 등을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끌어 들였고, 이로써 그들 로 하여금 계엄 선포 후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2, 3 부의 인원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을 선발하도록 지시 내지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극비 사항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그들의 의심을 피하고 보안 유출을 방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을 불러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는 암시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정성욱에게는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한 용도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였고, 김봉규, 정성욱에게 구체적인 임무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건네주면서, 해당 문건을 숙지한 후 파쇄 하라는 지침도 내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 및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문상호로 하여금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고동희 등 정보사 군인들 10명을 선관위 과천청사 앞에 대기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과천청사를 신속하게 점거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위와 같이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경찰 출신인 피고인 김용군을 범행에 끌어들이려고 하였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도 임무 등을 지시하였다. 즉, 피고인 노상원은 군사경찰 출신인 피고인 김용군에게 군사경찰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추천 명단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제2수사단 수사2, 3부가 수사 내지 신문 경험이 부족한 정보사 요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수사1부에는 비교적 그러한 경험이 더 있는 군사경찰들로 구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노상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 제1처장 정성우에게 연락하여 선관위 등으로 출동하는 방첩사 병력의 출동 현황을 확인하고, 이후 그로부터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것은 법률적 차원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임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선관위 직원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도 임무 수행을 종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노상원은 2019. 3.경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중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교부받았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25. 12. 15.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 노상원 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6. 2. 12. 위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노상원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위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노상원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위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 그 경과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라) 피고인 조지호

(1) 불리한 정상

피고인 조지호는 국민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가진다. 특히 피고인 조지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경찰 전체 조직의 수장임에도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경찰의 기본적 의무(경찰법 제5조),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경찰공무원의 기본강령(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5호)을 저버린 행위로, 그 지위와 책무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조지호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피고인 조지호는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지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피고인 조지호가 국회 출입 차단 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은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 경찰청장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조지호의 국회 출입 차단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은 월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조지호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에게 지시하여 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도 경찰을 출동시켜 그 곳의 직원 내지 연수생들의 출입을 저지하였고, 영등포경찰서 형사들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를 지원하는 것을 승인·지

시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경찰의 총책임자로서 직접 국회 및 선관위 봉쇄나 정치인 체포 등에 있어서 하급 지휘관들에게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실제 그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하급 지휘관들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 조지호는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피고인 윤석열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 또는 무시하거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따를 수도 있었고, 경찰이 이 사건 내란행위에 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조지호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상급자나 하급자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조지호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에야 비로소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국회 통제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또는 군 수뇌부들과 함께 사전에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와 군의 국회 등 여러 기관에의 침투 등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조지호가 국회 봉쇄 과정에서 피고인 김봉식에게 포괄적으로 봉쇄를 지시한 것일 뿐 구체적인 경력의 배치나 차단 방법에 대하여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조지호는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가 피고인 김봉식의 건의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잠시 허용해주기도 했고, 경찰은 국회 봉쇄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거나 월담자 등을 체포하지는 않는 등 물리력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가 실제 체포활동에 밀접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군의 정치인 체포조 역시 국회 경내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는 경찰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지속시간이 짧아 경찰의 활동 기간 역시 비교적 짧았다. 피고인 조지호는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 이 없다. 피고인 조지호는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 중 경찰의 활동 기간이 짧았다거나 경찰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사정 등은 내란범이 위험범이라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마) 피고인 김봉식

(1) 불리한 정상

피고인 김봉식은 국민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서울경찰청의 수장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가진다. 피고인 김봉식도 피고인 조지호와 마찬가지로 앞서 본 경찰의 기본적 의무, 경찰공무원의 기본강령을 저버린 행위로, 그 지위와 책무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피고인 김봉식은 법률을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최고위급 간부임에도 위 헌·위법한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이 국회 출입 차단 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은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김봉식의 국회 출입 차단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은 월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봉식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김봉식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에서야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국회 통제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와 군의 국회 등 여러 기관에의 침투 등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김봉식은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잠시 허용해주었다. 경찰은 국회 봉쇄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거나 월담자 등을 체포하지는 않는 등 물리력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이 짧아 경찰의 활동 기간 역시 비교적 짧았다. 피고인 김봉식은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 중 경찰의 활동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 등은 내란범이 위험범이라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바) 피고인 목현태

(1) 불리한 정상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경비를 맡고 있는 국회경비대장으로서 서울경찰청 소속이지만 국회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국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의장 우원식이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의 국회 출입 요청은 무시한 채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에 따라 국회경비대원들로 하여금 국회 출입문을 닫고 월담자 수비를 하게 하는 등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목현태의 국회 출입 차단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은 월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2)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 목현태는 사전에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출입 차단을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목현태는 서울경찰청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경비대 감찰 담당 KP에게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출입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KP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되던 2차 출입통제 시기에 국회의원 박수현, 안규백, 이춘석의 국회 출입을 허용했다.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경비대 경비계장 송민주를 통해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 이지환의 국회 출입을 허용했고, 2차 출입통제 시기에 국회경비대 제1제대장 김진욱에게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이양성,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를 출입시키라고 지시했다. 현장에 출동해있던 총경급 지휘관인 피고인 목현태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조지호나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 이 사건 비상계엄 및 이 사건 포고령의 적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피고인 조지호나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경비대가 무기를 사용하거나 월담자를 체포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물리력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출입 차단 활동은 국회 출입문 외곽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출입 차단을 하며 월담자 수비를 하던 서울경찰청 기동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경비대는 국회 출입문을 닫고 국회 출입문 안 쪽에서 주로 월담자 수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목현태의 이 사건 범행에의 기여 정도가 서울경찰청 관계자에 비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목현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등이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 활동을 총괄하면서 구체적·개별적으로 지시했고, 피고인 목현태는 그 지시에 따라 국회경비대를 지휘한 것이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지속시간이 짧아 국회경비대의 활동 기간 역시 비교적 짧았다. 피고인 목현태는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

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 중 국회경비대의 활동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 등은 내란범이 위험범이라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김용균

가. 피고인 김용균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용균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 등이 [별지1]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김용균이 그들과 순차 공모하여, ① 2024. 11. 초순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 잘하는 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따라 피고인 김용균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인 대령 김상용 등 총 25명의 명단을 2024. 11. 6.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송하고, 2024. 11. 10.경 안산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만나 위 명단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였으며, ② 2024. 12. 3. 14:49~16:03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오늘이 계엄이다’라고 들은 후, 피고인 노상원이 보여주는 제2수사단 조직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보면서 제2수사단 수사1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신문할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하였고, ㉡ 구삼회, 방정환이 합류한 뒤 피고인 노상원에게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 서버는 누가 확보할 것인지’라고 질문하고,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서버는 다른 사람이 확보할 것이니 나중에 인계만 받으면 된다.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

원장은 직접 챙겨야 한다’, ‘인원들은 다 연락됐느냐. 이번에 팀장을 맡아주면 된다. 예전에 하던 대로 수행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어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증거 확보 등을 위한 수사를 지시받았으며, ㉔ 그 후 같은 날 16:55경 제2수사단 수사1부장으로 내정된 김상용에게 전화하였고, 같은 날 16:57경 및 17:41경에는 수사1부 요원으로 내정된 육군본부 중앙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JG 준위에게 전화하였으며, 같은 날 18:35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9길9에 있는 중식당 ‘청원’에서 위 김상용을 만나기도 함으로써, 이 사건 내란범행 중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접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 체포 시도’(공소사실 II. 6. 바.항)라는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였고, 그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김용군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김용군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 김용군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윤승영

가. 피고인 윤승영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윤승영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 등이 [별지1]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윤승영이 그들과 순차 공모하여, ① 2024. 12. 3. 23:32~23:52 무렵 이현일로부터 방첩사 체포조가 ‘이재명, 한동훈’ 등 특정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② 같은 날 23:40경 이후 전창훈으로부터 ‘방첩사가 요청한 경찰 인력 100명은 서울경찰청에서 명단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으며, ③ 같은 날 23:5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체포조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승인 및 지시를 받은 후 ④ 이현 일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하였으며, ⑤ 2024. 12. 4. 00:23경 이현일이 ‘방첩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 에 대해서도 영등포서를 통해 명단 확보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곧바로 ‘오케이’라고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내란범행 중 특히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공소사실 II. 6. 마.항)이라는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였고, 그와 관련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윤승영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및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김용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1] 기재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중 일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각 해당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나, 이를 포함하는 내란우두머리죄 내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무죄로 판단되는 각 해당 부분은 범죄사실 기재에서 모두 삭제하였다).

재판장	판사	지귀연	_____
	판사	김의담	_____
	판사	유영상	_____

[별지1]

공 소 사 실

I. 피고인들과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윤석열은 1979. 2.경 충암고등학교를 제8회로 졸업하였고, 1991. 10.경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 2.경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다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고, 2021. 3. 4.경 검찰총장으로 퇴직하였으며, 2022. 3. 9.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2022. 5. 10. 취임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대한민국 헌법」 제 74조),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직무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4.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되었고, 2025. 4. 4.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국방부장관(이하 이사건당시 직책을 기재함)인 피고인 김용현은 1978. 2.경 충암고등학교를 제7회로 졸업하였고, 1982. 3.경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라고함)를 제3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육군 중장으로 전역하였고, 2022. 5. 10.부터 2024. 9. 6.까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24. 9. 6.부터 2024. 12. 5.까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였고,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33조), 대통령의명을받아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 제8조)할 직무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육군참모총장박안수는 1990. 3.경육사를 제46기로 졸업하고 소위로임관한 이래 제39보병사단장, 제8군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0. 30.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제1항)하던 중 2024. 12. 3.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피고인 윤석열의 지휘·감독을 받아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계엄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제1항)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25. 6. 25.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1988. 2.경 충암고등학교를 제17회로 졸업하였고,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11공수특전여단장, 제53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방첩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기관을지휘·감독(「방첩사령부령」 제8조 제1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1.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1991. 3.경 육사를 제47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17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3조)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2025. 4. 4.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102기갑여단장, 제12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수도방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부대를 지휘·감독(「수도방위사령부령」 제5조제1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1.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2025. 6. 25.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정보사령관문상호는 1994. 3.경육사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50보병사단 제122보병연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9. 정보사령관에 임명되어, 군사 관련 영상·지리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의 수집 및 적의 위 정보수집에 대한 방어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부대를 지휘·감독(「국방정보본부령」 제4조 제2항 제1호)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1. 6.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前정보사령관인 피고인 노상원은 1985. 3.경 육사를 제41기로 졸업하고 2015. 11. 5.부터 2016. 10. 24.까지 정보사령관, 2018. 1. 8.부터 2018. 10. 1.까지 육군정보학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23. 장교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제적된 사람이다.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는 1990. 3.경 경찰대학을 제6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서울경찰청장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8. 10.부터경찰청장에 임명되었고,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2.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어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었

으며, 2025. 12. 18.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서울경찰청장인 피고인 김봉식은 1989. 3.경 경찰대학을 제5기로 졸업하고 경위로임관하여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8. 16.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되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용균은 1986. 3.경 학군사관 24기로 임관한 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수사과장, 3군단사령부 헌병대 헌병대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1군단사령부 헌병대 헌병대장,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31.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 윤승영은 1989. 3.경 경찰대학을 제5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2022. 6.경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2024. 8. 1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 임명되어,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지원, 수사경찰 기구·인력의 진단 및 관리, 수사경찰의 배치·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보좌(「경찰청과 그소속기관직제」 제17조제2항)하고, 수사기획조정관실의 직무에 관하여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36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7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목현태는 1997. 4.경 경위 공채로 임관하여 2021. 1.경 총경으로 승진한 후 2024. 2. 5. 국회경비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있는데(「국회법」 제144조), 국회경비대는 기동단과 함께 서울경찰청의 직할대로서 국회 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위하여 국회경비대장을 두고 있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31조), 국회경비대장은 부대장, 행정과, 경비제대, 의장경호대의 보좌를 받으며, 부대장과 각 경비제대장 등을 지휘·통솔하면서 경비제대를 통해 국회 청사 경비, 출입자 통제, 국회 청사 내 안전활동(「서울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37조)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김대우는 1994. 3.경 해군사관학교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방첩사령부 2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5. 1.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에 임명되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형법(군기누설,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 등을 지휘·감독(「군사법원법」 제43조, 제 44조, 「24-2차 방첩사령부 업무분장예규」)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 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이상현은 1994. 3.경 육사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소위로임관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획참모부 전구 작전기획처장, 5군단 작전참모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2. 6.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임명되어,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여단에 예속·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제1공수특전여단 업무분장예규」 제4조 제2항 제1호)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김현태는 2000. 3.경 육사를 제56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협력조정부협력담당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2. 13. 육군특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으로 임명되어, 대테러특공대로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에대한진압작전, 테러 사건과관련된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그밖에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제24조 제1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고동희는 1994. 3.경 학군사관 32기로 입관한 후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처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3. 12. 18. 정보사령부 사령본부 계획처장으로 임명되어, 정보사령부 부서별 업무 총괄 및 조정·통제, 정보사령부 전·평시 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훈련 조정 및 통제, 인원 및 장비 편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위 업무에 관하여 정보사령관을 보좌하고, 정보사령부 작전 시행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정보사령부 2024 사무분장」)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김봉규는 1993. 3.경 육사를 제49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정보사령부 특수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2. 18.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에 임명되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한 대북정보 수집 등 첩보활동을 총괄, 군 합동 신문소를 운영 및 관리, 중앙신문단의 부대 병력 및 장비를 관리하고 전·평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정보사령부 전·평시 중앙신문 단이 참여하는 훈련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정보사령부 2024 사무분장」)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정성욱은 1996. 3.경 육사를 제52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정보사령부 ○○○ 정보여단 ○○○ 정보부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11. 1. 정보사령부 ○○ 여단 제○사업단장으로 임명되어, 대북첩보수집 등 대북 공작 활동 총괄, 배속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사업단 부대 및 병력 관리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 · 감독(「정보사령부 2024 사무분장」)할 권한이 있고 정보사령부 ○○ 여단 예하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각 사업단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박헌수는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실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0. 17.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임명되어,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기관, 국방부장관 소속청에소속된군인및 군무원에대한 범죄의 수사 등을 지휘 · 감독(「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 제2조 제2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 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II. 내란

1.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후 정치상황과 비상계엄 준비

피고인 윤석열은 2022. 5.경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윤석열이 군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대통령 관저 바로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피고인 윤석열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2022. 5.경 정부 출범 이후 내각을 완성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고, 2023. 5.을 기준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 중약 35%만 입법되는 등 국회의 여소야 대 상황에 따른 야당과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야당과의 갈등 속에 평소 피고인 윤석열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수호하고, 헌법가치와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래세대에 제대로된 나라를 물려 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말에 적극 동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김용현(당시 경호처장)과, 피고인 김용현은 그와 친분 관계에 있던 前 정보사령관인 피고인 노상원과 비상계엄을 논의하였는바, 피고인 노상원은 2023. 10. 경 단행된 군 인사를 앞두고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現30기갑여단, 이하동일함)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자신의

수첩에 ‘여인형→소형기, 박안수→김흥준, 강호필, 강은 차후, 역행사대비 더불어민주당 쪽 9사단 30사’라고 기재 하였으며, 2023. 10.~11.경 여인형은 국군방첩사령관, 소형기는 방첩사령부 참모장,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 김흥준은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으로, 강호필은 대장으로 승진하여 9사단과 30사단을 지휘하는 용인 소재 지상작전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위와 같은 군 인사를 전후하여 피고인 김용현과 비상계엄 논의를 진행하던 피고인 노상원은 비상계엄 관련하여 수첩 첫 부분에 “시기 총선전, 총선후”를 시작으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제정 / 선거구조조정, 선거권 박탈 / 행사 후속 조치 사항 3월 중 보고, 헌법·법 개정, 저변 세력 확대방안, 집권하는 방안, 후계자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좌파 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 / 민주당 송영길, 서영교, 윤건영, 윤미향, 유시민, 김민석“이라고 기재하며 비상계엄 실행 전 준비계획과 비상계엄 실행 후 조치사항을 정리하는 등 정치적 반대세력 내지 좌파세력을 붕괴시킨다는 인식 아래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다.

2. 군지휘관들 유인 통한 비상계엄 준비

피고인 윤석열은 2023. 12.경 비상계엄시 동원할 군 지휘관들의 충성심을 유인하기 위해, 피고인 노상원 수첩 기재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이 2023년 하반기 군 장성 인사를 통해 승진·보임시킨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하 ‘여인형’이라고 함),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이하 ‘곽종근’이라고 함),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이하 ‘이진우’라고 함)를 대통령 관저로 불러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격려 만찬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윤석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4. 3. 29.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국방부장관 신원식,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여인형 및 피고인 김용현(당시 경호처장)과 함께 식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시국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용현은 2024.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관에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지면서, 2023. 11.경 동시에 교체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상호 간에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는데, 이때도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대화가 있었고, 이에 여인형, 곽종

근, 이진우는 2024. 5.경 평일 저녁에 서울 강남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종종 말하는 비상계엄의 현실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4. 5.~6.경 위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하는 등 비상대권 및 비상조치에 대하여 계속 언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은 2024. 6. 17.경에도 위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합동참모본부 차장 강호필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시국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하며 군을 통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4. 8. 초순경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은 모임을 통해 당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마치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인 것처럼 표현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군병력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피고인 윤석열의 의지를 반복하여 드러냈다.

3. 국방부장관 교체 후 비상계엄 준비

가. 국방부장관 교체와 비상계엄 준비설 제기

피고인 윤석열은 2024. 8. 12. 비상계엄에 반대하던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의 후임으로 피고인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전격 지명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병주, 김민석 의원 등이 피고인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여 계엄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2024. 8.26. 대통령실 대변인 정혜전을 통해 ‘민주당의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2024. 9. 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며, 2024. 9. 6. 제50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김용현이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

현에 의한 계엄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엄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2024. 11. 4. 당론으로 채택 하기도 하였다.

나. 정보사령관 관련 인사조치

피고인 노상원은 2024. 8.말경 내지9.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김용현(당시 국방부장관 내정자)에게,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하급자 폭행 및 직권남용에 대한 문책성으로 당시 국방부장관 신원식의 지시에 따라 인사조치가 검토되고 있던 정보사령관 문상호(이하 ‘문상호’라고 함)의 유임을 조언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4. 9. 6.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에게 문상호를 정보사령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 조성 기획

피고인 노상원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사항을 기재한 수첩에 ”명분 / 침투, 교전 / 교전중“, ”김봉식-1 ~ 10 (명분)“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윤석열 및 피고인 김용현과 비상계엄 논의를 진행하던 여인형은 2024. 11. 5.경 자신의 휴대폰에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끝으로 차단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등의 내용, 2024. 11. 15.경 자신의 휴대폰에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자위권적 응징태세」라는 내용 등을 기재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군사적 사태 내지 상황을 유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라.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및 군지휘관의 구체적 준비 경과

피고인노상원은2024. 9. 9.경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인대령 김봉규(이하 ‘김봉규’라고 함)에게 ‘특수요원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해달라’라고 지시하여 김봉규로부터 해당 인원을 추천받았고, 2024. 10. 말경 김봉규에게 재차 ‘특수부대 요원 5명, 우회공작 인원 15명 정도를 선발해라, 전라도 출신은 빠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0. 14.경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노상원은 비상계엄에 참여하여 제2수사단 구성원으로 일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라 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상호는 위와 같은 피고인 노상원의 지시를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로 받아들여 2024. 10. 중순 경 공작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김봉규와 정보사령부단장 대령 정성욱(이하 '정성욱'이라고 함)에게 특임수행요원(속칭HDL특전여단요원)을 포함하여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2024. 10. 29.경에는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에게 '장관님 보고를 다녀왔는데, 장관님께서 오물풍선 등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물리적인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다,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 노상원이 지시하는 대로 사업(임무) 잘하는 인원들을 선발해서 보고해 달라'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2024. 10. 1. 20:00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피고인 윤석열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식사를 하면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내 앞으로 잡아오면 총으로 쏘서라도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고, 언론·방송계 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과 함께 비상대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여인형은 2024. 10. 27.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점령, 출입통제, 현장보존, 이후 군검경 합동 수사」라는 내용, 2024. 11. 5.에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등의 내용, 2024. 11. 6.에는 「최초부터 군경합동이 필수, 경찰 상황 은?」이라는 내용, 2024. 11. 9.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천, 조해주」 등비상계엄 선포시 체포할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 2024. 11. 15.에는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자위권적 응징태세」라는 내용을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노상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신문 등을 담당할 인원 구성을 위하여 2024. 11. 초순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경력이 있는 前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인 피고인 김용군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 잘하는 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김용군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인 대령 김상용 등 총 25명의 명단을 2024. 11. 6.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송하고, 2024. 11. 10.경 안산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만나 위 명단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1. 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윤석열도 중간에 합류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 실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피고인 김용현이 곽종근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곽종근은 ‘특전사는 제1공수, 제3공수, 제9공수여단 등 예하 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김용현이 이진우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이진우는 ‘수도방위사령부 역시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윤석열이 이진우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부대 편성 등에 관해 물었고, 이진우는 개략적인 부대편성과 국가중요시설이 위협할 때 수도방위사령부가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등 군 지휘관들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등 모의를 구체화하였다.

여인형은 2024. 11. 9.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전달받은 비상계엄 시 체포자 명단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천, 조해주’ 등 체포자 명단과 체포조 구성을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9.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문상호와 김봉규를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발생하면 대응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선관위로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을 하면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김봉규는 이를 ‘오물풍선 도발에 원점타격 등 대응을 하면 서로 긴장관계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 김봉규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들을 잡아와야 한다’라는 등의 지시사항을 말하고, 문상호가 먼저 자리를 떠난 후 김봉규에게 ‘체포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 체포 준비물,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과 같은 비상계엄 선포 시 수행해야 할 임무가 기재 된 문건 2부를 건네주며 그 중 1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음 날인 2024. 11. 10. 오전경 문상호는 정보사령부에서 김봉규에게 ‘장관 대면보고를 다녀왔는데, 장관이 대북상황 관련된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하셨다’, ‘계엄은 통수권자의 결정이니 군인으로서 임무가 부여되면 임무에 따라야 하지않겠나’라며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같은날 점심경 정보사령부에서 정성욱에게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김봉규는 같은날 저녁경 안양시에서 정성욱을 만나 피고인 노상

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임무를 설명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받은 문건 2부 중 1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17. 점심경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난 다음, 2024. 11. 17. 15:00경 안산시 상록구40에 있는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문상호와 정성욱에게 ‘부정선거 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해 뒤라’라고 지시하며 준비상황을 점검하였고, 문상호는 2024. 11. 19.경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으로부터 최종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받고, 비상계엄 선포 후 각자의 임무 등 준비 상황을 의논하였으며, 그 무렵 정성욱과 김봉규는 피고인 노상원에게 40명의 요원 명단을 시그널 메신저 등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24.경 문상호가 출장을 위해 2024. 11. 25.경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네가 지금 제정신이나,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해외 출장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 늦어도 수요일(27일)까지 돌아오라’라고 말하며 문상호를 질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1. 24.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1. 24.경부터 2024. 12. 1.경까지 사이에 2017. 3.경 박근혜 정부시절국군기무사령부(現방첩사령부)의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문건(박근혜 前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과에 불복하여 폭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엄을 계획하는 문건)과 과거에발령되었던 비상계엄 하에서의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다.

한편, 2024. 11. 28.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2024. 12. 2. 본회의 보고, 2024. 12. 4. 본회의 의결이 예상되고, 2024. 11. 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1. 30. 11:53경부터 14:51경 사이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만난 후, 18:00경 여인형을 만나 ‘대통령이 곧 계엄을 하실 것인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 확보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와 여론조사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고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하였음을 알려 주고, 함께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2024. 11. 30. 23:00경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약 5시간 동안 비상계엄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여인형은 다음날인 2024. 12. 1. 오전경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에게 전화로 ‘2024. 12. 2.부터 부대 대기’를 명하고, 같은 날 15:44경부터 16:24경까지 사이 자신의 휴대폰에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김대우 / 경찰·조본 /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 합동체포조 작전 개시 / 과수실, 정보보호단, 사이버사를 민간전문가팀과 합동운용」 등의 내용을 메모하는 등 구체적 준비사항을 정리하였으며, 2024. 12. 3. 11:25경부터 13:33경 사이 자신의 휴대폰에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인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조치할 것»,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등의 내용을 메모하는 등 구체적 준비사항을 정리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김용현 및 여인형과의 모임 다음날인 2024. 12. 1. 11:00경 피고인 김용현과 구체적 부대출동 계획을 논의하여, 간부 위주로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정도의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군 병력 동원 계획을 구체화한 후, 피고인 김용현에게 계엄선포에 필요한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준비를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과 부대 출동계획을 논의한 이후 2024. 12. 1. 오후경 광종근에게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꽃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진우는 2024. 12. 2. 오전경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로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와 비상계엄선포 등의 상황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로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실시되고 있다는 상황 전파시 지휘관 정위치,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출동이 예정된 수호신에 흑복·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쇠지렛대·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특정경비구역 경계 병력(제1경비대대) 출동 준비, 위병소 폐쇄 시행 등의 지시’, ‘김용현 주재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 회의 종료 이후 수호신 출동,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선 투입·본관 배치 및 후속부대 투입, 국회협력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 공조 통화 실시’ 등을 정리하여 피고인 김용현에게 보고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대로 당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정부에 산안삭감 의결, 검사법 발의 등을 중북 반국가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대국민담화문,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체포·구금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포고령 및 계엄 선포문의 초안을 피고인 윤석열에게 보고하였

고, 이를 검토한 피고인 윤석열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2. 저녁경 위 보완 지시대로 계엄 선포 문, 대국민담화문, 포고령을 수정하여 피고인 윤석열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윤석열은 수정된 위 문건들을 검토한 후 별다른 수정 없이 ‘됐다’고 말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용현은 그 무렵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이 조치할 사항,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봉쇄’,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등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과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 등이 조치할 사항 등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또는 선포 후 조치할 사항을 지시대상자별 ‘문건’ 형태로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1. 09:15경부터 11:24경까지 사이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과 계엄 관련논의를 한 후 안산으로이동하여, 2024. 12. 1. 12:18~12:58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만난 문상호와 김봉규, 정성욱을 상대로 계엄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고, 2024. 12. 2. 저녁경부터 자정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나 계엄 관련 논의를 하였으며, 2024. 12. 3. 아침경에도 위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김용현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후제2수사단을 설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야당과의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김용현 등과 2023. 10.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군·경찰과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으로 국회 및 야당당사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으로 국회기능을 무력화한 후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결위 예산 삭감 등 야당의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 세력 척결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등의 국헌문란 목적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등이 내세운 위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들은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있는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사회 질서가 극도로교란(攪亂)되어행정및사법(司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경우’, ‘군사상필 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이하 ‘박안수’라고 함),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균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우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곳을 장악한 다음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 구금하려 하였고, 법률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 능하게 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균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 · 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등 헌법과 형사소송법 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것이다.

4. 주요 군 ·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前 상황

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상황

(1) 육군특수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육군특수전사령부령에 따라 육군의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된 부대로, 평시에는 테러 진압, 전시에는 적진 침투 및 표적 제거 등 임무를 맡고 있고, 그 임무 완수를 위해 꾸준히 육상 침투, 적 진압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예하 부대로 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7공수특전여단, 제9공수특전여단, 제11공수단, 제13특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특수작전항공단, 국제평화지원단 등을 두고 있다.

(2)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영내 활동 위주의 부대 운영 지시

곽종근은 2024. 12. 1. 오후경피고인김용현으로부터 ‘정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상황에 대비하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수원 선

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꽃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광종근은 예하부대의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등을 고려하여 제1공수특전여단(여단장 이상현)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으로, 제3공수특전여단(여단장 김정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제9공수특전여단(단장 안무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여론조사꽃으로, 제707특수임무단(단장김현태), 특수작전항공단(단장김세운)을 국회로 각각 투입하고, 제7공수특전여단(여단장전종택), 제13특임여단(여단장 기호택), 국제평화지원단(단장 김대성)에는 위 투입부대 지원 임무를 부여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광종근은 2024. 12. 1. 17:10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 4. 경부터 1달간 예정된 제3대대의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 다음 주 1주간은 전 부대의 야외 훈련을 중단하고 영내에서만 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3) 출동 준비태세 지시

광종근은 2024. 12. 2. 10:00~13: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진행된 '한빛부대 남수단 파병 환송식' 행사에서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국제평화지원단장 김대성을 만나 '다음 주에 북한 오물 풍선 등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정보가 있다. 여단별로 출동 가능한 대대가 몇 개냐. 대대장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으나 출동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어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외 훈련을 중단하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2. 15:26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비태세를 잘 유지해라. 나는 내일 일과 이후에도 전투복을 입고 집무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며, 2024. 12. 2. 17:00경에는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를 집무실로 불러 '서울 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 내 북한 동조세력인 민간인을 동원하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역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 총 없이 비살상무기를 이용한 진압 작전을 준비해 보자'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2. 저녁 무렵 피고인 김용현의 비화폰(도청, 감청 방지 기능이 있는 전화기)으로 광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고 말하여 광종근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김용현이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라고 말하였다.

(4) 출동 대기 · 준비태세 강화

곽종근은 2024. 12. 3. 08:00경 참모장 박정환, 작전처장 남기동, 정보처장 한경태, 교육훈련처장 이낙행에게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자’고 지시하면서 ‘전방상황 등이 엄중하여 당분간 부대에서 늦게 퇴근하겠다’고 말하였고, 2024. 12. 3. 10:55~11:26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오늘 불시에 헬기 출동 훈련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오늘 헬기 몇 대가 출동 가능하냐’고 물어 UH-60헬기(일명 ‘블랙호크’) 12대가 출동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확인한 후 ‘오늘 헬기 출동 훈련은 21:30경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불시 훈련이니 작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곽종근은 2024. 12. 3. 11:09~11:48경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직접 ‘오늘 부대원들 비상소집시켜서 불시점검 하라’, ‘작전복 착용 등 훈련 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고, 특수 작전 항공단장 김세운에게 ‘오늘 야간에 헬기 12대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3. 13:17~13:20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을 통해 작전지원과장 이선웅, 작전지원과 항공작전장교 주갑용에게 헬기 12대의 원활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육군특수전사령부 본부 및 제707특수 임무단 인근의 헬기 이착륙장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 영내 제3공수특전여단 연병장에 있던 축구 골대를 연병장 밖으로 치우게 하였다.

이후 곽종근은 2024. 12. 3. 13:55 ~ 14:09경 ‘2025년 교육훈련 방향 토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로 ‘헬기를 특전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태세를 갖춰라’는 지시를 받고, 지휘관리장교 IZ에게 ‘지휘통제실 내에 사령관이 대기할 수 있는 방을 준비 하라’고 지시하였고, 제1공수, 제3공수, 제9공수 특전여단장 등을 포함한 예하 부대장들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주는 영내 활동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각각 출동준비태세를 갖춰라’라고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2024. 12. 3. 18:00~18:40경 평소와 달리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로 작전처장 남기동, 정보처장 한경태, 주임원사 JA, 550방첩부대장 김영권,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를 불러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상황이 엄중하니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자’고 강조하였고, 김현태가 작전복(일명 ‘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간 훈련 준비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저녁식사 직후에는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사무실로 들어가서 전투복을 입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곽종근은 2024. 12. 3. 18:43~18:56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현 시간부로 여단 전체 인원 비상소집을 실시하라’, ‘지역대장급(소령) 이상만 비상소집하여 영내대기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19:26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가용한 헬기 12대 모두 출동 준비를 철저히 하라’

며 기존에 내렸던 지시를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광종근의 지시에 따라, 제1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이상현의 지휘하에 2024. 12. 3. 08:00~17:00 경 야외 훈련 없이 영내 활동으로 부대를 운용하였고, 제3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김정근의 지휘하에 2024. 12.3. 18:52~19:06경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으며, 제9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안무성의 지휘하에 2024. 12. 3. 08:00~17:00경 정기휴가 및 전투휴무 중인 2개 대대를 제외한 2개 대대의 대비태세를 갖추었고, 제707특수임무단은 단장 김현태의 지휘하에 2024. 12. 3. 12:20~18:00경 불시 출동태세 점검 및 헬기12대를 이용한 테러진압훈련계획을 수립하고, 2024. 12. 3. 19:30~20:53경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2024. 12. 3. 20:53경 전체 인원이 영내 소집을 완료한 후 당일 예정되어 있던 훈련 계획과 같이 제1, 3, 7, 9지역대원 96명은 작전복을 착용하고 소총, 권총 및 테이저건 등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즉시 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특수작전항공단은 단장 김세운의 지휘 하에 헬기 12대의 이착륙 및 제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의 헬기 탑승 계획을 수립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본부는 작전지원과장 이선웅의 지휘하에 헬기 이착륙장 정비를 실시하는 등, 그 무렵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제제1공수, 제3공수, 제9공수 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특수작전항공단은 출동 준비태세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1:48경 대통령실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광종근에게 전화하여 '10~20분 뒤에 상황발표가 있다. 상황 발생 시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을 출동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광종근은 2024. 12. 3. 21:41~21:42경 지휘통제실 앞 전투 집무실로 미리 내려가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면서, 2024. 12. 3. 22:20경 제707특수임무단 장 김현태에게 '야간훈련을 정상시행할 것이니 계속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도 '출동 준비 잘 하고 있어라'고 지시하여 출동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게 하였다.

나. 정보사령부 등의 상황

(1) 정보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정보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라 대외 군사정보 수집 등 임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로서, 그 예하에 100여단 등을 두고 있다.

(2)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운용 계획 수립

피고인 노상원은 2024. 9.경부터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있는공관촌 위병소의 검문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용현의 비서관인 양호열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해 약 20여회에 걸쳐 피고인 김용현의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하였고, 특히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은 매일 피고인 김용현의 공관을 방문하면서,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문상호 등 정보사령부 병력 등을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운영하기로 계획하고, 공식적인 직책은 없으나 배후에서 사실상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3) 제2수사단 수사2, 3부 구성 요원 선발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0. 14.경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노상원은 제2수사단 수사2, 3부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상호는 위와 같은 피고인 노상원의 지시를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로 받아들여 2024. 10. 중 순경 공작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에게 특임수행요원(속칭 HDL특전여단요원)을 포함하여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김봉규, 정성욱으로부터 요원 선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前정보사령관 노상원이 지시하는 일이 있으면 잘 도와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2024. 10. 29.경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에게 ‘장관님 보고를 다녀왔는데, 북한 상황이심상치 않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 노상원이 지시하는대로 사업(임무) 잘 하는 인원들을 선발해서 보고해 달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2024. 11. 5. 경에는 정성욱에게 전화하여 ‘다음 주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종전에 추천했던 인원들의 휴가 계획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노상원은 2024. 11. 9.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문상호와 김봉규를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제2수사단)이 구성될텐데 내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너희 들이선발해둔 인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잡아와야 한다. 노태약(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문상호가 먼저 자리를 떠난 후 피고인 노상원은 김봉규에게 ‘부정선거에 관한 설명 내용, 체포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 체포를 위한 망치, 케이블타이 등 준비할 물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등을 수사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선포후 제2수사단수사2, 3부요원

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해 그곳 직원들을 체포한 후 수도방위사령부 B1병커에 구금할 것 등과 같은 김봉규와 정성욱의 각 임무' 등이 기재된 A4용지 10여장 분량의 문건 2부를 건네주며 그 중 1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문상호는 다음 날인 2024. 11. 10. 오전경 정보사령부에서 김봉규에게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하셨다'라며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2024. 11. 10. 점심경 정보사령부에서 정성욱에게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한편 김봉규는 2024. 11. 10. 저녁경 안양시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정성욱을 만나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임무를 설명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받은 문건 2부 중 1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17. 점심경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난 다음, 2024. 11. 17. 15:00경 안산시 상록구 40에 있는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문상호와 정성욱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 비해둬라'라고 지시하며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자리를 떠났고, 문상호는 정성욱에게 '일단 체포 관련 용품을 구입해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장관님 지시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으며, 정성욱은 뒤늦게 도착한 김봉규에게 피고인 노상원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문상호는 2024. 11. 19.경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으로부터 최종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 20명씩 합계 40명의 명단을 보고받고, 비상계엄 선포 후 각자의 임무, 구체적인 조 편성, 조별 임무 부여 및 체포 장비 구비 여부 등 준비상황을 논의하였으며, 그 무렵 김봉규, 정성욱은 피고인 노상원에게 20명씩 합계 40명의 요원 명단을 시그널 메신저 등으로 전달하였다.

(4) 제2수사단 수사1부 구성 요원 선발

피고인 노상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 수사2, 3부 수사요원들에 의해 체포, 구금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신문 등을 담당할 수사1부의 구성을 위하여 2024. 11. 초순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경력이 있는 피고인 김용군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 잘하는 군사 경찰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용군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인 김상용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이승윤 중령 등 장교 6명과 육군중앙수사단 소속 JG 준위 등 팀장급 9명 및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JH 상사 등 수사

관 10명 총 25명의 명단을 자필로 메모한 후 이를 촬영하여 2024. 11. 6. 12:59경 시그널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송하였고, 2024. 11. 10.경 안산에 있는 피고인 노상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만나 위 명단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였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 이행상황 점검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1. 오전경 국방부장관 공관에 방문하여 피고인 김용현을 만난 후 안산으로 이동하여, 2024. 12. 1. 12:18 ~12:58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만난 문상호와 김봉규, 정성욱에게 ‘조만간 계엄과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제2수사단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요원) 대기 태세를 잘 유지해라. 김봉규와 정성욱은 기존에 지시했던 임무를 숙지하고, 사령관(문상호)은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 등을 확보해라. 믿을 만한 인원들로 10명 정도 준비해라’라고 지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자리를 떠났다.

문상호는 곧바로 피고인 노상원을 뒤따라 나가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우선 1개팀이 먼저 선관위에 진입하여 전산실을 지키고, 추가 인원을 투입하여 선관위의 출입 인원을 확인해라. 체포, 구금할 대상자들이 확인되면 한쪽으로 모아두어라’라는구체적인 임무를 지시 받고, 이를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전달하였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신속 점거팀 관련 준비 완료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2. 저녁경부터 자정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났고, 2024. 12. 3. 아침경에도 위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김용현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을 설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2. 오전경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에게 전화하여 예비비화폰 1개를 제공해달라. 사용자명은 테스트(예)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사용자명이 ‘테스트’ 그룹으로 설정된 비화폰은 대통령, 1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국방부장관과 통화가능), 이에 김성훈은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김대경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설정된 비화폰 1대를 제공받아 2024. 12. 2. 저녁경 피고인 김용현의 비서관인 양호열을 통해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2. 저녁경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한 피고인 노상원에게 위 비화폰 1대를 제공하여 피고인 노상원이 사실상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

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제2수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기 이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이용해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속히 점거하고 그곳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4. 12. 3. 10:00경 문상호에게 전화로 ‘이번 주 주중에 1개 팀(10명) 정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보안 유지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문상호는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와 작전과장 서지운을 불러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있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구성해라’, ‘화요일부터 목요일사이에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인원들은 기간 중에 장거리 출타나 휴가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인원으로 선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작전과장 서지운은 2024. 12. 3. 12:00경 정보사령부 각 참모부에 소속된 소령급 장교들과의 전화 연락을 통해 긴급출동할 인원 8명(소령 김성호, 소령 김정재, 소령 김지웅, 소령 김찬유, 소령 김형주, 소령 이민형, 소령 유병욱, 소령 홍태환)을 지정·편성하고 출동에 필요한 차량2대를 배차하였고, 계획처장 고동희는 2024. 12. 3. 13:10경 작전과장 서지운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편성된 인원 8명과 함께 소회의실로 소집하도록 한 다음, 이들 9명에게 문상호로부터 지시받은 세부사항을 전파하였다.

한편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3. 오후경 재차 문상호에게 전화로 ‘오늘 저녁 21:00경에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문상호는 2024. 12. 3. 16:00~17:00경 계획처장 고동희에게 ‘오늘 야간에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임무가 진행될 것이다. 중앙선관위 청사에 들어가 출입통제를 하고 전산실의 위치를 확인해라. 중앙선관위 청사를 지키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계획처장 고동희는 작전과장 서지운에게 지시하여 2024. 12. 3. 20:00경 회의실에 소집된 서지운과 긴급출동할 인원들 8명에게 인터넷으로 확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가 임무장소다. 우리가 중앙선관위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였다.

곧이어 고동희와 서지운을 비롯한 정보사령부 인원 10명은 2024. 12. 3. 20:30경 실탄 총100발과 탄창을 소지한채 카니발2대에 5명씩 나누어 타고 출발하여 2024. 12. 3. 21: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의 정문이 보이는 도롯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대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3. 21:30경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해라'라고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위 5명이 출근하면 신병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문상호는 2024. 12. 3. 21:30경 계획처장 고동희에게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을 받아 적은 내용을 촬영하여 보내준 뒤, '22:00경 TV 언론보도를 보면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가 적법한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보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어 두었다.

(7) 제2수사단을 이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팀 관련 준비 상황

한편, 문상호는 2024. 12. 3. 16:30경 정성욱에게 전화하여 '오늘 임무가 있을 것 같다. 저번에 추천한 요원들(제2수사단 제2, 3부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요원들)로 2개의 팀을 꾸려 20:00까지 100여단 본부에 소집시켜라', '3~4일 정도 임무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하라. 구체적 임무는 내가 여단 본부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정성욱은 김봉규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문상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김봉규와 정성욱은 문상호에게 보고한 40명의 선발 명단에 기재된 요원들 중 즉시 출동이 가능한 총 36명의 요원을 100여단 본부로 긴급 소집하였다.

계속해서 문상호는 2024. 12. 3. 21:30경 100여단 대회의실에 집결한 요원 36명에게 '22:00경 대통령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우리는 수행만 하면된다. 구체적인 임무는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이 부여할 것이다', '정보사령부 부대원 10여명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나가 있다'라고 알려주었다.

(8) 제2수사단 설치·운용을 위한 지휘부 회동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점심경국방부전시작전통제권전환TF팀장방정환에게전화하여 '오늘 파견 명령이 있을테니 판교에 있는 정보부대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하달되면 확인하고 2기갑여단장(구삼회)과 함께 그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명령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3. 14:49~16:03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피고인 김용균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다'라고 알려준 후, 제2수사단 조직도 등이 기재된 문서를 피고인 김용균에게 보여주면서 제2수사단 수사1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신문할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30여명의 명단을 확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노상원은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구삼회, 방정환이 위 롯데리아에 도착하여 합류하자, 구삼회, 방정환에게 ‘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시는지는 나중에 명령이 나면 알 수 있어’,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을 일 시키겠냐’, ‘장관님이 시킨 거만 하면 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김용균, 구삼회, 방정환이 듣고 있는 가운데 문상호와 통화하면서 정보사령부의 계엄 준비상황 및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하는 준비태세를 점검하였으며,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할텐데 서버는 누가 확보할 것인지’라는 피고인 김용균의 질문에 ‘서버는 다른 사람이 확보할 것이니 나중에 인계만 받으면 된다.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노상원은 구삼회, 방정환에게 ‘합동수사본부수사단(제2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삼회 장군이 단장, 방정환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이분(김용균)과 정보사 대령 두 명과 함께 일하면 된다’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용균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챙겨야 한다’, ‘인원들은 다 연락됐느냐. 이번에 팀장을 맡아주면 된다. 예전에 하던 대로 수행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증거 확보 등을 위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김용균은 2024. 12. 3. 16:55경 제2수사단 수사1부장으로 내정된 김상용에게 전화하였고, 2024. 12. 3. 16:57경 및 17:41경에는 수사1부 요원으로 내정된 육군본부 중앙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JG 준위에게 전화하였으며, 2024. 12. 3. 18:35경 피고인 김용균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9길9에 있는 중식당 ‘청원’에서 위 김상용을 만나기도 하였다.

다. 방첩사령부의 상황

(1) 방첩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방첩사령부는 방첩사령부령에 따라 군사보안, 군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로서,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을 두고,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며, 사령관 소속으로 국군방첩부대, 정보보호부대 등을 두고 있다.

(2)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여인형은 2024. 11.경부터 북한 오몰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각 처·실장들에게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할 것을 수회 지시하였고, 2024. 12. 1. 오전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에게

전화하여 2024. 12. 2.부터 국방대학교에서 3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교육 참석을 취소하고 부대에 대기할 것을 명령하고, 2024. 12. 3. 오전에는 참모장 이경민에게 ‘북한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여인형은 2024. 12. 3. 저녁 무렵 정성우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꽃의 각 위치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잘 대비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꽃의 위치를 물었으며, 곽종근으로부터 ‘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수원에는 연수원이 있다. 또 여론조사꽃도 있다. 우리애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연수원에 서버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여인형은 곽종근과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한 이후 위 정성우에게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정성우는 2024. 12. 3. 20:37경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 최연우를 통해 피고인 조지호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여인형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여인형은 정성우에게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여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오면 인계해 주되, 만약 여의찮으면 서버를 떼어와야 한다’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방첩사령부가 해야 할 임무를 알려주었다.

여인형은 2024. 12. 3. 21:20~21:30경 사령관실에서 방첩사령부 핵심 지휘부인 참모장 이경민, 1차장 정성우가 있는 자리에서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를 부대로 복귀시킬 것을 정성우에게 지시하였고, 이경민과 정성우에게 ‘육군총장이 국방부에 들어와 있다. 국무위원들이 들어온다더라. 너희는 알고 있어야지’, ‘비상상황이 오면 군이 따를까’,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따르냐는 거지’라면서 곧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여인형은 2024. 12. 3. 21:45~21:46경 피고인김용현과의 전화통화에서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사령관실에서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고 있던 이경민, 정성우에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장관님이야’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늦춰질 것 같다는 피고인 김용현의 연락을 전달하였다.

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

(1) 수도방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방위사령부령에 따라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범위 안의 지역)을 경비하는 등의 임무를 위해 설치된 작전부대로, 예하부대로 제52보병사단과 제56보병사단을 두고 있으며, 직할부대로 제1방공여단, 제1경비단, 군

사경찰단, 제122정보통신단, 제1113공병단, 제22화생방대대, 군수지원대대, 제1문서고관리대 등을 두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제1경비단은 예하에 제1경비대대, 2특임대대, 35특임대대를 두고 있고, 이중 2특임대대는 약 160명으로 구성된 ‘합참 지정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30분 내 출동하여 현장 보존 및 차단, 테러범 접촉 유지 및 대응 조치, 안전 통제 및 피해 확산방지, 대테러작전부대 임무 수행 지원, 주요 요인경호 및 주요시설 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이고, 35특임대대는 약 250명으로 구성된 ‘국가 지정 대테러특임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1시간 내 출동하여 대치, 내부 진압, 저격, 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군사경찰단은 예하에 전투군사경찰대대, 특임군사경찰대대, 제33군사경찰경호대를 두고 있고, 이중 특임군사경찰대대의 특임중대는 약 9명으로 구성된 ‘합참 지정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이고, 기동중대는 약 36명으로 구성되어 군차량 호송 지원,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출동 시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 11.경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부임한 이진우는 2024. 2.경부터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테러범을 조기에 격멸하고, 국가 중요시설 등 군사시설 외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기위해특임지역대(대테러초동조치부대, 대테러특임부대,예비대), 저격반, 경비소대, 군사경찰 기동중대[MC(Motor Cycle) 9대], 차륜형 장갑차(6대), EHCT (위협성폭발물개척팀), CRST(화생방대응팀), 드론등으로 구성된 대테러특임TF(별칭 수호신, 이하‘수호신TF’라고 함)를 설치하였고, 수호신TF를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왔다.

(2) 준비태세 강화 지시

이진우는 2024. 11. 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의 공관 2층 식당에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광종근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를 한 이후부터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응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

(3) 비상계엄 선포 대비 계획 수립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선포전 이진우에게 재차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국회 봉쇄 및 침투 임무와 관련하여 ‘경찰은 국회 7개 출입문에 기동대 26개(약 1,500명)를 순차 배치하여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버스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1선에서 봉쇄하고, 수도방위사령부는 2선에서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봉

쇄하되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 양재응의 도움을 받고,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은 특수작전항공단 헬기 12대로 이동하여 국회의사당 운동장에 착륙한 뒤 국회 본관 및 의원 회관 내부로 침입할 계획이니, 준비태세를 갖추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이진우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의 각 특성과 임무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예부대인 제1경비단 소속 2특임대대와 35특임대대 및 군사경찰단 소속 특임군사경찰대대를 국회에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진우는 2024. 12. 2. 오전경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로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등의 상황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하여 피고인 김용현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실시되고 있다는 상황 전파시 지휘관 정 위치, 전 부대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출동이 예정된 수호신에 흑복·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쇠지렛대·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제제1경비대 대) 출동 준비, 위병소 폐쇄 시행 등의 지시', '김용현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종료 이후 수호신 출동,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선 투입·본관 배치 및 후속부대 투입, 국회협력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 공조 통화 실시' 등이었다.

(4) 출동 준비태세 강화

피고인 김용현은 대통령실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2024. 12. 3. 21:46경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부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국회 침투 및 봉쇄 계획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이진우는 2024. 12. 3. 21:48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 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할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1:53경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에게 전화하여 '지금 부대로 복귀해서 전투복을 갈아입고, 운전병을 대동해서 사령관실로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조백인에게 전화하여 '전투복 입고 내 방으로 빨리 오라'고 지시하는 등 2선에서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문 등을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병력의 소집을 시작하였고, 2024. 12. 3. 22:26경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인 제52보병사단의 사단장 이우현 소장에게, 2024. 12. 3. 22:28경 같은 예하 부대인 제56보병사단의 사단장 박진희 소장에게 각각 전화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잘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조성현은 2024. 12. 3. 21:51경 제1경비단 작전과장 전진해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 직위자를 소집하고, 수호신도 소집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제1경비단 작전과장 전진해는 2024. 12. 3. 21:52경 2특임대대장 윤태현에게 전화하여 ‘조성현이 대대장들을 모두 소집하라고 했고, 수호신TF도 비상소집했다’고 전파하였으며, 2024. 12. 3. 21:56 경 35특임대대장 박진우에게 전화하여 ‘수호신TF를 소집해야 한다. 경비단장 지시다’라고 전파함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소속 2특임대대 및 35특임대대가 소집되어 출동 준비를 시작하였다.

또한,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역시 2024. 12. 3. 23:02경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에게 ‘부대모든 군사경찰 기동중대[MC(Motor Cycle)]와 대테러초동조치부대는 출동을 준비하라’는지시를 함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소속 특임군사경찰대대중 특임중대와 기동중대가 소집되어 출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마.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상황

(1) 안가에서의 회동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 시각과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이 해야 할 임무 등을 미리 알리고 경찰이 협조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2024. 12. 3. 18:18~18:21경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을 통해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로 불러, 2024. 12. 3. 19:20경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중북 좌파 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 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것인데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2200 국회’, ‘2300 더불어민주당’, ‘비상계엄’,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각과 장소 등 비상계엄계획이 기재된 문서(A4용지) 1장씩을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에게 각각 건네주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출동할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찰 기동대 출동 준비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위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 피고인 조지호의 관용차에 함께 탄 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대로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선포를 준비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봉식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먼저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에서 하차하였으며, 피고인 조지호는 인근에 있는 경찰청장 공관으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19:45~20:07경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 기동대 인력관리 담당자인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지금 영등포(국회)에 기동대가 몇 개 있냐. 그리고 철야 근무하는 기동대는 어디냐’며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할 수 있는 기동대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최창복으로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철야 집회 대비를 위한 기동대 4개(◀, ▲, ♣, ●기동대)가 있고, 철야 근무 예정인 여의도 타격대 1개(☆☆ 기동대, 국회 1, 2문과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주변 배치) 등 총 5개 기동대가 영등포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는 기동대는 광화문타격대, 용산 타격대 등이 철야 근무를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다음, 2024. 12. 3. 20:07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보고받은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 가능한 기동대 현황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0:25경 피고인 김봉식의 귀청 지시를 받고 복귀한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기동대가 더있는지 확인해서 준비시키라’고 지시하여 당시 광화문 타격대 1개(㉮기동대)가 국회로 이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광화문 타격대 대원들을 승차 대기시키는 등 국회 인근에 있는 기동대 5개와 광화문 타격대 1개, 총 6개의 기동대를 국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고, 2024. 12. 3. 21:00경 주진우로부터 비상계엄시 통제해야 할 국회 출입문의 수,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보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1:16경 주진우에게 위 광화문 타격대 1개를 2024. 12. 3. 22:00까지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서 대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경비부장 주진우는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피고인 김봉식의 위 지시를 전달하면서, 특히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광화문 타격대 1개를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 국민은행 동서관 쪽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 6개(약 401명)의 준비를 마쳤다.

(3) 비상계엄 선포의 지연과 대비태세 유지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가 늦어져 예정한 시각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24. 12. 3. 21:4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다’고

전한 후 피고인 김봉식에게도 전화를 걸어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으나, 경찰에서는 그대로 대비를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1:50경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위 광화문 타격대 1개의 국회 인근 승차대기 여부, 진압복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나머지 5개 기동대도 대기 중인지 여부 등 국회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출동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하였고, ‘아마 상황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움직이면 될거야’라고 출동 시점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대비태세를 재차 확인하였다.

바.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유선대기 지시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0:22경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1~2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사. 육군참모총장의 국방부장관 접견대기실 대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1. 12:50경 박안수에게 전화를 하여 ‘2024. 12. 3.에 시간 반영해 놓을 테니 현안점검 좀 하자’고 말하며 현안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2024. 12. 3. 16:00경 국방부에서 박안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박안수에게 ‘21:40경 국방부장관 접견대기실로 와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5.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및 비상계엄의 선포

가.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1) 피고인 윤석열의 국무회의 소집 등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00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하였고, 예정된 시각 직전에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10:30 무렵부터 21:33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피고인 김용현,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국무회의에 배석할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등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각 부처 장관들인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문서로 작성 · 출력하여 소집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모이는 국무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

(2) 국무회의의 구성원 11명 소집 前 상황

2024. 12. 3. 20:20~22:00경 위와 같이 소집 지시를 받고 출석한 국무위원의 숫자가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실 5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하였고, 외교부장관 조태열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역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윤석열은 ‘중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외교부장관 조태열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 시켜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고,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게 ‘24:00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이후 외교부장관 조태열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대접견실에서 피고인 김용현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 김용현은 ‘대통령님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외교부장관 조태열이 ‘그럼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피고인 김용현은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 해 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였다.

(3) 국무회의의 구성원 11명 소집 後 상황

그러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의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모이고 있었는데, 피고인 김용현을 비롯하여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일부장관 김영호, 국무총리 한덕수, 외교부장관 조태열,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 도착하였고, 2024. 12. 3. 22:17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17~22:22경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서 국무위

원 및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등 배석자들을 향해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대접견실에서 나온 후,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4) 대국민담화 발표 및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40경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총리 한덕수 등 국무위원들에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특히, 피고인 윤석열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 계엄 선포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는데,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5)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 절차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86조 내지 제89조).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대한민국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11조 제2항), 국무회의는 ①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②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③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하고, ④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해야 하며, ⑤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 조).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이며, 중소벤처기

업부장관 오영주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피고인 윤석열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나. 비상계엄의 선포와 당시 상황

(1)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23~22:27경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피고인 김용현이 준비한 아래와 같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검사,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에게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적과 교전(交戰)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②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④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며,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⑥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대한민국헌법」제 77조, 「계엄법」 제2조 내지 제5조).

그런데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야당이 쟁점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하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검토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며, 이에 더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과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김용현은 국무총리인 한덕수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윤석열에게 직접 비상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였으며,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에도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있는데,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회에 대한 통고를 문서로써 하지 아니하였고, 관계 국무위원인 피고인 김용현은 이에 부서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역시 부서하지 못하였다.

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포고령의 발령

(1)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28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로 이동한 후 박안수,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등이 참여하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먼저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을 하달한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진다면 장관의 몫이다.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하고, 혹여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 지를 알릴 것이다’라고 강조한 다음,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각각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였다.

(2) 비상계엄 선포문의 未공고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발령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후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대봉투에서 꺼내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에게 건네주며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하였고, 잠시 후 같은 대봉투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라고 기재된 문건을 꺼내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건네주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령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용현이 전하규에게 건네준 ‘계엄 선포문’은 계엄법상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전하규가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 담당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공고되지 못하였다.

한편, 박안수는 2024. 12. 3. 23:23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령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내 본업에 복귀 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 포고령 제1항은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고, 이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체제를 파괴 또는 변형시키려는 것이며, 아울러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지방자치, 일반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 위 포고령 제2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헌법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제4항의 ‘사회혼란을 조장 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역시 의미가 불분명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제5항은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는 것이고, 포 고령 말미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부분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내용이었다.

(3)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시도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45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를 전투통제실로 호출한 후 ‘준장 구삼회를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단장으로, 준장 방정환을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부단장으로, 대령 김상용(국방부조사본부차장)을 수사1부장, 대령 김봉규(정보사령부)를 수사2부장, 대령 정성욱(정보사령부)를 수사3부장으로, 위 김봉규를 100여단 여단장 대리로서 2024. 12. 3. 22:00부로 각각 임명하고, 수사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수사2, 3부에 정보사 소속 정보 요원 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면서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려’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의 수행부관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와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제1수사부장으로 내정된 김상용을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로 호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용현이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에게 건넨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지원, 수갑 등 물품지원과 같이 인사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오영대는 2024. 12. 4. 00:00~00:30경 피고인 김용현에게 ‘국방부일반명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김용현은 ‘알았다’라고만 대답하여, 결국 인사명령은 발령되지 않았으며,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은 설치되지 못하였다.

6. 구체적 폭동 행위

가.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 명령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24. 12. 3. 22:47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조종래에게 전화로, ‘합참에는 인원이 부족하니, 부장·실장과 이들을 지원할 차장·과장 각2~3명씩을 모아올라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특히,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할 2실(비서·기획조정), 8처(정보·작전·치안·법무·보도·동원·구호·행정)의 실장·처장 등 직책을 맡을 現육군본부 소속 인원의 구성과 함께 이들의 계엄 사령부(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이동 준비도 지시하였다.

박안수의 지시로 2024. 12. 3. 22:47경부터 2024. 12. 4. 02:30경까지 육군본부 소속 부장·실장 등 34명이 계엄사령부 참모진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전시 군사작전과 지휘사령을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장망(戰場網), 즉 군합동지휘통제체계(케이직스)를 운용할 수 있는 장비 총 11대를 소지하고 총기 휴대없는 단독군장으로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의 대형버스 2대에 탑승하여 출발을 준비하였다.

박안수는 2024. 12. 4. 03:03경 육군본부에서 대기 중인 참모진들에게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박안수는 2024. 12. 4. 00:06경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이재식에게 계엄사령부의 2실 8처를 구성할 군인과 군무원들을 소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이재식은 곧바로 합동참모본부 소속원 전원에게 ‘계엄사 2실 8처 운용요원 총원 작전회의실 즉각 소집’ 명령을 ‘계엄사 기초실장 명’으로 발령하였다.

나.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1) 1차 국회 봉쇄

2024. 12. 3. 22:23경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시작하자, 피고인 김봉

식은 2024. 12. 3. 22:25경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전화하여 ‘TV 틀어놔 봐라. 지금 그 대 국민담화 나온다. 그리고 지금 승차대기하고 있지’라며 경찰기동대의 출동 대기상황을 문의하였고, 주진우로부터 국회 1, 2문과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주변에서 야간 거점 근무 중인 ☆☆ 기동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집회로 인해 국회의사당역 주변으로 출동해 있었던 ◀, ▲, ♣, ●기동대와 미리 국회 방면으로 이동시켜 둔 ㉡기동대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30경 다시 주진우에게 전화하여 위 기동대 대원들이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착용했는지 여부, 승차 대기 중인지 여부, 국회 통제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될 장소를 미리 정해 놓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래 그럼 지시해라. 무전 지시하라’고 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하여 위 기동대들을 국회 각 출입구 주변에 배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24. 12. 3. 22:31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준비된 기동대를 배치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조지호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봉식은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로 이동하여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경찰관 기동대들을 국회에 배치하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최창복은 2024. 12. 3. 22:35경 서울 경찰청 경비지휘무전망을 통해 위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기동대는국회1문(정입), #@기동대 대는 국회 2문(정출), \$@기동대는 국회 3문, ㉡기동대는 4, 5문, %기동대는 6, 7문에 배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이미 국회 1, 2문에 배치되어 있던 ☆☆ 기동대를 비롯한 총 6개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앞에 각 배치하였으며, 이어서 최창복은 2024. 12. 3. 22:39경 위 무전망을 통해 국회경비대 대원 전원 근무를 지시하였다.

국회경비대장인 피고인 목현태는 그 무렵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주거지에 있던 중 뉴스 속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사실을 확인하였고, 2024. 12. 3. 22:38~22:41경당직 근무 중이던 국회경비대 제2경비제대장 정성채로부터 최창복의 위 무전 내용 및 기동대 배치 상황을 보고받은 후 정성채에게 서울경찰청의 지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차량을 운전해 국회로 이동하였다.

정성채는 피고인 목현태의 지시에 따라 당직 중인 국회경비대 대원들 전원에게 근무 지시를 하면서, 2024. 12. 3. 22:43경 국회1~7문중 이미 폐문된 4~7문을 제외한 국회 1~3문에 1명씩 배치되어 있던 당직 대원 총 3명 외에 신속대응팀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하였고, 이후 당직인 제2경비제대 대원들을 국회경비대 상황실 앞으로 소집한 후 제2경비제대 1팀을 1문에, 2팀을 2문에, 3팀을 3문에, 4팀을 예비대에 각각 배치하는 등, 1, 2, 3문 별로 대원 약 5명씩을 우선 배치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봉식은 위와 같이 국회 출입문에 6개 기동대가 모두 배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4. 12. 3. 22:45경 이를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지시한 국회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한 결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46경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최창복은 그 지시에 따라 2024. 12. 3. 22:47~22:50경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영등포경찰서,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외부에서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전원 차단하라. 국회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은 불가하다. 전부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지시에 따라 @!기동대는 국회1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1문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고, #@기동대대는 국회2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1문, 국회 수소충전소, 경정문(차문, 회전문)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으며, \$@기동대는 국회3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3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고, ㄱ기동대는 국회 4문(차문, 인도문, 회전문), 5문(차문, 인도문, 회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4문, 5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으며, %기동대는 국회 6문(차문, 인도문, 회전문), 7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6문, 7문, 헌정문(차문, 회전문)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고, ☆☆ 기동대는 @!기동대와 #@기동대대가 위와 같이 국회 1문, 2문에 배치되자 그 곳에 있던 대원들을 국회 1문 옆, 도정문(차문, 회전문), 헌정문 주변으로 이동시키고 도정문, 헌정문앞 도로변에 차벽을 설치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등 국회 각 문의 바깥쪽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였다.

한편, 국회경비대 제2경비제대장 정성채도 서울경찰청 및 피고인 목현태의 지시에 따라 2024. 12. 3. 22:49경 국회경비대 대원들에게 ‘국회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원천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회경비대 대원들을 통해 국회 1문에서부터 3문 안쪽에서 출입을 차단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50경 국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것을 대비하여 기동대 경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기동단 기동대 대원들에 대한 비상소집을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을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였다.

(2) 일시적 · 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3. 22:50경 국회경비대 경비계장 오신타에게 전화를 걸어 오신타으로부터 기동대들이 위와 같이 국회 출입문 바깥쪽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출입을 차단하는 상황에 관하여 보고받았고, 전화를 바꾸어 정성채로부터 국회경비대 대원들이 국회 출입문 안에서 출입을 차단하는 상황에 관하여 보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3. 22:55경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의 정확한 지시 내용을 문의하였는데, 박주현은 ‘나가는 사람은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국회의원 포함해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출입 차단 조치 하라’ 라고 지시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3. 22:56경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장에 대한 출입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답을 하지 않자, 2024. 12. 3. 22:58경 오신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국회경비대 대원들에 대한 전 대원 비상 소집을 지시하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오부명 등은 2024. 12. 3. 22:58경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피고인 김봉식에게 ‘국회 경비대장 목현태가 국회의장의 국회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해 문의를 하였고, 국회의원들도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77조에 의해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으니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대국민담화문의 발표만으로는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금지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2024. 12. 3. 22:5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 국회 출입 허용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피고인 조지호의 동의를 받아, 최창복을 통해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으로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2024. 12. 3. 23:07경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시하고, 2024. 12. 3. 23:15경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6개 경찰 기동대는 국회의원과 국회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출입을 허용하였고, 국회경비대 제2경비제대장 정성채는 국회 1~3문에 배치된 국회경비대원들에게 2024. 12. 3. 23:14경 국회의원의 국회출입과 2024. 12. 3. 23:24경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게 하였다.

(3) 2차 국회 봉쇄

피고인 윤석열은 위와 같은 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조치로 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게 되자, 2024. 12. 3. 23:17경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되었는지를 물어본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박안수로부터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보고받은 피고인 김용현은 박안수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제1호)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해라’라고 지시하였으며, 박안수는 2024. 12. 3. 23:22 ~23:23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건네받은 비화폰으로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조지호는 ‘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이 공포된 것을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5경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포고령이 언론에 공표되었는데, 공표된 자체로 계엄령 선포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전달을 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임정주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피고인 조지호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는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오부명은 피고인 조지호의 위 지시사항을 그대로 피고인 김봉식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3. 23:36경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봉식은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같은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최창복은 2024. 12. 3. 23:37경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라며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3. 23:30경 국회경비대 상황실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은 서울경찰청의 무전 지시를 듣고 2024. 12. 3. 23:40경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전화하여 국회 출입을 다시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고, 오부명으로부터 ‘방금 다시 지시했고, 전원 차단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국회경비대 대원들로 하여금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게 하였으며,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는 피고인 목현태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문을 모두 폐문한 다음 2024. 12. 3. 23:56경 무전으로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를 완전 차단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목현태와 김영호는 국회 1, 2문 주변으로 이동하여, 제1경비제대장 김진욱, 제2경비제대장 정성채를 국회 1, 2문 주변에 배치하였고, 제3경비제대장 직무대리 정용희를 도정문에 배치하였으며, 제5경비제대장 서기창을 국회 3문에 배치하였고, 그 이후 비상소집으로 국회경비대에 순차 복귀한 경무계장 송민주, 감찰 담당 KP를 비롯한 대원들 85명을 헌정문, 도정문, 1문,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3문 등 인파가 많은 국회 앞문 쪽에 배치하였으며, 상황실에 국회경비대 대원 8명을 배치하여 국회 내부 CCTV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위 6개 경찰 기동대는 국회 각 문 바깥쪽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은 2024. 12. 3. 23:41~23:43경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현장에서 국회의원들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어 보내줘야 하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며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의 재고를 요청하였고 임정주는 이를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조지호는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출입 차단을 유지하게 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3:54경 최창복의 국회 출입 금지 무전 지시를 보다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위 무전망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3:23경 피고인 조지호와 통화하면서 국회 주변 및 대통령실 등이 있는 용산 일대에 기동대를 증원하겠다고 보고한 다음, 그 무렵 최창복 등에게 국회 주변 및 용산 일대에 기동대를 증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최창복은 2024. 12. 3. 23:35경위무전망을 통해 ‘* 기동대는 남대문서에서 영등포서 관내인 국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계속하여 2024. 12. 3.

23:51경 ‘비상 응소 기동대들은 신속히 영등포경찰서 관내인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하달하는 등 2024. 12. 4. 00:00~01:45경 국회 출입 차단 등을 위하여 기동대 23개를 증원하여 국회 주변에 순차 배치하여 국회경비대를 지원하고,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차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2024. 12. 3. 23:37경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4. 00:00경 경찰청 간부회의인 이른바 ‘국(국장)관(경무관)회의’와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연이어 주재하기로 하였는데, 국관회의 직전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 서울경찰청 공공 안전 차장이나 지휘부가 직접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임정주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차장이 직접 여의도로 나가 지휘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오부명은 2024. 12. 4. 00:37경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2024. 12. 4. 03:50경까지 국회 주변에서 그 곳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국회경비대 등을 지휘하였다.

그 후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4. 00:00경 경찰청 본관 9층에 있는 무궁화홀에서 국관회의와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찰청에서 기능별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헌법 등 법령과 판례 등을 확인하여 현장에 명확한 지시를 할 것’, ‘정보와 기획 파트에서는 비상계엄 하에서 경찰이 해야 할 일을 검토하고, 기능별로 해야 할 일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수사를 중심으로 계엄사에서 요청할 경우 법령에 따라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 ‘대변인은 기자 상대로 유언비어 유포 모니터링하고, 경비 파트는 여의도에 배치된 기동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 집중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한편 박안수는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형으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와 요청을 받고 2024. 12. 4. 00:5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연락하여 국회에 경찰 증원을 재차 요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경찰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가 1차로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2024. 12. 3. 22:48경부터 국회의원 등의 출입 차단을 완전히 해제하고 일부 기동대가 국회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2024. 12. 4. 01:45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경찰 기동대 총 29개(약 1,963명)를 국회 출입문 바깥 쪽에 배치하고, 지휘차 총 43대, 경찰버스 총 85대 등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문 바깥 쪽에 차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고,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경비대 대원 약 85명을 국회 앞문 쪽인 헌정문, 도정문, 1문,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3문 쪽에 배치하여 국회 출입문 안쪽에서 국회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위 기동대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였다.

순번	부대	출동인원 (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1	☆☆기동대	64	버스 3대 지휘차2대	12. 3. 09:10 (여의도타격대)	12. 3. 09:50	12. 4. 09:00	국회 1문, 도정문, 헌정문주변
2	\$@기동대	` 71	버스 3대 지휘차2대	12. 3. 18:30 (OL대비)	12. 3. 19:00	12. 4. 10:30	국회 3문 주변
3	&%기동대	65	버스 3대 지휘차2대	12. 3. 18:30 (OL대비)	12. 3. 19:00	12. 4. 10:00	국회 6, 7문 주변
4	#@기동대 대	62	버스 3대 지휘차1대	12. 3. 18:30 (OL대비)	12. 3. 19:20	12. 4. 09:30	국회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주변
5	@!기동대	64	버스 3대 지휘차2대	12. 3. 18:30 (OL대비)	12. 3. 19:30	12. 4. 09:30	국회 1문 주변
6	ㅍ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2대	12. 3. 21:40 (광화문근무중이동)	12. 3. 22:00	12. 4. 08:30 (광화문철야후복귀)	국회 4, 5문 주변
7	&*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2대	12. 3. 23:40 (남대문근무중이동)	12. 4. 00:00	12. 4. 03:30 (남대문철야후복귀)	국회 2문 앞 도로, 7문주변
8	*%기동대 (*제대)	23	버스 1대	12. 3. 23:48	12. 4. 00:30	12. 4. 08:00	국회 박물관 주변
9	%!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1대	12. 4. 00:00	12. 4. 00:35	12. 4. 04:40	국회 수소충전소
10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2대	12. 4. 00:00	12. 4. 00:40	12. 4. 04:40	국회경비대 지원 (국회1,6문,도정문)
11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1대	12. 4. 00:10	12. 4. 00:43	12. 4. 03:50	국회 3, 4문 주변
12	*&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2대	12. 4. 00:05	12. 4. 00:50	12. 4. 04:40	국회 2문 주변
13	#*기동대	71	버스 3대 지휘차1대	12. 4. 00:30	12. 4. 00:50	12. 4. 04:10	국회 도정문 주변
14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2대	12. 4. 00:11	12. 4. 00:52	12. 4. 03:45	국회 4문 주변
15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2대	12. 4. 00:12	12. 4. 00:55	12. 4. 03:35	국회 3문 주변
16	&●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2대	12. 4. 00:18	12. 4. 00:55	12. 4. 03:40	국회 3문 주변
17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2대	12. 4. 00:28	12. 4. 00:55	12. 4. 03:45	국회 6문 주변
18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2대	12. 4. 00:25	12. 4. 01:00	12. 4. 03:40	국회 6문 주변
19	◎@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1대	12. 4. 00:40	12. 4. 01:00	12. 4. 09:30	국회 1문, 도정문 주변
20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1대	12. 4. 00:40	12. 4. 01:00	12. 4. 09:30	국회 1문, 도정문 주변
21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1대	12. 4. 00:40	12. 4. 01:00	12. 4. 10:00	국회 도정문, 헌정문 주변
22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2대	12. 4. 00:15	12. 4. 01:05	12. 4. 04:00	국회 6문 주변
23	◇%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1대	12. 4. 00:29	12. 4. 01:05	12. 4. 04:00	국회 수소충전소 주변
24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1대	12. 4. 00:00	12. 4. 01:10	12. 4. 04:30	국회 2문, 경정문 주변
25	◇%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2대	12. 4. 00:15	12. 4. 01:10	12. 4. 03:40	국회 6문 주변
26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1대	12. 4. 00:50	12. 4. 01:10	12. 4. 10:30	국회 도정문 주변

순번	부대	출동인원 (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27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1대	12. 4. 00:50	12. 4. 01:10	12. 4. 09:30	국회 헌정문 주변
28	△%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1대	12. 4. 00:16	12. 4. 01:20	12. 4. 03:30	국회 3문 주변
29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1대	12. 4. 01:00	12. 4. 01:45	12. 4. 04:40	국회 2문 주변
총 29개 기동대		1,963	버스 85대 지휘차43대				

(4)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에 대한 국회 진입 허용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23경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시작과 동시에 군사보좌관 김철진에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대통령님의 담화를 시청하라고 해라’고 지시하였고, 군사보좌관 김철진은 2024. 12. 3. 22:25경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진우는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를 확인한 후, 앞서 피고인 김용현에게 보고하였던 ‘경찰청장 등과의 공조 통화 실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24. 12. 3. 22:30경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라며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출동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김봉식도 이진우에게 경찰이 곧 국회에 배치될 것을 알렸으며,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위와 같이 국회를 1차 봉쇄하였다.

그 후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3:30경부터 2024. 12. 4. 01:0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이진우와 통화하면서, 이진우로부터 ‘수방사 대테러특임대가 국회에 도착하니 군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고, 그때마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군인과 민간인은 복장으로 쉽게 구별되니, 군인은 국회 출입을 허용해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최창복은 그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기동대,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계엄 관련 군인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계엄군은 신분 확인 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하라’, ‘수방사 대테러특임대 도착 즉시 진입하도록 조치하라’, ‘수방사 대테러특임대 도착 시 경정문으로 진입하도록 조치하라’는 등 수회 지시하였으며, 이에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는 2024. 12. 4. 00:09경 군 병력이 국회 안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비교적 인파가 적은 국회 3, 4문 쪽으로 이동시켜 출입시키려고 하였고, 최창복은 2024. 12. 4. 00:50경 위 무전망을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국회 3문을통

해 계엄군 100여명이 국회로 진입하였다’는 보고를 받는 등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허용해 주었다.

(5) 경찰을 이용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3:15경부터 2024. 12. 4. 00:48경까지 피고인 조지호에게 6회 전화하여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불법이니 다 체포하라’라고 지시하였다.

다.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1)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출동 관련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28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 이동하여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고 발언한 후 이진우에게 별도로 전화하여 ‘수도방위사령부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진우는 2024. 12. 3. 22:39 ~22:45경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참모장 조백인, 작전처장 김문상, 제1경비단장 조성현과 회의를 하면서 ‘기자 및 불순분자들의 활동에 대비하여 사령부 위병소를 폐쇄·통제하고, 전 장병 스마트폰을 통합 보관하며, 위병소 앞에 장갑차 2대를 배치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22:45경 위 지휘통제실을 나가면서 그 앞에서 조성현에게는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국회로 가야 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조성현은 출동 준비 중이던 2특임대대 및 35특임대대에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를 하달하였고, 그무렵 군사경찰단장 김창학도 조백인으로 부터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를 전달받아 출동 준비 중이던 특임군사경찰대대에 하달하였다.

이진우는 2024. 12. 3. 23:00경 수도방위사령부 35특임대대 막사로 이동하여 직접 출동준비 상황을 확인한 다음 조성현에게 ‘내가 먼저 출발해서 어떤상황인지 보겠다. 부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내게 전화하라고 해라. 거기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알려주겠다’고 지시한 후 국회로 출발하였고, 조성현은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를 2특임대대 및 35특임대대에 각각 하달하였다.

(2) 35특임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를 포함한 대테러특임부대 16명(이하 ‘35특임대대 선발대’라고 함, 운전병 1명 포함)은 2024. 12. 3. 23:10경 소총 15정, 권총 15

정, 저격소총 1정 및 5.56mm 보통탄 1,920발, 5.56mm 예광탄 320발, 9mm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mm 공포탄 36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3. 23:45경 국회 인근에 있는 여의도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는 이진우로부터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양재응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후 운전병 외 나머지 14명의 35특임대대 선발대와 함께 걸어서 국회 1문으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로부터 국회 1문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진우로부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돌아서 경찰 협조를 받아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 2024. 12. 4. 00:24경 국회 7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다음으로,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35특임대대장 박진우를 포함한 제2지역대 및 3지역 대 후속병력 29명(이하 ‘35특임대대 후속부대’라고 함)은 박진우의 지휘에 따라 2024. 12. 4. 00:10경 소총 27정, 권총 16정 및 5.56mm 공포탄 929발을 소지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43경 국회 인근 여의도 한강공원 3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35특임대대장 박진우는 제1경비단장 조성현으로부터 ‘비무장으로 국회울타리를 월담하여 위 35특임대대 선발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접촉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KU상사 등 35특임대대 후속부대 23명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 2024. 12. 4. 01:03경 국회 7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였다.

(3) 2특임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실패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2특임대대 1지역대 1중대장 KV를 포함한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11명(이하 ‘2특임대대 선발대’라고 함)은 KV의 지휘에 따라 2024. 12. 3. 23:19경 소총 11정,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mm 보통탄 975발, 9mm 보통탄 330발, 5.56mm 공포탄 33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를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3. 23:46경 국회 1문 인근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국회 1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2특임대대 1지역대 1중대장 KV은 이진우로부터 ‘국회 정문을 봉쇄할 수 있냐, 차량을 한적한 곳에 세운 다음 총기와 탄약을 두고 국회로 들어올 수 있냐’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2특임대대 선발대가 타고 있던 중형버스 앞을 가로막거나 중형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국회로 진입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나머지 2특임대대 선발대 부대원

들과 함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2특임대대 제2지역대장 윤덕규를 포함한 후속 병력 51명(이하 ‘2특임대대 후속부대’라고 함)은 2024. 12. 4. 00:48경 소총 44정, 권총 22정 및 5.56mm 공포탄 1,32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1:04경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하였다.

(4)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을 포함한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12 명과 기동중대[MC(Motor Cycle)] 2명(이하 ‘군사경찰단 선발대’라고 함)은 2024. 12. 3. 23:30경 소총9정, 권 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7정 및 5.56mm 보통탄 525발, 9mm 보통탄 363발, 7.62mm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한 채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04 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이진우로부터 ‘내가 현장에 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국회 안으로 들 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동중대[MC(Motor Cycle)]는 국회 바깥으로 순찰을 돌아라. 돌다가 혹시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발견되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특임중대는 비무장으로 답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국회협력단장 양재응 장군을 만나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 그곳을 차단해라’,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체포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당신들은 군사경찰이니 합법적인 범위에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군사경찰단 선발대 대위 KZ에게 ‘경찰의협조를받아 국회 답을넘고 들어가 양재응 장군을 만나라’고 지시하여, 삼단봉으로 무장한 KZ 등 군사경찰단 선발대 5명은 2024. 12. 4. 01:35경 국회 7문 옆 답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을 포함한 후속 병력 62명(이하 ‘군사경찰단 후속부대’라고 함)은 2024. 12. 4. 00:08경 소총 28정, 권총 38정, 저격총 3정을 소지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39경 국회 인근 KBS미디어텍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은 먼저 도착한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협력단장 양재응 장군을 만나라’는 등의 이진우의 지시를 전달받고, 삼단봉으로 무장한 군사경찰단 후속부대 중위 LC 등 5명으로 하여금 2024. 12. 4. 01:46경 국회 7문 옆 답을 넘

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였다.

(5) 제1경비단 본부의 출동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1경비단 작전과장 전진해 등 29명은 2024. 12. 3. 23:44 경 소총 22정과 권총 4정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04경 국회 1문을 거쳐 국회 7문에 도착하였다.

(6)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피고인 윤석열은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등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하고 있던 2024. 12. 3. 23:33경 ~ 2024. 12. 4. 00:36경 총 4회에 걸쳐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 이진우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 이진우로부터 ‘국회에 도착하였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는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윤석열은 위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 2024. 12. 4. 01:06~ 01:14경 2회에 걸쳐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용현 역시 이진우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이진우는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조성현은 2024. 12. 4. 01:04경 서강대교 북단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2특임대대 후속부대 소속 제2지역대장 윤덕규에게 전화하여 ‘현재 35특임대대가 국회로 진입했으니 제2지역대도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35특임대대장과 통화해라.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서 투입하고 차량에 총기와 탄약을 경계하기 위한 일부 병력만 남겨라.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라고 지시하였으며, 2특임대대 후속부대는 위와 같은 임무수행을 위해 서강대교 북단을 출발하였으나, 이후 조성현으로부터 '투입과정에서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고 서강대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강대교에서 정차하여 다음 지시를 위해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다.

계속하여 이진우는 조성현에게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고 말하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해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밖으로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구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고 지시하였고, 제1경비단장 조성현은 그 무렵 월담하여 국회 경내에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35특임대대 선발대 소속 3지역대장 김의규에게 전화하여 '이따가 국회의원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4. 01:23경 이미 국회 경내에 진입해 있었던 35특임대대 후속부대도 위 35특임대대 선발대와 합류하게 하여 함께 위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라.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1)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에 대한 국회 출동 지시 하달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1:48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던중 광종근에게 상황발생시 육군특수전사령부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광종근은 2024. 12. 3. 22:21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 것을 지시한 후 이어서 2024. 12. 3. 22:25경 이상현에게 '사복을 착용한 편의대(정찰조) 1개 조를 국회로, 1개 조를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라', '1개 대대를 국회의사당으로, 1개 대대를 국회 의원회관으로 각출동시켜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28경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철진을 통해 광종근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라고 지시하였고, 광종근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그직후인 2024. 12. 3. 22:30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항공기(헬기) (사령부로) 출동해. 너도(사령부로) 들어와'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2:31경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헬기 12대가 곧 도착할 것이니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에 태워 즉시 국회로 출동시켜라',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33경 광종근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출동을 재촉하였고, 이에 광종근은 곧바로 이상

현에게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 종전 지시대로 병력을 서둘러 출동시켜라.’, ‘2개 대대를 국회로 보내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봉쇄해라’, ‘여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에 있는 수도방위사령관과 상의하며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2024. 12. 3.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받았을 당시, 자신의 수첩에 예하 부대별 출동 계획을 기재해 두었는데, 2024. 12. 3. 22:28경 피고인 김용현이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2024. 12. 3. 22:47경 예하 부대장 들과화상회의에서, 그수첩 기재를 보면서 이상현에게 즉시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한 후 ‘개인별로 소총과 공포탄, 저항세력 진압용으로 사용할 테이저건을 소지하게하고, 결박 또는 시건용 도로 사용할 케이블타이를 휴대하게 하라’, ‘그리고 실탄은 대대장, 지역대장 이상이 통합 보관하게 하다가 유사시 개인에게 지급하라’, ‘작전보안을 위해 비화폰만 소지하고 개인 휴대폰은 소지하지 말아라’, ‘전투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추가로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곽종근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여론조사꽃으로 각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7공수특전여단장 김종택에게는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제1공수특전여단지원을 준비할 것을, 국제평화지원 단장 김대성에게는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제1, 9공수특전여단지원을 준비할 것을 각 지시하였으며, 제13특임여단장 기호택에게 특임대 병력을 2024. 12. 4. 오전경까지 제9공수특전여단으로 이동하여 지원하되 1개 대대 병력은 추가 지시에 따른 지원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제11공수단장 장지환에게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곽종근은 2024. 12. 3. 22:50~23:07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왜 아직도 헬기가 안뜨는 것이냐’고 다그치며 신속히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보낼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2)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특수작전항공단의 국회 출동

곽종근의 지시를 받은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은 2024. 12.3. 22:49~22:54경 수도방위사령부에 비행제한구역(서울 상공, 일명 ‘R75’)에서의 헬기 비행 승인을 요청하였고, 2024. 12. 3. 23:04~23:15경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출동시켰으며,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2024. 12. 3. 23:22~23:43경 육군특수전사령부내 헬기이착륙장에 도착한 특수작전항공단의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mm 실탄 960발, 권총용 9mm 실탄 960발 등을 적재하고 야간 훈련 계획에 맞추어 미리 출동

준비중이던 제1, 3, 7, 9지역대 병력 96명(단장 포함 총 96명)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다.

한편 광종근은 2024. 12. 3. 23:26~23:33경 국회로 출동하는 헬기에 탑승 중인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국회에 도착하면 우선 본회의장을 차단하여 국회의원이 진입할 수 없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김현태는 2024. 12. 3. 23:30~23:46경 함께 국회로 출동중인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외곽을 봉쇄하고 출입문을 차단하라, 그 후 접근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접근을 막아라’, ‘본회의장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본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려 는 국회의원이 있을테니 출입문부터 우선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광종근은 2024. 12. 3. 23:30경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서울 상공 진입을 승인받지 못해 용인시 상공에 머물며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참모장 박정환을 통해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조백인에게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2024. 12. 3. 23:31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직접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백인은 2024. 12. 3. 23:31경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김문상을 통해 계엄사령부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의 헬기 진입 승인 요청을 전달하였으며, 박안수는 2024. 12. 3. 23:33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조종래로부터 위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에 대한 승인을 건의받은 후 이를 승인하여 위 헬기가 국회로 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2024. 12. 3. 23:00경 제*대대소속병력4명을 편의대로 편성한 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주변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였고, 2024. 12. 3. 23:57경 제1대대 병력 136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키고 동시에 본인도 지휘차량에 소총용 5.56mm 실탄 550발, 권총용 9mm 실탄 12발을 적재한 상태로 작전참모 안효영 등 4명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으며, 2024. 12. 4. 00:22경 2대대 병력 129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켰고, 2024. 12. 4. 00:45경 유사시 제*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3,520발, 제2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6,880발을 탄약 수송차량에 적재하고 즉시 공급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3) 제707특수임무단, 특수작전항공단의 헬기를 통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사당 봉쇄 시도

광종근의 지시를 받은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은 2024. 12. 3. 23:49경부터 2024. 12. 4. 00:11경 까지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를 포함하여 예하부대제1, 3, 7, 9지역대 소속 부대원 96명 등 함께 96명이 탑승하고 있는 헬기 12대를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시켜 제707특수임무

단 병력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김현태는 2024. 12. 3. 23:49경 탑승하고 있던 헬기에서 내려 동시에 도착한 1지역대 병력 23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후문으로 가 봉쇄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저지하는 국회의사당 경비인력 등 10여 명과 맞닥뜨리게 되어 약 10분 간 몸싸움을 벌이다가 국회의사당 후문 밖으로 나와 일부대원들로 하여금 청테이프를 출입문 손잡이를 휘감아 고정시키고 문 앞을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에서의 진입을 차단한 다음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좌측면 (국회의사당을 정문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준, 이하 동일함)을 돌아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이동 하였다.

한편, 제707특수임무단 1지역대 소속 최진호 등 4명은 2024. 12. 3. 23:50경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지역대 소속 4명의 단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에 집결하여 있던 중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상황을 취재 중이던 유지웅 기자가 휴대전화기로 단원들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기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건물 외벽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타이로 포박을 시도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 기사를 붙잡고 있다가 위 기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한 다음 풀어주었다.

계속하여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2024. 12. 3. 23:59경 국회의사당 정문을 봉쇄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곳에 모여있던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등 수백 명으로부터 더 큰 저항을 받게 되자, 뒤이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제3공수, 제7공수, 제9공수지역대 병력 72명을 합류시켜 함께 국회의사당 정문으로의 접근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 수백 명에게 가로막혀 국회의사당 정문 봉쇄에 실패하고 약 30분간 대치 상태로 있게 되었다.

(4) 제1공수특전여단의 월담을 통한 국회 진입

곽종근의 지시를 받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2024. 12. 4. 00:22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로부터 ‘경찰이 주출입구를 막고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주 출입구를 통해서는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 없으니 담을 넘어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2024. 12. 4. 00:30경 제1대대가국회 인근에 도착하자 제1대대장 김형기에게 ‘담 넘어가.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제1대대장 김형기는 제*대대 병력 48명과 함께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국회 2문과 수소충전소 사이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였으며, 계속하여 이상현은 2024. 12. 4. 00:31경 국회로 이동 중인 제2대대장 반효민에게 ‘의사당으로 가. 담넘어서 가. 담넘어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2024. 12. 4. 00:47경 반효민을 비롯하여 소총 등으로 무장한 제2대대 병력 122명 중80명은 그곳에 있던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3, 4문을 통해, 6지역대 병력 42명은 3문 인근 담을 넘어 각각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5) 제707특수임무단의 후속 병력 출동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3:50경 국회 경내 상황을 지켜보던 중 기존에 출동한 병력만으로는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광종근에게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여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광종근은 즉시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국회에서 주둔지로 복귀중인 헬기12대를 다시 육군 특수전사령부로보내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로수송하라'고 지시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이낙행에게 '제707특수임무단 지휘통제실로 내려가 병력을 추가 편성하여 국회로 출동시켜라. 상황이 급박하니 실탄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출동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은 2024. 12. 3. 23:53경부터 2024. 12. 4. 00:16경까지 사이에 앞서 국회 출동 임무를 마치고 주둔지로 향하던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재차 이동시켰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이낙행은2024. 12. 4. 00:29~00:5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헬기이착륙장에 도착한 헬기 12대에 제707특수임무단 병력101명을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제707 특수임무단병력 101명은 2024. 12. 4. 00:48~01:18경 탑승한 헬기가 국회경내에 착륙하자 이미 침투해 있던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등 96명의 병력과 합류하였다.

(6) 국회의사당 침투 및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위와 같은 경찰의 국회 출입 일시 허용으로 인해 이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집결하였고, 국회 경내로 들어온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3:36경 광종근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2024. 12. 4. 00:31경광종근에게 '아직 국회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짜를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용현도 2024. 12. 4. 00:32~00:36경 광종근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광종근은 2024. 12. 4. 00:32~00:58경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막는 게 안 되면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가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진입을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고려하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4. 00:34 ~ 00:46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하지 못하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유리창을 깨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를 차단하라’고 지시 하였으며, 나아가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고자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그 사용승인을 건의하였으나, 박안수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2024. 12. 4. 00:34경 약 18명의 병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전체길이 약 40cm) 및 소총의 총구 부분으로 유리창 2개 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였고, 침투 과정에서 일부 대원들이 주변에 있던 기자의 촬영용 사다리를 빼앗고 내부 진입을 막으려는 국회 직원 등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으며, 2024. 12. 4. 00:43경 3층 복도를 통과하여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국회 당직자 등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파 등집기류로 복도를 막아 진입이 어렵게 되자 우회로를 찾기 위해 4층으로 이동하였다가 우회로를 찾지 못하였고, 이에 2024. 12. 4. 01:03~01:07경 건물 전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지하 1층으로 이동하여 전원 차단장치를 찾아다니던 중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을 발견하게 되자 케이블타이, 소방호스 등으로 시정하려 시도하였고, 뒤이어 그 곳 분전함 내부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 조명을 소등하는 등 전원을 차단하였다.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2024. 12. 4. 00:39~01:00경 국회 경내로 진입해 있던 제1대대장 김형기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뚫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하려고 하니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의 지시다’, ‘전기라도 끊어라’라고 지시하고, 제 2대대장 반효민에게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투표들 못하도록’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1대 대장 김형기 등 제1대대 및 제2대대 병력 38명은 2024. 12. 4. 00:55~01:05경 잠겨 있던 국회의사당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한 후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다가 통로를 막은 채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

화전 호스로 물을 뿌리며 병력의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마.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1)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여인형에게 전화를 하여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명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53경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하였다.

(2)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1) 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체포 시도

여인형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국회로의 출동 명령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수사 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조지호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라고 하였다.

이후 여인형은, 2024. 12. 3. 22:44경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현수에게 전화하여 ‘TV 보고 있지? 계엄령 선포되었으니까 니네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해. 빨리 보내줘야 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여인형은 2024. 12. 3. 23:00경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 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조국, 김민석, 박찬대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B1병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하였고, 2024. 12. 3. 23:06경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홍장원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여인형의 명령을 받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는 2024. 12. 3. 23:04경 방첩사령부 수사단 장실에서, 방첩수사단 안보수사실장 이재학,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에게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라. 체육관에 우리 부대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에 호송차와 조사본부에 구금시설을 확인하라,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이송 및 구금 명단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이다. 인원들은 인수받아 호송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방첩사 혼자 할 수 없고,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는 2024. 12. 3. 23:05경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에게 전화하여 ‘선배님, 지금 계엄이 선포되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조사본부 100명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명단과 오시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수도권 내에 구금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해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수사 인력과 구금시설 현황 확인을 요청하였고, 2024. 12. 3. 23:32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과 통화하면서 ‘현재 계엄상황과 관련하여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경찰 100명이 준비되었다고 들었다.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수사 인력과 차량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는 수사조정과 이주혁 사무관을 통해 방첩사령부 체육관에 삼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를 넣은 백팩을 준비시키고, 2024. 12. 3. 23:50경 전후로 방첩사령부 군사기밀수사과 소속 신동걸 등 5명으로 구성된 1팀을 이재명체포조로 지명하는 등 팀별로 체포대상자를 지명한 후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고 지시하며 2024. 12. 4. 00:25경부터 국회로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2024. 12. 4. 01:05경까지 총 10개팀, 합계 49명의 방첩수사단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은 2024. 12. 3. 23:32~23:52경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로부터 2회에 걸쳐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데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구민회에게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겁니까’라고 물어보자, 구민회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대답하여 특정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무렵 국가수사본부 수사 기획담당관 전창훈, 피고인 윤승영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 사이,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은 2024. 12. 3. 23:40경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포되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 가능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전창훈은 피고인 윤승영에게 ‘방 첩사가 요청한 경찰 인력 100명은 서울경찰청에서 명단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윤승영은 이를 승인하였다.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는 2024. 12. 3. 23:43경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최광원을 통하여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인 임경우에게 위와 같은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을 보고하였으며, 임경우는 2024. 12. 4. 00:22경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손제한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광역수사단 소속 각 수사대장 5명, 반부패수사대 지원팀장 이종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투입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주세요’라고 지시하여, 2024. 12. 4. 01:26경 이종욱으로부터 반부패수사대 수사관 24명 등 총 104명이 기재된 ‘광역수사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현황’을 보고받았고, 그 중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이현일로부터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보고 받은 피고인 윤승영은 2024. 12. 3. 23:5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방첩사에서 합수부를구성할 예정이니 수사관100명, 차량 20대 준비해주고, 우선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 등 체포조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승인 및 지시를 받은 후 이현일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국가 수사본부장 우종수에게도 전화로 방첩사령부의 지원요청과 그에 따른 지원명단 송부 등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고 조치한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은 2024. 12. 3. 23:57경부터 2024. 12. 4. 00:36경까지 사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 박창균에게 4회에 걸쳐 전화하여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건 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필요하다. 경찰인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 ‘추가로 5명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박창균으로부터 2회에 걸쳐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2024. 12. 4. 00:13~00:40경 2회에 걸쳐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구민희에게 서울영등포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10명의 이름과 2명의 연락처가 기

재된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2024. 12. 4. 00:23경 전창훈, 피고인 윤승영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방첩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 에 대해서도 영등포서를 통해 명단 확보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 윤승영 및 전창훈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윤승영은 곧 바로 ‘오케이’라고 승인하였다.

구민회는 2024. 12. 4. 00:48~01:15경 이현일로부터 전송받은 명단에 포함되어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소속 정일현 경감, LT 경위와의 수회 전화연락을 통해 국회 앞 수소충전소 인근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원 나온 10명을 포함하여 경찰관 5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LT 경위에게 ‘경찰관이 조별로 나눠서 합류해 줬으면 좋겠다.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별로 명단과 대표자 연락처를 문자로 좀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령부 소속 체포조 조장들에게 국회 앞 수소충전소로 가서 지원 나온 경찰관들을 만나 체포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정일현 경감등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0명은 2024. 12. 4. 00:18 ~01:46경 방첩사령부의 체포조와 합류하기 위해 국회 인근의 수소충전소에서 대기하였고, 2명씩 5개조로 나누어 국회 인근의 현대오일뱅크로 이동하여 체포조와 합류하려고 대기하였으나, 방첩사령부 체포조가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여 체포조와 합류하지 못하였다.

3) 국방부 조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가) 방첩사령부 지원 수사관 100명 구성

박헌수는 2024. 12. 3. 22:44경 위와 같이 여인형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빨리 지원해 달라”는 요청 을 받고, 그 무렵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에게 전화하여 ‘방첩사령관한테 연락 왔는데, 방첩사에 서 수사관 100명 요청하니까 확인해 봐’라고 방첩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의 구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김상용은 2024. 12. 3. 23: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 5층 회의실에서 육군본부 산하 육군수사단장 인치열과 해군본부 산하 해군수사단장 김기진에게 각각 전화하여 ‘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조사본부 수사단 소속 수사관으로 충당하기 어려우니, 해당 부대에서 차출할 수 있는 인원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무렵 회의실에 있던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정승기에게 박헌수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수사단 산하에서 지원 가능한 인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김상용의 지시를 받은 정승기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수사상황실장 업무를 인수받고

있었던 장성관에게 2024. 12. 4. 02:00경까지 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 공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군 수사단 수사관 10명,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 조사본부 수사관 40명으로 방첩사령부에 보낼 수사관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장성관은 그 무렵 수사상황실로 돌아가 당시 수사상황실장 강준규, 수사상황담당관 김평재등에게 정승기의 지시를 하달하고, 이들과 함께 육·해·공군,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에게 전화하여 해당 부대에서 방첩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나서 정승기는 2024. 12. 3. 23:40경부터 수사단 주요 직위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전 수사단원 비상소집, 즉각 사무실 대기 바람, 수사대별 소집이 완료되면 보고하지 말고 수시로 사무실 도착 인원 보고 바람, 수사지도과 가용 수사장비 확인 바람 - 수정 등’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비상소집을 실시하였고, 그 무렵 강준규를 통하여 중대범죄반부패수사대장 소문 등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내 주요 직위자들에게 ‘장기교육자와 오늘 출장자를 제외한 수사단 전원을 비상소집하여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해라. 합수부로 나가는 인원들은 출동준비를 해라. 수정(수갑)을 준비하고, 가급적 검정 옷류로 맞춰 입어라’고 지시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 망민원조사단(이하 ‘민조단’이라 함) 단장 편강철도 2024. 12. 3. 23:40경 민조단 조사계획과장 김관선 등을 통해 민조단 소속 수사관들을 비상소집하였다.

여인형은 2024. 12. 3. 23:52경 재차 박헌수와 전화통화하면서 ‘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줘. 가용인원은 국회로 보내달라’고 재촉하였고, 김대우에게도 2024. 12. 3. 23:31~23:53경 ‘현재 집결된 방첩사령부 수사관들부터 먼저 국회로 보내고, 조사본부와 경찰도 준비되는 대로 국회로 오라고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구민회는 그 무렵 김대우로부터 위와 같은 여인형의 지시를 전달받고 김성곤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100명을 빨리 보내달라. 지원 수사관 명단이라도 보내주고, 준비된 수사관들은 국회로 보내달라’고 독촉하였다.

한편, 박헌수는 피고인 김용현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계엄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동안 그 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TV로 계엄군 등이 국회로 출동한 상황 등을 지켜보던 중 여인형으로부터 위와 같은 독촉을 받게 되자, 그 무렵 국방부 조사본부 상황실에 있던 정승기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100 명이 소집되는 대로 과천방첩사로 이동하고, 우선 수사관 5명 2개팀을 국회로 이동시켜라’고 지시 하였고, 정승기는 당시 회의실에 있던 편강철 등과 이를 공유하였으며, 김성곤도 구민회로부터 2024. 12. 3. 23:42경부터 2024. 12. 4. 00:1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수사관 100명을 빨리 보내주고, 준비

된 수사관들은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이를 박헌수에게 전화 등으로 보고하고, 정승기 등 과도 공유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승기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지도과 수사심사관 이진욱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2024. 12. 3. 22:55경 '국회 폐쇄 가능 짜라시도 돌고 있습니다', 2024. 12. 3. 23:20경 '수방사 국회 이동중_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등의 메시지를 각각 수신하였고, 김성곤은 2024. 12. 3. 23:45경 지인 MG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밤)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등의 메시지를 수신하였으며, 편강철은 2024. 12. 3. 23:06경 지인 MH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체포하고 감금하겠군요. 150명소집 못되게요' 등의 메시지를 수신하였고, 김성곤, 정승기 등은 각각 2024. 12. 4. 00:13경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편강철로부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므로,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1.pdf' 파일 을 전달받았다.

이후 강준규는 2024. 12. 4. 00:23~01:20경 각 군수사단으로부터 합계 60명의 수사관 명단을 전송 받아 이를 정승기에게 보고하였고, 계속하여 김평재로 하여금 국방부 조사본부 40명 명단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구성하라'는 박헌수의 지시를 이행하였다.

나) 미결수용실 현황 확인 및 미결수용자 이감 준비

김성곤은 2024. 12. 3. 23:42경 구민회로부터 재차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을 요청받은 후 기획처 계획과장 김윤정을 통해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4. 12. 3. 23:44경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 백철기에게 직접 전화하여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각각 구민회에 알려주었다.

김성곤은 2024. 12. 3. 23:48경 구민회로부터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이감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24. 12. 3. 23:51경 백철기에게 '현재 수용된 미결수용자3명을 국군교도소로 이감할 준비를 해달라'고 말하였고, 2024. 12. 3. 23:52경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에게 전화하여 '군사경찰단 미결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는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 줄줄이 체포되면 수도군단과 수방사 미결수용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수도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의 각 군사경찰단장들에게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이감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

청한 이후 김윤정 등에게 ‘방첩사에서 이감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수도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의 실무자들에게도 알려주어라. 지휘관들에게도 말을 해두었다’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4. 00:25경 박헌수로부터 합참 계엄상황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방첩사에서 미결수 용실 이감 요청이 있어 해당 부대에 준비하라고 통보하였다’는 사정을 박헌수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예방안전과장 김혜인은 2024. 12. 4. 00:08경 김윤정으로부터 ‘2024. 12. 4. 00:00부 이감 준비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2024. 12. 4. 01:20경 김윤정으로부터 ‘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3명의 수용자 중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수용자들을 깨워 짐을 챙기도록 하였고, 위 수용자들의 관할 군검찰단 측에 이감 지휘를 요청하는 등 이감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실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24. 12. 4. 01:00경 여인형의 지시를 받고 수도방위사령부의 구금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 등에게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 실의 현황을 설명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장 이희주는 2024. 12. 3. 23:56경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 계획장교 김성준으로부터 ‘야간에 이감 지시할 수 있으니, 이감 계호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때부터 2024. 12. 4. 01:20경 김윤정으로부터 ‘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계호 차량을 점검하고, 이감에 대비해 관할 군검찰단과 국군교도소 측에 연락을 취하였으며, 향후 민간인이 미결수용실에 구금될 것을 대비하여 미결수용실 근무자들이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이감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실행하였다.

다)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명의 국회 출동

한편 박헌수는 2024. 12. 3. 23:52경 여인형으로부터 ‘니네 수사관 10명 빨리 좀 보내줘. 가용인원은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승기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5명, 2개팀을 국회로 이동시켜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정승기는 그때까지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소집되지 않자, 편강철에게 위와 같은 박헌수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지금 국회로 출동할 수사단 소속 수사관 인원이 모자라니 민조단 수사관 5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편강철은 2024. 12. 4. 00:02경 재차 민조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모두 전파해서 전원 소집’을 지시하면서 2024. 12. 4. 00:27경 ‘복장은 검정색 사복, 운동화, 조사본부 마크는 미부착, 마스크 휴대 바람입니다’라고 지시한 후 민조단 소속 수사관 MN,

MO, MP, MQ, MR 등 5명을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으로 결정하였다.

정승기는 2024. 12. 4. 00:20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소속 수사관 MS에게 위 민조단 소속 수사관 5명과 함께 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국회로 출동할 수사단 소속 수사관 5명 소집을, MT에게는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들에게 지급할 수정(수갑)의 확보를 각각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정승기의 지시를 받은 MS는 본인을 포함하여 MU, MV, MW, MX 등 5명을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으로 구성하였으며, MT 등은 수사장비실 등에서 수정(수갑) 5개를 확보하는 등으로 출동 준비를 마쳤다.

정승기는 2024. 12. 4. 00:50경 상황실에 소집된 수사단 및 민조단 소속 수사관 10명에게 ‘국회로 지금 출동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방첩사령부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하면 된다. 다만 출동할 때 검정색 복장을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정(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상민에게 구민회와 연락하여 임무를 받으라고 지시하며 구민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박헌수 및 정승기의 순차 지시를받은 MS 등 수사관 10명은 검은색 복장에 국방부 조사본부 패치를 탈착하고 수정(수갑)을 소지한 채 2024. 12. 4. 01:03경 및 01:08경 차량 2대에 각각 5명씩 나눠 타고 국회로 출발하였고, MS은 그 무렵 전화로 구민회로부터 ‘일단은 국회 수소충전소로 출동해 주십시오. 방첩사령부 수사관 45명, 경찰측은 50명, 군사경찰에서는 10명이 갔기 때문에 5명, 5명, 1명 이 정도씩 분배되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정승기에게 보고함으로써 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합류를 시도하였다.

4) 방첩사령부의 최우선 체포대상자 선정·전파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24. 12. 4. 00:33경 여인형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하였고, 여인형은 그 명령을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전달하였으며, 김대우는 2024. 12. 4. 00:38경 당시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첩사령부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여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정책계획장교 MY이 2024. 12. 4. 00:41경 구민회 및 7개 출동조 조장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이용’이라는 메시지를, 2024.

12. 4. 00:46경 ‘현장에서 조인할 경찰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선하셔서 임무수행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구민회는 2024. 12. 4. 00:45경 및 00:59경 2 회에 걸쳐 위 단체대화방에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10명의 경찰관 명단과 연락처 를 전송하는 등 방첩사령부 수사관들로 하여금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명단의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을 만나 체포조를 편성한 후 임무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2024. 12. 4. 00:25~01:05경 국회로 순차 출동한 방첩사령부 수사관들49명은2024. 12. 4. 00:48경 이후 순차로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 서 내리지 못한 채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10명을 포함한 경찰50명과 합류하지 못하였고, 계속 현장 대기하던 중2024. 12. 4. 01:45~01:50경 복귀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다.

(3)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윤승영은 여인형, 김대우, 박헌수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2024. 12. 3. 23:00경 방첩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을 동원한 다음 수사관들을 여러 개의 조로 편성하여 체포조로 운영하려고 하였고, 2024. 12. 3. 23:06경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던 경찰이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 으로 들어가게 되자, 2024. 12. 3. 23:57경부터 2024. 12. 4. 01:05경까지 사이에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방첩사령부 수사관 49명, 사복의 경찰 수사관 10명,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

박헌수는 김대우 등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지원할 국방부 조사본부, 육군, 공군, 해군 및해병 대수사관 100명을 구성하였고, 방첩사령부소속 수사관 및 경찰 수사관과 조를 이루어 즉시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수행하도록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수사관 10명을 국회로 출동시켜 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합동 체포조에 가담하게 하였으며, 체포한 국회의원 등을 구금할 수도권 소재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권단에 수용되어 있던 미결수용자의 국군교도소 이감을 준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피고인 조지호 등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2024. 12. 4. 00:30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국회의장 우원식,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하였으나, 국회 주변

에 모인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편성된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 체포 시도

(1)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서버실 폐쇄 등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문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인근에서 이미 대기중이던 계획처장 고동희 등 대원 10명에게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후속 지원부대가 올 때까지 그곳을 점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고동희 등 대원 10명은 문상호의 명령에 따라 2024. 12. 3. 22:3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당직실로 진입하여 당직자 MZ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유선전화의 전원선을 뽑아 유선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3층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방호원 N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함과 동시에 1층 당직실로 이동하게하였고, 3층 조사총괄과에서 위탁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던 NB에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건네 줄 것을 요구하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퇴청하라’고 요구하여 위 NB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고동희 등대원 10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1층 당직실에서 통합관제실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통합관제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NC, ND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NC로 하여금 통합관제실의 왼쪽에 위치한 선거정보센터의 출입문을 열도록 하여 선거정보센터 내 서버실의 A구역 통합명부시스템, B구역 통로, 통합스토리지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서버실을 폐쇄하였으며, NC, ND가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이동할 때에도 따라다니며 감시하였다.

고동희는 출동한 대원 중 1명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하 주요 직급자들의 얼굴 사진, 담당업무 등이 기재된 조직도를 보고 문상호가 보내준 직원 5명 중 일부가 조직도에 없음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로 위 조직도를 사진촬영하여 문상호에게 전송하고, 위 확인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고동희 등은 지하 1층 기계실로 이동하여 업무 중이던 NE를 감시하였고, 비상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난·전시 대비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출입하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NF, NG, NH,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NI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이후 2024. 12. 4. 00:40~01:08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의 지휘하에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 병력 138명 함께 2024. 12. 4. 01:30경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외곽 및 1층 로비를 점거하였다.

(2) 제2수사단을 이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 시도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문상호는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운용하기로 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 편성될 정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로서 위와같이 김봉규, 정성욱을 통해 긴급소집한 36명(특임수행요원 5명 포함)을 100여단에 있는 대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 ‘우리는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말하면서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세부 임무를 부대원들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정성욱은 문상호와 피고인노상원의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표식이 달린 목걸이 표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해 놓고,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36명 중 16명 가량에게 체포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024. 12. 4. 05:00경에 출동하여 05:40경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체포 명단에 오른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 병커(문서고)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다.

김봉규 또한 문상호와 피고인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중 나머지 20명 가량에게 체포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부대원들로 하여금 4~5명씩 조를 편성하도록 한 다음, A조에는 ‘수도방위사령부병커(문서고)로 이동,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수용, 취조할 공간 확보 임무’, B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실로 이동, 계엄상황 고지, 협조 요청, 미협조시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부 방송 송출 임무’, C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전체 명단 확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회의실 및 체포한 직원을 조사할 조사실 확보 임무’, D조에는 ‘전산실로 이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관련 신고 및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공지글 게시’ 임무를 각각 부여하였고, 각 조의 임무가 끝나면 정성욱이 지휘하는 요원들과 함께 호명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로 호송하는 임무도 부여하였다.

김봉규는 특히 특임수행요원 3명에게는 ‘노상원에 대한 경호 임무와 노상원의 선관위 위원 조사 시 그 옆에서 조사대상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임무’도 부여하였고, 이와 별개로 정보사령부 소속 신준호 소령에게는 ‘수사단장 수행보좌관으로서 05:40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모셔 오는 등 노상원의 수행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임무를 부여받은 각 부대원들은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을 하며 출동 대기하였다.

한편, 문상호는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 정성우 1처장에게 전화하여 방첩사 인원이 선관위로 출발했는지 확인하라'는 피고인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는 정성우에게 연락하여 '국군방첩사 부대원들이 선관위로 출발하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문상호는 김봉규, 정성욱 및 휘하 부대원들과 집결하여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던 중 2024. 12. 4. 01:03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자, 2024. 12. 4. 05:30경 ○○여단 대회의실에서 부대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각자 부대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로써 제2수사단을 이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4. 15:54경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수고했다. 모든 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3) 경찰의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1) 경기남부경찰청을 통한 출입통제 지시 하달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2024. 12. 3. 22:41경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있다. 경찰관들을 보내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김준영은 2024. 12. 3. 22:44경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박규남과 통화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바깥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시설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박규남은 2024. 12. 3. 22:52~22:53경 과천시 흥촌말로44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및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126에 있는 선거연수원을 관할하는 수원서부경찰서장 김재광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김준영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김준영은 2024. 12. 3. 23:26경 문진영에게, 2024. 12. 3. 23:28경 김재광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현장에서 지휘를 하도록 지시한 뒤, 박규남에게 '과천경찰서와 수원서부경찰서에 기동대를 추가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경비과장 박규남은 경기남부경찰청 상황팀장 한상구, 경비계장 박종석에게 다목적 당직팀(4기동대2제대), 7기동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2기동대를 선거연수

원에 각각 출동시키도록 지시하였다.

2) 과천경찰서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출입통제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박규남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의 지시를 전달받은 과천경찰서장 문진영은 2024. 12. 3. 22:52경 과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박병철에게 경력 배치 및 통제를 지시하였고, 2024. 12. 3. 23:05경 지능범죄수사팀장 이옥주 등 5명으로 구성된 초동대응팀에 K1 소총 5정과 실탄 300발을 지급한 뒤 2024. 12. 3. 23:46경 과천경찰서 형사와 지역경찰 및 초동대응팀 등 13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배치하였다.

또한, 김준영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은 문진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여 2024. 12. 3. 23:28경부터 2024. 12. 4. 00:32경까지 김준영, 박규남과 문자메시지와 전화연락을 주고받으며, 2024. 12. 3. 23:46경 계엄군 10명이 같이 근무 중인 사실을 이들에게 보고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 4기동대 2제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한 2024. 12. 3. 23:52경 이들이 타고 온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정문 출입구를 가로막고, 경찰 8명 가량이 정문을 경계하며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고, 2024. 12. 4. 00:40경 현장에 출동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130여 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문진영을 비롯한 과천경찰서 소속 23명,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4기동대 2제대 19명, 7기동대 73명 등 합계 약 115명은 2024. 12. 3. 23:09경부터 2024. 12. 4. 02:00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정문 출입구를 봉쇄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3) 수원서부경찰서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출입통제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박규남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의 지시를 전달받은 수원서부경찰서장 김재광은 2024. 12. 3. 23:12~23:13경 수원서부경찰서 상황실에서 무전으로 관할 지역을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2024. 12. 3. 23:23경 초동대응을 위해 우선하여 출동한 것을 시작으로 수원서부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경찰관 총 48명이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였다.

또한 김준영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은 김재광은 2024. 12. 3. 23:28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정문과 후문 등에 경력을 배치하고 재차 이들에게 선거연수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김준영은 2024. 12. 3. 23:56경 김재광과 통화하여 '신원을 불문하고 선거연수원의 출입을 전

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고, 박규남도 2024. 12. 4. 00:04경 김재광에게 전화하여 김준영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며 '모든 사람의 선거연수원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김재광은 2024. 12. 4. 00:06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신원을 불문하고 선거연수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NV 등 6명이 선거연수원 밖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김재광을 비롯하여 수원서부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48명,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63명 등 합계 총111명은 2024. 12. 3. 23:17경부터 2024. 12. 4. 02:11경까지 선거연수원 정문, 후문 등 4개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선거연수원 연수생 등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

(4)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출입통제 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1층 점거

곽종근은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이전에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위로 보내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김정근은 그 즉시 참모장 전형일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의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3공수특전여단 예하 제11공수대대장 이경종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되,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 껍데기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김정근은 2024. 12. 3. 23:47경부터 2024. 12. 3. 23:56경까지 11대대 소속119명 등 총13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발하여 2024. 12. 4. 00:40경부터 2024. 12. 4. 01:08경까지 사이에 모두 도착한 후, 138명 중8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외곽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52명은 이미 도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서버실 등을 점거중인 고동희 등 10명의 정보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2024. 12. 4. 01:20경까지 과천청사1층 로비를 점거하도록 하였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점거

곽종근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

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재차 ‘1개 대대는 사당역에 있는 중앙선거관위 분청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은 그 즉시 작전참모 차용환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9공수특전여단 예하 51대대장 황준홍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51대대장 황준홍은 51대대 본대 병력 118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후발대 병력 22명으로 하여금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 탄약을 2.5톤 트럭에 싣고 본대 병력을 뒤따라오도록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42경 출발하여 2024. 12. 4. 00:23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도착한 후, 2024. 12. 4. 00:45~01:19경까지 51대대 3지역대 소속 4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경내를 점거하였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점거 시도

곽종근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선거관위 연수원으로 보내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김정근은 그 즉시 참모장 전형일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3공수특전여단 예하 12대대장 박기근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하였고,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 채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12대대장 박기근은 2024. 12. 4. 00:05경 본인을 포함한 총 133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2024. 12. 4. 01:17~01:15경 순차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도착한 후,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건물을 통제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력과 합류하였다.

4) 여론조사꽃 건물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곽종근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1개 지역대를 여론조사꽃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안무성은 그 즉시 작전참모 차용환 중령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9공수특전여단 예하 52대대장 유선민에게 1개 지역대와 함께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유선민은 본인을 포함한 52대대 본부 소속 7명과 52대대 제6지역대 병력 50명 등 총 57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및 권총) 상태로 무장시키고, 공포탄은 별도 보관하도록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42경 출발하여 2024. 12. 4. 00:5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여론조사꽃에 도착한 후, 그때부터 2024. 12. 4. 01:09경까지 52대대 제6지역대 소속 15명의 병력과 함께 여론조사꽃의 건물 앞을 점거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5)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 점거 시도

곽종근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5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전화하여 '편의대 2개조를 운용하여 1개 조는 국회, 1개 조는 더불어민주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상현은 2024. 12. 3. 22:25경 제1공수특전여단 참모장 김병준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였고, 2024. 12. 3. 22:33경 곽종근에게 비상계엄 상황이 맞는지 확인한 후 2024. 12. 3. 22:53경 제1공수특전여단 예하 제1대대 제8중대장 OG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가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3:31경 OG 등 편의대 병력 5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도착하자 OG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2024. 12. 4. 00:28경 제1공수특전여단 예하 제3대대장 장희재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장희재는 제3대대 소속 병력 106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2024. 12. 4. 00:56경 본인을 포함한 6명의 본부 병력과 제3대대 소속 병력 106명 등 총 112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하던 중 2024. 12. 4. 01:06경 사령부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2024. 12. 4. 02:35경까지 당

산역 일대 도로에서 정차 후 대기하였다.

(5) 방첩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꽃 등 4곳으로 출동해서 전산자료를 확보해라’, ‘선관위로 출동하는 방첩사 부대원들을 노상원과 연결시켜 주어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여인형은 그 무렵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에게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꽃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 건물은 경찰이 확보할 것이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올 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고 명령하였다.

이후 여인형은 2024. 12. 3. 23:55경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할 상황이 임박하자, 정성우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서버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와라’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정성우는 여인형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노상원의 휴대전화번호로 2024. 12. 3. 22:50경부터 2024.12. 4. 00:56경까지 피고인 노상원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여기(선관위) 현장지휘관이 있으니 너희들이 오면 인수인계해 줄 것이다’, ‘빨리 와라’, ‘우리가 여기 확보했으니 여기 와서 포렌식을 떠라’라는 말을 듣고는 과학수사센터 부대원 22명, 경호경비부대 39명, 정보보호단 43명, 군사보안실 6명, 사이버보안실 5명 등 총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히 편성하여 2024. 12. 4. 00:58~01:43경 순차로 위 4곳으로 출동하게 하면서 각 팀마다 고무탄총 1정(고무탄5개) 또는 가스총 1정(카트리지 각1개)씩 소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으로 출동한 방첩사령부 부대원들은 지시받은 목적지로 가던 중 2024. 12. 4. 02:34경 복귀명령을 받고 복귀하였다.

사. 경찰과 소방서를 동원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등 시도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전후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하였고, 이에 이상민은 포고령 공고 직후인 2024. 12. 3. 23:34경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7경 소방청장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24:00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

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허석곤은 위와 같은 이상민의 지시사항을 소방청 차장 이영팔에게 전달하였다.

이영팔은 2024. 12. 3. 23:40경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에게 전화하여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하여 요청하였고, 허석곤은 2024. 12. 3. 23:50경 황기석에게 재차 전화하여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및 해제 발표

2024. 12. 4. 00:49경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었고, 2024. 12. 4. 01:01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2024. 12. 4. 01:03경 재석 국회의원 190명(더불어민주당 172명, 국민의힘 18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2024. 12. 4. 01:16~01:47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서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국가안보실2차장 인성환, 국방비서관 최병욱 등과 관련 논의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4. 02:13경 광종근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광종근으로부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김용현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였고 국무총리 한덕수의 주재로 2024. 12. 4. 04:27~04:29경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고, 국방부는 2024. 12. 4. 04:32경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하였던 모든 병력들이 원소속 부대에 복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자. 기타 비상계엄 관련 군 및 경찰 출동 상황

이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를 전후한 시점까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 약 70명이 대통령 관저 인근 등에 배치되었고,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조지호와 논의한 후 아래 표와 같이 대통령실, 국방부, 대통령 관저 등 용산 인근에 서울경찰청1기동단 13기동대 소속 기동대원 75명을 비롯하여 총 24

개 기동대 약 1,765명의 기동대원들이 배치되게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와 연관되어 경찰과 군 병력이 동원되었다.

순번	부대	출동인원(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1	☆☆기동대	75	버스3대 지휘차1대	12. 3. 19:00 (용산 철야근무)	12. 3. 19:20	12. 4. 09:00 (용산 철야 후 복귀)	용산 인근
2	\$@기동대	72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0:15	12. 4. 00:35	12. 4. 05:42	용산 삼각지역 주변
3	&%기동대	74	버스3대 지휘차1대	12. 4. 00:10	12. 4. 00:40	12. 4. 03:50	용산 한남동 주변
4	#@기동대	73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0:19	12. 4. 00:45	12. 4. 04:02	용산 국방부 주변
5	@!기동대	72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0:29	12. 4. 00:46	12. 4. 03:55	용산 한남동 주변
6	≡기동대	77	버스3대 지휘차1대	12. 4. 00:32	12. 4. 00:48	12. 4. 05:35	용산 삼각지역 주변
7	&*기동대	76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0:06	12. 4. 00:50	12. 4. 05:30	용산 삼각지역 주변
8	*%기동대	73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0:30	12. 4. 00:50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9	%!기동대	74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0:23	12. 4. 00:53	12. 4. 03:35	용산 한남동 주변
10	%@기동대	70	버스3대 지휘차1대	12. 4. 00:10	12. 4. 00:55	12. 4. 04:15	용산 한남동 주변
11	\$&기동대	76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0:15	12. 4. 00:55	12. 4. 05:30	용산 삼각지역 주변
12	*&기동대	74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0:40	12. 4. 00:55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13	#*기동대	74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0:17	12. 4. 01:00	12. 4. 04:05	용산 한남동 주변
14	&!기동대	73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0:20	12. 4. 01:00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15	&()기동대	74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0:29	12. 4. 01:00	12. 4. 04:00	용산 한남동 주변
16	&●기동대	76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0:40	12. 4. 01:05	12. 4. 03:30	용산 한남동 주변
17	●&기동대	70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0:23	12. 4. 01:30	12. 4. 03:30	용산 한남동 주변
18	●@기동대	75	버스3대 지휘차1대	12. 4. 01:10	12. 4. 01:44	12. 4. 03:30	용산 한남동 주변
19	◎@기동대	72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1:15	12. 4. 01:50	12. 4. 04:00	용산 한남동 주변
20	◎&기동대	74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1:20	12. 4. 01:50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21	◎#기동대	72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1:30	12. 4. 01:50	12. 4. 09:00	용산 삼각지역 주변
22	◇!기동대	71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1:20	12. 4. 01:55	12. 4. 03:55	용산 국방부 주변
23	◇%기동대	75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1:30	12. 4. 02:00	12. 4. 09:00	용산 삼각지역 주변

순번	부대	출동인원(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24	□%기동대	73	버스3대 지휘차2대	12. 4. 01:10	12. 4. 04:00	12. 4. 04:00	용산 한남동 주변
총24개 기동대		1,765	버스72대 지휘차43대				

7.결론

피고인들은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김대우, 이상현, 김현태,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박현수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더불어민주당 당사·여론조사꽃을 장악하며,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국가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III.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경찰 관련 직권남용

가.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박안수 등(이하 피고인과 공범들을 ‘피고인 등’이라 함)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차단 지시에 응하여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II.6.나.항 기재와 같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기동본부 3기동단장 지지환, 4기동단장 백현석, 6기동단장 조남형, 8기동단장 김완기, 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을 통하여 ☆☆

기동대장 황성수를 비롯한 대원64명, \$@기동대장 정동실을 비롯한 대원71명, &%기동대장 김용경을 비롯한 대원65명, #@기동대대장 최호를 비롯한 대원62명, @!기동대장1제대 선임팀장 박정호를 비롯한 대원64명, ㅁ기동대장 기동대장 박만식을 비롯한 대원75명, &*기동대장 조운제를 비롯한 대원70명 및*%기동대1제대 대원23명, %!기동대장 김동현을 비롯한 대원76명 ,%@기동대장 변영찬을 비롯한 대원73명, \$&기동대장 노영래를 비롯한 대원74명, *&기동대장 윤경중을 비롯한 대원72명, #*기동대장 문응규를 비롯한 대원71명, &!기동대장 최원명을 비롯한 대원73명, &()기동대장 이수진을 비롯한 대원73명, &●기동대장 우성준을 비롯한 대원75명, ●&기동대장 예병천을 비롯한 대원74명, ●@기동대장 전기용을 비롯한 대원74명, ◎@기동대장 박종필을 비롯한 대원70명, ◎&기동대장 김종민을 비롯한 대원74명, ◎#기동대장 전연규를 비롯한 대원73명, ◇!기동대장 최성철을 비롯한 대원74명, ◇%기동대장 윤종배를 비롯한 대원75명, □%기동대장 최호균을 비롯한 대원73명, ◇%기동대장 김승철을 비롯한 대원72명, □\$기동대장 정재철을 비롯한 대원74명, □*기동대장 노관영을 비롯한 대원73명, △%기동대장 이광훈을 비롯한 대원76명, ♠#기동대장 박찬용을 비롯한 대원73명 함께 총29개의 경찰 기동대 대원1,963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하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는 박안수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Ⅱ.6.나.항 기재와 같이,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 당직 제대장 정성채를 통하여 국회경비대 제1경비제대장 김진욱, 제3경비제대장 직무대리 정용희, 제5경비제대장 서기창 및 경무계장 송민주, 검찰 담당KP를 비롯한 대원85명으로 하여금 국회 안쪽에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국회의원 김민석, 박수현, 박용갑, 안규백, 이관희, 이주영, 이준석, 정동영 등의 심의·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윤승영은 여인형, 김대우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및 주요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영장주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Ⅱ.6.마.(1)항, Ⅱ.6.마.(2).1)항 및2)항 기재와 같이, ① 국

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인 임경우를 통하여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소속 이종욱 경감으로 하여금 즉시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찰관104명을 방첩사령부 지원 인력으로 편성하게 하고, 그 중 위 이종욱을 비롯한81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자의 사무실에 대기하게 하였으며, ②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을 통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 박창균으로 하여금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소속 정일현 경감을 비롯한 경찰관10명을 체포조로 편성하여 지원하게 하고, 위 경찰관10명으로 하여금 체포조와 합류하도록 국회 인근 수소충전소에 대기하게 하고, 2명씩5개조로 나누어 국회 인근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로 이동하게 하여 체포조와의 합류를 시도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에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그 직원 등의 출입을 통제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Ⅱ.6.바.(3)항 기재와 같이, ①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박규남을 통하여 경기남부경찰청4기동대 선임팀장 인치영을 비롯한 대원19명, 7기동대장 최성원을 비롯한 대원73명 합계92명 및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박규남, 과천경찰서장 문진영을 통하여 과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이옥주를 비롯한 경찰관22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② 위 김준영 및 박규남을 통하여 경기남부경찰청2기동대장 조영익을 비롯한 대원63명 및 위 김준영 및 박규남, 수원서부경찰서장 김재광을 통하여 수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조영진을 비롯한21명 및 서호지구대 소속 이방희 경감을 비롯한 산하 지구대 소속26명 합계47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게 하여, 각 청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그곳 직원 등의 출입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수도방위사령부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박안수, 이진우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에 응하여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Ⅱ.6.다.항 기재와 같이, ①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을 통하여 제35특임대대 대대장 박진우를 비롯한 위 대대 소속 부대원 45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제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를 비롯한 38명으로 하여금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고, ② 위 조성현을 통하여 2특임대대 제2지역대장 윤덕규를 비롯한 위 대대 소속 부대원 62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③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조백인,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을 통하여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을 비롯한 군사경찰단 소속 부대원 75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군사경찰단 대위KZ, 중위LC를 비롯한 10명으로 하여금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고, ④ 위 조성현을 통하여 제1경비단 작전과장 전진해 등 위 경비단 본부 소속 부대원 28명으로 하여금 국회로 출동하게 하여, 국회를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육군특수전사령부 관련 직권남용

가.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박안수, 곽종근, 이상현, 김현태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에게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에 응하여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Ⅱ.6.라.항 기재와 같이, ① 제707특수임무단 3지역대장 김법현, 5지역대장 최진호, 7지역대장 박현우, 9지역대장 박종성을 비롯한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총 196명으로 하여금 헬기에 탑승해 국회 경내로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봉쇄를 시도하게 하고, 그 중 9지역대장 박종성을 비롯한 18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우측면 유리창을 깨뜨려 그 내부로 침투하게 하였으며, ② 제1공수특전여단 제1대대장 김형기, 제2대대장 반효민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273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위 김형기, 반효민을 비롯한 171명으로 하여금 경찰의 협조를 얻어

국회3, 4문을 통과하거나 답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한 뒤, 그 중 위 김형기를 비롯한 38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하게 하였고, ③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을 통하여 특수작전항공단 소속 조규용을 비롯한 총 24명의 조종사들로 하여금 헬기12대를 동원해 위①항과 같이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들을 국회 경내로 이송하게 하여, 해당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및 출입통제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광종근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영장 없이 민간기관인 여론조사꽃, 정당 당사를 점거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Ⅱ.6.바.(4)항 기재와 같이, ①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을 통하여 제3공수특전여단 제11공수대대장 이경종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38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위 이경종을 비롯한 52명으로 하여금 정보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청사1층 로비를 점거하게 하였으며, ② 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을 통하여 제9공수특전여단 51대대장 황준홍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41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황준홍 및 48명의 병력으로 하여금 청사 경내를 점거하게 하였으며, ③ 위 김정근을 통하여 제3공수특전여단 12대대장 박기근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33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건물을 통제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력과 합류하게 하고, ④ 위 안무성을 통하여 제9공수특전여단 52대대장 유선민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57명으로 하여금 민간기관인 여론조사꽃에 출동하게 하고 그 중 유선민 및 15명의 병력으로 하여금 위 건물 앞을 점거한 채 건물 출입을 통제하게 하였으며, ⑤ 제1공수특전여단 제3대대장 장희재를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12명으로 하여금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 점거를 위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방첩사령부 관련 직권남용

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여인형, 김대우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및 주요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영장주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Ⅱ.6.마.항 기재와 같이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운영할 목적으로, ①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중령 구민회로 하여금 국방부 조사본부 및 경찰과 연락하게 하여 방첩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각 차출하여 여러 개의 조로 편성하게 하였고, ② 방첩사령부 군사기밀수사과 소속 신동걸을 비롯한 위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라고 명령하여 (i) 위 신동걸을 비롯한 방첩사령부 수사관 49명으로 하여금 국회로 출동하게 하는 한편, (ii) 위 구민회로 하여금 경찰 수사관 10명,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명도 국회로 출동하도록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하게 하여 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은 여인형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여 전산실을 확보하고, 서버를 반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영장 없이 민간기관인 여론조사곳에 침입하여 전산실을 확보하고, 서버를 반출하거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Ⅱ.6.바.(5)항 기재와 같이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를 통하여 과학수사센터장 송제영, 경호경비부대장 양승철, 정보보호단장 박태주, 군사보안실장 이종훈, 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을 비롯한 소속 군인 115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여론조사곳으로 출동하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국방부 조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여인형, 김대우, 박현수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방부 조사본부 및 육·해·공군, 해병대 수사단 소속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영장주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Ⅱ.6.마.(1)항, Ⅱ.6.마.(2).1)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①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 수사단장 정승기를 통하여 상황실장 강준규 및 육군수사단 상황실장 김성곤, 해군수사단 상황실장 홍종택, 공군수사단 상황실장 박성호, 해병대수사단 상황실장 홍지창으로 하여금 방첩사령부의 국회의원 등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지원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이상민을 비롯한 수사관100명을 편성하게 하고, ② 위 정승기를 통하여 위 MS를 비롯한10명으로 하여금 검은 복장에 부대 마크는 탈착하고 수정(수갑) 등을 휴대하고 방첩사령부 수사관 및 경찰 수사관과 조를 이루어 국회의원 등 체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③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 계획과장 김윤정, 계획장교 김성준을 통하여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예방안전과장 김혜인,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장 이희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구금에 사용될 수도권 소재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및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를 준비하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균은 문상호,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여 직원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서버실을 확보하고, 민간인인 직원들을 군수용시설로 이송 및 구금하거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① 위Ⅱ.4.나.(6)항, Ⅱ.6.바.(1)항 기재와 같이 고동희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보사령부 작전과장 중령 서지운과 소령급 장교 8명(김성호, 김정재, 김지웅, 김찬유, 김형주, 이민형, 유병욱, 홍태환)으로 하여금(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이동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까지 대기하게 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로 침입하여 서버실, 당직실, 경비실, 정문 등을 점거하게 하였으며, (i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안에 있던 MZ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을 감시하게 하고, 당직실의 유선전화의 전원선을 뽑아 선관위 직원들의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게 하였으며, (iii) 3층 조사총괄과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NB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하게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들어오려고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공무원 NF, 선거정책실장 NI 등의 출입을 통제하게 하였으며, ② 위 II.4.나.(7)항 및 II.6.바.(2)항 기재와 같이 특임수행요원 5명을 포함하여 김태용을 비롯한 36명의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2024. 12. 4.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 및 신문 후 수도방위사령부 B1병거로 이송하는 등 위법한 임무의 하달을 위해 100여단 대회의실로 집합하게 하고, 위 임무의 숙지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을 하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별지2]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증거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2	326	2691	- 이상현 여단장 시그널 메시지 캡처1부	
2	552	4781	- 유재원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사진2부	
2	553	4783	- 유재원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사진1부	
2	561	4816	- 고광일의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사진1부	
2	562	4817	- 이종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캡처사진1부	
2	579	5354	- 전화녹음 파일 녹음CD 1매	
2	627	5668	-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기자회견 영상 첨부CD 1매	
2	915	7687	- 출동 부대원 명단	검찰주사 ABO
2	977	8154	- 특임대대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취록 참고자료1부	
2	986	8226	- 안무성 비화폰전체 통화내역(2024.12.3.~12.5.)사진1매	
2	987	8227	- 광종근과의 통화내역 사진2매	
2	988	8229	- 제9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와의통화내역 사진3매	
2	989	8232	- 제1공수특전여단장과의 통화내역(2024.12.4.) 사진1매	
2	990	8233	- 특전사 참모장과의 통화내역(2024.12.4.) 사진1매	
2	1079	8776	- 메시지 캡처 사진	
2	1358	10237	- 김혜인 소령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15개를 저장한CD 1매	
2	1361	10240	- 녹취서(김혜인, UN)	
2	1362	10243	- 녹취서(김혜인, 노주영)	
2	1363	10245	- 녹취서(김혜인, UN)	
2	1364	10248	- 녹취서(김혜인, 김윤정)	
2	1365	10251	- 녹취서(김혜인, 엄정섭)	

2	1366	10253	- 녹취서(김혜인, UN, 남자1)	
2	1367	10256	- 녹취서(김혜인, 김윤정)	
2	1368	10258	- 녹취서(김혜인, UN)	
2	1369	10261	- 녹취서(김혜인, UN)	
2	1370	10264	- 녹취서(김혜인, UN, 남자1)	
2	1371	10267	- 녹취서(김혜인, UN)	
2	1372	10269	- 녹취서(김혜인, UN)	
2	1373	10271	- 녹취서(김혜인, 김창학)	
2	1374	10273	- 녹취서(김혜인, 노주영)	
2	1375	10275	- 녹취서(김혜인, 김창학)	
2	1436	10857	- 정성우1처장과 최연우 보좌관의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2	1448	11050	- 신준호 소령 정성욱과의 통화내역 캡처1부	
2	1449	11051	- 신준호 소령 휴대전화 저장 노상원의 휴대전화 번호 캡처1부	
2	1501	11654	- 카카오톡 대화내역	
2	1662	13069	- 김형기 중령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33개를 저장한 CD 1매	
2	1939	15654	- 이메일(윤덕규 보냄, 장수경)	
2	2033	15975	- 김세운 특전항공단장의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19개를 저장한CD 1매	
4	157	3836	- FMB CARD	
4	428	1316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메시지 내역 캡처본2	
4	823	2668	-24. 12. 16.자 엄정섭 진술조서 붙임문서중 특임대대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취록 참고자료 수정본1부	
4	1559	8725	- 김수철 발송 메일 본문	
4	1648	10099	- 기관메일 수신 현황	소령 조원민
5	151	1318	- 00여단CCTV 출력물10매	

5	438	2968-1	- 김태환 임의제출 통화녹음파일CD	
5	844	1391	- 선관위 관악청사(외곽CCTV 캡처) 2매	
5	847	1403	- 국립농업박물관 관람객 주차장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경위 조준철
6	32	383	- 관악구 관제센터에서 압수한CCTV 영상 캡처 화면	
6	33	385	- 연합뉴스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캡처 사진	
6	40	435	- 뉴스 영상 캡처 사진	
6	42	449	- 뉴스 영상 캡처 사진	
6	46	483	- 정한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6	48	518	- 문진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6	92	1070	- 김봉식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내역 촬영 사진	
6	109	1270	- 조영진 통화내역 캡처본	
6	179	2483	- 24. 12. 4. 공공안전부 주요상황 단체대화방 캡처사진	
6	192	2815	- 이병하 통화내역 캡처 출력물	
6	200	2872-4	- CCTV 캡처 사진	
6	231	3107	- 통화내역 캡처 사진 등	
6	320	4205	- 김경규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	
6	321	4208	- 김경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6	323	4250	- 최광원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6	327	4257	- 최광원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6	337	4380	- 임경우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6	348	4498	- ★기동단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	
6	368	4644	-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앞CCTV 출력물	
6	371	4682	- 김경규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6	387	4883	- VI 카카오톡 캡처 사진	
6	430	5117	- CCTV 캡처 사진 출력본	

6	441	5204	- CCTV 캡처 사진 출력본	
6	463	5362	-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주차장CCTV 저장CD	
6	486	5991	- 서울광수단 대장`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	
6	487	5993	- 이종욱-임경우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	
6	488	5995	- 24년 광역수사단 서무방`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	
6	489	5596	- 이종욱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	
6	715	7813	- 본청 서무계장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	
6	778	9018	- 오부명↔목현태 통화내역1부	
6	779	9022	- 오부명↔임정주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1부	
6	780	9023	- 오부명↔주진우 카카오톡 대화내역1부	
6	867	11041	- 2024.12.3. 비화폰 통화내역 캡처 이미지1부	
6	872	11065	- 24기 종파수인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6	873	11067	- 26기 경력알림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6	874	11073	- ◆기동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7	672	6332	- 2024. 10. 11.자SW 중사가 노상원에게 보낸 이메일	SW
7	677	6350	- 노상원과MW의 통화기록 캡처화면	MW
7	834	7844	- 양호열의 제네시스 블랙박스 캡처 화면	
7	961	86	서울 용산구 소재 볼보빌딩CCTV 영상CD	
7	962	87	용산구청CCTV 영상CD	
7	963	88	용산구청 및 한남유수지공영주차장CCTV 영상CD	
7	985	51	- 잿머리성황당 및 법흥사CCTV 영상CD	
8	625	6034	-초과근무관리화면 캡처	
9	558	7530	- 경찰청CCTV(화질개선 동영상) 캡처 사진8장	
10	518	19529	- 녹음파일6개 저장CD 1매	
10	795	27910	- 김수철 메일 송부 내역(2025. 9. 5.) 사본3부	
10	803	29029	- 김의규 통화 녹음파일(84개) 1부	

10	804	29030	- 윤태현 통화 녹음파일(22개) 사본1부	
12	2464		사건 이송 보고	경감 김태동
12	2466	3	고발장	정의당당 외2
12	2470	28	출국금지 등 요청서(박안수)	
12	2471	30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박안수)	
12	2472	33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박안수)	
12	2473	36	출국금지 등 요청서(박안수)	
12	2474	38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박안수)	
12	2476	51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12	2477	61	출석요구서(박안수)	경감 유상열
12	2487	113	-서울고등법원96노1892 판결문	
12	2488	224	-대법원80도306 판결문	
12	2514	383	-주민등록등 초본 등	
12	2515	394	-범죄및수사 경력조회회보서	
12	2516	396	-개인 출입국 현황	
12	2517	397	-운전면허 조회	
12	2523	415	-합동참모 본부 중령 최영생 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2024. 12. 4. 합동참모 본부 전투통제실 출입 장면의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525	425	진술조서	신대해
12	2526	438	진술조서	구본규
12	2528	452	진술조서	박근태
12	2530	471	-정민영 소령 작성'자필 진술서'	정민영
12	2534	483	-2024. 12. 3. 현안 보고 사본(군사기밀 사항 일부 삭제)	
12	2541	541	합동참모본부 지하○층 전투 상황실 입구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547	617	합동참모본부 지하○층 전투 상황실 입구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548	626	통화내역	
12	2550	2	고발장	조국혁신당당
12	2589	114	고소장	양경수 외58
12	2596	142	고발장	진보당당 외3
12	2598	154	고발장	더불어민주당
12	2617	219	고발장	더불어민주당
12	2625	268	고발장	박선원
12	2627	274	고발장	더불어민주당
12	2636	297	고발장	더불어민주당
12	2646	319	고발장	신승목(적폐청산국민 참여연대)
12	2663	400	고발장	정의당당 외2
12	2669	430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여인형)(사본)	
12	2671	434	출국금지 등 요청서(여인형)(사본)	
12	2672	436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박안수)(사본)	
12	2673	437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박안수)(사본)	
12	2686	528	출석요구서(박안수)(사본)	
12	2687	530	출석요구서(여인형)(사본)	
12	2688	532	출석요구서(사본)	
12	2689	534	출석요구서(사본)	
12	2690	536	압수조서(사본)	경감 박정수
12	2691	537	-압수목록(사본)	
12	2692	538	-임의제출(사본)	김윤주
12	2693	540	-소유권 포기서(사본)	김윤주
12	2694	542	-압수목록 교부서(사본)	
12	2695	544	-전자정보 확인서(사본)	김윤주

12	2696	545	-전자정보 상세목록(사본)	
12	2697	547	압수조서(사본)	경감 박진수
12	2698	550	-압수목록(사본)	
12	2699	556	-압수목록 교부서(사본)	
12	2700	558	-임의제출(사본)	이찬호
12	2701	560	-소유권 포기서(사본)	이찬호
12	2702	562	-전자정보 확인서(사본)	이찬호
12	2703	563	-전자정보 상세목록(사본)	
12	2704	565	진술조서(사본)	RI
12	2708	588	진술조서	김태형
12	2709	601	진술조서	신일섭
12	2710	622	진술조서	RG
12	2711	636	진술조서	RF
12	2741	773	- 2024. 12. 5. 제8차 국방 위원회 전체 회의 회의록	경감 전지수
12	2742	857	- 2024. 12. 5. 제14차 행정 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경감 전지수
12	2743	1012	- 2024. 12. 10.~11. 제11차, 12차 국방 위원회 전체 회의 속기록	경감 전지수
12	2744	1068	조회회보서	여인형
12	2747	1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사전)	경정HG
12	2748	21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기각	검사 박가희
12	2749	26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서(사전)	경정HG
12	2750	30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 기각	검사 박가희
12	2753	41	진술조서	최일규
12	2754	58	- 진술조서(최일규) 영상 녹화CD 1장	최일규
12	2755	59	진술조서	ACG
12	2756	69	진술조서	김대우

12	2757	87	진술조서	나승민
12	2758	134	진술조서(제2회)	나승민
12	2759	157	- 나승민 통화 기록 화면 촬영사진	
12	2762	164	- 2024. 12. 1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사본	
12	2763	172	- 진술조서(나승민) 영상 녹화CD 2장	
12	2764	174	진술조서	박성하
12	2765	206	- 약식자력표	
12	2766	207	진술조서	이창엽
12	2768	254	- 대법원96도3376 판결문	
12	2769	336	- 대법원80도306 판결문	
12	2789	529	- 송제영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송제영
12	2790	559	- TR 진술 조서(사본)	TR
12	2791	570	- TS 진술 조서(사본)	TS
12	2792	580	- TT 진술 조서(사본)	TT
12	2793	593	- TU 진술 조서(사본)	TU
12	2794	603	- TV 진술 조서(사본)	TV
12	2795	613	- TW석 진술 조서(사본)	TW석
12	2799	2	진술조서	정유림
12	2800	31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권영환
12	2801	32	진술조서	권영환
12	2802	56	-합참 조직도	
12	2803	57	진술조서	홍창식
12	2804	14	-심야조사 요청서	홍창식
12	2805	105	-국방부 영내 출입기록	
12	2806	108	-텔레그램 캡처 출력물	
12	2807	114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사진 출력물	

12	2808	118	-이메일 출력물	
12	2809	120	-휴대전화 달력 일정	
12	2811	126	-전투통제실CCTV 영상 캡처본(총8장)	
12	2812	130	진술조서	안찬명
12	2813	158	진술조서	김선호
12	2814	199	-국방부 영내 출입기록	
12	2815	203	-일일예정표	
12	2816	227	-시그널 메신저 캡처 출력물	
12	2817	275	-통화내역	
12	2818	277	진술녹음 고지· 동의 확인서	전하규
12	2819	278	진술조서	전하규
12	2820	317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출력물	
12	2822	336	진술조서	정진팔
12	2829	391	진술녹음 고지· 동의 확인서	최병욱
12	2830	392	진술조서	최병욱
12	2831	428	진술조서	인성환
12	2832	475	-대통령실 조직도	
12	2833	476	-시그널 메신저 캡처 출력물	
12	2834	479	-통화목록 캡처 출력물	
12	2835	483	-휴대전화 촬영 사진 출력물	
12	2837	500	진술조서(2회)	인성환
12	2838	527	-합참 전투 통제실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839	530	-휴대전화 촬영 사진 출력물	
12	2842	537	수사보고서(김선호와 전화 통화- 김용현 폰번호 추가 특정 및 검찰 출석경위 확인)	경정 서신영
12	2846	551	-12. 1. ~ 4. 홍창식 개인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음성 통화 및 문자)	

12	2847	552	-12. 1.(일) 행정 관련 자료(국방부 영내 출입 기록, 차량 출입 이력, 국군중앙교회 후보 등)	
12	2848	558	-12. 3.(화) 퇴근 이후 행정 관련 자료(지하철 이용 내역, 육군회관 출입 내역,아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2	2849	562	-법무관리관 일정표(2024. 11. 25.~12. 6.)	
12	2850	564	-국방부장관 지시사항에따라 배포한 공문 및 검토 자료(국방 안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법령 개정 소요 제출 요청 등)	
12	2851	571	-국회 업무 관련한 장관 에게 보고한 보고문서(2024. 11. 8. 법사위 전체회의의 자료, 2024. 11. 28. 국방위 전체 회의 의결 법률안)	
12	2852	615	수사보고서(국방부 차관 김선호 면담)	경정 서신영
12	2854	618	-김선호 통화 내역	
12	2856	626	-진술서	최병욱
12	2858	633	- 참고인 인성환 제출2024. 11. 1. ~ 2024. 12. 8.간'주간 예정표'	
12	2859	1	진술조서	양승철
12	2860	30	- 언론보도 선관위 서버 촬영군인사진	
12	2861	32	-통화내역(발신) 사본	
12	2863	40	진술조서	유재원
12	2864	69	-카카오톡 단톡방 캡처본	
12	2865	70	-통화내역 캡처본	
12	2866	73	-구글타임 라인 캡처본	
12	2867	75	-12. 3. 23:36 ~ 12. 4. 02:35 회의내용 등 기재 자필 메모 사본	
12	2868	77	-5목현태 사령관 사무실 그림	
12	2870	85	진술조서	이중훈
12	2873	119	진술조서	송제영

12	2875	161	진술조서	박태주
12	2877	193	-구글타임 라인 캡처본	
12	2878	194	-전화통화 캡처본	
12	2880	209	진술조서	최승리
12	2884	246	진술조서	노영훈
12	2892	305	-방첩사 인사 복지와-9086 (2024. 12. 24.) 수사협조의 회(경찰청 안보 수사2과-4615)에 대한 처리 결과 회신 스캔본	
12	2893	306	-수사협조자료	
12	2895	314	-CCTV 화면 자료 취합한SD카드1개	
12	2896	315	-전자정보 상세목록	
12	2898	320	-241231 합참 회신 공문 스캔본	
12	2899	321	-상황보고서(12. 3.) 내 김용현 前 장관 발언	
12	2901	3	사건이송서	
12	2906	1-1	사건이송서	경찰청
12	2908	3	고발장	조국혁신당당
12	2946	116	고소장	민노총 양경수 등59명
12	2953	143	고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12	2968	203	고발장	진보당당 김재연 등
12	2971	215	고발장	정의당당·ACK당당·ACL당
12	2979	238	고발장	더불어민주당
12	2991	295	- [붙임2] 서울고등법원96노1892 판결문	
12	2993	408	- [붙임4-1] 대법원2016 도1397	
12	2994	414	- [붙임4-2] 대법원2016 도14871	
12	2995	420	- [붙임4-3] 대법원2011 도2631	

12	3006	462	- 판결문(대법원2024도10978 전원합의체)	
12	3008	531	- 참고인 제출 자료(비화폰 통화 내역 캡처 사진)	이상현
12	3011	615	진술조서	김정근
12	3012	633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 내역 캡처 사진 등)	김정근
12	3014	641	진술조서	김종탁
12	3017	669	진술조서	안무성
12	3018	692	- 참고인 제출 자료(상황일지, 여단 연간 부대 운영 계획 등)	안무성
12	3020	74	진술서	차용환
12	3024	732	진술조서	ACM
12	3028	752	진술조서	김창학
12	3029	772	- 참고인 제출 자료(휴대전화 녹음파일99개가 저장된 CD 1장)	김창학
12	3030	773	-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 목록	김창학
12	3032	797	진술조서	엄정섭
12	3033	815	진술서	엄정섭
12	3034	821	- 참고인 제출 자료(상황일지)	엄정섭
12	3035	824	- 참고인 제출 자료(수방사 군사경찰단 MC 출동현황)	엄정섭
12	3036	825	- 참고인 제출 자료(수방사 군사경찰당 출동명단)	엄정섭
12	3038	831	진술조서	조성현
12	3039	850	- 참고인 제출 자료[제1경비단 작전경과(총괄)]	조성현
12	3040	853	- 참고인 제출 자료[제1경비단 작전경과(12. 3.~4.)]	조성현
12	3041	856	- 참고인 제출 자료[2특임대대 작전경과(12. 3.~4.)]	조성현
12	3042	858	- 참고인 제출 자료[35특수 임무대대 작전 경과(12. 3.~4.)]	조성현
12	3043	861	- 참고인 제출 자료[작전경과(제1경비대대)]	조성현
12	3045	867	진술조서	박진우
12	3047	890	진술조서	김의규

12	3048	911	진술조서	조백인
12	3049	929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 내역 캡처 사진)	경감 신충근
12	3051	946	진술조서(제1회)	양재응
12	3053	964	진술조서(제2회)	양재응
12	3054	982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내역 캡처 사진)	양재응
12	3057	1004	- 수도방위 사령부 편제표	경위GX
12	3060	1025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 내역 캡처 사진)	ACO
12	3069	1097	진술조서 사본	서지윤
12	3070	1114	진술서 사본	김정재
12	3071	1125	진술서 사본	김찬유
12	3072	1135	진술서 사본	유병욱
12	3073	1146	진술서 사본	이민형
12	3074	1156	진술서 사본	김형주
12	3075	1166	진술서 사본	김성호
12	3076	1177	진술서 사본	ACP
12	3077	1189	진술서 사본	홍태환
12	3084	1242	- 진술조서 사본	김성호
12	3090	1293	- 문상호 휴대 전화 타임라인 조회 화면 촬영 사진	
12	3093	134	- 진술조서	신일섭
12	3095	1332	- 진술조서	김태형
12	3097	1348	- 진술조서	RF
12	3099	1364	- 진술조서	RG
12	3103	1390	- 팰리세이드(335라9319) 차적조회 상세 내용	
12	3104	1391	- 관악구 관제 센터에서압수한CCTV 영상 캡처화면	
12	3109	1403	- 국립농업 박물관 관람객 주차장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경위 조준철
12	3118	1456	- 수사협조의뢰 응신(국군####부대)	국군####부대

12	3119	1457	- 국가수사본부 요청자료(수신: 사경청 안보 수사2과)	
12	3121	1461	- 수사협조자료 제출(회신)	사이버작전사령부
12	3123	1469	- 경찰청 수사 요구자료 작성 결과(보고)	특수전사령부
12	3124	1470	- 육군특전사 예하 부대 상세 주소 부대별 책임자전화 번호	특수전사령부
12	3125	1471	- 출동부대의 인원, 출동일시, 장소, 수단 등 기재된 일지	특수전사령부
12	3126	1510	- 무기탄약 입출고 대장	특수전사령부
12	3127	1533	- 출동인원명단	특수전사령부
12	3129	1565	- 국회(허영의원)요구자료	
12	3130	1568	- 국회(부승찬 의원)요구자료	
12	3131	1572	- 사경청 수사 협조 요구자료	
12	3132	1577	- 공수처 수사 요구자료(제9 공수특전여단)	
12	3134	1585	- 경찰청 수사 요구자료 작성 결과(보고)	특수전사령부
12	3135	1586	- 비상계엄관련 출동한 육군 특전사 소속 예하 부대 상세 주소 및 부대별 책임자, 전화 번호	특수전사령부
12	3138	1596	- 육군 특수전 사령부 조직도	특수전사령부
12	3201	1801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	경사ACQ
12	3202	1803	- SK텔레콤 회신자료	SK텔레콤
12	3203	1805	- KT이동전화 회신자료	KT이동전화
12	324	1807	- LG유플러스 회신자료	LG유플러스
12	3206	1810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	경위ACR
12	3207	1812	- SK텔레콤 회신자료	SK텔레콤
12	3208	1814	- LG유플러스 회신자료	LG유플러스
12	3210	1818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	경위ACS
12	3211	1820	- SK텔레콤 회신자료	SK텔레콤
12	3212	1822	- KT이동전화 회신자료	KT이동전화

12	3213	1823	- LG유플러스 회신자료	LG유플러스
12	3217	1851	- 2024-00087 출석요구서 (김현태)	경감ACT
12	3218	1853	- 2024-00086 출석요구서 (김정근)	경감ACT
12	3221	1860	- 2024-00083 출석요구서	경위ACU
12	3223	1865	- 2024-00085 출석요구서	경감ACV
12	3224	1867	- 2024-00084 출석요구서	경감ACV
12	3225	1869	- 2024-00101 출석요구서	경감ACT
12	3226	1871	- 2024-00106 출석요구서	경감ACW
12	3227	1873	- 2024-00107 출석요구서	경감ACW
12	3229	1877	- 2024-000034 출석요구서	경위ACX
12	3231	1881	- 2024-00035 출석요구서	경감 신충근
12	3239	1899	- (문상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2	3243	1912	- 통신이용자 정보제공요청서	경위ACR
12	3244	1914	- SK텔레콤 회신자료	SK텔레콤
12	3245	1916	- LG유플러스 회신자료	LG유플러스
12	3250	1921	압수조서(임의제출-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CCTV)	경감ACY
12	3251	1922	임의제출	ADF
12	3252	1924	압수목록	ADF
12	3253	1925	압수목록 교부서	경감ACY
12	3254	1926	소유권 포기서	ADF
12	3255	1927	전자정보 확인서	ADF
12	3256	1928	전자정보 상세목록	ADF
12	3257	1932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검사 박가희
12	3258	1933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문상호
12	3259	1936	긴급출국금지 보고서	경정ACZ
12	3260	1940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	경정ACZ
12	3263	1953	범죄경력조회회보서(박안수)	경위ADA

12	3264	1955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여인형)	경위ADA
12	3265	1957	범죄경력조회회보서(곽종근)	경위ADA
12	3266	1959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이진우)	경위ADA
12	3267	1961	범죄경력조회회보서(문상호)	경위ACS
12	3268	1963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고소/고발)	경위ADB
12	3270	1974	- 국군 제#### 부대 회신자료	국군 제####부대
12	3271	1977	진술녹음고지 동의확인서	경위ACS
12	3280	2078	진술조서	서지운
12	3281	2095	진술서	김정재
12	3282	2106	진술서	김찬유
12	3283	2116	진술서	유병욱
12	3284	2127	진술서	이민형
12	3285	2137	진술서	김형주
12	3286	2147	진술서	김성호
12	3287	2158	진술서	김지웅
12	3288	2170	진술서	홍태환
12	3295	2225	- 진술조서	김성호
12	3296	2235	진술녹음고지 동의확인서	경감ACY
12	3301	2254	- 주민등록등·초본 회신자료	서대문구청
12	3319	2330	긴급체포서	경감ACY
12	3320	2336	군부대 긴급 체포 통지	경감ACY
12	3321	2337	긴급체포 통지서(문상호)	경감ACY
12	3322	2341	권리고지 확인서	문상호
12	3323	2342	긴급체포승인 요청서	경감ACY
12	3332	2414	-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경위ACS
12	3333	2415	- 복제본 목록	경위ACS
12	3334	2416	- 정보저장매체 인수증	경위ACS

12	3335	2417	- 전자정보 삭제,폐기,반환 확인서	경위ACS
12	3336	2420	긴급체포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서	검사ADC
12	3337	2422	석방통보서(긴급체포불승인)	경장ADD
12	3338	2426	석방 보고서(긴급체포)	경장ADD
12	3339	2430	피의자석방서(긴급체포)	경장ADD
12	3340	2431	군부대 긴급 체포 석방 통지서	경장ADD
12	3356	2633	사건이송보고서	경사ADE
12	3357	2641	사건결과통지서(피의자 송치 등)	경사ADE